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4065호

2025. 5. 22.(목)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5-1554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제2025-162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0
제2025-16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0
제2025-162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1
제2025-162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8

◈ 고 시

제2025-273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음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72
제2025-274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 88
제2025-275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89
제2025-277호 도시관리계획(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49
제2025-2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종전)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89
제2025-279호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203
제2025-28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신규·폐지)에 관한 고시 ····· 232
제2025-281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35
제2025-282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54
제2025-284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 305
제2025-285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306

◈ 공 고

제2025-154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 330
제2025-15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332
제2025-1561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확정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334
제2025-156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36
제2025-15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 337
제2025-1569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39
제2025-157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348
제2025-157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349
제2025-157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350
제2025-157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 351
제2025-157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 353
제2025-1580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안) ····· 354
제2025-1581호 지방세 공시송달 ····· 384
제2025-1582호 지방세 공시송달 ····· 388
제2025-15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390
제2025-159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39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제2025-185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 공시 ····· 409

◈ 구 고 시

제2025-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창신 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종로구) ····· 410
제2025-39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노원구) ····· 413
제2025-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대문구) ····· 414
제2025-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구로구) ····· 415
제2025-9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영등포구) ····· 418
제2025-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동작구) ····· 421
제2025-84호 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 ····· 423
제2025-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강동구) ····· 464

◈ 구 공 고

제2025-739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종로구) ····· 485
제2025-796호 도시계획시설(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중랑구) ····· 501
제2025-900호 도시계획시설(2020 성북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성북구) ····· 573
제2025-1002호 도시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양천구) ····· 575
제2025-984호 도시계획시설(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양천구) ····· 576
제2025-9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구로구) ····· 577
제2025-1049호 도시계획시설(산기슭지구)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금천구) ····· 578
제2025-1051호 도시계획시설(목골지구)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금천구) ····· 581
제2025-1197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 584

◈ 사업소고시

제2025-2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4
제2025-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4
제2025-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5
제2025-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5
제2025-2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6
제2025-2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6
제2025-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7
제2025-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7
제2025-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8
제2025-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미래한강본부) ····· 618

◈ 사업소공고

제2025-22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미래한강본부) ····· 619
제2025-3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송파소방서) ····· 631

◈ 기 타

제2025-18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32
제2025-18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33
제2025-18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34
제2025-188호 하천점용(일시, 변경)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35
제2025-18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한강유역환경청) ····· 636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54호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으로 '규제총괄관' 위촉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및 수당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를 정함(안 제15조)
나. '규제총괄관'의 수당 지급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 · 등기우편 · 온라인
(1) E-mail: mjseo0723@seoul.go.kr
(2)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무담당관
(3) 온라인: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제3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제2호”를 “제4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7조제1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무원에 대하여”를 “공무원에게”로 한다.

제12조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제5조제3항----------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회의) ① · ② (생 략)	제4조(회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서울특별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한 4급 이상 공무원이 대리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③ --- 제5조제3항----------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안건제출) ① 실 · 본부 · 국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	제5조(안건제출) ① ---------- ------- 제4조제2호-------- ----------

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에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법제심사 또는 중요문서 심사를 의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호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 심사의견서	2. 법 제7조제3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생 략)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 제10조제1항 ----------. ---------- 공무원에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규제의 공표) 법무담당관은 제2조에 따른 규제정비종합계획과 제10조제1항의 규제사무목록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규제의 공표) ---------- ---------- ---------- ---------- ------ 서울특별시 -------- --------.
<신 설>	제15조(규제총괄관의 근무 형태)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규제총괄관은 비상근으로 하며, 주당 2일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규제총괄관의 수당) ① 규제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규제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21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상시화 · 체계화를 위한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본청 · 합의제 · 소속기관의 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구 및 사무분장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제개혁 전담기구 신설 및 기획조정실 부서 간 사무조정
- (기획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및 ‘규제개선담당관’을 신설하고, 창의행정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재편하며, 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 평가담당관 · 법무담당관의 사무분장을 조정

나. 지하안전 전담 조직 신설 및 본청 · 합의제행정기관의 사무분장 조정
- (재난안전실) ‘지하안전과’를 신설하고, 도로관리과 및 보행환경개선과를 통합하며, 재난안전정책과 · 재난안전예방과 간 사무분장 조정
-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내 ‘하천 유지용수 관리 사무’ 명시
-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를 ‘자치경찰운영과’로, 자치경찰지원과를 ‘자치경찰사업지원과’로 명칭변경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다. 소속기관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직 및 사무분장 정비
-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의 사무분장을 정비하고, 토목부의 도시고속도로과를 폐지하며, 방재시설부 산하 대심도과를 신설
-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를 수도연구부로 통합
-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를 ‘한강수상활성화부’로, 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수상안전부’로 재편하고, 한강수상안전부 내 수상안전과를 신설하며, 자연성회복과를 한강사업총괄부로 이관하고, 부서 간 사무분장 조정
  ※ 과 명칭 사항 : 환경수질과 → 환경관리과, 서울항조성과 → 수상기반시설과,
  한강이용증진과 → 수상교통사업과, 수상여가과 → 수상운영과
- (시립병원) 은평병원 간호부 산하 42병동간호과를 폐지하고 31병동간호과를 신설하며, 마약관리센터 산하 진료과 근거 조항 명시
-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산하 과의 명칭을 변경(지식문화과→행정지원과)하고, 독서문화진흥과를 신설

- (서울대공원) 관리부를 ‘경영지원부’로 명칭 변경하고, 전략기획실을 경영관리부 내 기획홍보과로 재편하며, 경영지원부 내 운영과·시설과·조경과 간 사무분장 정비
- (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내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의 사무분장을 정비

다. 투자출연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지도·감독 기구의 사무분장 현행화

- (디지털도시국) 디지털정책과 관할 재단 명칭변경 반영(서울디지털재단→서울AI재단)
- (주택실) 주택정책과 관할 공사 명칭변경 반영(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라. 개방형 직위 관련 변경사항 반영

- 주택실장, 평화기반조성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의 개방형 직위해제에 따른 규칙 개정 (4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창의행정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을 “재정기획관·규제혁신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담당관·약자동행담당관·공기업담당관·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성과평가, 창의행정”을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규제혁신기획관은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0조제6항(종전의 제5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0호를 제2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7항(종전의 제6항)에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3.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14.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15.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제10조제8항(종전의 제7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창의행정담당관”을 “창의규제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

6. 규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9. 규제총괄관(민간전문가)의 규제개혁 자문·조정·대외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등록규제 관리 및 자체규제 정비
11.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12. 규제개선 과제 점검 및 평가·성과관리
13.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제10조제9항제3호 중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무 관련 자료·법제심사 사례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기반 마련

⑯ 규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실태 조사
3.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
5. 규제개혁 관련 시민 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
6.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7.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제4항제2호 중 “서울디지털재단”을 “서울AI재단”으로 한다.

제17조의5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지하안전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을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지하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안전관리업무”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제16호 및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제20조제10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9호) 중 “연구”를 “연구, 기술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 제17호, 제22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13호) 중 “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을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22호) 중 “검토”를 “검토,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17.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22.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24.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18.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9.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20.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23.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ㅇㅇ

제20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행환경개선과장”을 “지하안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을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위원회 및 지하안전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제20조의2제3항 중 “주택실장 및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을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4조제3항제5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하천 유지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제69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71조제2항 중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을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 및 토목설계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 및 토목설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재시설과·

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을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대심도과·조경시설과 및 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 및 대심도과장”으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를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로,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을 “수질분석부장 및 수도연구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후 및 물 산업 환경변화 대응전략 연구
4. 국내외 물 시장 진출정책 및 경영전략 개발

제81조제2항 중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를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로, “두며”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85조제1항 중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전략사업부·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수상활성화부 및 한강수상안전부”로, “한강전략사업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을 “한강수상활성화부장 및 한강수상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5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중대재해·재난·한강공원 통합관제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제85조제4항제2호 중 “환경순찰”을 “환경순찰(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한강보안관·공공안전관·사회복무요원 인사 및 복무관리
6. 공원 내 둔치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 및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제85조제4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녹지, 생태공간, 조경시설”을 “녹지·조경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풍수해·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공원 매점 및 화장실 설치

제85조제7항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공원 재조성·유지관리
5.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6.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7.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8. 캠핑장 및 수영장·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
9.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제8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강전략사업부장”을 “한강수상활성화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제4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상교통(한강버스 포함) 도입, 운영 및 활성화
3.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8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강여가사업부장”을 “한강수상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유치”를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2.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계도·단속
3. 관공선관리센터 운영 및 한강수상보안관 복무관리
9. 긴급도강계획 수립 및 시행
11.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및 한강 수질 오염 방재
12.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질 관리, 수상 청소에 관한 사항
13. 낚시터 운영·관리 및 한강 조류·어종 관련 조사 지원

제86조제2항 중 “운영총괄과, 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수질과”를 “운영총괄과·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관리과”로, “환경수질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를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 및 자연성회복과”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한강수상활성화부에 수상교통사업과·수상기반시설과 및 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수상교통사업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상기반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한강수상안전부에 수상안전과·수상운영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수상안전과장 및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상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2조제3항 중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31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로 한다.

제9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 진료과를 둘 수 있다.

제103조 및 제10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5조(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3조제1항 중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를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과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을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진흥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문화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2. 공공독서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123조 본문 중 “전략기획실·관리부”를 “경영관리부”로,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을 “경영관리부장”으로 한다.

제123조의2를 삭제한다.

제124조의 제목 “(관리부)”를 “(경영관리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를 “경영관리부에 총무과·기획홍보과·운영과·시설과”로, “총무과장”을 “총무과장·기획홍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대공원 미래 전략 수립·관리 및 평가
2. 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총괄
3.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총괄
4. 마케팅·홍보 업무계획 수립·총괄 조정
5. 민·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6. 축제·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7.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8. 서울대공원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 총괄
9.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

제124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야구장 운영 관리

제124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자연캠프장”을 “캠핑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및 제12호(종전의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정원조성 및 수목 식재
17. 산사태 및 사방시설 관리 등 임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산림욕장, 숲길 조성 및 관리
12.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제131조제1항 중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를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을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서울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

⑦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48조제1항 중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을 “자치경찰운영과·자치경찰협력과·자치경찰사업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경찰총괄과장”을 “자치경찰운영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제14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경찰지원과장”을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치안·안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발굴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치안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수지역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5, 제20조의2, 제103조, 제105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평가담당관"을 "규제개선담당관"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라목 및 제2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6호 및 제9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4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재난수습 주무부서 표 중 수습주무부서란의 “한강여가사업부”를 “한강수상안전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 · 재정기획관 · 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 평가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 재정담당관 · 약자동행담당관 · 공기업담당관을 둔다.	제10조(기획조정실) ① --------- 정책기획관 · 재정기획관 · 규제혁신기획관 · 기획담당관 · 조직담당관 · 평가담당관 ·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 재정담당관 · 약자동행담당관 · 공기업담당관 · 창의규제담당관 · 규제개선담당관---.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 · 평가담당관 · 창의행정담당관 ·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 재정담당관 · 약자동행담당관 · 공기업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재정기획관 · 규제혁신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 · 평가담당관 · 법무담당관 · 법률지원담당관 · 예산담당관 · 재정담당관 · 약자동행담당관 · 공기업담당관 · 창의규제담당관 · 규제개선담당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성과평가, 창의행정, 법무행정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약자동행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성과평가----------.
<신 설>	⑤ 규제혁신기획관은 제15항에서 제16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⑤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19.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신 설>	2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20. (생 략)	21. (현행 제20호와 같음)
⑥ 조직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신 설>	13.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신 설>	14.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신 설>	15. 서울시 인구변화대응 정책 총괄·조정
⑦ 평가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⑧ 창의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⑮ 창의규제담당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서울연구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법령·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
6. 시정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6. 규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 투자출연기관 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지도·감독	7. 자치법규 규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8. 우수정책 발굴·관리 및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	8.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9.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9. 규제총괄관(민간전문가)의 규제개혁 자문·조정·대외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0. 도시경쟁력 평가에 관한 사항	10. 등록규제 관리 및 자체규제 정비
<신 설>	11. 규제개선 우수사례 전파 및 교육

<신 설>	12. 규제개선 과제 점검 및 평가·성과관리
<신 설>	13. 규제개선 과제 공모 등 홍보에 관한 사항
⑨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령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행정규제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6. 법무 관련 자료·법제심사 사례 체계화 및 정책적 활용 기반 마련
7.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삭 제>
8. ~ 11. (생 략)	7. ~ 10.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⑩ ~ ⑭ (생 략)	⑩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⑯ 규제개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 검토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기업규제·민생불편 등 규제 실태 조사
	3. 규제개선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대상 안건 발굴 및 검토 5. 규제개혁 관련 시민 제안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및 관리 6. 시·자치구 규제발굴 협의체 운영 7. 갈등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갈등 예방과 조정 체계 구축 및 갈등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 ③ (생 략) ④ 디지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서울디지털재단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 ~ 12. (생 략) ⑤ ~ ⑨ (생 략)	제17조의4(디지털도시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현행과 같음) 2. 서울AI재단 ---------- 3. ~ 12.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5(행정국) ①·② (생 략) ③ 제2항의 평화기반조성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 ⑩ (생 략)	제17조의5(행정국)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 ⑨ (현행 제4항부터 제10

	항까지와 같음)
제20조(재난안전실) ① 재난안전실에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제20조(재난안전실) ① ----------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재난안전정책과·재난상황관리과·재난안전예방과·중대재해예방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지하안전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
② 재난안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재난안전기획관·도로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난안전정책과장·재난안전예방과장·중대재해예방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보행환경개선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재난상황관리과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② ---------- ---------- ---------- ---------- ---------- ---------- ---------- ---------- ----------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지하안전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재난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
1.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 --
2. ~ 15. (생 략)	2. ~ 15. (현행과 같음)

16.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삭 제>
17.·18. (생 략)	16.·17. (현행 제17호 및 제18호와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난안전예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12.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3. ~ 12. (생 략)	2. ~ 11. (현행 제3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⑩ 도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⑩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도로함몰에 대한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도로포장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원	<삭 제>
9. 도로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7. ---------- 연구, 기술 전문교육 및 기술지원
10. (생 략)	8.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도로포장 기술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	<삭 제>
12.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삭 제>
13. 노후포장도로 정비 및 감리 용역	9. ---------- 건설사업관리 ----
<신 설>	16.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신 설>	17.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14. ~ 17. (생 략)	10. ~ 13. (현행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19.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9.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20.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20.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21.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21.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신 설>	22.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22. 도로굴착복구 타당성 검토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	14. ---------- 검토, 건설사업관리 용역 ---

23. 도로굴착복구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관한 사항	23.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신 설>	24.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24. (생 략)	15. (현행 제24호와 같음)
⑪ 보행환경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⑪ 지하안전과장----------.
1. 보도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2. 보도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 보도포장 관련 지침, 제도개선 연구	3. 지하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에 관한 사항
4. 보도포장 전문기술교육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평가 이행 실태점검-----
5. 보도공사 실명제 등 각종제도 시행 및 관리	5. 지하안전위원회 및 지하안전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6. 보도정비, 보도블록 관리	6. 지하안전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	7.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8. 보도공사 설계 및 현장 지도점검	<삭 제>
9. 자치구 위임 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0. 보도포장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삭 제>
11. 거리모니터링단 운영 및 관리	<삭 제>
12.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및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사항	<삭 제>
13.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사항	<삭 제>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삭 제>
15.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삭 제>
16. 도로사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삭 제>
⑫·⑬ (생 략)	⑫·⑬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주택실) ①·② (생략)	제20조의2(주택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주택실장 및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주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주택도시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
4. ~ 13. (생 략)	4. ~ 13. (현행과 같음)
⑥ ~ ⑮ (생 략)	⑥ ~ ⑮ (현행과 같음)
제24조(물순환안전국) ①·② (생략)	제24조(물순환안전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수변감성도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하천 유지용수 관리에 관한 사항
5. ~ 20. (생 략)	6. ~ 21. (현행 제5호부터 제20호까지와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9조(시설국) ① ~ ③ (생 략)	제69조(시설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건축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 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71조(과의 설치) ① (생 략)	제71조(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

	음)
② 토목부에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 및 토목설계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 및 토목설계과장----------.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대심도과·조경시설과 및 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 및 대심도과장----------.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80조(서울물연구원) ① 서울물연구원에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총무과를 두며,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	제80조(서울물연구원) ① ----------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 ---------- 수질분석부장 및 수도연구부장----------

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의 서울물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수도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신 설>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신 설>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신 설>	3. 기후 및 물 산업 환경변화 대응전략 연구
<신 설>	4. 국내외 물 시장 진출정책 및 경영전략 개발
1. ~ 7. (생 략)	5. ~ 11. (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⑤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기후 및 물 산업 환경변화 대	

응전략 연구 4. 국내외 물 시장 진출정책 및 경영전략 개발	
제81조(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생 략)	제81조(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연구부에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 및 스마트기술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재료연구과장·스마트기술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 ---------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
③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삭 제>
제8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에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전략사업부·한강여가사업부를 두고,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지방	제85조(하부조직) ① ---------- ---------- 한강사업추진단·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한강사업총괄부·한강수상활성화부 및 한강수상안전부 ----------

부이사관으로, 총무부장·운영부장·한강사업총괄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한강전략사업부장·한강여가사업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 ---------- 한강수상활성화부장 및 한강수상안전부장---------- ----------.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한강이용활성화 정책의 총괄 및 조정 등에 관하여 미래한강본부장을 보좌한다.	② 한강사업추진단장은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중대재해·재난·한강공원 통합관제 등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④ 운영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원 불법행위·행락질서 지도·단속 및 환경순찰	2. ---------- --------- 환경순찰(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
3. 안내센터 지도·감독·운영 및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3. 안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4. 한강보안관·공공안전관·사회복무요원 인사 및 복무관리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공원 내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	<삭 제>
6.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6. 공원 내 둔치 청소업무(환경미화원 복무관리 포함) 및 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
7. 한강공원 환경순찰, 사건·사고 보고 및 관리	<삭 제>
8.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한강수질 관리	<삭 제>
9. 낚시터 운영·관리 및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삭 제>
10.·11. (생 략)	7.·8.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12. 한강커뮤니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⑤ 공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생태경관보전지역(밤섬제외) 및 생태공원 유지관리	<삭 제>
5. 녹지, 생태공간, 조경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4. 녹지·조경시설 ----------
6. ~ 9. (생 략)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⑥ 시설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해·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제설 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공원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5. 공원 매점 및 화장실 설치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⑦ 한강사업총괄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생태공원 재조성·유지관리
<신 설>	5.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신 설>	6.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신 설>	7.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신 설>	8. 캠핑장 및 수영장·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
<신 설>	9. 내수면 어족자원 관리
⑧ 한강전략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한강수상활성화부장----------.
<신 설>	1. 수상교통(한강버스 포함) 도입, 운영 및 활성화

1. (생 략)	5. (현행 제1호와 같음)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3. 수상교통활성화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한강 수상활성화 종합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자전거도로 개선 및 조망명소 확충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⑨ 한강여가사업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한강수상안전부장----------.
<신 설>	2.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계도·단속
<신 설>	3. 관공선관리센터 운영 및 한강수상보안관 복무관리
1. ~ 3. (생 략)	4. ~ 6.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4. 여의도 시민요트나루 운영 및 관리	<삭 제>
5. 수상이용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	<삭 제>
6. (생 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9. 긴급도강계획 수립 및 시행
7. 긴급도강계획 수립·시행 및 도강시설·장비관리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9. 수상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10. ---------- -- 허가 ---

10. (생 략)	1. (현행 제10호와 같음)
11. 자연환경 정책수립 및 생물상 조사	11. 한강 오염원 지도 단속 및 한강 수질 오염 방재
12. 생태계 조사, 복원, 보전 및 유지관리	12.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질 관리, 수상 청소에 관한 사항
13. 한강의 자연성 회복분야 사업 총괄	13. 낚시터 운영·관리 및 한강 조류·어종 관련 조사 지원
14. 캠핑장 및 수영장·물놀이장 조성에 관한 사항	<삭 제>
제86조(과의 설치) ① (생 략)	제86조(과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부에 운영총괄과, 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수질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총괄과장 및 시민활동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수질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	② ------ 운영총괄과·시민활동지원과 및 환경관리과------ ---------- ---------- ---------- ---------- ---------- 환경관리과장---------- ---------- ---------- ---------- ---------- ---------- ---------- ----------

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 ---------- ---------- ----------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한강사업총괄부에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를 두고, 한강개발기획과장 및 한강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 한강개발기획과·한강문화관광과 및 자연성회복과----------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⑥ 한강전략사업부에 서울항조성과·한강이용증진과·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서울항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강이용증진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한강수상활성화부에 수상교통사업과·수상기반시설과 및 수상공간조성과를 두고, 수상교통사업과장 및 수상공간조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상기반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한강여가사업부에 수상여가과·수상관리과·자연성회복과를 두고, 수상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자연성회복	⑦ 한강수상안전부에 수상안전과·수상운영과 및 수상관리과를 두고, 수상안전과장 및 수상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수상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으로 보한다.
제92조(하부조직) ①·② (생 략)	제92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마약관리센터·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마약관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간호부 밑에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42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 ---------- ---------- ---------- ---------- ---------- --- 간호행정과·24병동간호과·31병동간호과·41병동간호과·51병동간호과·52병동간호과 ---------- ----------.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3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단서 신설>	제93조(진료부) ① ---------- ---------- ----------. 다만, 은평병원 마약관리센터에 진료과를 둘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관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03조(관장)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	

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5조(관장) ①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5조(관장)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3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제113조(하부조직) ① ---------- 행정지원과, 도서관정책과, 독서문화진흥과 및 ----------.
②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독서문화진흥과장 ----------.
③ 지식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지원과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도서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삭 제>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⑤ 독서문화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독서문화진흥 시책 발굴 및 시행 2. 공공독서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3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3조(하부조직) ---------- -------- 경영관리부 ---------- ---------- 경영관리부장---------- ---------- ---------- ---------- ----------. ---------- ---------- ---------- ---.
제123조의2(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대공원 미래 전략 수립·관리 및 평가	<삭 제>

2. 마케팅·홍보 업무계획 수립·총괄 조정 3. 민·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4. 축제·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5.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6. 서울대공원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 총괄 7.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124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설>	제124조(경영관리부) ① 경영관리부에 총무과·기획홍보과·운영과·시설과 ---------- 총무과장·기획홍보과장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획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대공원 미래 전략 수립·관리 및 평가 2. 공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총괄

	3.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총괄 4. 마케팅·홍보 업무계획 수립·총괄 조정 5. 민·관 협력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자원봉사자 포함) 6. 축제·문화 행사 기획 운영(공원 점용 행사 허가 포함) 7. 홍보 컨텐츠 개발 및 홍보물 작성 배포(방송 매체 촬영 협조 포함) 8. 서울대공원 각종 디자인 관련 업무 총괄 9.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운영관리
③ 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④ 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광고물 설치 및 관리 업무 5.·6. (생 략) ⑤ 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④ ----------. 1. ~ 6. (현행과 같음) 7. 야구장 운영 관리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⑤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5.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⑥ ----------

장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화단조성 및 양묘포지 관리	2. 정원조성 및 수목 식재
3. 유기질비료 생산 및 관리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자연캠프장 운영관리	4. 캠핑장 ----------
6. 산림욕장 및 특용식물 재배 관리	5. 산림욕장, 숲길 조성 및 관리
7. ~ 12. (생 략)	6. ~ 11. (현행 제7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13. 자연생태 체험 및 식물교실 운영관리	12. 산림복지프로그램 운영
<신 설>	17. 산사태 및 사방시설 관리 등 임야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14. ~ 17. (생 략)	13. ~ 16. (현행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18. 공원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	<삭 제>
19. 공원관리변경계획 및 도시계획변경 총괄	<삭 제>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	제131조(하부조직) ① ---------- ----------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녹

녹지과 및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녹지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지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 ---------- ---------- ----------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및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생 략)	8.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보라매공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서서울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총괄
<신 설>	⑦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공원시설의 위탁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3. 공원시설의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4. 공원 내 병해충 방제 등 수목의 보호 5. 재산관리 및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6.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8. 공공안전관,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근로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48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협력과,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제148조(사무국) ① ------ 자치경찰운영과·자치경찰협력과·자치경찰사업지원과를 두며, 자치경찰운영과장·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② 자치경찰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자치경찰운영과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치경찰 장비, 통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운영지원	<삭 제>
<신 설>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5. ~ 8. (생 략)	4. ~ 7.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신 설>	9.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신 설>	10.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치경찰사업지원과장----------.
1.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	1. 치안·안전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발굴에 관한 사항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예산	2. 주민참여 치안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관련 부패 및 인권침해 방지, 청렴도 향상 업무	3. 특수지역경찰대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치경찰사무 감사, 감찰, 징계 관련 업무	4. 자치경찰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정책수립 및 지원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22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규제개혁 · 지하안전관리 · 재난대응 등 시정 주요사업의 실무인력 확보 및 관리운영직군의 자연감소 대응을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렬 · 직급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수요 대응 및 필요분야 인력 재배치를 위해 일반직 직렬·직급 간 조정
- 3급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3명, 7급 △5명, 8급 △5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전문경력관 다군△1명

나. 소방재난본부 화재감정연구센터 신설 관련 정원 확보 및 119안전센터 현장 인력 책임성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직급 조정
- 소방령 +1명, 소방위 +33명, 소방사 △34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1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이 규칙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총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총 계	11,730	4,781	429	1,129	5,164	227

같은 표 일반직 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4,731	420	350	4,974	225

같은 표 3급 소계란, 부이사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급 소계	26	16		1	9	
부이사관	26	16		1	9	

같은 표 4급 소계란, 서기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급 소계	270	165	19	8	71	7
서기관	105	78	8	7	9	3

같은 표 5급 소계란, 행정란, 사서란, 시설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해양수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급 소계	1,633	1,090	56	58	371	58
행정	751	550	52	26	71	52

사서	4			1	3	
시설	223	152			70	1
행정또는녹지	16	5			11	
행정또는시설	79	63			13	3
행정또는해양수산	2				2	

같은 표 6급 소계란, 행정란, 녹지란, 의료기술란, 환경란, 시설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행정또는녹지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녹지또는시설란, 통신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행정・공업또는시설란 아래 행정・녹지또는시설란을 신설하며, 농림운영란 아래 사육운영란을 삭제한다.

6급 소계	3,737	1,966	177	105	1,390	99
행정	1,434	889	147	44	285	69
녹지	79	41			38	
의료기술	48	2		3	43	
환경	49	31		12	6	
시설	617	353	3	2	240	19
위생	7			1	6	
시설관리	29	3			26	
행정또는녹지	9	5			4	

행정또는사회복지	16	14	1			1
행정・공업또는시설	82	73			8	1
행정・녹지또는시설	8				8	
녹지또는시설	2				2	
통신운영	7	3		1	3	

같은 표 7급 소계란, 사서란, 해양수산란, 시설란, 방재안전란, 방송통신란, 조리란, 행정또는공업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방송통신란, 행정・공업또는시설란, 행정・간호또는보건란, 행정・공업・시설・전산란, 공업또는환경연구사란, 방재안전또는공업란, 전기운영란, 기계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급 소계	3,284	1,314	122	131	1,660	57
사서	21	1	1	7	12	
해양수산	7				7	
시설	548	236	3	5	296	8
방재안전	2	1			1	
방송통신	61	34	3	4	20	
조리	2	2				
행정또는공업	10	2		1	7	
행정또는시설	39	34			3	2
행정또는방송통신	1	1				

행정・공업또는시설	42	39		1	2	
행정・간호또는보건	2				2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방재안전또는공업	2				2	
전기운영	32	1			31	
기계운영	52	2	1	1	48	

같은 표 8급 소계란, 행정란, 사회복지란, 사서란, 방호란, 공업란, 식품위생란, 위생란, 시설관리란, 운전란, 행정또는시설란, 행정또는사회복지란, 농림운영란, 사무운영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전기운영란 아래 기계운영란을 삭제한다.

8급 소계	1,064	120	38	42	863	1
행정	94	13	7	8	66	
사회복지	10	1			9	
사서	5			2	3	
방호	79	24	6	3	46	
공업	99	4	2	4	89	
식품위생	2				2	
위생	6	3			3	

시설관리	226			2	224	
운전	77	10	3	11	53	
행정또는시설	13	3			10	
행정또는사회복지	2				2	
농림운영	4				4	
사무운영	101	39	13	4	44	1

같은 표 9급 소계란, 행정란, 공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급 소계	487	3	3	2	479	
행정	14		1		13	
공업	51				51	

같은 표 전문경력관 소계란, 나군 소계란, 나군 소계란 아래 통계자료관리요원란,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민방공경보통제요원란 아래 특수교사란을 삭제하며, 다군 소계란, 다군 소계란 아래 동물사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경력관 소계	161	27	4	2	128	
나군 소계	67	23	4	2	38	
통계자료관리요원	3	2			1	
동물사육	20				20	
다군 소계	90				90	

동물사육	44				44	

별표 2의 소방공무원 계란, 소방령란, 소방위란, 소방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공무원 계	7,434	166		7,268		
소방령	202	30		172		
소방위	548	38		510		
소방사	3,582	26		3,556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1,730	4,766	429	1,134	5,174	227
(생략)						
일반직 계	10,700	4,716	420	355	4,984	225
(생략)						
3급 소계	25	15		1	9	
부이사관	25	15		1	9	
(생략)						
4급 소계	269	164	19	8	71	7
서기관	104	77	8	7	9	3
(생략)						
5급 소계	1,626	1,085	56	58	369	58
행정	751	548	52	26	73	52
(생략)						
사서	3			1	2	
(생략)						
시설	221	150			70	1
(생략)						
행정또는녹지	15	5			10	
(생략)						
행정또는시설	77	62			12	3
(생략)						
행정또는해양수산	1				1	
(생략)						
6급 소계	3,734	1,958	177	106	1,394	99
행정	1,439	887	147	44	292	69
(생략)						
녹지	76	40			36	
(생략)						
의료기술	47	2		3	42	
(생략)						

개 정 안

[별표 1]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직급별·직렬별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총 계	11,730	4,781	429	1,129	5,164	227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700	4,731	420	350	4,974	225
(현행과 같음)						
3급 소계	26	16		1	9	
부이사관	26	16		1	9	
(현행과 같음)						
4급 소계	270	165	19	8	71	7
서기관	105	78	8	7	9	3
(현행과 같음)						
5급 소계	1,633	1,090	56	58	371	58
행정	751	550	52	26	71	52
(현행과 같음)						
사서	4			1	3	
(현행과 같음)						
시설	223	152			70	1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16	5			11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시설	79	63			13	3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해양수산	2				2	
(현행과 같음)						
6급 소계	3,737	1,966	177	105	1,390	99
행정	1,434	889	147	44	285	69
(현행과 같음)						
녹지	79	41			38	
(현행과 같음)						
의료기술	48	2		3	43	
(현행과 같음)						

현 행						
환경	49	30		12	7	
시설	612	350	3	2	238	19
(생략)						
위생	8			1	7	
(생략)						
시설관리	30	3			27	
(생략)						
행정또는녹지	12	5			7	
(생략)						
행정또는사회복지	15	13	1			1
(생략)						
행정·공업또는시설	83	73		1	8	1
<신 설>						
(생략)						
녹지또는시설	3				3	
(생략)						
통신운영	8	3		1	4	
(생략)						
농림운영	3				3	
사육운영	2				2	
(생략)						
7급 소계	3,289	1,310	122	131	1,669	57
(생략)						
사서	22	1	1	7	13	
(생략)						
해양수산	6				6	
(생략)						
시설	546	233	3	5	297	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60	34	3	4	19	
(생략)						
조리	1	1				
(생략)						
행정또는공업	9	2		1	6	
행정또는시설	40	34			4	2
행정또는방송통신	2	2				
(생략)						

개 정 안						
환경	49	31		12	6	
시설	617	353	3	2	240	19
(현행과 같음)						
위생	7			1	6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9	3			26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녹지	9	5			4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사회복지	16	14	1			1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또는시설	82	73			8	1
행정·녹지또는시설	8				8	
(현행과 같음)						
녹지또는시설	2				2	
(현행과 같음)						
통신운영	7	3		1	3	
(현행과 같음)						
농림운영	(현행과 같음)					
<삭 제>						
(현행과 같음)						
7급 소계	3,284	1,314	122	131	1,660	57
(현행과 같음)						
사서	21	1	1	7	12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	7				7	
(현행과 같음)						
시설	548	236	3	5	296	8
방재안전	2	1			1	
방송통신	61	34	3	4	20	
(현행과 같음)						
조리	2	2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공업	10	2		1	7	
행정또는시설	39	34			3	2
행정또는방송통신	1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행정·공업또는시설	42	38		2	2		행정·공업또는시설	42	39		1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간호또는보건	3				3		행정·간호또는보건	2				2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공업·시설·전산	13	11			2		행정·공업·시설·전산	11	11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공업또는환경연구사	1			1		
(생략)							(현행과 같음)						
방재안전또는공업	1				1		방재안전또는공업	2				2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37	1			36		전기운영	32	1			31	
기계운영	54	2	1	1	50		기계운영	52	2	1	1	48	
(생략)							(현행과 같음)						
8급 소계	1,069	123	38	46	861	1	8급 소계	1,064	120	38	42	863	1
행정	95	13	7	10	65		행정	94	13	7	8	66	
사회복지	10				10		사회복지	10	1			9	
사서	6			2	4		사서	5			2	3	
(생략)							(현행과 같음)						
방호	81	24	6	3	48		방호	79	24	6	3	46	
공업	98	4	2	4	88		공업	99	4	2	4	89	
(생략)							(현행과 같음)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2				2	
(생략)							(현행과 같음)						
위생	5	2			3		위생	6	3			3	
(생략)							(현행과 같음)						
시설관리	215			2	213		시설관리	226			2	224	
운전	84	13	3	11	57		운전	77	10	3	11	53	
행정또는시설	14	4			10		행정또는시설	13	3			10	
(생략)							(현행과 같음)						
행정또는사회복지	3				3		행정또는사회복지	2				2	
(생략)							(현행과 같음)						
전기운영	9	1			8		전기운영	(현행과 같음)					
기계운영	2				2		<삭 제>						
농림운영	5			1	4		농림운영	4				4	
사무운영	104	40	13	5	45	1	사무운영	101	39	13	4	44	1
9급 소계	489	3	3	2	481		9급 소계	487	3	3	2	479	

현 행							개 정 안						
행정	15		1		14		행정	14		1		13	
(생략)							(현행과 같음)						
공업	52				52		공업	51				51	
(생략)							(현행과 같음)						
전문경력관 소계	161	28	4	2	127		전문경력관 소계	161	27	4	2	128	
(생략)							(현행과 같음)						
나군 소계	66	24	4	2	36		나군 소계	67	23	4	2	38	
(생략)							(현행과 같음)						
통계자료관리요원	4	3			1		통계자료관리요원	3	2			1	
(생략)							(현행과 같음)						
민방공경보통제요원	1	1					민방공경보통제요원	(현행과 같음)					
특수교사	1				1		<삭 제>						
(생략)							(현행과 같음)						
동물사육	17				17		동물사육	20				20	
(생략)							(현행과 같음)						
다군 소계	91				91		다군 소계	90				90	
(생략)							(현행과 같음)						
동물사육	45				45		동물사육	44				44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64		7,270		
(생략)						
소방령	201	29		172		
(생략)						
소방위	515	38		477		
(생략)						
소방사	3,616	25		3,591		

[별표 2] 서울특별시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소방공무원 계	7,434	166		7,268		
(현행과 같음)						
소방령	202	30		172		
(현행과 같음)						
소방위	548	38		510		
(현행과 같음)						
소방사	3,582	26		3,556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2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설치 및 서울시립대학교 우수교원 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정원 변동없이 시의회사무처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교육공무원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상계 조정
- 일반직 5급 이하 정원 △12명
- 의회사무처 3급 정원 +1명, 직속기관 교수 등 정원 +1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syg1108@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10,520명”을 “10,50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554명”을 “565명”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별표4”를 “별표 4”로 한다.

별표 4의 일반직 계란, 3급란, 5급 이하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689					
3급	27	16	1	1	9	
5급 이하 소계	10,193					

같은 표 교육공무원 계란, 교수 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공무원 계	565					
교수 등	487			4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19,17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부터 제7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제외한다): 10,520명	1. ---------- ---------- --------: 10,509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서울시립대학교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54명	3. ---------- --------: 565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조(직급별 정원) 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4와 같다. 다만, 본청과 사업소간에 1급 일반직 임명에 따른 3급이상 일반직 정원은 관리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직급별 정원) ① ------- ---------- ---------- --------- 별표 4------. - ---------- ---------- ----------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4]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4] ---------- ---------- ----------

현 행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생략)						
일반직 계	10,700					
(생략)						
3급	26	16		1	9	
(생략)						
5급 이하 소계	10,205					
(생략)						
교육공무원 계	554					
(생략)						
교수 등	476			476		
(생략)						

개 정 안

구 분	계	본 청	의회 사무처	직속 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11,730					
(현행과 같음)						
일반직 계	10,689					
(현행과 같음)						
3급	27	16	1	1	9	
(현행과 같음)						
5급 이하 소계	10,193					
(현행과 같음)						
교육공무원 계	565					
(생략)						
교수 등	487			487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시의회 국장급 기구 정원 및 서울시립대 교수 정원의 확보를 위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직급 간 정원을 조정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5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향후 5년 소요인건비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인력운영비	-32,191	-66,313	-68,303	-70,352	-72,463	-309,622
	○ 기타 운영비	206,714	413,428	413,428	413,428	413,428	1,860,426
	소계(a)						
수입	○						
	소계(b)						
□총 비용(a-b)		174,523	347,115	345,125	343,076	340,965	1,550,804

※ **인력운영비**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0%**(' 25년 기준) 적용 추계

※ 1차년도는 시행일 2025년 7월(6개월)을 기준으로 추계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2,137	-6,205	-8,195	-10,244	-12,355	-39,136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176,660	353,320	353,320	353,320	353,320	1,589,940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합계	174,523	347,115	345,125	343,076	340,965	1,550,804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심연수 주무관(02-2133-6729)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정원 변동내역 : 총정원 변동없음

ㅇ 일반직(관리운영직 외) △3

- 3급 +1, 6급 △4

※ 6급 직렬 : 시설관리직

ㅇ 관리운영직 △8

- 7급 △4, 8급 △4

ㅇ 교 원 +11

- 조교수 +11

2. 비용소요 추계(1차년도 12개월 기준) : 349,046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합 계	349,046	◈ 총 계 : 349,046 [인력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64,382 ▹ 일반직 3급(+1) : 118,172 × 1명 = 118,172 ▹ 일반직 6급(△4) : 81,153 × △4명 = -324,612 ▹ 관리운영직 7급(△4) : 78,952 × △4명 = -315,808 ▹ 관리운영직 8급(△4) : 69,778 × △4명 = -279,112

구 분	소요비용	세 부 내 역
		▹ 교원 조교수(+11) : 66,998 × 11명 = 736,978 ※ 인력운영비 : 기본급, 수당 등 포함 [기타 운영비 1차년도 12월 기준 계] : 413,428 ▹ 3급(+1) : 14,700 × 1명 = 14,700 ▹ 교원 조교수(+11) : 36,248× 11명 = 398,728 ※ 가타 운영비 : 업무추진비, 직책급,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연구보조비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62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시의회사무처 3급 직위인 의정국장을 신설하여 사무처 통솔범위 완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의정국장 직위 신설(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이메일·등기우편·온라인
(1) E-mail : ysk5881@seoul.go.kr
(2) 전 화 : (02) 2133 - 6632
(3)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기획담당관
(4)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를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 관리, 청사 관리·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중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를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사무처)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제2조(사무처) ① ---------- ----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두고, 사무처 밑에 의정국을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 사무처장과 의정국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의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및 의사일정 수립·조정,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의회 언론보도 및 홍보,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의회보 발행 등에 관한 사항 3. 의원의 의정활동지원, 외교활동 등 교류 협력 지원, 의회의 예산·결산, 계약·회계·물품·재산관리, 청사 관리 · 경비, 교섭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의안의 발굴·조사 연구 및 입안·검토,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

	리 및 입법·법률고문 운용, 법령·제도개선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5.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등 분석, 의안의 비용추계, 주요사업 분석·평가, 공청회·토론회 개최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인사행정, 보수, 성과평가, 교육훈련, 인력개발,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7. 의회 민원처리 업무계획 수립, 민원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제도개선 등 기타 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규칙)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3호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신길음구역) 변경(경미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63호(2002.06.27.)로 미아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79호(2006.03.09.)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호(2007.06.07.) 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성북구고시 제2012-104호(2012.7.19.)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성북구고시 제2013-18호(2013.02.07.) 신길음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6.11.)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16호(2016.0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97호(2016.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7(2018.0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0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01호(2019.03.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506호(2020.12.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0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1호(2021.09.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9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11호(2022.03.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8호(2022.12.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10호(2024.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0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18호(2024.08.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50호(2024.1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21호(2024.12.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나.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변경없음)

다.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479,127.9	-	479,127.9	100.0	
상업 · 주거	158,244.8	-	158,244.8	33.0	
업무 · 주거	7,210.4	-	7,210.4	1.5	
근린생활시설	2,911.3	-	2,911.3	0.6	
일반상업	31,438.5	-	31,438.5	6.6	
상업 · 업무	6,260.4	-	6,260.4	1.3	
상업 · 문화	34,164.2	-	34,164.2	7.2	
업무	22,584.2	-	22,584.2	4.7	
종교시설	1,598.6	-	1,598.6	0.3	
공원	5,696.1	-	5,696.1	1.2	
광장	587.0	-	587.0	0.1	
공공공지	232.0	-	232.0	0.1	
공공청사	553.6	-	553.6	0.1	
전기공급설비	(2,496.0)	-	(2,496.0)	-	
도시철도	(17,810.6)	-	(17,810.6)	-	
주차장	(3,999.7)	-	(3,999.7)	-	신월곡1구역 공원 (하월곡동 104-88)과 중복결정
도로	207,646.8	-	207,646.8	43.3	

※ ( )는 면적에 미포함
※ 도시철도는 도로와 중복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공공청사 기정 면적 오기 정정 (554.0㎡ → 553.6㎡)

2) 인구 · 주택 수용계획 : 5,540호 / 15,514인(변경)

구 분			계획세대(호)	인구수(인)	비고
합 계		기정	5,539	15,511	
		변경	5,540	15,514	
촉진구역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기정	877	2,456	2.8인/세대
		변경	878	2,459	2.8인/세대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410	1,148	2.8인/세대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기정	2,206	6,177	2.8인/세대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기정	436	1,221	2.8인/세대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기정	922	2,582	2.8인/세대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88	1,927	2.8인/세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오기 정정 (세대수 : 855 → 877, 인구수 : 2,394 → 2,456)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5) 재정비촉진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6)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없음)

7) 건폐율 ·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8)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명	계획세대수(세대수)	분양주택(세대)	임대주택(세대)	비고
기정	총계	5,539	4,456	1,083	-
변경		5,540	4,457	1,083	-
기정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877	669	208	-
변경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878	670	208	-
기정	신길음1재정비촉진구역	410	298	112	-
기정	신월곡1재정비촉진구역	2,206	2,009	197	-
기정	신월곡2재정비촉진구역	436	398	38	-
기정	강북3재정비촉진구역	922	692	230	-
기정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688	390	298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기정 오기 정정 (세대수 : 855 → 877, 분양주택 : 650 → 669, 임대주택 : 205 → 208)

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신길음1구역 정비계획 : 변경없음

(나) 신월곡1구역 정비계획 : 변경없음

(다) 신월곡2구역 정비계획 : 변경없음

(라) 강북3구역 정비계획 : 변경없음

(마) 강북5구역 정비계획 : 변경없음

(바) 신길음구역 정비계획 :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2) 토지 등 소유자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변경)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추정 지분율
(변경
없음)</td><td>
■ 추정지분율 산정방식
분양대상자투자금액(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 +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비용부담액)
총사업비(분양예정 대지평가액 + 신축건물시설 평가액)
■ 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
= (분양예정 대지평가액-대지조성비-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비율
■ 추정지분율(A/B = 1)
<table>
<tr><td rowspan="4">분양대상자 투자금액
(A)</td><td>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td><td>2,082억원</td></tr>
<tr><td>분양예정 대지평가차액</td><td>1,016억원</td></tr>
<tr><td>비용부담액</td><td>6,248억원</td></tr>
<tr><td>계</td><td>9,346억원</td></tr>
<tr><td rowspan="3">총 사업비 (B)</td><td>분양예정 대지평가액</td><td>4,206억원</td></tr>
<tr><td>신축건물 시설평가액</td><td>5,140억원</td></tr>
<tr><td>계</td><td>9,346억원</td></tr>
</table>
■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 비율
= 분양대상자별 종전토지, 건물평가액 /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액 총합계
</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변경
없음)</td><td>
■ 종전토지 및 건물자산 추정액 : 208,205,296천원
※ 종전자산가액은 국공유지매입 추정액은 제외한 금액임.
종전자산가액은 인근지역 내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추이 및 개별종전자산의 위치 및 이용상황 등의 가격형성요인과 유사 평가사례,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추정하였음.
</td></tr>
</table>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변경
없음)</td><td>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X 지분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a)</th><th>추정 권리가액(b)</th><th>추정분담금(a-b)</th></tr>
<tr><td>39㎡형</td><td>6.3억원</td><td rowspan="16">총사업비 X 추정지분율</td><td rowspan="16">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
(+:부담 / -:환급)</td></tr>
<tr><td>59㎡A형</td><td>10.0억원</td></tr>
<tr><td>59㎡B형</td><td>9.9억원</td></tr>
<tr><td>59㎡B-1형</td><td>10.0억원</td></tr>
<tr><td>59㎡C형</td><td>9.9억원</td></tr>
<tr><td>59㎡C-1형</td><td>9.9억원</td></tr>
<tr><td>74㎡A형</td><td>12.1억원</td></tr>
<tr><td>74㎡A-1형</td><td>12.1억원</td></tr>
<tr><td>74㎡B형</td><td>12.0억원</td></tr>
<tr><td>74㎡C형</td><td>12.1억원</td></tr>
<tr><td>84㎡A형</td><td>13.5억원</td></tr>
<tr><td>84㎡B형</td><td>13.4억원</td></tr>
<tr><td>상가 1층 전유100㎡형
(평균단가기준)</td><td>21.3억원</td></tr>
<tr><td>상가 지하1층 전유100㎡형
(평균단가기준)</td><td>24.4억원</td></tr>
<tr><td>상가 지하2층 전유100㎡형
(평균단가기준)</td><td>11.2억원</td></tr>
</table>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은 향후 설계, 총사업비, 시장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분양가격, 및 권리가액, 추정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td></tr>
</table>

※ 본 추산액 및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향후 관리처분계획인가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자산 감정평가, 인허가 진행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추산액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서울시 도심재개발행정실무(2000년 10월)의 지분율 산정식을 적용하였으며, 향후 종전 감정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내 용

유형별 추정 분담금 추산액 (신설)

유형분류		대지+건물	대지	공동주택	건물
권리가액 평균액 / 분양가 추정액		15.2억	7.9억	3.9억	0.16억
39㎡형	6.3억원	-8.9억	-1.6억	2.4억	6.1억
59㎡A형	10.0억원	-5.2억	2.0억	6.1억	9.8억
59㎡B형	9.9억원	-5.3억	1.9억	6.0억	9.7억
59㎡B-1형	10.0억원	-5.2억	2.0억	6.1억	9.8억
59㎡C형	9.9억원	-5.3억	1.9억	6.0억	9.7억
59㎡C-1형	9.9억원	-5.3억	1.9억	6.0억	9.7억
74㎡A형	12.1억원	-3.1억	4.1억	8.2억	11.9억
74㎡A-1형	12.1억원	-3.1억	4.1억	8.2억	11.9억
74㎡B형	12.0억원	-3.2억	4.0억	8.1억	11.8억
74㎡C형	12.1억원	-3.1억	4.1억	8.2억	11.9억
84㎡A형	13.5억원	-1.7억	5.5억	9.6억	13.3억
84㎡B형	13.4억원	-1.8억	5.4억	9.5억	13.2억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추정 권리가액(+:부담/-:환급)
※ 향후 설계, 인허가, 총사업비, 시장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분양가격, 및 권리가액, 추정분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명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계		28,499.8	-	28,499.8	100.0	
정비기반시설 등	소계	8,461.8	-	8,461.8	29.7	
	도로	7,908.2	-	7,908.2	27.8	
	공공청사	553.6	-	553.6	1.9	스타트업지원센터, 치안센터
택지(획지)	소계	20,038.0	-	20,038.0	70.3	
	택지1	19,019.2	-	19,019.2	66.7	주거복합용지
	택지4	1,018.8	-	1,018.8	3.6	종교용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공공청사 기정 면적 오기 정정 (554.0㎡ → 553.6㎡)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③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	공공청사	공공청사	길음동 1083일대	553.6	-	553.6	-	성북구,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 공공청사의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내용에 대하여 결정도서에 합의서 첨부

※ 합의서 내용 중 공공시설 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상 대지지분(성북구 421.1㎡, 경찰청(서울시경찰청) 132.9㎡)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 산출기준 및 검증, 건축계획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공공청사 기정 면적 오기 정정 (554.0㎡ → 553.6㎡)

■ 건축물의 범위

구분	용도	건폐율	용적률	규모
기정	공공청사(스타트업 지원센터, 노동권익센터, 푸드뱅크마켓, 치안센터)	50% 이하	250% 이하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1,468.8㎡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없음)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신길음구역	28,499.8	택지1	19,019.2	길음동 524-87일대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60% 이하	500% 이하	120m 이하	주거 90%이하
			택지4	1,018.8	길음동 1083일대	종교시설	50% 이하	250% 이하	35m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분		기정					변경				
		합계	분양	임대			합계	분양	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기부채납임대			재개발임대	공공임대	기부채납임대
합 계		877	669	105	100	3	878	670	105	100	3
60㎡이하	40㎡이하	65	31	34	-	-	65	31	34	-	-
	40㎡~50㎡	-	-	-	-	-	-	-	-	-	-
	50㎡~60㎡	281	156	65	60	-	281	156	65	60	-
60㎡~85㎡		531	482	6	40	3	532	483	6	40	3
85㎡이상		-	-	-	-	-	-	-	-	-	-

- 전용면적 85㎡ 이하 : 세대수 x 60%이상(전용면적 60㎡이하 전체세대수 x 20%이상)
- 임대주택
  - 전체세대수의 15% 또는 전체연면적의 10%이상
  - 40㎡ 이하 :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 이상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동소문로 : 5m 삼양로, 이면도로 : 3m
지정용도	•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동시설 • 본 계획상 지정용도는 모두 도입되어야 함 • 지정용도 중 주용도(연면적이 가장 큰 용도)를 설정되어야 함
불허용도	• 용도지역지구에 불허하는 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 공장 • 창고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비 고	-

※ 주거비율은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을 따름

※ 신길음구역 건축계획 반영에 따른 경미한 변경

• 용적률 계획(기정)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td><td>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
환산부지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면적</td><td>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28,499.8㎡</td><td>20,038.0㎡</td><td>8,461.8㎡</td><td>105.90㎡</td><td>569.94㎡</td><td>3,528.2㎡</td><td>1,148.1㎡</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4,461.34㎡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환산부지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8,461.8㎡ − 3,528.2㎡ − 1,148.1㎡ + 105.90㎡ + 569.94㎡ = 4,461.34㎡</td></tr>
<tr><td>기반시설 부담률</td><td colspan="7">• 기반시설 부담률 : (4,461.34㎡ ÷ 28,499.8㎡) × 100%
= 15.65%(구역면적 대비)</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3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50%) = 300% + 50% = 350%
• 인센티브 = 50% [친환경 개발(50%), 보행가로활성화(50%)]</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1.11.25)」 적용

• 상한용적률 : 400%
•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 부지 평균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50% × (1 + 1.3 × 0.9245 × 0.1942 + 0.7 × 0.0284) = 438.65%
· α토지 : 3,891.40㎡ ÷ 20,038.0㎡ = 0.1942
· α현금·건축물 : 569.94㎡ ÷ 20,038.0㎡ = 0.0284
· 가중치 : (((1,219.6㎡ × 250%)+(2,699.6㎡ × 350%)) / 3,919.2㎡)
÷ (((1,018.8㎡ × 250%)+(19,019.2㎡ × 350%)) / 20,038.0㎡)
= 318.88% / 344.92%
= 0.9245</td></tr>
<tr><td rowspan="2">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증가용적률의 1/2이상 임대주택공급)</td></tr>
<tr><td colspan="7">• 법적상한용적률 = 500% 이하</td></tr>
</table>

• 용적률 계획(변경)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 정 내 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계
(구역면적)</td><td>획지</td><td>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
환산부지면적</td><td>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환산부지면적</td><td>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td><td>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td></tr>
<tr><td>28,499.8㎡</td><td>20,038.0㎡</td><td>8,461.8㎡</td><td>71.77㎡</td><td>572.40㎡</td><td>3,528.2㎡</td><td>1,148.1㎡</td></tr>
<tr><td>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 4,429.67㎡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면적
- 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
(토지)환산부지면적 + 기부채납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8,461.8㎡ − 3,528.2㎡ − 1,148.1㎡ + 71.77㎡ + 572.40㎡ = 4,429.67㎡</td></tr>
<tr><td>기반시설 부담률</td><td colspan="7">• 기반시설 부담률 : (4,429.67㎡ ÷ 28,499.8㎡) × 100%
= 15.54%(구역면적 대비)</td></tr>
<tr><td>기준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300%</td></tr>
<tr><td>허용용적률</td><td colspan="7">•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최대50%) = 300% + 50% = 350%
• 인센티브 = 50% [친환경 개발(50%), 보행가로활성화(50%)]</td></tr>
<tr><td>상한용적률</td><td colspan="7">•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 개정(2021.11.25)」 적용

• 상한용적률 : 400%
•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 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현금·건축물)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 부지 평균 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현금·건축물 : 공공시설부지(토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현금 및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350% × (1 + 1.3 × 0.9237 × 0.1924 + 0.7 × 0.0285) = 437.85%
· α토지 : 3,857.27㎡ ÷ 20,038.0㎡ = 0.1924
· α현금·건축물 : 572.40㎡ ÷ 20,038.0㎡ = 0.0285
· 가중치 : (((1,219.6㎡ × 250%)+(2,665.5㎡ × 350%)) / 3,885.1㎡)
÷ (((1,018.8㎡ × 250%)+(19,019.2㎡ × 350%)) / 20,038.0㎡)
= 318.60% / 344.92%
= 0.9237</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증가용적률의 1/2이상 임대주택공급)

• 법적상한용적률 = 500% 이하</td></tr>
</table>

※ 신길음구역 건축계획 반영에 따른 경미한 변경

(6)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변경예상 세대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	공공용지 부담비율
기정	관리 처분계획	-	토지등소유자	증)464세대	해당사업없음	순부담율 15.6%이상
변경	관리 처분계획	-	토지등소유자	증)465세대	해당사업없음	순부담율 15.5%이상

(7)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8)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세대)	세대규모 (전용, ㎡)	비고
기정	신길음 구역	19,019.2	5	29,446.30	• 208	• 39.97 • 59.93 • 59.59 • 59.78 • 59.65 • 59.55 • 74.68 • 74.40 • 74.84 • 84.91 • 84.63	공공임대 포함
변경	신길음구역	19,019.2	5	30,026.59	• 208	• 39.96 • 59.92 • 59.59 • 59.64 • 59.94 • 59.86 • 74.68 • 74.40 • 74.83 • 84.84 • 84.63	공공임대 포함

※ 신길음구역 건축계획 반영에 따른 경미한 변경

(9)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법정기준		계획면적			비고
		기준근거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복리 시설	경로당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500~1,000세대 미만의 경우, 225㎡ 이상	225	234.63	증) 10.18	244.81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500~1,000세대 미만의 경우, 330㎡ 이상	330	367.39	증) 1.02	368.41	
	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전용면적이 최소 66㎡ 이상일 것	66	144.76	증) 0.26	145.02	
	기타 주민공동시설	-	-	807.94	감) 38.9	769.04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8조의4 - 500~1,000세대 미만의 경우, 158㎡ 이상	158	198.72	감) 0.15	198.57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가이드라인」 - 300~1,000세대 미만의 경우, 200㎡에 세대당 1㎡를 더한 면적	1,078	1,083.30	-	1,083.30	
	주민 운동시설	-	-	301.63	감) 51.24	250.39	
부대 시설	관리사무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10㎡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를 더한 면적	51.4	67.40	증) 5.64	73.04	

※ 신길음구역 건축계획 반영에 따른 경미한 변경

(10) 환경관리계획(변경없음)

(1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③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②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4) 경관계획(배치·형태 포함)(변경없음)
(5)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변경)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기정)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비율(%)			비고
			계	임대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임대주택중 공공임대	
합계	877	100.0	208	105	100	3	23.8	100.0	48.1	-
40㎡이하	65	7.4	34	34	-	-	3.9	16.3	-	
40~50㎡이하	-	-	-	-	-	-	-	-	-	
50~60㎡이하	281	32.0	125	65	60	-	14.3	60.1	28.9	
60~85㎡이하	531	60.6	49	6	40	3	5.6	23.6	19.2	
85㎡초과	-	-	-	-	-	-	-	-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임대주택 세대수				임대주택 비율(%)			비고
			계	임대	공공임대	기부채납 공공임대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임대주택중 공공임대	
합계	878	100.0	208	105	100	3	23.7	100.0	48.1	-
40㎡이하	65	7.4	34	34	-	-	3.9	16.3	-	
40~50㎡이하	-	-	-	-	-	-	-	-	-	
50~60㎡이하	281	32.0	125	65	60	-	14.2	60.1	28.9	
60~85㎡이하	532	60.6	49	6	40	3	5.6	23.6	19.2	
85㎡초과	-	-	-	-	-	-	-	-	-	

주) 공개추첨방식 : 분양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추첨방식 적용 예정
주) 임대주택 105세대에는 주거비율완화에 따른 의무 임대주택비율(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및 정비사업 의무 임대주택비율(서울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이 포함되었으며, 인수자(서울시 임대주택과)와 인수방법 등을 사전 협의 후 처리
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상한용적률에서 완화받는 증가용적률의 50%이상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의 토지는 기부채납, 건축물은 표준건축비로 매입
※ 재정비촉진지구 건축물 용도에 관한 운영기준 개선(`22.1.26)에 따라 임대주택 도입 시 주거비율 90% 이하 적용
※ 신길음구역 건축계획 반영에 따른 경미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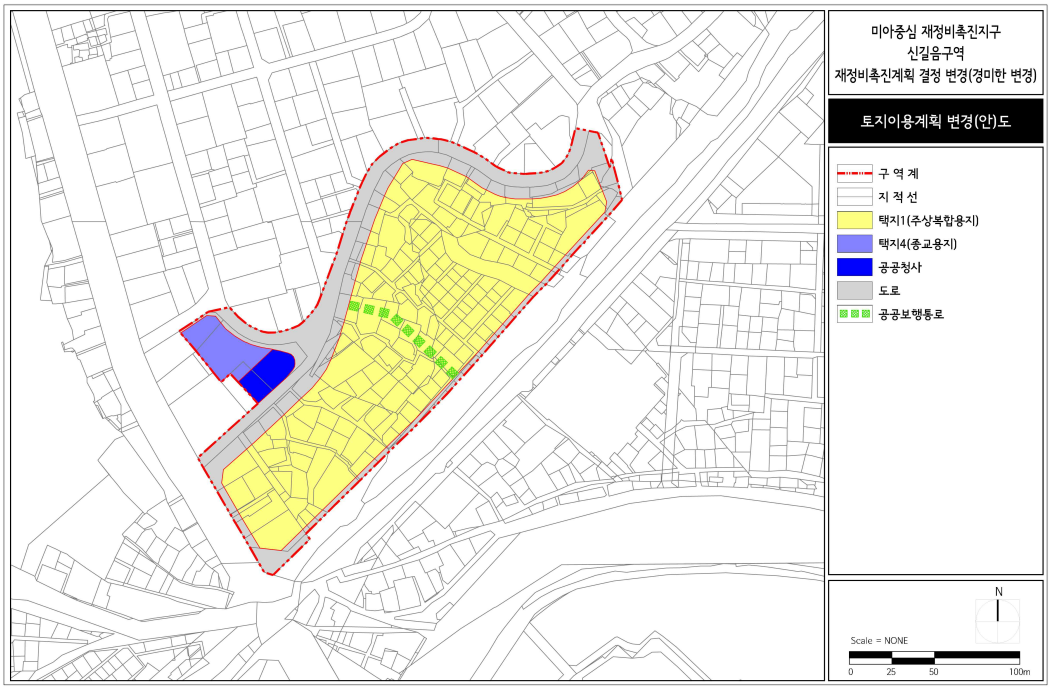
라.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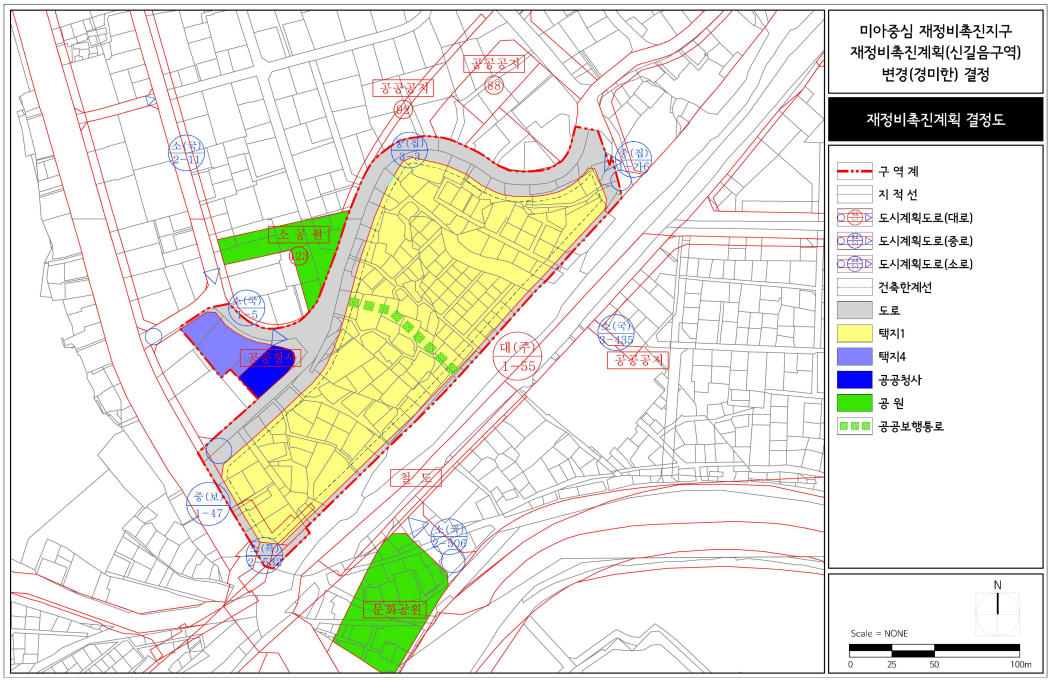
마.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02-2133-7226) 및 성북구 주거정비과(☎02-2241-2856)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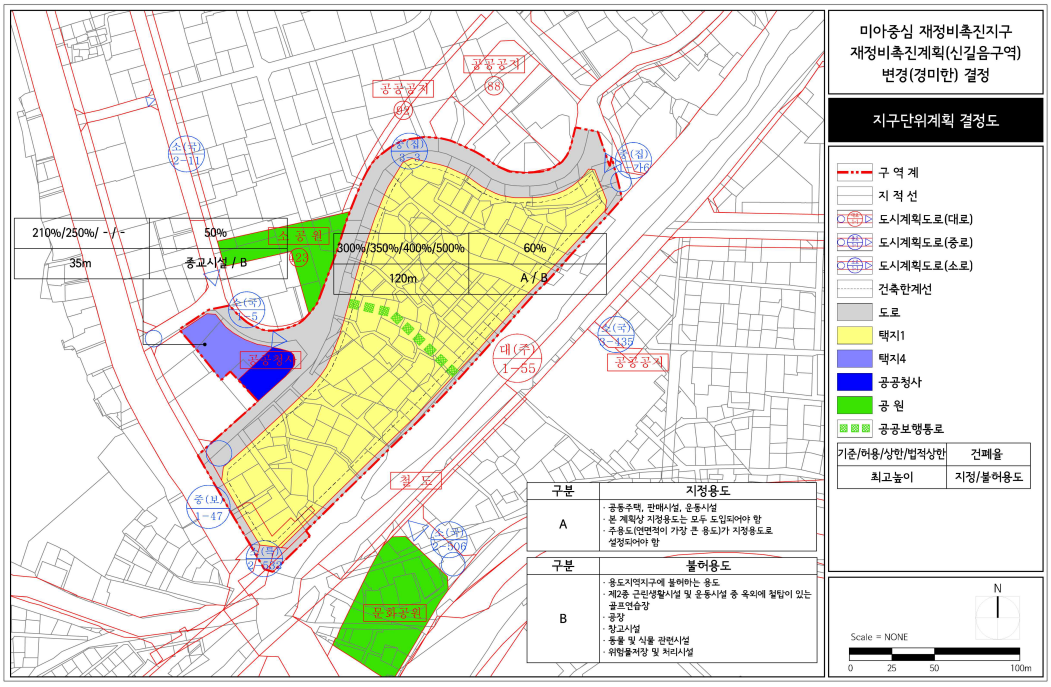
[신길음구역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없음)]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신길음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4호

서울특별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제8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수탁기관

위탁할 업무의 내용	수 탁 기 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2. 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 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김종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2. 행정사항

가.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고, 건설엔지니어링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半期) 말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5호

도시관리계획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6호(2015.4.30.)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80호(2018.6.14.)로 변경 결정 고시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제18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4.12.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미공병단부지 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이 결정되어, 감염병 및 중앙외상센터 기능을 가진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 미공병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669,072	-	669,072	서울시 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총계		669,072	-	669,072	100.0	-
상업지역	소계	669,072	-	669,072	100.0	
	일반상업지역	669,072	-	669,072	100.0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방화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4호(2024.10.24.)에 따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화지구 일괄 폐지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2	24,812 (12,274)	162,352.36	11	8,939 (1,806)	44,116.15	9	6,200 (1,871)	33,246.45	12	9,671 (8,595)	84,989.76
광로	2	2,200 (1,123)	38,726.41	-	-	-	-	-	-	2	2,200 (1,123)	38,726.41
대로	6	9,675 (2,091)	56,049.13	1	3,500 (245)	9,657.63	3	5,325 (996)	25,000.89	2	850	21,390.61
중로	8	10,545 (6,667)	48,703.87	4	4,734 (855)	26,908.21	1	231	3,718.86	3	5,580	18,191.39
소로	16	2,329	18,220.75	6	644	6,898.11	5	643	4,641.29	5	1,041	6,681.35

주1)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의 면적임

■ 도로 총괄표(변경)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31	24,581 (12,043)	159,043.20	11	8,939 (1,806)	44,386.85	8	5,968 (1,639)	29,666.59	12	9,671 (8,595)	84,989.76
광로	2	2,200 (1,123)	38,726.41	-	-	-	-	-	-	2	2,200 (1,123)	38,726.41
대로	6	9,675 (2,091)	56,049.13	1	3,500 (245)	9,657.63	3	5,325 (996)	25,000.89	2	850	21,390.61
중로	7	10,314 (6,436)	45,255.81	4	4,734 (855)	27,178.91	-	-	-	3	5,580	18,191.39
소로	16	2,329 (2,329)	18,359.65	6	644	6,898.11	5	643	4,780.19	5	1,041	6,681.35

주1)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의 면적임
주2) 금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 2-513) 폐지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56	주간선 도로	750 (625)	광희동 광장	동대문 광장	일반 도로	내무고시 제23호 (1952.3.25.)	장충단로
기정	광로	3	10	40	주간선 도로	1,450 (498)	종로5가	장충동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
기정	대로	1	4	35-38	간선 도로	3,500 (245)	서울역 앞	신당동 제4호 광장	일반 도로	내무고시 제23호 (1952.3.25.)	퇴계로
기정	대로	2	-	30-40	주간선 도로	3,305 (517)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행당광장	일반 도로	서고 제270호 (2009.7.9.)	왕십리길 일부
기정	대로	2	10	30	보조 간선도로	220	을지로6가광장	신당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대로	2	3	30	보조 간선도로	1,800 (478)	시청앞광장	을지로6가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12.26.)	을지로 일부
기정	대로	3	227	27-36	보조 간선도로	454	흥인동 113-1	흥인동 162-1 (중3-1)	일반 도로	-	-
기정	대로	3	210	25-28	보조 간선도로	395	을지로7가 4-1	중구 신당동 204-57	일반 도로	서고 (2003.3.31.)	운동장길
기정	중로	1	465	20	집산 도로	284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변경	중로	1	465	20-23	집산 도로	284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중로	1	5	20	집산 도로	2,750 (484)	서울운동장 북측	마장동	일반 도로	서고 제195호 (1978.5.8.)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370)	저동1가	광희동 광장	일반 도로	총독부고시 제722호 (1936.3.26.)	마른내길 일부
기정	중로	1	161	20	집산 도로	250	신당동 773	신당동 776	일반 도로	서고 제333호 (1977.9.14.)	마장로 일부
기정	중로	2	513	15	집산 도로	231	을지로6가 1-1	방산동 84-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일부중복 결정 (주차장②)
폐지	중로	2	513	15	집산 도로	231	을지로6가 1-1	방산동 84-1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미집행 도로 폐지
기정	중로	3	1	12-18.5	집산 도로	5,390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서고 제130호 (2003.05.28.)	청계천로
기정	중로	3	288	12-15	집산 도로	190	흥인동 114	흥인동 157	일반 도로	서고 제851호 (1986.11.26.)	광희학교길
기정	중로	3	50	12	집산 도로	212	광희동1가 235-8	을지로6가 58-5	일반 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
기정	소로	1	A	10	국지 도로	180	쌍림동 34-4	광희동1가 38-1	일반 도로	서고 제2024-200호 (2024.4.18.)	-
기정	소로	1	183	11	집산 도로	284	을지로6가 18-212	을지로6가 18-14	일반 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마방길 일부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87	10	국지도로	55	광희동2가 17-1	을지로7가 133	일반도로	서중고 제1998-93호 (1998.10.13.)	흥인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1	184	10	국지도로	45	광희동1가 46-1	을지로6가 58-5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32	을지로6가 17-8	을지로6가 18-1	일반도로	건고 제432호 (1963.7.2.)	마방길 접합도로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65	을지로6가 23-8	광희동1가 175-2	일반도로	건교부 제432호 (1963.7.1.)	벌우물길
기정	소로	2	185	8	국지도로	67	광희동1가 185-1	광희동1가 182-21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흥인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2	180	8-10	국지도로	330	신당동 209-8	신당동 228	일반도로	서고 제333호 (2002.2.7.)	운동장1길
기정	소로	2	181	8	국지도로	24	중구 흥인동 130	중구 흥인동 117-6	일반도로	중구고시 제50호 (1996.5.30.)	충무아트홀 진입로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2	-	8-11	국지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18	광희동2가 55	광희동2가 62-2	일반도로	건고 제432호 (1963.7.1.)	을지로 접합도로
기정	소로	3	-	5-8	국지도로	295	흥인동 132	흥인동 115	일반도로	신당토지 구획정리사업 (1940.3.14.)	-
기정	소로	3	182	6	국지도로	104	을지로5가 111-1	을지로5가 79-1	일반도로	중구고시 제20호 (1996.5.30.)	연방1길
기정	소로	3	20	4	국지도로	114	광희동1가 63-1	광희동1가 13-1	일반도로	건고 (1963.7.1.)	삼송길 접합도로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160	광희동1가 99	을지로6가 30-2	일반도로	건고 (1963.7.01.)	삼송길
기정	소로	3	60	7	국지도로	134	신당동 251-55	신당동 198-46	일반도로	건고 제768호 (1964.1.24.)	퇴계로73길

주1) 연장에서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이며, 면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편입구간의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513	-	도로 폐지	• 동대문 일대 공간재구조화 등 상위계획에 따라 동-서간 보행연결 체계 강화 반영 ※ 서울시 정책방향 반영(전통시장 건축혁신 종합계획 및 DDP 일대 종합공간구상 용역) • "병원 · 훈련원공원 간 연계 강화 "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중로 1-465	중로 1-465	도로 폭 확대 20m → 20~23m	• 미공병단 부지 진출입구 및 보행자도로 설치에 따른 을지로39길변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폭(3m)
소로 2-	소로 2-	도로 폭 확대 8m → 8~11m	

2)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지하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11번지 일대	1,443.3	중구 제2010-21호 (2010.4.15.)	
기정	②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21-11번지 일대	701.00	중구 제44호 (2006.7.13.)	
기정	③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0번지 일대	316.20	서고 제75호 (2007.3.29.)	
기정	④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6가 18-220번지 일대	171.49	-	
기정	⑤	도로	지하도로	을지로5가 99번지 일대	95.27	-	
기정	⑥	도로	지하도로	방산동 4-10번지 일대	1,938.75	서고 제267호 (1976.10.18.)	

3)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주차장	중구 신당동 251-7 일대	9,573.6	서고 제172호 (1991.6.11.)	
기정	②	주차장	중구 을지로 5가 40-3 일대	16,732	서고 제139호 (1994.4.28.)	일부 중복 결정 (훈련원공원, 중로2-ⓑ호선)

4)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철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①	고속철도 (지하철 4호선본선)	고속철도	상계동	과천	-	32,500		서고 제546호 (1984.9.11.)	
기정	②	철도(4호선)	지하철역사	을지로7가 120 일대			206	2,707.53	서고 제287호 (1981.7.30.)	
기정	③	철도	도시고속철도 (지하철순환선)	시청	잠실동	아현동	48,800		건고 제203호 (1975.12.20.)	
기정	④	도시철도 (2호선)	동대문운동장 정거장	중구 을지로7가 1번지 일대			205	5,999.52	중구 제2004-72호 (2004.11.15.)	
기정	⑤	5호선본선	본선	강서구 개화동 306 일대	강동구 하일동 579 일대	-	47,400		건고 제695호 (1990.10.19.)	
기정	⑥	동대문 정거장	도시철도 (동대문운동장 정거장)	중구 쌍림동 219 일대			-	3,960	건고 제151호 (1991.4.1.)	
기정	⑦	철도	도시철도	은평구 신사동 24번지 일대 (보문동 225-143)	중랑구 신내동 355 일대 (보문동187-1)	-	36,400		서고 제104호 (1994.3.20.)	
기정	⑧	철도	도시철도 (6호선) 신당정거장	중구 흥인동 86앞			-	6,069.86 (223.26)	서고 제1994-104호 (1994.3.30.)	
기정	⑨	환기구	환기구 (6호선)	흥인동 3-3			-	107	서고 제153호 (1977.5.16.)	
기정	⑩	출입구	출입구 (5호선)	광희동1가 287 일대			-	408.3	서고 제2024-200호(2024.4.18.)	입체적 (대상지내)결정면적 : 336.0㎡

나. 공간시설 : 변경

1)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신당동 광장	교통광장	신당동	4,010 (3,559.54)	-	4,010 (3,559.54)	건설부 제431호 (1963.7.1.)	
기정	②	광희동 광장	교통광장	광희동	4,554 (1,458.56)	-	4,554 (1,458.56)	내무고시 23호 (1952.3.25.)	

주)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항임

2)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훈련원 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7,927.9	-	17,927.9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변경	①	훈련원 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7,927.9	감) 1,216.9	16,711.0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기정	②	공원	가로공원	쌍림동 34-5일원	604.8	-	604.8	서고 제2024-200호 (2024.4.18.)	-

■ 공원 결정(변경) 사유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훈련원 공원	• 공원 면적 변경(감 1,216.9㎡) - 17,927.9㎡ → 16,711.0㎡ - 미집행 도로 중로 2-513 해제에 따른 가각부 포함(정형화) 면적 : 32.0㎡(증) -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 면적 : 1,248.9㎡(감)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훈련원공원 일부 해제

3) 녹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	을지로 7가 135-2	2,004.3	-	2,004.3	-	-

4)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공공공지	을지로7가 2-38번지	1,243.4	-	1,243.4	서고 2008-271 (2008.8.7.)	
기정	②	공공공지	중구 흥인동 117-3,4번지	182.2	-	182.2	중구고시 제97호 (2003.12.26.)	충무아트홀 진입도로
기정	③	공공공지	중구 흥인동 161	194	-	194	중구고시 제30호 (2002.5.24.)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1) 시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시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774, 775 일대	3,396.3	-	3,396.3	서고 제432호 (1979.10.8.)	
기정	②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772 일대	2,306.4	-	2,306.4	서고 제432호 (1979.10.8.)	
기정	③	시장	대규모점포	신당동 217-91 일대	2,138	-	2,138	서고 제28호 (1975.2.10.)	
기정	④	오간수 시장	대규모점포 및 정기시장	신당동 776, 777 일대	4,558.4	-	4,558.4	서고 제432호 (1979.10.8.)	

2)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변전시설	성동구 신당동 217-6	1,603	-	1,603	서고 제116호 (1973.7.7.)	-

라. 공공 · 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광희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	중구 신당동 254-16 일대	13,289.8	-	13,289.8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호(1987.2.17.)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②	한양 중,공고	중•고등학교	중구 신당동 251 일대	14,609.3	-	14,609.3	서고 제643호 (1978.3.14.)	오기 정정
기정	③	성동 여실고	고등학교	신당동 250-3	9,733	-	9,733	서울시교육위원회 제5호(1987.2.17.)	

■ 학교 건축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학교	30% 이하	120% 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학교	35% 이하	150% 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③	학교	40% 이하	150% 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2)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신당동 251-7번지 일대	817	-	817	서고 제2008-271호 (2008.8.7.)	소방서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중구 신당동 193-5 일대	24,843	-	24,843	서고 제847호 (1985.12.13.)	시경 기동대

■ 공공청사 건축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공공청사	60% 이하	400% 이하	4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공공청사	-	-	-	일반상업지역

3) 문화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문화시설	-	을지로7가 2-1번지 일대	69,031.9	-	69,031.9	서고 제2008-271 (2008.8.7.)	중복 결정
기정	②	문화시설	공연장 및 문화체육센타	중구 흥인동 131 일대	9,463.5	-	9,463.5	서고 제2003-34 (2003.3.10.)	

■ 문화시설 건축계획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건축물의 규모			비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①	문화시설	60% 이하	150% 이하	5층 이하	일반상업지역
기정	②	문화시설	60% 이하	250% 이하	7층(60m 이하)	일반상업지역

마. 방재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하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①	청계천 (지방2급)	-	종로구 서린동 148	성북천 합류점	-	4,450	-	-	-	-

바. 보건위생시설 결정조서 : 신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 신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①	종합의료시설	방산동 70번지 일대	-	증) 41,896.5	41,896.5	-	-

■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신설내용	신설사유
신설	①	• 신설 면적 : 41,896.5㎡	• 공공의료시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위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2)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 신설

■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60% 이하	300% 이하	90m 이하	-

주) 향후 병원증축 계획 시 구체적인 증축계획과 기반시설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2024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결정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신설내용	신설사유
신설	①	• 종합의료시설 범위 결정(신설) - 위치: 중구 방산동70 일대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 결정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가구 및 획지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

적용지역	최대개발규모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비고
간선가로변	3,000㎡ 이하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계획구역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 필지 및 기개발지 제외
이면가로변	1,500㎡ 이하		

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

나.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동개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지정)	전지역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동개발(권장)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율적 공동개발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주)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필지수(개)	면적(㎡)	비고
기정	1-14	방산동 70번지 일원	29	42,096.2	특별계획구역1 ※ 5개 필지 중 4개 필지 면적(101.6㎡) 합산 누락
		을지로5가 40번지 일원	2		
		을지로6가 1-34번지 일원	5		
		방산동 84-1번지 일원	3	25.8	공동개발 권장필지(서측)

구분	가구 번호	위치	필지수(개)	면적(㎡)	비고
		을지로6가 1-17번지 일원	8	84.2	공동개발 권장필지(동측)
	소계		47	42,307.8	

주) 기 고시문에 면적 합계 누락된 오류 필지를 확인,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정정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필지수(개)	면적(㎡)	비고
변경	1-14	방산동 70번지 일원	29	42,197.8	특별계획구역1 면적 합산 누락 정정(101.6㎡ 포함) 및 1-34필지 3개로 분할(2015년)되어 2필지(1-44,1-45) 포함
		을지로5가 40번지 일원	2		
		을지로6가 1-34번지 일원	7		
		방산동 84-1번지 일원	3	25.8	
		을지로6가 1-17번지 일원	8	84.2	
	소계		49	42,307.8	

주) 기 고시문에 면적 합계 누락된 오류 필지를 확인,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정정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14	• 가구 (1-14) 중 특별계획구역1 면적 오류 정정 및 현행화 - 가구1-14획지 총면적 변경 없음	• 최초고시('15.4.30.) 당시 특별계획구역1(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조서 상 4개의 필지(1-29, 1-30, 1-34, 1-38)의 면적 합산이 누락되어 특별계획구역1의 면적 오류가 발생함 (면적 합산 누락 면적 : 101.6㎡) •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누락된 면적을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1 면적을 42,197.8㎡로 조정하고, 1-34필지 분할 현황을 반영한 토지조서의 현행화를 통해 특별계획구역1(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및 가구번호 1-14 획지 토지조서를 변경함 ※ 을지로6가 1-34필지는 2015.4.15. 총 3개의 필지로 분할됨(1-44, 1-45) • 단, 가구번호 1-14획지의 총면적 변경은 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

1)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기정)조서

적용지역 (도면표시)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 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적용지역 (도면표시)	위치	불허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C 도심 관광•문화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전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광희동1가 166일원 역세권 청년 주택에 한함
G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전층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추가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

적용지역 (도면표시)	위치	불허용도	신설사유
G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전층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지정용도(의료시설)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해 불허용도 지정을 통해 사전 입지 규제

2)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 권장용도 결정조서

적용지역	위치	권장용도	비고
A 패션 도•소매	전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B 패션지원	전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 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C 도심 관광•문화	전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D 간선변 상업•업무	전층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E 이면부도심 서비스	전층	• 공동주택(전용 60㎡ 미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해당

주1)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주2) 면적 산정 시 주차장 및 1층 면적은 제외한다.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4)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름

3)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

적용지역	1층 권장용도	비고
전지역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주1)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따름

4)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전층 지정용도 결정(기정)조서

적용지역 (도면표시)	전층 지정용도	비고
(a) 을지로5가 275-3 일대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b) 광희동1가 166 일원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3)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적용지역 (도면표시)	전층 지정용도	비고
(a) 을지로5가 275-3 일대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계획구역	
(b) 광희동1가 166 일원	•공동주택(주거복합) -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c)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의료시설	추가

주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 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3)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건축물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

적용지역 (도면표시)	전층 지정용도	신설사유
(c)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의료시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종합의료시설 결정

나. 건축물의 개발 밀도 및 높이 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적용지역		건폐율	비고
전지역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
	학교이적지	30% 이하	
광희동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		50%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 적용

■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결정조서

완화 범위	적용지역		완화 범위	완화항목	완화 내용	비고
기정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80% 이하	•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20%	
	구역 전체		80% 이하	•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20%	
				•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 시	산식에 따름	• 현황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
		이면부	80% 이하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10%	• 대지면적 300㎡ 이하에 한하여 5층 이하 부분만 완화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 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10%	
		간선부	70% 이하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 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5%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5%	

주1)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 {(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 권장용도 수용기준) x 1/2 } x 0.6
주2)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
단, 학교 이적지는 제외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4)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산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2)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기정)조서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 준용 • 관광숙박 시설에 한하여 허용 용적률 690% 이하 적용
광희동1가 166 일원	기본용적률 : 600% 이하		794%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광희동1가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 2배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 기부채납 및 공개공지 조성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4)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5) 광희동 1가 166 일대(광희동 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적용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비고
전지역	500% 이하	600% 이하	법적 2배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 규칙 준용
학교이적지	400% 이하	500% 이하	법적 2배 이하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500% 이하	690% 이하	법적 2배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 준용 • 관광숙박 시설에 한하여 허용 용적률 690% 이하 적용
광희동1가 166 일원	기본용적률 : 600% 이하		794%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광희동1가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	600% 이하	800% 이하	법적 2배 이하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준용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및 공개공지 조성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300% 이하	-	-	

주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주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주3) 을지로5가 275-3일대 (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4)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5) 광희동 1가 166 일대(광희동 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구분	적용지역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기준 용적률 300% 이하 결정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 · 이전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 결정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주) 향후 병원증축 계획 시 구체적인 증축계획과 기반시설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2024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결정조서

(가) 허용용적률

①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항목	세분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α 개방형구조 : a=1.0, 피로티구조 : a=0.5	
	건축한계선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x 0.45 - 미관지구에 의한 건축선후퇴로 발생된 공지의 면적은 용적률완화 산정 시 제외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	• 기준용적률 x (권장용도면적/건축연면적) x 0.15
			- 권장용도면적(전체면적) 인센티브량 산정 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면적(1층면적)은 제외하여 산정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4	•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연면적) x 0.6
			- 일반인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조의 경우에 한함 (해당층 바닥면적 50%이상 설치 시)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준수시	• 기준용적률 x 0.04	• 기준용적률 x 0.08
			-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계획 상 1층 권장용도에 한함 (주차장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 시)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0.01	
건축물 개방	건축물내 공익시설 설치	설치시	• 기준용적률 x (제공면적/연면적) x 0.2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역사 보전	옛길/물길 등 복원 및 재현	설치시	• 원형보전 : 기준용적률 x 0.06	
			• 형태보전준용적률 x 0.03	

항목	세분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역사흔적 남기기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4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시설물 포함)	
공동 개발	공동개발 (지정 · 권장)	준수시	•기준용적률 x α (공동개발 지정 : 2α, 권장 : α) ※ 공동개발 필지수에 따라 차등 적용 (둘 이상의 필지에 기공동건축된 대지는 하나의 필지로 산정) - 2필지 : α=0.005 - 3필지 : α=0.01 - 4필지 이상 : α=0.02	

②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구분	완화항목	완화 조건	간선부	이면부
환경 친화 및 에너지 효율화	자연반 보존	준수시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대지면적) x 0.1	•기준용적률 x (보존면적/대지면적) x 0.2
	중수도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2 (20)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기준용적률 x 0.04 (20) •총 사용량의 10% 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관련법상 의무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 시설설치	설치시	•기준용적률 x 0.02 (20)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기준용적률 x 0.04 (20) •빗물저류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 ×0.05 또는 대지면적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옥상녹화	설치시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05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기준용적률 x (설치면적/대지면적) x 0.1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녹색건축 인증	준수시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2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효율 등급인증	준수시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3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2	•에너지 효율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 기준용적률 x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준수시	•1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2~3등급 : 기준용적률 x 0.05 •4~5등급 : 기준용적률 x 0.03	•1등급 : 기준용적률 x 0.12 •2~3등급 : 기준용적률 x 0.10 •4~5등급 : 기준용적률 x 0.06

주1) 허용용적률 산정을 위한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은 계획유도 인센티브 합은 100분의 70 이내, 친환경 인센티브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기준용적률과 인센티브 계획용적률의 합은 허용용적률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주2)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특별계획구역) 및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건축물은 건축계획 시 총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반드시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으로 충족하여야 함
주3)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에 대하여 해당 인센티브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준수를 통하여 부족한 친환경 인센티브의 대체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 단, 적용이 어려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900㎡ 이하)에 대해서는 계획유도 항목으로 대체 가능
주4)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관련법령에 의해 설치하는 의무면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완화에서 제외
주5) 각 항목별 인센티브 완화량 산정 시 중복 산정되는 항목은 1개의 항목만 선택하여 적용
주6)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③ 용적률 인센티브 – 광희동1가 303-1 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 변경없음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계획 유도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 녹지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초과 설치 시 -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	정률 부여	2.0	최대 100%
		공동개발 시 녹지확보	지구간 건축협정(협의 등)에 따른 공동개발을 통해 도로 일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정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친환경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	정량 부여	30%	최대 30%
		전기차충전소 설치	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 사항 1/2 이상 초과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재활용 건축자재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장수명 주택인증	장수명 주택인증항목 적용 시		20%	
	도시 경제 활성화	지역별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용도	MICE 산업관련시설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별 유도용도 기준에 따름 정률부여 0.3 최대 10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지식기반산업 시설 도입 시			
			사회혁신창조클러스터를 활용한 신성장산업육성을 위한 시설 도입 시			
			건축연면적의 30% 이상 주거도입 시			
	생활SOC	도서관, 보육시설 등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공공체육시설, 청소년아동시설, 보육시설, 일자리창출공간	정률 부여	0.3	최대 50%
	문화인프라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영화상영관 등	공연법 등록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등록대상, 영화진흥법 등록대상	정률 부여	0.3	최대 50%
	주거안정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도입 (전용 60㎡ 이하,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도입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구분	목표	인센티브 대상	요건	산정 방식	완화량 또는 보상계수	적용량
	공익시설	건축물내 공익시설	소규모 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개방형라운지 등)을 제공하는 시설 등 도입 시	정률 부여	0.2	최대 50%
		특정층(최상층)개방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공공간(전망대 로비) 조성 시	정률 부여		
		실내 공개공지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내 공개공지 도입 시(세부지침 조정)	정률 부여		
		저층부 개방	지상부 개방형녹지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저층부(최소1층) 특정시간대 완전 개방 시	정률 부여	0.3	
	보행가로 활성화	무장애도시 조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상 우수 등급 인증 시	정량 부여	30%	최대 30%
		공공보행통로 등 (지하보행통로 포함)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조성 시	정률 부여	2.0	최대 30%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가로지장물 이전/지중화 또는 지하철 출입구 이전 시(가로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구역 내에서 연결되는 구역 외 도로도 포함) ※ 도입시설면적은 공사구간 면적 기준. 단, 지상 주·전선의 이전/지중화 시에는 시설 공사비 환산면적 기준으로 적용	정률 부여	2.0	최대 50%
	안전·방재	방재 관련시설	정비유도지침에 따라 방재와 관련된 시설 설치 시	정량 부여	20%	최대 20%
	역사보전	건축자산 등	법적 의무대상은 아니나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니는 것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의무	역사보전	지정·등록문화재 등	문화재 등 법적의무대상에 대하여 보전계획 수립 시	정량 부여	50%	최대 50%

주1) 지역특성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별도의 항목 추가적용 가능
주2) 정률방식 인센티브량 = 기준용적률 X (도입시설면적 / 대지면적) X 보상계수
주3) 공익시설의 의무개방 유지 관리방안
- 고시문, 건축물대장상 해당시설 명기 의무화(별도부기)
- 완공 후 해당시설의 공적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 항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부과

(나) 기본용적률 : 변경없음

사업조건 항목		적용기준	계획내용	완화 내용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8% 이상(39.38㎡)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9.38㎡(8.0%)+61.28㎡(완화용적률의 50%) = 100.66㎡(20.45%)	기본 용적률 6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함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 10% 이상 ~ 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비주거비율(용적률기준) : 18.6%(725.41㎡)		
주택 건설 비중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주거 : 비주거 (용적률 기준) - 3,164.6㎡ : 725.41㎡(81.4%) : (18.6%) •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21세대(20.59%) : 84세대(79.41%) • 공공임대주택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다음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 친환경 건축물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커뮤니티 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의 주민 커뮤니티시설 설치	• 지상 5층 : 219.15㎡ 계획		

주1)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3)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주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다) 상한용적률 : 변경없음

구분	적용지역	완화조건	산출방법
기정	전지역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산정식 =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 α토지+0.7x α건축물)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α토지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α건축물 = 공공시설등 부지(토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광희동1가 166 일원(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 α) 이내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 ※ α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2) 서울시 고시 제2021-92호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사항 적용

3)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최고높이 결정조서

적용지역		최고높이	비고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미공병단 부지)		90m	
학교이적지(케레스타)		70m	
기타 간선가로변		70m	
이면가로변	패션 도·소매 상가	50m	
	10m 이상 도로변	50m	
	6m 이상 도로변	40m	
	6m 미만 도로변	30m	
	4m 이하 도로변	20m	
청계천로 변(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3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70m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광희동1가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		70m + α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개방형녹지 및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최고 높이 결정

주1) 대지 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 적용(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주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주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계획 : 변경

1)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간선 가로변	장충단로 (청계천변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사거리)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이면 가로변	6m 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4m 이상 ~ 6m 미만 도로	도로중심선에서 3m 후퇴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건축물의 형태(규제사항)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기정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 폭원은 55m 이하로 제한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 세탁물 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 굴뚝 · 환기시설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변경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개구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 세탁물 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 굴뚝 · 환기시설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주1)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 수립으로 재정비되었으며, 도심부 청계천변 고층부 건축물의 최대폭원 조항이 삭제됨

■ 건축물의 형태(규제사항)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의 외부형태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폭원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	•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2.9.)」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 기준 및 최대 폭원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되어 계획내용 반영

3) 건축물의 형태(권장사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건축물의 형태(권장사항)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을 분절 •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저층부 수평분할요소	• 저층부의 재료와 색채 및 선과 면 구성의 차이를 통해 상층부와 구별되도록 분할되어야 함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되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간의 조화되어야 함	
야간경관조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설치 •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4) 대지안의 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대지안의 공지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건축법상 설치 대상 대지	• 공개공지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대지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 또는 당해도로 가각부, 보행 결절점 주변에 설치	
공공보행통로	보행연결 필요구간	• 단차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 공공보행통로의 최소폭 6m 이상(옛길은 기존 폭원 유지)	

5)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개방형녹지	• 조성계획 : 구역 북측, 남측 개방형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 ※ 「녹지생태도심 개방형녹지 조성 및 운영관리 기준」 준수	

6)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녹색건축 인증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설치(권장)	
에너지 효율등급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에 따라 설치(권장)	
신재생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의 기준에 따라 설치(권장)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 및 관리기준' 및 '서울특별시 빗물저수조 설치지침' 에 따라 설치(권장)	
옥상녹화	• '서울특별시 보급형 옥상녹화 조성기법' 에 의하여 설치(권장)	
자연지반 보존	• 지하수 및 생태면적 확보, 열섬현상 방지를 위해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권장)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기정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 광희동1가 166 일원 :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광희동 1가 166 일원 결정도 참조
	변경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 광희동1가 166 일원 : 진입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광희동 1가 166 일원 결정도 참조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기정	•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 차량출입 불허구간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 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 간선도로(동호로)에서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불허사항이나, 응급환자 및 영구차량의 신속한 치료 및 이송을 위하여 간선도로인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에서 응급차량과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2.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비고
우수근현대건축물 옛길, 옛물길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 보존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에 따름
예비 미래유산	「미래유산보전위원회」에서 정한 미래유산	• 건축할 경우 보전방법 및 범위 등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문화재 주변 관리	문화재 주변	• 문화재 관련 규정 준수

구분	적용대상	비고
서울 한양도성 주변 관리	서울 한양도성 주변	• 서울 한양도성 주변지역에서 건축 시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마스터플랜」과의 저촉여부 등에 대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

주1)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 수립으로 재정비함

3.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변경)조서

구분	대상지역	계획내용	비고
기정	미공병단 부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광희동 정비사업 검토가능지역		
변경	미공병단 부지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공병단 부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신축이전을 위해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입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4. 공공기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구분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기본공공기여율	계획내용	비고
공공임대 주택	600% 이하	794% 이하	부지면적의 8% 이상 : 39.38㎡	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45% (100.66㎡)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주1)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주2)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주3)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합산함
주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나. 광희동1가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

구분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계획내용				비고
				기반시설 면적(㎡)	구역 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순부담 면적(㎡)	순부담율(%)	
도로 및 공원	600% 이하	800% 이하	1,128.2% 이하	3,954.2	2,465.0	1,489.2	15.46	광희동1가 303-1 일원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다.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구분	기준용적률	계획내용		비고
		기반시설 면적(㎡)	순부담 면적(㎡) (무상양여)	
도로	300% 이하	411.3	411.3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특별계획구역 2 ~ 특별계획구역 3 : 변경없음

2.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42,096.2	증) 211.6	42,307.8	서울시 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증 211.6㎡) - 42,096.2㎡ → 42,307.8㎡	•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정형화 • 공동개발 권장필지와 과소필지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 면적 확대 조정

나.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변경

1)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기정)

구분			계획지침	비고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특별계획구역 면적			• 42,096.2㎡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가구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 인접필지(서측 3개 필지 및 동측 8개 필지)와 공동개발(권장)	
도시기반시설			• 도시기반시설로 결정된 남측도로(폭 15m) 및 훈련원공원 편입 부분은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기부채납 • 남측도로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교통량, 차량 및 보행 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미공병단 부지와 훈련원공원을 보행자 중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수립	
건축물에 관한 계획	용도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또는 전시장)	특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권장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A 지단
		1층 권장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전지역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특계
		불허용도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특계

구분			계획지침	비고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여건변화, 공공기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80%(저층부 5층 이하)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600% 이하	
			• 허용 용적률 : 700% 이하 • 토지병합(인접한 서측 3개 필지 및 동측 8개 필지와 공동개발) 시는 허용 800% 적용 가능	
			• 상한 용적률 : 1,000% 이하 • 용적률 인센티브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기준을 준용하여 수립	
		높이	• 최고높이 90m 이하	
	배치	건축한계선	• 기타 간선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이변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형태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 폭원은 55m 이하로 제한	
		투시벽 및 투시형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구분			계획지침	비고
		개구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 세탁물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 굴뚝 · 환기시설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권장사항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권장사항 준용	
	대지 안의 공지	전면공지	• 간선변 건축한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경성소학교 주변에 설치(권장)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훈련원공원과 청계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권장) • 평화시장 남측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계획(권장)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단차 없이 연속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장애물 설치 금지 • 지상부가 오픈된 개방형 구조로 설치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피로티 구조로 설치 가능 • 공공보행통로의 최소폭 6m 이상(옛길은 기존 폭원 유지)	

구분			계획지침	비고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 활용에 관한 사항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옛 훈련원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하여 보존 여부 재검토하고 보존 시 아래사항 준수 • 가로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교통처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결정사항 준용	

구분			계획지침	비고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대형 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을 준용 주차공간 확보 : 객실 수 300개 이상, 정차공간 확보 : 객실 수 200개 이상-300개 미만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추가 확보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 부지 내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역에 필요한 용도 및 기반시설을 확보를 고려한 보존형 정비수법으로 정비계획 수립	

2)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비고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토지이용		•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수행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설치	
용도지역 · 지구계획		• 일반상업지역	
가구 및 획지		• 42,307.8㎡(특별계획구역1)	
건축물 밀도	건폐율	• 60% 이하(건폐율 완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가능)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최고높이		• 90m 이하	
건축물 용도	지정용도	• 의료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한계선	• 간선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 이면가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비고
형태	건축물 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경성소학교 주변에 설치(권장)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기타 사항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 · 활용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 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에 따름 - 가로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함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 · 출입구 설정	
공공 기여 사항	무상양여 계획	• 도로 무상양여(제공면적 411.3㎡) - 도로(제공면적 : 411.3㎡) : 중로 1-465(B=20~23m), 소로 2-(B=8~11m)	
기타		• 공개공지 : 1개소(4,220.6㎡)(대지면적의 10.07%) - 경성소학교 앞(4,220.6㎡) ※ 법적기준 확보면적 : 4,189.65㎡ • 병원과 훈련원공원의 보행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지정) : 1개소 - 구역 내 동서방향(6m)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변경 사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기정	변경	
구역면적	• 42,096.2㎡	• 42,307.8㎡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증 : 211.6㎡) - 공동개발 권장필지 및 과소필지 포함에 따른 면적증가
용적률	• 기준 600% / 허용 700% / 상한 1,000% 이하 ※ 토지병합(인접한 서측 3개 필지 및 동측 8개 필지와 공동개발) 시 허용 800% 적용 가능	• 기준 용적률 300% 이하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 이전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 •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 결정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기정	변경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건축물 용도	지정 용도	전층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또는 전시장)	• 의료시설	• 건축물의 전층 지정용도 변경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내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라 건축물의 지정 용도로 기결정된 '문화 및 집회시설' 을 삭제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입지에 부합하도록 전층 '의료시설' 로 지정함
	불허 용도	전층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물의 전층 불허용도 변경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지정용도(의료시설)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하여 불허용도로 지정하여 사전에 입지를 규제하도록 함
	주용도	-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 삭제	• 건축물의 주용도 삭제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라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의료시설' 로 결정하는 바, 별도의 건축물의 주용도는 삭제하도록 함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 폭원은 55m 이하로 제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건축물 외부형태 및 규제사항에서 정한 고층부 건축물 최대폭원 55m 이하 제한사항 삭제 -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 에서 건축물 높이에 따른 최대 폭원 제한 사항을 삭제함에 따라 이전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2015.)」 에서 정한 사항인 건축물 최대폭원 55m 이하 제한사항 삭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안)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기정	변경	
대지 안의 공지	공공 보행통로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훈련원공원과 청계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권장) • 평화시장 남측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계획(권장)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의료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 중앙을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훈련원공원 연접부로 이동 • 공공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의료기능 수행과 환자 중심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보행자들 대상의 상시 개방공간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권장사항 3개소 폐지
기타 사항	교통 처리	차량 출입 불허 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위치 지정 -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의 이동동선 확보를 위하여 동호로 일부구간에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위치 지정
		대형 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대형 승합 자동차(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유도기준』을 준용 주차공간 확보 : 객실 수 300개 이상, 정차공간 확보 : 객실 수 200개 이상~300개 미만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추가 확보	• 삭제	•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사항 삭제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의 입지에 따른 대형버스의 주차공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병원 신축계획에 따라 대형 버스의 주·정차 공간의 확보가 불필요하여 삭제함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활용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옛 훈련원 부지의 역사적 가치와 연계하여 보존 여부 재검토하고 보존 시 아래사항 준수 - 가로활성화 용도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서점), 판매 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문화 유산이 추가로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 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2.9)」에 따름 - 가로활성화 용도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 음식점, 서점), 판매 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함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함	• 경성소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시관 및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삭제	•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사항 삭제

주) 향후 병원증축 계획 시 구체적인 증축계획과 기반시설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2024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Ⅲ.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변경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42,096.2	증) 211.6	42,307.8	서울시 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증 : 211.6㎡) - 42,096.2㎡ → 42,307.8㎡	•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따라 진출입로 확보 등 부지 정형화 • 공동개발 권장필지와 과소필지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 면적 확대 조정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합계		42,096.2	증) 211.6	42,307.8	100.0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2,096.2	증) 211.6	42,307.8	100.0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

구분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일반 상업지역	중구 방산동 70번지 일원	• 일반상업지역 면적 변경 - 42,096.2㎡ → 42,307.8㎡	• 기 고시문 오기입 정정 및 공동개발 권장필지와 과소필지 포함에 따른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의 일반상업지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방화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4호(2024.10.24.)에 따라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방화지구 일괄 폐지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교통시설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13	15	집산도로	231	을지로6가 1-1	방산동 84-1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폐지	중로	2	513	15	집산도로	231	을지로6가 1-1	방산동 84-1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미집행 도로 폐지
기정	중로	1	465	20	집산도로	284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
변경	중로	1	465	20-23	집산도로	284	을지로6가 18-79	을지로6가 18-14	일반도로	서고 제2015-116호 (2015.4.30.)	도로 확폭(3m)
기정	소로	2	-	8	국지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도로	-	-
변경	소로	2	-	8-11	집산도로	107	을지로6가 18-14	을지로6가 1-3	일반도로	-	도로 확폭(3m)

■ 도로 결정(변경)조서 사유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중로 2-513	-	• 도로 폐지	• 동대문일대 공간재구조화 등 상위계획에 따라 동-서간 보행연결 체계 강화 반영 ※ 서울시 정책방향 반영(전통시장 건축혁신 종합계획 및 DDP 일대 종합공간구상 용역) • "병원 · 훈련원공원 간 연계 강화"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
변경	중로 1-465	중로 1-465	• 도로 폭 확대 - 20m → 20~23m	• 미공병단 부지 진출입구 및 보행자도로 설치에 따른 을지로39길변 도시계획시설 도로 확폭(3m)
변경	소로 2-	소로 2-	• 도로 폭 확대 - 8m → 8~11m	

2)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주차장	중구 을지로 5가 40-3 일대	16,732	서고 제139호 (1994.4.28.)	일부 중복 결정 (훈련원공원, 중로2-ⓑ호선)

나. 공간시설 : 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기정	①	훈련원 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7,927.9	-	17,927.9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변경	①	훈련원 공원	근린공원	을지로5가 40-3	17,927.9	감) 1,216.9	16,711.0	건고 제104호 (1989.3.20.)	일부중복결정 (주차장②)

■ 공원 결정(변경) 사유

구분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훈련원공원	• 공원 면적 변경(감1,216.9㎡) - 17,927.9㎡ → 16,711.0㎡ - 미집행 도로 중로 2-513 해제에 따른 가각부 포함(정형화) 면적 : 32.0㎡(증) - 미집행 공원시설 해제 면적 : 1,248.9㎡(감)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결정으로 훈련원공원 일부 해제

다. 보건위생시설 : 신설

1)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 신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후		
신설	①	종합의료시설	방산동 70번지 일대	-	증) 41,896.5	41,896.5	-	

■ 종합의료시설 결정 사유

구분	도면표시번호	신설내용	신설사유
신설	①	• 신설 - 면적 : 41,896.5㎡	• 공공의료시설의 공공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위해 종합의료시설로 결정

2)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 신설

■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 신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신설	60% 이하	300% 이하	90m 이하	

주) 향후 병원증축 계획 시 구체적인 증축계획과 기반시설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2024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 종합의료시설 건축물의 범위 결정 사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신설내용	신설사유
신설	①	•종합의료시설 범위 결정(신설) - 위치 : 중구 방산동70일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함에 따라 금회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로 결정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계획에 따른 계획 용적률 수준으로 기준 용적률 결정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 및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 결정(기정)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필지수(개)	면적(㎡)	비고
기정	1-14	방산동 70번지 일원	29	42,096.2	특별계획구역1 ※ 5개 필지 중 4개 필지 면적(101.6㎡) 합산 누락
		을지로5가 40번지 일원	2		
		을지로6가 1-34번지 일원	5		
		방산동 84-1번지 일원	3	25.8	공동개발 권장필지(서측)
		을지로6가 1-17번지 일원	8	84.2	공동개발 권장필지(동측)
	소계		47	42,307.8	

주) 기 고시문에 면적 합계 누락된 오류 필지를 확인,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정정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 규모와 조성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위치	필지수(개)	면적(㎡)	비고
변경	1-14	방산동 70번지 일원	29	42,197.8	특별계획구역1 면적 합산 누락 정정(101.6㎡포함) 및 1-34필지 3개로 분할(2015년)되어 2필지(1-44, 1-45) 포함
		을지로5가 40번지 일원	2		
		을지로6가 1-34번지 일원	7		
		방산동 84-1번지 일원	3	25.8	
		을지로6가 1-17번지 일원	8	84.2	
	소계		49	42,307.8	

주) 기 고시문에 면적 합계 누락된 오류 필지를 확인,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정정 변경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1-14	•가구 (1-14) 중 특별계획구역1 면적 오류 정정 및 현행화 - 가구1-14획지 총면적 변경 없음	•최초고시(2015.4.30.) 당시 특별계획구역1(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토지조서 상 4개의 필지(1-29,1-30,1-34,1-38)의 면적 합산이 누락되어 특별계획구역1의 면적 오류가 발생함 (면적 합산 누락 면적 : 101.6㎡) •따라서,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누락된 면적을 포함하여 특별계획구역1 면적을 42,197.8㎡로 조정하고, 1-34필지 분할 현황을 반영한 토지조서의 현행화를 통해 특별계획구역1(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면적 변경 및 가구번호 1-14 획지 토지조서를 변경함 ※ 을지로6가 1-34필지는 2015.4.15. 총 3개의 필지로 분할됨(1-44, 1-45) •단, 가구번호 1-14획지의 총면적 변경은 없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불허용도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변경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건축물 불허용도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건축물의 불허용도 변경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에서 정하는 지정용도(의료시설)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도에 대해 불허용도 지정을 통해 사전 입지 규제	

2) 건축물의 지정용도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또는 전시장)	–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변경	• 의료시설	• 의료시설	

■ 건축물 지정용도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변경	• 건축물의 지정용도 변경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지속가능한 공공의료 확보를 위해 종합의료시설 결정	

3) 건축물의 주용도 결정(변경)조서

■ 건축물의 주용도 결정(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서점,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관광숙박시설	–	

■ 건축물의 주용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변경	• 삭제	• 해당 없음	

■ 건축물 주용도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삭제	• 건축물의 주용도 삭제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에 따라 건축물의 지정용도를 '의료시설'로 결정하는 바, 별도의 건축물의 주용도 삭제	

3.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

■ 건폐율 계획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금회 계획 건폐율 : 44.46%

나.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 용적률 계획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준 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금회 계획 용적률 : 278.92%

주) 향후 병원증축 계획 시 구체적인 증축계획과 기반시설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준용적률을 결정(변경)할 수 있음(2024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과)

다. 높이 계획 결정조서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높이	90m 이하	90m 이하	계획 높이 : 82.14m

주1) 「서울도시기본계획(2023.2.9.)」에 따라 최고높이를 기준높이로 변경

4.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 조서

가. 건축물의 배치 결정조서

■ 건축한계선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축 한계선	간선 가로변	기타 간선가로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동호로(폭 40m)변 : 3m	
	이면 가로변	6m 이상 도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후퇴	을지로39길(폭 20m)변 : 1m	

나. 건축물의 형태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1)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규제사항) : 변경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축물의 외부형태	기정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 폭원은 55m 이하로 제한	-	
	변경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저층부일수록 면적이 넓은 계단 형태의 기단부와 2개 타워 형태의 상층부 계획 • 포디움(6층) : 170m X 120m • 일반병동(7층~15층) : 95m X 45m로 계획 • 감염병동(7층~13층) : 65m X 40m로 계획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 1층 전면의 50% 이상을 유리창으로 계획하여 인근 훈련원공원 녹지와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아트리움 계획 • 셔터 설치 시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1층 바닥높이는 일반인 및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적용	
개구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 도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주 벽면에 개구부 및 출입구 설치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 도로변과 훈련원공원 인접부에 건축 설비를 노출하지 않도록 계획	
미관지구 건축물 전면부		• 미관지구가 지정되는 있는 대지의 건축물 전면부에는 차면시설 · 세탁물 건조대 · 장독대 · 철조망 · 굴뚝 환기시설 · 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설치 금지	• 해당 없음	

■ 건축물의 형태(규제사항)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건축물의 외부형태	• 고층부(6층, 20m 이상) 건축물의 최대폭원에 대한 제한사항 삭제	• 「서울도심 기본계획(2023.2.9.)」에서 정한 건축물 높이 기준 및 최대 폭원에 대한 제한사항이 삭제되어 계획내용 반영

(2)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권장사항) : 변경없음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축물 외부형태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을 분절 •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1층 전면의 50% 이상을 유리창으로 계획하여 인근 훈련원공원 녹지와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아트리움 계획 • 저층부는 계단형태로 계획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입면계획 유도 • 외부에는 다양한 성격의 테라스 및 녹지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건물 내부에는 중정 및 실내 정원과 연계한 복층형 데이룸(공용공간) 계획	
저층부 수평분할요소	• 저층부의 재료와 색채 및 선과 면 구성의 차이를 통해 상층부와 구별되도록 분할되어야 함	• 저층부는 개방감 있는 투명한 아트리움 계획 및 테라코타와 같은 따뜻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 • 상층부는 수직 · 수평으로 분할된 커튼월을 사용하여 저층부와 분리된 입면 계획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 되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 되어야 함	• 대지 내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 경성소학교의 붉은 벽돌과 유사한 색채와 재료인 벽돌을 사용하여 경성소학교를 품는 아트리움 계획 • 주변의 오래된 조적 건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사한 색채의 테라코타 및 세라믹 패널을 저층부 입면에 적용	
야간경관조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설치 •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 1층은 진료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쇼윈도와 야간조명(1층 전면 투사) 설치 시 환자들의 불편과 의료 효율 저하가 예상되어 계획에서 제외 • 10층 이상 고층부는 병동으로 계획되어 있어 외벽을 밝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시 병실 환경이 저하되는 등 환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계획에서 제외	

5.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안의 공지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대지안의 공지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이면부 건축한계선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경성소학교 주변에 설치(권장)	-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훈련원공원과 청계천을 연계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 설치(권장) • 평화시장 남측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공공보행통로 계획(권장)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변경	전면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위치는 경성소학교 주변에 설치(권장)	• 훈련원공원과 적극적 연계를 위하여 경성소학교 앞에 위치를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10%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함 • 보행이 원활하도록 조성하여 인접 계획된 공공보행통로와 일체화 설계 (※ 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민간지침에 24시간 개방 명시)	• 계획면적 : 4,220.6㎡ (종합의료시설 면적의 10.07%)
	공공보행통로		• 동호로와 을지로39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동호로와 을지로39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공공보행통로 (폭 6m)

■ 대지안의 공지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 지정사항 위치 변경 및 공공보행통로 권장사항 3개소 폐지	• 의료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 중앙을 통과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훈련원공원 연접부로 이동 • 공공의료시설의 효율적인 의료기능 수행과 환자 중심의 치유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보행자들 대상의 상시 개방공간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권장사항 3개소 폐지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 불허구간 변경	-	-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	
변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 삭제	• 삭제	

■ 교통처리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설정	• 응급 차량 및 영구 차량의 이동 동선 확보를 위하여 동호로 일부구간에서 제한적 차량 진·출입구 위치 지정
	대형버스 주정차 공간 확보	•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사항 삭제	•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의 입지에 따른 대형버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병원 신축계획에 따라 대형버스의 주·정차공간 확보 불필요

2.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 활용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 활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대상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우수 근현대 건축물 옛길, 옛물길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한 역사문화자원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 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 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 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에 따름 • 가로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 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방안 수립 • 예비우수 근현대 건축물인 경성소학교는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에 따라 현 위치를 보존함 • 경성소학교의 외관은 원형보존하고, 내부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마련함 • 경성소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시관 및 근린 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활용 계획함 • 경성소학교 외관의 벽돌조와 조화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테라코타 및 세라믹 패널 적용

주1) 「역사도심기본계획」은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 수립으로 대체함

3.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변경)조서

구분	대상지역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기정	미공병단 부지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
변경	미공병단 부지	•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	조정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결정(변경) 사유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미공병단 부지	•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속하고 전략적인 신축이전을 위해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시설 입지에 부합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침내용 삭제

4. 공공기여 결정(변경)조서 : 변경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구분	기준용적률	계획내용		비고
		기반시설 면적(㎡)	순부담 면적(㎡) (무상양여)	
도로	300% 이하	411.3	411.3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한함

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1.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조서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면적		• 42,307.8㎡	• 42,307.8㎡	
토지이용		•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수행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기관(국립중앙의료원) 설치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건축 용도	불허 용도 (전층)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흥시설업 제외) •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지정 용도 (전층)	• 의료시설	• 의료시설	
건축 밀도	건폐율	• 60% 이하	• 60% 이하	• 금회 계획 건폐율 : 44.46%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 기준 용적률 : 300% 이하	• 금회 계획 용적률 : 278.92%
높이		• 90m 이하	• 90m 이하	• 계획높이 : 82.14m
건축물 배치	건축 한계선	• 간선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동호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을지로39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건축물 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건축물 형태 (규제 사항)	건축물 외부형태	• 사선절제형 계단형 건축형태 금지	• 저층부일수록 면적이 넓은 계단 형태의 기단부와 2개 타워 형태의 상층부 계획 • 포디움(6층) : 170m X 120m - 일반병동(7층~15층) : 95m X 45m로 계획 - 감염병동(7층~13층) : 65m X 40m로 계획	
	투시벽 및 투시형 셔터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시형 셔터 사용	• 1층 전면의 50% 이상을 유리창으로 계획하여 인근 훈련원공원 녹지와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아트리움 계획 • 셔터 설치 시 투시형 셔터 설치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출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 1층 바닥높이는 일반인 및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출입을 위하여 무장애 설계(Barrier Free) 적용	
	개구부	• 폭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주 벽면을 도로에 노출 금지	• 도로변 경관을 고려하여 주 벽면에 개구부 및 출입구 설치	
	건축설비의 노출	•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하여 설치 금지 •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시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 도로변과 훈련원공원 인접부에 건축 설비를 노출하지 않도록 계획	
건축물 형태 (권장 사항)	건축물 외부형태	• 건물 파사드가 단조롭고 폐쇄적인 벽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을 분절 • 건축물의 1층 전면의 50% 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 1층 전면의 50% 이상을 유리창으로 계획하여 인근 훈련원공원 녹지와 연계되는 자연친화적인 아트리움 계획 • 저층부는 계단형태로 계획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입면계획 유도 • 외부에는 다양한 성격의 테라스 및 녹지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건물 내부에는 중정 및 실내 정원과 연계한 복층형 데이룸(공용공간) 계획	
	저층부 수평분할 요소	• 저층부의 재료와 색채 및 선과 면 구성의 차이를 통해 상층부와 구별되도록 분할되어야 함	• 저층부는 개방감 있는 투명한 아트리움 계획 및 테라코타와 같은 따뜻한 물성의 재료를 사용 • 상층부는 수직 · 수평으로 분할된 커튼월을 사용하여 저층부와 분리된 입면 계획	
	외벽면의 통일성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모든 외벽면의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주변 건물과의 조화되어야 함 •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되어야 함	• 대지 내에 위치한 근대문화유산 경성소학교의 붉은 벽돌과 유사한 색채와 재료인 벽돌을 사용하여 경성소학교를 품는 아트리움 계획 • 주변의 오래된 조적 건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유사한 색채의 테라코타 및 세라믹 패널을 저층부 입면에 적용	
	야간 경관조명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은 쇼윈도 및 건축물 외부에서 1층 전면을 투사하는 야간조명 설치 • 10층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 되는 건물은 가로변 외벽을 밝힐 수 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 옥외에 설치하는 미술 장식품의 경우 야간조명 설치	• 1층은 진료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쇼윈도와 야간조명(1층 전면 투사) 설치 시 환자들의 불편과 의료 효율 저하가 예상되어 계획에서 제외 • 10층 이상 고층부는 병동으로 계획되어 있어 외벽을 밝히는 상향식 야간조명 설치 시 병실 환경이 저하되는 등 환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되고 의료 서비스 제공 관련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계획에서 제외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안)	비고
대지 안의 공지	간선변 건축한계선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이면부 건축한계선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 보 · 차혼용 전면공지로 조성	
	공개공지	• 공개공지 위치는 경성소학교 주변에 설치(권장)	• 훈련원공원과 적극적 연계를 위하여 경성소학교 앞에 위치를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10%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계획함	• 계획면적 : 4,220.6㎡(10.07%)
	공공 보행통로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동호로와 장충단로13길을 동-서로 연계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 이외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	• 공공보행통로 (폭 6m)
기타 사항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 · 출입구 설정	• 간선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 - 동호로 일부구간(방산동 70) 응급차량 및 영구차량에 대한 제한적 차량 진 · 출입구 설정	• 제한적 차량 진 · 출입구 위치 지정
	역사 문화자원의 보전 · 활용에 관한 사항	• 옛 훈련원터라는 역사성을 고려하고, 향후 역사 문화유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보존방안 수립 • 경성소학교는 현 위치 보존을 원칙으로 하며, 보존 방법 및 범위 등은 「서울도심기본계획 (2023.2.9.)」에 따름 • 가로활성화 용도(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공업무시설 그 외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활용하여야 함 • 주변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은 경성소학교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 예비우수 근현대 건축물인 경성소학교는 「서울도심기본계획(2023.2.9.)」에 따라 현 위치를 보존함 • 경성소학교의 외관은 원형보존 하고, 내부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마련함 • 경성소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스칸디나비아 전시관 및 근린 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로 활용 계획함 • 경성소학교 외관의 벽돌조와 조화를 고려하여 신축건물에 테라코타 및 세라믹 패널 적용	
무상양여 사항		• 구역 내 진 · 출입구 및 보행공간 확보에 따른 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및 조성 후 무상양여 (제공면적 : 411.3㎡) • 무상양여 면적 : 411.3㎡	• 구역 내 진 · 출입구 및 보행공간 확보에 따른 도로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설치 및 조성 후 무상양여 (제공면적 : 411.3㎡) • 무상양여 면적 : 411.3㎡	• 기반시설 설치 및 조성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Ⅳ. 관계도면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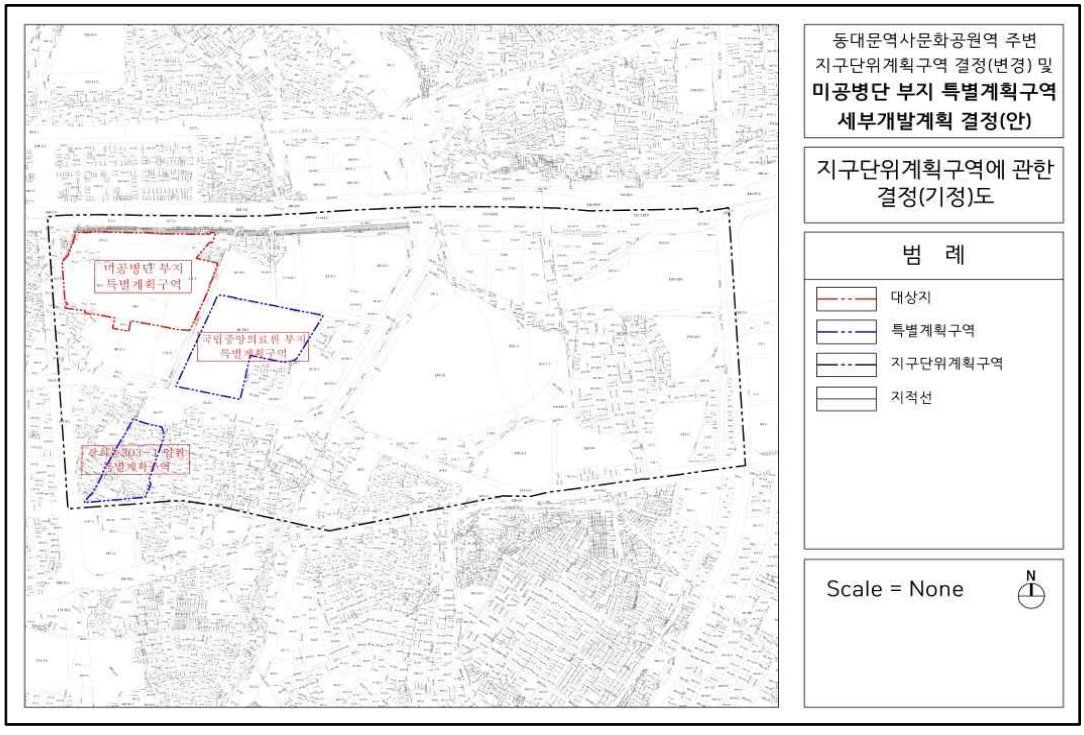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관계도서 열람장소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중구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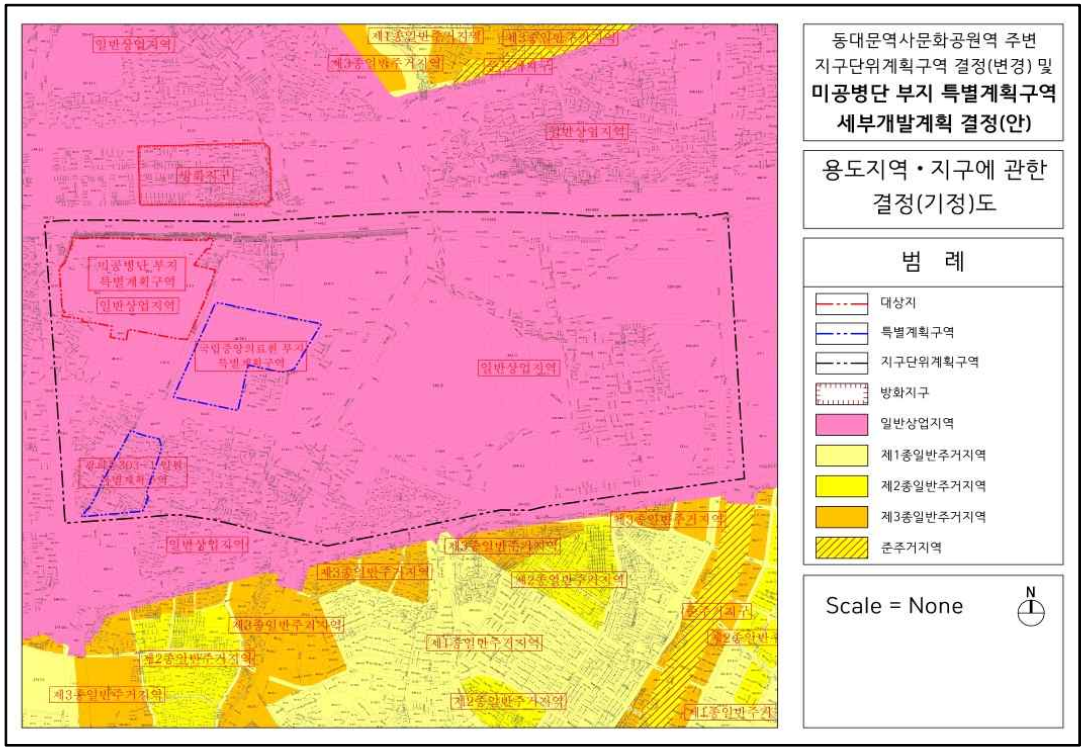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2133-8413)
- 중구 도시재정비전략추진단 : 서울 중구 창경궁로17, 5층(☏2286-5553)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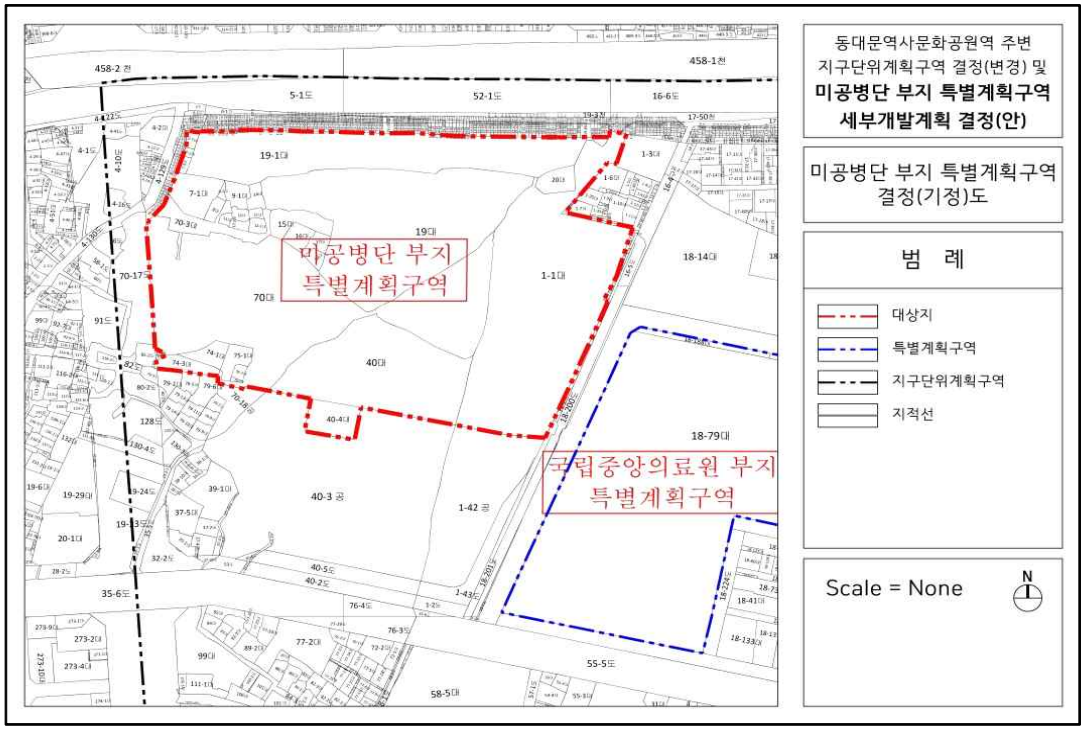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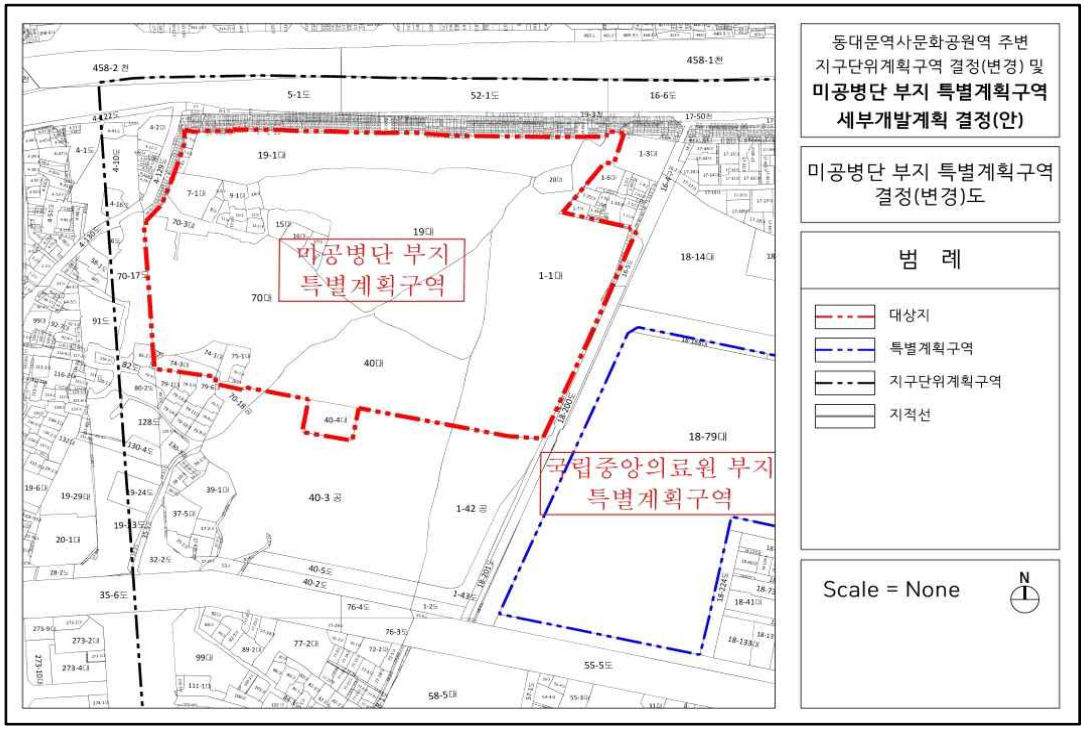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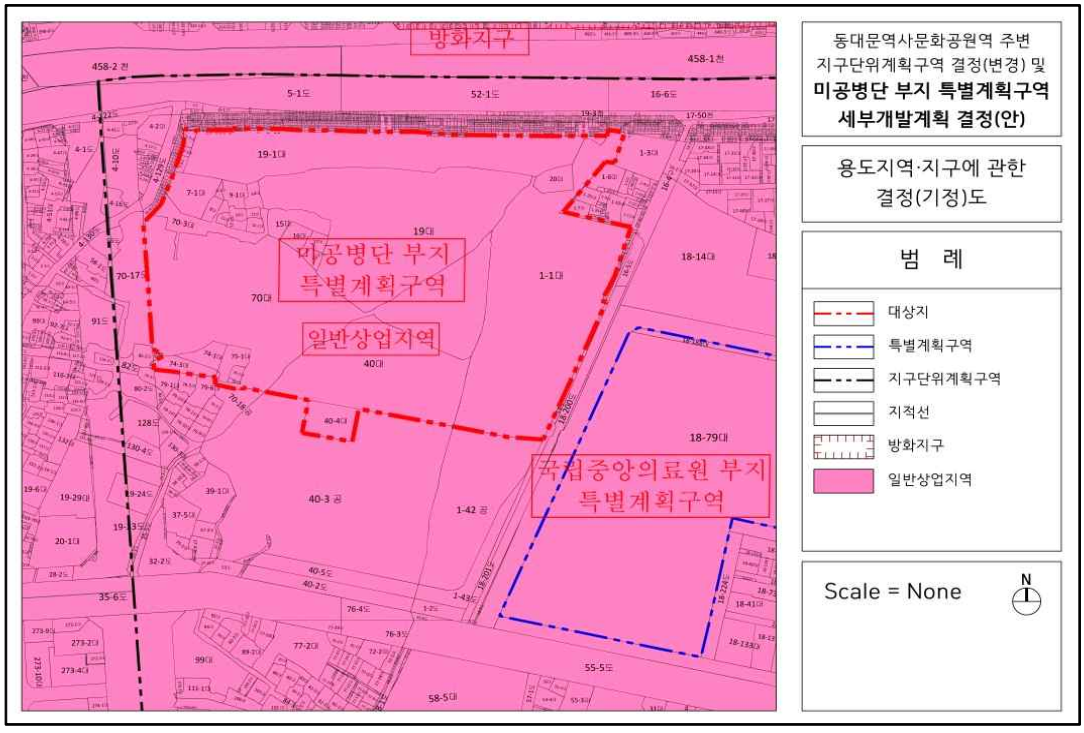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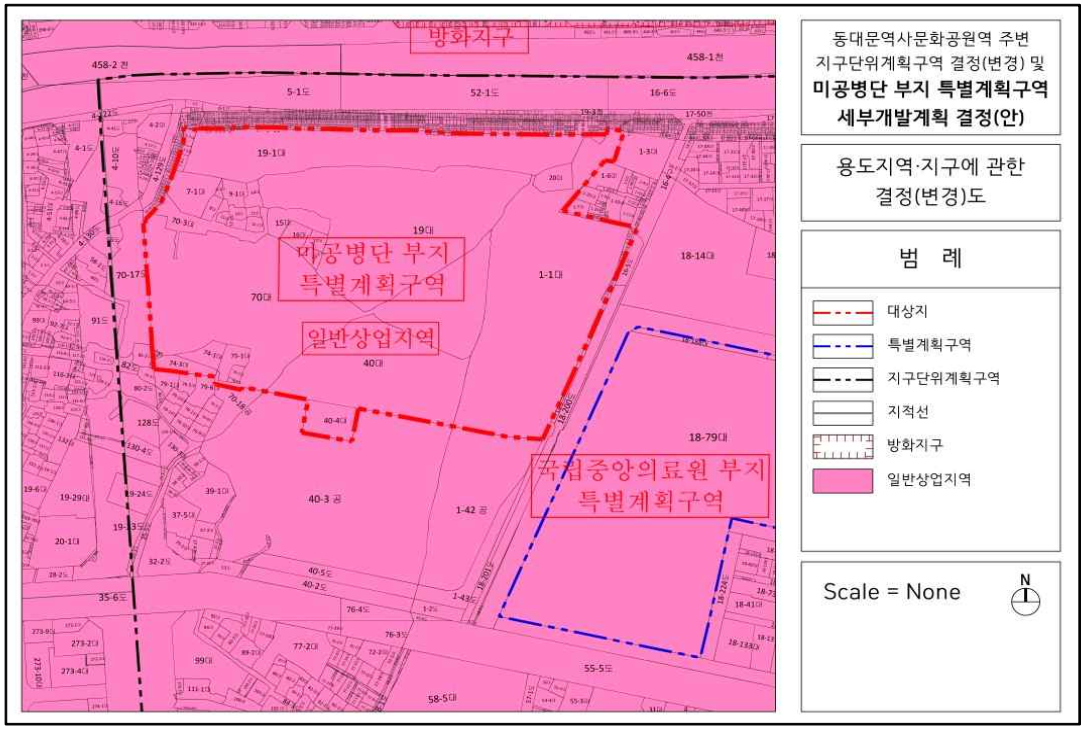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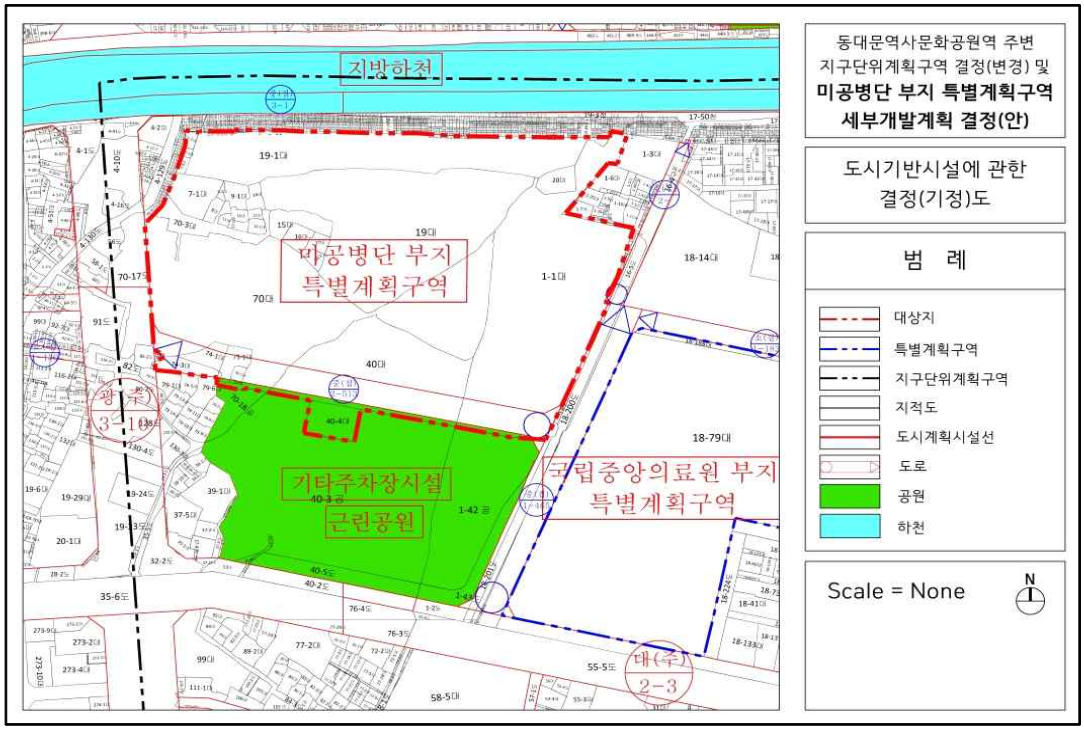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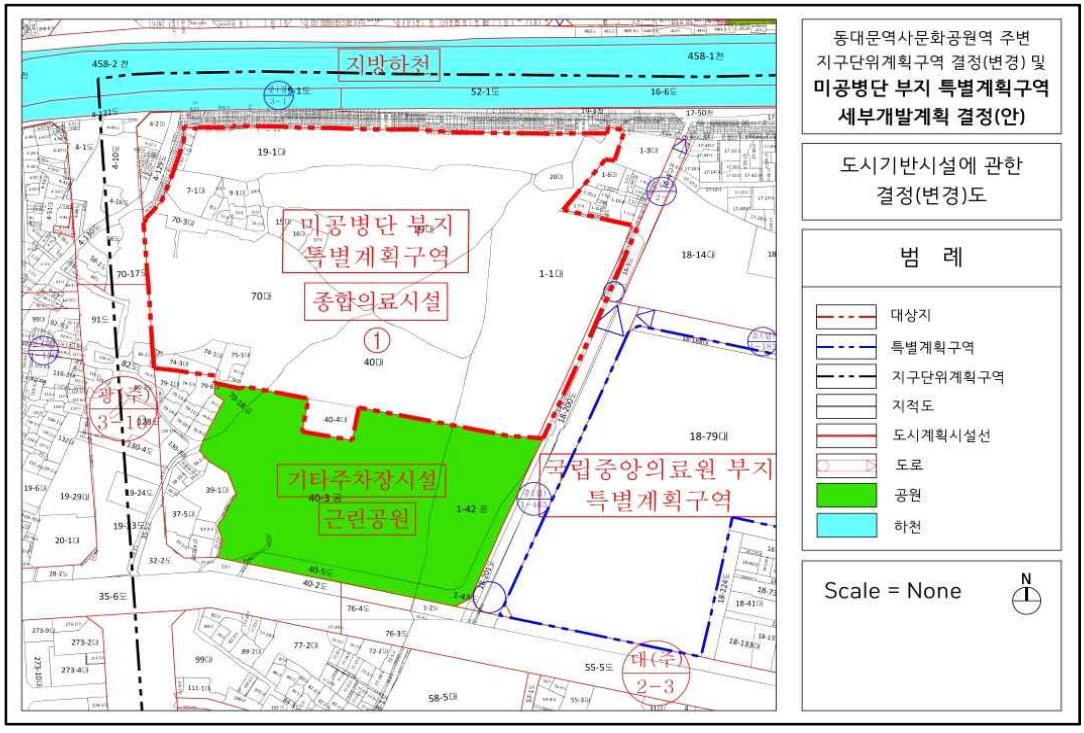
■ 용도지역 · 지구 지구에 관한 결정(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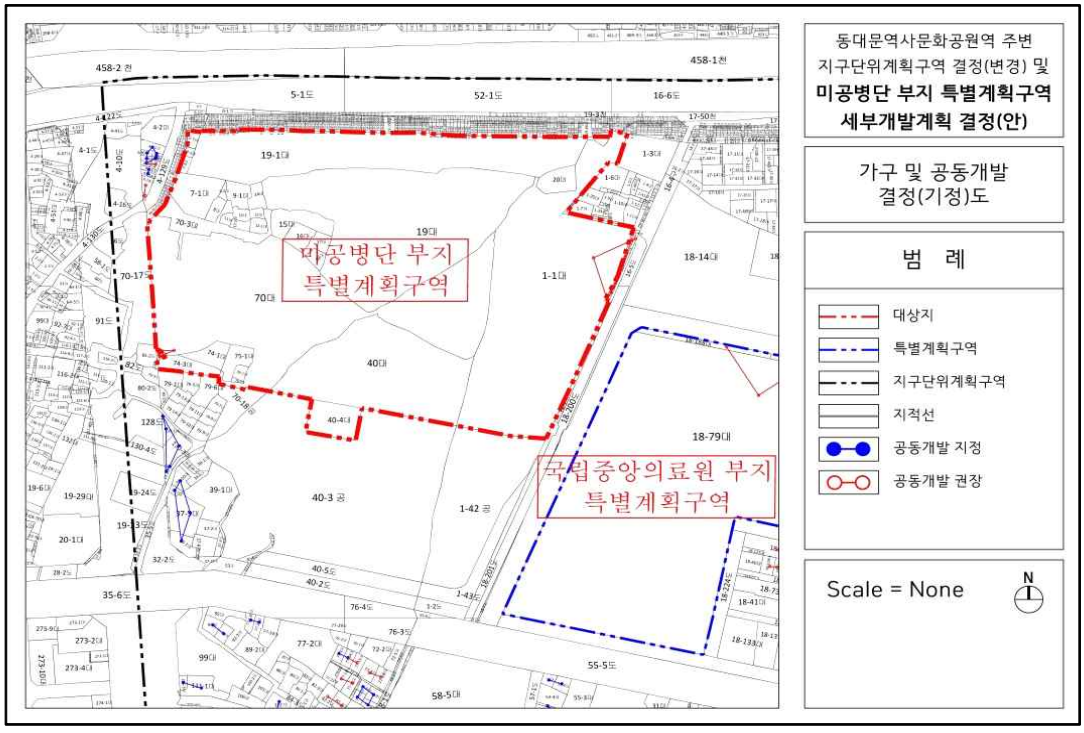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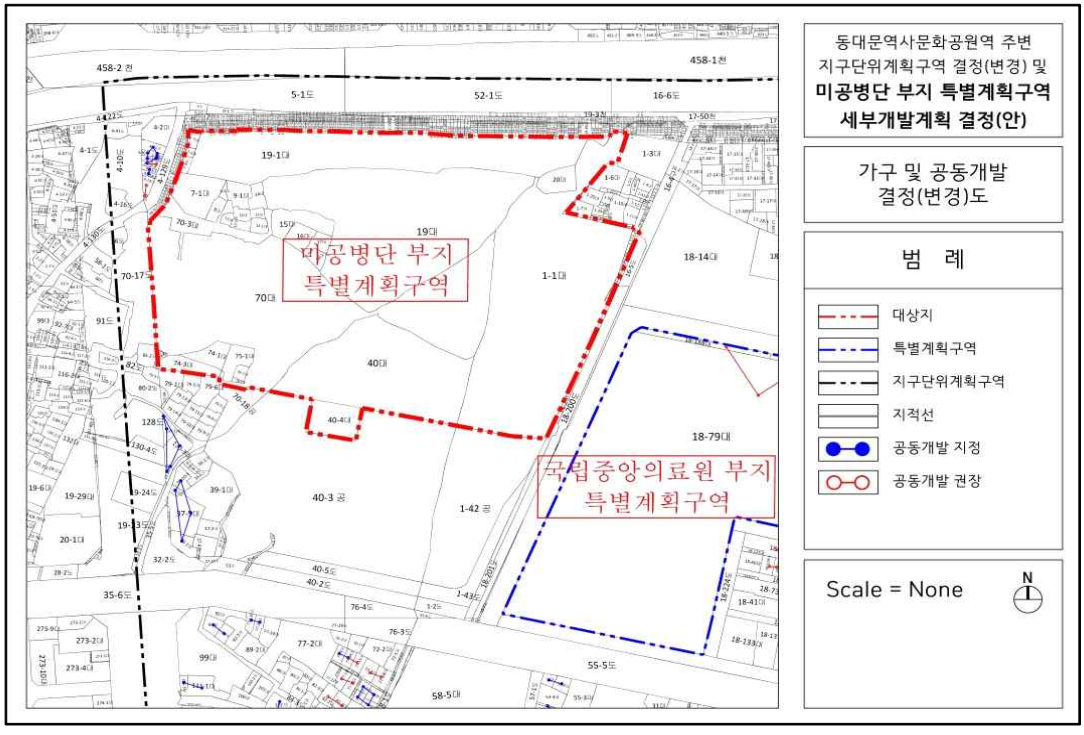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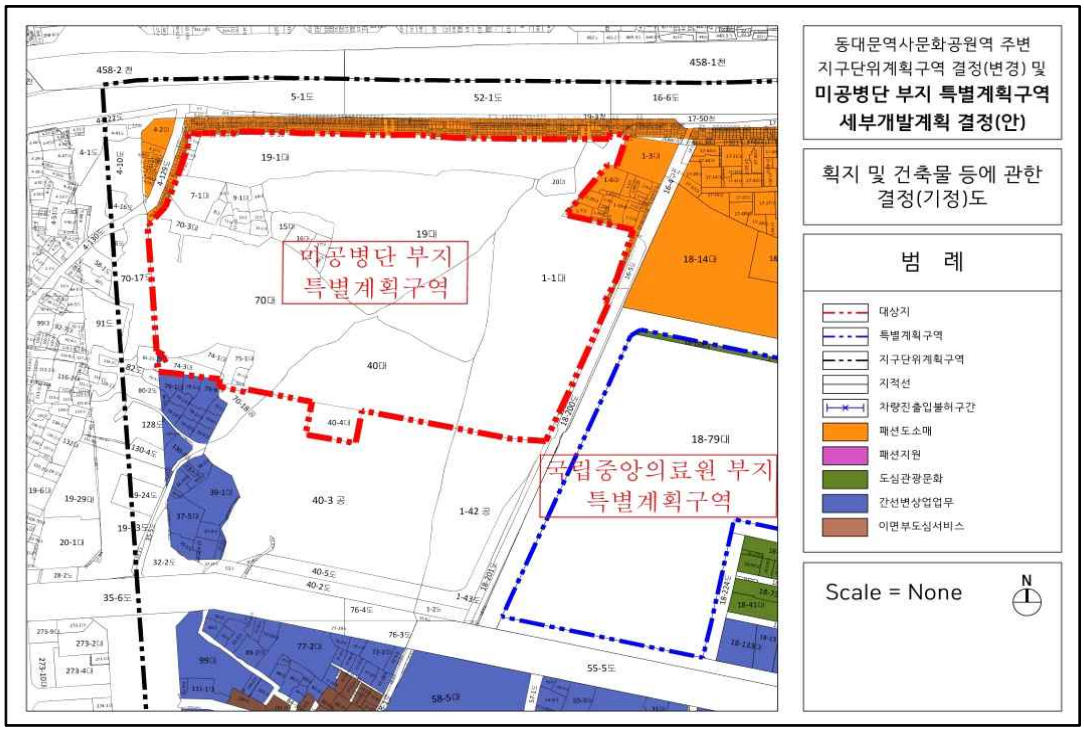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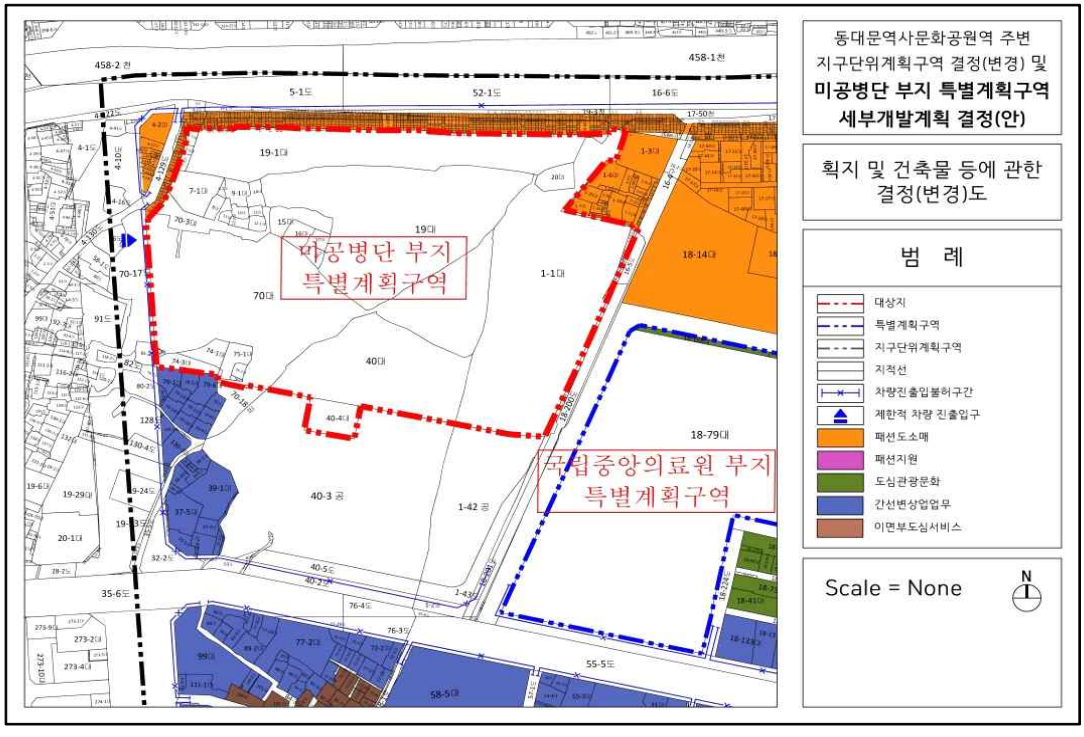
■ 가구 및 공동개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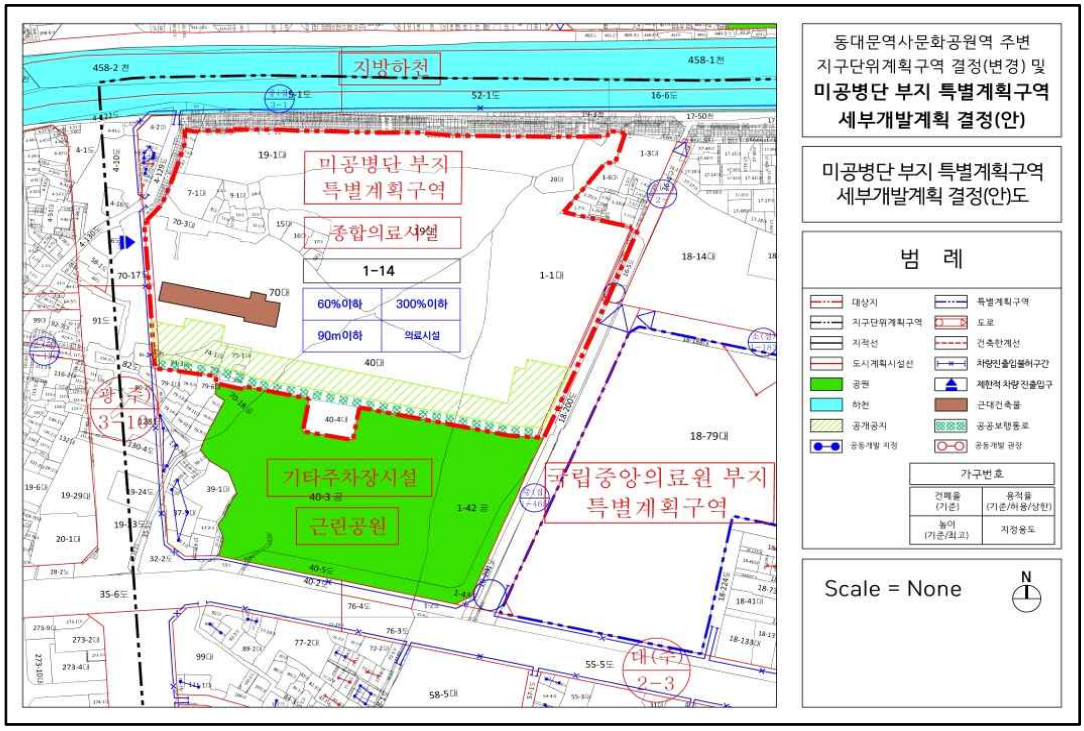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미공병단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7호

도시관리계획(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최초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 잠실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4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4.12.11.)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잠실아파트지구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가능시기 단계별 도래에 따라 선제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잠실 진주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112,558.5	감)112,558.5	-	-
폐지	②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대	75,684.5	감)75,684.5	-	-
폐지	③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잠실동 27번지 일원	358,077.0	감)358,077.0	-	-
신설	①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송파구 신천동, 잠실동, 풍납동 일대	-	증)2,482,662.3	2,482,662.3	-

※ 특별계획구역1,2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한가람로 연결 지하차도의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구역계 변경 가능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구역명	면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증) 2,482,662.3	2,482,662.3	• 아파트지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적 변화 및 대규모주거단지 재건축에 따른 광역차원의 체계적 관리방안 필요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에 따라 통합적 관리를 위해 기정 지구단위계획구역(잠실 진주아파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잠실5단지 아파트)을 폐지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조서

1.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482,662.3	-	2,482,662.3	100.0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19,952.7	-	119,952.7	4.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53,154.7	-	253,154.7	10.2	
	제2종일반주거지역	378.6	-	378.6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2,019,574.7	-	2,019,574.7	81.3	
	준주거지역	61,791.8	-	61,791.8	2.5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7,809.8	-	27,809.8	1.1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아파트지구	아파트지구	신천동 일원	281,656.3	-	-	건설부고시 제131호 (1976.8.21)	장미1차/ 장미2차/ 장미3차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20	58~62	주간선	7,780	올림픽로	올림픽로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올림픽로
기정	광로	2	29	50~58	주간선	8,000	잠실대교	성남시계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198호 (1971.04.07)	송파대로
기정	광로	2	51	40	보조 간선 도로	1,100	신천동 중2-123 (광로1-20)	잠실동 대로1-22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64호 (1978.03.29)	백제고분로
기정	광로	2	100	50	간선 도로	220	풍납로 (신천동20-8)	풍납로 (풍납동459)	일반 도로		풍납로
기정	대로	1	34	35	보조간선 도로	1,400.0	잠실동 광로-20	삼전동 광로19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삼전로
변경	대로	1	34	35	보조간선 도로	895.0	삼전동 1	삼전동 광로19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변경	광로	3	A	40	보조간선 도로	505.0	잠실동 광로-20	잠실동 44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기정	대로	3	104	30	국지 도로						잠실로
변경	대로	3	104	30	국지 도로	552.5	잠실동 26	잠실동 26-1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05	25	보조간선 도로	1,512.0	삼전동 광로 19	송파동 대3-106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삼학사로
변경	대로	3	105	25~28	보조간선 도로	1,512.0	삼전동 광로 19	송파동 대3-106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기정	대로	3	106	25	보조간선 도로	1,260.0	잠실동 대1-34	송파동 대1-32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잠실길
변경	대로	3	106	25~30	보조간선 도로	1,260.0	잠실동 대1-34	송파동 대1-32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기정	대로	3	107	25	보조간선 도로	2,910.5	송파동 대로1-32	신천동 중2-123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석촌호수로
변경	대로	3	107	25	보조간선 도로	1,157.7	송파동 대로1-32	잠실동 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변경	대로	1	A	35	보조간선 도로	483.0	잠실동 18	잠실동 18-1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변경	대로	2	A	30	보조간선 도로	1,256.7	잠실동 44	잠실동 35-2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24호 (1974.09.24)	
기정	대로	3	109	25	보조간선 도로	600.0	잠실동 (중로2-123)	잠실동 (광로-20)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8호 (1976.1.21)	장미APT 오른쪽도로
기정	대로	3	212	25	간선 도로	300.0	대3-212 (신천동11)	대3-212 (신천동1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399호 (2005.12.15)	성내역 주구중심도로
기정	대로	3	213	25~29	간선 도로	603.0	신천동길 (신천동7)	신천동길 (신천동11)	일반 도로		신천동길
변경	대로	3	213	25~28	간선 도로	630.8	신천동길 (신천동7)	신천동길 (신천동11)	일반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대로	3	A	25~28	간선 도로	811.1	신천동길 (신천동17-5)	신천동길 (신천동20-3)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	25	간선 도로	254.0	신천동 17번지	신천동 17번지	일반 도로		올림픽로 37길
변경	대로	3	B	25~40	간선 도로	719.0	신천동 17-3	신천동 17-3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413	20	간선 도로	310.0	잠사길 (신천동17-6)	잠사길 (신천동17-6)	일반 도로		잠사길
기정	중로	1	414	24	간선 도로	435.0	올림픽하단로 (잠실동 27)	올림픽하단로 (잠실동 27)	일반 도로		한가람로
변경	중로	1	414	20~24	간선 도로	1,587.7	올림픽하단로	올림픽 하단로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	20	-	2,048.0	-	-	일반 도로	송파구고시 제48호 (2008.08.14)	파크리오 북측
변경	중로	1	1	15~20	간선 도로	2,048.0	잠실동 7	신천동 25	일반 도로	송파구고시 제48호 (2008.08.14)	
기정	중로	1	-	20	-	420.0	-	-	일반 도로	송파구고시 제48호 (2008.08.14)	잠실고 동측
변경	중로	1	2	20	간선 도로	420.0	신천동 17-5	신천동 17-1	일반 도로	송파구고시 제48호 (2008.08.14)	
기정	중로	3	430	14.5	집산 도로	319.0	올림픽하단로 (잠실동27)	올림픽하단로 (잠실동27)	일반 도로		한가람로
기정	중로	2	b	18~56	보행자 전용도로	222.0	잠실동 1-1	신천동 27	보행자 전용도로	서울시고시 제279호 (2022.06.23)	조성후 기부채납
기정	중로	1	a	22	집산 도로	564	잠실동 32	잠실동 26-1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기정	중로	1	b	22	집산 도로	199	올림픽로	중 1-a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a	6	국지 도로	137	잠실동 27	잠실동 27	일반 도로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1-34	대로1-34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1,400.0m → 895.0m • 기종점 지번 변경	• 도로폭원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광로3-A	• 도로명 변경 - 규모 :대로1류 → 광로3류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35m → 40m - 연장 : 1,400.0m → 505.0m • 기종점 지번 변경	• 폭원에 맞는 도로명 부여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으로 변경 • 도로폭원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및 종점 변경
대로 3-104	대로 3-104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 → 552.5m • 기종점 지번 부여	• 기존의 기종점 지번 및 연장이 누락되어 반영
대로 3-105	대로 3-105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25m → 28m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으로 변경
대로 3-106	대로 3-106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25m → 25~30m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으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3-107	대로 3-107	• 종점 지번 변경	• 노선분리로 인한 종점 변경
	대로 1-A	• 도로명 변경 - 대로3류 → 대로1류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m → 35m - 연장 : 2,910.5m → 483.0m • 기종점 지번 변경	• 폭원에 맞는 도로명 부여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 변경 • 도로폭원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대로 2-A	• 도로명 변경 - 대로3류 → 대로2류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m → 30m - 연장 : 2,910.5m → 1256.7m • 기종점 지번 변경	• 폭원에 맞는 도로명 부여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 변경 • 도로폭원에 따른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대로 3-213	대로 3-213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29m → 25~28m - 연장 : 603.0m → 630.8m	• 노선분리로 인한 연장축소 및 폭원 변경
	대로 3-A	• 노선번호 부여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29m → 25~28m - 연장 : 603.0m → 811.1m •기종점 지번 변경	• 노선분리로 인한 노선번호부여, 연장변경, 기종점 변경
대로3-	대로3-B	• 노선번호 부여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5m → 25~40m - 연장 : 254.0m → 719.0m • 기종점 지번 변경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번호를 부여함 •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도록 도로폭원, 연장 및 기종점 변경
중로 1-414	중로 1-414	• 도로 폭원 및 연장 변경 - 폭원 : 24m → 20~24m - 연장 : 435.0m → 1,587.7m	•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도록 도로폭원 및 연장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	중로1-1	• 노선번호 부여 • 도로 연장 변경 - 폭원 : 20m → 15m~20m - 연장 : - → 2,048m • 기종점 지번 부여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번호를 부여함 • 아파트 재건축 시 기부채납된 도로(5m)를 반영한 폭원 변경 •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도록 연장 변경 • 기존의 기종점 지번이 누락되어 해당 지번으로 변경함
중로1-	중로1-2	• 노선번호 부여 • 도로 연장 변경 - 연장 : - → 420m • 기종점 지번 부여	• 노선번호가 누락되어 번호를 부여함 • 도시계획시설과 일치하도록 연장 변경 • 기존의 기종점 지번이 누락되어 해당 지번으로 변경함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로	잠실동 27일원	길이	149m	-	-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도로폭원에 따른 노선 분리로 인한 노선축소 및 기종점 변경
				폭	22m	-	-		
				높이	(시점) 지상 ~ 지하1m, (종점) 지상 ~ 지하7m	-	-		
				면적	3,268.0㎡	-	-		
기정	2	도로	잠실동 27일원	길이	211m	-	-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폭	22m	-	-		
				높이	(시점) 지하1m ~ 지하7m, (종점) 지하1m ~ 지하7m	-	-		
				면적	4,392.1㎡	-	-		
기정	3	도로	잠실동 27일원	길이	82m	-	-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도시계획시설 입체적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 참조 • 입체적 결정구간은 도로 구배 선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폭	22m	-	-		
				높이	(시점) 지상 ~ 지하1m, (종점) 지상 ~ 지하7m	-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면적	1,795.8㎡	-	-		

2) 지하도로

▌지하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폭	연장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도로	지하도로	잠실동12 (아시아지하보도)	20m	525m	2,431㎡ (460.0)	서울시고시 제184호 (1978.04.29)	-
기정	2	도로	지하도로	강동구 잠실역앞	60m	80m	8,442㎡ (1,329.0)	서울시고시 제520호 (1978.10.06)	통로 : 2,729㎡ 상가점용 : 3,317㎡ 부대시설 : 2,396㎡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3) 철도

▌철도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철도 본선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연장	최초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경과지			
기정	1	철도	고속철도 (2호선본선)	시청	잠실동	전철2호선	48.8km	건설부고시 제203호 (1975.12.20)	-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8호선본선)	□강동구 암사동 504	방이동 35	-	4,520m	송파구고시 제39호 (1994.08.25)	-

● 철도 정거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신천동1 (잠실시영아파트앞)	3,871.6	-	3,871.6	건설부고시 제231호 (1977.12.01)	성내 정거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철도	도시철도	잠실대교앞 광장	8,872.0	-	8,872.0	건설부고시 제231호 (1977.12.01)	잠실 정거장
기정	5	철도	도시철도	잠실동 35번지일대 (주공2단지앞)	6,919.0	-	6,919.0	건설부고시 제231호 (1977.12.01)	신천 정거장
기정	6	철도	도시철도	신천동 29번지 일대	22,403.6	-	22,403.6	건설부고시 제399호 (1991.07.24)	잠실 정거장
기정	7	철도	도시철도	방이동 44	5,774.0	-	5,774.0	건설부고시 제399호 (1991.07.24)	몽촌토성 정거장

4) 주차장

▌주차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신천동 14	30,264.0	-	30,264.0	서울시고시 제562호 (1989.12.29)	유수지 중복결정

나. 공간시설

1) 공원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잠실동19-3	11,704.9	-	11,704.9	건설부고시 제125호 (1974.12.06)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잠실동22-5	12,898.9	-	12,898.9	건설부고시 제125호 (1974.12.06)	
신설	3	공원	어린이공원	잠실동 35-4	-	증) 8,012.3	8,012.3	건설부고시 제125호 (1974.12.06)	
기정	4	공원	근린공원	잠실동44-6	6,669.1	-	6,669.1	건설부고시 제125호 (1974.12.06)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7일원	5,470.0	-	5,470.0	서울시고시 제399호 (2005.12.15)	
기정	8	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11일원	3,288.0	-	3,288.0	서울시고시 제399호 (2005.12.15)	
기정	9	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17-6	3,644.0	-	3,644.0	서울시고시 제399호 (2005.12.15)	
기정	10	공원	역사공원	신천동20-4일원	4,470.0	-	4,470.0	서울시고시 제399호 (2005.12.15)	
기정	11	공원	근린공원	신천동17-9	2,550.0	-	2,550.0	송파구고시 제41호 (2003.07.15)	
기정	12	공원	근린공원	신천동17-10	6,612.0	-	6,612.0	송파구고시 제41호 (2003.07.15)	
기정	13	공원	근린공원	신천동20-1	6,734.2	-	6,734.2	송파구고시 제41호 (2003.07.15)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4	공원	근린공원	풍납동389-2	6,611.6	-	6,611.6	건설부고시 제125호 (1974.12.06)	
기정	A	공원	근린공원	잠실동27일원	11,225.0	-	11,225.0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기정	A	공원	소공원	잠실동27일원	8,303.9	-	8,303.9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공원	• 공원신설 - 위치 : 잠실동 35-4 - 면적: 8,012.3㎡	• 송파구고시 제2002-67호에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변경)되고, 공원 조성이 완료되었지만 도시계획도면상 누락된 공원 시설 결정

2) 광장

▌광장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신천동	32,000.0 (6,011.6)	-	32,000.0 (6,011.6)	건설부고시 제78호 (1974.03.23)	
기정	2	광장	교통광장	방이동 44번지	12,210.0 (2,736.4)	-	12,210.0 (2,736.4)	건설부고시 제223호 (1977.11.09)	

※ ( )은 구역 내 해당사항임

3) 공공공지

▌공공공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A	공공공지	잠실동 27일원	8,548.5	-	8,548.5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다. 공공 · 문화체육시설

1) 학교

▌학교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 27-5	14,414.1	-	14,414.1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신천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잠실동19-4	13,581.4	-	13,581.4	서울시공고제9호 (1981.01.19)	신천중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19-1	10,635.8	-	10,635.8	서울시공고 제9호 (1981.01.19)	잠일초
기정	4	학교	고등학교	잠실동19-2	7,200.0	-	7,200.0	-	잠일고
기정	5	학교	중학교	잠실동22-1	16,585.2	-	16,585.2	서울시공고 제9호 (1981.01.19)	잠신중
기정	6	학교	고등학교	잠실동22-2	18,219.4	-	18,219.4	(2005.06.10.)	잠신고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22-4	11,544.5	-	11,544.5	서울시공고 제9호 (1981.01.19)	잠신초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35-6	6,000.1	-	6,000.1	송파구고시 제67호 (2002.12.05)	버들초
기정	9	학교	고등학교	잠실동35-1	10,445.2	-	10,445.2	건설부공고 제125호 (1974.12.06)	영동일고
기정	10	학교	초등학교	잠실동44-2	10,613.9	-	10,613.9	건설부공고 제125호 (1974.12.06)	송전초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학교	중학교	신천동7-1	13,977.9	-	13,977.9	건설부공고 제125호 (1974.12.06)	잠실중
기정	12	학교	초등학교	신천동7-2	9,916.9	-	9,916.9	건설부공고 제125호 (1974.12.06)	잠동초
기정	13	학교	초등학교	신천동17-2	7,146.0	-	7,146.0	-	잠현초
기정	14	학교	고등학교	신천동17-1	23,124.3	-	23,124.3	서울시공고 제9호 (1981.01.19)	잠실고
기정	15	학교	초등학교	신천동 20-2	7,146.0	-	7,146.0	서울시공고 제9호 (1981.01.19)	잠실초
기정	16	학교	중학교	풍납동388-16	14,392.2	-	14,392.2	서울시고시 제50호 (1982.2.3)	풍성중
기정	17	학교	초등학교	풍납동388-8	10,909.1	-	10,909.1	서울시고시 제50호 (1982.2.3)	풍성초
기정	18	학교	중학교	풍납동390	13,885.0	-	13,885.0	건설부공고 제125호 (1974.12.06)	풍납중

2) 공공청사

▌공공청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공공청사	-	신천동7일원	700.0	-	700.0		장미1차 (미집행)
기정	7	공공청사	-	잠실동 19-5, 19-6, 19-7	1,419.3	-	1,419.3		잠실지구, 잠실2동 우체국
기정	8	공공청사	-	잠실동22-3	5,061.3	-	5,061.3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기정	9	공공청사	-	잠실동22-7	956.9	-	956.9	서울시고시 제771호 (1988.09.19)	잠실2동 주민센터
기정	10	공공청사	파출소	잠실동35-5	150.0	-	150.0	송파구고시 제67호 (2002.12.05)	교통센터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공공청사	-	잠실동44-4, 44-5	1,192.8	-	1,192.8		잠실119 안전센터, 잠실3동 자치회관
기정	12	공공청사	-	신천동20-5	1,650.0	-	1,650.0		잠실4동 주민센터, 우체국, 파출소
기정	13	공공청사	-	풍납동388-6	7,163.9	-	7,163.9	서울시고시 제48호 (1984.01.24)	잠실, 송파 세무서
기정	A	공공청사	-	잠실동27일원	1,000.0	-	1,000.0	서울시고시 제432호 (2024.09.05)	-

▌공공청사 건축범위 설정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기정	A	공공청사	잠실동27일원	1,000.0	50	250	-	-

라. 방재시설

1) 유수지

▌유수지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	신천동 14	30,264.0	-	30,264.0	서울시고시 제7호 (74.01.29)	주차장 중복결정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및 획지 설정기준

구분		설정기준	비고
가구		• 8m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블록(정비계획으로 결정한 도로시설 제외)	12개소
계획단위	특별계획구역	• 정비사업 추진단지(추진위 승인 ~ 준공전) • 미추진 단지 중 부지면적 1만㎡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4개소
	획지	• 정비계획이 기 결정(정비사업 완료)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 •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설계획 등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 • 2개 이상의 필지에 단일 건축물이 조성된 경우	59개소

▌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도면번호)	위 치	면적(㎡)	비 고
A	송파구 잠실동 19대 일원	276,146.1	
B	송파구 잠실동 22대 일원	284,484.1	
C	송파구 잠실동 35대 일원	181,613.3	
D	송파구 잠실동 44대 일원	145,104.6	
E	송파구 잠실동 27대 일원	358,077.0	
F	송파구 신천동 7대 일원	312,190.8	
G	송파구 신천동 17-4대 일원	6,933.0	
H	송파구 신천동 17대 일원	109,245.3	
I	송파구 신천동 20대 일원	220,483.1	
J	송파구 신천동 17-6대 일원	75,684.5	
K	송파구 신천동 20-4대 일원	112,558.5	
L	송파구 풍납동 514대 일원	77,990.3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계획면적(㎡)	
신설	A	A1	잠실동 19-4학	13,581.4	13,581.4	신천중
		A2	잠실동 19대	224,289.1	224,289.1	잠실 엘스
		A3	잠실동 19-1학	10,635.8	10,635.8	잠일초
		A4	잠실동 19-2학	7,200.0	7,200.0	잠일고
		A5	잠실동 19-5대	215.3	215.3	잠실지구대
		A6	잠실동 19-6대	700.0	700.0	송파 어린이 도서관
		A7	잠실동 19-7대	504.0	504.0	잠실2동 우체국
		A8	잠실동 19-8대	1,000.0	1,000.0	잠실 엘스 상가 A동
		A9	잠실동 19-9대	6,315.6	6,315.6	잠실 파인애플 상가
신설	B	B1	잠실동 22대	211,156.1	211,156.1	리센츠
		B2	잠실동 22-1학	16,585.2	16,585.2	잠신중
		B3	잠실동 22-2학	18,219.4	18,219.4	잠신고
		B4	잠실동 22-3대	5,061.3	5,061.3	강동송파교육지원청
		B5	잠실동 22-4학	11,544.5	11,544.5	잠신초
		B6	잠실동 22-6대	8,061.8	8,061.8	잠실리센츠상가
		B7	잠실동 22-7대	956.9	956.9	잠실2동 주민센터
신설	C	C1	잠실동 35대	150,784.8	150,784.8	트리지움
		C2	잠실동 35-1학	10,445.2	10,445.2	영동일고
		C3	잠실동 35-2대	5,229.0	5,229.0	트리지움 상가
		C4	잠실동 35-3대	991.9	991.9	에듀엘와이에스 유치원
		C5	잠실동 35-5대	150.0	150.0	송파경찰서 교통정보센터
		C6	잠실동 35-6학	6,000.1	6,000.1	버들초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계획면적(㎡)	
신설	D	D1	잠실동 44대	122,682.0	122,682.0	레이크팰리스 아파트
		D2	잠실동 44-1대	1,070.8	1,070.8	레이크팰리스 상가B
		D3	잠실동 44-2학	10,613.9	10,613.9	송전초
		D4	잠실동 44-3대	2,876.0	2,876.0	레이크펠리스 상가A
		D5	잠실동 44-4대	662.0	662.0	잠실3동 자치회관2관
		D6	잠실동 44-5대	530.8	530.8	잠실119안전센터
신설	E	E1	잠실동 27대	296,846.1	211,397.4	특별계획구역1 (잠실 주공5단지)
			잠실동 27-1대	998.4		
			잠실동 27-2대	1,149.7		
			잠실동 27-6대	8,691.4		
			잠실동 27-7공	6,637.9		
			잠실동 27-8종	1,234.4		
			잠실동 27-9대	2,366.7		
		E2	잠실동 27대	296,846.1	61,791.8	
			잠실동 27-10대	3,929.4		
		E3	잠실동 27대	296,846.1	1,320.0	
		E4	잠실동 27대	296,846.1	1,322.0	
		E5	잠실동 27대	296,846.1	330.0	
		E6	잠실동 27대	296,846.1	1,000.0	
		E7	잠실동 27대	296,846.1	250.0	
		E8	잠실동 27-5학	296,846.1	14,414.1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계획면적(㎡)	
신설	F	F1	신천동 7대	143,953.8	281,926.8	특별계획구역2 (장미 1차·2차·3차)
			신천동 7-1학	14,434.7		
			신천동 7-2학	9,916.9		
			신천동 7-5종	793.5		
			신천동 7-6대	313.8		
			신천동 7-7공	5,007.0		
			신천동 7-10도	206.0		
			신천동 9도	9,685.6		
			신천동 10-1도	8,639.8		
			신천동 10도	1,210.0		
			신천동 11대	84,214.0		
			신천동 11-3도	4,622.0		
			신천동 11-5공	1,009.5		
			신천동 13도	6,657.0		
			신천동 15도	21,361.8		
		F2	신천동 14유	30,264.0	30,264.0	신천유수지
신설	G	G1	신천동 17-4대	4,383.0	4,383.0	파크리오 상가A동
신설	H	H1	신천동 17대	72,363.0	72,363.0	파크리오
		H2	신천동 17-1대	23,124.3	23,124.3	잠실고
		H3	신천동 17-2학	7146.0	7146.0	잠현초
신설	I	I1	신천동 20대	199,400.7	199,400.7	파크리오
		I2	신천동 20-2학	7,146.0	7,146.0	잠실초
		I3	신천동 20-5대	1,650.0	1,650.0	잠실4동 주민센터
		I4	신천동 20-6대	3,780.7	3,780.7	파크리오 상가B동
		I5	신천동 20-7대	1,185.8	1,185.8	예한교회
		I6	신천동 20-52대	585.7	585.7	햇빛유치원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획지번호 (도면번호)	위치	공부상면적 (㎡)	계획면적(㎡)	
신설	J	J1	신천동 17-6대	72,802.3	63,541.0	특별계획구역3 (미성·크로바)
		J2	신천동 17-6대	72,802.3	4,369.0	
신설	K	K1	신천동 20-4대	109,864.8	101,151.3	특별계획구역4 (진주)
		K2	신천동 20-4대	109,864.8	2,878.5	
신설	L	L1	풍납동 388-16학	14,392.20	14,392.20	풍성중
		L2	풍납동 388-8학	10,909.10	10,909.10	풍성초
		L3	풍납동 388-6대	7,163.9	7,163.9	송파/잠실 세무서 분할가능
		L4	풍납동 514대	22,756.2	22,756.2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L5	풍납동 514-1대	1,280.2	1,280.2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상가
		L6	풍납동 389-1대	992.10	992.10	풍납빌딩
		L7	풍납동 390학	13,842.90	13,842.90	풍납중
			풍납동 390-1학	42.1	42.1	

※ 상기면적은 향후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권장용도

구분	도면표시	권장용도		비고
		전층	저층부(1~2층)	
권장용도	a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판매시설	
	b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c	•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 업무시설(청년창업공간) •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 집 • 사회복지시설	-	
	d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2) 불허용도

구분	도면표시	전층불허용도	비고
불허용도	A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업무시설(1층에 한함), 총포판매소, 장의사, 게임제공업소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 교정 및 군사시설 • 지목상 "종"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별표1] 6. 종교시설 이외 용도	
	B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 단, 위 용도 중 시(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외하며 [별표1]을 가이드라인으로 함	
	C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도 이외 용도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별표1] 입지여건별 비주거시설 비율 가이드라인



※ 불허용도 B에 해당하는 필지 또는 획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경우, 시(市)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전환 가이드라인을 적용함

※ 역세권이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이내 범위(사각형)를 말하며, 대지면적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함

※ 주거용도 전환에 따른 공공기여 : 주거용도 전환비율의 5~10%

- 대지면적 5천㎡미만 5%, 1만㎡이상 10%

※ 주거용도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 복지주택에 해당

나. 건축물 밀도에 관한 결정

1) 건폐율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코드구분
제3종일반주거지역	50%이하	RA-3
		CG-3 (舊 중심시설용지)
		CN-3 (舊 중심시설용지)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적용	RA-3(완료형)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의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을 따르도록 함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건폐율

연번	건폐율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A2	16.41%	엘스 (2008)	송파구고시 제2009-4호
B1	15.17%	리센츠 (2008)	건축물대장상 건폐율 적용
C1	14.41%	트리지움 (2007)	송파구고시 제2007-51호
D1	14.09%	레이크팰리스 (2006)	송파구고시 제 2006-66호
H1	14.19%	파크리오1 (2008)	송파구고시 제2008-49호
I1		파크리오2 (2008)	
L4	22.02%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2019)	송파구고시 제2019-85호

2) 용적률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용적률			비고	코드구분
	기준	허용	상한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230%이하	230%이하	300%이하	-	RA-3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 2배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 적용 가능 ※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획기준 별도 결정 가능	CG-3 (舊 중심시설용지) CN-3 (舊 중심시설용지)
	-	-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적용	RA-3(완료형)

※ 상한용적률은 향후 변화된 구역여건을 반영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완화항목 및 인센티브를 확인하여 심의를 통하여 수립 및 결정
※ 상한용적률 산정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그 외의 기타 획지의 경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상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계획기준에 따름
※ 위의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사업이 준공된 단지(필지)는 관련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을 따름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용적률

연번	용적률	아파트명	해당 고시문
A2	275.99%	엘스 (2008)	송파구고시 제2009-4호
B1	275.25%	리센츠 (2008)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적용
C1	274.75%	트리지움 (2007)	송파구고시 제2007-51호
D1	273.27%	레이크팰리스 (2006)	송파구고시 제 2006-66호
H1	283.63%	파크리오1 (2008)	송파구고시 제2008-49호
I1		파크리오2 (2008)	
L4	299.71%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2019)	송파구고시 제2019-85호

다. 건축물의 높이계획

1) 높이 계획

구분	높이		비 고	코드구분
	기준	최고		
재건축단지 (아파트)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RA-3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적용			RA-3(완료형)
舊 중심시설용지	32m 이하	40m 이하	단, 공동주택이 주용도로서 부지면적 5,000㎡이상 또는 10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150세대)이상 (공동)개발시 또는 공동주택 통합개발시 코드 RA-3 적용가능 ※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계획기준 별도 결정 가능	CG-3
				CN-3

※ 최고높이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3-5.높이계획에 따른 최고높이 설정 프로세스 적용하여 산정
- 최소 20m, 최대 40m 이하로 결정 (기준높이는 최고높이의 0.8배 적용)
- 최대 40m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접도조건 및 대지여건 등에 따라 유연한 적용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을 따름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으로 결정된 높이

획지	높이	아파트명 (준공연도)	해당 고시문
A2	17층 ~ 34층	엘스 (2008)	송파구고시 제2009-4호
B1	35.95m ~ 99.51m	리센츠 (2008)	건축물대장상 높이 적용
C1	19층 ~ 32층	트리지움 (2007)	송파구고시 제2007-51호
D1	19층 ~ 32층	레이크팰리스 (2006)	송파구고시 제 2006-66호
H1	20층 ~ 36층	파크리오1 (2008)	송파구고시 제2008-49호
I1		파크리오2 (2008)	
L4	102.9m	잠실 올림픽공원 아이파크 (2019)	송파구고시 제2019-85호

▌기준높이 완화 인센티브 계획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1	공동개발 (지정/권장)	조성시	• 기준높이 × **α**	• 공동개발계획 이행시 : **α**=0.5 • 자율적 공동개발시 **α**=1.0
2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설치의무면적) / 대지면적)] × 2.5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실내공개공지 조성시 완화계수 2.5 → 3.0적용
3	쌈지형 공지	조성시	• 기준높이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2.5 × **α**	• 필로티형 : **α**=0.5 • 개방형 : **α**=1.0
4	가로경관 개선 (설계공모 시행)	심의결과에 따름	• 기준높이 × 0.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조성시	•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10%이상 공익시설 설치 시 기준높이 10m완화	•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계획수립시 결정한 시설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자치구 포함)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6	건축물 용도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 기준높이 × 0.1	• 저층부 바닥면적의 60%이상 확보시 인정
		권장용도 계획시	• 기준높이 × 0.1	• 권장용도 연면적의 합이 총 연면적의 20%이상 확보 시 인정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7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시	• 기준높이 X 가로지장물 개수 X 0.2	• 건물내부 또는 대지내 설치 시
8	기반시설	기부채납시	• 기준높이 X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대지면적)] X 10.0	-

※ 기준높이 완화항목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와 중복적용 할 수 없음
※ 기부채납에 따른 완화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공된 부지면적은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건축물 배치 · 형태에 관한 결정

가. 건축선 및 대지 내 공지·통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특별계획구역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3~10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벽면한계선	광역통경축변(송파대로)	• 통경축변 15층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 후퇴(11층 이상부터 적용) - 광역통경축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 지구통경축 : 도로경계선 등으로부터 8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지구통경축변 (잠실로, 올림픽로35나길)		
대지 내 공지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대지 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획지 A2, B1, C1, D1, H1, I1, L4	•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하여 폭10m로 계획 (24시간 개방)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보차혼용통로		• 학교, 공공시설 진출입 및 맹지해소를 위해 보차혼용통로 지정(폭 10~33m)	조성위치는 결정도를 따름

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배치 및 형태	공동주택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 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동 형태가 상이하더라도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 고려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 대지와 도로의 경계부에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커뮤니티시설 및 열린 조경시설 등을 배치하여 생활가로를 통해 열린공간으로 계획 •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4-3-2. 공동주택 리모델링형 계획수립기준 적용	
		부대 및 복리시설	• 간선가로변 및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우선 배치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3층이하, 1층부 층고는 4m이상으로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정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확보	-
	기타 외관 요소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담장의 설치	• 담장설치 시 식재 또는 투시형 담장 설치 권장	
		옥외 광고물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준수	

3)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 1	잠실동 27번지 일원	-	증) 358,077.0	358,077.0	잠실주공5
신설	특별계획구역 2	신천동 7번지 일원	-	증) 281,926.8	281,926.8	장미 1·2·3차
신설	특별계획구역 3	신천동 17-6대	-	증) 75,684.5	75,684.5	미성·크로바
신설	특별계획구역 4	신천동 20-4대	-	증) 112,558.5	112,558.5	진주

▌특별계획구역 지정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사유
신설	특별계획구역 1~4	• 공동주택 단지 중 정비계획 수립 완료 및 수립대상 구역으로 재건축 추진단지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사업계획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나.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1) 유형Ⅰ : 정비계획 수립 완료형

▌특별계획구역 1 (잠실주공5 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7번지	-
면적			• 358,077.0㎡	-
용도지역 · 지구			• 제1종일반 · 제2종일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 서울시고시 제2024-432호(2024.9.5.)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준용 - 공동주택용지 : 도로, 공원, 학교, 공공공지, 공공청사, 한강보행교 설치(64,757.3㎡) - 복합용지 : 도로, 공원 설치(18,025.0㎡) • 한가람로 연결(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지하차도 설치 및 비용 분담 ※ 향후 한가람로 미개설구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범위, 방식,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계획과와 협의 필요	지침도에 따름
획지계획			• 획지 E-1(211,397.4㎡), 획지E-2(61,791.8㎡), 획지E-3(1,320.0㎡), 획지E-4(1,322.0㎡), 획지 E-5(330.0㎡), 획지E-6(1,000.0㎡), 획지E-7(250.0㎡), 획지E-8(14,414.1㎡)	-
허용 용도	E1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E2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 · 업무 · 문화 및 집회시설	-
	E3,E4		• 종교 · 근린생활시설	-
허용 용도	E5		• 우체국 · 근린생활시설	-
	E6		• 주민센터	-
	E7		• 파출소	-
	E8		• 초등학교	-
밀도 계획	건폐율	E1,E3, E4,E5, E6,E7	• 50% 이하	-
		E2,E8	• 60% 이하	
	용적률	E1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E2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 400% 이하	–
		E3,E4,E5,E7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E6	• 250%이하	–
		E8	• 200%이하	–
밀도계획	높이	E1	• 주택용지 : 195m이하(49층)	–
		E2	• 복합용지 : 280m이하(70층)	–
		E3,E4,E5,E6,E7	• 기준높이 32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간선변(송파대로,올림픽로), 내부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기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대지내공지	공공보행통로		• 복합용지 가각부 ~ 한강변(주택용지), 잠실역 ~ 북서측 가각부(복합용지) – 대지내 공공보행통로 10m	지침도에 따름
	공개공지		• 복합용지(잠실역 사거리 인근) 1개소 위치지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기타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고시 제2024-432호(2024.9.5.))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속통합기획 추진시 신속통합기획(자문)을 우선하여 적용 가능함	–

▌ 특별계획구역 3 (미성·크로바 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17-6번지 일원	-
면적			• 75,684.5㎡	-
용도지역 · 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3-146호(2023.11.30.)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준용 - 도로 및 공원 설치(7,774.5㎡)	-
획지계획			• 획지J1(63,541.0㎡), 획지J2(4,369.0㎡)	-
허용용도	J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J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밀도계획	건폐율	J1	• 50% 이하	-
		J2	• 60% 이하 - 특별건축구역 특례적용(서울시고시 제2021-700호(21.12.16.))	-
	용적률	J1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J2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높이	J1	•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J2	• 기준높이 32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구역경계선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공원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3-146호(2023.11.30.))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통합 재건축 시 주택용지 계획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공공기여(5~10%) 별도 이행	

▌특별계획구역 4 (진주 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원	-
면적			• 112,558.5㎡	-
용도지역 · 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공공시설 등 계획			•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2-136호(2022.8.4.)에 따라 결정된 공공시설계획 준용 - 도로 및 공원 설치(8,528.7㎡)	-
획지계획			• 획지K1(101,151.3㎡), 획지K2(2,878.5㎡)	-
허용용도	K1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K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
밀도계획	건폐율	K1	• 50% 이하	-
		K2	• 50% 이하	-
	용적률	K1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라 허용용적률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K2	• 기준(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적용적률 2배이하	-
	높이	K1	•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K2	• 기준높이 32m 이하 • 최고높이 40m 이하	-
건축선	건축한계선		• 도로연접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획지 및 공원 연접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지침도에 따름
기타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전 정비계획이 결정고시 되거나,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된 구역은 해당 고시 된 사항으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세부개발계획 변경 시 본 지침을 따름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2-136호(2022.8.4.)) •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포함)이 수립된 단지가 경미한 변경사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할 경우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통합 재건축 시주택용지 계획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공공기여(5~10%) 별도 이행	-

2) 유형Ⅱ: 재건 추진형

▌특별계획구역 2 (장미1·2·3차 APT)

구 분		계획내용	비고
위 치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1번지 일대	-
면적		• 281,926.8㎡	-
용도지역 · 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 ※ 신속통합기획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정비기반시설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검토 가능	-
공공기여율		•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순부담) 비율 : 10% 내외 원칙 • 당초 중심시설용지(주구중심)주거전환 시 공공기여 별도 이행 - 공공기여량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에 따름 ※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별도이행	-
공공시설 등 계획		• 북측 한가람로의 도로 기능 및 교통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로 폭원 및 차로계획 검토 (폭원 확장 15m → 20m 검토) - 한가람로(주공5단지~장미아파트) 지하차도 설치 및 비용 분담 • 공원, 학교, 공공청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지침도에 따르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위치, 형상, 규모 등은 건축배치 계획과 연계하여 변경 검토	지침도에 따름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건축물 밀도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30% 이하 -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2022.11)」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준수 • 상한용적률 : 300% 이하	-
	높이	•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름 - 기본계획 변경 시 변경된 기준 적용	-
건축선	건축 한계선	• 광역통경축변(송파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m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배치 시 5m 이상, 일반건축물(주상복합포함) 건축 시 3m 이상 후퇴 • 지구통경축변(올림픽로35나길):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배치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포함) 건축 시 3m 이상 후퇴 • 그 외 : 3m	-
	벽면 한계선	• 광역통경축변(송파대로)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3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배치 시 8m 이상, 일반건축물(주상복합포함) 건축 시 6m 이상 후퇴 • 지구통경축변(올림픽로35나길) : 1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벽면을 도로경계선으로부터 8m 후퇴 (11층 이상부터 적용) - 단,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배치 및 일반건축물(주상복합포함) 건축 시 6m 이상 후퇴	-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구간 : 도로의 보행공간과 일체화된 보행공간 조성	보도 부속형
대지내 통로	공공보행통로	• 잠실나루역과 한강 및 주변지역 보행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폭10m) 조성(24시간 개방)	
	보차혼용통로	• 학교 등 공공시설의 맹지해소를 위한 보차혼용통로(10m) 지정	
건축물 배치 및 형태	통경구간	• 지구통경축 : 폭 20m	지침도에 따름
	수변특화 배치구간	• 한강변 : 건축한계선으로부터 30m - 한강변에 중저층형(15~20층) 주동을 배치하여 수변 주거지역의 변화감있는 수변경관 형성이 유도되도록 계획 ※ 서울시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및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름 (계획 변경시 변경기준 적용)	
	배치 및 형태	• 공동주택 - 건축물 배치 시 「주변과 소통하는 열린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2020.01, 서울시)에 따라 배치계획 수립 - 도로변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소음저감을 위한 공간 확보 - 단지 내부 배치는 타워형, 판상형, 혼합형의 혼합 배치로 일률적인 판상형태의 이미지 탈피 - 주거지로서의 차분한 분위기와 안정감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성하되, 미관적으로 단조롭지 않고 세련되게 연출	

구 분		계획내용	비고
		-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형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 및 기준 준용하여 계획 • 부대 및 복리시설 - 전면도로를 향하여 전면부및 주출입구 계획 - 주택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법적 면적의 1/3이상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로 확보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상1층 ~ 지상3층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	
	기타 외관요소	• 옥외설비 : 에어컨 실외기가 외벽면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차폐가능한 별도의 설치공간 계획 • 담장의 설치 :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시높이 1m 이하의 투시형목재 또는 식재등의 마운딩가능 • 광고물 설치제한 - 판류형 간판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설치 - 건물 신축 시 간판설치 및 교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판게시틀 등의 입면디자인 도입	
교통처리계획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차량출입 불허구간이 지정된 구간 내에서는 대지 안으로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조성	
기타에 관한 사항		• 세부개발계획 수립방식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 사업 • 본 지침은 중심시설용지와 공동주택을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서, 공동주택과 통합개발 하지 않을 시 중심시설용지는 분류코드 CG-3을 적용함 - 대상지 여건, 계획이득 등을 고려하여 관련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 밀도, 높이, 공공기여율 등 계획기준 별도 결정 가능 ※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 등에 따름 • 신속통합기획(자문)을 우선하여 적용 가능	

▌ 허용용적률 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인센티브	비고
1	우수디자인		• 15%p	총 20%p 이상 선택적 이행
2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 10%p	
3-1	녹색건축물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 6%p	
		녹색건축 우수 등급	• 3%p	
3-2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 3%p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20% 초과	• 3%p	
		20% 이하 ~ 15% 초과	• 2%p	
		15% 이하 ~ 10% 초과	• 1%p	
5	지능형 건축물	1등급	• 15%p	
		2등급	• 12%p	
		3등급	• 9%p	
		4등급	• 6%p	
6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α=1 이하	• 10%p이내	
7	열린단지	• 개방공간, 열린단지 조성기준 준수(위원회 인정시) - 개방되는 부분은 결정도면에 표시(준공후에도 유지)	• 5%p	
8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X (조성면적/대지면적) X α * α=1 이하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시 / 실내형 공개공지 포함	• 5%p이내	
9	돌봄시설	• 놀이돌봄시설을 전체 주민공동시설(의무면적)의 1/5이상 설치 - 국공립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우리동네 키움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실내어린이 놀이터 등 설치 및 제공(무상임대)	• 5%p	

구분		적용기준	인센티브	비고
10	방재안전	• 시설 성능을 의무기준 보다 초과 설치 · 개선하는 경우 관련 위원회 심의 · 자문을 통해 적용	• 5%p	
11	지역기반시설 정비	• 기준용적률×(환산부지면적/대지면적)×α * α=1 이하 - 환산부지면적 : 정비비용/사업지 대지가액 (市 기부채납 인센티브 운영기준 준용)	• 5%p이내	
12	지역특화	• 지역여건에 맞는 항목 및 산정방식 신설(위원회에서 인정시) - 감성디자인 등 정책사업, 지역 맞춤형 항목 신설 가능	• 10%p이내 (합산)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지역	계획내용	비고
교통처리	단지 내 차량동선	공동주택	•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이 교차하는 구간은 보행우선 통행구조로 조성	-
	단지 내 보행동선	공동주택	• 보행자도로는 인접단지의 보행자도로 및 공원과 연계하여 조성 • 보행축 상에 조경시설 및 주민휴게시설, 커뮤니티시설 설치	-

2.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처리 등)의규정에 의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4항 제9호 규정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 대지안의 공지 조성방법의 변경(신설, 폐지 포함)
3. 수종·조경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4. 대지내 통로(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의 성격, 설치계획(위치변경 및 신규설치에 한함)의 변경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변경(법령이나 지침의 제 · 개정에 따라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시행지침의 변경 또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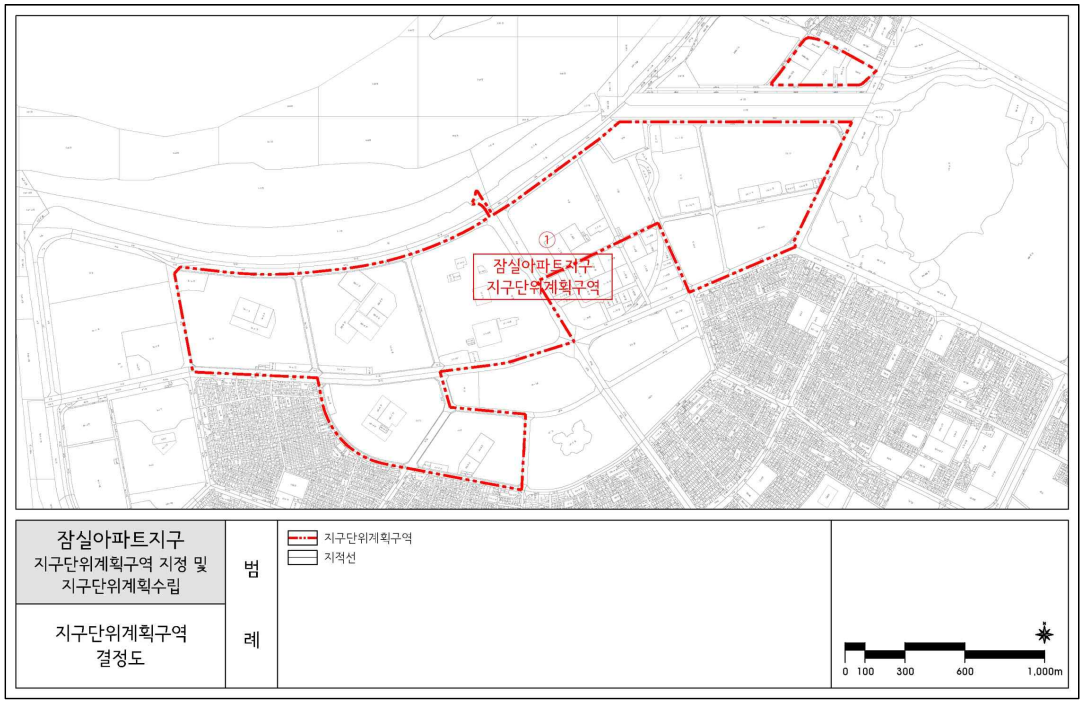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48),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1) 및 주택사업과(☎02-2147-28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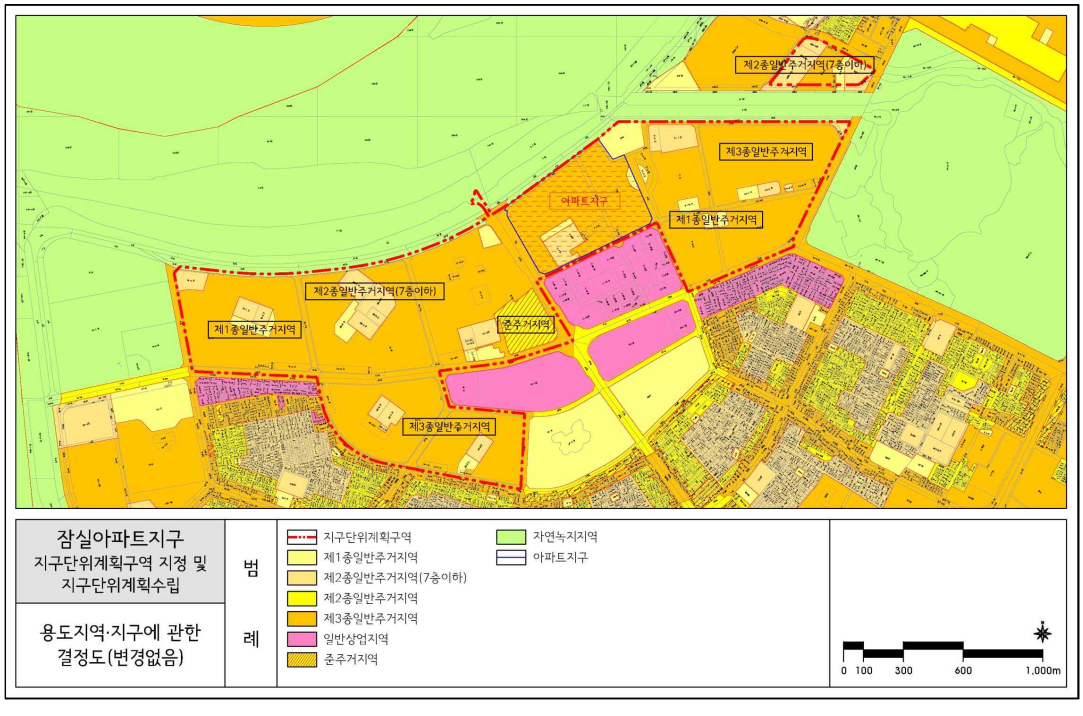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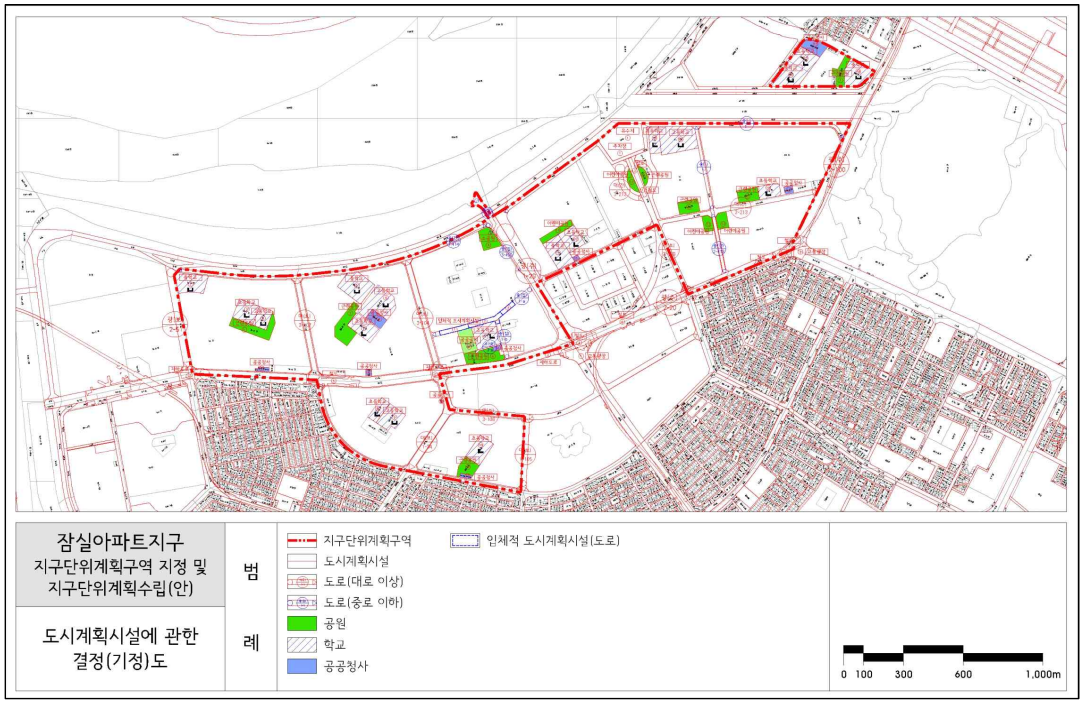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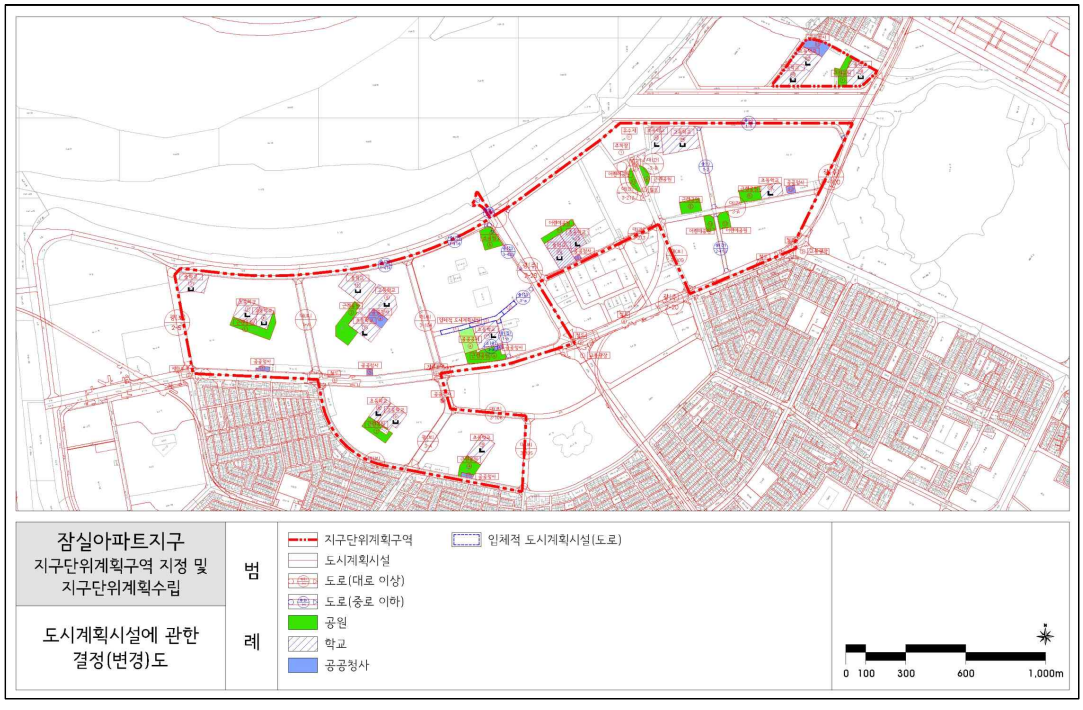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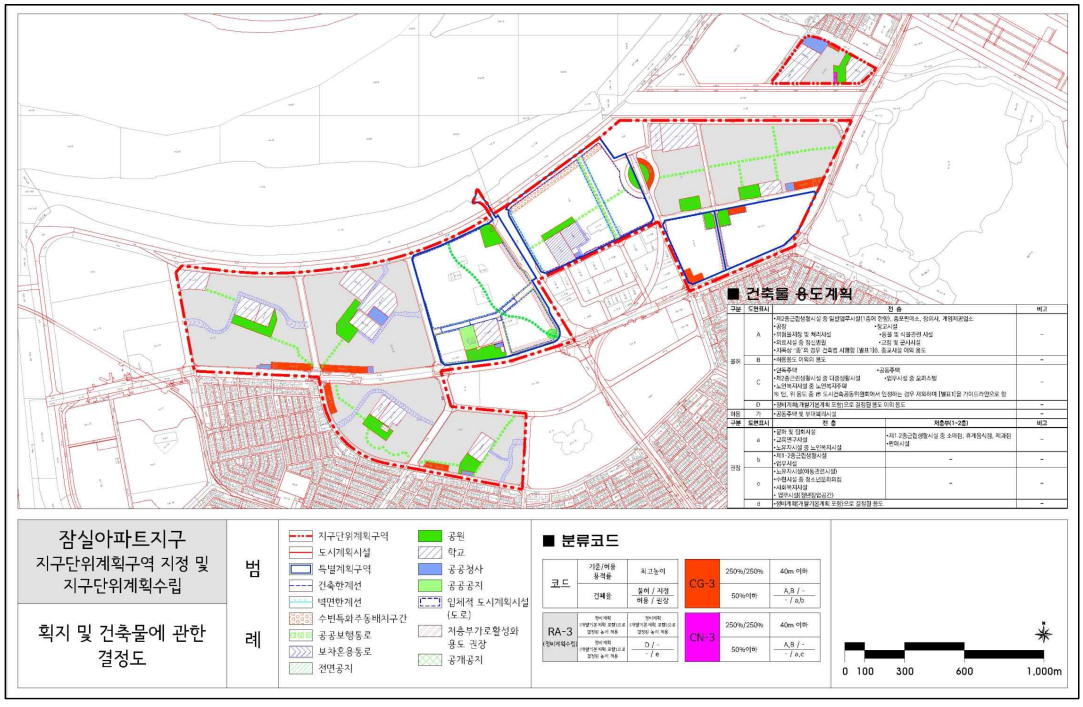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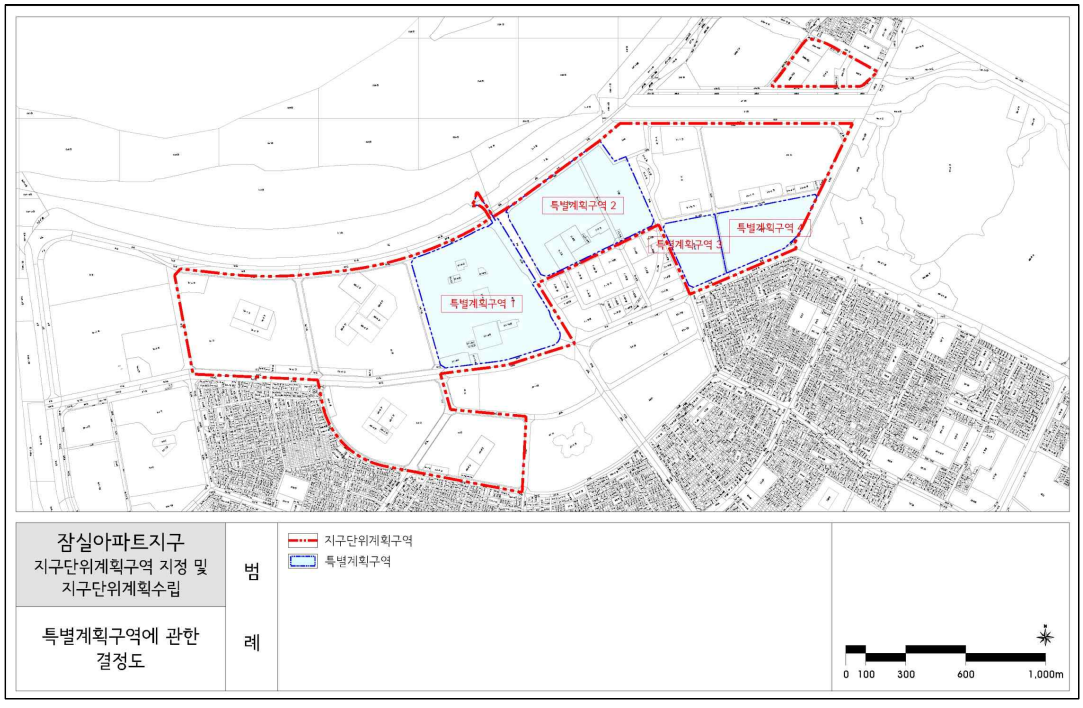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특별계획구역,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 수변특화주동배치구간,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전면공지, 공원, 학교, 공공청사, 공공공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도로), 저층부가로활성화 용도 권장, 공개공지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범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종전)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에 의거 (종전)아파트지구(용도지구)로 최초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32호(2024.09.05.)로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변경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3.1.1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주택법(법률 제6916호)」 부칙 제9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종전)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구[(종전)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①	잠실 아파트 지구	계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2,347,112.2	감) 2,065,455.9	281,656.3	1976.08.21 (건고 131)
			저밀		1,379,535.2	감) 1,379,535.2	-	
			고밀		967,577.0	감) 685,920.7	281,656.3	

2.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잠실 아파트 지구	저밀	아파트지구 면적변경 (1,379,535.2㎡→0㎡)	도시여건 및 제도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상실된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함에 따라 아파트지구를 변경(제척)함 (금번 아파트지구 제척 시 재건축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는 구역은 존치)
		고밀	아파트지구 면적변경 (967,577.0㎡→281,656.3㎡)	

Ⅱ.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저밀 : 폐지

[2]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고밀

1. 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의 명칭 및 위치

가. 명칭 :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나. 위치 : 송파구 잠실동, 신천동, 풍납동 일대

2.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

1) 토지이용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총괄표(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967,577.0	100.00	281,656.3	100.0	감)	685,920.7
주거용지	소 계	659,196.4	68.1	198,558.6	70.4	감)	460,637.8
	주택용지	597,404.6	61.7	198,558.6	70.4	감)	398,846.0
						존치	장미1, 2, 3차
	복합용지	61,791.8	6.4	-	-	감)	61,791.8
중심시설용지	소 계	33,722.4	3.5	25,194.8	8.9	감)	8,527.6
	주구중심	33,722.4	3.5	25,194.8	8.9	감)	8,527.6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239,386.6	24.7	57,109.40	20.3	감)	182,277.2
	도로	101,466.5	10.5	23,756.6	8.5	감)	77,709.9
	공원	43,012.5	4.4	8,758.0	3.1	감)	34,254.5
	학교	77,495.2	8.0	23,894.8	8.5	감)	53,600.4
	공공청사	8,863.9	0.9	700.0	0.2	감)	8,163.9
	공공공지	8,548.5	0.9	-	-	감)	8,548.5
기 타	소계	35,271.6	3.7	793.5	0.3	감)	34,478.1
	종교	3,435.5	0.4	793.5	0.3	감)	2,642.0
	하수처리시설	30,264.0	3.1	-	-	감)	30,264.0
	기타건축물	992.1	0.1	-	-	감)	992.1
	근린생활시설용지	580.0	0.1	-	-	감)	580.0

※ 존치 대상 단지의 재건축 사업구역 내 건축물도 함께 존치함

나) 주구별 토지이용계획

▌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358,077.0	100.0	-	-	감)	358,077.0
주거용지	소 계	273,189.2	76.3	-	-	감)	273,189.2
	주택용지	211,397.4	59.0	-	-	감)	211,397.4
	복합용지	61,791.8	17.3	-	-	감)	61,791.8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81,665.8	22.8	-	-	감)	81,665.8
	도로	38,174.3	10.7	-	-	감)	38,174.3
	공원	19,528.9	5.4	-	-	감)	19,528.9
	공공공지	8,548.5	2.4	-	-	감)	8,548.5
	학교	14,414.1	4.0	-	-	감)	14,414.1
	공공청사	1,000.0	0.3	-	-	감)	1,000.0
기 타	소계	3,222.0	0.9	-	-	감)	3,222.0
	종교	2,642.0	0.7	-	-	감)	2,642.0
	근린생활시설용지-1	330.0	0.1	-	-	감)	330.0
							우체국
	근린생활시설용지-2	250.0	0.1	-	-	감)	250.0
							파출소

▌2-1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98,031.5	100.0	181,996.2	100.0	감)	16,035.3
주거용지	소 계	119,401.4	60.3	119,401.4	65.5		-
	주택용지	119,401.4	60.3	119,401.4	65.5		-
중심시설용지	소 계	22,180.5	11.2	22,180.5	12.2		-
	주구중심	22,180.5	11.2	22,180.5	12.2		-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55,656.1	28.1	39,620.8	21.8	감)	16,035.3
	도 로	25,591.3	12.9	9,556.0	5.3	감)	16,035.3
	공 원	5,470.0	2.8	5,470.0	3.0		-
	학 교	23,894.8	12.1	23,894.8	13.1		-
	공공청사	700.0	0.3	700.0	0.4		-
기 타	소 계	793.5	0.4	793.5	0.4		-
	종 교	793.5	0.4	793.5	0.4		-

▌2-2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45,235.2	100.0	99,660.1	100.0	감) 45,575.1
주거용지	소 계	79,157.2	54.5	79,157.2	79.5	-
	주택용지	79,157.2	54.5	79,157.2	79.5	-
중심시설용지	소 계	3,014.3	2.1	3,014.3	3.0	-
	주구중심	3,014.3	2.1	3,014.3	3.0	-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32,799.7	22.6	17,488.6	17.5	감) 15,311.1
	도 로	29,511.7	20.3	14,200.6	14.2	감) 15,311.1
	공 원	3,288.0	2.3	3,288.0	3.3	-
기타	소 계	30,264.0	20.8	-	-	감) 30,264.0
	하수처리시설	30,264.0	20.8	-	-	감) 30,264.0

▌3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75,684.5	100.0	-	-	감) 75,684.5
주거용지	소 계	63,541.0	83.9	-	-	감) 63,541.0
	주택용지	63,541.0	83.9	-	-	감) 63,541.0
중심시설용지	소 계	4,369.0	5.8	-	-	감) 4,369.0
	주구중심	4,369.0	5.8	-	-	감) 4,369.0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7,774.5	10.3	-	-	감) 7,774.5
	도 로	4,130.5	5.5	-	-	감) 4,130.5
	공 원	3,644.0	4.8	-	-	감) 3,644.0

▌4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112,558.5	100.0	-	-	감)	112,558.5
주거용지	소 계	101,151.3	89.9	-	-	감)	101,151.3
	주택용지	101,151.3	89.9	-	-	감)	101,151.3
중심시설용지	소 계	2,878.5	2.5	-	-	감)	2,878.5
	주구중심	2,878.5	2.5	-	-	감)	2,878.5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8,528.7	7.6	-	-	감)	8,528.7
	도 로	4,058.7	3.6	-	-	감)	4,058.7
	공 원	4,470.0	4.0	-	-	감)	4,470.0

▌5주구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기 정		변경 후		비고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 계		77,990.3	100.0	-	-	감)	77,990.3
주거용지	소 계	22,756.2	29.2	-	-	감)	22,756.2
	주택용지	22,756.2	29.2	-	-	감)	22,756.2
중심시설용지	소 계	1,280.2	1.6	-	-	감)	1,280.2
	주구중심	1,280.2	1.6	-	-	감)	1,280.2
도시계획시설용지	소 계	52,961.8	67.9	-	-	감)	52,961.8
	공 원	6,611.6	8.5	-	-	감)	6,611.6
	학 교	39,186.3	50.2	-	-	감)	39,186.3
	공공청사	7,163.9	9.2	-	-	감)	7,163.9
기타	소 계	992.1	1.3	-	-	감)	992.1
	기타건축물	992.1	1.3	-	-	감)	992.1

나. 용도지역 · 지구 계획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구분	기 정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역	소 계	967,577.0	감)685,920.7	281,656.3	100.0	지구계 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73,090.5	감)64,332.5	8,758.0	3.1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93,907.1	감)69,312.3	24,594.8	8.7	
	제3종일반주거지역	735,507.6	감)487,204.1	248,303.5	88.2	
	준주거지역	61,791.8	감)61,791.8	-	-	
자연녹지지역		3,280.0	감)3,280.0	-	-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12	25	간선 도로	300.0	대3-212 (신천동11)	대3-212 (신천동11)	일반 도로	2005.12.15 서고 399	성내역 주구중심 도로
기정	중로	1	-	20	-	2,048.0 (761)	-	-	일반 도로	2008.08.14 송파구고시 48	파크리오 북측

※ ( ) 안은 지구 내 연장임

2) 지하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3) 철도 결정조서(변경없음)

4)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5)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7일원	5,470.0	-	5,470.0	2005.12.15. 서고 399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신천동11일원	3,288.0	-	3,288.0	2005.12.15. 서고 399	

6) 광장 결정조서(변경없음)

7) 학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학교	중학교	신천동7-1	13,977.9	-	13,977.9	1974.12.06. 건설부고시 125	잠실중
기정	②	학교	초등학교	신천동7-2	9,916.9	-	9,916.9	1974.12.06. 건설부고시 125	잠동초

8)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청사	-	신천동7일원	700.0	-	700.0		장미1차 (미집행)

9) 유수지 결정조서(변경없음)

※ 금회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함

라. 건축물 관련계획(변경)

※ 금회 아파트지구 변경(제척) 후 존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함

1) 용도

구분	건축범위		비고
	기정	변경	
주택용지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건축물을 수반하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유치원, 탁아소, 경로당, 공동주택 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사회복지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에 한함)	변경없음	
주구중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에 한함), 의료시설(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공연장, 집회장, 전시장에 한함),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금융업소 및 사무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한함),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에 한함)	변경없음	
학교용지	학교시설	변경없음	
공원용지	공원시설	변경없음	
도로용지	도로시설	변경없음	
공공청사	공공청사	변경없음	

※ 단, 학교보건법상 제6조 1항 및 시행령 제4조의 2의 상대 및 절대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불허

2) 건폐율 규제

구분	건폐율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3) 용적률 규제

구분	계획용적률	비고
제3종일반주거지역	230%	

※ 기타 지역에서의 계획용적률은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함

○ 용적률 인센티브 : 사업시행단위별 공공시설부담률에 따라 용적률 완화 차등 적용
※ 상한용적률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0항 규정을 적용, 산출
- 상한용적률(%) = 계획용적률(%) × (1+1.3×α) 이내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내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비율)
○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공공용지
: 도로, 공원 및 기타공공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이 기부채납하는 용지

4) 건축물의 높이

구분	건축물의 높이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4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없음	

※ 사업시행단위별 건축물 높이는 사업시행인가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름

5) 공동주택과 이격거리
○ 공동주택간의 인동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름

6)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 관련법규정에 따름

마. 중심시설계획 및 기타 건축물계획
1) 주구중심 구분 및 면적
▌기정

구분	1주구중심	2-1주구중심	2-2 주구중심	3주구중심	4주구중심	5주구중심
면적(㎡)	-	22,180.5	3,014.3	4,369.0	2,878.5	1,280.2
비고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5주구

▌변경

구분	1주구중심	2-1주구중심	2-2 주구중심	3주구중심	4주구중심	5주구중심
면적(㎡)	-	22,180.5	3,014.3	-	-	-
비고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5주구

2) 층수 : 5층 이하
3) 건폐율 : 50% 이하

바. 기존 건축물 처리계획

○ 기존 건축물은 관련법규정 및 정비계획(개발기본계획)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사.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 존치되는 잠실아파트지구 내 기존 주택용지, 중심시설용지 등의 개발은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시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제1항 각호 중 본 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향후 시행단위별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한다.

※ 사업시행인가 시 반영할 사항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사항

가. 존치되는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사업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변경)시 사업시행자가 아파트지구를 개별 제척함. 다만, 별도의 정비계획 결정(변경) 없이 재건축을 추진 중인 구역은 향후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 제척(폐지)하거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이후 서울시에서 일괄 폐지.

나. 아파트지구에서 제척되는 범위 내 도시계획시설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은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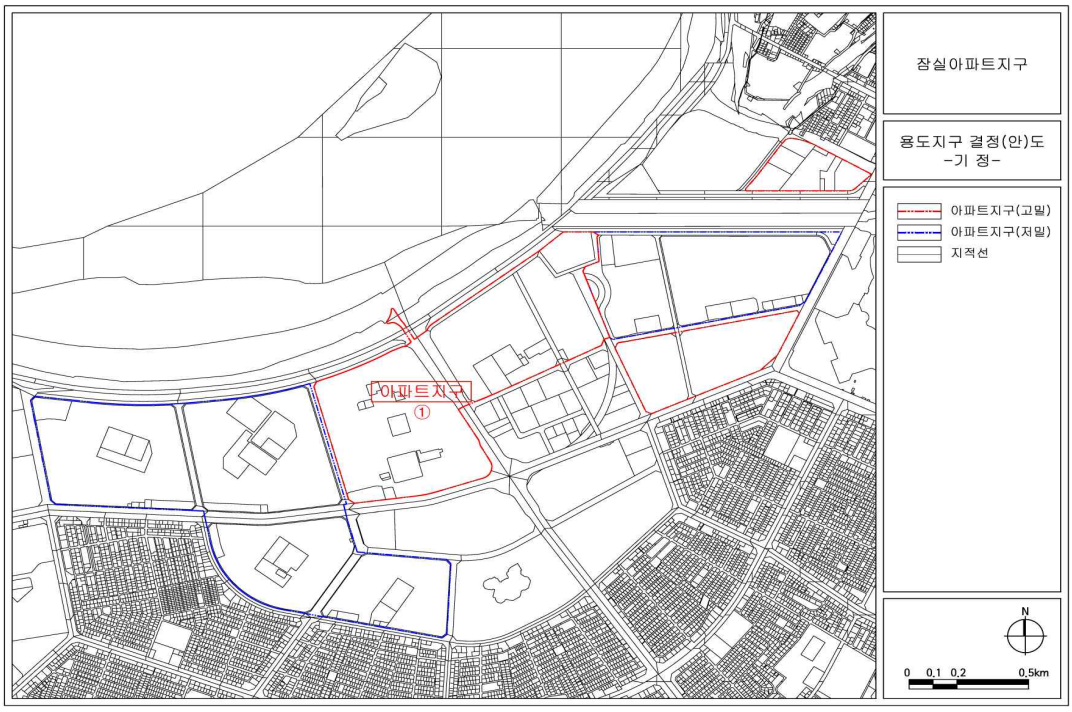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

Ⅳ.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8), 송파구 도시계획과(☎02-2147-3001) 및 주택사업과(☎02-2147-289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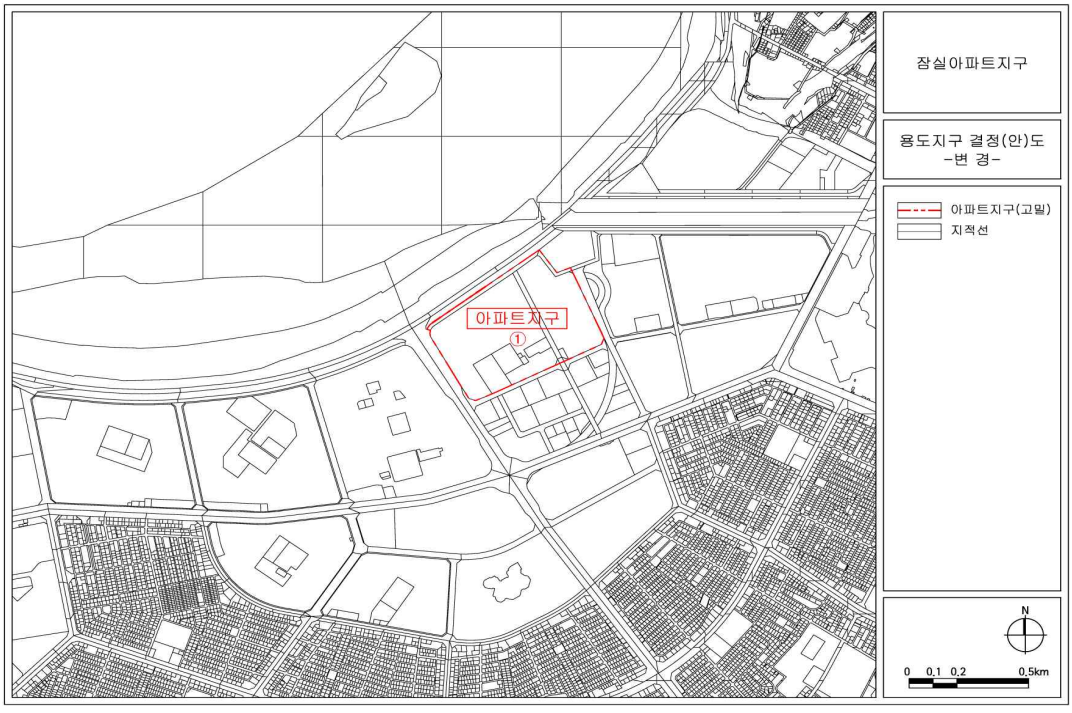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도지구[(종전)아파트지구]의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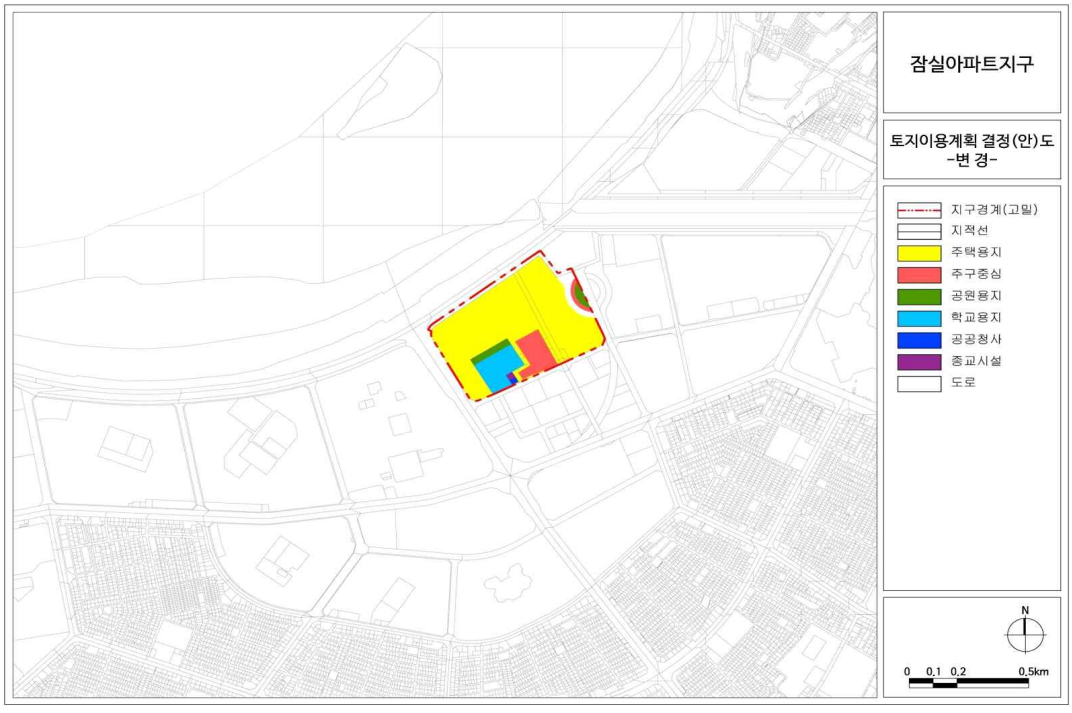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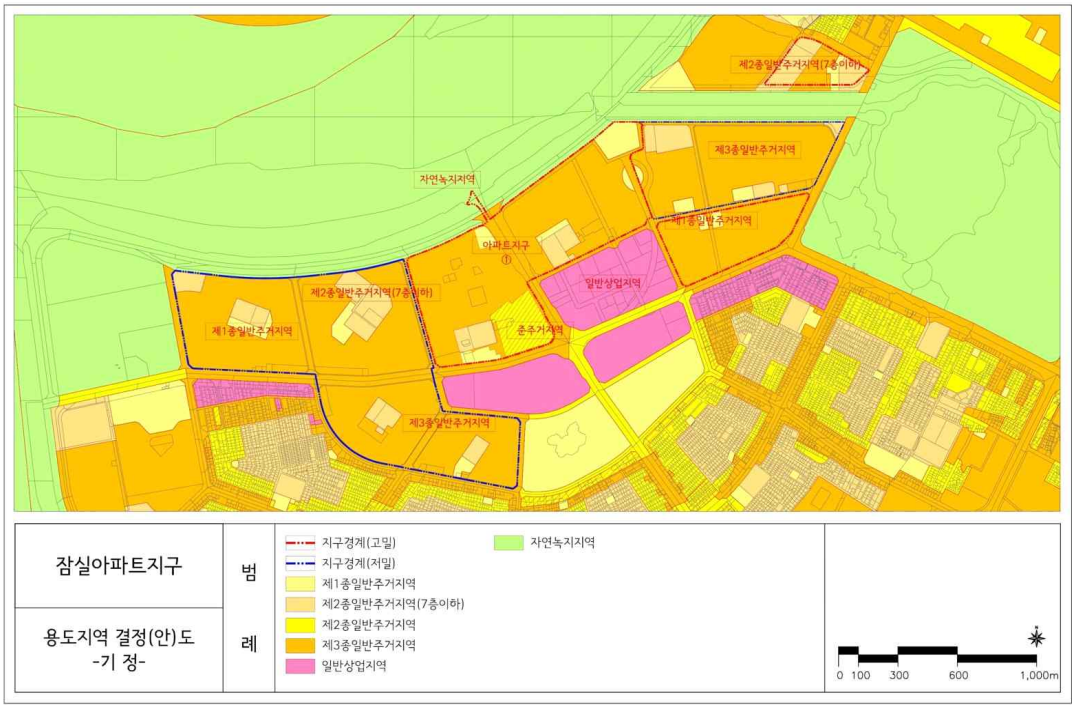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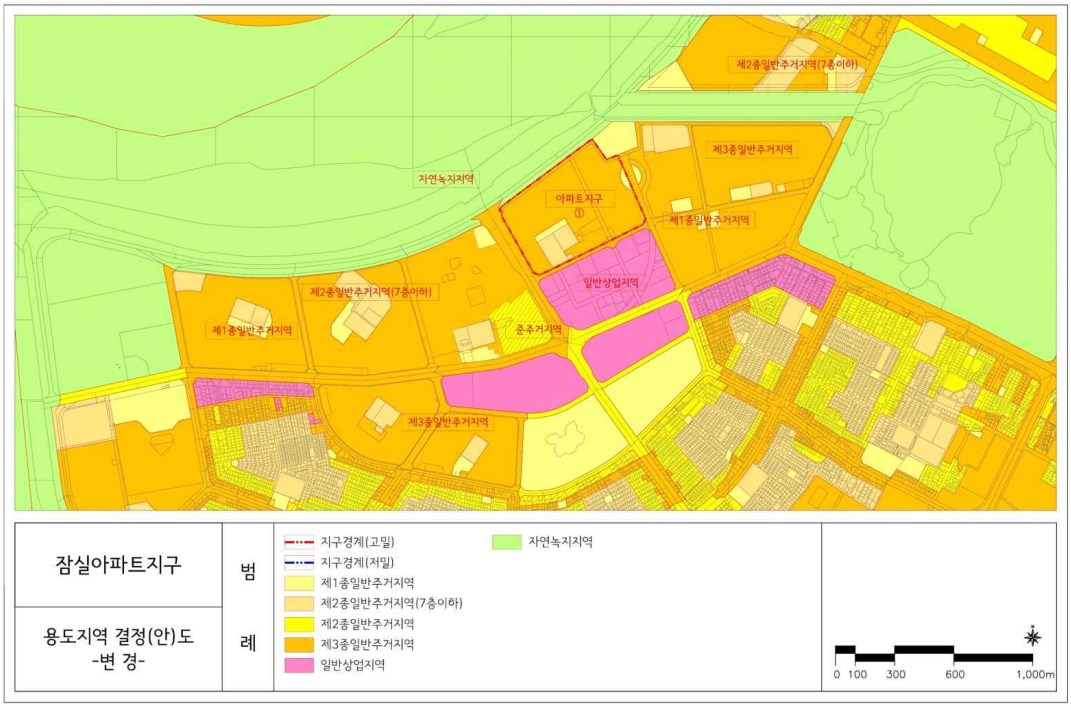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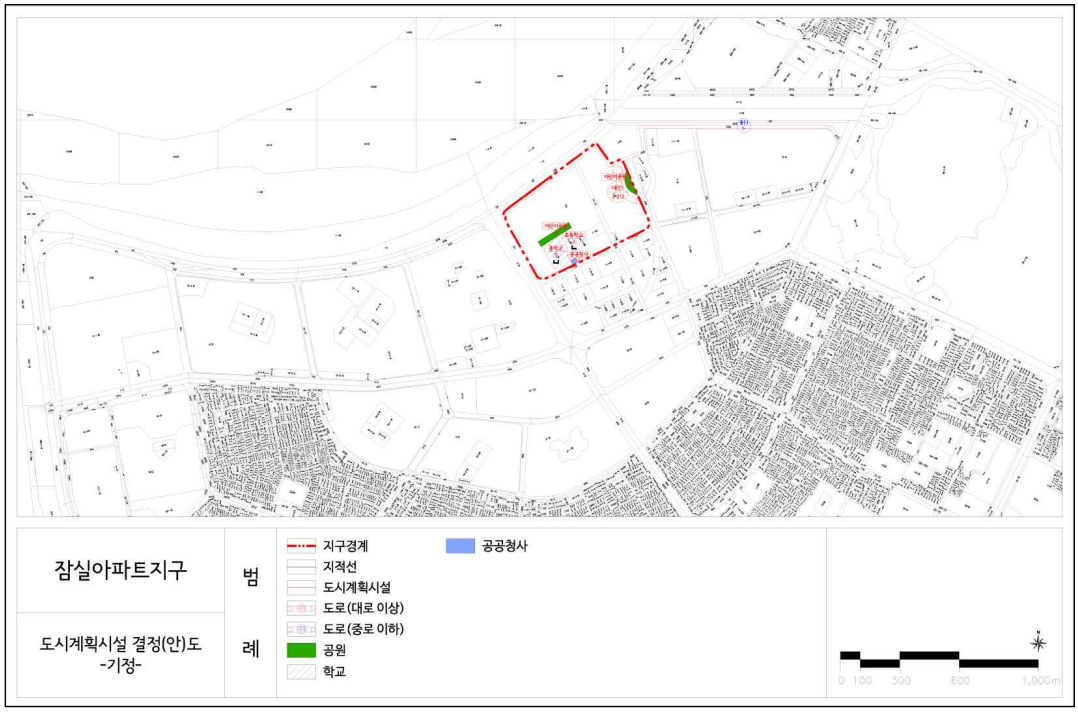


▌변경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없음)

▌기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79호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대 (이하 '방학 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2.17.)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 설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도봉구 방학동 685번지 일원	-	증) 74,390.0	74,390.0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74,390.0	100.0	-
획지	소 계		60,313.0	81.1	-
	공동주택		60,313.0	81.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정비 기반시설	소 계		14,077.0	18.9	-
	도 로		7,902.0	10.6	-
	공 원		6,175.0	8.3	2개소
		문화공원	4,281.0	5.8	주차장 2,377㎡ 중복결정 및 공원 내 청소년시설 조성
		소공원	1,894.0	2.5	-

※ 주차장 연면적 4,278㎡, 청소년시설 연면적 2,000㎡, 노인일자리시설(부대복리시설 내) 연면적 1,100㎡ 조성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안)		
합 계		74,390.0	-	74,39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3,995.0	감) 59,918.0	14,077.0	18.9	도로 등 기반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395.0	감) 39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0,313.0	60,313.0	81.1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1	방학동 685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60,312.3	•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주변지역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 부지는 주변 용도지역과 정합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394.3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13,682.7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table>
<tr><td>추정
비례율</td><td>
• 추정비례율 산정방식:(총수입-총 사업비) ÷ 종전자산총액 x 100%
• 추정비례율: 107.86%
→ (12,345억 - 7,598억) ÷ 4,401억 X 100 ≒ 107.86%
- 총수입 추정 : 12,345억
- 총지출 추정 : 7,598억
- 종전자산총액 추정 : 4,401억
</td></tr>
<tr><td>개별
종전자산 추정액</td><td>
• 일반부동산 (단독주택, 주상용부동산, 상업용부동산 등) :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한 “약식 감정평가방식” 으로 개략적으로 추정
- 토지가액 = 표준지공시지가(2024년) X 품등비교 및 시세보정 X 면적
- 건물가액 = 건물재조달원가 X 잔존가치율 X 면적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구분소유상가 등)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 (토지)을 일괄하여 약식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개략적인 가액을 추정
- 집합건물가액 = 거래사례단가 X 품등비교 X 면적
</td></tr>
<tr><td>추정
분담금
산출</td><td>
• 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X추정비례율)
<table>
<tr><th colspan="2">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a) (천원)</th><th>추정권리가액
(b)</th><th>추정분담금
(a-b)</th></tr>
<tr><td>전용 39㎡</td><td>463,000</td><td rowspan="4">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X 추정비례율
(107.86%)</td><td rowspan="4">권리자
분양가 추정
-추정권리가
(+:분담/-:환</td></tr>
<tr><td>전용 59㎡</td><td>695,000</td></tr>
<tr><td>전용 74㎡</td><td>869,000</td></tr>
<tr><td>전용 84㎡</td><td>951,000</td></tr>
</table>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5%수준으로 결정함.
</td></tr>
</table>

※ 해당 분담금은 추산액으로 향후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개별 물건에 대한 종전 · 종후 자산 감정 평가 및 분양가격 확정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7	20	보조간선	1,250	방학동 726-65	쌍문동 20-5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변경	중로	1	77	20~23	보조간선	1,250 (168)	방학동 726-65	쌍문동 2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7	10	집산도로	520	방학동 700	방학동 703-21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중로	2	A	15.5	집산도로	520	방학동 700	방학동 70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470 (218)	방학동 701-35	방학동 680-25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방학로 2길
변경	소로	1	A	10	국지도로	66 (4)	방학동 726-37	방학동 726-6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B	10	국지도로	180	방학동 681	방학동 726-143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98	6	국지도로	56	방학동 703	방학동 702-9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소로	1	D	10	국지도로	56	방학동 703	방학동 7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44 (314)	방학동 727-7	방학동 726-6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20	8	국지도로	120	방학동 727-7	방학동 696-24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102	6	국지도로	516 (90)	방학동 703-4	방학동 689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소로	3	102	6	국지도로	299	방학동 681-13	방학동 689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110	6	국지도로	295 (106)	방학동 685	방학동 689-3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10	6	국지도로	179	방학동 687	방학동 689-33	일반도로	-	구역외
신설	소로	1	E	10	국지도로	127	방학동 684-43	방학동 68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207	방학동 703-21	방학동 726-6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155	방학동 726-37	소로 1-E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B	8	국지도로	60	소로 1-E	방학동 726-5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99	6	국지도로	250	방학동 701	방학동 726-8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00	6	국지도로	251	방학동 699	방학동 726-89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77	중로1-77	• 도로 확폭 - B=20m→20~23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대상지 일대 도로 확폭
소로1-7	중로2-A	• 도로 확폭 - B=10m→15.5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소로 1-9	소로1-A	• 도로 신설 - L=66m / B=10m	• 부분폐지에 따른 노선 분리 및 도로번호 변경
소로 1-9	소로1-B	• 도로 신설 - L=180m / B=10m	• 부분폐지에 따른 노선 분리 및 도로번호 변경
-	소로1-C	• 도로 신설 - L=207m / B=10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소로3-98	소로1-D	• 도로 확폭 - B=6m→10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도로 확폭
-	소로1-E	• 도로 신설 - B=10m - L=314m→127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	소로2-A	• 도로 신설 - B=8m / L=155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	소로2-B	• 도로 신설 - B=8m / L=60m	• 막다른 도로 방지 및 주택단지 진출입로활용을 위한 도로 신설
소로2-20	소로2-20	• 연장 및 종점 변경 - L=444(314)m→120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및 종점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3-102	소로3-102	• 연장 및 시점 변경 - L=516(90)m→299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시점 변경
소로3-110	소로3-110	• 연장 및 시점 변경 - L=295(106)m→179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시점 변경
소로3-99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3-100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방학동 684-4	245.3	감) 245.3	-	-	-
신설	①	주차장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2,377.0	2,377.0	-	• 문화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 중복(2,377㎡) • 주차장 지하1,2층 -주차장 연면적 4,278㎡이상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	• 주차장 폐지 - 면적 : 245.3㎡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폐지
신설	①	• 주차장 신설 - 면적 : 2,377.0㎡ - 규모 : 지하 1, 2층 - 문화공원 중복결정	• 공원 하부에 주변 근린상가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③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4,281.0	4,281.0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1,894.0	1,894.0	-	

※ ① 문화공원 내 시설물로 계획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후 기부채납(연면적 2,000㎡)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공원	• 면적 : 4,281.0㎡(신설) - 주차장 중복결정	•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및 주차장 중복결정
②	소공원	• 면적 : 1,894.0㎡(신설)	• 근린상업지역 상향가능지 일대와 완충 기능을 위해 대상지 경계부에 소공원 조성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설치계획		
			법정 기준		계획 면적 (㎡)
			기 준	면 적(㎡)	
주민 공동시설	소 계	-	1,000세대 이상 = 500㎡+(세대수×2.0㎡) ×1.25	4,750.0㎡ 이상	4,755.0
	경로당	획지	1,500~2,000세대 미만	725㎡이상	750.0
	작은도서관	획지	1,500~2,000세대 미만	298㎡이상	300.0
	어린이집	획지	1,500~2,000세대 미만	725㎡이상	725.0
	다함께 돌봄센터	획지	주택세대수 500세대 이상 시 설치	-	180.0
	주민운동시설	획지		-	1,000.0
	어린이놀이터	획지		-	1,800.0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획지	10+(세대수 - 50) x 0.05	90㎡이상	90.0

※ 공동이용시설 면적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름

7.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이주
신규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74,390	획지1	60,313	방학동 685번지 일대	384	-	-	384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고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예정 법적상한		
신규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74,390	획지1	60,313	방학동 685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70.0	280.0	해발 130m 이하 (31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 세대수 : 1,650세대(분양 1,351세대, 임대 299세대)
  ※ 기부채납 임대주택 세대수 : 29세대 / 1,713.82㎡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세대)	비율(%)
합 계		-	1,650	100.0
85㎡ 이하	40㎡이하	전체 세대수의 80%이상	280	17.0
	40㎡~60㎡이하		618	37.4
	60㎡~85㎡이하		752	45.6
85㎡초과		-	-	-

- 정비계획 용적률에 대한 임대 규모별 건설 비율(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
  - 임대주택 계획 세대수 / 총 세대수 = 236세대/1,567세대 = 15.06%
  임대주택 계획 연면적 / 총 연면적 = 18,152.15㎡/162,634.8㎡ = 11.16%

<table>
<tr><th rowspan="2">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 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 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 (%)</th><th rowspan="2">높이 (최고 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th><th>명칭</th><th>면적(㎡)</th><th>정비 계획</th><th>예정 법적상한</th></tr>
<tr><td></td><td colspan="12">
<table>
<tr><th rowspan="2">전용면적</th><th rowspan="2">기준</th><th colspan="2">세대수</th><th colspan="2">연면적</th></tr>
<tr><th>세대</th><th>비율(%)</th><th>면적(㎡)</th><th>비율(%)</th></tr>
<tr><td>계</td><td>-</td><td>236</td><td>100.0</td><td>18,152.15</td><td>100.0</td></tr>
<tr><td>40㎡이하</td><td>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td><td>94</td><td>39.8</td><td>5,555.16</td><td>30.6</td></tr>
<tr><td>40㎡~60㎡이하</td><td>-</td><td>142</td><td>60.2</td><td>12,596.99</td><td>69.4</td></tr>
</table>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증가 세대수 : 83세대(분양 49, 임대 34세대)
※ SH매입임대주택 세대수만큼 분양주택 공급 예정이며, 향후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으로 공급예정
</td></tr>
<tr><td>심의완화사항</td><td colspan="12">•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20.0%(공공보행통로, 층간소음해소, 친환경, BF인증)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완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 법적상한용적률 280%이하</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12">• 건축한계선 지정
- 획지경계로부터 3m 이격</td></tr>
</table>

▌용적률 계획

<table>
<tr><th>구분</th><th colspan="7">산정내용</th></tr>
<tr><td rowspan="2">토지이용
계획</td><td rowspan="2">계
(구역면적)</td><td rowspan="2">획지1
(공동주택등)</td><td colspan="3">신설 정비기반시설</td><td rowspan="2">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 · 공유지</td><td rowspan="2">획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 · 공유지</td></tr>
<tr><td>소계</td><td>토지
(도로,
주차장 등)</td><td>건축물기부채납 환산부지
면적</td></tr>
<tr><td>74,390㎡</td><td>60,313㎡</td><td>18,463.4㎡</td><td>15,083.4㎡</td><td>3,380.0㎡</td><td>2,834.9㎡</td><td>9,554.4㎡</td></tr>
<tr><td>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7">• 순부담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지
= 18,463.4㎡ − 2,834.9㎡ − 9,554.4㎡
= 6,074.1㎡
• 순부담 비율 (10% 이상)
= 10.07% (6,074.1㎡/60,313.0㎡)</td></tr>
<tr><td>기준
용적률</td><td colspan="7">• 210.0%
- 기본계획상 기준용적률 190.0%(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이하 소형주택 확보 시 용적률 20%p 완화적용</td></tr>
<tr><td>허용
용적률</td><td colspan="7">• 248.6%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20%)×사업성 보정계수
= 210.0% + 20%×1.93 (공공보행통로, 층간소음, 친환경, BF인증) = 248.6%</td></tr>
<tr><td>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상한용적률 : 270.00%
= 허용용적률 × (1+1.3×가중치×α토지 + 0.7×α건축물)
= 248.6% + (210%×1.3×1.0000×0.0454 + 0.7×0.0449 + 1.0×0.0121)
= 270.00%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694.1㎡ / 59,306.58㎡ = 0.0454
• 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건축물 설치비용 환산부지) /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2,664.0㎡ / 59,306.58㎡ = 0.0449
• α임대주택 = 공공시설 등 부지(임대주택 환산부지) / 공공시설 등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716.0㎡ / 59,306.58㎡ = 0.0121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용적률
= 공공시설 용적률 / 사업부지 용적률
= 210% / 210% = 1.0000</td></tr>
<tr><td>법적상한
용적률</td><td colspan="7">• 법적상한용적률 : 280.0%
= 정비계획용적률 270.00% + 초과용적률 10.00%</td></tr>
</table>

9. 교통 및 동선처리 계획

▌진출입 동선

• 사업지의 원활한 진출입과 본 사업지로의 접근체계, 인접도로 상의 진출입 동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진출입동선 개선방안 수립

- 중로 2류 (1개 노선) : B=15.5m
- 소로 2류 (1개 노선) : B=8m

▌대중교통 및 보행 개선 대책

• 사업지와 연접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며, 보행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절구간에 횡단 시설 설치

▌주차시설 개선 대책

• 본 사업지의 법정 주차대수 및 목표 년도 주차대수를 만족하도록 계획

▌교통안전 및 기타 개선 대책

•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 본 사업 시행으로 신설 또는 변경되는 보도와 횡단 보도에 점자유도블럭 및 보도턱 낮춤 시공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위해 단지 내 단차를 최소화하며 경사로 설치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환경보전	•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토공사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절·성토를 구역내에서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조경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포장율을 최소화하고, 포장시 친환경적인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침투의 용이성 제고 •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을 저감하고,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저소음, 저진동 공사기기의 선정 및 경계부 가설방음판넬 설치	
재난방지	• 사업시행시 공사로 인한 인접지반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굴착지역 내 흙막이공을 설치 운영토록 계획 • 절토사면 발생시 친환경적 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토록하며, 우기시 토공작업을 지양하고, 가배수로, 침사지 및 산마루 측구 등을 설치하여, 공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법면부의 지속적인 녹화와 유지관리 • 구역내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방화재료 등을 사용하는 등 방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방화시설을 설치토록 함	

나. 환경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 고
자연환경	비오톱	-	○	· 비오톱유형평가 4, 5등급 · 개별비오톱 평가제외지역	· 비오톱 분석결과 대상지는 대부분 지역이 보호가치가 낮은 비오톱 현황을 보이고 있음 ·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생태 기능 강화 도모	-
	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 시가화지역으로 산림식생 등 미분포	· 대상지 내 공원부지에 자연지반 및 인공지반 녹지 계획을 통한 녹지 공간 확보	-
	동·식물상	동·식물상 보호	X	· 해당 사항 없음	-	-
	자연환경자산	자연환경보전	X	· 주변 보호지역 없음	-	-
생활환경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조사	·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 토양오염우려 기준 만족 · 토양오염유발시설물 없음 · 공사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등 토양오염발생 우려	· 공사장비에 의한 폐유 처리 대책 수립 · 토양오염발생시 신고 및 적법처리 계획 수립	-
	지형 · 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 경사 5° 도 미만 · 표고 25m 이상~30m 미만	· 공사시 과도한 정지계획 지양 · 토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가배수로 설치	-
	수질, 물순환, 수리 · 수문	생태면적률 30.0%, 수질오염 최소화	○	· 수질현황 BOD Ia~IV등급 · 공사시 토사 및 우수유출 발생	· 생태면적률 30.8% 계획 ·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
	바람	바람길 확보	○	· 기상현황 분석	·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및 녹지계획	-
	열	열환경 최소화	○	· 계획대상지 주변 저층주거지와 공동주택 및 상업지가 위치함	·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바람길 확보 및 식재계획	-
	대기질 · 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 공사시 건설장비 가동 및 토량 이동에 따른 일시적인 대기 오염물질 발생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수립 · 운영시 에너지 사용량 절감 계획 수립	-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반영사항	비 고
생활환경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	○	· 공사시 및 운영시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예상	· 공사시 저감방안 수립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향후 에너지 사용량 추정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 청정연료(LNG) 사용 계획	-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 도봉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소음·진동	소음·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 영향 발생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
	경관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계획으로 인한 주변경관 변화 발생	· 주변지역과 연계된 조화롭고통일감 있는 계획 수립	-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 및 여가공간 최대확보	○	· 휴식 및 여가공간 부족	· 계획대상지 내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계획하여 휴식 및 여가공간 조성	-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 대상지 북동측~북측~북서측 주거지역에 대한 일조영향 예상	· 일조시간 확보를 위한 관련법 준수를 통해 일조영향 최소화	-
사회경제환경	인구	인구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도봉구 인구 현황 조사	-	-
	주거	주거 고려한 계획 수립	○	· 서울시 도봉구 주거 현황 조사	-	-

11.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2.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분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내용
안전 및 범죄예방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에 방범이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장소에 방범등, CCTV 등 설치 • 방범등, CCTV 등의 설치 위치는 주민 요청 및 현장조사를 반영하여 선정

13.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신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방학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가칭)	1,548	1,650	102	-

14.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항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대주택 건설계획

<table>
<tr><td>계획기준
(서울시고시 제2022-493호)</td><td colspan="6">• 임대주택 건설 :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이상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전용면적 40㎡이하</td></tr>
<tr><td>산출근거</td><td colspan="6">• 전체 세대수 및 연면적(국민주택규모 주택 증가분은 제외) : 1,567세대 / 157,563.63㎡
•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계획 : 236세대
- 세대수의 15%이상 계획 = 15.06% 〉 15.0%이상 (236세대 ÷ 1,567세대)
- 연면적의 10%이상 계획 = 11.16% 〉 10.0%이상 (18,152.15㎡ ÷ 157,563.63㎡)</td></tr>
<tr><td rowspan="4">건립규모</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전체 비율</td><td>임대주택 비율</td></tr>
<tr><td>39.70㎡</td><td>59.10㎡</td><td>94세대</td><td>5,555.16㎡</td><td>5.7%</td><td>39.8%</td></tr>
<tr><td>59.86㎡</td><td>88.71㎡</td><td>142세대</td><td>12,596.99㎡</td><td>8.6%</td><td>60.2%</td></tr>
<tr><td colspan="2">합계</td><td>236세대</td><td>18,152.15㎡</td><td>14.3%</td><td>100.0%</td></tr>
</table>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table>
<tr><td colspan="2">계획 기준</td><td colspan="5">•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 도시정비법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
•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공공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td></tr>
<tr><td colspan="2">법적상한용적률(건축계획)</td><td colspan="5">• 280.00% 이하 (279.57%)</td></tr>
<tr><td colspan="2">상한용적률(정비계획)</td><td colspan="5">• 270.00%</td></tr>
<tr><td rowspan="3">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면적</td><td>용적률 증가분</td><td colspan="5">• 279.57% - 270.00% = 9.57%</td></tr>
<tr><td>증가된 용적률의 50%</td><td colspan="5">• 9.57% × 0.5 = 4.79%
60,313.0㎡(대지면적) × 4.79% = 2,886.52㎡</td></tr>
<tr><td>의무 연면적</td><td colspan="5">• 2,886.52㎡ 이상</td></tr>
<tr><td colspan="2" rowspan="5">국민주택규모 주택 확보계획</td><td>전용면적</td><td>공급면적</td><td>세대수</td><td>연면적</td><td>비고</td></tr>
<tr><td>39.70㎡</td><td>59.10㎡</td><td>8</td><td>472.78㎡</td><td rowspan="3">소셜믹스</td></tr>
<tr><td>59.86㎡</td><td>88.71㎡</td><td>17</td><td>1,508.09㎡</td></tr>
<tr><td>74.89㎡</td><td>113.10㎡</td><td>9</td><td>1,017.86㎡</td></tr>
<tr><td colspan="2">합 계</td><td>34</td><td>2,998.73㎡</td><td>기준충족</td></tr>
</table>

Ⅱ.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방학3구역 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74,390.0	74,390.0	100.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 · 감	변경(안)		
합 계		74,390.0	-	74,39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73,995.0	감) 59,918.0	14,077.0	18.9	도로 등 기반시설
	제2종일반주거지역	395.0	감) 395.0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60,313.0	60,313.0	81.1	공동주택용지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획지1	방학동 685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60,312.3	• 방학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과 주변지역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새로이 신설되는 기반시설 부지는 주변 용도지역과 정합성을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유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0.7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394.3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13,682.7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7	20	보조간선	1,250	방학동 726-65	쌍문동 20-5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변경	중로	1	77	20~23	보조간선	1,250 (168)	방학동 726-65	쌍문동 20-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7	10	집산도로	520	방학동 700	방학동 703-21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중로	2	A	15.5	집산도로	520	방학동 700	방학동 703-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470 (218)	방학동 701-35	방학동 680-25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방학로 2길
변경	소로	1	A	10	국지도로	66 (4)	방학동 726-37	방학동 726-6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1	B	10	국지도로	180	방학동 681	방학동 726-143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98	6	국지도로	56	방학동 703	방학동 702-9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소로	1	D	10	국지도로	56	방학동 703	방학동 702-9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444 (314)	방학동 727-7	방학동 726-6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2	20	8	국지도로	120	방학동 727-7	방학동 696-24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102	6	국지도로	516 (90)	방학동 703-4	방학동 689	일반도로	건공 제8호	
변경	소로	3	102	6	국지도로	299	방학동 681-13	방학동 689	일반도로	-	구역외
기정	소로	3	110	6	국지도로	295 (106)	방학동 685	방학동 689-33	일반도로	-	
변경	소로	3	110	6	국지도로	179	방학동 687	방학동 689-33	일반도로	-	구역외
신설	소로	1	E	10	국지도로	127	방학동 684-43	방학동 68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C	10	국지도로	207	방학동 703-21	방학동 726-67	일반도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A	8	국지도로	155	방학동 726-37	소로 1-E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B	8	국지도로	60	소로 1-E	방학동 726-5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99	6	국지도로	250	방학동 701	방학동 726-89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00	6	국지도로	251	방학동 699	방학동 726-89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77	중로1-77	• 도로 확폭 - B=20m→20~23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대상지 일대 도로 확폭
소로1-7	중로2-A	• 도로 확폭 - B=10m→15.5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보행로 확보를 고려하여 도로 확폭
소로 1-9	소로1-A	• 도로 신설 - L=66m / B=10m	• 부분폐지에 따른 노선 분리 및 도로번호 변경
소로 1-9	소로1-B	• 도로 신설 - L=180m / B=10m	• 부분폐지에 따른 노선 분리 및 도로번호 변경
-	소로1-C	• 도로 신설 - L=207m / B=10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소로3-98	소로1-D	• 도로 확폭 - B=6m→10m	• 주택단지의 세대수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고려하여 도로 확폭
-	소로1-E	• 도로 신설 - B=10m - L=314m→127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	소로2-A	• 도로 신설 - B=8m / L=155m	• 원활한 차량 통행 및 기존 도로체계를 반영한 도로 신설
-	소로2-B	• 도로 신설 - B=8m / L=60m	• 막다른 도로 방지 및 주택단지 진출입로 활용을 위한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2-20	소로2-20	• 연장 및 종점 변경 - L=444(314)m→120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및 종점 변경
소로3-102	소로3-102	• 연장 및 시점 변경 - L=516(90)m→299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시점 변경
소로3-110	소로3-110	• 연장 및 시점 변경 - L=295(106)m→179m	• 부분폐지에 따른 연장 변경 및 시점 변경
소로3-99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3-100	-	• 도로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2)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방학동 684-4	245.3	감) 245.3	-	-	-
신설	①	주차장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2,377.0	2,377.0	-	• 문화공원 중복결정 -문화공원 중복(2,377㎡) • 주차장 지하1,2층 -주차장 연면적 4,278㎡이상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	• 주차장 폐지 - 면적 : 245.3㎡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차장 폐지
신설	①	• 주차장 신설 - 면적 : 2,377.0㎡ - 규모 : 지하 1, 2층 - 문화공원 중복결정	• 공원 하부에 주변 근린상가 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신설

3)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공원	문화공원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4,281.0	4,281.0	-	주차장 중복결정
신설	②	공원	소공원	방학동 685번지 일대	-	증) 1,894.0	1,894.0	-	

※ ① 문화공원 내 시설물로 계획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후 기부채납(연면적 2,000㎡)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문화공원	• 면적 : 4,281.0㎡(신설) - 주차장 중복결정	• 지역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문화공원 신설 및 주차장 중복결정
②	소공원	• 면적 : 1,894.0㎡(신설)	• 근린상업지역 상향가능지 일대와 완충 기능을 위해 대상지 경계부에 소공원 조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			비율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소 계		-	증) 60,313.0	60,313.0	100.0	-
획지	획지1	-	증) 60,313.0	60,313.0	100.0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 · 밀도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신설	허용용도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① 건폐율 계획

구 분	지역	건폐율	비고
신설	획지1	50%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 · 복리시설

② 용적률 계획

구 분	지 역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신설	획지1	210%	248.60%	270.0%	280.0% 이하	계획용적률 279.57% 계획 (향후 건축 심의 시 최종 결정)

▌기준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완화 항목	완화 사항	비고
신설	소형주택확보	• 60㎡ 이하 소형주택확보 시 기준용적률 20% 완화	서울시고시 제2010-97호
완화 적용		• 40㎡이하 분양주택 (10%완화) = 6,087.03㎡/60,313㎡ = 10.09% • 50~60㎡이하 분양주택 공급 (10%완화) = 40,452.3㎡ / 60,313㎡ = 67.07% ⇒ **총 20% 완화**	최대 20%

▌허용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인센티브 항목	인센티브		비고
신설	공공보행통로	7.27%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a = 210%×(2,089㎡/60,313㎡)×1.0	최대 20% 적용 가능
	층간소음해소	5%	• 바닥(중량)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 1등급 5%	
	친환경 건축물	5.5%	•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 ZEB5등급 5.5%	
	BF인증	3.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일반등급 3%	
완화 적용		20.77% ≥ **20% 적용**		

※ 공공보행통로 = 주변 가로망 연계를 위한 공공보행통로 등 조성(지역권 설정)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완화항목	완화 사항	비고
신설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2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법적상한용적률	•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 9.9%	
완화적용		**31.4% 적용**	

③ 높이 계획

구 분	지역	높이	비고
신설	획지1	해발고도 130m이하 (31층이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1)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신설	공동주택 획지 내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

2) 경관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비고
주동배치	공동주택	• 방학로2길의 통경구간 및 보행통로를 확보한 배치계획 수립 • 방학역 3번출구 인근에서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열린 배치계획 수립	
입면계획		•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입면 디자인 다양화 계획	
외부공간 및 조경	단지 내부	• 주변 현황 등의 외부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열린단지 계획	
스카이라인	단지 내·외	• 북한산 방향으로 열린 경관을 형성하고, 입체적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주동의 높이는 다양화하여 계획	

라.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전면공지	공동주택 획지 내	• 건축한계선으로 조성되는 대지내공지로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공공 보행통로	공동주택 획지 내	• 문화공원~도봉로145길변을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 조성 (폭원 10m)

※ 적용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 위치	계획 내용
보행동선	소로1-6호선~소로1-D호선	• 방학역 3번출구에서 대상지로의 동·서방향 보행동선 조성
	공공보행통로	• 도봉로145길에서 대상지내 공원으로의 남·북방향 보행동선 조성
차량 진출입구	도봉로145길변	•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1개소
	소로2-B호선변	• 공동주택 차량 진출입구 1개소
도봉로145길 도로 연속성 확보 필요	도봉로145길변	• 도봉로145길은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 장기(안)에 따라 향후 방학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도봉로와 연접하는 도로를 도봉로145길 도로폭(15.5m)와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

※ 적용위치는 관련 도면 참조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 저소득 주민의 입주 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50%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은 분양주택과 차별없이 외관, 마감 등을 동일하게 계획(동별 · 동내 혼합과 층별혼합)하고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동 · 호수 배정도 조합원과 서울특별시(공공주택)가 동일 · 동시에 공개추첨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비율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재개발 의무임대	국민주택 규모주택	기부채납 임대주택	전체 세대수 대비	전체 비율	공공임대 중 국민주택 규모주택	공공임대 중 기부채납 임대주택
합계	1,650	100.0	299	236	34	29	18.1	100.0	11.4	9.7
전용39㎡	280	17.0	131	94	8	29	7.9	43.8	2.7	9.7
전용59㎡	618	37.5	159	142	17	-	9.6	53.2	5.7	-
전용74㎡	376	22.8	9	-	9	-	0.6	3.0	3.0	-
전용84㎡	376	22.8	-	-	-	-	-	-	-	-

Ⅲ. 2025년 제1차(‘25.02.17)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구분	심의결과	심의의견		조치계획
제1차 도시계획 수권분과 위원회	수정 가결	수정 사항	• 정비구역 명칭, 용적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세대수, 순부담면적, 도로계획은 구청장 및 주관부서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	• 구청장 및 주관부서 의견에 따라 수정가결 요청사항을 반영하였음 - 정비구역 명칭 : 방학3구역 - 용적률 : 210/248.6/270/280%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 공공보행통로, 층간소음 완화, 친환경건축물, BF인증 - 세대수 : 1,650세대 (분양1,351세대, 임대 299세대) - 순부담면적 : 6,074.12㎡(10.07%)
		조건 사항	• 향후, 건축심의(정비사업통합심의 등) 시 다음 사항 검토 - 도당로변 주동 코어 위치는 채광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 노인일자리 시설 위치는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위치검토	• 향후 건축심의 시 해당사항 검토하여 반영하겠음

Ⅳ. 관계도면 : 붙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신설)
2. 정비계획 결정도(신설)
3. 용도지역 결정도(기정/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변경)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설)
6.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신설)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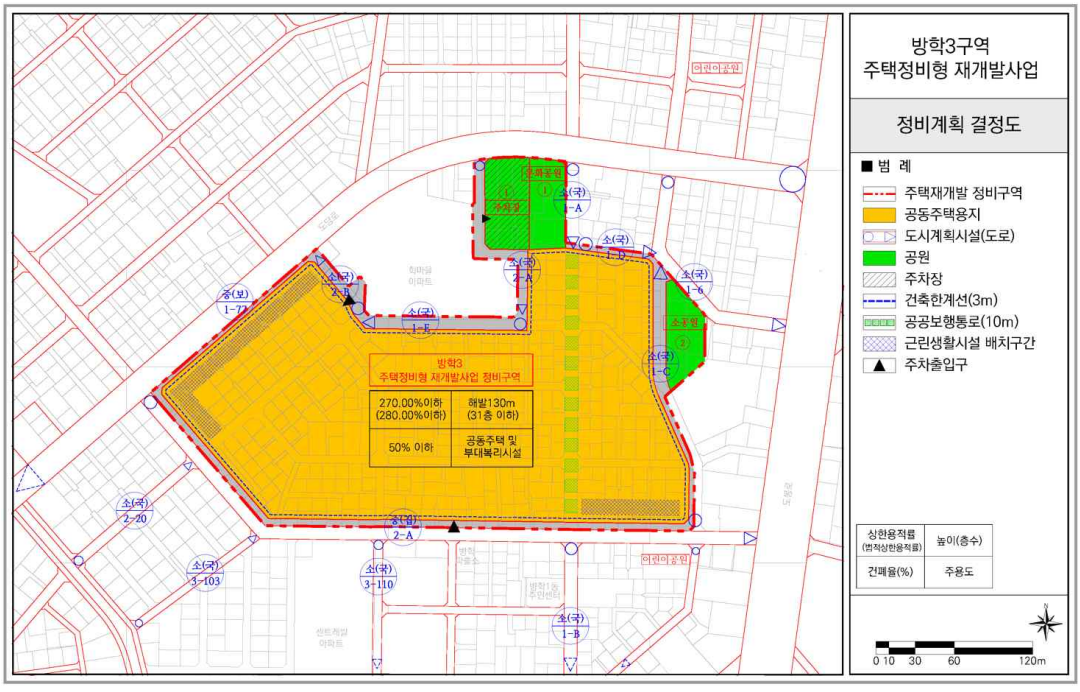
Ⅵ.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859),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12)에 관계 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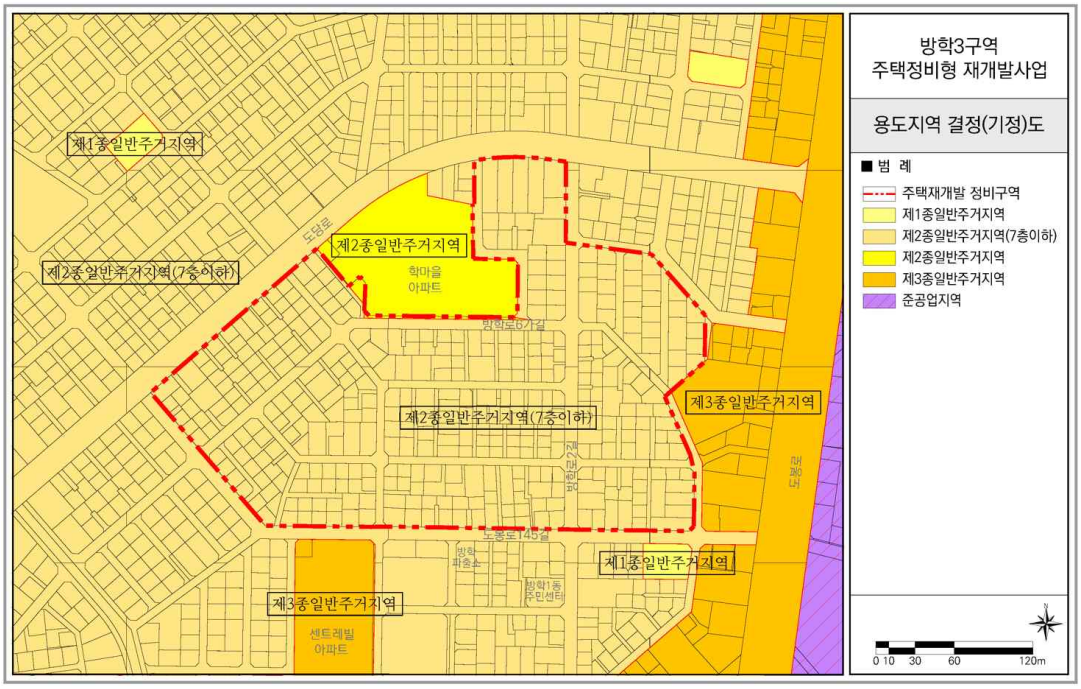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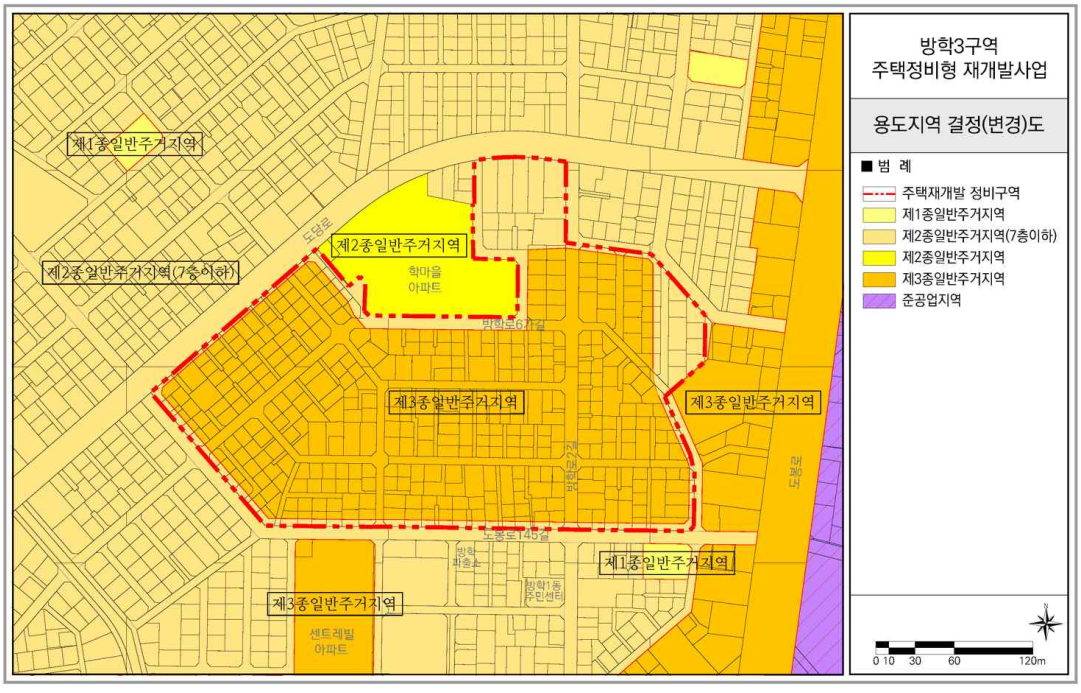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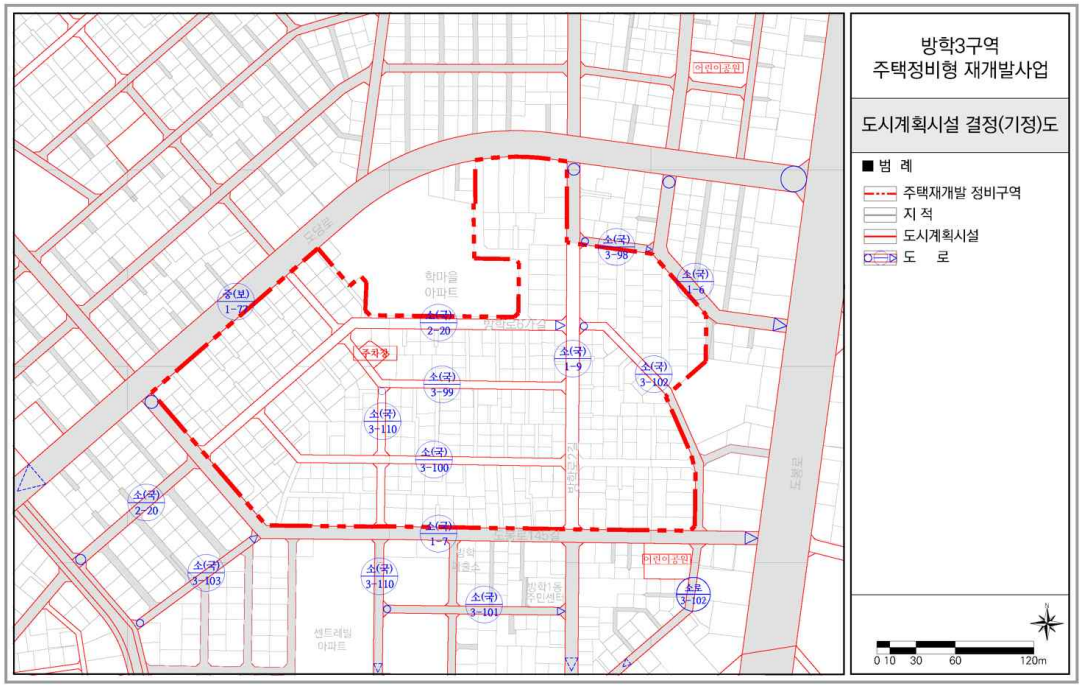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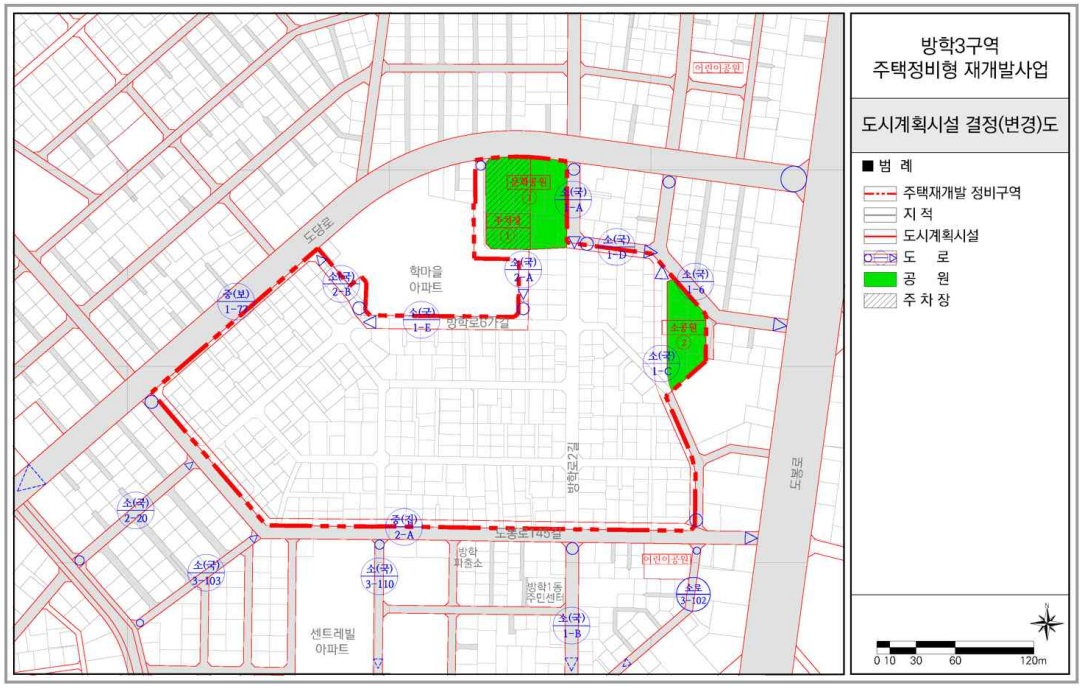
▌용도지역 · 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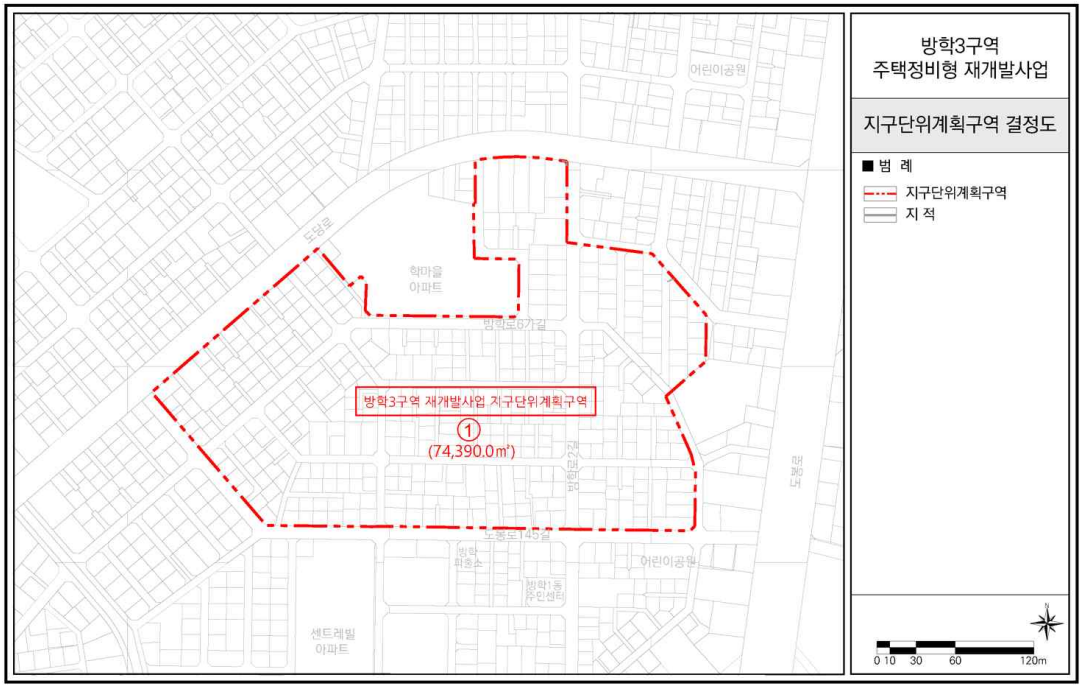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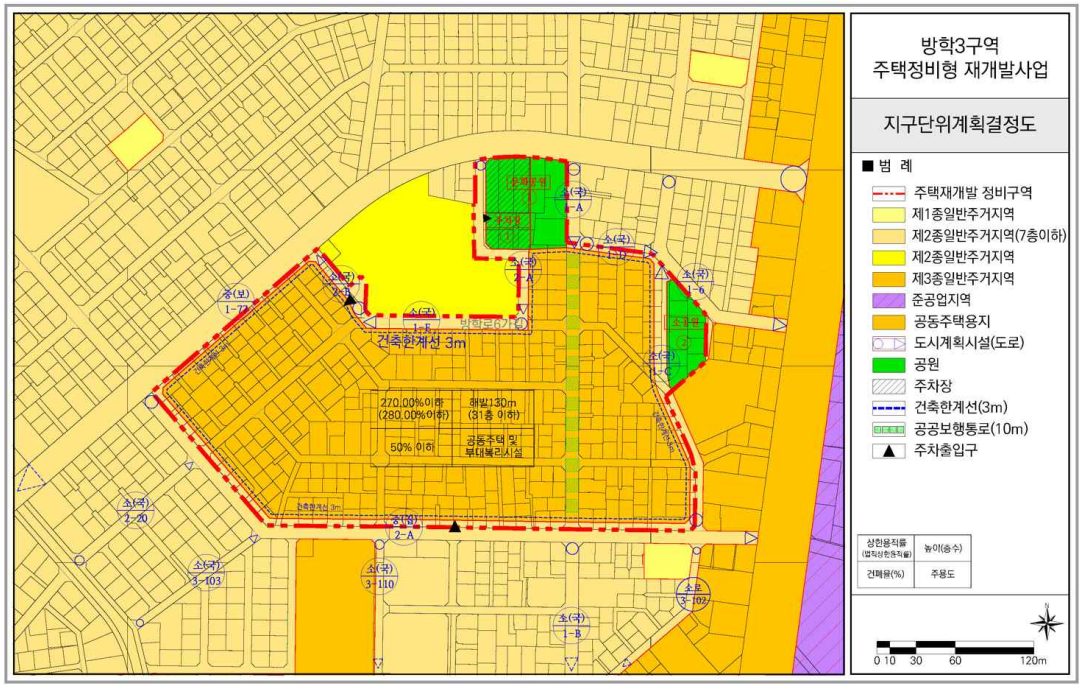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0호

서울특별시 자전거도로의 노선 지정(신규 · 폐지)에 관한 고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자전거도로의 노선을 지정(신규・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도로의 종류	도로관리청	도로구간		총길이 (㎞)	자전거 도로 너비(m)	주요 경유지	지정 (변경・폐지) 사유
				기점	종점				
월곡로(동측)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74 (일신초교)	성북구 월곡로 56-1 (이마트24)	0.27	1.4		신규
월곡로(서측)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월곡로 77	성북구 월곡로 59 (삼성래미안라센트 배드민턴장)	0.22	1.0		신규
청계천 우안	-	자전거 · 보행 겸용도로	서울특별시	신답철교	중랑천 합류부	2.3	3.5		신규
남부순환로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531 (광양불고기)	양천구 남부순환로 511 (덕수전자)	0.2	1.1		신규
사직로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경복궁역 교차로(서십자각터)	경복궁 사거리 (동십자각)	0.44	2.2		폐지
노원로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40 (상계9단지 진출입로)	노원구 노원로 540 (파리바게트 상계제일점)	0.07	2.1		폐지
한글비석로(북측)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08 (두란노교회)	노원구 한글비석로 466 (온곡초교 교차로)	0.65	1.1		폐지
한글비석로(남측)	-	자전거전용차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63 (온곡초교 교차로)	노원구 한글비석로 405 (두란노교회 건너편)	0.65	1.1		폐지

□ 노선도

1	<신규> 월곡로(동측)[성북구 월곡로 74(일신초교)~성북구 월곡로 56-1(이마트24)]



2	<신규> 월곡로(서측)[성북구 월곡로 77~성북구 월곡로 59(삼성래미안라센트 배드민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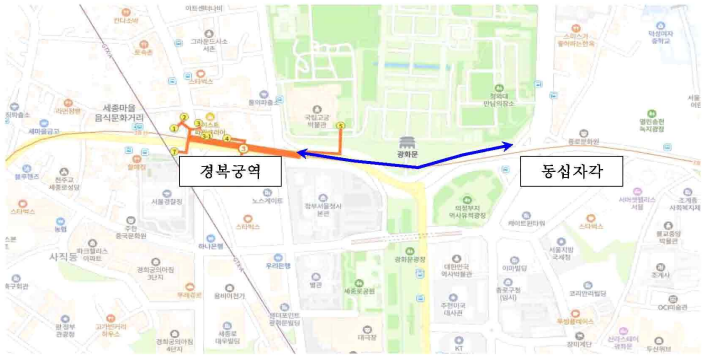
3	<신규> 청계천 우안(신답철교~중랑천 합류부)



4	<신규> 남부순환로[양천구 남부순환로 531(광양불고기)~양천구 남부순환로 511(덕수전자)]



5	<폐지> 사직로[경복궁역 교차로(서십자각터)~경복궁 사거리(동십자각)]



6	<폐지> 노원로[노원구 노원로 540(상계9단지 진출입로)~노원구 노원로 540(파리바게트 상계제일점)]



7	<폐지> 한글비석로(북측)[노원구 한글비석로 408(두란노교회)~노원구 한글비석로 466(온곡초교 교차로)]



8	<폐지> 한글비석로(남측)[노원구 한글비석로 463(온곡초교 교차로)~노원구 한글비석로 405(두란노교회 건너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1호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전농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5호(2009.9.10)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36호(2010.9.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40호(2012.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6호(2013.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6호(2016.06.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56호(2017.02.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6호(2017.0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08호(2018.0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10호 (2019.3.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7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3호(2020.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4호(2021.06.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9호(2021.0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89호(2021.10.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호(2022.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3호(2022.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21호(2022.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45호(2022.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4호(2023.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호(2023.2.9.), 서울특별고시 제2023-77호(2023.3.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600호(2023.12.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500호(2024.10.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청량리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20만㎡이상)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370,774.3	-	370,774.3	최초지정일 : 2009.09.10 (서고 제2009-345호)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 변경없음
   가. 기준년도 : 2021년
   나. 목표연도 : 2030년

3. 재정비촉진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부도심기능의 회복 도모
   나.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계획 변경을 통하여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고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서울의 균형발전을 도모(청량리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서울 동북권의 관문역할 수행)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도시생활을 영위하기 위함

4.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지역(존치관리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사업방식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58,116.4	-	358,116.4	-
촉진구역	소 계			148,485.9	감)387	148,098.9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청량리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0-12일대	1,819.2	-	1,819.2	-
		청량리2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786일대	1,938.3	-	1,938.3	-
		청량리3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11-1일대	7,020.6	-	7,020.6	-
		청량리4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20-51일대	41,602.5	-	41,602.5	-
		용두1재정비촉진구역	용두동 26일대	51,665.9	-	51,665.9	-
		전농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494일대	28,202.4	감)387	27,815.4	-
	주택재개발사업	전농12재정비촉진구역	전농동 643일대	16,237.0	-	16,237.0	-
존치지역	소 계			209,630.5	증)387	210,017.5	-
	존치관리구역			209,630.5	증)387	210,017.5	-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전농구역(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202.4	감)387.0	27,815.4	100.0	-
획지	소 계	19,166.7	-	19,166.7	68.9	-
	획지1	18,415.5	-	18,415.5	66.2	주거, 판매, 업무, 문화
	획지2	65.0	-	65.0	0.2	다일천사병원부지와 대토
	획지3	686.2	-	686.2	2.5	종교
정비기반시설	소 계	9,035.7	감)387.0	8,648.7	31.1	-
	도 로	5,659.7	감)387.0	5,272.7	19.0	-
	경관녹지	705.2	-	705.2	2.5	-
	소 공 원	2,670.8	-	2,670.8	9.6	-

6.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결정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외 다른 구역 변경없음(기재생략)

7.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 변경

가.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동대문구 전농동 494일대	28,202.4	감)387	27,815.4	-

※ 구역면적은 측량성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202.4	감)387	27,815.4	100.0	-
주거지역	소 계	9,786.9	감)387	9,399.9	33.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19.0	감)21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9,567.9	감)168	9,399.9	33.9	
상업지역	소 계	18,415.5	-	18,415.5	66.2	
	일반상업지역	18,415.5	-	18,415.5	66.2	

※ 당해 용도지역 변경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발생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해당 필지 구역 제척 - (감 2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일부 필지 구역 제척 - 9,657.9㎡ → 9,399.9㎡(감 168㎡)	• 588-1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588-180(제3종일반주거지역) 촉진구역 제척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 축소

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1)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92	25	보조 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서고 제743호 ('63.12.30)	구역내 폭원 B= 28m 구역내 연장 L= 172m
기정	대로	3	130	25~36	보조 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서고 제187호 ('78.05.01)	구역내 폭원 B= 25~36m 구역내 연장 L= 180m
기정	중로	1	382	6~23	집산 도로	305	전농동 679-176	전농동 588-1	고가 일반	서고 제589호 ('21.10.21)	구역내 폭원 B= 6m~23m 구역내 연장 L= 250m
기정	소로	2	1	8~12	집산 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구고시 제2000-125호 ('00.12.30)	구역내 폭원 B=8~12m 구역내 연장 L=55m

(2) 철도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	154,802	서고 2002-386 ('02.10.31)	중로 1-382와 중복 구역내 면적 403.8㎡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변경	-	철도	일반철도(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	154,802	서고시 2002-386 ('02.10.31)	철도부지 제척으로 구역내 시설 제외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 도	· 구역내 중로 1-382와 중복 철도부지 구역내 제외	· 철도부지 제척에 따라 구역내 철도시설 제외

(3)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소공원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1-4 일원	2,670.8	-	2,670.8	서고 제589호 ('21.10.21)	일부 선형변경

(4)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1	419.3	-	419.3	구고시 제125호 ('00.12.30)	구역내 14.9㎡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0-15 일원	690.3	-	690.3	서고 제40호 ('12.02.23)	-

(5)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65-6 일원	층	지상 1층	-	지상 1층	서고 제589호 ('21.10.21)	당해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임
				면적	393.9	-	393.9		
				층	지상 2층	-	지상 2층		
				면적	897.2	-	897.2		

(6)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65-6 일원	층	지상 1층	-	지상 1층	서고 제2022-345호 ('22.8.11)	당해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임
				면적	585.2	-	585.2		
				층	지상 2층	-	지상 2층		
				면적	745.5	-	745.5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시설의 구분	설 치 계 획		
	법 적 내 용	법정면적	계획면적
주민공동시설	(500㎡+(세대수×2㎡))×1.25	3,385㎡ 이상	3,823.6㎡
관리사무소	10㎡+(세대수-50세대)×0.05㎡	62.7㎡ 이상	65.0㎡
경로당	1,000~1,500세대미만 580㎡이상	580㎡ 이상	590.4㎡
어린이집	1,000~1,500세대미만 580㎡이상	580㎡ 이상	607.7㎡
다함께 돌봄센터	전용면적 66㎡이상	66㎡ 이상	81.5㎡
주민운동시설	-	-	481.4㎡
작은도서관	1,000~1,500세대미만 203㎡이상	203㎡ 이상	285.0㎡
주민카페	-	-	878.7㎡
어린이놀이터	-	-	834.0㎡

마.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 (m) 층수	비 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	전농 재정비 촉진 구역	28,202.4	획지1	18,415.5	전농동 679-2 일원	주거, 판매, 업무, 문화	59% 이하	600% 이하	750% 이하	165m 이하	-
			획지2	65.0	전농동 497-75 일원	-	50% 이하	250% 이하	-	-	대토부지 건축물 밀도 지정
			획지3	686.2	전농동 678-1 일원	종교	50% 이하	250% 이하	-	6층 이하	종교시설 건축물 밀도 지정
기정	임대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건설규모 : 전용면적 84㎡ 이하 ○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 건립 ○ 건립세대 : 190세대								
기정	건축시설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답십리로변 : 7m ○ 서울시립대로변(배봉로), 이면부 : 3m								
기정	주택의 연면적 비율		○ 주거비율 90% 이하(오피스텔 포함)								
기정	비 고		※ 획지1 내 공공보행통로 지정(폭 6m) - 결정도(위치권장) 참조 ※ 기준용적률은 600%임 ※ 상기 건축계획(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 수립된 사항이므로 그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발생 ※ 촉진계획에서 제시한 건축계획(개요/배치계획 등)은 추후 사업시행인가 시 세부 건축설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므로 예시(안)으로 제시하되, 추후 건축심의 시 해당 건축계획(안)을 참조								

바.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분양 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매입)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1,104	100.0	914	190	190(57)	-	17.2	100.0	-
40㎡이하	84	7.6	51	33	33(33)	-	3.0	17.4	-
40㎡초과 ~50㎡이하	84	7.6	35	49	49(24)	-	4.4	25.8	-
50㎡초과 ~60㎡이하	138	12.5	54	84	84	-	7.6	44.2	-
60㎡초과 ~85㎡이하	636	57.6	612	24	24	-	2.2	12.6	-
85㎡초과	162	14.7	162	-	-	-	-	-	-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구역명	구역	면적(㎡)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전농 재정비 촉진구역	전농 구역	27,815.4	전농동 679-2번지 일원	151	-	-	-	151	-

아.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부담률 : 변경

(1)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021년 ~ 2030년	전농도시환경 정비사업조합	540세대

(2) 공공용지부담률 : 변경

구 분	사업구역	사업시행면적(㎡)	획지면적(㎡)	기존공공 용지면적(㎡)	계획공공 용지면적(㎡)	부담률(%)	비 고
기정	전농구역	28,202.4	19,166.7	3,649.0	11,157.2	30.6	-
변경	전농구역	27,815.4	19,166.7	3,649.0	10,770.2	29.5	-

※ 계획기반시설 면적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포함

8.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 전농구역(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농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재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494일대	28,202.4	감)387.0	27,815.4	100.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	동대문구 전농동 494일대	27,815.4	•철도부지(588-1, 588-180)에 대한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저촉되는 등 편입 불가 의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202.4	감)387	27,815.4	100.0	
주거지역	소 계	9,786.9	감)387	9,399.9	33.8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19.0	감)219	-	-	
	제3종일반주거지역	9,567.9	감)168	9,399.9	33.9	
상업지역	소 계	18,415.5	-	18,415.5	66.2	
	일반상업지역	18,415.5	-	18,415.5	66.2	

※ 당해 용도지역 변경 효력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발생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 경 사 항	변경사유
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해당 필지 구역 제척 - (감 219.0㎡)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일부 필지 구역 제척 - 9,657.9㎡ → 9,399.9㎡(감 168㎡)	• 588-1번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588-180(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에 따라 용도지역 면적 축소

(2) 도시기반시설 결정조서 : 변경

①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92	25	보조간선	1,400	전농동124 (시립대앞)	답십리 (광로5호)	일반	서고 제743호 ('63.12.30)	구역내 폭원 B= 28m 구역내 연장 L= 172m
기정	대로	3	130	25~36	보조간선	2,100	전농동621-1 (왕산로)	전농동 광장	일반	서고 제187호 ('78.05.01)	구역내 폭원 B= 25~36m 구역내 연장 L= 180m
기정	중로	1	382	6~23	집산도로	305	전농동 679-176	전농동 588-1	고가일반	서고 제589호 ('21.10.21)	구역내 폭원 B= 6m~23m 구역내 연장 L= 250m
기정	소로	2	1	8~12	집산도로	124	전농동 677-3	전농동 676-2	일반	구고시 제2000-125호 ('00.12.30)	구역내 폭원 B=8~12m 구역내 연장 L=55m

② 철도 결정조서(변경)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	154,802	서고 2002-386 ('02.10.31)	중로 1-382와 중복 구역내 면적 403.8㎡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규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요 경과지			
변경	-	철도	일반철도(철도역)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동대문구 전농동 588-1일대	-	154,802	서고시 2002-386 ('02.10.31)	철도부지 제척으로 구역내 시설 제외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철 도	· 구역내 중로 1-382와 중복 철도부지 구역내 제외	· 철도부지 제철에 따라 구역내 철도시설 제외

③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 원	소공원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71-4 일원	2,670.8	-	2,670.8	서고 제589호 ('21.10.21)	일부 선형변경

④ 녹지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1	419.3	-	419.3	구고시 제125호 ('00.12.30)	구역내 14.9㎡
기정	③	녹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전농동 680-15 일원	690.3	-	690.3	서고 제40호 ('12.02.23)	-

⑤ 사회복지시설(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층	지상 1층	-	지상 1층	서고 제589호 ('21.10.21)	당해 면적은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사회복지시설)	65-6 일원	면적	393.9	-	393.9		전용면적 기준임
				층	지상 2층	-	지상 2층		
				면적	897.2	-	897.2		

⑥ 공공청사(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구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65-6 일원	층	지상 1층	-	지상 1층	서고 제2022-345호 ('22.8.11)	당해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임
				면적	585.2	-	585.2		
				층	지상 2층	-	지상 2층		
				면적	745.5	-	745.5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①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획지	소 계	19,166.7	-	19,166.7	100.0	-
	획지1	18,415.5	-	18,415.5	96.1	복합개발용지
	획지2	65.0	-	65.0	0.3	다일천사병원과 대토
	획지3	686.2	-	686.2	3.6	종교용지

②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	용 도	비 고
기정	주용도	획지1	•주거, 판매, 업무, 문화	-
		획지2	•관련규정에 따름	-
		획지3	•종교	-

㉡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59	획지1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적률 계획(%)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기정	600	-	750	-

■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일반상업지역	165m 이하	· 일조 및 통경축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등 건축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한 건축물 높이계획 변경

③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대지경계선	•답십리로변 : 7m •서울시립대로변(배봉로), 이면부 : 3m
건축지정선	-	해당사항없음
저층부 벽면한계선	-	해당사항없음

(4) 경관계획(배치 · 형태 포함) : 해당없음

–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대상지 면적 3만㎡ 이하로 경관심의 대상 제외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①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 기재생략

②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 기재생략

③ 환경관리계획 : 기재생략

④ 인센티브 사항 : 해당없음

⑤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모든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의무임대주택 등은 세입자 주거대책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 등 공공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용도로 정하며, 서울시에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 주택의 규모별 비율(정비계획)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분양 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매입)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합 계	1,104	100.0	914	190	190(57)	-	17.2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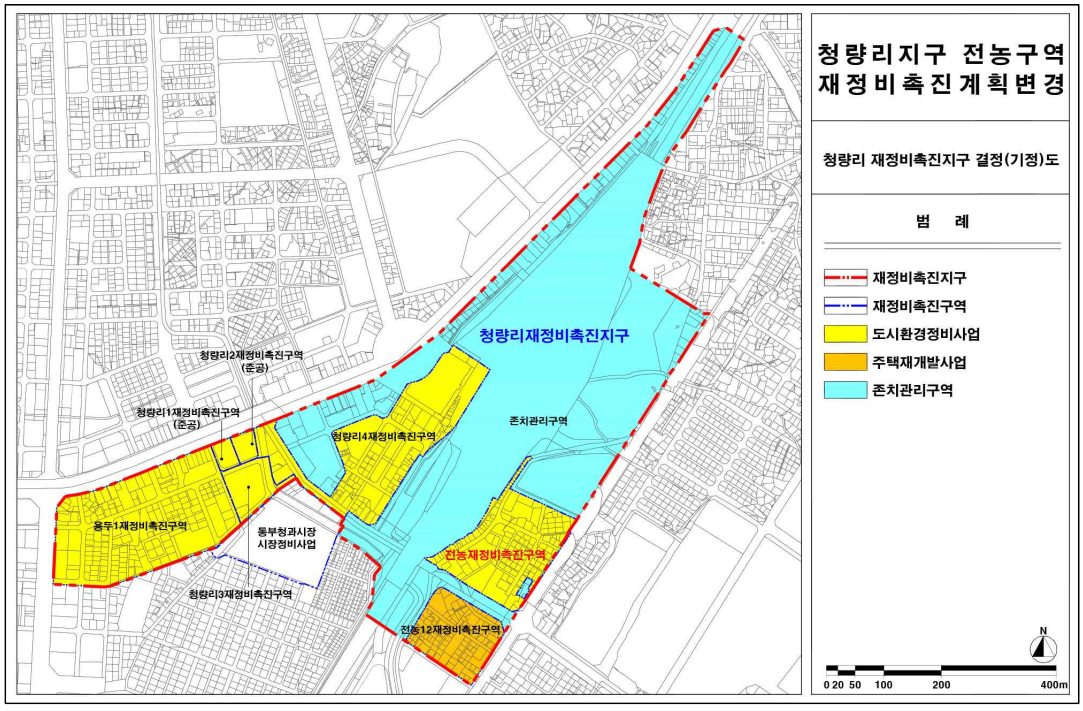
건립규모	전체 세대수	전체 비율 (%)	분양 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공공임대주택 비율(%)		
				계	임대주택 (매입)	소형주택	전체세대수 대비	전체비율	공공임대중 소형주택
40㎡이하	84	7.6	51	33	33(33)	-	3.0	17.4	-
40㎡초과 ~50㎡이하	84	7.6	35	49	49(24)	-	4.4	25.8	-
50㎡초과 ~60㎡이하	138	12.5	54	84	84	-	7.6	44.2	-
60㎡초과 ~85㎡이하	636	57.6	612	24	24	-	2.2	12.6	-
85㎡초과	162	14.7	162	-	-	-	-	-	-

9.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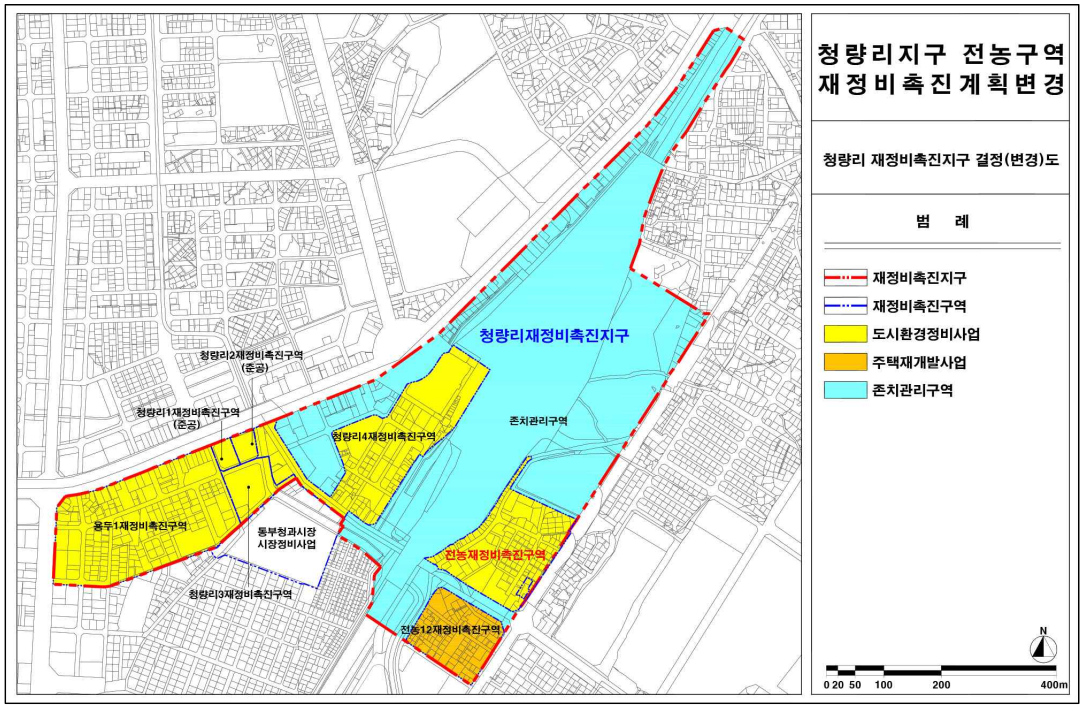
10.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기재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11.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실 재정비촉진과(☎02)2133-7217) 및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2127-429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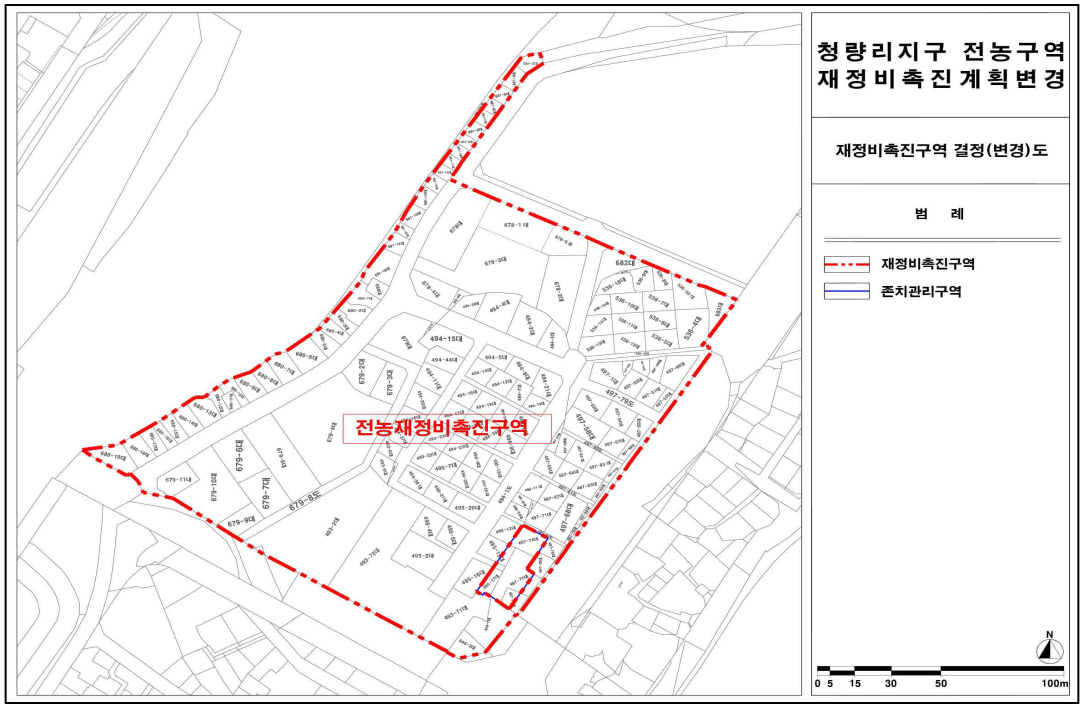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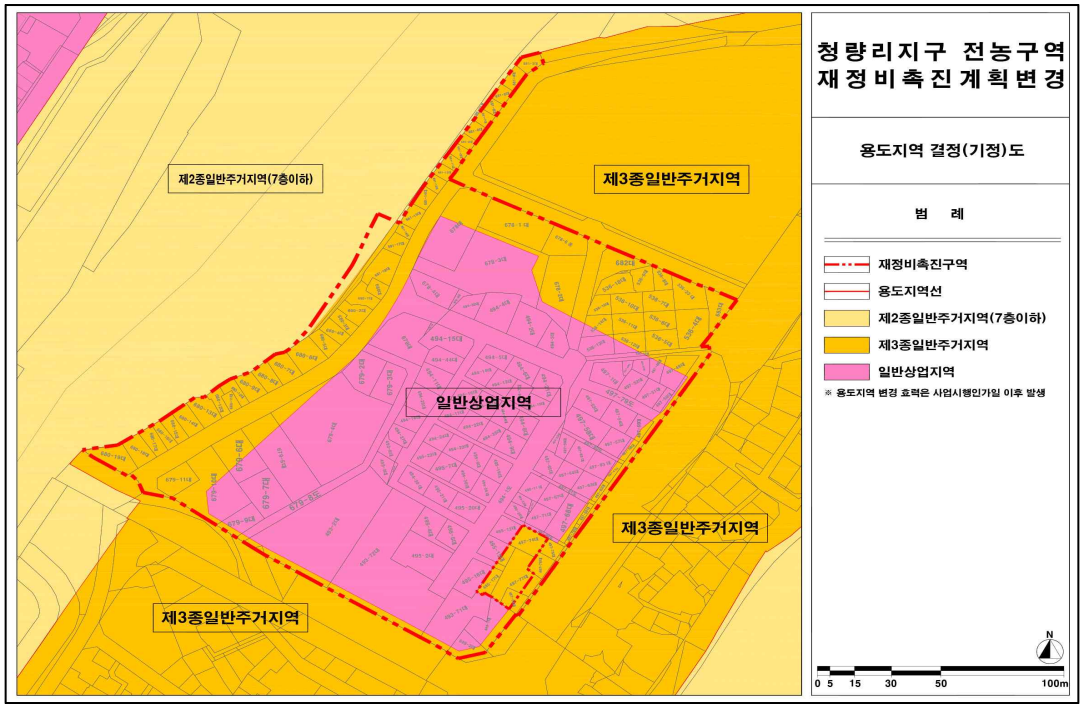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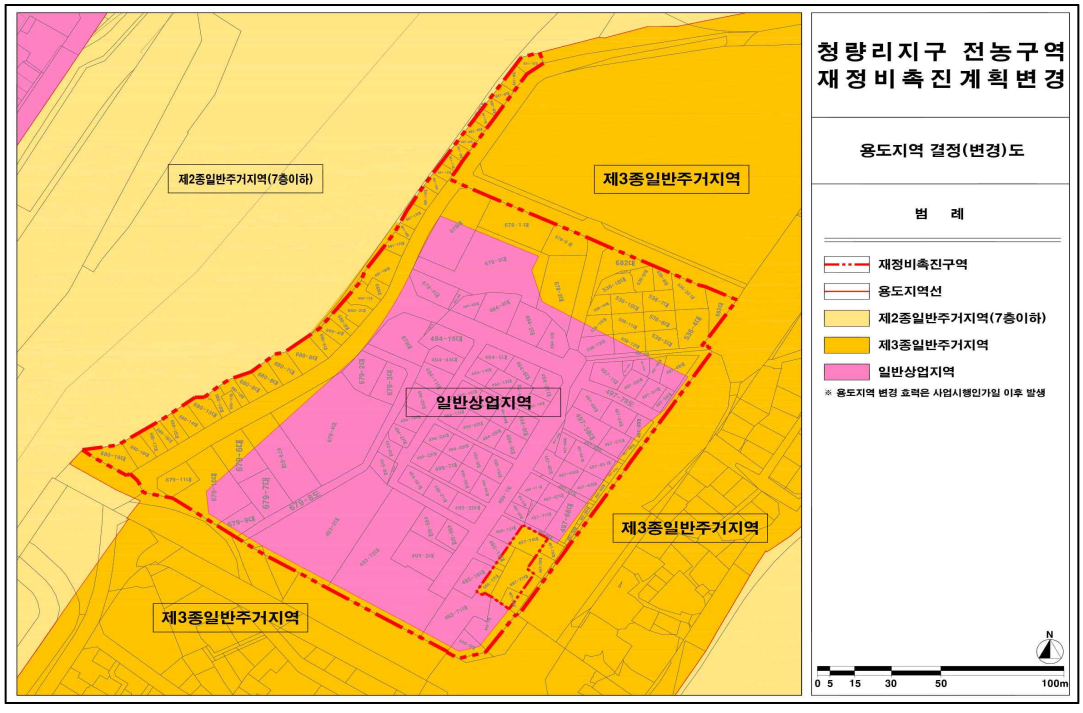
■ 전농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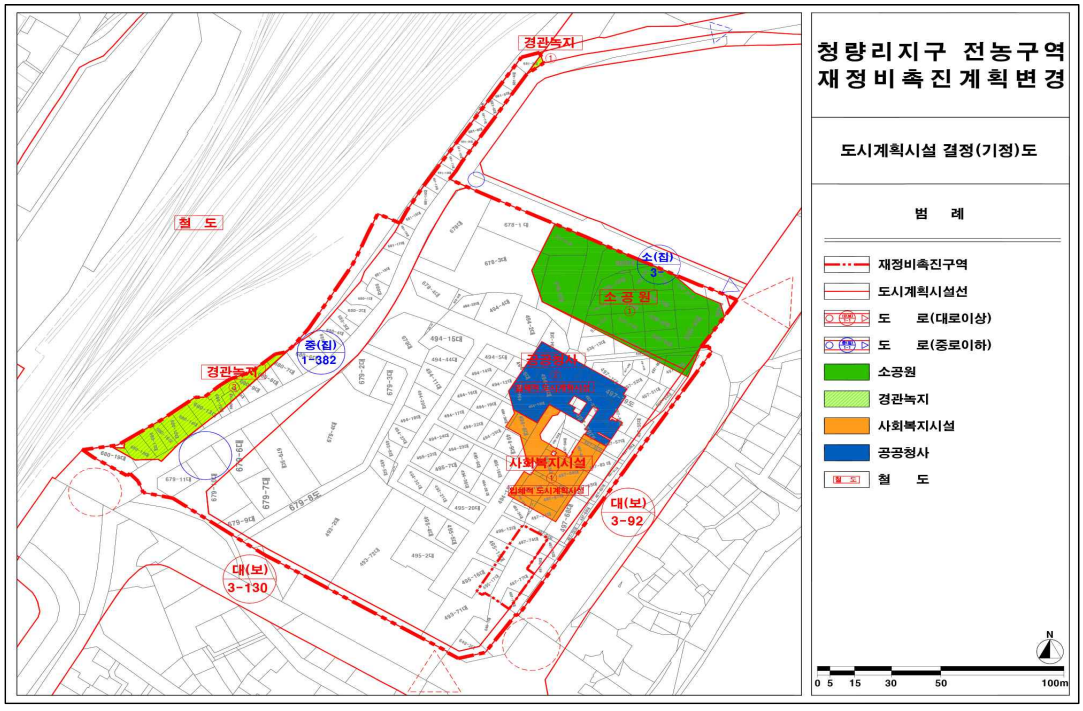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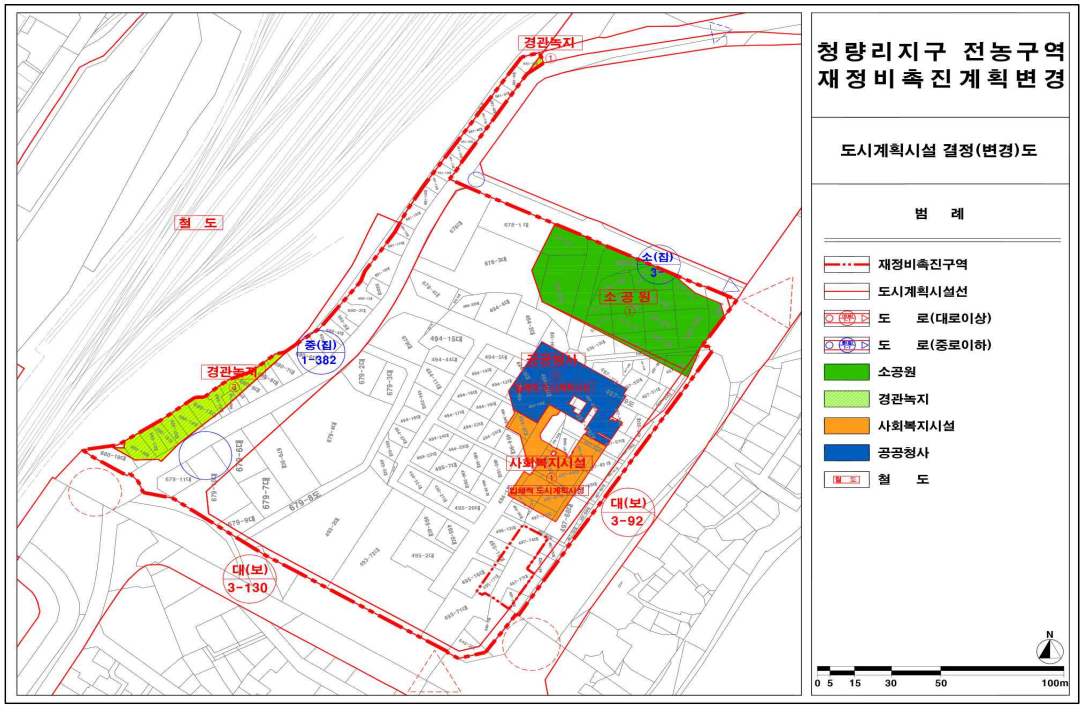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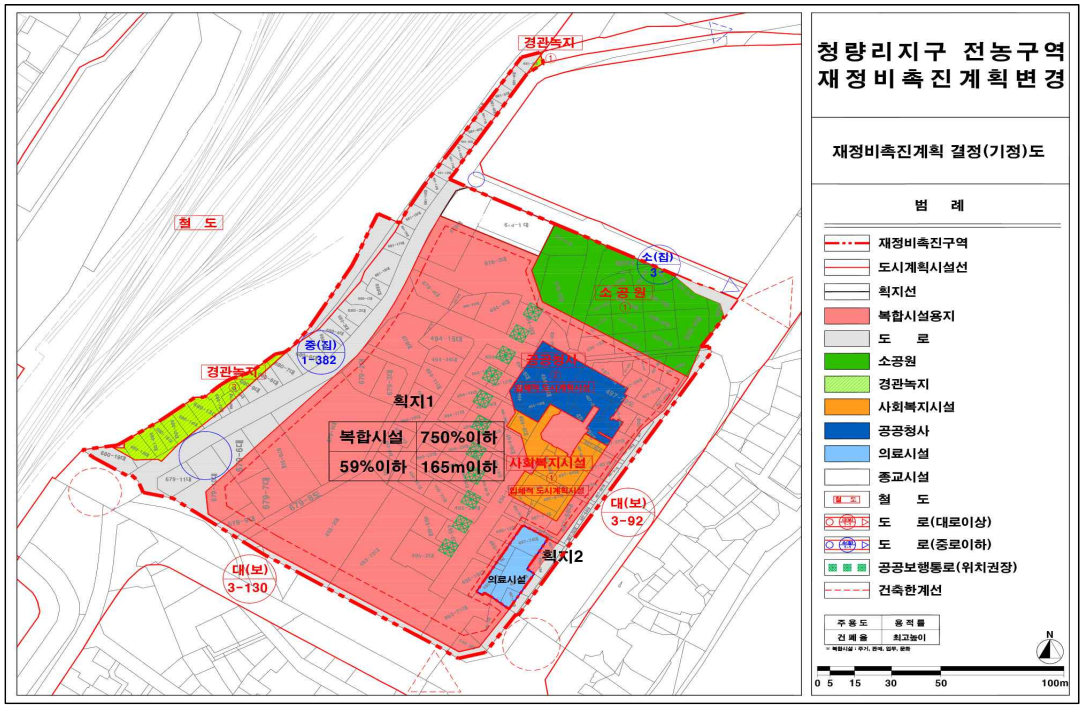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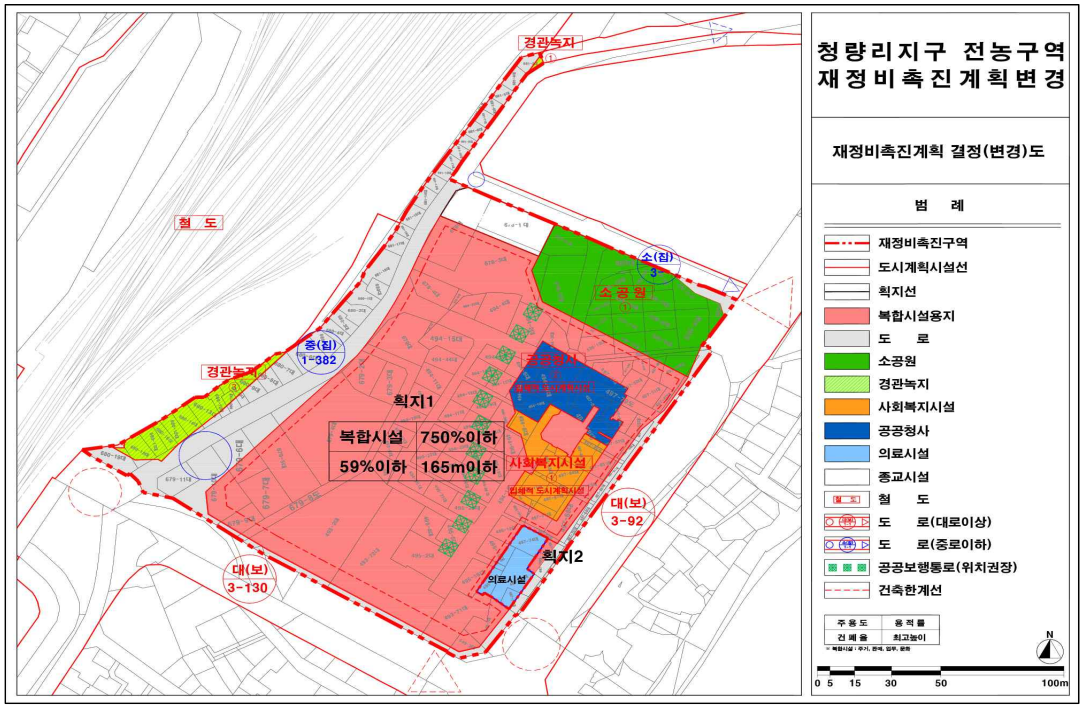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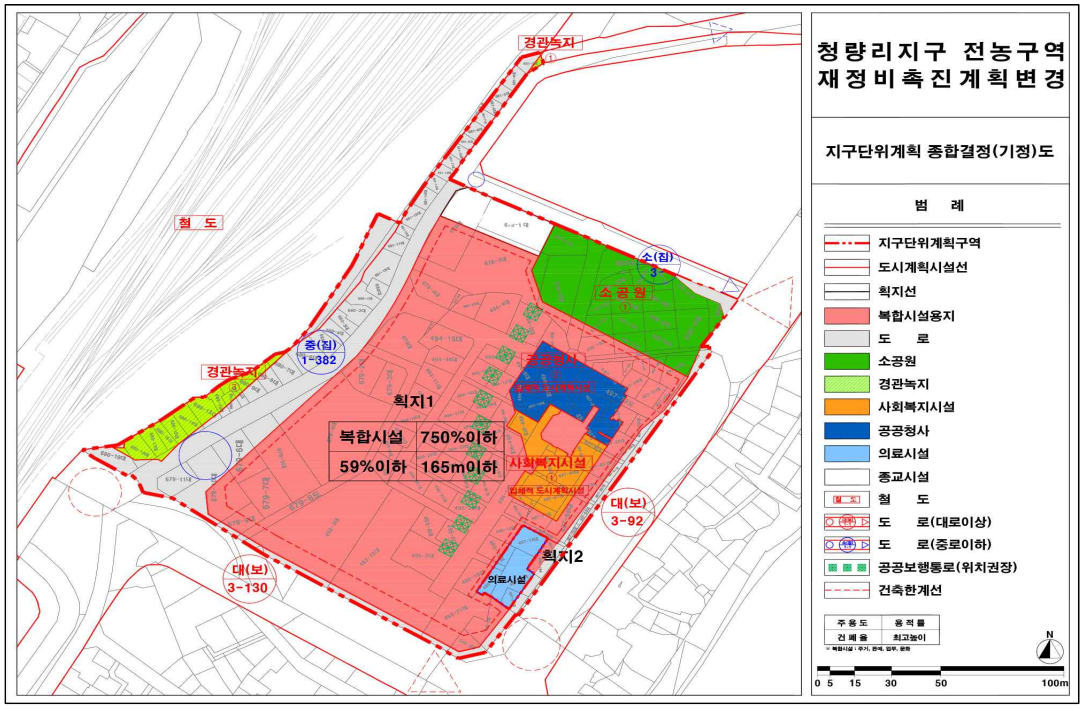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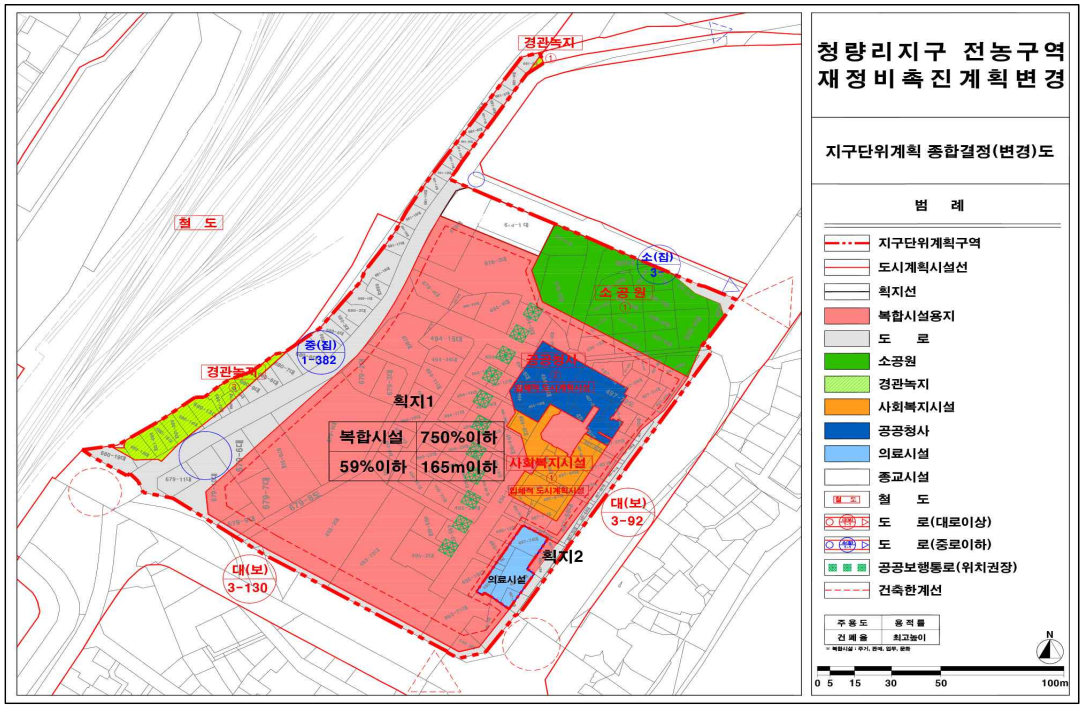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 : 변경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기정



■ 지구단위계획 종합결정도 :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2호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03.19.)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2020.09.24.)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된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서초구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	증) 5,076.4	5,076.4	-

▌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치	결정사유
신설	-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5,076.4	100.0	-
정비기반시설	소 계	178.3	3.5	
	도 로	178.3	3.5	기부채납
택지(획지)	소 계	4,898.1	96.5	
	획 지	4,898.1	96.5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3.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076.4	-	5,076.4	100.0	-
제3종일반주거지역	5,076.4	감) 4,898.1	178.3	3.5	
일반상업지역	-	증) 4,898.1	4,898.1	96.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98.1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이 하 여 백)

4.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가.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추정분담금) 산출 근거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 추산액 합계

구분	면적(㎡)	추산가액(원)	단가(원/㎡)	비고
토지	3,270.50	94,470,000,000	28,885,492	• 토지면적당 단가임
건물	5,628.25	2,989,000,000	531,071	• 건물면적당 단가임
집합건물	1,804.90	39,152,000,000	21,692,061	• 토지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함 • 대지지분당 단가임
합계 (A)		136,611,000,000		

◦ 매입대상 종전자산 추산액

매입대상 국공유지로서 종전자산 제외 평가액 (B, 원)	청산대상자 종전자산가액 (C, 원)
- (국공유지 추정액)	13,611,100,000 (종전자산 합계액의 10%로 추정)

※ 종전자산 추산액 = 토지등소유자 종전자산추산액(A) - 매입대상 종전자산 추산액(C)
= 136,611,000,000원 - 13,661,100,000원 = 122,949,900,000 원

◦ 종후 아파트 분양가

주택형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		
	세대수	단가(천원)/공급(3.3㎡)	세대분양가(천원)	세대수	단가(천원)/공급(3.3㎡)	세대분양가(천원)
39	2	904,670	1,809,340	1	814,150	814,150
49	4	1,109,650	4,438,600	2	999,230	1,998,460
59	1	1,299,810	1,299,810	11	1,169,670	12,866,370
74	4	1,572,470	6,289,880	2	1,414,510	2,829,020
84(A)	46	1,746,440	80,336,240	11	1,570,990	17,280,890
84(B)	7	1,746,440	12,225,080	1	1,570,990	1,570,990
84(C)	46	1,746,440	80,336,240	10	1,570,990	15,709,900
108	24	2,212,740	53,105,760	26	1,992,510	51,805,260

◦ 종후자산 추산액

분 양 수 입□ 집 계 표 (천원)							수 입□ 총 계 (천원)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합 계	
조합	일반분양	임대(의무)	임대(소형)	조합	일반		
104,875,040	239,840,950	4,420,390	5,658,890	12,133,462	13,487,152	380,415,884	380,415,884

◦ 총사업비 추산액

항 목	금액(천원)	구성비	포함 내용
공사비	156,825,270	61.51%	• 건축 및 부대시설 공사비, 건축물철거비
보상비	19,407,413	7.61%	• 청산대상자 청산금, 이주 및 손실보상금
관리비	4,327,280	1.70%	• 추진위 • 조합 운영, 소송비용 등
설계비	2,520,852	0.99%	• 건축설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정비계획(변경) 등
감리비	2,430,791	0.95%	• 건축, 전기, 소방 등
부대경비	56,690,189	22.24%	• 수수료 등 기타사업비, 각종 부담금,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
예비비	12,747,463	5.00%	• 기타 향후 청산 시까지의 돌발발생 제비용 등(총사업비의 약 5%)
총계	254,949,258	100.00%	

◦ 비례율 추정결과

종전자산(C)	총 수입(A)	총 사업비(B)	비례율
122,949,900	380,415,884	254,949,258	102.05%

나. 토지등소유자별 개략적인 추정 분담금 산정

추정 종전가액(천원)			300,000	400,000	500,000	7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변동률			102.05%								
예상권리가액(천원)			306,150	408,200	510,250	714,350	1,020,500	2,041,000	3,061,500	5,102,500	7,143,500
예상	39TY	904,670	598,520	496,470	394,420	190,320	-115,830	-1,136,330	-2,156,830	-4,197,830	-6,238,830

추정 종전가액(천원)			300,000	400,000	500,000	700,000	1,000,000	2,000,000	3,000,000	5,000,000	7,000,000
추정 분담금	49TY	1,109,650	803,500	701,450	599,400	395,300	89,150	-931,350	-1,951,850	-3,992,850	-6,033,850
	59TY	1,299,810	993,660	891,610	789,560	585,460	279,310	-741,190	-1,761,690	-3,802,690	-5,843,690
	74TY	1,572,470	1,266,320	1,164,270	1,062,220	858,120	551,970	-468,530	-1,489,030	-3,530,030	-5,571,030
	84TY	1,746,440	1,440,290	1,338,240	1,236,190	1,032,090	725,940	-294,560	-1,315,060	-3,356,060	-5,397,060
	108TY	2,212,740	1,906,590	1,804,540	1,702,490	1,498,390	1,192,240	171,740	-848,760	-2,889,760	-4,930,760

※ 분담금 추산액 = 추산권리가액[추정비례율(a) × 개별 종전자산 추산액(b) - 권리자 분양가 추산액
※ 추정비례율 = (분양대상 대지 및 건축물 등 총추산액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 총 추산액 × 100%

5.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0	6~8	국지 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4	6~8	국지 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 도로			

※ ( )는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해당함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0	소로3-20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소로3-24	소로3-24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계획면적(㎡)	비고
신설	관리사무소		서초구 방배동 874-11번지 일원	43.64	지상1층
	주민공동시설	소 계		662.10	지상4층
		운동시설-헬스		186.30	
		운동시설-GX룸		88.48	
		커뮤니티룸		50.40	
		주민회의실		80.39	
		작은도서관		256.53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에 따라 설치

7.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5,076.4	획지	4,898.1	서초구 방배동 872-11 번지 일원	19	-	-	19	-	-

8. 건축시설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 구분</th><th rowspan="2">위치</th><th rowspan="2">주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2">용적률(%)</th><th rowspan="2">높이
(m)</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면적
(㎡)</th><th>명칭</th><th>면적
(㎡)</th><th>기준
(허용)</th><th>상한</th></tr>
<tr><td>신규</td><td>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td><td>5,076.4</td><td>획지</td><td>4,898.1</td><td>서초구
방배동
872-11
번지 일대</td><td>공동주택,
근린생활·업무·
체육시설</td><td>60
이하</td><td>250
이하</td><td>700
이하</td><td>120
이하</td><td>-</td></tr>
</table>

<table>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3">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라 의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
• 주택공급계획 : 252세대(임대주택 포함)
• 건립규모 및 비율(전용면적 기준)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세대수</th><th>비율(%)</th><th>비 고</th></tr>
<tr><td colspan="2">합 계</td><td>252세대</td><td>100.0</td><td>공공임대주택 54세대 포함</td></tr>
<tr><td rowspan="5">분양
주택</td><td>소 계</td><td>198세대</td><td>78.6</td><td>-</td></tr>
<tr><td>40㎡미만</td><td>3세대</td><td>1.2</td><td>-</td></tr>
<tr><td>40~60㎡미만</td><td>18세대</td><td>7.0</td><td>-</td></tr>
<tr><td>60~85㎡미만</td><td>127세대</td><td>50.4</td><td>-</td></tr>
<tr><td>85㎡초과</td><td>50세대</td><td>19.8</td><td>-</td></tr>
<tr><td rowspan="4">공공
임대
주택</td><td>소 계</td><td>54세대</td><td>21.4</td><td>-</td></tr>
<tr><td>40㎡미만</td><td>13세대</td><td>5.2</td><td>「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td></tr>
<tr><td>40~60㎡미만</td><td>27세대</td><td>10.6</td><td rowspan="2">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td></tr>
<tr><td>60~85㎡이하</td><td>14세대</td><td>5.6</td></tr>
</table>
</td></tr>
<tr><td>완화사항</td><td colspan="3">
•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도로 제외)
※ 방배지역중심인 대상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도로 제외)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른 용적률 적용 기준(의무사항)준수에 따른 용적률 완화
• 기준(허용)용적률 250% 이하 → 상한용적률 700.0% 이하
</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건축한계선</td><td colspan="2">•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3m</td></tr>
<tr><td rowspan="2">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대지 내 공지</td><td colspan="2">• 공개공지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동·서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보도형 전면공지
북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차도형, 2m 보도형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8m이상)</td></tr>
<tr><td>교통처리계획</td><td colspan="2">• 간선도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서초대로)</td></tr>
</table>

9. 공공기여 계획

구 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획지 (공동주택 등)	공공시설 (대지지분, 건축물 포함)	신설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5,076.4	4,898.1	1,577.18	178.3	-	-
기준/상한 용적률	• 기준(허용)용적률 = 250% • 상한용적률 = 700%					

구 분	산정내용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순무담 면적) = ① + ② + ③	
	①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 면적)	• 도로(정비기반시설) ‣ 도로 무상귀속 면적 : 178.3㎡ 순부담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78.3㎡ - 0㎡ - 0㎡ = 178.3㎡(순부담 면적) ‣ 가중치 적용 공공기여량 : 178.3㎡×(250/700) = 63.68㎡
	②기타시설 (공공시설)	• 기타시설(공공기여시설) ‣ 공공시설(업무시설, 운동시설) 면적 ㉠ 업무시설 : 505.97㎡(대지지분 186.46㎡+환산부지면적 319.52㎡) ㉡ 운동시설 : 531.08㎡(대지지분 186.82㎡+환산부지면적 344.26㎡)
	③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면적: 건축물 대지지분 476.44㎡
공공기여율 (순부담률)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름 • 공공기여율(순부담률) 산정(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 ={(700%-250%)/700%} × 1/2 = 32.15% 이상 ≤ 계획 32.20%	
기부채납 공공시설 부담에 관한 계획	■ 기부채납 공공시설 건축물 내용	

구분	세부명칭	위치	층 (전용층)	면적	비고 (관리청)
공공임대 업무시설	먹거리 창업센터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내	지상2-3층	전용면적: 1,238.24㎡ 연면적: 2,192.78㎡	건축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	스쿼시장		지하1층 ~ 지상1층	전용면적: 715.76㎡ 연면적: 1,359.67㎡	건축물 (서초구)
	클라이밍장		지하1층	전용면적: 417.83㎡ 연면적: 719.12㎡	

1) 공공임대업무시설(먹거리창업센터)의 관리청은 서울시로 하며, 서울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2) 공공체육시설(스쿼시, 클라이밍장)의 관리청은 서초구로 하며, 서초구청장이 운영 및 관리함
3) 향후 토지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층고·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
4) 향후 서울시·서초구 운영부서의 운영계획에 따라 기부채납 공공시설 세부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10.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모든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주택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시, 해당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감정평가 금액(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을 적용하여 부속토지 매입(서울시)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 매입(서울시) 및 부속토지는 기부채납

계획기준	• 정비사업(재개발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국토부고시 제2020-528호, 2020. 7. 22.) 제4조 제6항 및 제7항 및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제2020-401호, 2020. 9. 24.)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 확보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업지역에서는 5%로 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 •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전체 공공기여량 중 3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설치함(전용면적 85㎡ 이하)
산출근거	•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 총 54세대(연면적 6,862.89㎡)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13세대(연면적 1,259.73㎡) ▸역세권 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총 41세대(연면적 5,603.16㎡) - 전체 공공기여량(1,577.18㎡)의 30.2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 476.44㎡ 공급

건립규모 (전용면적)	임대주택 건설계획(안)			비율
	합계(세대수)	정비사업에 따른 의무 공공임대주택(세대수)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세대수)	
합계	54	13	41	100.0%
40㎡ 이하	13	13	-	24.0%
59㎡ 이하	27	-	27	50.0%
74㎡ 이하	7	-	7	13.0%
84㎡ 이하	7	-	7	13.0%

※ 추후 동·호수 전산추첨을 통해 공급(추첨순서는 임대주택 완료 후 분양주택 시행)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조합 또는 신탁업자	증) 199세대 (현황:53세대, 계획:252세대)	-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함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범죄예방 설계	•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공동출입구와 계단은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 감소 – 주차장법 규정에 따른 70룩스 조도 유지 – 지하주차장 조명은 눈부심 방지 조명을 설치하고 벽, 천장, 유입로에는 조명을 설치하도록 함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에 1개소 이상 설치	–
영역성 강화	• 특정 지역에 대한 공적·사적 공간을 구분하여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 • 주 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내 출입차단기를 설치	

14.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 내용	비고
환경보전	생활환경	• 보도, 공공보행통로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 포장재 사용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단지조성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재난방지	화재	• 건축법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 관할소방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피난·방화시설(피난계단, 방화구획 등)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을 설치	
	수재해	• 지구 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 억제 및 하수도시설 요량을 제고시켜 배수불량 방지	
	교통	•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구축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스트로브잣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벚나무 등 분포 • 식재된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여, 이식이 어려운 수목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목을 이식 후 새로 조성되는 조경 내 재식하는 방안 검토	

15. 세입자 주거대책

○ 사업시행자는 관계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따라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적격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 등에 대해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지원

○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예정

○ 세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 예정 (54세대 임대주택 및 타 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활용)

16.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평가제외 등급 •주요 동식물상의 서식처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지역 내 소규모 녹지공간 및 소생태계 조성
	2.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녹지모양, 내·외연결성 등 검토하여 녹지공간 적정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생활환경	1.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 주요 지형 변화없음	•주변 토지이용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등 조사 - 대상지 전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지역과 조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2.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을 참조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예상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3.물순환(생태면적률) 및 수질	생태면적률 30%	○	•대상지 내로 기존 건축물이 운영중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 경미 •운영시 오수발생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계획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 계획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4.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도로, 저층 건축물 일대로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건물 배치
	5.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경미	•비산방진망,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녹지대 최대 및 에너지절약 계획
	6.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2011년 이후 감소추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7.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등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운영시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처리
	8.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에너지효율 극대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기법(태양열 이용, 자연채광, 고효율 조명장치 등)을 최대 반영할 계획
	9.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 진동발생 •운영시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준수 등 녹지대 조성 및 복층 유리 설치 등
	10.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여가공간 확보	○	•대상지내 휴식·여가공간은 없음	•부대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휴식·여가 공간 조성
	11.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X	•대상지 북서~북동측 지역은 주거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입지 - 주거지 일조 부영향 지점 발생	•북측 저층주거지에 부형향을 최소화한 건축계획 수립
	12.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이면도로로 보차혼용	•부지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X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미설치	-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도로 보관소 설치 검토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2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방배동 874-5번지 일원	212,856.4	-	212,856.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212,856.4		212,856.4	100.00	
주거지역	소계	212,856.4	감) 4,898.1	207,958.3	97.70	
	제1종일반주거지역	1,281.7	-	1,281.7	0.6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0,128.3	-	20,128.3	9.46	
	제2종일반주거지역	65,991.1	-	65,991.1	3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24,455.3	감) 4,898.1	119,557.2	56.1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4,898.1	4,898.1	2.3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98.1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총괄표

구분	합 계			2류			3류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합계	42 (4)	10,634 (7,310)	108,852.3 (84,106)	7 (1)	3,125 (2,855)	6,071 (3,478)	35 (3)	7,509 (4,455)	102,781.3 (84,106)
광로	(1)	(4,150)	(80,310)	-	-	-	(1)	(4,150)	(80,310)
대로	(1)	(2,855)	(3,478)	(1)	(2,855)	(3,478)	-	-	-

구분	합 계			2류			3류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노선수(개)	연장(m)	면적(㎡)
중로	4 (2)	361 (305)	4,656 (3,796)	2	56	860	(2)	(305)	(3,796)
소로	36	3,268	20,408.3	4	214	1,733	32	3,054	18,675.3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로이며, 이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소로 노선번호 부여

(2)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64	40	주간선도로	4,150	서초동 (84호 광장)	사당동	일반도로	건고 제145호 (1978.6.15.)	서초대로
기정	대로	2	34	30	보조간선도로	2,855	이수교 대1-21	방배동 광-19	일반도로	건고 제198호 (1971.4.7.)	방배로
기정	중로	3	1	12	일반도로	95	방배동 891-24	방배동 141-32	국지도로	서고 제2012-193호 (2012.7.26.)	-
기정	중로	3	2	12	일반도로	210	방배동 892-23	방배동 141-40	국지도로	서고 제2012-193호 (2012.7.26.)	-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41	방배동 864-21	방배동 864-2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도구로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15	방배동 868-20	방배동 868-2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방배중앙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62	방배동 851-18	방배동 85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36	방배동 901-3	방배동 901-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52	방배동 925-3	방배동 925-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64	방배동 836-10	방배동 852-1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137	방배동 850-34	방배동 850-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25	방배동 876-41	방배동 875-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36	방배동 876-21	방배동 876-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142	방배동 877-13	방배동 877-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19	방배동 880-8	방배동 880-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46	방배동 880-19	방배동 879-9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45	방배동 882-4	방배동 88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8	방배동 894-20	방배동 874-1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25	방배동 859-16	방배동 895-1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1	6	국지도로	93	방배동 895-21	방배동 895-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2	6	국지도로	93	방배동 895-11	방배동 896-1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3	6	국지도로	127	방배동 899-1	방배동 897-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4	6	국지도로	37	방배동 899-18	방배동 899-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5	6	국지도로	51	방배동 935-40	방배동 935-2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6	6	국지도로	260	방배동 935-20	방배동 937-22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7	6	국지도로	119	방배동 938-26	방배동 938-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8	6	국지도로	132	방배동 939-20	방배동 939-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19	6	국지도로	180	방배동 937-33	방배동 939-20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0	6~8	국지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1	6	국지도로	53	방배동 852-16	방배동 852-1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2	6	국지도로	123	방배동 873-10	방배동 852-15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114	방배동 872-14	방배동 87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4	6~8	국지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도로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13	방배동 871-6	방배동 87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31	방배동 871-13	방배동 871-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47	방배동 868-10	방배동 868-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53	방배동 864-19	방배동 864-13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44	방배동 866-29	방배동 866-26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5	4	국지도로	86	방배동 951-11	방배동 951-17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77	방배동 951-31	방배동 951-8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7	6	국지	23	방배동	방배동	일반	서울특별시고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도로		424-27	424-25	도로	제2020-399호 (2020.9.24.)	
기정	소로	3	38	6	국지 도로	24	방배동 938-24	방배동 938-23	일반 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 ( )안은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해당함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0	소로3-20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소로3-24	소로3-24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나) 철도 : 변경없음
다) 공원 : 변경없음
라) 공공청사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1) 최대개발규모

구분	간선부	이면부	비고
최대개발규모	3,000㎡ 미만	1,000㎡ 미만	-

주)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2) 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가구번호	가구		비고
			위치	면적(㎡)	
기정	2	SR1	방배동 866-27일대	1,750.6	도심기능지원지역
		SR2	방배동 864-18일대	2,501.2	도심기능지원지역
		SR3	방배동 951-3일대	2,984.6	도심기능지원지역
		SR4	방배동 951-16일대	4,317.5	도심기능지원지역
		SR5	방배동 867-30일대	1,030.4	도심기능지원지역
		SR6	방배동 867-33일대	564.8	도심기능지원지역
		SR7	방배동 868-11일대	578.3	도심기능지원지역
		SR8	방배동 868-13일대	3,419.3	도심기능지원지역
		SR9	방배동 869-9일대	1,095.6	도심기능지원지역
		SR10	방배동 871-9일대	3,590.3	도심기능지원지역
		SR11	방배동 332-7일대	7,621.0	도심기능지원지역
		SR12	방배동 937-1일대	2,089.8	도심기능지원지역
		SR13	방배동 936-12일대	5,495.8	역세권활성화지역
		SR14	방배동 935-34일대	2,476.5	도심기능지원지역
		SR15	방배동 874-8일대	888.8	역세권활성화지역
		SR16	방배동 852-22일대	6,899.5	도심기능지원지역
		SR17	방배동 851-5일대	7,414.5	도심기능지원지역
		SR18	방배동 875-1일대	2,145.3	역세권활성화지역
		SR19	방배동 897-1일대	4,912.2	도심기능지원지역
		SR20	방배동 877-12일대	2,089.8	도심기능지원지역
		SR21	방배동 895-19일대	2,259.4	도심기능지원지역
		SR22	방배동 894-5일대	2,476.5	도심기능지원지역
		SR23	방배동 880-12일대	4,398.8	도심기능지원지역
	3	GR1	방배동 867-23일대	3,291.5	생활커뮤니티지역
		GR2	방배동 867-18일대	1,742.5	생활커뮤니티지역

구분	도면 표시	가구번호	가구		비고
			위치	면적(㎡)	
		GR3	방배동 868-2일대	1,648.2	생활커뮤니티지역
		GR4	방배동 873-27일대	7,274.7	생활커뮤니티지역
		GR5	방배동 939-21일대	7,009.2	생활커뮤니티지역
		GR6	방배동 937-33일대	2,774.2	생활커뮤니티지역
		GR7	방배동 876-32일대	4,785.6	생활커뮤니티지역
		GR8	방배동 895-10일대	1,081.6	생활커뮤니티지역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지정용도

구분	도면번호	지정용도	비고
신설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주) 지정용도는 저층부(지상1층, 지상2층) 층별 바닥면적(전용면적 기준)의 30% 이상 확보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지정용도 신설 - 특별계획구역2 저층부(1~2층) 지정용도 신설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위하여 가로활성화를 위한 저층부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불허용도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권장용도 : 변경없음

2) 건축물의 용도완화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완화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도면번호	지정용도	비고
기정	A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2)완화	
	B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3) 완화	-

구분	도면번호	지정용도	비고
변경	A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2) 완화	결정도 참조 (특별계획구역2 폐지)
	B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의 면적제한1)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문화 및 집회시설의 면적제한3) 완화	

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용도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항
주) 면적제한1) :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3,000㎡ 미만)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주) 면적제한2) :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3,000㎡ 미만)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주) 면적제한3)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문화 및 집회시설(2,000㎡ 미만) 용도의 바닥면적 제한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용도완화 폐지(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용도완화 폐지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도완화 폐지

3)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폐율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건폐율	비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1)	60% 이하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50%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1) 일반상업지역	60% 이하	

주)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별도 적용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	• 건폐율 변경 -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추가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하여 일반상업지역 추가

나) 용적률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주1)	상한용적률주2)	비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별도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50%이하	330%이하	4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구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주1)	상한용적률주2)	비고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50%이하	350%이하	400%이하	특별계획(가능)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별도적용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250%이하	330%이하	400%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이하	2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이하	20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이하	150%이하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	250%이하	-	700%이하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주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2) 상한용적률 = 산정된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X 1.3 X 가중치 X a토지 + 1.0 X a건축물)이하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 허용용적률
- a 토지 = 공공시설(토지) 적 :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a 건축물 = 공공시설(건축물 환산부지) 제공면적 은 공공시설(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용도(준주택 제외)를 용적률의 10% 이상 지상층에 설치하여야 함(다만, 입지특성상 비주거용도 설치 제한 등 해당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비주거용도 완화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
주) 특별계획구역2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비주거 용도(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 2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 특별계획구역2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을 따르도록 함.
주) 특별계획구역2에서 상한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의 용적률 적용기준 준수시 적용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상한용적률 변경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상한용적률 변경

다)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 신설

구분		적용기준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32.1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기준(허용) 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7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시설종류	공공주택/ 지역필요시설/ 도로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비율	지상 용적률 10% 이상		
		전체 연면적 20% 이상		
	주거비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적용		
주택건설기준	주택규모	공공주택 : 전용 85㎡ 이하 소셜믹스를 통해 공급		
건축물 형태		3가지 사항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시)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 설치)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4)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기준높이(m)	최고높이(m)	비고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35 이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25 이하	-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30 이하	35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	25 이하	-
	일반상업지역	-	120 이하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일반상업지역 추가 - 높이 120m 이하(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에 따라 특별계획구역2의 건축물 최고높이 변경

나) 건축물의 높이 완화 항목 및 완화내용 : 변경없음

항목		계획내용
기준높이 완화6)	우수디자인1)	• 기준높이 X 0.1
	지하철 출입구 연계2)	• 기준높이 X 0.1
	권장용도3)	• 기준높이 X (권장용도면적/주차장제외 연면적)
	공개공지조성4)	• 기준높이 X {(공개공지 면적 - (공개공지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기준높이 X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등 면적의 50% / 대지면적)}
	공공시설제공5) (기부채납)	• 기준높이 X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하기 전 대지면적)

주1) '우수디자인' 의 적용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주2) '지하철연결통로' 는 폭 4m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주3) 권장용도 : 권장용도는 바닥면적 합계가 전체 연면적(지하층은 포함, 주차장 등 공용면적 제외)의 30% 이상 되도록 확보하여야 함
주4) 공개공지 조성 : '필로티구조' 는 높이 6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 면적의 2분의1만 산입함
주5) 공공시설 제공 : 기부채납에 따른 높이 완화 산정 시 적용한 제공면적은 상한용적률 산정 시에 중복 적용할 수 없음.
다만, 제공된 부지면적을 용적률 완화(상한용적률) 및 기준높이 완화에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주) 기준높이 완화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는 용적률 완화와 중복하여 적용치 않음
주6) 기준높이 완화기준 변경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변경하도록 함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 변경

구분		적용지역	최고높이(m)	비고
건축한계선	기정	간선도로변(서초로, 방배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
		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계획	-
		특별계획(가능)구역	• 이면도로 전면공지 2m 이격 계획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1~6
		존치구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계획	존치구역
	변경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방배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
		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계획	-
		특별계획(가능)구역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계획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가능구역2~6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이격 계획 • 동·서측 이면도로 2m 이격 계획 • 북측 이면도로 3m 이격 계획	특별계획구역2
		존치구역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격 계획	존치구역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축한계선 적용 도로명 변경 - 서초로 ⇒ 서초대로 •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내용(전면공지 문구 삭제) 변경 - 이면도로 전면공지 2m 이격 계획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 계획 • 특별계획구역2 내 건축한계선 변경 - 이면도로 건축한계선 2~3m 이격계획	•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장소명 정합성을 위해 기존 서초로를 서초대로로 명칭 변경 • 특별계획(가능)구역 이면도로 건축한계선 결정으로 전면공지 문구 삭제 • 특별계획구역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

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변경없음

다.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개공지	기정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보행 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적용기준 : 규제도 위치 준수	서초로 및 방배로 전면부
	변경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정도에 표시된 위치에 공개공지 조성 • 공개공지 위치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요보행 결절점 및 전면도로 가각부, 전면도로변에 설치 • 적용기준 : 규제도 위치 준수	서초대로 및 방배로 전면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기정	• 간선도로변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도로(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적용기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설치 금지 - 적용기준 : 건축한계선 1m ※ 전면공지 내 공공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	-
	변경	• 간선도로변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간선도로변 미관증진 및 보행공간 확보 - 접하는 도로(보도)와 단차를 없애고, 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의 설치 금지 - 적용기준 :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 및 그 외 대지경계 - 건축선을 통한 전면공지 확보 - 보·차도와 접하는 곳은 단차를 없애고 차량 또는 보행자 통행이 원활한 구조로 설치 - 주차장, 통행방해물 설치 금지 - 적용기준 : 건축한계선 1m[특별계획구역2 외 지역], 건축한계선 2~3m[특별계획구역2] ※ 전면공지 내 공공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가능	-

주) 특별계획구역2 공개공지 및 전면공지 계획은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및 세부개발계획에 따름

▮ 변경 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공개공지 적용 도로명 변경 - 서초로 ⇒ 서초대로 • 전면공지 계획내용 변경 - 이면도로 건축한계선 적용지역 구분 - 이면도로 1m ⇒ 특별계획(가능)구역 외 지역 1m, 특별계획(가능)구역 2~3m	• 지구단위계획 지침 적용 장소명 정합성을 위해 기존 서초로를 서초대로로 명칭 변경 • 특별계획구역2(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를 포함한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이면도로 건축한계선 지정 폭원이 상이하여 전면공지 적용 지역을 구분

2) 차량동선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가로변 및 교차부의 원활한 차량소통과 가로변 보행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설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별도 적용

4.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계획

가. 특별계획구역의 총괄 결정조서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방배동 875-5번지 일대	5,200.7	분할가능선 지정
변경	특별계획구역1	방배동 875-5번지 일대	5,200.7	분할가능선 지정
신설	특별계획구역2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5,076.4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역명 변경 -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1	• 특별계획구역2의 지정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번호 부여
신설	• 구역 지정 - 특별계획구역2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나. 특별계획가능구역의 총괄 결정조서

◦ 특별계획가능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가능구역1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5,076.4	분할가능선 지정
	특별계획가능구역2	방배동 874-2번지 일대	3,295.0	-
	특별계획가능구역3	방배동 876-19번지 일대	2,670.3	-
	특별계획가능구역4	방배동 898-3번지 일대	2,997.9	-
	특별계획가능구역5	방배동 899-2번지 일대	1,985.2	-
	특별계획가능구역6	방배동 901-1번지 일대	1,932.9	-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변경	특별계획가능구역2	방배동 874-2번지 일대	3,295.0	-
	특별계획가능구역3	방배동 876-19번지 일대	2,670.3	-
	특별계획가능구역4	방배동 898-3번지 일대	2,997.9	-
	특별계획가능구역5	방배동 899-2번지 일대	1,985.2	-
	특별계획가능구역6	방배동 901-1번지 일대	1,932.9	-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 구역 폐지 - 특별계획가능구역1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 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1을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2를 지정

다. 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지침

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1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구역	방배동 875-5번지 일대	통합시행		5,200.7	
			분리시행	특계 1-1	3,738.2	
				특계 1-2	1,462.5	
변경	특별계획구역1	방배동 875-5번지 일대	통합시행		5,200.7	구역명 변경
			분리시행	특계 1-1	3,738.2	
				특계 1-2	1,462.5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구역명 변경 -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1	• 특별계획구역2의 지정에 따라 기존 특별계획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번호 부여로 특별계획구역 명칭 변경

◦ 계획지침(통합개발 및 분할 시행시) : 변경없음

2) 특별계획가능구역 1 ⇒ 특별계획구역2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특별계획가능구역1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5,076.4	
변경	특별계획구역2	방배동 872-11번지 일대	5,076.4	

▌ 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 특별계획가능구역1 폐지 및 특별계획구역2 결정 - 면적 : 5,076.4㎡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해 특별계획구역 지정

◦ 계획지침(기정 : 통합개발 및 분할시행 시)

구분			특별계획 가능구역 계획지침(안)		비고
			통합개발	분할시행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세부개발계획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		
면적			• 5,076.4㎡	• 특가 1-1 : 3,324.0㎡ • 특가 1-2 : 1,752.4㎡	
공공기여			• 기부채납 순부담 15% 이상		
			※ 생활권계획 상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공공시설 (임대주택, 임대상가, 노인복지시설 등)		
용도	권장용도	전층	• 권장용도 분류표상의 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설 중 대규모점포		
	불허용도	전층	• 불허용도 분류표상의 A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허용 : 350% 이하 / 상한 : 400% 이하		
높이			• 60m 이하	• 55m 이하	차등적용
배치			• 건축한계선 - 서초로 및 방배로 변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 :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기타 사항	대지내 공지		• 이면도로 : 전면공지 2m		
	교통처리계획		• 간선도로에서 차량진출입 금지(서초대로, 방배로)		

※ 일정 면적(1,000㎡) 이상 주민제안 시 심의를 통하여 분할시행 가능
※ 분할시행 시 통합개발 대비 높이계획을 차등적용
※ 세부개발계획 결정시 지적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 정정가능

(이 하 여 백)

◦ 계획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구분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	비고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시)	-
면적			• 5,076.4㎡ (획지 4,898.1㎡ / 도로 178.3㎡)	-
공공기여			• 공공기여율 32.15% 이상 - 공공임대주택 및 지역필요시설(공공임대업무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
용도	지정	저층부주1) (지상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	-
	불허	전층	•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시설 입지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총포판매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군 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기준 : 250% 이하 / 상한 : 700%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상의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준수 시 - 비주거 용도(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 20% 이상 -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 따라 공공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용적률 추가 완화	-
최고높이			• 120m 이하	-
배 치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3m	-
형태 및 색채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지침에 따름	-
기타 사항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 동·서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보도형 전면공지 - 북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차도형, 2m 보도형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8m 이상)	-
	교통처리계획		•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금지(서초대로)	-

주) 지적 측량 성과에 따른 면적이 조정될 수 있음
주1) 지정용도는 저층부(지상1층, 지상2층) 층별 바닥면적(전용면적 기준)의 30% 이상 확보

3) 특별계획가능구역2 : 변경없음

4) 특별계획가능구역3 : 변경없음

5) 특별계획가능구역4 : 변경없음
6) 특별계획가능구역5 : 변경없음
7) 특별계획가능구역6 : 변경없음

5.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계획기준 : 변경
가.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 변경없음
나.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1)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가능구역4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1, 특별계획가능구역4
2) (기정)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가능구역1, 2
(변경)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가능구역2
3)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가능구역3, 6 (변경없음)

다.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공통사항) : 변경없음

라. 용도지역 상향된 경우(91.5.11 이후 변경)의 건축물 용도에 따른 용적률 및 용도제한 적용 기준
1)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 : 주거부분의 용적률은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만큼 허용 (변경없음)
2) 주거복합 건축물 건립 시 주거 대 비주거 용적률 배분방법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기준용적률</th><th rowspan="2">허용용적률</th><th colspan="2">내용</th><th rowspan="2">비고</th></tr>
<tr><th>주거건립가능</th><th>비주거건립</th></tr>
<tr><td rowspan="2">기정</td><td rowspan="2">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 rowspan="2"></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r>
<tr><td rowspan="3">변경</td><td rowspan="2">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 rowspan="2"></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기부채납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 α/β</td><td rowspan="2"></td></tr>
<tr><td colspan="2">α : 허용용적률에서 주거비율, β : 상한용적률</td></tr>
<tr><td>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된 경우</td><td colspan="3">비주거 용도(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 10% 이상 준수</td><td>특별계획구역2에 한함</td></tr>
</table>

※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을 따른다. (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의 상한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따른다.(특별계획구역2에 한함)

7.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의 적용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8. 경미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이 하 여 백)

3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 조서

1. 특별계획구역2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특별계획구역2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	증) 5,076.4	5,076.4	역세권 활성화 사업

▌ 결정 사유서

구분	변경내용	결정사유
신설	• 특별계획구역2 결정 - 면적 : 5,076.4㎡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도시정비형 재개발)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076.4	-	5,076.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76.4	감) 4,898.1	178.3	3.5	
일반상업지역	-	증) 4,898.1	4,898.1	96.5	

▌ 변경 사유서

구역명	변경내용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4,898.1	•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가. 교통시설

1) 도로 :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0	6	국지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0	6~8	국지도로	263 (50)	방배동 874-7	방배동 852-1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도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99호 (2020.9.24.)	
변경	소로	3	24	6~8	국지도로	108 (38)	방배동 872-3	방배동 873-1	일반도로		

※ ( )는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 해당함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20	소로3-20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소로3-24	소로3-24	• 일부구간 도로확폭 - B=6m → 8m	•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수요에 대응하고 원활한 차량교행을 위하여 확폭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획지	①	서초구 방배동 872-11번지 일원	4,898.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 획지 결정	• 내방역 역세권의 중심성 강화와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시행을 위한 획지 결정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저층부 (지상1~2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판매시설 중 상점	좌동	-

주) 지정용도는 저층부(지상1층, 지상2층) 층별 바닥면적(전용면적 기준)의 30% 이상 확보

◦ 건축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전층	• 해당 필지의 용도지역에서 불허하는 시설 입지 불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 총포판매소,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마군 장외발매소 및 마권전화투표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골프연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	좌동	-

2)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폐율	60%이하	좌동	-

◦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용적률	250%이하	-	700%이하	좌동	-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상의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준수 시
주2) 비주거 용도(준주택과 생활형숙박시설 제외)를 용적률 10% 이상, 연면적 20% 이상을 준수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주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에 따라 공공주택 제공을 통해 주거용적률 추가 완화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

구분		적용기준	세부개발계획	완화내용	비고
공공기여	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32.15% 이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부지면적의 32.20%	기준(허용) 용적률 250% 상한용적률 70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시설종류	• 공공임대주택 30% 이상(권장) • 한가지 시설 50% 이하(권장)	• 공공임대주택 : 30.21% • 공공임대업무시설: 32.08% • 지역필요시설: 33.67%		
건축물 용도 구분	비주거 비율	• 지상 용적률 10% 이상 • 전체 연면적 20% 이상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용적률 비율] 주거 : 비주거 = 81.29% : 18.71% • [전체 연면적 비율] 주거 : 비주거 = 76.08% : 23.92%		
	주거 비율	• 400%+(14.58%+73.56%)*2 = 576.27%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16 적용	• 주거용적률 569.04% - 민간분양주택 : 480.90% - 공공임대주택 : 88.14%		
주택 건설 기준	주택 규모	• 공공임대주택(재개발) : 전용40㎡이하 • 공공임대주택(역세권활성화) : 전용85㎡이하	• 공공임대주택(재개발) : 39㎡ • 공공임대주택(역세권활성화) : 49㎡, 59㎡, 74㎡, 84㎡		

구분	적용기준	세부개발계획	완화내용	비고
	• 민간분양주택 : 기준없음	• 민간분양주택 : 39㎡, 49㎡, 49㎡, 74㎡, 84㎡, 108㎡		
건축물 형태	• 3가지 사항 의무적 이행 적용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 친환경 건축물 - 역사문화 보전(해당시)	•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친환경 • 건축물 이행 적용 • 역사문화보전 해당사항 없음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00㎡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필요시 층별 면적 분할 설치)	• 주민공동시설 705.74㎡ 계획 -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개방형)		

주)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준용

3)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높이 결정조서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최고높이	120m 이하	좌동	-

4)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배치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3m	좌동	-

◦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외관 및 의장	1층부 형태 (규제)	• 전면도로에 접한 지상1층 외벽은 투시율 50%이상 확보	좌동	-
	외벽처리 (규제)	•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가로에 노출 제한		
전면부 처리	1층 바닥높이 (규제)	• 접한 도로 및 공지와의 높이 차이는 10㎝ 이하로 조성		
	건축선 후퇴부분처리 (규제)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단차가 없게 조성 • 담장이나 기타 유사한 일체의 통행 방해물의 설치금지 • 공공부문 포장패턴 및 재료와 조화를 이루는 포장재료 사용		
건축물 부수시설	옥외 광고물 (규제, 권장)	•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롭게 설치 • 광고물 조명 권장		
	조명 (권장)	• 장소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명 유도 • 야간조명 설치		

5)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구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대지내 공지	• 공개공지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지정된 위치를 준수하여 「건축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 대지면적의 10% 이상 확보 •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서초대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m 보도형 전면공지 - 동·서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m 보도형 전면공지 - 북측 이면도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m 차도형, 2m 보도형 전면공지 • 공공보행통로 : 일반인에게 상시개방(폭원 6m 이상, 유효높이 8m 이상)	좌동	-
교통처리계획	•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 금지(서초대로)		

(이 하 여 백)

6)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환경	1.비오톱 및 동식물상	비오톱 보전등급 향상 동식물상 보호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및 상업 및 업무지비오톱, 평가제외 등급 •주요 동식물상의 서식처 없음	•녹지공간의 최대 확보로 도시지역 내 소규모 녹지공간 및 소생태계 조성
	2.생태네트워크	녹지연결성 확보	○	•녹지면적, 녹지모양, 내·외연결성 등 검토하여 녹지공간 적정 확보	•자연 및 인공지반녹지 등 조성을 통한 녹지공간 확보 및 녹지 네트워크 구축
생활환경	1.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절성토 비율 최소화 - 주요 지형 변화없음	•주변 토지이용 및 지형에 순응한 계획 수립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및 용도지역 등 조사 - 대상지 전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위계획에 부합되고 주변 지역과 조화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지하수위보전	○	•지하공간계획으로 지하수 유출 예상	•지하공간 최소화, 완벽한 차수벽 시공으로 지하수위유지
	2.토양	토양오염 최소화	○	•토양측정망을 참조한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오염물질 발생예상	•폐유 보관소 설치 및 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생활환경	3.물순환(생태면적률) 및 수질	생태면적률 30%	○	•대상지 내로 기존 건축물이 운영중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 경미 •운영시 오수발생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투수포장 등 적용 계획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 저감 계획 •기존 하수관로에 연계처리
	4.바람 및 열	바람길 확보	○	•도로, 저층 건축물 일대로 바람길 형성	•바람길 확보 및 주변 건축물과 연계한 건물 배치
	5.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 최소화	○	•공사시 비산먼지발생 경미	•비산방진망,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등 저감방안 수립 •녹지대 최대 및 에너지절약 계획
	6.온실가스	온실가스배출 최소화	○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 2011년 이후 감소추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계획 수립,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 수립
	7.친환경적 자원순환(폐기물)	폐기물발생량 최소화	-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발생 •운영시 생활폐기물 발생	•생활폐기물 등 관련기준에 따라 처리 •운영시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처리
	8.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	•과다한 에너지 사용 없음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에너지효율 극대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계획 등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 기법 (태양열 이용, 자연채광, 고효율 조명장치 등)을 최대 반영할 계획
	9.소음·진동	소음·진동 최소화	○	•공사시 건설장비 등에 의한 소음, 진동발생 •운영시 교통소음 발생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준수 등 녹지대 조성 및 복층 유리 설치 등

검토항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10.휴식 및 여가공간	양질의 휴식·여가공간 확보	○	•대상지내 휴식·여가공간은 없음	•부대시설,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휴식·여가 공간 조성
	11.일조	총 4시간 및 연속 2시간 확보	X	•대상지 북서~북동측 지역은 주거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입지 - 주거지 일조 부영향 지점 발생	•북측 저층주거지에 부영향을 최소화한 건축계획 수립
	12.보행친화공간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대상지 주변은 대부분 이면도로로 보차혼용	•부지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차량 및 보행동선 확보
		자전거전용 도로계획수립	X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도로 미설치	-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도로 보관소 설치 검토	•단지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Ⅲ.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3.19.) 심의결과 : 수정가결

<table>
<tr><th>구분</th><th>주요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수정사항</td><td>
• 금회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사항 반영하여 수정
- 주택공급계획 및 공공기여계획(공공임대주택 대지지분)은 구청장 수정가결 요청(안) 반영
<table>
<tr><th>구분</th><th>열람(안)</th><th>수정가결 요청(안)</th></tr>
<tr><td>주택공급계획</td><td>
<table>
<tr><th>구분</th><th>계</th><th>일반</th><th>임대</th></tr>
<tr><td>합계</td><td>252</td><td>199</td><td>53</td></tr>
<tr><td>40㎡미만</td><td>16</td><td>3</td><td>13</td></tr>
<tr><td>40~60㎡미만</td><td>45</td><td>21</td><td>24</td></tr>
<tr><td>60~85㎡미만</td><td>131</td><td>115</td><td>16</td></tr>
<tr><td>85㎡초과</td><td>60</td><td>60</td><td>-</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계</th><th>일반</th><th>임대</th></tr>
<tr><td>합계</td><td>252</td><td>198</td><td>54</td></tr>
<tr><td>40㎡미만</td><td>16</td><td>3</td><td>13</td></tr>
<tr><td>40~60㎡미만</td><td>45</td><td>18</td><td>27</td></tr>
<tr><td>60~85㎡미만</td><td>131</td><td>117</td><td>14</td></tr>
<tr><td>85㎡초과</td><td>60</td><td>60</td><td>-</td></tr>
</table>
</td></tr>
<tr><td>공공시설부지</td><td>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178.3㎡
- 가중치 적용 공공기여량
: 178.3㎡×(250/700) = 63.68㎡
• 기타시설(공공시설)
- 업무시설
: 505.97㎡(대지지분 186.46㎡
+ 환산부지면적 319.52㎡)
- 운동시설
: 531.08㎡(대지지분 186.82㎡
+ 환산부지면적 344.26㎡)
• 기타시설(공공시설)
- 공공임대주택(40세대) 기부채납 면적
: 건축물 대지지분 476.35㎡
</td><td>
• 정비기반시설
- 도로 : 178.3㎡
- 가중치 적용 공공기여량
: 178.3㎡×(250/700) = 63.68㎡
• 기타시설(공공시설)
- 업무시설
: 505.97㎡(대지지분 186.46㎡
+ 환산부지면적 319.52㎡)
- 운동시설
: 531.08㎡(대지지분 186.82㎡
+ 환산부지면적 344.26㎡)
• 기타시설(공공시설)
- 공공임대주택(41세대) 기부채납 면적
: 건축물 대지지분 476.44㎡
</td></tr>
<tr><td>기부채납시설</td><td>
<table>
<tr><th>구분</th><th>세부명칭</th><th>층(전용층)</th><th>면적</th><th>비고(관리청)</th></tr>
<tr><td>공공임대업무시설</td><td>먹거리 창업 센터</td><td>지상 2-3층</td><td>전용 1,238.24㎡
연면적 2,192.78㎡</td><td>서울시</td></tr>
<tr><td>공공체육</td><td>스쿼시장</td><td>지상 1층</td><td>전용 387.31㎡</td><td>서초구</td></tr>
</table>
</td><td>
<table>
<tr><th>구분</th><th>세부명칭</th><th>층(전용층)</th><th>면적</th><th>비고(관리청)</th></tr>
<tr><td>공공임대업무시설</td><td>먹거리 창업 센터</td><td>지상 2-3층</td><td>전용 1,238.24㎡
연면적 2,192.78㎡</td><td>서울시</td></tr>
<tr><td>공공체육</td><td>스쿼시장</td><td>지하1층</td><td>전용 715.76㎡</td><td>서초구</td></tr>
</table>
</td></tr>
</table>
</td><td>• 수정가결 요청사항에 기 반영된 사항임</td><td>반영</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주요의견</th><th>조치계획</th><th>비고</th></tr>
<tr><td></td><td>
<table>
<tr><th>구분</th><th>세부 명칭</th><th>층 (전용 층)</th><th>면적</th><th>비고 (관리청)</th></tr>
<tr><td rowspan="2">시설</td><td></td><td></td><td>연면적 794.37㎡</td><td rowspan="2"></td></tr>
<tr><td>클라이밍 장</td><td>지하 1층</td><td>전용면적 746.28㎡ 연면적 1,402.71㎡</td></tr>
</table>
<table>
<tr><th>구분</th><th>세부 명칭</th><th>층 (전용 층)</th><th>면적</th><th>비고 (관리청)</th></tr>
<tr><td rowspan="2">시설</td><td></td><td>~ 지상1층</td><td>연면적 1,359.67㎡</td><td rowspan="2"></td></tr>
<tr><td>클라이밍 장</td><td>지하1층</td><td>전용면적 417.83㎡ 연면적 719.12㎡</td></tr>
</table>
</td><td></td><td></td></tr>
</table>

Ⅳ. 기타 관련사항은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서에 따름

Ⅴ. 관련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계획[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서 참조 :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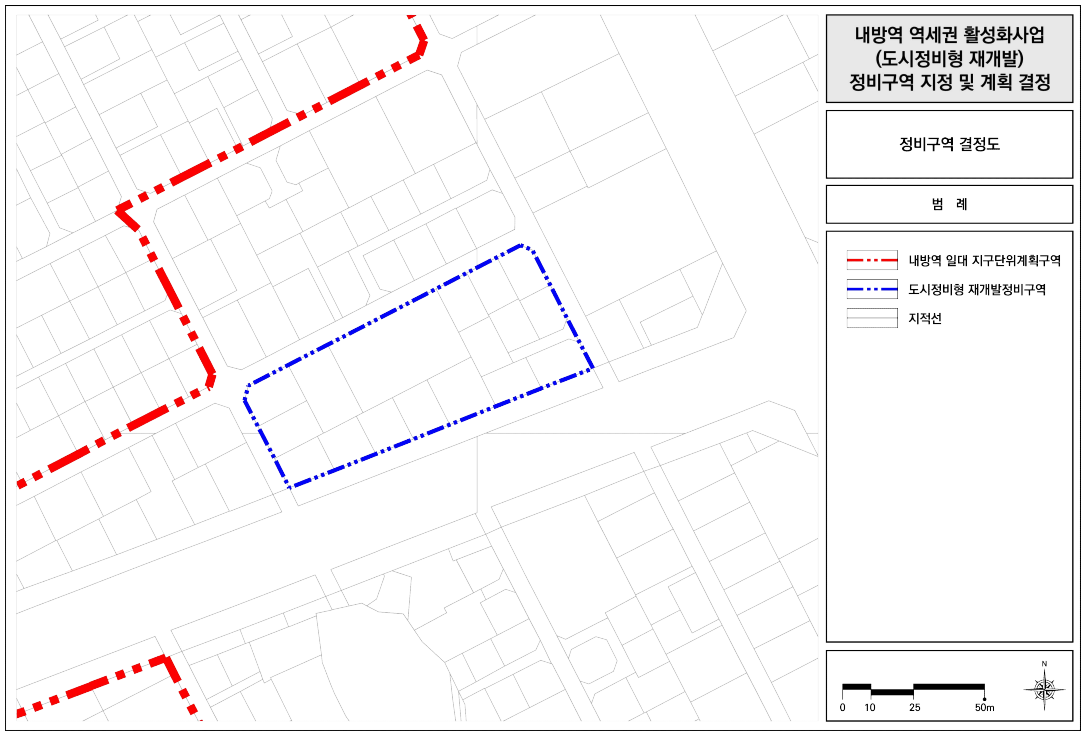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Ⅴ.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전략과(☎02-2133-4655) 및 서초구 도시계획과(☎02-2155-6783)에 관련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공간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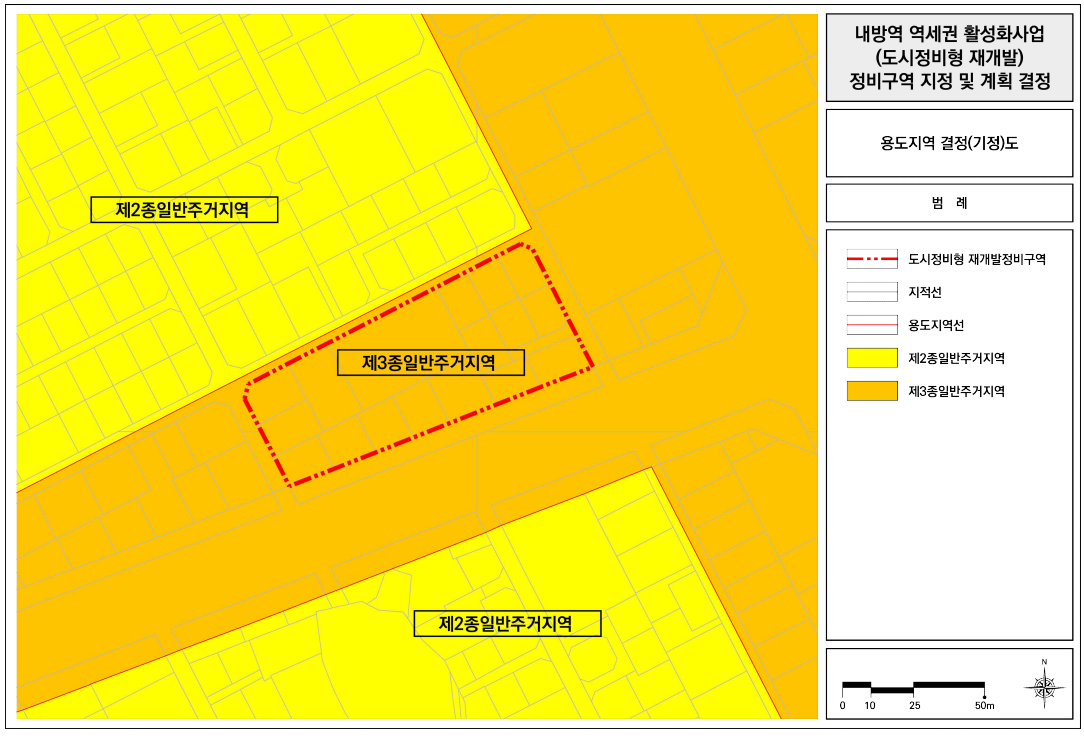
▣ 내방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계획 결정도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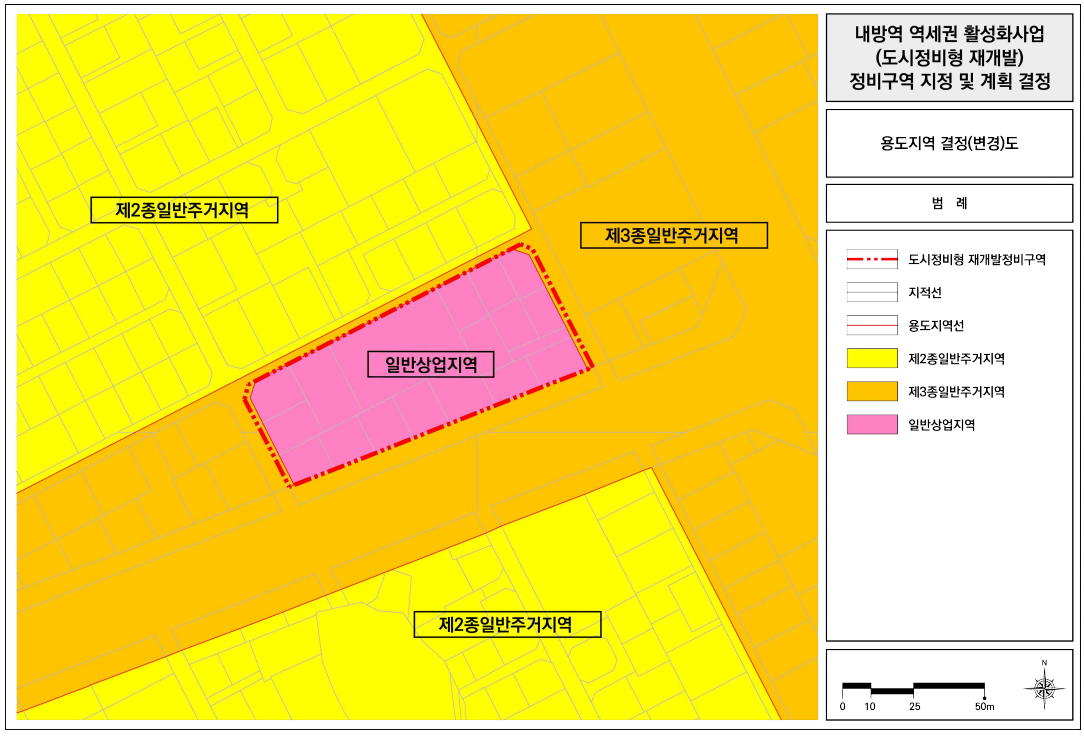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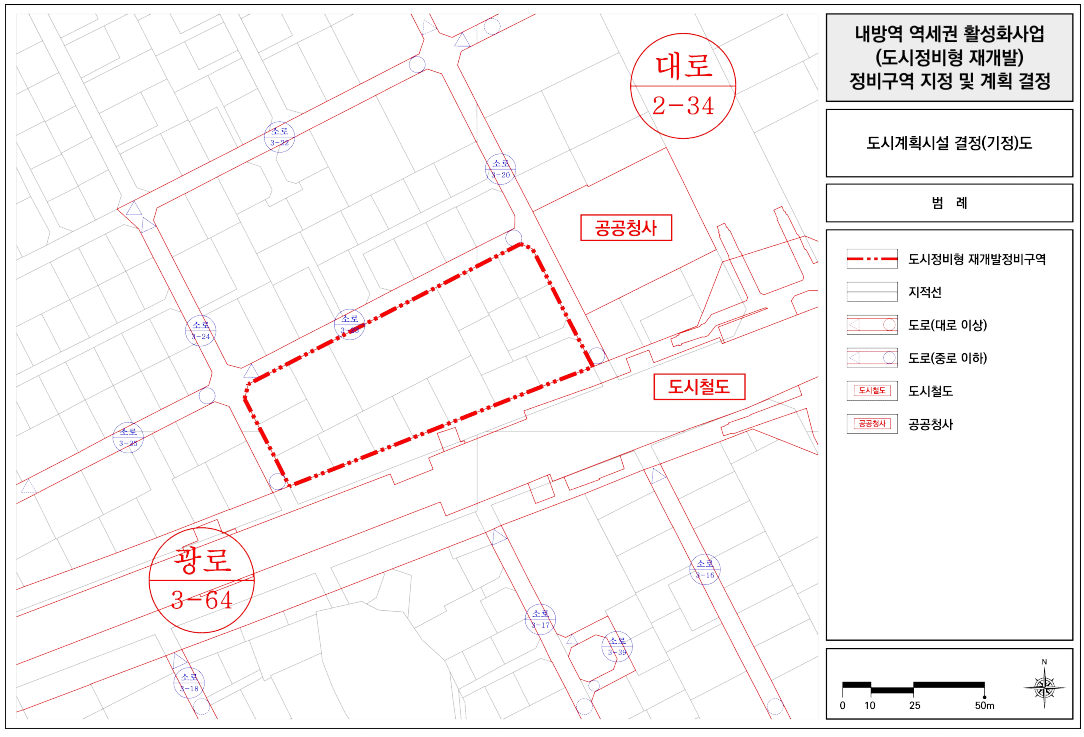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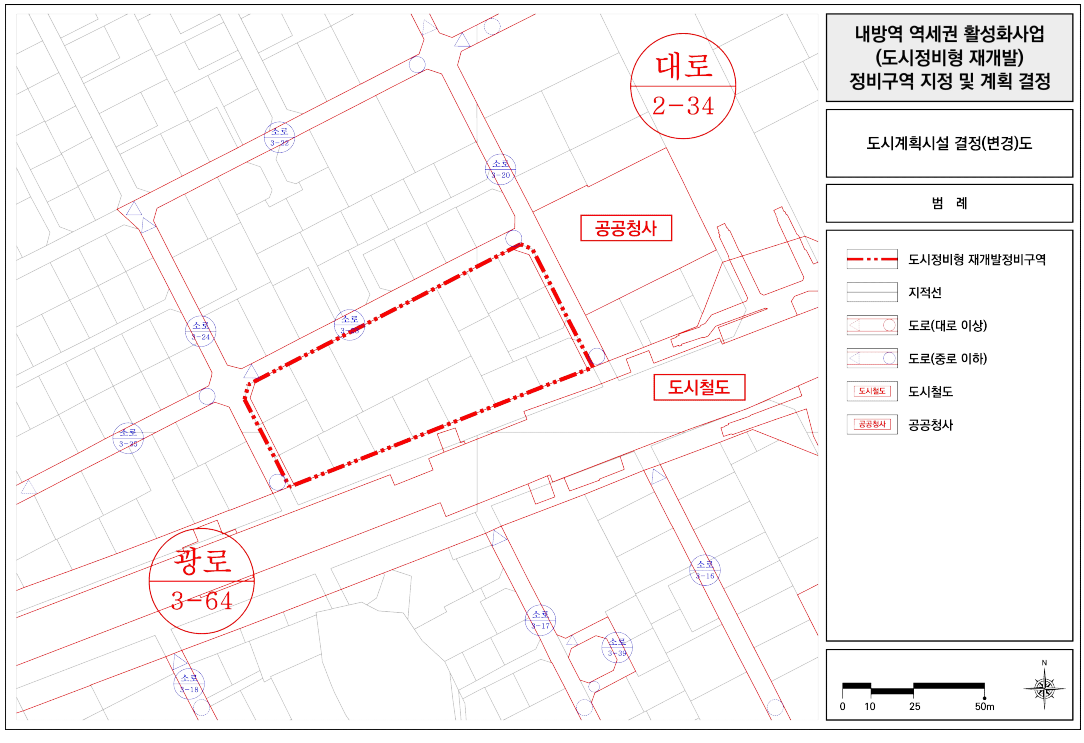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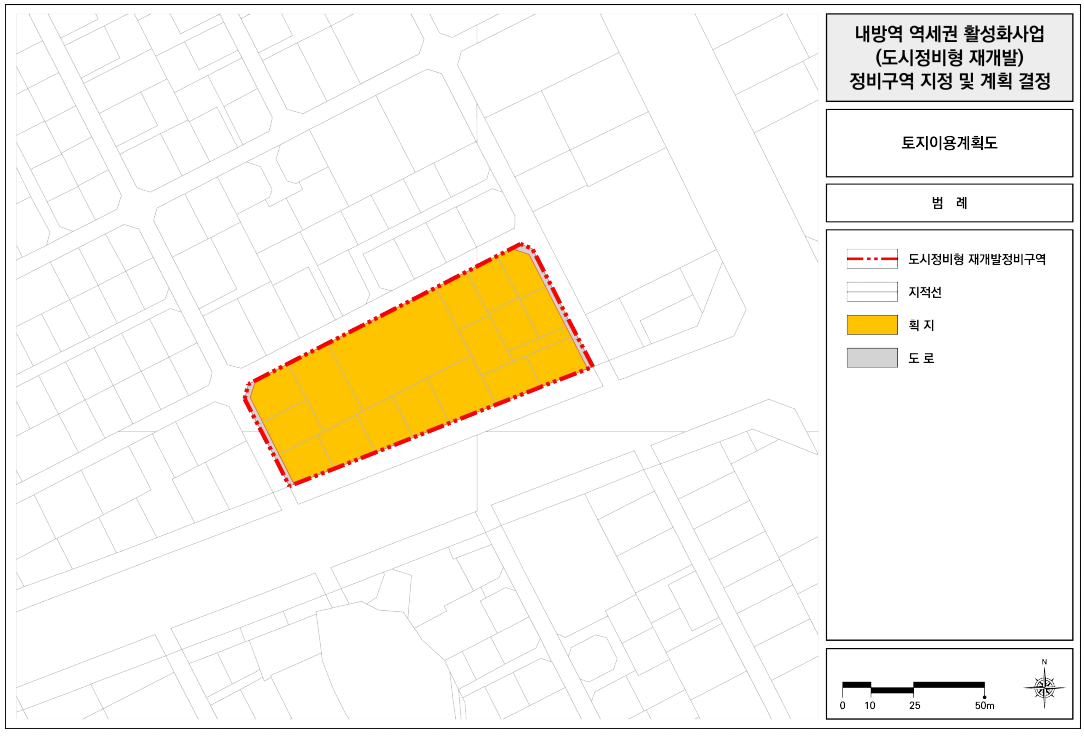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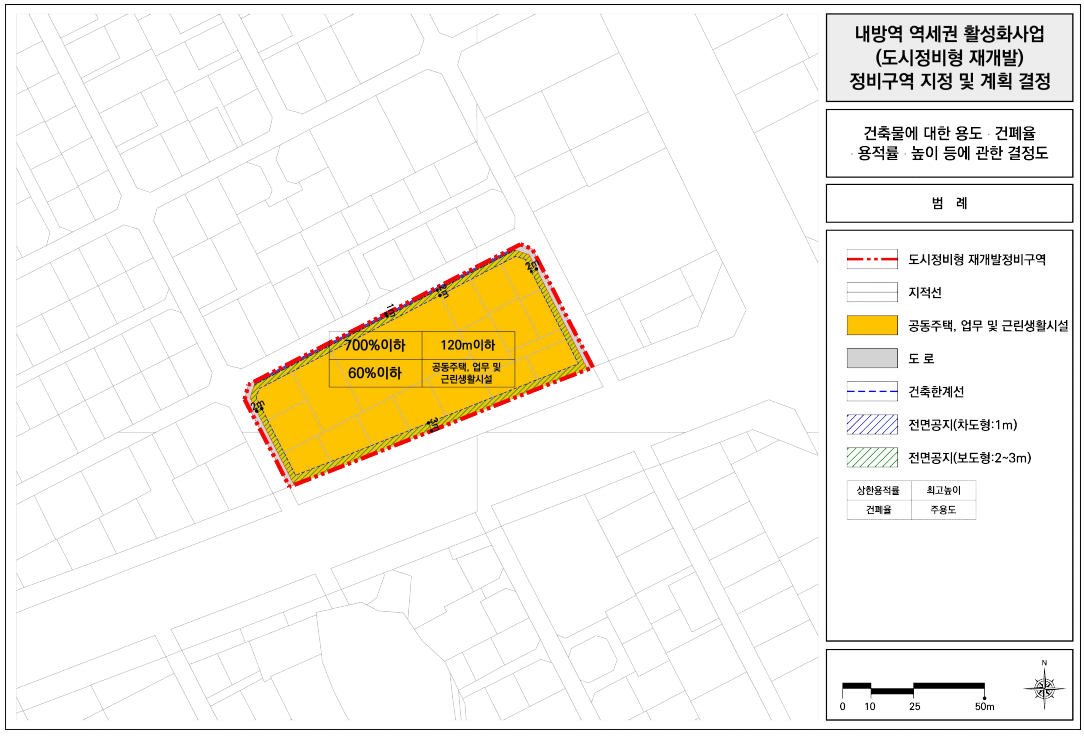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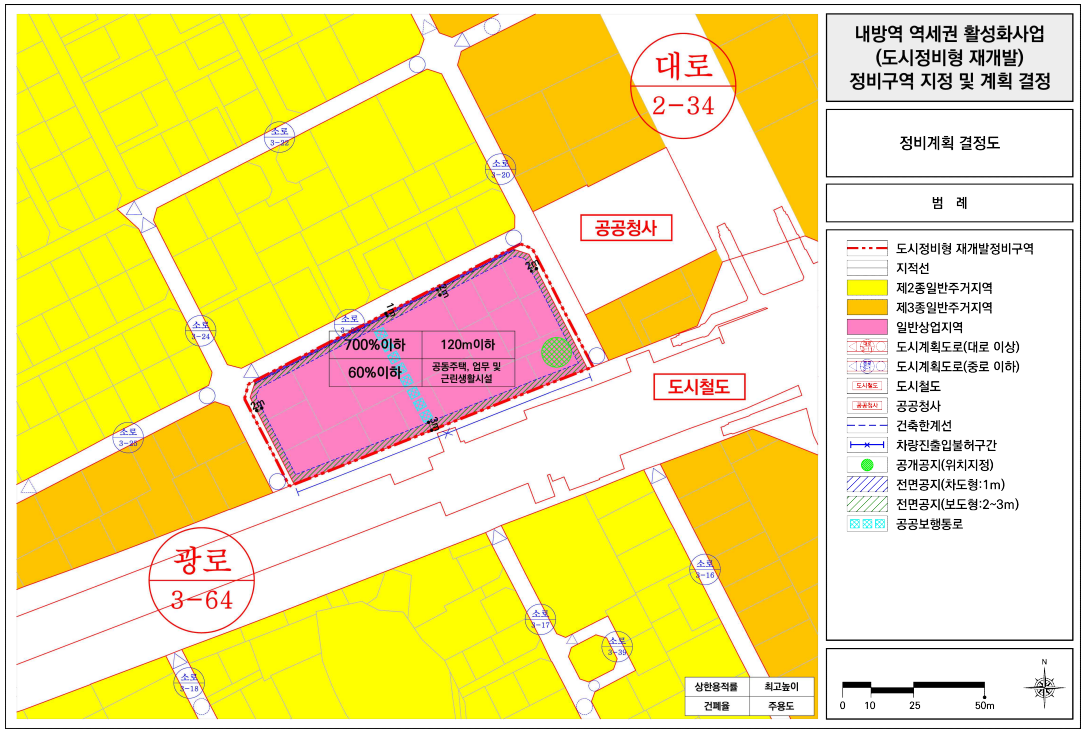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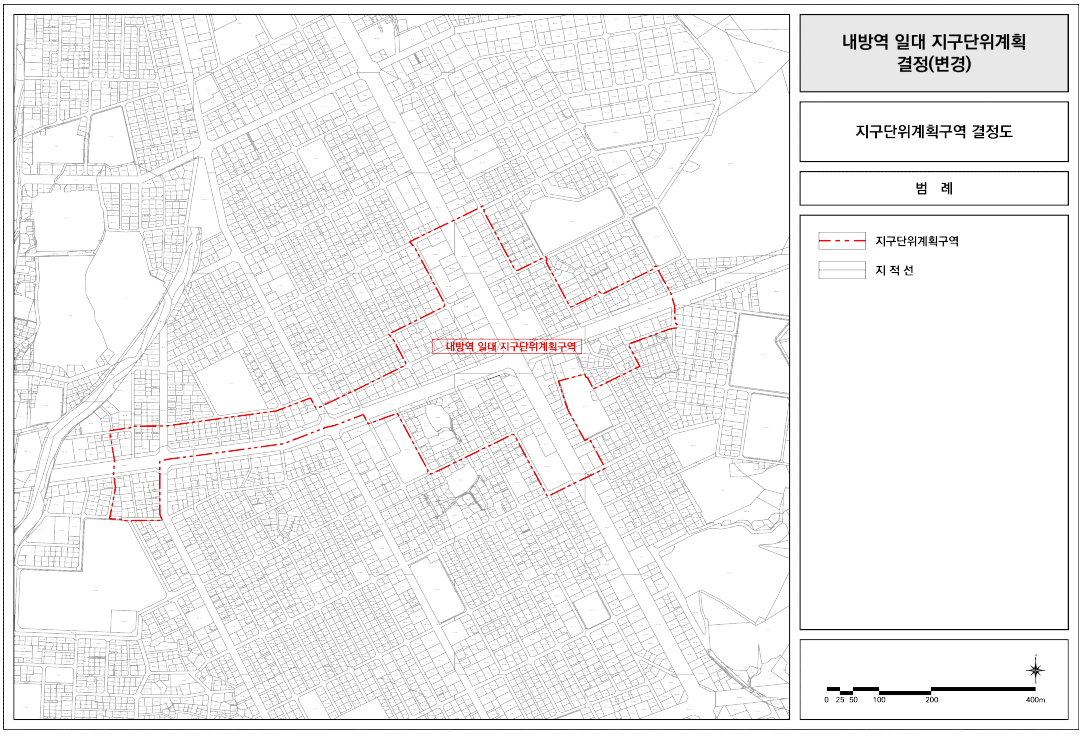
[정비계획 결정도]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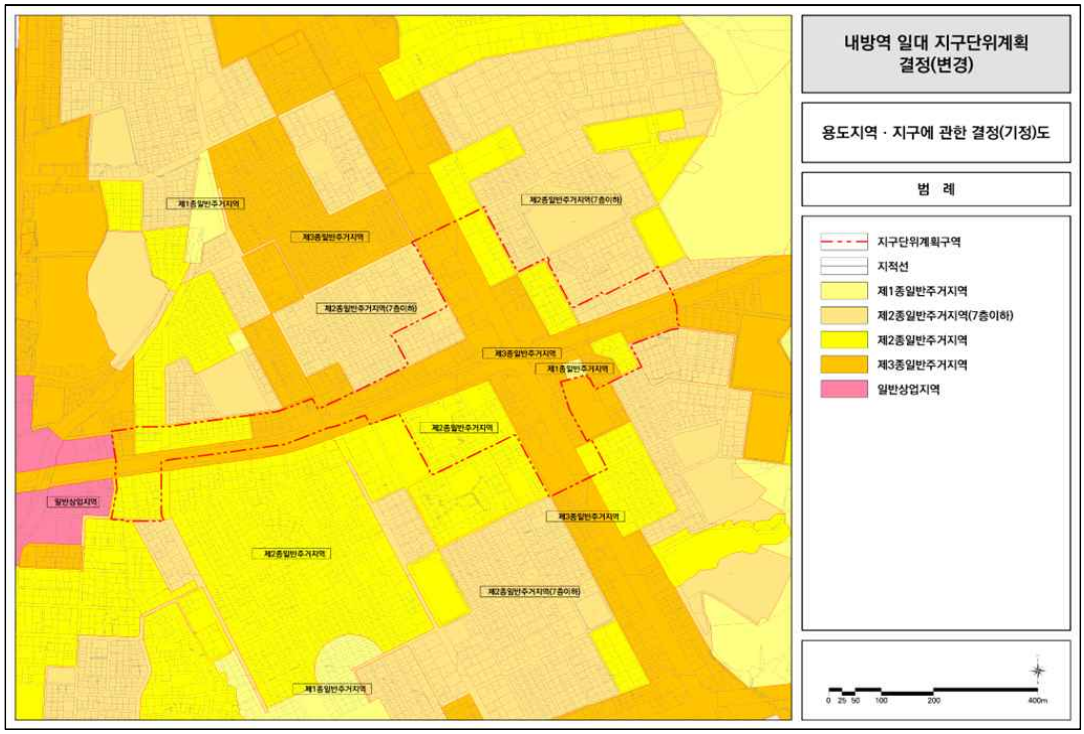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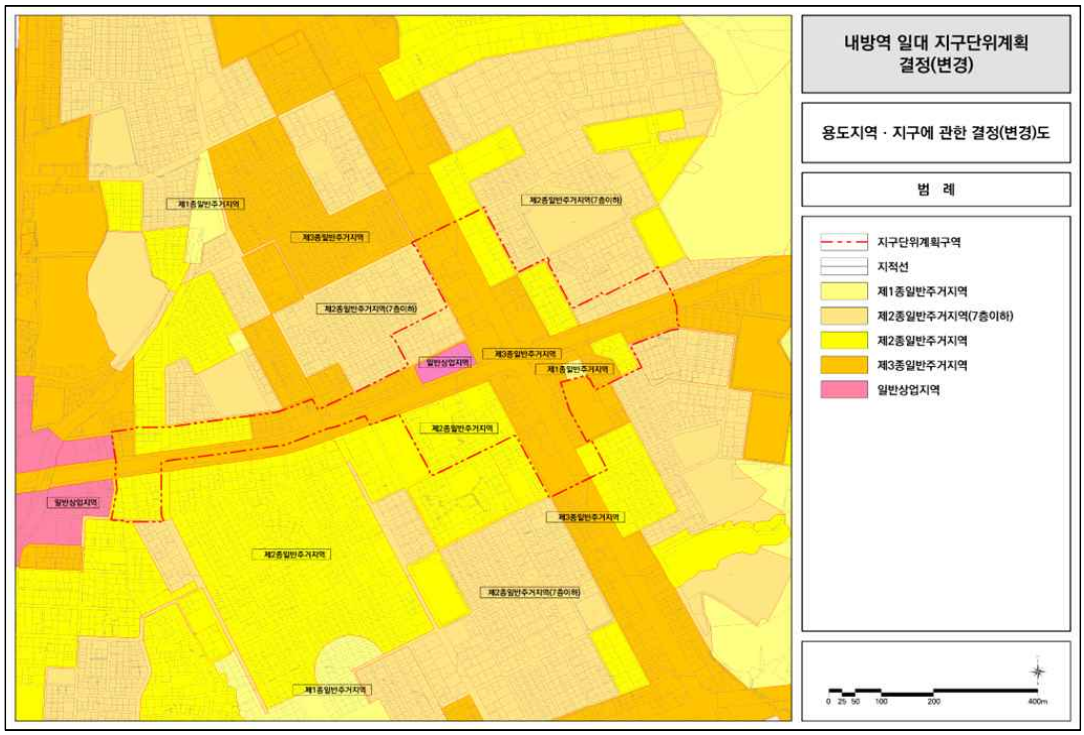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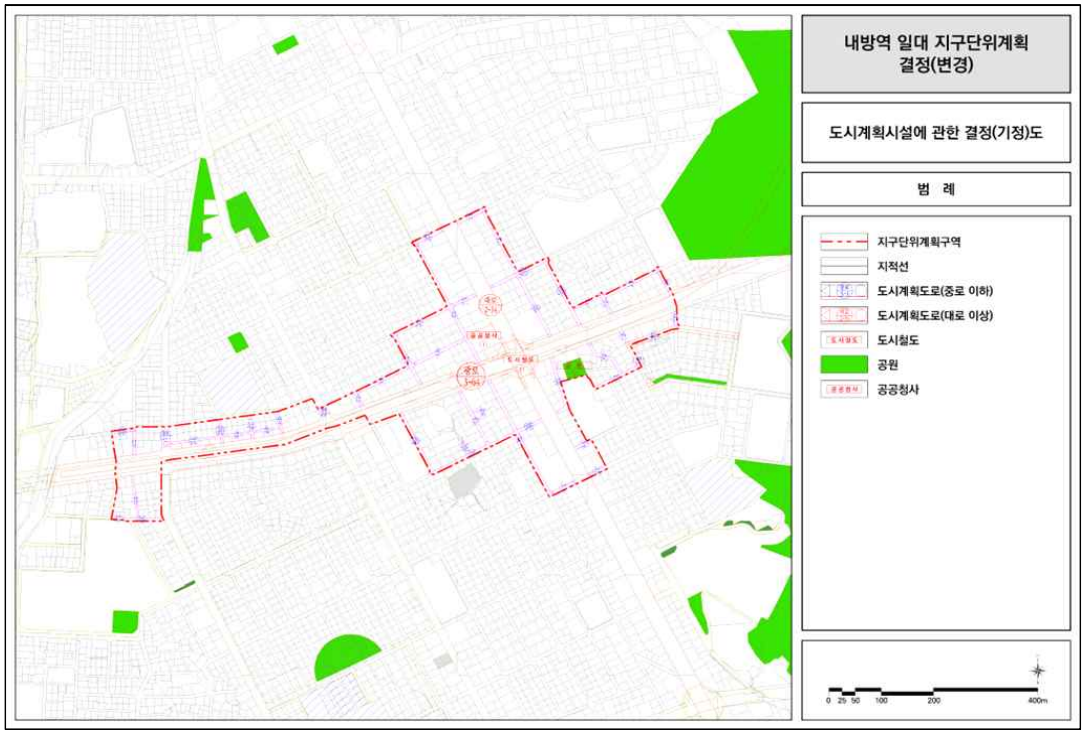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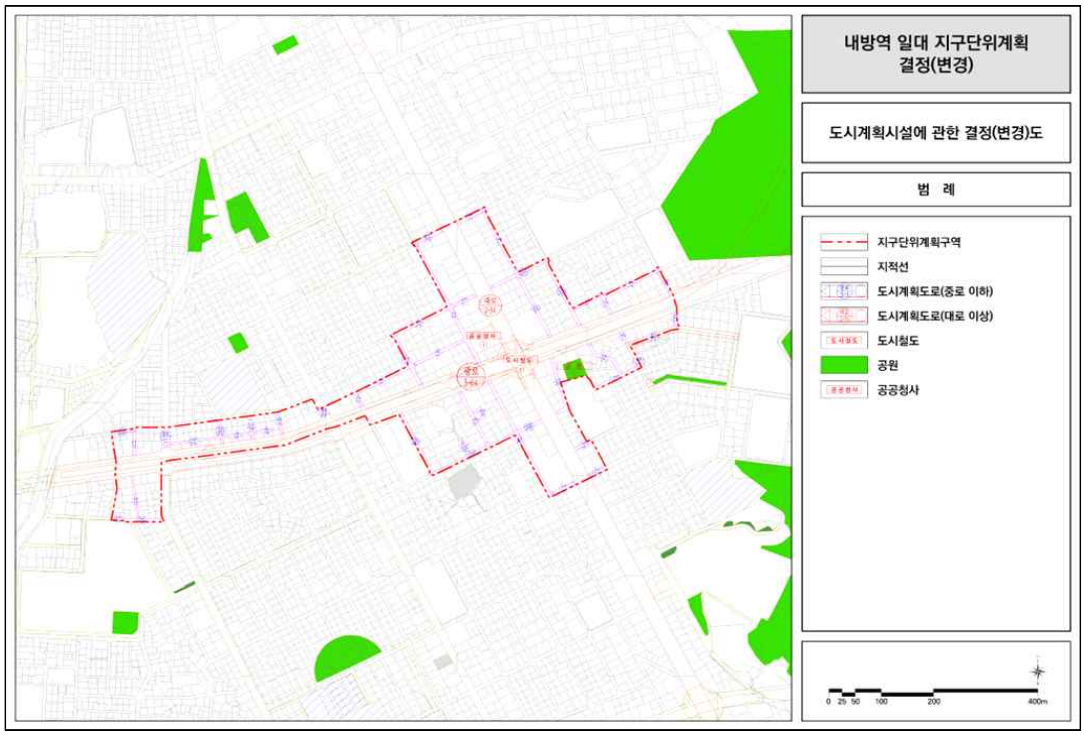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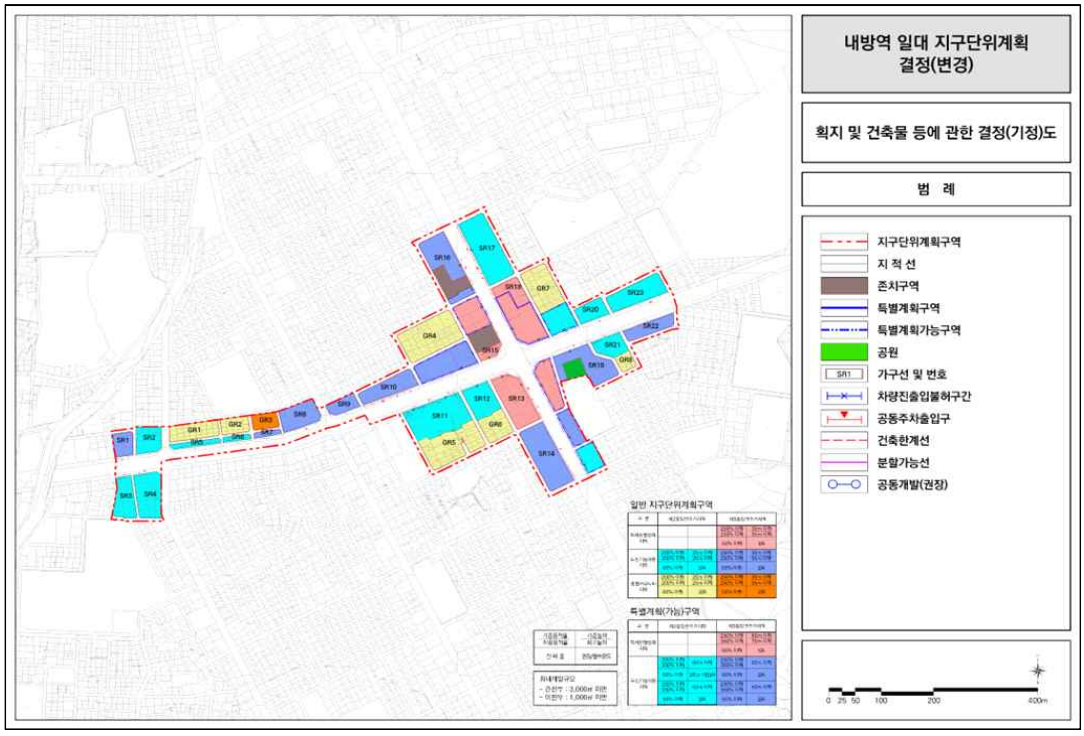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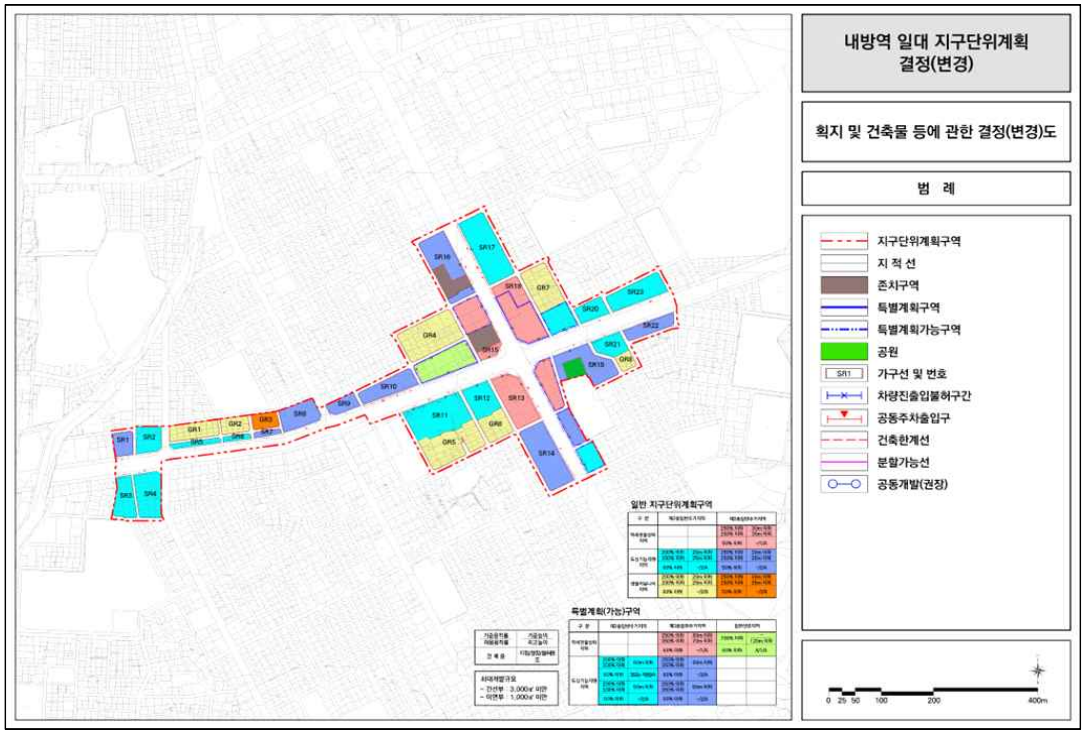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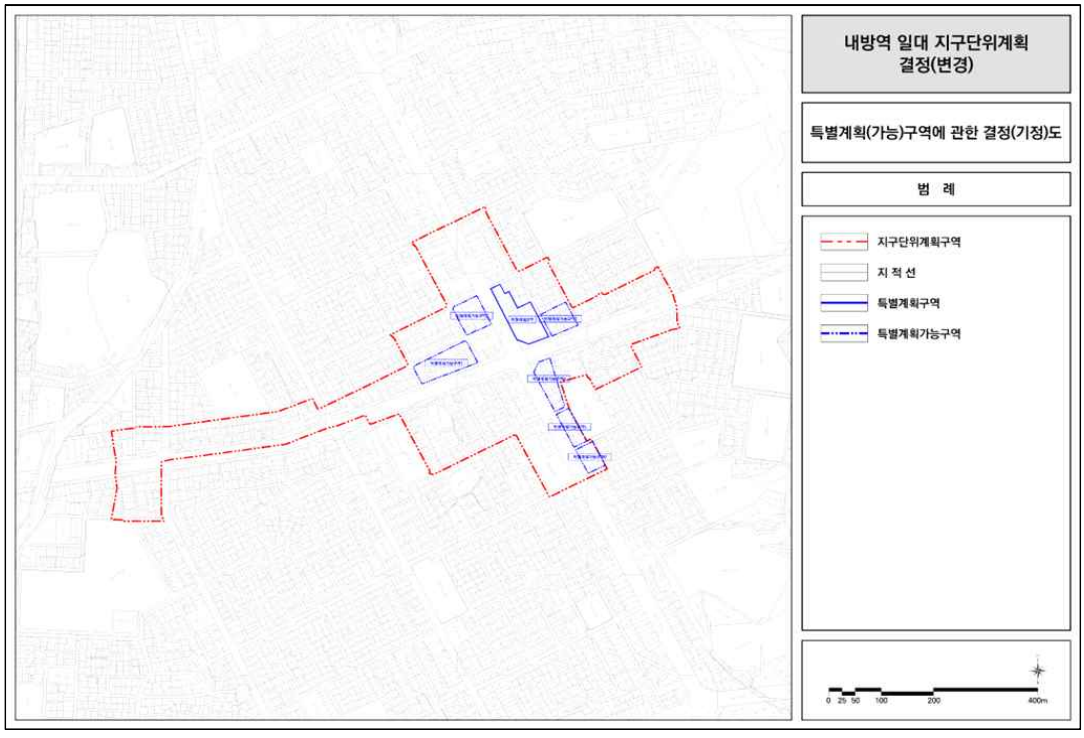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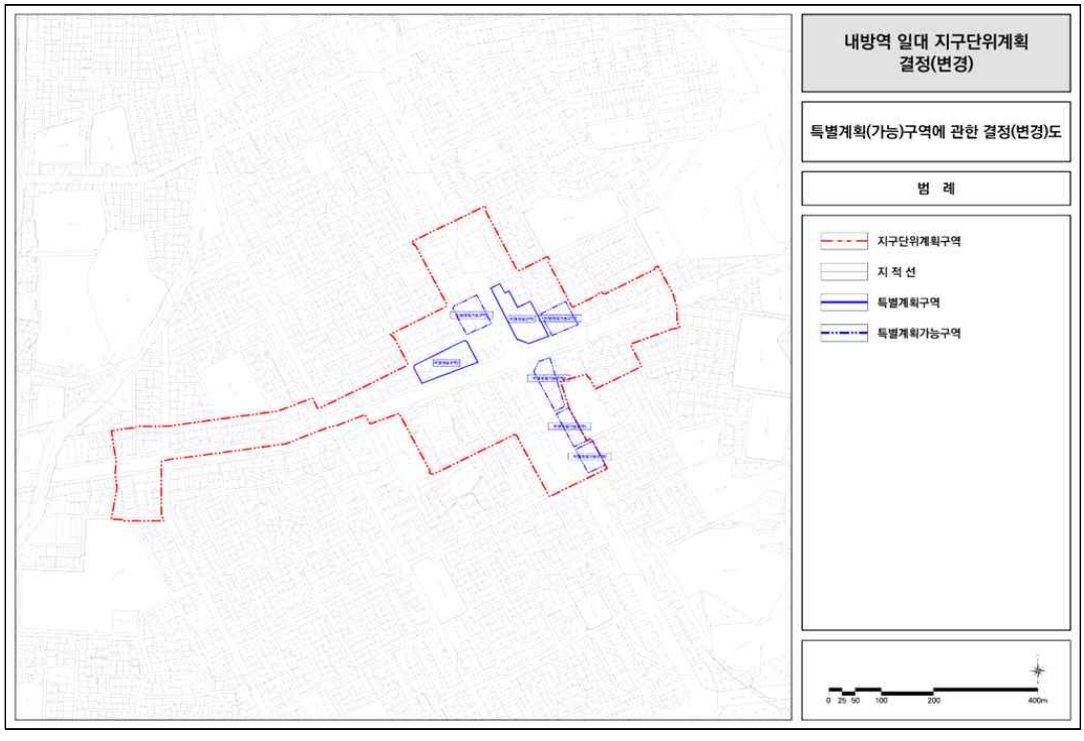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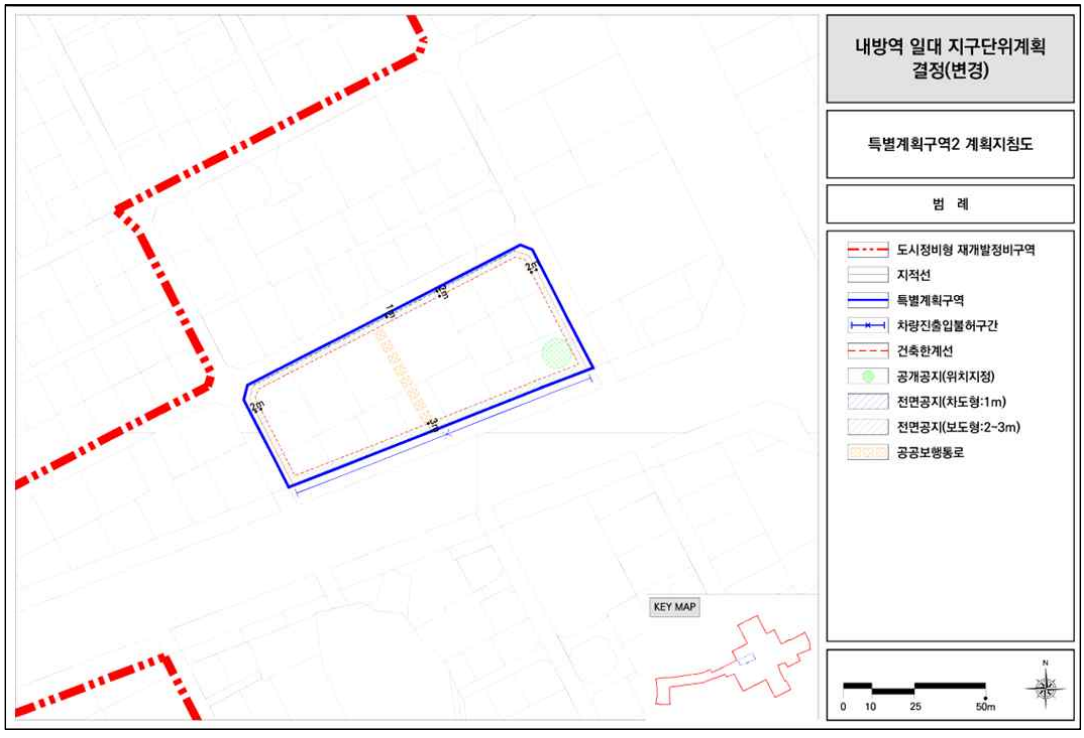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특별계획(가능)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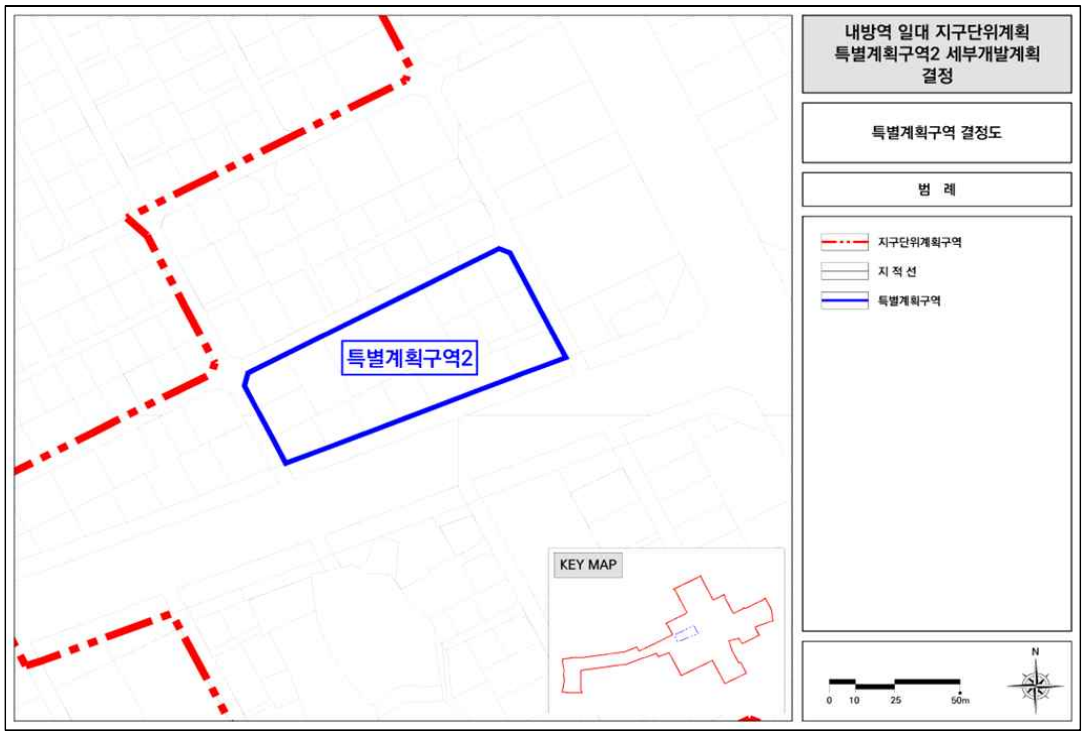
[특별계획구역2 계획지침도]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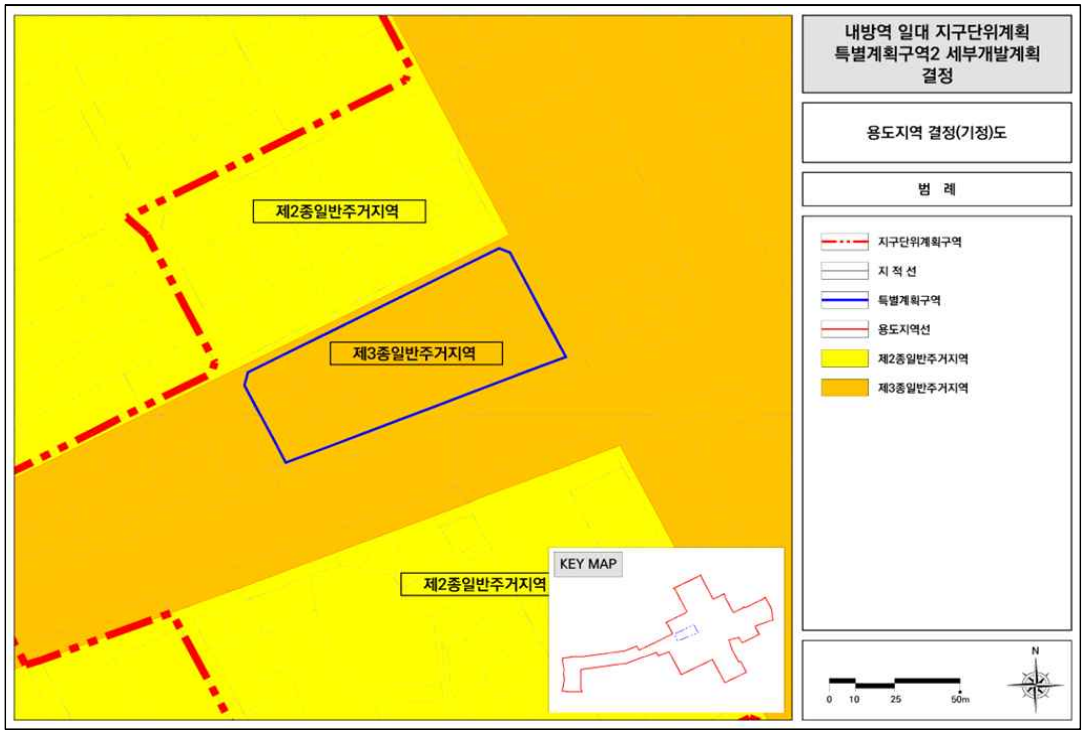
▣ 내방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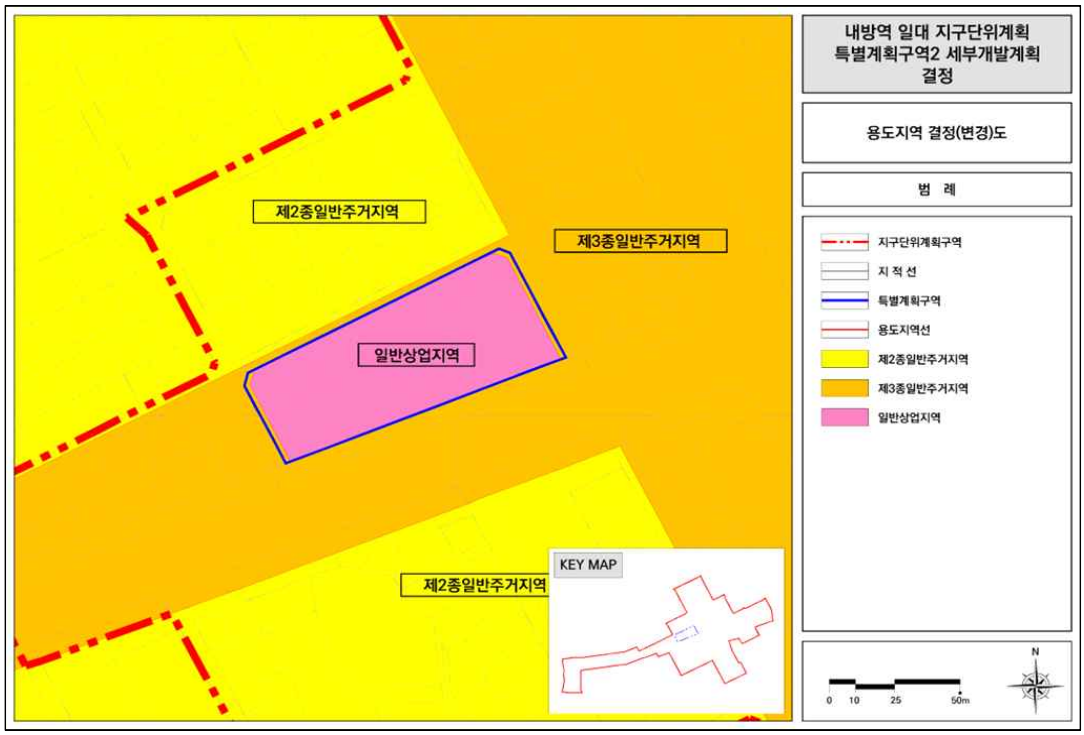


(이 하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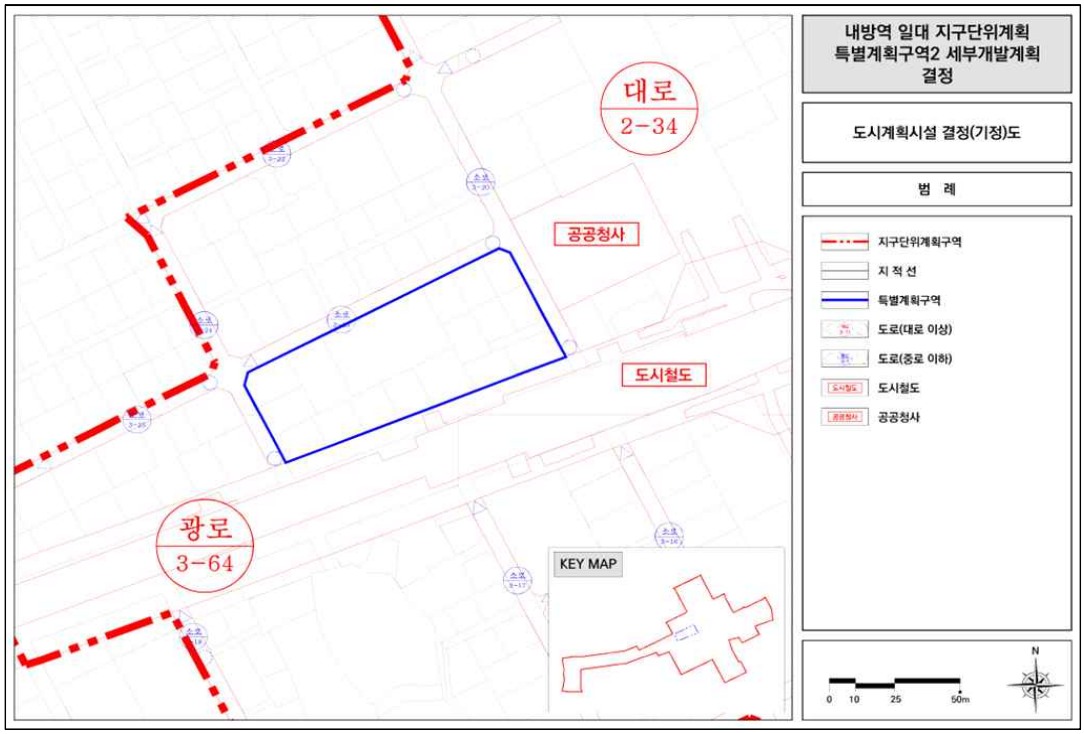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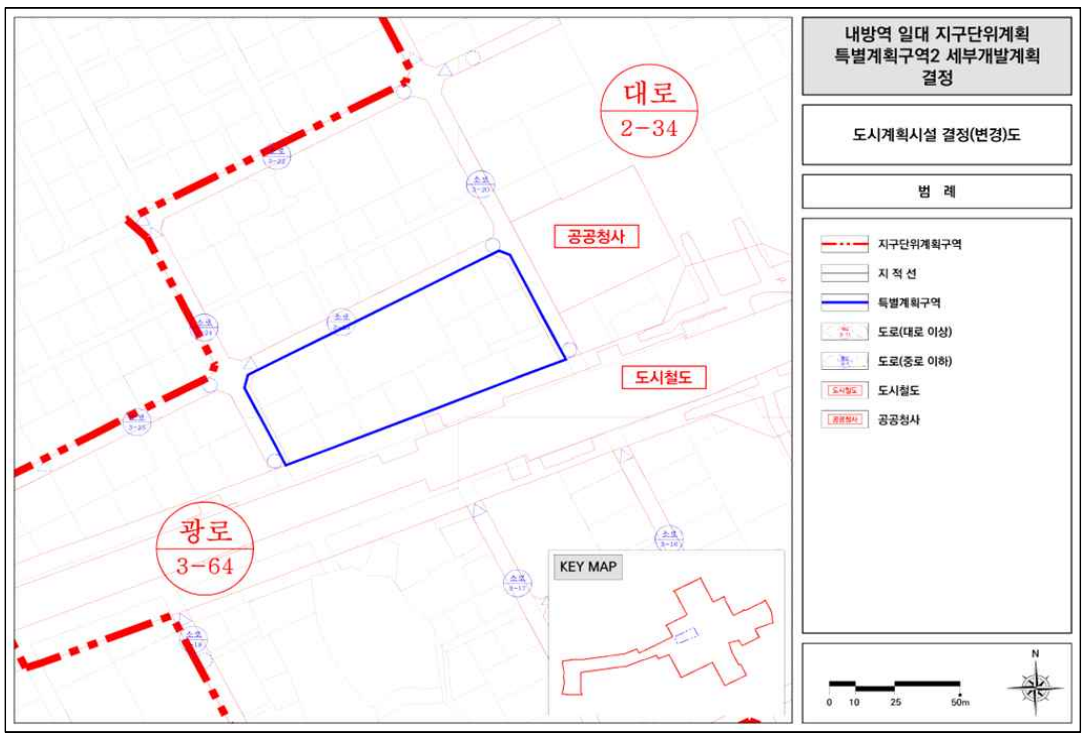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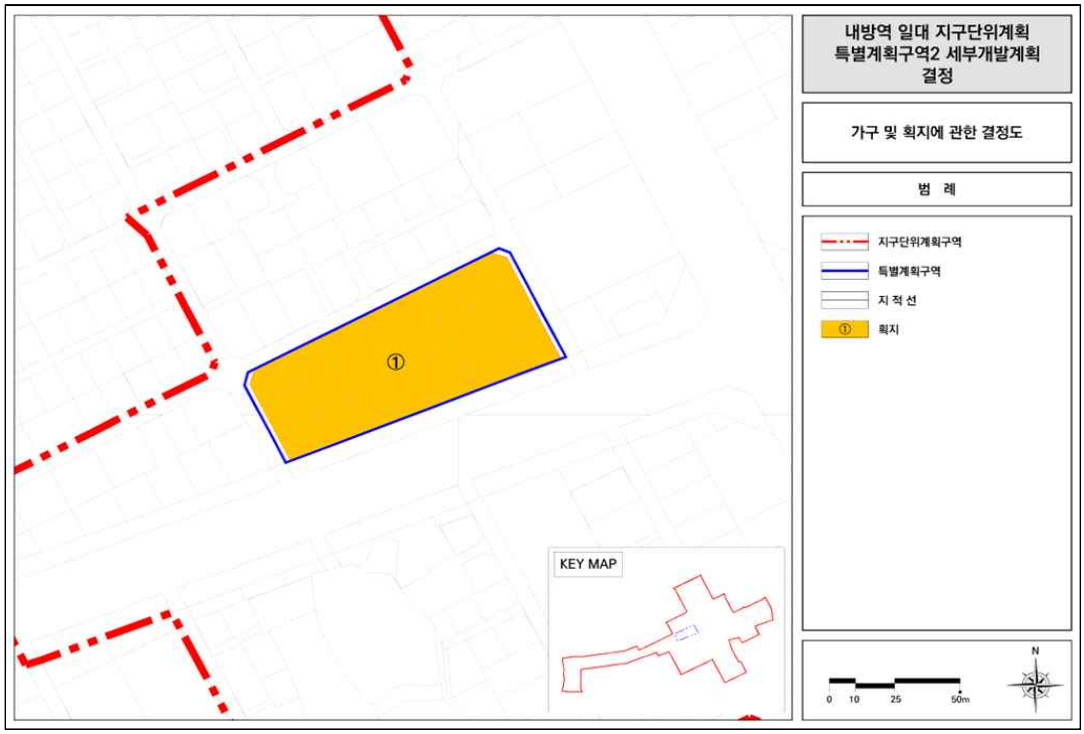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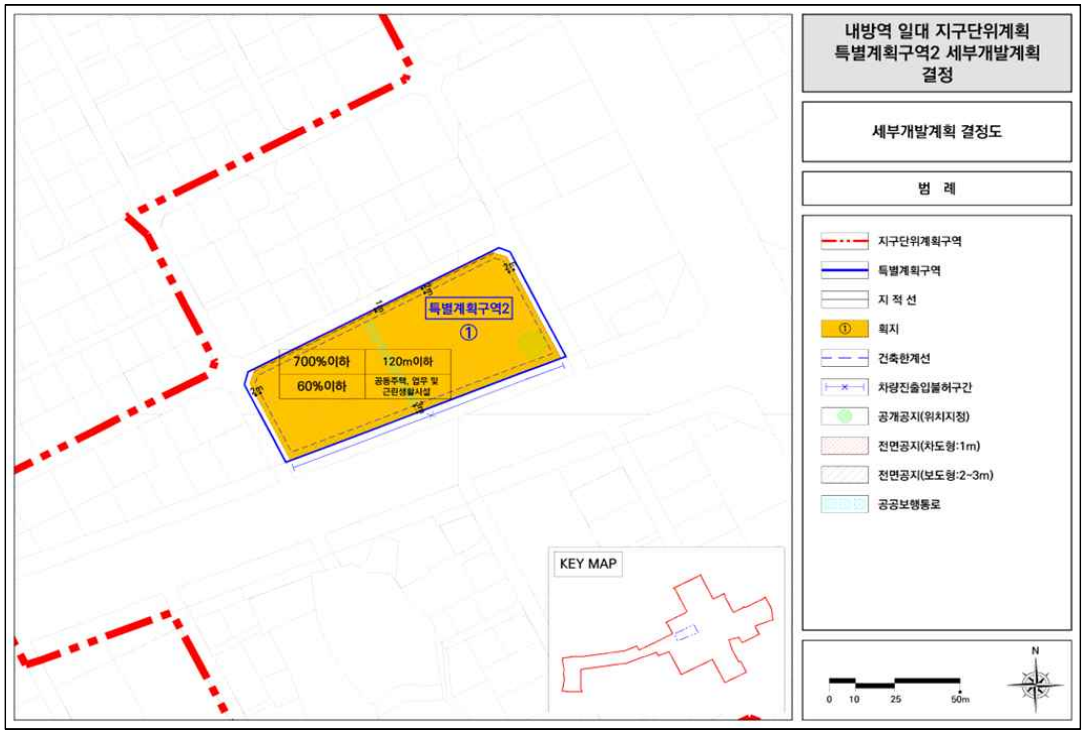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4호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신향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정비구역 현황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추진단계	비고 (최초결정고시)
신향빌라 재건축 정비구역	광진구 중곡동 18-24번지 일대	15,757.8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 2022.6.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40호 (2022.6.2.)

   나. 해제기한 연장 : 2027. 6. 2.까지(2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4) 및 광진구 주거사업과(☎02-450-970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85호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548호(2024.11.14.)로 결정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에 대하여 2024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2024.12.04.) 심의(수정가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5-370호(2025.02.20.)로 재공람공고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1. 정비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1 (여의도동 32번지)	-	증) 15,537.0	15,537.0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	증) 15,537.0	15,537.0	100.0	-
획 지	-	증) 15,537.0	15,537.0	1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추정 비례율

□ 추정 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
□ 추정 비례율 산정 : 96.60%
= (12,777억 - 5,416억) / 7,618억 × 100% = 96.60%
- 총 수입 추정 : 12,777억
- 총 지출 추정 : 5,416억
- 종전자산 총액 추정 : 7,618억

총 사업비

구분	내용	비고
연면적	45,053.4평	신축기준
공사비(원/평)	8,500천원/평	공작아파트 기준
공사비	416,495,275천원	부가세, 물가상승분 포함
기타 사업비	125,195,336천원	-
총사업비	541,690,611천원	-

개별 종전자산 추정액

• 아파트 공동주택 소유자 = 7,618억
: 수정아파트 세대당 평균 종전가 추정액 ('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 보정률 150%)
- 24평(79㎡) : 16.6억 * 84세대 = 1,396억
- 25평(85㎡) : 14.6억 * 3세대 = 44억
- 28평(94㎡) : 14.3억 * 1세대 = 14억
- 38평(125㎡) : 14.9억 * 1세대 = 15억
- 48평(161㎡) : 25.6억 * 240세대 = 6,149억

종후자산 추산액 (총수입)

구분	공급 세대	세대수	공급 면적	공급 연면적(㎡)	분양가 (평)	총분양비용 (천원)	분양 타입별 분양가 (천원)	비고
합계		498				1,277,602,813		
임대	59	49	1,303평	4,307.1㎡	-	-	-	기부채납
	84	12	436평	1,440㎡	-	-	-	
분양 (토지등 소유자)	59	40	1,063평	3,516㎡	61,200천원/평	65,091,708	1,627,293	여의도 시범 아파트 공사비, 분양가 적용
	84	49	1,778평	5,880㎡	58,140천원/평	103,413,618	2,110,482	
	120	240	11,979평	39,600㎡	55,080천원/평	659,803,320	2,749,181	
분양 (일반)	59	15	399평	1,318.5㎡	68,000천원/평	27,121,545	1,808,103	
	84	93	3,376평	11,160㎡	64,600천원/평	218,083,140	2,344,980	
	120				-			
오피스	4,376평 (계약면적)			14,469㎡	30,000천원/평	131,280,000		여의도 인근 실거래 사례 분양가 참고 ('24.10)
상가	4,009평 (계약면적)			13,255㎡	23,750천원/평	95,213,750		
매출부가세						-22,404,268		

	평형	추정 종전가액 (A)	평형별 추정 분양가			추정분담금 (단위:천원) (평형별 추정 분양가 - 추정 종전가액)		
			전용59㎡형 (25평)	전용84㎡형 (35평)	전용120㎡형 (49평)	전용 59㎡형 (25평)	전용 84㎡형 (35평)	전용 120㎡형 (49평)
추정 분담금 산출	24평 (74㎡)	1,605,492	1,627,293	2,110,482	2,749,181	21,801	504,990	1,143,689
	25평 (79㎡)	1,417,122				210,171	693,360	1,332,059
	28평 (89㎡)	1,382,346				244,947	728,136	1,366,835
	38평 (120㎡)	1,443,204				184,089	667,278	1,305,977
	48평 (150㎡)	2,474,892				- 847,599	- 364,410	274,289

※ 상기 추정분담금 추산액 산출은 예시(안)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추정분담금 중 (+)는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환급금임
※ 토지등소유자의 종전자산은 향후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산정됨
※ 상기 금액은 향후 지정개발자 지정, 사업시행계획인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련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하여 단계별로 고지 예정임
※ 상기 내용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개략적인 산출금액으로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확정됨

4. 용도지역 · 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15,537.0	-	15,537.0	100.0	-
일반상업지역	15,537.0	-	15,537.0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27	70	주간선 도로	1,730	국회 의사당앞	시청 예정지앞	일반도로	-	건고143 (`70.3.26)	-
기정	중로	1	131	20	보조 간선	1,195	여의동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183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일반도로	-	서고제2024-548호 (`24.11.14)	-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점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건폐율/용적률	수직적 범위		
신설	Ⓐ	공공청사	여의도동 32번지	공공청사	2,532.0	-	지하1층~ 지상3층 일부	-	입체적 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연면적 : 2,532㎡ (지상 : 1,752㎡, 지하 : 780㎡)	•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관련 부서(금융투자과, 공공자산담당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청사 (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주민공동시설 설치계획

구 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비고
			계획(안)	법정면적	
공동 이용 시설	경로당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1	400.0	198.0	-
	어린이집		210.0	198.0	개방
	다함께돌봄센터		160.0	-	개방
	작은도서관		250.0	108.0	-
	주민운동시설		150.0	-	-
	어린이놀이터		900.0	698.0	-
	기타부대시설		600.0	-	-
	소 계		2,670.0	-	-
관리사무소			75.0	32.4	-

나) 주민공동시설 총량기준

구 분	총 면적 기준	산 식	총 확보 면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세대당 2.5㎡기준	498세대 × 2.5㎡ = 1,245.0㎡	2,670.0㎡ (서울시 기준대비 약 171.6%)
서울시 주택조례	기준면적 대비 25% 강화	1,245.0㎡ × 1.25 = 1,556.25㎡	

다) 비주거시설 개요

구 분	용도	위치	면적(㎡)	총 확보 면적
근린생활시설	상가	지상 3~4F	5,246.0	비주거비율 20.29% = 30,226.0㎡ ÷ 148,936.96㎡ (연면적 비율)
	상가	지상 1~2F	5,207.0	
	소계		10,453.0	
	상가	지하 1~2F	8,780.0	
	지하주차장 및 기계/전기실		10,993.0	
	소계		19,773.0	
합계			30,226.0	-

7.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 개량 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규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537.0	획지1	15,537.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3	-	-	3	-	

8.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구역구분</th><th colspan="2">획지구분</th><th rowspan="2">주된용도</th><th rowspan="2">건폐율
(%)</th><th colspan="3">용적률(%)</th><th rowspan="2">층수</th><th rowspan="2">비고</th></tr>
<tr><th>명칭</th><th>명칭</th><th>면적(㎡)</th><th>기준</th><th>허용</th><th>상한</th></tr>
<tr><td>신규</td><td>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td><td>획지1</td><td>15,537.0</td><td>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근생시설,
업무시설</td><td>60이하</td><td>400</td><td>420</td><td>504.54
이하</td><td>49층이하
(200m이하)</td><td>일반
상업지역</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 주택공급계획 : 498세대
• 건립규모
<table><tr><th rowspan="2">건립규모</th><th colspan="2">세대수</th><th rowspan="2">비고</th></tr><tr><th>세대</th><th>비율(%)</th></tr><tr><td>합계</td><td>498</td><td>100.0</td><td></td></tr><tr><td>60㎡ 이하</td><td>104</td><td>20.9</td><td></td></tr><tr><td>60㎡ ~ 85㎡ 이하</td><td>154</td><td>30.9</td><td></td></tr><tr><td>85㎡ 이상</td><td>240</td><td>48.2</td><td></td></tr></table></td></tr>
<tr><td colspan="3">심의완화 사항</td><td colspan="8">•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 이내)
–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인센티브 적용
– 공공보행통로 4.42%, 친환경건축물 6%, 돌봄시설 5%, 방재안전 5%
: 총 20.42% 중 20.0% 적용</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건축한계선)</td><td colspan="8">• 국제금융로변 : 5m
• 국제금융로7길변 : 4m(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나루로6길변 : 3m</td></tr>
<tr><td rowspan="4">기타사항에 관한 계획</td><td colspan="2">공공보행통로</td><td colspan="8">• 여의도동 525번지와의 경계부에 폭 6m 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대상지 내 3m 폭으로 확보)</td></tr>
<tr><td colspan="2">전면공지</td><td colspan="8">• 국제금융로변 : 5m
• 국제금융로7길변 : 4m
• 여의나루로6길변 : 3m</td></tr>
<tr><td colspan="2">차량출입 불허구간</td><td colspan="8">• 국제금융로변 및 국제금융로7길변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td></tr>
<tr><td colspan="2">공개공지</td><td colspan="8">• 국제금융로변, 국제금융로7길변 교차부 1,569.2㎡ 계획</td></tr>
</table>

나) 용적률계획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10">산 정 내 용</th></tr>
<tr><td colspan="3" rowspan="3">토지이용계획
(㎡)</td><td rowspan="3">구역면적</td><td rowspan="3">획 지</td><td colspan="8">신설 공공시설 등</td></tr>
<tr><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토지지분면적(A)</td><td colspan="4">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B)</td></tr>
<tr><td>소계</td><td>공공청사</td><td>임대주택</td><td>소계</td><td colspan="2">공공청사</td><td>임대주택</td></tr>
<tr><td>15,537.0</td><td>15,537.0</td><td>2,327.89</td><td>1,679.44</td><td>661.56</td><td>1,017.88</td><td>648.45</td><td colspan="2">140.41</td><td>508.04</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10">•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2,327.89㎡(구역면적대비 14.98%)</td></tr>
<tr><td rowspan="3"></td><td rowspan="2">토지
지분
면적
(A)</td><td>공공
청사</td><td colspan="10">• 공공청사 토지 지분 = 661.56㎡
• [대지면적 ×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청사전용면적 / 비주거전용면적)]
661.56㎡ = [15,537.0㎡ × (30,226㎡ / 148,937.0㎡) × (1,752.0㎡ / 8,350.5㎡)]</td></tr>
<tr><td>임대
주택</td><td colspan="10">• 임대주택 토지 지분 = 1,017.88㎡
• [대지면적 × (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주택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1,017.88㎡ = [15,537.0㎡ × (118,711.0㎡ / 148,937.0㎡) × (3,953.9㎡ / 48,104.2㎡)]</td></tr>
<tr><td rowspan="2">건축물
기부
채납
환산
부지
(B)</td><td>공공
청사</td><td colspan="10">•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140.41㎡
• [공공청사 연면적 × 공공임대업무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 2)]
140.41㎡ = (지상) 117.628㎡ [(1,752.0㎡ × 2,108,182원) / (15,700,000원 × 2)]
+ (지하) 22.786㎡ [(780.0㎡ × 917,273원) / (15,700,000원 × 2)]
※ 공공청사 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 2,319,000원/㎡ 및 1,009,000원/㎡(지하)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임대
주택</td><td colspan="10">• 임대주택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508.04㎡
•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 2)]
[59형] 383.09㎡ = (지상) 292.11㎡ [(4,307.10㎡ × 2,129,545원) / (15,700,000원 × 2)]
+ (지하) 90.98㎡ [(3,114.44㎡ × 917,273원) / (15,700,000원 × 2)]
[84형] 124.95㎡ = (지상) 93.37㎡ [(1,440.00㎡ × 2,035,909원) / (15,700,000원 × 2)]
+ (지하) 31.58㎡ [(1,081.08㎡ × 917,273원) / (15,700,000원 × 2)]
※ 임대주택 건축비는 “주택비” 분양가상향제 기본형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 colspan="3">기준용적률</td><td colspan="10">• 기준용적률 = 400.00%</td></tr>
<tr><td colspan="3">허용용적률</td><td colspan="10">• 허용용적률 = 420.00%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400.00% + 20.00%</td></tr>
</table>

구분	산 정 내 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 [건축물] + 1.0 × α[임대주택]) = 420.00% × (1 + 1.3 × 1 × 0.1211931 + (0.7 × 0.010133 + 1.0 × 0.036661)) = 504.54%이하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통합심의를 통해 확정

9.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구 분		위치	계획목표	비고
보행동선	보행동선	단지내	• 보행 다발시설과 연계하여 보행동선 조성	-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상 지정된 위치에 1개소 폭 6m로 설치(대상지내 3m)	-
	보행자 출입구	단지내	• 단지내·외부에서 보행자 접근이 편리하도록 출입구로 계획	-
차량동선	차량출입 불허구간	국제금융로 및 국제금융로7길	• 간선도로변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단지내 차량동선	단지내	• 비상차량외 차량은 단지내 보행환경과 거주환경보호를 위해 지하통행	-
	차량 출입구	단지내	• 차량출입구는 여의나루로6길변에 1개소로 계획하여 인접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함	-
주차		단지내 지하	• 지상주차를 배제하여 단지내 쾌적한 보행환경 및 녹지공간 확보 • 각 세대별 여유 있게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지침을 준수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도시 경관		• 주변공원(한강공원, 여의도공원, 샛강생태공원 등) 및 녹지방면으로의 통경축 확보 고려 • 건축물로 인한 주변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차폐도 최소화 및 향과 조망권의 고려 • 주변건축물과 주변지형 및 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스카이라인을 고려	-
환경보전	지형 · 지질	• 대상지 지형은 평탄한 개발신시가지로써, 현재의 형태를 유지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	-
	동 · 식물상	• 사업시행 시,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수목은 조경업체 또는 인근 공사장으로 공급하여 이식(사업지구 내 녹지율 최대한 25% 이상 확보)	
	폐기물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공사 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소음·진동	• 공사 시, 가설 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야간작업 금지 • 노후장비 이용을 지양하고 저소음 건설 장비를 선정하여 이용	
재난 방지	수 해	• 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에 대비 • 정비구역 내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	-
	화 재	• 공동주택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 자연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및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의 합리적인 설계반영	
	방 범	• 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및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한 시민 홍보	

11. 환경성 검토 결과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바람, 기상 및 미기후	기후 및 에너지 소비 영향 최소화	○	• 에너지 사용량 및 교통량 증가로 주변 지역의 기온상승 예상되나, 기상·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대기질·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발생 억제	○	• 공사 시 토량이동 및 공사차량 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 운영시 이용차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증가가 예상되나,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봄	• 공사 시 세륜·세차시설 설치, 이동식 방진망 설치, 공사장내 차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시행 등	
온실가스	오염물질배출 저감	○	•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되나 그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절감 설비 시설 설치·계획하여 에너지사용량 절감 • 청정연료(LNG)사용 계획	
수질, 수리·수문	오수발생 저감	○	• 공사시 우수유출량 변동 및 토사유출 발생 • 공사인력에 의한 오수 발생 • 공사장비에 의한 유류 발생	• 토공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 • 가배수로 설치	
토지이용	상위계획에 부합하는 계획	○	• 주변지역 교통체계 및 공공시설 양호	• 상위계획 및 지역현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수립	
지형·지질	지형변동 최소화	○	• 불투수토양포장도 대부분 10%이하 지역임 • 인공구조물 설치로 인한 부지정지로 절·성토량 발생 예상	• 무리한 정지계획 지양 • 현지형을 최대한 이용 • 적정녹지 계획으로 자연토양기능 상실 최소화	

검 토 항 목	목표기준	준수 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비 고
비오톱, 동·식물상, 생태네트워크	4등급 /30%이상 (비오톱 /생태면적률)	○	• 개별 비오톱 유형평가는 평가 제외 등급 • 비오톱유형평가 4등급 지역	• 생물서식공간 마련 • 자연지반녹지, 수공간, 인공지반녹지 등 적용 • 시설별 특성과 경관을 고려한 조경수목 식재 • 사업시행후 생태면적률 : 30%이상 계획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처리7	○	• 공사시 현장사무소 운영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 발생	• 분리수거용기 및 간이화장실 설치 • 폐유저장소 설치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 및 소음환경 기준	○	• 공사시 투입되는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소음 발생	• 공사장비 분산 투입 • 가설방음판넬 설치(높이 5M)	
경관	휴식·여가공간 최대 확보	○	• 영등포구에는 어린이공원 29개소, 소공원 31개소 등 총 108개의 공원과 30개소의 문화시설이 위치함	• 사업지구 내 조경녹지를 조성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 및 쉼터를 제공할 계획임	
일조	수인한도 만족	○	• 일영 시뮬레이션 결과, 연속 및 누적일조에 대한 주변지역 침해없음	• 대상지와 인접한 삼부아파트에는 연속 및 누적일조 영향없으나, (구)mbc 사업계획 진행에 따른 추후 일조영향 예측	
인구	인구영향인자 저감대책마련	○	• 사업시행후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나 인구수용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예상됨	• 사업시행 후 세대수169세대 증가 예상	

12.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여의도 수정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예정)	현황 : 329세대 계획 : 498세대 증) 169세대	-

Ⅱ.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3 일대	1,120,586	-	1,120,586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변경없음)

2) 공간시설(변경없음)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점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건폐율/용적률	수직적 범위		
신설	Ⓐ	공공청사	여의도동 32번지	공공청사	2,532.0	-	지하1층~ 지상3층 일부	-	입체적 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연면적 : 2,532㎡ (지상 : 1,752㎡, 지하 : 780㎡)	• 공공시설 수요조사 및 관련 부서(금융투자과, 공공자산담당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청사 (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 신설

5) 보건위생시설(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 및 경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변경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1	특별계획구역1(한국거래소)	여의도동 33	27,081	대규모 부지
2	특별계획구역2(KBS별관)	여의도동 46, 46-5, 46-6	27,273	대규모 부지
3	특별계획구역3-1, 3-2 (학교시설 해제부지)	여의도동 61-1, 61-2	16,528	2개 구역으로 분할 가능
4	특별계획구역4(한국전력부지)	여의도동 21	9,917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5	특별계획구역5(여의도종합상가)	여의도동 35-5	3,739	도시계획시설(시장)
6	특별계획구역6(홍우빌딩)	여의도동 43-3	4,020	도시계획시설(시장)
7	특별계획구역7(서울아파트)	여의도동 21-1	16,929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8	특별계획구역8(공작아파트)	여의도동 21-2	16,929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9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	여의도동 32	15,537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10	특별계획구역10(진주아파트)	여의도동 54 일대	17,228.3	상업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 계획지침 : 기정

구 분			기 정	비 고
위 치			• 여의도동 32	–
면 적			• 15,537.0㎡	–
용도지역/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기반시설			–	–
공공기여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구체적인 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에 따름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0조(권장용도)에 따름
	권장용도 (저층부 1~2층)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불허용도		• 당해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규모	건폐율		• 60% 이하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420% 이하	
	상한용적률		• 800% 이하	
	건축물높이		• 200m이하(최고높이) – 주변과 조화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200m이상 허용 결정	• 건축물 높이 200m이상 허용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5조(건축물의 높이)별표1 기준을 준용
기타사항	배치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변 : 5m • 국제금융로7길변 : 4m(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나루6길변 : 3m	• 건축한계선의 적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8조(건축한계선), 제22조(전면공지)에 따름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개공간)	• 국제금융로와 국제금융로7길 교차부에 공개공지 설치(부지면적의 3%이상 권장)	• 공개공지(공개공간)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공개공지), 제24조(쌈지형 공지), 제29조(실내형 공개공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 여의도동 525번지와의 경계부에 폭 6m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대상지 내 3m 폭으로 확보)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7조(공공보행통로)에 따름

구 분			기 정	비 고
		지하연결통로	-	-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 국제금융로, 국제금융로7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주차출입구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0조(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31조(주차출입구)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계획 등 세부 검토 필요

–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 계획지침 : 변경

구 분			기 정	비 고
위 치			• 여의도동 32	-
면 적			• 15,537.0㎡	-
용도지역/용도지구			• 일반상업지역	-
기반시설			-	-
공공기여			• 공공시설 등 제공에 따라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구체적인 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40조(공공기여 시설 및 방식)에 따름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용도 설치에 관한 사항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0조(권장용도)에 따름
	권장용도 (저층부 1~2층)		•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불허용도		• 당해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규모	건폐율		• 60% 이하	-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420% 이하	
	상한용적률		• 800% 이하	
	건축물높이		• 200m이하(최고높이) – 주변과 조화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심의를 통해 200m이상 허용 결정	• 건축물 높이 200m이상 허용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5조(건축물의 높이)별표1 기준을 준용
기타사항	배치	건축한계선	• 국제금융로변 : 5m • 국제금융로7길변 : 4m(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나루6길변 : 3m	• 건축한계선의 적용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18조(건축한계선), 제22조(전면공지)에 따름

구 분			기 정	비 고
	대지내 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개공간)	• 국제금융로와 국제금융로7길 교차부에 공개공지 설치(부지면적의 3%이상 권장)	• 공개공지(공개공간)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3조(공개공지), 제24조(쌈지형 공지), 제29조(실내형 공개공간)에 따름
		공공보행통로	• 여의도동 525번지와의 경계부에 폭 6m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대상지 내 3m 폭으로 확보)	• 공공보행통로의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7조(공공보행통로)에 따름
		지하연결통로	-	-
	교통처리 계획	차량출입 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 국제금융로, 국제금융로7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주차출입구 조성기준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30조(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제31조(주차출입구)에 따름

※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용적률, 공공기여 및 인센티브 계획 등 세부 검토 필요
※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적용 가능

Ⅲ. 특별계획구역9(수정아파트) 세부개발계획 결정

1.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특별계획구역9 (수정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2번지	15,537.0	-	15,537.0	

2. 용도지역 · 지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없음)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5,537.0	-	15,537.0	100.0	
일반상업지역	15,537.0	-	15,537.0	100.0	

나) 용도지구 결정 :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유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1	27	70	주간선 도로	1,730	국회 의사당앞	시청 예정지앞	일반도로	-	건고143 (`70.3.26)	-
기정	중로	1	131	20	보조 간선	1,195	여의동로	여의동로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183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7길	일반도로	-	서고제2024-548호 (`24.11.14)	-

나) 공공 · 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입체적 결정점위				최초 결정일	비고
				용도	면적(㎡)	건폐율/용적률	수직적 범위		
신설	Ⓐ	공공청사	여의도동 32번지	공공청사	2,532.0	-	지하1층~ 지상3층 일부	-	입체적 결정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청사	• 공공청사 신설 - 연면적 : 2,532㎡ (지상 : 1,752㎡, 지하 : 780㎡)	• 관련부서(금융투자과, 공공자산담당관)협의 결과에 따라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고자 공공청사 (서울투자진흥재단사무소)신설

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5.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조서

<table>
<tr><th>구분</th><th>계획지침</th><th>세부개발계획</th></tr>
<tr><td>용도</td><td>
<table>
<tr><td>허용용도</td><td>•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권장용동
(저층부1~2층)</td><td>• 제1종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유자시설
• 공동작업장,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td></tr>
<tr><td>불허용도</td><td>• 당해 일반상업지역 불허용도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td></tr>
</table>
</td><td>좌동</td></tr>
<tr><td>건폐율</td><td>• 60% 이하</td><td>좌동</td></tr>
<tr><td>용적률</td><td>
<table>
<tr><td>기준용적률</td><td>400% 이하</td></tr>
<tr><td>허용용적률</td><td>420% 이하</td></tr>
<tr><td>상한용적률</td><td>800% 이하</td></tr>
</table>
</td><td>• 기준용적률 : 400% 이하
• 허용용적률 : 420% 이하
• 상한용적률 : 504.54% 이하</td></tr>
<tr><td>높이</td><td>
<table>
<tr><td>건축물 높이</td><td>200m 이하(최고높이)</td></tr>
</table>
- 주변과 조화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통해 200m 이상 허용 결정
</td><td>좌동</td></tr>
</table>

나) 용적률 인센티브

<table>
<tr><th colspan="3">구분</th><th colspan="10">산 정 내 용</th></tr>
<tr><td colspan="3" rowspan="3">토지이용계획
(㎡)</td><td rowspan="3">구역면적</td><td rowspan="3">획 지</td><td colspan="8">신설 공공시설 등</td></tr>
<tr><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토지지분면적(A)</td><td colspan="4">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부지(B)</td></tr>
<tr><td>소계</td><td>공공청사</td><td>임대주택</td><td>소계</td><td colspan="2">공공청사</td><td>임대주택</td></tr>
<tr><td>15,537.0</td><td>15,537.0</td><td>2,327.89</td><td>1,679.44</td><td>661.56</td><td>1,017.88</td><td>648.45</td><td colspan="2">140.41</td><td>508.04</td></tr>
<tr><td colspan="3">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td><td colspan="10">• 신설 공공시설 등 제공면적(A+B) - 새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국공유지
= 2,327.89㎡(구역면적대비 14.98%)</td></tr>
<tr><td rowspan="2">토지
지분
면적
(A)</td><td>공공
청사</td><td colspan="10">• 공공청사 토지 지분 = 661.56㎡
• [대지면적 × (비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청사전용면적 / 비주거전용면적)]
661.56㎡ = [15,537.0㎡ × (30,226㎡ / 148,937.0㎡) × (1,752.0㎡ / 8,350.5㎡)]</td></tr>
<tr><td>임대
주택</td><td colspan="10">• 임대주택 토지 지분 = 1,017.88㎡
• [대지면적 × (주거연면적 / 전체연면적) × (공공주택전용면적 / 주거전용면적)]
1,017.88㎡ = [15,537.0㎡ × (118,711.0㎡ / 148,937.0㎡) × (3,953.9㎡ / 48,104.2㎡)]</td></tr>
<tr><td rowspan="2">건축물
기부
채납
환산
부지
(B)</td><td>공공
청사</td><td colspan="10">• 공공청사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140.41㎡
• [공공청사 연면적 × 공공임대업무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 2)]
140.41㎡ = (지상) 117.628㎡ [(1,752.0㎡ × 2,108,182원) / (15,700,000원 × 2)]
+ (지하) 22.786㎡ [(780.0㎡ × 917,273원) / (15,700,000원 × 2)]
※ 공공청사 건축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표준건축비” 2,319,000원/㎡ 및 1,009,000원/㎡(지하)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임대
주택</td><td colspan="10">• 임대주택 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 = 508.04㎡
•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 (개별공시지가 × 2)]
[59형] 383.09㎡ = (지상) 292.11㎡ [(4,307.10㎡ × 2,129,545원) / (15,700,000원 × 2)]
+ (지하) 90.98㎡ [(3,114.44㎡ × 917,273원) / (15,700,000원 × 2)]
[84형] 124.95㎡ = (지상) 93.37㎡ [(1,440.00㎡ × 2,035,909원) / (15,700,000원 × 2)]
+ (지하) 31.58㎡ [(1,081.08㎡ × 917,273원) / (15,700,000원 × 2)]
※ 임대주택 건축비는 “주택비” 분양가상향제 기본형건축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td></tr>
<tr><td colspan="3">기준용적률</td><td colspan="10">• 기준용적률 = 400.00%</td></tr>
<tr><td colspan="3">허용용적률</td><td colspan="10">• 허용용적률 = 420.00%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 = 400.00% + 20.00%</td></tr>
</table>

구분	산정내용
상한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토지 + 0.7 × α [건축물] + 1.0 × α[임대주택]) = 420.00% × (1 + 1.3 × 1 × 0.1211931 + (0.7 × 0.010133 + 1.0 × 0.036661)) = 504.54%이하

6.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구분		계획내용	세부개발계획
배치	건축 한계선	• 국제금융로변 : 5m • 국제금융로7길변 : 4m (11층 이상은 벽면한계선 3m 추가 후퇴) • 여의나루로6길변 : 3m	좌동
대지내공지 및 통로	공개공지 (공개공간)	• 국제금융로와 국제금융로7길 교차부에 공개공지 설치 (부지면적의 3%이상 권장)	• 국제금융로와 국제금융로7길 교차부에 공개공지 10.01% 조성
	공공보행통로	• 여의도동 525번지와의 경계부에 폭 6m이상 공공보행통로 조성 (대상지 내 3m폭으로 확보)	좌동
	지하연결통로	-	-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및 주차출입구	• 국제금융로, 국제금융로7길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Ⅳ. 관련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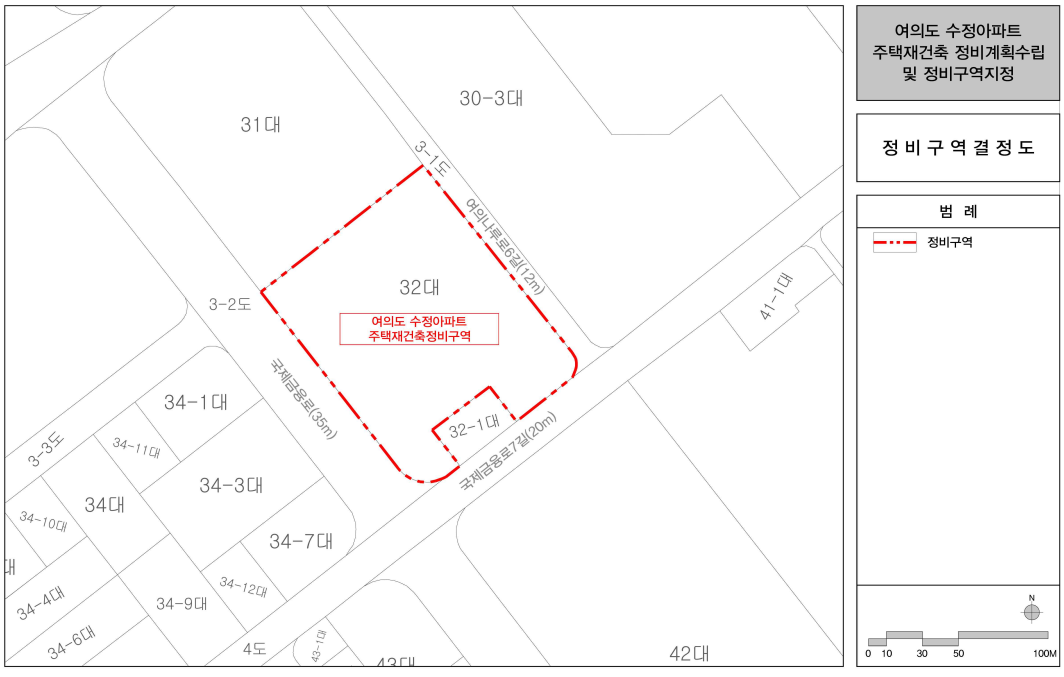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Ⅴ.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1) 및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02-2670-3558)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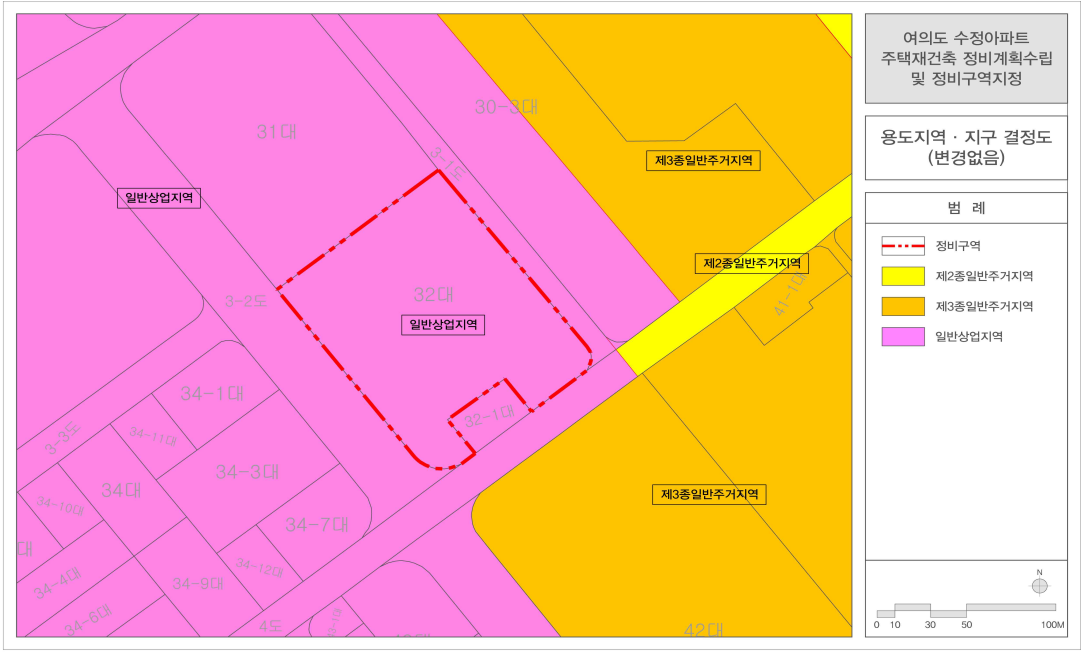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s://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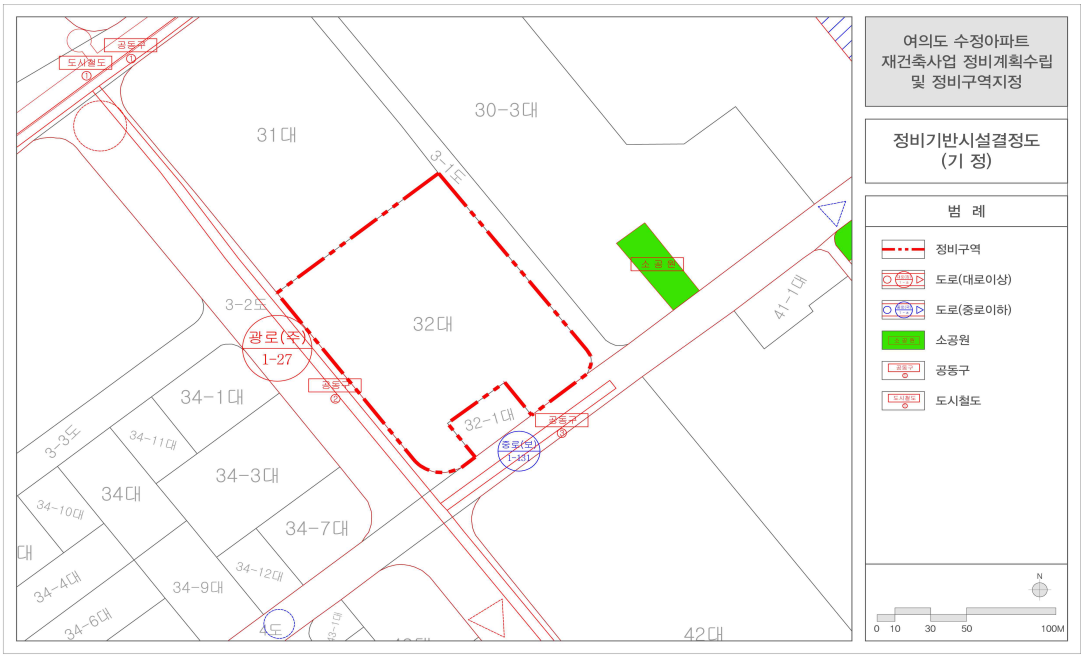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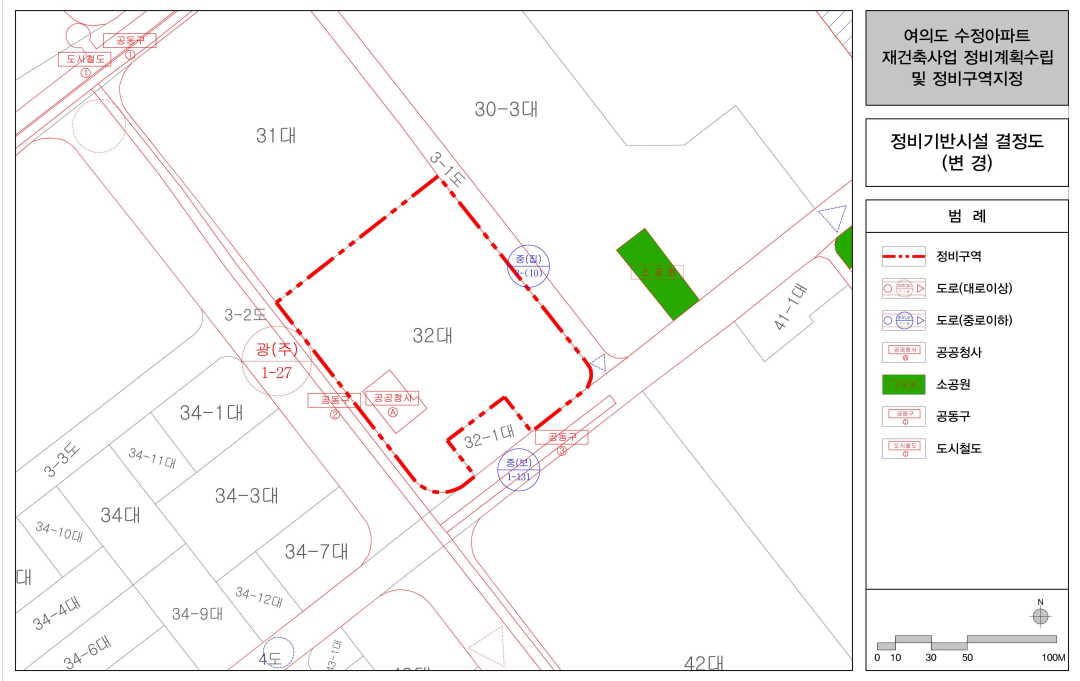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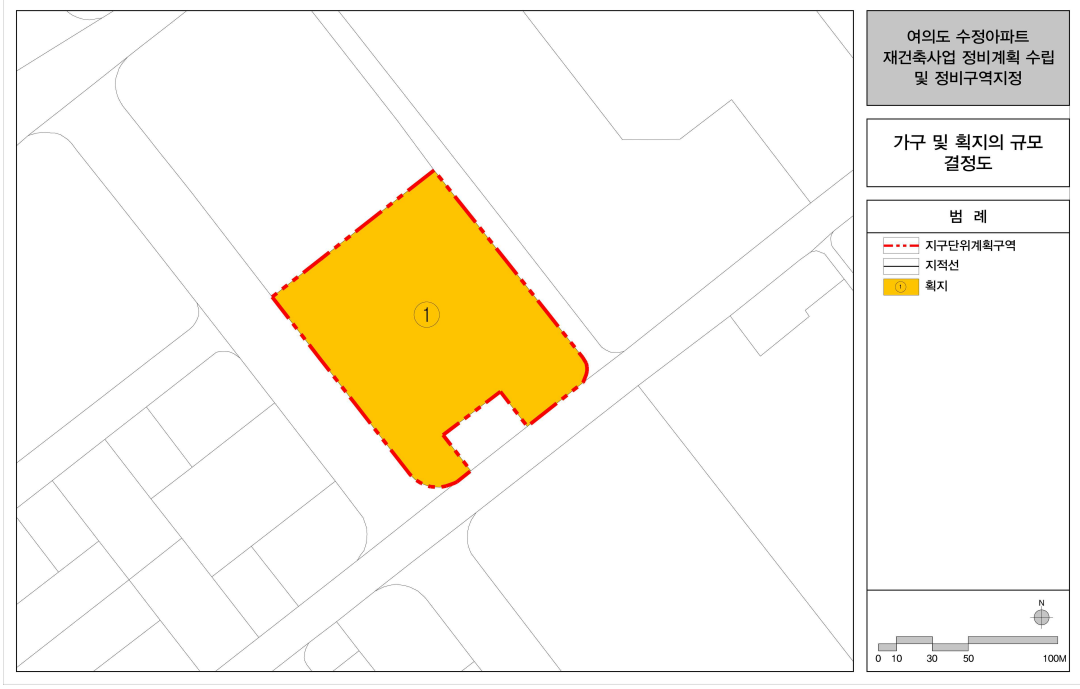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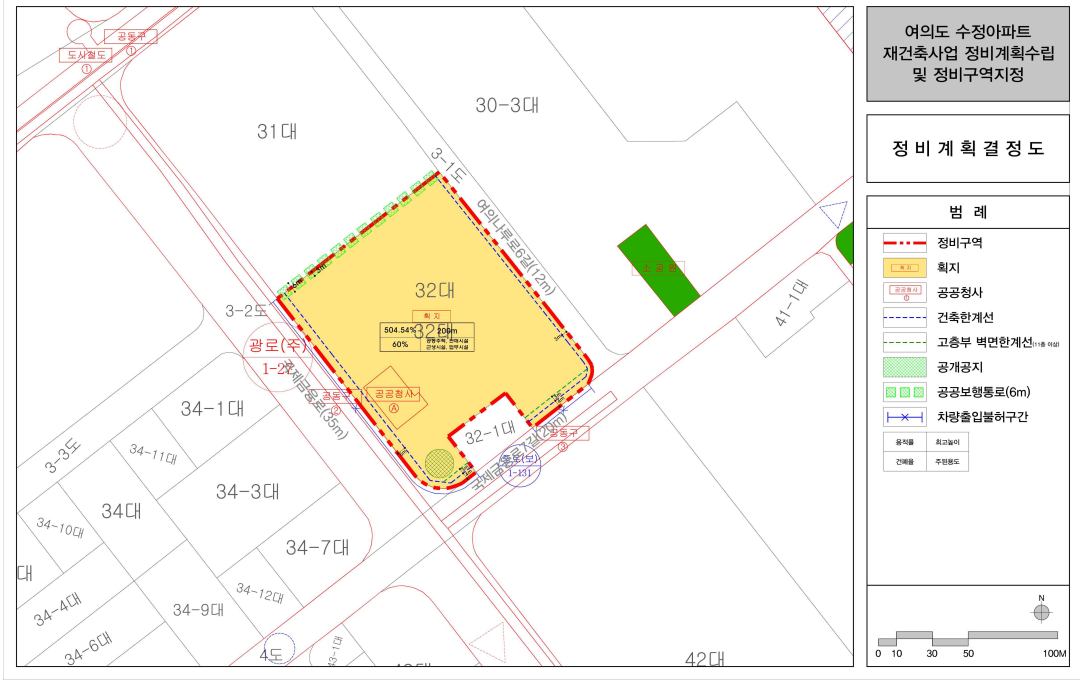
■ 정비기반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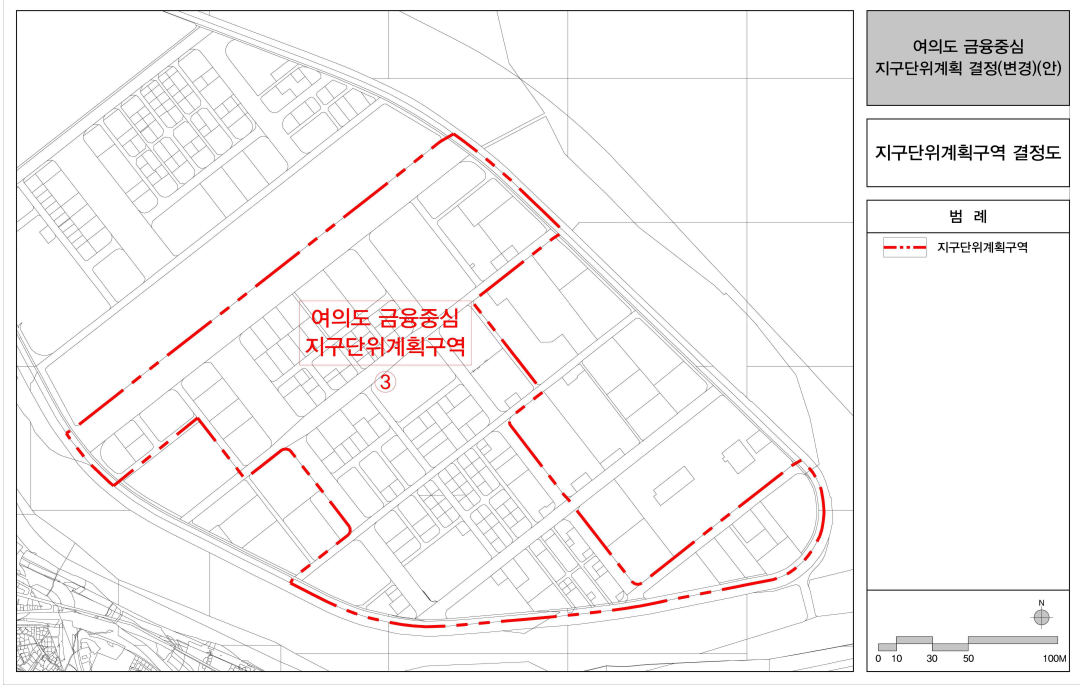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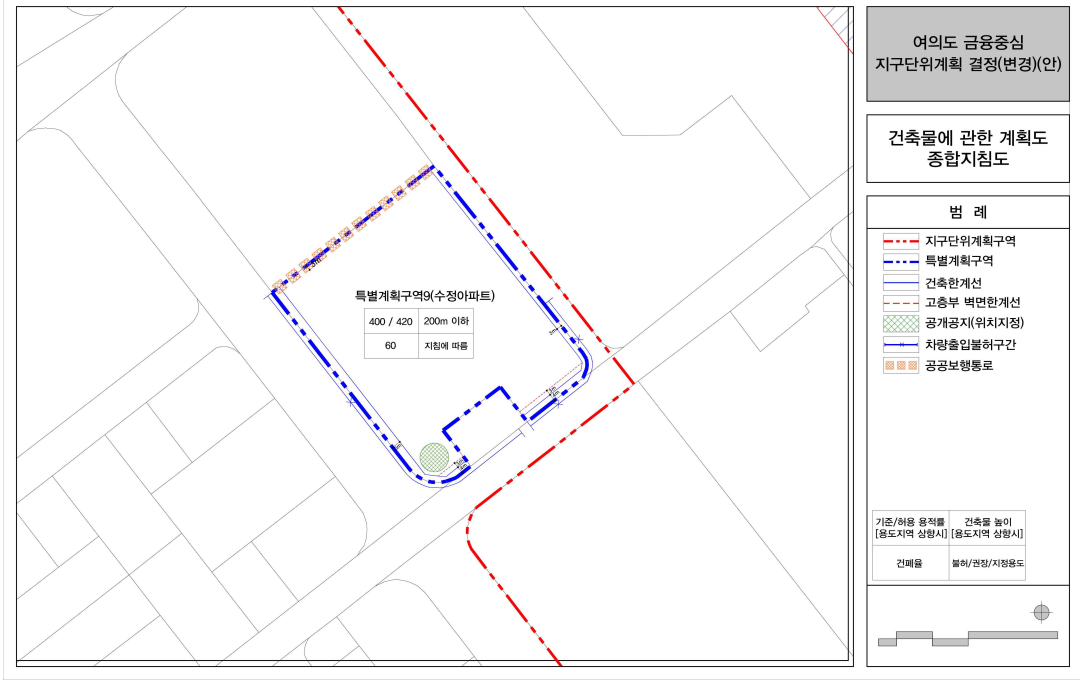
■ 정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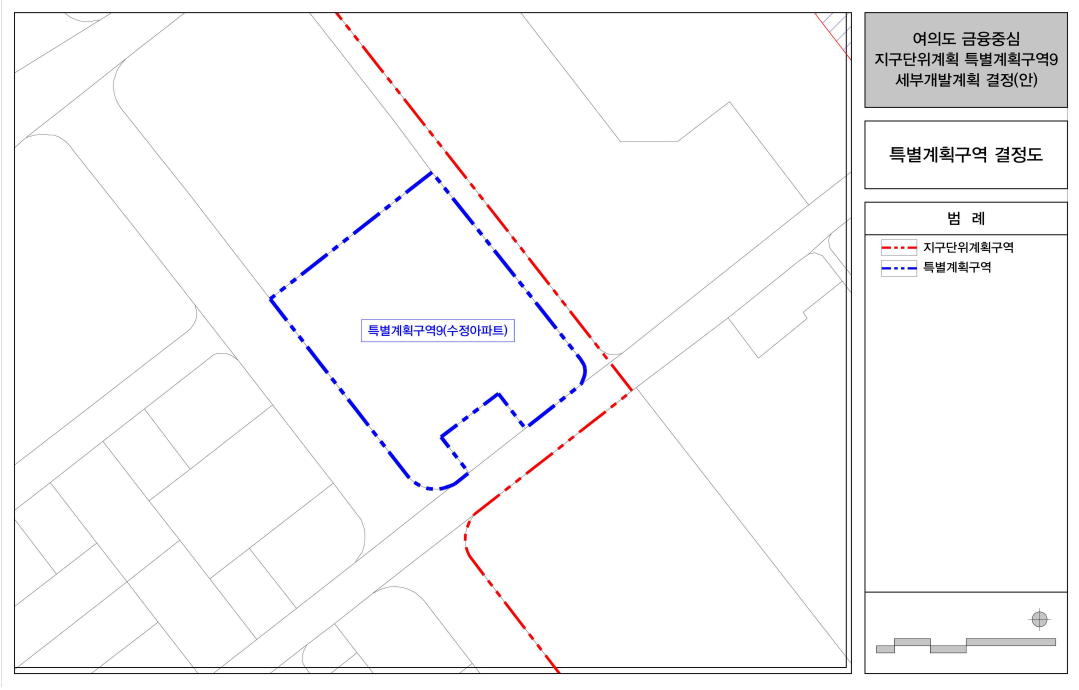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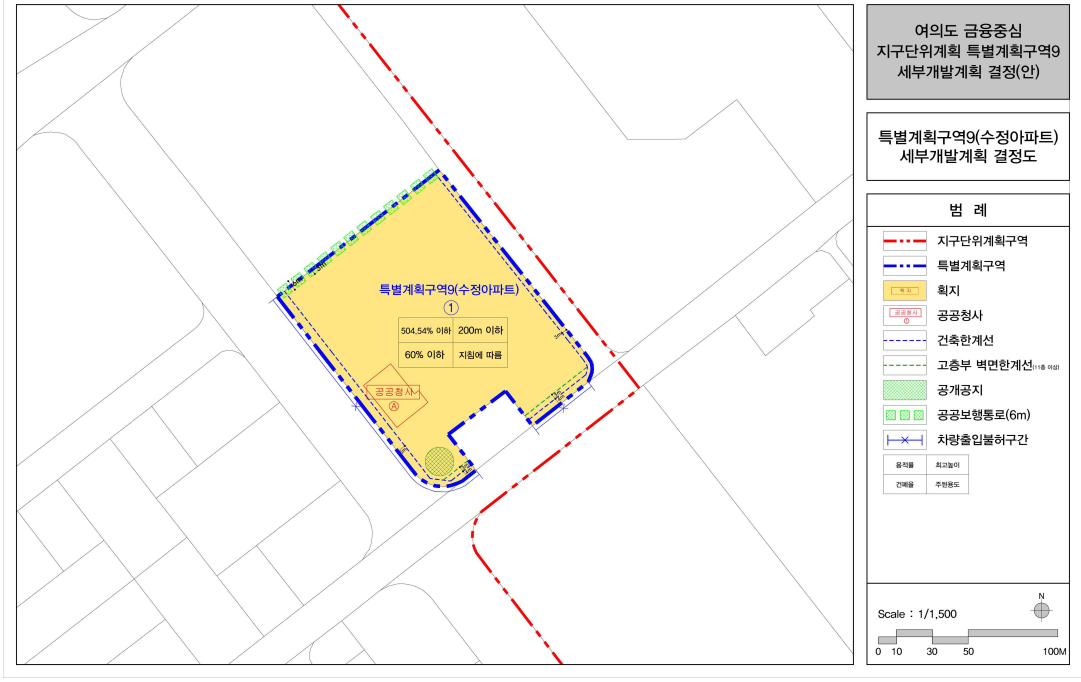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결정도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종합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41호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68호(2010.5.6.)로 도시계획시설(시장)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246호(2010.7.1.)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00호(2024.12.12.)로 도시계획시설(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시장)사업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자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시장)
○ 사업의 명칭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531,830㎡
○ 건축물의 규모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설계중-수산동)	3-1단계 (철거예정)	3-2단계 (설계중-채소1동)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대지면적		531,830.00㎡									
건축면적	기정	29,435.12㎡	33,853.75㎡ (4,418.63㎡)	76,667.07㎡ (42,813.32㎡)	77,387.01㎡ (719.94㎡)	78,399.12㎡ (1,012.11㎡)	105,111.59㎡ (26,712.47㎡)	105,111.59㎡ (0.00㎡)	165,949.15㎡ (60,837.56㎡)	165,949.15㎡ (0.00㎡)	227,130.35㎡ (61,181.20㎡)
	변경	-	-	76,684.39㎡ (42,830.64㎡)	77,404.33㎡ (719.94㎡)	78,416.44㎡ (1,012.11㎡)	105,128.91㎡ (26,712.47㎡)	105,111.59㎡ (0.00㎡)	165,966.47㎡ (60,837.56㎡)	165,966.47㎡ (0.00㎡)	227,147.67㎡ (61,181.20㎡)
	증감	-	-	증)17.32㎡	-	-	-	-	-	-	-
연면적	기정	212,592.73㎡	218,258.86㎡ (5,666.13㎡)	275,325.86㎡ (57,067.00㎡)	278,275.42㎡ (2,949.56㎡)	280,407.21㎡ (2,131.79㎡)	348,422.25㎡ (68,015.04㎡)	348,422.25㎡ (68,015.04㎡)	438,824.51㎡ (90,402.26㎡)	443,914.51㎡ (5,090.00㎡)	533,630.91㎡ (89,716.40㎡)

사업단계		1단계 (완료)	2-1단계 (완료)	2-2단계 (금회)	2-4단계 (완료)	2-5단계 (완료)	2-3단계 (설계중-수산동)	3-1단계 (철거예정)	3-2단계 (설계중-채소1동)	2-6단계 (예정)	3-3단계 (예정)
	변경	-	-	279,160.46㎡ (60,901.60㎡)	282,110.02㎡ (2,949.56㎡)	284,241.81㎡ (2,131.79㎡)	352,256.85㎡ (68,015.04㎡)	352,256.85㎡ (68,015.04㎡)	442,659.11㎡ (90,402.26㎡)	447,749.11㎡ (5,090.00㎡)	537,465.51㎡ (89,716.40㎡)
	증감	-	-	증)3,834.60㎡	-	-	-	-	-	-	-
층수		지하3층 /지상18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하1층 /지상3층
공사기간	기정	2011년~ 2015년	2013년~ 2014년	2020년 ~2024년	2021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4년 ~2027년	2027년 ~2031년	2027년 ~2031년
	변경	-	-	(2024년 ~2025년)	-	-	-	-	-	-	-

※ 2-2단계(채소2동) 주차램프 지붕 연면적 3,834.60㎡ 증가(건축면적 17.32㎡ 증가)
※ 2-2단계(채소2동) 상품화시설 설치(연면적 증가 없음)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대표 문영표
○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 고시일(2011.2.17.)로부터 ~ 2031.12.31까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과(☎2133-4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49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15일간)
5. 납부기한 : 2025. 6. 19.
6. 유의사항
   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 이메일 : kys82@seoul.go.kr)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금액	반 송 내 역		발송물 구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온*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은천로**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50,000원	폐문부재	2025-3-25	부과고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61호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확정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 확정부과 및 독촉고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법적근거
가. 사전통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나. 연 체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연체료의 징수)
다.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

대상자	무단점유사실 및 사전통지 내역	송달주소
윤○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24.01.01. ~ 2024.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통지내역 : 1,176,48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대로 100길 40
김○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24.01.01. ~ 2024.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확정부과 내역 : 8,126,04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로 40번길 10 300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유재산 변상금 확정부과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주식회사 이O스개발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726 - 점유기간 : 2021.12.03.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3.0㎡, 5% - 부과내역 : 890,400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O로 103, 704호 나-05 (죽전동, 건O타운)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고지

대 상 자	무단점유사실 및 독촉고지 내역	송달주소
윤O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98-13 - 점유기간 : 2018.07.01.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4.0㎡, 5% - 독촉내역 : 7,716,530원(변상금: 6,010,910원, 연체료: 1,705,620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O대로 100길 40
이O환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86-269 - 점유기간 : 2015.09.13. ~ 2021.08.04. - 점유면적 및 요율 : 65.0㎡, 2% - 독촉내역 : 18,596,646원 (변상금 : 15,954,966원, 연체료 : 2,641,680원)	서울시 강O구 솔O로6O길 1O-O, OOO호
김O호	- 무단점유재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0-14 - 점유기간 : 2017.02.04. ~ 2023.12.31. - 점유면적 및 요율 : 26.0㎡, 5% - 독촉내역 : 59,055,230원(변상금: 48,562,800원, 연체료: 10,492,430원)	경기도 의정부시 태O로 40번길 10 3OO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략적 사항을 기재하였음

○ 공시송달 기간 : 2025. 5. 22. ~ 2025. 6. 5. (15일 간)

○ 문의사항은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02-3410-718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6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9조에 근거하여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 거주지(주민등록표 등 · 초본상)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2. ~ 6. 4. (공고일로부터 14일간)

2. 공시송달 공고사항 : 체납내역 및 압류에 관한 사항
※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5항을 준용하여 송달받을 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마스킹 처리.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체납내역					등기우편 송달내역	비 고
		과 목	체납납기	체납 횟수	체납액	예고서상 납부기한		
0380298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32-19, 305호	수도요금	2022-08 2022-10 2023-02 ~2024-04	16	627,970	2025. 5. 16. ~ 2025.5.19. (당초 압류예정일)	‣등기번호 : 1152101229134 ‣반송사유 : 폐문부재	해당 내역은 2025. 5.15.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차후 변동될 수 있음.

압류구분	압류물건	압류물건 소유자			압류액	공시송달 이후 압류예정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주소지		
부동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32-19, 305호	이*일	640330-*******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4길 32-19, 305호	627,970	2025. 6. 5.~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고지서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의 효력 발생일(2025. 6. 4.)이 납부기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예정일 전 체납액을 납부하실 의사가 있으신 경우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종암동 담당자(☎ 02-3146-2112)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송달 불능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 및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김ㅇ규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3, **4동**2호(마동)	일시 : 2024-12-11 09:25 장소 : 서울시 잠실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7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김ㅇ규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중앙로 **3, **4동**2호(마동)	일시 : 2024-12-11 14:55 장소 : 서울시 잠실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7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나.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박ㅇ흥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 **9, **3동**1호(이화동)	일시 : 2025-03-03 10:20 장소 : 서울시 문정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성 명	주 소		
이○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세관길 *7, *동 **2호(성정동)	일시 : 2025-03-05 00:50 장소 : 서울시 문정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8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정○균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서길 *0-*, **3호(일동)	일시 : 2025-03-12 18:10 장소 : 서울시 청담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 차량의 폭 제한 0.25미터 초과	과태료 : 30만원
박○식	경기도 하남시 천현로 *3, **1호(신장동)	일시 : 2025-03-21 08:50 장소 : 서울시 대치동 남부순환로 내용 : 차량의 총중량 제한 4.5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김○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순환로 **1, ***3동 ***3동(다산동)	일시 : 2025-03-24 09:13 장소 : 서울시 삼성동 테헤란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1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심○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5번길 *-*0*, **1호(구갈동)	일시 : 2025-03-27 14:10 장소 : 서울시 고덕동 올림픽대로 내용 : 차량의 축하중 제한 1.3톤 초과	과태료 : 50만원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2025.6.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5%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040-0321, 팩스번호: 02-2040-0305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69호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철도안전법」 제47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또는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8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수취인 불명, 주소불명, 수취거절,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분을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별첨
4.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4.(14일간)
 - 공시송달 대상자는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단속되었기에 「철도안전법」 제8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안내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5. 의견제출 안내
 -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메일: baekho8@seoul.go.kr
 팩스: 02-2133-1076
 우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방문: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 의견제출기한 : 2025. 6. 4. ~ 2025. 6. 18. (15일간)
6.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도시철도과(☏02-2133-4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철도안전법위반 과태료 2025년 1,2,3월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건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	1078834219898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02 12:59
2	1078834219899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06 13:07
3	1078834219901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08 13:09
4	1078834219902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11 10:38
5	1078834219904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15 12:40
6	1078834219905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15 13:52
7	1078834219906	주소불명	2025-05-02 14:16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15	열차	2025-01-16 10:24
8	1078834219907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16 10:45
9	1078834219908	폐문부재	2025-05-13 09:38	7208**-*******	신*례	경기도 의정부시 송산로 939번길 86	열차	2025-01-16 11:37
10	1078834219909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16 11:38
11	1078834219910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21 12:05
12	1078834219911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21 13:17
13	1078834219914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1-31 12:03
14	1078834219915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1-14 10:40
15	1078834219917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1-15 13:20
16	1078834219918	기타	2025-05-13 07:11	6310**-*******	하*희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 26나길 29-6	열차	2025-01-16 15:08
17	1078834219919	기타	2025-05-13 09:15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 356-5	열차	2025-01-23 11:53
18	1078834219920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1-25 11:58
19	1078834219925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16 14:56
20	1078834219926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13 13:15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21	1078834219927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10 13:14
22	1078834219928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9 13:30
23	1078834219930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71	열차	2025-01-08 13:20
24	1078834219916	주소불명	2025-05-07 12:22	6410**-*******	박*옥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94-5	열차	2025-01-14 18:22
25	1078834219922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71	열차	2025-01-07 10:45
26	1078834219923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71	열차	2025-01-07 11:32
27	1078834219929	주소불명	2025-05-07 09:4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09 13:48
28	1078834219924	수취인불명	2025-05-02 12:05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2	대합실	2025-01-18 16:28
29	1078834219931	주소불명	2025-05-07 09:45	6108**-*******	김*관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06 14:07
30	1078834219932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5 10:29
31	1078834219933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1 11:15
32	1078834219934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2 12:56
33	1078834219935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2 13:47
34	1078834219936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7 11:35
35	1078834219937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07 14:05
36	1078834219938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10 11:15
37	1078834219939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10 13:15
38	1078834219940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14 10:40
39	1078834219941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16 11:00
40	1078834219942	폐문부재	2025-05-07 13:16	4711**-*******	서*석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131	열차	2025-01-17 10:50
41	1078834219943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17 10:5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42	1078834219944	폐문부재	2025-05-07 13:16	4711**-*******	서*석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로 131	열차	2025-01-21 13:42
43	1078834219945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23 11:10
44	1078834219946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열차	2025-01-25 10:55
45	1078834219947	폐문부재	2025-05-13 10:36	6810**-*******	권*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34-3	열차	2025-01-28 16:31
46	1078834219948	주소불명	2025-05-07 09:45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1-23 14:23
47	1078834219950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1-01 11:23
48	1078834219975	주소불명	2025-05-02 13:41	5502**-*******	임*자	경기도 광명시 875 이화빌라	열차	2025-01-25 18:57
49	1078834219976	주소불명	2025-05-02 13:48	6202**-*******	이*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12	열차	2025-01-25 19:28
50	1078834219979	주소불명	2025-05-02 14:16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15	열차	2025-02-03 10:23
51	1078834219981	주소불명	2025-05-02 14:16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15	열차	2025-02-13 10:36
52	1078834219984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2-17 14:20
53	1078834219960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 망우동	열차	2025-01-27 12:57
54	1078834219980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2-11 11:20
55	1078834219983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2-17 14:00
56	1078834219985	기타	2025-05-13 07:11	6602**-*******	조*도	서울시 관악구 청룡 16길 8	열차	2025-02-06 21:55
57	1078834219986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2-12 10:49
58	1078834219987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2-15 10:57
59	1078834219988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2-27 11:18
60	1078834219989	기타	2025-05-13 09:15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 356-5	열차	2025-02-28 12:01
61	1078834219990	기타	2025-05-12 10:3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5-02-03 10:35
62	1078834219991	폐문부재	2025-05-12 08:2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5-02-08 10:20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63	1078834219992	기타	2025-05-12 09:00	6210**-*******	김*주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2길 23 (독산동)	역사	2025-02-10 12:25
64	1078834219993	수취인불명	2025-05-02 12:05	7511**-*******	연*성	서울시 성동구 한림말3길 22	역사	2025-02-18 12:09
65	1078834219995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5-02-28 10:32
66	1078834219996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5-02-28 13:40
67	1078834219997	기타	2025-05-12 09:00	6601**-*******	김*용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239-6(독산동)	역사	2025-02-01 10:25
68	1078834219998	폐문부재	2025-05-12 08:20	6905**-*******	신*식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724번길 20	열차	2025-02-01 10:38
69	1078834219999	기타	2025-05-12 06:42	4801**-*******	홍*향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7	열차	2025-02-26 06:00
70	1078834220000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05 14:12
71	1078834220001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07 10:55
72	1078834220002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12 11:08
73	1078834220003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25 10:55
74	1078834220004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2-25 11:15
75	1078834220005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2-25 11:23
76	1078834220006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2-27 13:32
77	1078834220007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2-28 13:55
78	1078834220008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열차	2025-02-01 10:55
79	1078834220016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 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17 11:17
80	1078834220025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71 (신당동)	열차	2025-02-03 11:07
81	1078834220033	기타	2025-05-12 05:28	5208**-*******	양*옥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60	열차	2025-02-08 14:28
82	1078834220034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12 13:24
83	1078834220035	기타	2025-05-12 09:40	4406**-*******	김*옥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115길 15(망우동)	열차	2025-02-14 14:06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84	1078834220039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03 11:39
85	1078834220041	주소불명	2025-05-02 14:16	6908**-*******	강*철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로 43길 21-15	열차	2025-03-12 14:48
86	1078834220042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13 14:03
87	1078834220043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14 11:11
88	1078834220044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18 12:02
89	1078834220046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21 14:36
90	1078834220047	폐문부재	2025-05-12 13:12	5409**-*******	이*하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 2길 25	열차	2025-03-24 13:59
91	1078834220048	수취인불명	2025-05-07 11:08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5-03-25 13:16
92	1078834220052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3-11 10:39
93	1078834220053	주소불명	2025-05-02 13:48	6202**-*******	이*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12	열차	2025-03-13 09:15
94	1078834220054	이사불명	2025-05-02 14:40	5304**-*******	김*직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55	열차	2025-03-14 14:58
95	1078834220058	기타	2025-05-12 10:3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5-03-04 10:26
96	1078834220059	기타	2025-05-12 10:3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5-03-07 10:14
97	1078834220063	주소불명	2025-05-02 09:22	8310**-*******	조*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2	열차	2025-03-18 21:52
98	1078834220064	폐문부재	2025-05-12 08:20	6804**-*******	홍*식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26	열차	2025-03-19 13:55
99	1078834220020	폐문부재	2025-05-13 11:23	6410**-*******	박*옥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로 3번길 14	열차	2025-02-26 10:15
100	1078834220055	기타	2025-05-13 09:15	5902**-*******	권*철	서울시 종로구 종로 356-5	열차	2025-03-26 12:22
101	1078834220056	폐문부재	2025-05-13 10:38	4302**-*******	조*임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5길 4-3	을지로3가역 환승통로	2025-03-11 13:50
102	1078834220050	수취인불명	2025-05-07 11:08	7008**-*******	이*일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7	열차	2025-03-31 11:13
103	1078834220057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5-03-01 12:58
104	1078834220060	기타	2025-05-12 10:35	4812**-*******	이*희	경기도 시흥시 함송로 35	열차	2025-03-10 10:42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05	1078834220061	기타	2025-05-12 09:00	6210**-*******	김*주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2길 23(독산동)	역사	2025-03-13 11:15
106	1078834220065	기타	2025-05-12 09:00	6210**-*******	김*주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22길 23(독산동)	역사	2025-03-29 12:00
107	1078834220066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신당동)	열차	2025-03-09 10:05
108	1078834220067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3-09 13:24
109	1078834220068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3-19 12:34
110	1078834220069	폐문부재	2025-05-13 10:36	7205**-*******	권*민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34-3	열차	2025-03-03 17:14
111	1078834220070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3-04 11:18
112	1078834220071	기타	2025-05-13 10:48	6610**-*******	김*기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16길 64	열차	2025-03-05 10:51
113	1078834220072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3-06 11:20
114	1078834220074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자양동)	열차	2025-03-12 10:50
115	1078834220075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5-03-18 10:58
116	1078834220076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5-03-20 13:27
117	1078834220077	주소불명	2025-05-07 13:45	4711**-*******	서*석	서울시 중구 청구로 71	열차	2025-03-21 13:40
118	1078834220078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열차	2025-03-21 13:44
119	1078834220079	기타	2025-05-09 18:02	4811**-*******	김*록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662	열차	2025-03-25 12:55
120	1078834220080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자양동)	열차	2025-03-28 14:09
121	1078834220087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11 13:31
122	1078834220089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12 11:45
123	1078834220092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4 10:40
124	1078834220093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4 11:08
125	1078834220095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6 11:29

순번	등기번호	반송사유	반송일시	수취인주민번호	수취인명	발송지 주소	위반장소	위반일시
126	1078834220096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6 13:17
127	1078834220099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8 10:24
128	1078834220100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8 13:20
129	1078834220102	기타	2025-05-12 15:00	6603**-*******	권*관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33-10 (자양동)	열차	2025-03-29 11:05
130	1078834220107	이사불명	2025-05-02 11:13	6801**-*******	문*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열차	2025-03-03 19:26
131	1078834220112	이사불명	2025-05-02 11:13	6801**-*******	문*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열차	2025-03-24 16:16
132	1078834220116	이사불명	2025-05-02 11:13	6801**-*******	문*자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열차	2025-03-31 11:28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71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수도법 제68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예고서를 소유자에게 2차례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④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①항 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4.

2. 공시송달 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및 압류 내역

고객번호	급수설비 소재지	납 기				비고
		과목	납 기	횟수	금 액	
00818796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45-21(상계동, 공용)	수도요금	2022년 8월 등 16납기	16회	3,953,010	

압류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예정일
		성 명	주민번호 (반송사유)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47길 45-21(상계동, 공용)	김*선	200721-1****** (2회송달 부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3,953,010	2025.6.4. 이후

3.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소재석(02-3146-330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72호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서
2.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내역
   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고객번호 (업종)	급수설비 소재지	과 목	체납기간(납기)	체납금액(원)
0□2658199 (가정용)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0길 □ □01호 (화곡동 877-□)	상하수도요금	22년 3월 ~ 24년 7월	1,965,060원

   나. 압류내역

압류 구분	압류물건	물건소유자		압류금액	압류일
		성 명	주 소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10길 □ 2□4호(화곡동 877-□)	이□종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6로 □, 1422동 □01호 (고덕동, 고덕국제신도시대관로제비앙디아트)	1,965,060원	2025년 4월 30일

4.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2. (14일간)
5. 안내사항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공고문에 대해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동 법 제27조에 따라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혹은 유선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의견제출기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기타 문의사항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02-3146-39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76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폐업 신고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연번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1	토탈스위스 코리아(주)	서울 제852호	왕웬친 (대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제13층 제1호, 제18층 (봉래동1가)	소재지 ('25.04.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91길 10, 7층 (역삼동)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제13층 제1호, 제18층 (봉래동1가)
2	㈜경우라이프	서울 후 제426호	김원영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1101호, 1102호 (가산동)	대표자 ('25.04.18.)	김현규	김원영
3	엑소바이옴 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후 제1574호	조준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460, 8층, 9층, 10층 (청담동)	대표자 ('25.04.16.)	전승우	조준용
4	엑소바이옴 TOKIYO지점	서울 후 제2629호	이혜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80, 103동 1719호 (진관동)	폐업 ('25.05.02.)		
5	㈜화진화장품	서울 후 제4호	강정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26, 6층 603호, 605호 (북창동)	소재지 ('25.05.0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46, 9층 (당산동6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길 26, 6층 603호, 605호 (북창동)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원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77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공고

하수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점용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대한 점용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허가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점용허가 신청 사항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번지	622.4	도로 유지보수 현장사무실	2025.1.1.~ 2025.12.31.
(주)에싸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249번길 1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90-4 일원	50	「물질분리장치에 의한 반송오니 농축기술이 접목된 최적 하수처리시스템 개발」 과제 PILOT PLANT설치 및 운영	2025.1.1.~ 2026.12.31.
(주)플라젠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1길 25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105번지 일부	750	서남물재생센터 협잡물 건조설비 설치 및 운영	2024.11.1. ~ 2025.4.30.
이피에스리소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로286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65-1번지 일부	77	건조슬러지 자원 순환형 자체,다변처리 사용화 공동연구	2025.1.1.~2025.12. 31.
에코바이오 홀딩스(주)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14로 38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61-1 일원	2,277.85	서남물재생센터 Bio Gas 차량연료화 사업	2024.12.3.~ 2035.12.31.

신청자		점용 장소	점용 면적 (㎡)	점용 목적	점용 기간
명칭	주소				
두산건설(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75번지 외 11필지	4,965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 및 운영	2026.1.1.~ 2030.12.31.
(주)플럭시티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2길 18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5 일대 8개소	1.5	서울경제진흥원 주관 「2024년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지원 사업」 과제 수행 관련 악취측정기 설치	2025.4.23.~ 2025.11.20.

2. 복구방법 : 점용시설물에 대한 자진철거 및 반출

3. 복구완료시기 : 점용허가기간 종료일 전까지 복구완료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물재생시설과(☎02-2133-384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7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처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자격요건 미달 기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 통지(청문실시통지)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 등으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처분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한국 어린이 놀이시설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31 608-1호	기관의 사실상 폐쇄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요건 상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 지정 취소	2025.6.26.(목) 14:00 서울특별시청 본관 10층 청문실	변호사 정선효 법률사무소 정선효 변호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조례 제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예방과 ☏02)2133-8535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80호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안)

건설부고시 제498호(1971.8.1)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제260호(2024. 5. 30)로 능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능동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 원 명 : 능동근린공원
2. 위　　치 :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16 일대
3. 면　　적 : 560,558.00㎡
4. 조성계획 변경(안)
   ○ 주요(변경)내용(어린이대공원지구)
   - 기반시설(도로) : 49,164.08㎡ → 48,812.25㎡ (감351.83㎡)
   - 기반시설(광장) : 14,423.92㎡ → 14,693.12㎡ (증269.20㎡)
   - 휴양시설 : 1,878.89㎡ → 2,278.49㎡ (증399.60㎡)
   - 교양시설 : 58,937.67㎡ → 59,116.38㎡ (증178.71㎡)
   - 녹지 및 기타 : 322,365.79㎡ → 321,695.71㎡ (감670.08㎡)
5.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열람장소 : 동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02-460-2959)
7. 본 조성계획변경(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능동근린공원(어린이대공원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1. 총괄표 (위치 : 광진구 능동18번지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560,552.00	223,316.35	71	24,390.96	52,737.63	668	560,558.00	223,992.43	71	24,571.67	52,263.96	667	
어린이 대공원지구	536,088.50	213,722.71	59	22,791.29	49,714.00	664	536,094.50	214,398.79	59	22,972.00	49,240.33	663	시설면적 증 676.08㎡
어린이 회관지구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0	9,593.64	12	1,599.67	3,023.63	4	
시설율 (법정40%)	(223,316.35 / 560,552.00) × 100 = 39.84 %						(223,992.43 / 560,558.00) × 100 = 39.96 %						증 0.12%
건폐율 (법정10%)	(24,390.96 / 560,552.00) × 100 = 4.35 %						(24,517.67 / 560,558.00) × 100 = 4.38 %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합 계		560,552.00	223,316.35	71	24,390.96	52,797.25	668	560,558.00	223,992.43	71	24,571.67	52,263.96	667	시설면적 증 676.08㎡
기반시설	소 계	65,184.53	65,184.53					65,101.90	65,101.90					감 82.63㎡
	도 로	50,760.61	50,760.61					50,408.78	50,408.78					감 351.83㎡
	광 장	14,423.92	14,423.92					14,693.12	14,693.12					증 269.20㎡
조경시설		18,146.54	18,146.54				5	18,188.81	18,188.81				5	증 42.27㎡
휴양시설		1,893.09	1,893.09	4	236.56	236.56		2,292.69	2,292.69	4	236.56	236.56		증 399.60㎡
유희시설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29,471.70	29,471.70	4	847.44	1,560.72		증 168.40㎡
운동시설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23,271.93	23,271.93	10	1,262.05	2,686.01	4	-
교양시설		59,442.29	59,442.29	31	17,220.41	41,556.09	27	59,621.00	59,621.00	31	17,401.12	41,022.80	27	증 178.71㎡
편익시설		23,480.39	23,480.39	15	3,287.82	5,005.19	26	23,450.12	23,450.12	15	3,287.82	5,005.19	25	감 30.27㎡
관리시설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
녹지.기타		337,235.65						336,565.57						감 670.08㎡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2.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대공원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536,088.50	213,722.71	59	22,791.29	49,773.62	664	536,094.50	214,398.79	59	22,972.00	49,240.33	663	시설면적 증 676.08㎡
기반시설	소 계	63,588.00	63,588.00					63,505.37	63,505.37					감 82.63㎡
	도 로	49,164.08	49,164.08					48,812.25	48,812.25					감 351.83㎡
	광 장	14,423.92	14,423.92					14,693.12	14,693.12					증 269.20㎡
조경시설		18,082.64	18,082.64				5	18,124.91	18,124.91				5	증 42.27㎡
휴양시설		1,878.89	1,878.89	4	236.56	236.56		2,278.49	2,278.49	4	236.56	236.56		증 399.60㎡
유희시설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29,471.70	29,471.70	4	847.44	1,560.72		증 168.40㎡
운동시설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
교양시설		58,937.67	58,937.67	27	16,715.79	41,051.47	26	59,116.38	59,116.38	27	16,896.50	40,518.18	26	증 178.71㎡
편익시설		23,480.39	23,480.39	15	3,287.82	5,005.19	26	23,450.12	23,450.12	15	3,287.82	5,005.19	25	감 30.27㎡
관리시설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
녹지.기타		322,365.79						321,695.71						감 670.08㎡
그밖의 시설 (동물놀이터)		747.00	747.00					747.00	747.00					

3. 시설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계			63,588.00	63,588.00								63,505.37	63,505.37						감 82.63㎡
	도 로	가	능동 18	39,794.38	39,794.38						가	능동 18	39,442.55	39,442.55						감 351.83㎡
	산책로	나	〃	9,369.70	9,369.70						나	〃	9,369.70	9,369.70						
	광 장	다	〃	14,423.92	14,423.92						다	〃	14,693.12	14,693.12						지 269.20㎡
	진입광장	다-1	〃	(4,427.00)	(4,427.00)						다-1	〃	(4,427.00)	(4,427.00)						
	빛의광장	다-2	〃	(4,445.38)	(4,445.38)						다-2	〃	(4,445.38)	(4,445.38)						
	판타지플라자	다-3	〃	(1,465.58)	(1,465.58)						다-3	〃	(1,465.58)	(1,465.58)						
	육각정광장	다-4	〃	(2,281.90)	(2,281.90)						다-4	〃	(2,281.90)	(2,281.90)						
	야외음악당광장	다-5	〃	(370.00)	(370.00)						다-5	〃	(370.00)	(370.00)						
	후문광장-1	다-6	〃	(588.19)	(588.19)						다-6	〃	(588.19)	(588.19)						
	후문광장-2	다-7	〃	(394.03)	(394.03)						다-7	〃	(394.03)	(394.03)						
	후문광장-3	다-8	〃	(451.84)	(451.84)						다-8	〃	(451.84)	(451.84)						
	식물원전면광장	다-9	〃	-	-						다-9	〃	(116.00)	(116.00)						지 116.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식물원후면광장	다-10	〃	-	-						다-10	〃	(153.20)	(153.20)						지이 153.20㎡
조경시설	계			18,082.64	18,082.64					5			18,124.91	18,124.91					5	지이 42.27㎡
	화 단	라	〃	2,215.50	2,215.50						라	〃	2,119.50	2,119.50						감 96.00㎡
	실개천	아	〃	524.41	524.41						아	〃	524.41	524.41						
	연 못	①	능동 18	14,382.78	14,382.78					3	①	능동 18	14,502.55	14,502.55					3	지이 119.77㎡
	- 환경연못	①-1	〃	(5,061.78)	(5,061.78)					(1)	①-1	〃	(5,061.78)	(5,061.78)					(1)	
	- 생태연못	①-2	〃	(8,700.00)	(8,700.00)					(1)	①-2	〃	(8,700.00)	(8,700.00)					(1)	
	- 생태계류	①-3	〃	(621.00)	(621.00)					(1)	①-3	〃	(621.00)	(621.00)					(1)	
	- 식물원연못	①-4	〃	-	-						①-4	〃	(119.77)	(119.77)						
	분수대	②	〃	959.95	959.95					2	②	〃	959.95	959.95					2	
	- 혼합형조형분수	②-1	〃	(706.50)	(706.50)					(1)	②-1	〃	(706.50)	(706.50)					(1)	
	- 터널분수	②-3	〃	(253.45)	(253.45)					(1)	②-3	〃	(253.45)	(253.45)					(1)	
	장식가벽	③	〃	-	-						③	〃	18.50	18.50						지이 18.5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계			1,878.89	1,878.89		4	236.56	236.56				2,278.49	2,278.49		4	236.56	236.56		증 399.60㎡
	육각정	1	능동 18	445	445	R.C	3	223.34	223.34		1	능동 18	445	445	R.C	3	223.34	223.34		
	- 육각정 1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1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2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1-2	〃	(210.00)	(210.00)	R.C	(1)	(99.17)	(99.17)		
	- 육각정 3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1-3	〃	(25.00)	(25.00)	R.C	(1)	(25.00)	(25.00)		
	군자정	2	〃	39	39	R.C	1	13.22	13.22		2	〃	39	39	R.C	1	13.22	13.22		
	쉼 터	자	〃	135.84	135.84						자	〃	135.84	135.84						
	야영장	야	〃	960	960						야	〃	960	960						
	휴게쉼터-1	버	〃	180.71	180.71						버	〃	180.71	180.71						
	휴게쉼터-2	스	〃	72.87	72.87						스	〃	72.87	72.87						
	휴게쉼터-3	휴	〃	45.47	45.47						휴	〃	45.47	45.47						
	휴게쉼터-4	보	〃	-	-						보	〃	36.00	36.00						신 36.00㎡
	휴게쉼터-5	식	〃	-	-						식	〃	255.40	255.40						신 255.4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게쉼터-6	원	〃	-	-						원	〃	108.20	108.20						증 108.20㎡
유희시설	계	계		29,303.30	29,303.30		4	847.44	1,560.72		계		29,471.70	29,471.70		4	847.44	1,560.72		증 168.40㎡
	소 계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소계	능동18	1,432.15	1,432.15		4	847.44	1,560.72		
	매 표 소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5	〃	136.08	136.08	R.C	1	136.08	136.08		
	과학오락관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7	〃	287.89	287.89	R.C	1	287.89	565.16		
	- 과학오락관	7-1		(225.66)	(225.66)			(225.66)	(225.66)		7-1	〃	(225.66)	(225.66)			(225.66)	(225.66)		
	- 입체영상관	7-2		(225.66)	(225.66)			(225.66)	(171.01)		7-2	〃	(225.66)	(225.66)			(225.66)	(171.01)		
	- 화장실 3	7-3		(62.23)	(62.23)			(62.23)	(168.49)		7-3	〃	(62.23)	(62.23)			(62.23)	(168.49)		
	사무실	8	능동 18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8	〃	332.75	332.75	R.C	1	332.75	729.88		
	유령의나라	45	〃	90.72	90.72	R.C	1	90.72	129.6		45	〃	90.72	90.72	R.C	1	90.72	129.6		
	쉼터(야외무대)	46	〃	584.71	584.71						46	〃	584.71	584.7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야외시설	소계	소계		21,761.03	21,761.03						소계		21,761.03	21,761.03						
테마존	스윙거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⑧	능동 18	176.63	176.63	철골					
	회전목마	⑨	〃	86.55	86.55	철골					⑨	〃	86.55	86.55	철골					
	회전컵	⑩	〃	66.44	66.44	철골					⑩	〃	66.44	66.44	철골					
	키디라이타(미니카)	⑪	〃	176	176	철골					⑪	〃	176	176	철골					
	범퍼카	⑬	〃	254.34	254.34	철골					⑬	〃	254.34	254.34	철골					
	디노기차	⑭	〃	392.24	392.24	철골					⑭	〃	392.24	392.24	철골					
	카니발 코너	⑮	〃	69.75	69.75	철골					⑮	〃	69.75	69.75	철골					
	모노레일	⑯	〃	762.54	762.54	레일					⑯	〃	762.54	762.54	레일					
	기차여행	⑰	〃	157.5	157.5	레일					⑰	〃	157.5	157.5	레일					
	스페이스화이터	⑱	〃	86.59	86.59	철골					⑱	〃	86.59	86.59	철골					
	뮤직익스프레스	⑲	〃	346.7	346.7	철골					⑲	〃	346.7	346.7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트럭스테이션	⑳	〃	87.92	87.92	철골					⑳	〃	87.92	87.92	철골					
	몬도딩고(편하우스)	㉑	〃	82.68	82.68	철골					㉑	〃	82.68	82.68	철골					
	전자사격장	㉒	〃	40	40	철골					㉒	〃	40	40	철골					
	서스펜디드패미리코스터	㊲	〃	2,377.89	2,377.89	철골					㊲	〃	2,377.89	2,377.89	철골					
	드롭타워	㊳	〃	178.69	178.69	철골					㊳	〃	178.69	178.69	철골					
	웨이브스윙	㊴	〃	422.42	422.42	철골					㊴	〃	422.42	422.42	철골					
	슈퍼점퍼	㊵	〃	285.27	285.27	철골					㊵	〃	285.27	285.27	철골					
	후룸라이드	㊶	〃	1,658.65	1,658.65	철골					㊶	〃	1,658.65	1,658.65	철골					
	슈퍼바이킹	㊷	〃	264.87	264.87	철골					㊷	〃	264.87	264.87	철골					
	개구리점프	㊸	〃	61.83	61.83	철골					㊸	〃	61.83	61.83	철골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공작물	컨티키	㊹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㊹	능동 18	225.03	225.03	철골					
		스윙베어	㊺	〃	106.8	106.8	철골					㊺	〃	106.8	106.8	철골					
		크레이지마우스	㊻	〃	343	343	철골					㊻	〃	343	343	철골					
		크레이지댄스	㊼	〃	255	255	철골					㊼	〃	255	255	철골					
		아쿠아보트	㊽	〃	358	358	콘크리트					㊽	〃	358	358	콘크리트					
		미니바이킹	㊾	〃	12.34	12.34	철골					㊾	〃	12.34	12.34	철골					
		기 타		〃	12,425.36	12,425.36							〃	12,425.36	12,425.36						
	놀이터	소 계	소계		6,110.12	6,110.12						소계		6,278.52	6,278.52						지 168.40㎡
		분수놀이마당	11	능동 18	1,660.76	1,660.76						11	능동 18	1,660.76	1,660.76						
		감성놀이마당	12	〃	4,301.53	4,301.53						12	〃	4,301.53	4,301.53						
		바닥놀이마당	점	〃	147.83	147.83						점	〃	147.83	147.83						
		모래놀이마당	모	〃	-	-						모	〃	168.40	168.40						지 168.40㎡
끝	계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계		15,857.54	15,857.54		2	167.00	167.00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축 구 장	13	능동 18	8,392.31	8,392.31		1	167.00	167.00	1	13	능동 18	8,392.31	8,392.31		1	167.00	167.00	1	
	축구장	13-1	〃	(8,212.00)	(8,212.00)						13-1	〃	(8,212.00)	(8,212.00)						
	탈의실 및 샤워실	13-2	〃	(180.31)	(180.31)	R.C	1	(167.00)	(167.00)	1	13-2	〃	(180.31)	(180.31)	R.C	1	(167.00)	(167.00)	1	
	헬스파크	14	〃	4,317.54	4,317.54						14	〃	4,317.54	4,317.54						
	- 헬스파크1	14-1	〃	(3,545.54)	(3,545.54)						14-1	〃	(3,545.54)	(3,545.54)						
	- 헬스파크2	14-2	〃	(227.00)	(227.00)						14-2	〃	(227.00)	(227.00)						
	- 헬스파크3	14-3	〃	(320.00)	(320.00)						14-3	〃	(320.00)	(320.00)						
	- 헬스파크4	14-4	〃	(225.00)	(225.00)						14-4	〃	(225.00)	(225.00)						
	미니축구장	15	〃	750.00	750.00						15	〃	750.00	750.00						
	실내테니스장	43	〃	809.25	809.25		1	809.25	809.25		43	〃	809.25	809.25		1	809.25	809.25		
	실외테니스장	44	〃	1,588.44	1,588.44						44	〃	1,588.44	1,588.44						
	실외테니스장-1	44-1	〃	(794.22)	(794.22)						44-1	〃	(794.22)	(794.22)						
	실외테니스장-2	44-2	〃	(794.22)	(794.22)						44-2	〃	(794.22)	(794.22)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계	계		58,937.67	58,937.67		27	16,715.79	41,051.47	26	계		59,116.38	59,116.38		27	16,896.50	40,518.18	26	증 178.71㎡
	소 계	소계		58,234.67	58,234.67		27	16,715.79	41,051.47	4	소계		58,413.38	58,413.38		27	16,896.50	40,518.18	4	증 178.71㎡
	야외음악당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철골	4	1,664.99	2,193.28		16	능동 18	7,662.23	7,662.23	RC+철골	4	1,664.99	2,193.28		
	야외음악당	16-1	〃	(7,327.60)	(7,327.60)	RC+철골	(1)	(1,395.05)	(1,926.10)		16-1	〃	(7,327.60)	(7,327.60)	RC+철골	(1)	(1,395.05)	(1,926.10)		
	옥외화장실 1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16-2	〃	(112.70)	(112.70)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2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16-3	〃	(112.51)	(112.51)	R.C	(1)	(89.98)	(89.06)		
	옥외화장실 3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16-4	〃	(109.42)	(109.42)	R.C	(1)	(89.98)	(89.06)		
	식 물 원	17	〃	1,600.00	1,600.00	R.C	1	1,598.00	2,492.00		17	〃	1,778.71	1,778.71	R.C	1	1,778.71	1,958.71		증 178.71㎡
	동 물 사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2.46	2	18	〃	27,346.14	27,346.14		16	5,334.39	6,332.46	2	
	열대동물사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18-1	〃	(1,007.00)	(1,007.00)	R.C	(1)	(565.15)	(998.15)		
	물 새 장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18-2	〃	(1,229.00)	(1,229.00)	조적	(1)	(468.67)	(468.67)		
	어린이동물원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18-3	〃	(2,373.67)	(2,373.67)		(3)	(226.20)	(226.20)		
	대동물관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18-4	〃	(4,247.35)	(4,247.35)	R.C	(1)	(1,082.14)	(1,162.26)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원숭이동산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18-5	〃	(1,552.02)	(1,552.02)	〃	(1)	(507.79)	(507.79)		
	소맹수사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18-6	〃	(357.13)	(357.13)	〃	(1)	(126.79)	(126.79)		
	맹 금 사	18-7	〃	(184.75)	(184.75)	〃		-	-	(1)	18-7	〃	(184.75)	(184.75)	〃		-	-	(1)	
	초식수 사파리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18-8	〃	(60.00)	(60.00)	조적	(1)	(60.00)	(60.00)		
	사슴전시장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18-9	〃	(375.72)	(375.72)	〃	(3)	(81.00)	(81.00)		
	수서동물사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18-10	〃	(1,129.31)	(1,129.31)	R.C	(1)	(355.89)	(483.19)		
	초식전시장	18-11	〃	(1,500.00)	(1,500.00)						18-11	〃	(1,500.00)	(1,500.00)						
	공연장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18-12	〃	(3,170.10)	(3,170.10)	SRC	(1)	(1,501.36)	(2,122.41)		
	동물병원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18-13	〃	(656.50)	(656.50)	조적	(1)	(263.40)	(263.40)		
	기타(관람통로)	18-14	〃	(9,407.59)	(9,407.59)					(1)	18-14	〃	(9,407.59)	(9,407.59)					(1)	
	낙타사육장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18-15	〃	(96.00)	(96.00)	조적	(1)	(96.00)	(96.00)		
	시민안전체험관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19	〃	1,795.20	1,795.20	R.C	1	1,795.20	5,441.00	1	
	인형전시장	20	〃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20	〃	365.00	365.00	R.C	1	365.00	365.00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숲속체험장	21	능동 18	707.08	707.08						21	능동 18	707.08	707.08						
	숲속체험시설	22	〃	1,063.69	1,063.69						22	〃	1,063.69	1,063.69						
	전시장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23	〃	4,320.00	4,320.00	R.C	1	1,461.93	3,346.79		
	유강원	24	〃	424.56	424.56						24	〃	424.56	424.56						
	어린이교통체험관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35	〃	3,000.00	3,000.00	R.C	1	450.00	450.00	1	
	서울키즈센터	36	〃	6,600.00	6,600.00	RC+철골	1	3,367.18	19,543.44		36	〃	6,600.00	6,600.00	RC+철골	1	3,367.18	19,543.44		
	아리수홍보관	37	〃	3,350.77	3,350.77	RC+철골	1	679.10	887.50		37	〃	3,350.77	3,350.77	RC+철골	1	679.10	887.50		
	소 계	소계		703.00	703.00					22	소계		703.00	703.00					22	
	동 상	㉔	능동18	580.00	580.00					13	㉔	능동18	580.00	580.00					13	
	기 념 비	㉕	〃	123.00	123.00					9	㉕	〃	123.00	123.00					9	
편의시설	계	계		23,480.39	23,480.39		15	3,287.82	5,005.19	26	계		23,450.12	23,450.12		15	3,287.82	5,005.19	25	감 30.27㎡
	소 계	소계		23,407.59	23,407.59		15	3,287.82	5,005.19	20	소계		23,407.59	23,407.59		15	3,287.82	5,005.19	20	
	판매시설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25	능동 18	1,955.37	1,955.37		3	940.03	940.03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 까페테리아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25-1	〃	(818.85)	(818.85)	R.C	(1)	(383.89)	(383.89)		
	- 흙내음까페테리아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25-2	〃	(640.34)	(640.34)	R.C	(1)	(340.14)	(340.14)		
	- 복합판매시설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25-3	〃	(496.18)	(496.18)	R.C	(1)	(216.00)	(216.00)		
	안내센터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26	〃	717.70	717.70	R.C	1	636.50	636.50		
	화 장 실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27	〃	1,688.34	1,688.34		10	907.87	965.41		
	- 화장실 1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27-1	〃	(95.12)	(95.12)	R.C	(1)	(95.12)	(95.12)		
	- 화장실 2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27-2	〃	(34.71)	(34.71)	조적	(1)	(34.71)	(34.71)		
	- 화장실 3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27-3	〃	(94.02)	(94.02)	R.C	(1)	(94.02)	(94.02)		
	- 화장실 4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27-4	〃	(69.30)	(69.30)	R.C	(1)	(69.30)	(69.30)		
	- 화장실 5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27-5	〃	(70.71)	(70.71)	R.C	(1)	(70.71)	(70.71)		
	- 화장실 6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27-6	〃	(65.86)	(65.86)	R.C	(1)	(65.86)	(65.86)		
	- 화장실 7	27-7	〃	(145.50)	(145.50)	R.C	(1)	(90.76)	(156.16)		27-7	〃	(145.50)	(145.50)	R.C	(1)	(90.76)	(156.1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 화장실 8	27-8	능동 18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27-8	능동 18	(49.59)	(49.59)	조적	(1)	(49.59)	(49.59)		
	- 복합화장실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27-9	〃	(526.63)	(526.63)	R.C	(1)	(188.58)	(188.58)		
	- 코끼리화장실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27-10	〃	(536.90)	(536.90)	R.C	(1)	(149.22)	(141.36)		
	- 구의문주차장화장실	27-11	〃	159.12	159.12	R.C	(1)	159.12	159.12		27-11	〃	159.12	159.12	R.C	(1)	159.12	159.12		
	팔각당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28	〃	644.30	644.30	R.C	1	644.30	2,304.13		
	주차장	29	〃	18,242.76	18,242.76					4	29	〃	18,242.76	18,242.76					4	
	- 정문	29-1	〃	(5,159.00)	(5,159.00)					(2)	29-1	〃	(5,159.00)	(5,159.00)					(2)	
	- 후문	29-2	〃	(7,155.00)	(7,155.00)					(1)	29-2	〃	(7,155.00)	(7,155.00)					(1)	
	- 구의문	29-3	〃	(5,928.76)	(5,928.76)					(1)	29-3	〃	(5,928.76)	(5,928.76)					(1)	
	간이판매시설(정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간이판매시설(후문)		〃	(31.36)	(31.36)					8		〃	(31.36)	(31.36)					8	
	공작물	소계		72.80	72.80					6	소계		42.53	42.53					5	감 30.27㎡
	음수대	㉮	〃	72.80	72.80					6	㉮	〃	42.53	42.53					5	감 30.27㎡
	공중전화	㉯	〃	(9.70)	(9.70)					(1)	㉯	〃	(9.70)	(9.70)					(1)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의 자	㉙	〃	(1,952.00)	(1,952.00)					(1)	㉙	〃	(1,952.00)	(1,952.00)					(1)	
	휴지통	㉛	〃	(300.00)	(300.00)					(1)	㉛	〃	(300.00)	(300.00)					(1)	
관리시설	계	계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계		1,847.28	1,847.28		7	1,536.68	1,752.68	606	
		소계		1,672.68	1,672.68		7	1,456.68	1,672.68		소계		1,672.68	1,672.68		7	1,456.68	1,672.68		
	정 문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30	능동18	432.00	432.00	R.C	1	216.00	432.00		
	후 문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31	〃	31.92	31.92	R.C	1	31.92	31.92		
	구의문	32	〃																	
	특고압 변전실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33	〃	396.00	396.00	R.C	1	396.00	396.00		
	영선반창고	34	〃	420.00	420.00	경량철골	1	420.00	420.00		34	〃	420.00	420.00	경량철골	1	420.00	420.00		
	수목관리실	38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38	〃	320.67	320.67	조적	1	320.67	320.67		
	수처리시설	39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39	〃	59.13	59.13	조적	1	59.13	59.13		
	공원초소(능동문)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49	〃	12.96	12.96	R.C	1	12.96	12.96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공작물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소계		174.60	174.60			80.00	80.00	606	
	울타리 담장		능동 18							1		능동 18							1	
	안내판		〃							140		〃							140	
	가로등		〃							460		〃							460	
	고압변전실	㉛	〃	94.60	94.60					4	㉛	〃	94.60	94.60					4	
	음악분수제어실	㉞	〃	80.00	80.00			80.00	80.00	1	㉞	〃	80.00	80.00			80.00	80.00	1	
녹지및기타	계			322,365.79									321,695.71							감 670.08㎡
	잔디밭	마	능동18	50,836.45							마	능동18	50,836.45							
	녹지대	바	〃	79,225.71							바	〃	78,555.63							감 670.08㎡
	수림대	사	〃	192,303.63							사	〃	192,303.63							
그밖의시설	동물놀이터	동	능동18	747.00	747.00						동	능동18	747.00	747.00						

4. 도로조서(어린이대공원지구)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9,263.51	49,164.08				감 351.83㎡
변경					9,429.26	48,812.25				
당초	대로	소 계			393.00	10,024.76				
당초		3	1	25~61	271.00	5,882.17	후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후문	
당초		3	2	24~50	122.00	4,142.59	정문진입로	정 문	빛의광장	
당초	소로	소 계			5,085.37	29,769.62				감 630.10㎡
변경					4,981.35	29,139.52				
당초		2	1	8	443.20	3,545.60	중앙로	빛의광장	팔각당	
당초		3	1	6	684.80	4,458.00	놀이마당,외곽순환	빛의광장	판타지플라자	
당초		3	2	6	916.10	5,523.93	생태연못,순환	정문진입로	판타지플라자	
당초		3	3	4	633.00	2,532.00	숲속체험장순환	축구장	동물원	
당초		3	4	6	74.00	444.00	대동물관	팔각당	대동물관 동쪽	
당초		3	5	5	138.02	690.10	동물원,까페테리아	어린이동물원	동물공연장	
당초		3	6	6	474.00	2,844.0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감 630.10㎡
변경		3	6	6	474.00	2,213.90	식물원, 동물원	전시장	팔각당	
당초		3	7	6	75.00	450.00	능동문 진입로	주차장	놀이마당	
당초		3	8	5	240.00	1,200.00	구의문 진입로	구의문	사슴전시장	
당초		3	9	5	232.00	1,160.00	동물공연장	광나루길	동물공연장	
당초		2	3	10	125.00	1,250.00	전시장	전시장	전시장	
당초		3	10	5	93.00	472.51	수목관리실	구의문	수목관리실	
당초		3	11	5	232.00	1,160.00	관리동선	후문주차장	후문진입로	
당초		3	12	4	123.02	453.41	육각정	식물원	낙타사육장	
당초		3	13	4	57.00	228.00	까페테리아	식물원	까페테리아	
당초		3	14	4	143.00	572.00	놀이마당	중앙로	생태숲	
당초		3	15	4	45.00	180.00	영선반창고	중앙로	영선반창고	
당초		3	16	6	57.25	343.50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7	4	26.60	106.40	야외음악당	김동인동상	김동인동상	
당초		4	18	4	36.80	147.20	야외음악당	분수놀이마당	김동인동상	
당초		4	27	6~10	236.58	2,008.97	후문진입로	후문	아차산역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소 계			3,785.14	9,369.70				증 278.27㎡
변경					4,054.91	9,647.97				
당초		4	1	3	150.00	450.00	산책로	중앙로	솟대원	
당초		4	2	2.3	140.70	323.61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3	1.5~3	305.01	983.53	산책로	전시장	팔각당	
당초		4	4	3	214.00	642.00	산책로	솟대원	어린이동물원	감 159.00㎡
변경		4	4	3	161.00	483.00	산책로	솟대원	어린이동물원	
당초		4	5	3	150.00	450.00	산책로	화장실	조만식동상	
당초		4	6	3	120.00	360.00	산책로	흙내음까페테리아	조만식동상	
당초		4	7	3	124.02	372.06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8	3	75.03	225.09	산책로	놀이마당	중앙로	
당초		4	9	3	87.00	261.00	산책로	놀이마당	놀이마당	
당초		4	10	3	54.00	162.00	산책로	분수놀이마당	생태계류	
당초		4	11	2.3	68.20	156.86	산책로	후문진입로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12	2	70.91	141.82	산책로	전시장	야외공연장	
당초		4	13	2	65.69	96.08	산책로	육각정	녹지	
당초		4	14	2	42.00	84.00	산책로	야외공연장	생태연못	
당초		4	15	2	28.20	56.40	산책로	부지외곽	외곽순환로	
당초		4	16	2	22.30	44.60	산책로	부지외곽	숲속체험장순환로	
당초		4	17	1.8	168.07	302.53	산책로		외곽순환로	
당초		4	18	1.8	44.99	80.98	산책로	생태숲산책로	생태숲산책로	
당초	산책로	4	19	1.8	24.24	43.63	산책로	부지외곽	생태숲산책로	
당초		4	20	1.5	95.30	142.95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0	1.5	28.83	43.25	산책로	산책로	아리수홍보관	
당초		4	21	1~2	392.00	427.48	산책로	구의문	동물병원	
당초		4	22	1	50.80	50.8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당초		4	23	4	96.40	385.60	산책로	김동인동상	야외공연장	
당초		4	24	4	71.30	285.20	산책로	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당초		4	25	2	49.15	98.30	산책로	환경연못	육각정	
당초		4	26	1.5~3	357.00	848.50	산책로	조만식동상	수목관리실	
당초		4	28	3~4.5	233.00	931.91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당초		4	29	1.5~3	296.00	919.52	산책로	후문	아차산역	
변경		4	30	1.5	27.90	41.85	산책로	동물원진입로	식물원전면광장	증 41.85㎡
변경		4	31	1.5	45.00	67.50	산책로	식물원전면광장	식물원입구	증 67.50㎡
변경		4	32	2.4	6.60	15.84	산책로	동물원진입로	휴게쉼터-6	증 15.84㎡
변경		4	33	1.5	23.15	34.73	산책로	동물원진입로	휴게쉼터-5	증 34.73㎡
변경		4	34	1.5	66.00	99.00	산책로	휴게쉼터-5	식물원후면광장	증 99.00㎡
변경		4	35	2.8	21.45	60.05	산책로	식물원후면광장	식물원입구	증 60.05㎡
변경		4	36	1.2~1.8	60.65	89.80	산책로	동물원진입로	산책로	증 89.80㎡
변경		4	37	1.2	6.60	7.94	산책로	식물원후면광장	산책로	증 7.94㎡
변경		4	38	1.2	3.00	3.60	산책로	산책로	산책로	증 3.60㎡
변경		4	39	1.8	9.42	16.96	산책로	동물원진입로	산책로	증 16.96㎡

5. 조성계획 총괄표 (어린이회관지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 면 적 (㎡)		
계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24,463.5	9,593.64	12	1,599.67	3,023.63	4	
기반시설	1,596.53	1,596.53					1,596.53	1,596.53					
조경시설	63.90	63.90					63.90	63.90					
휴양시설	14.20	14.20					14.20	14.20					
운동시설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교양시설	504.62	504.62	4	504.62	504.62	1	504.62	504.62	4	504.62	504.62	1	
녹지.기타	14,869.86						14,869.86						

6. 시설조서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시설	계			1,596.53	1,596.53								1,596.53	1,596.53						
	도 로	가	능동18	1,450.74	1,450.74						가	능동18	1,450.74	1,450.74						
	산책로	나	〃	145.79	145.79						나	〃	145.79	145.79						
조경시설	계	계		63.90	63.90						계		63.90	63.90						
	벽 천	소계	능동18	63.90	63.90						소계	능동18	63.90	63.90						
휴양시설	계	계		14.20	14.20						계		14.20	14.20						
	가로휴게공간	소계	능동18	14.20	14.20						소계	능동18	14.20	14.20						
운동시설	계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계		7,414.39	7,414.39		8	1,095.05	2,519.01	3	
	(건 축 물)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소계	능동18	1,095.05	1,095.05		8	1,095.05	2,519.01		
	탈 의 실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1	〃	705.96	705.96	RC	1	705.96	1,330.09		
	관 리 실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2	〃	73.06	73.06	조적	1	73.06	872.89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매점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3	〃	82.31	82.31	목조	1	82.31	82.31		
	매점2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4	〃	26.78	26.78	목조	1	26.78	26.78		
	매점3	5	〃	42.64	42.64	파이프조	1	42.64	42.64		5	〃	42.64	42.64	파이프조	1	42.64	42.64		
	식당	6	〃	132.89	132.89	파이프조	1	132.89	132.89		6	〃	132.89	132.89	파이프조	1	132.89	132.89		
	화장실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7	〃	21.49	21.49	목조	1	21.49	21.49		
	창고	8	〃	9.92	9.92	목조	1	9.92	9.92		8	〃	9.92	9.92	목조	1	9.92	9.92		
	(공작물)	소계		6,319.34	6,319.34					3	소계		6,319.34	6,319.34					3	
	수영장1	①	〃	3,421.04	3,421.04	-	-	-	-		①	〃	3,421.04	3,421.04	-	-	-	-		
	수영장2	②	〃	798.3	798.3	-	-	-	-		②	〃	798.3	798.3	-	-	-	-		
	슬라이딩	③	〃	-	-	FRP	-	-	-	1	③	〃	-	-	FRP	-	-	-	1	
	휴게소	④	〃	100.0	100.0	조립	-	-	-	1	④	〃	100.0	100.0	조립	-	-	-	1	
	후문	⑤	〃	-	-	철제	-	-	-	1	⑤	〃	-	-	철제	-	-	-	1	
	썰매보드장	⑦	〃	2,000.0	2,000.0	-	-	-	-		⑦	〃	2,000.0	2,000.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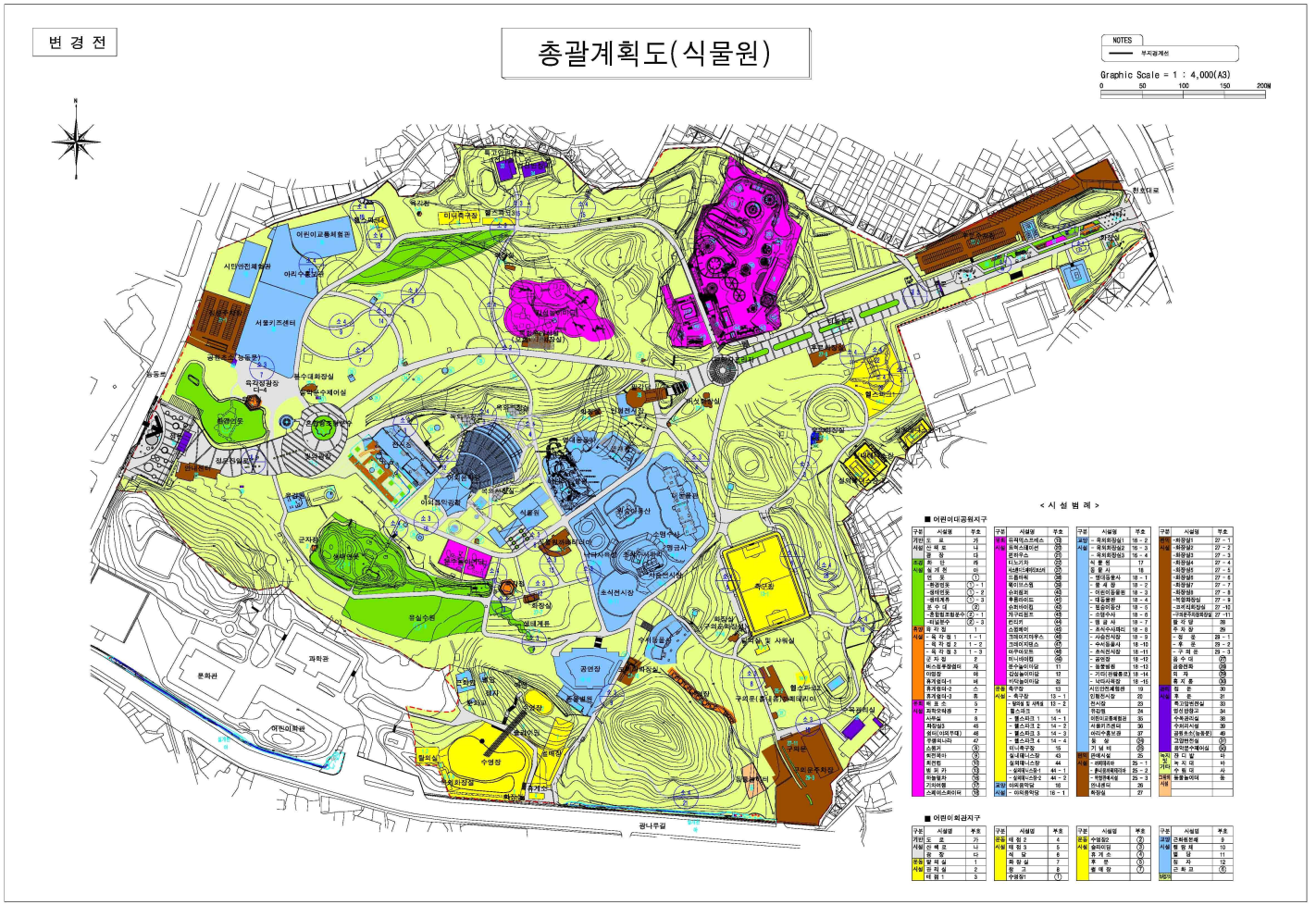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육시설	계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계		504.62	504.62		4	504.62	504.62	1	
	(건축물)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소계	능동18	504.62	504.62		4	504.62	504.62		
	근화원본채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9	〃	247.21	247.21	RC	1	247.21	247.21		
	행랑채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10	〃	169.95	169.95	RC	1	169.95	169.95		
	별당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11	〃	71.46	71.46	목조	1	71.46	71.46		
	정자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12	〃	16.0	16.0	목조	1	16.0	16.0		
	(공작물)	소계								1	소계								1	
	근화교	⑥	〃	-	-	R.C	-	-	-	1	⑥	〃	-	-	R.C	-	-	-	1	
녹지 및 기타			능동18	14,869.86								능동18	14,86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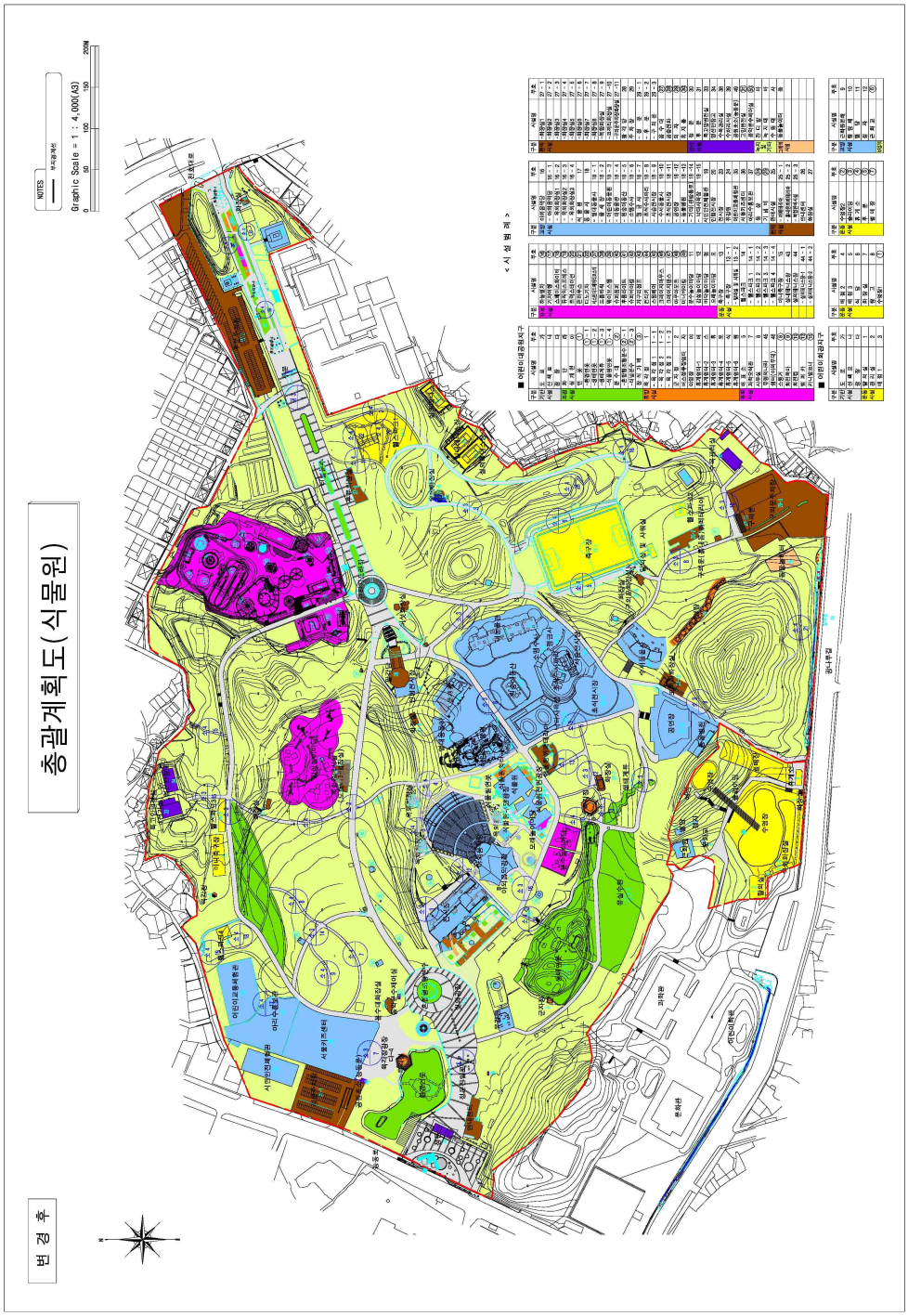
7. 도로조서(어린이회관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79.41	1,596.53				
변경					279.41	1,596.53				
당초	소로	소계			242.96	1,450.74				
변경					242.96	1,450.74				
당초		3	가	6	242.96	1,450.74	어린이회관, 수영장,내부도로	어린이회관	수영장 후문	
당초	산책로	소계			36.45	145.79				
변경					36.45	145.79				
당초		3	나	4	36.45	145.79	수영장 내부 도로	수영장 1	수영장 2	

변 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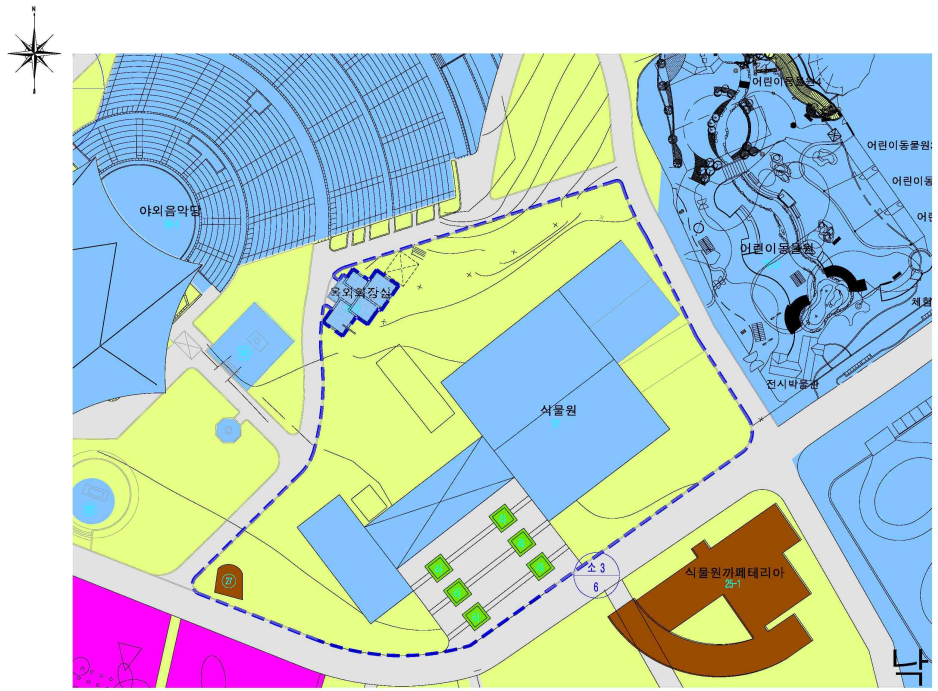
총괄계획도(식물원)




총괄계획도(식물원)
변 경 후
WMTS
Graphic Scale = 1 : 4,000(A3)
< 시 설 범 례 >

번 경 전

세부계획도(식물원)



NOTES
부지경계선

Graphic Scale = 1 : 600(A3)
0 10 25

< 시 설 범 례 >

■ 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부호
기반시설	도 로	가
	주 차 장	다
	광 장	라
교통시설	버 스 정	마
	지 하 철 역	바
공원녹지시설	어 린 이 공 원	①
	-하천인접	① - 1
	-생태인접	① - 2
	-생태계우수	① - 3
	묘 수 목	②
	-혼합림최적분포	② - 1
	-리넬분수	② - 3
	녹 지 대	1
	- 녹 지 대 1	1 - 1
	- 녹 지 대 2	1 - 2
	- 녹 지 대 3	1 - 3
	근 린 공 원	2
	어린놀이광장터	자
	야외광장	아
	휴게음식-1	차
	휴게음식-2	스
	휴게음식-3	축
문화체육시설	체 포 츠	5
	과학전시관	7
	자연실	8
	화장실	45
	동식물전시관	46
	유원지내	47
	스탠드	5
	체전목마	5
	목마집	10
	범 퍼 카	13
	바닐로마	15
	회전관람차	16
	기타유원	17
	스페이스체어	18

■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설명	부호
기반시설	도 로	가
	주 차 장	다
문화체육시설	체 험 실	1
	관 리 실	2
	체 험 1	3
	체 험 2	4
	체 험 3	5
	식 당	6
	체 험 실	7
	참 고	8
	수영장1	①

구분	시설명	부호
공원녹지시설	어린이회관	⑨
	컴퓨터체험관	⑩
	천체관	⑪
	어린이극장	⑫
	어린이도서관	⑬
	어린이박물관	⑭
	어린이과학관	⑮
	어린이미술관	⑯
	어린이문화원	⑰
	어린이교통공원	⑱
	어린이회관	⑲
	어린이야외극장	⑳
	옥외휴게실	㉑
	옥외음악당	㉒
	옥외전시장	㉓
	옥외무대	㉔
	야구장	㉕
	미니야구장	㉖
	축구장	13
문화체육시설	육상장	13 - 1
	- 철제장 및 시멘장	13 - 2
	테니스장	14
	- 테니스장 1	14 - 1
	- 테니스장 2	14 - 2
	- 테니스장 3	14 - 3
	- 테니스장 4	14 - 4
	미니축구장	15
	실내테니스장	43
	실외테니스장	44
	- 실외테니스장-1	44 - 1
	- 실외테니스장-2	44 - 2
공원녹지시설	어린이동물원	18
	- 어린이학당	18 - 1

구분	시설명	부호
문화체육시설	- 육상경기장1	18 - 2
	- 육상경기장2	18 - 3
	- 육상경기장3	18 - 4
	식 물 원	17
	동 물 사	18
	- 맹금동물사	18 - 1
	- 중 세 장	18 - 2
	- 어린이동물원	18 - 3
	- 대동물관	18 - 4
	- 원숭이동산	18 - 5
	- 조류수사	18 - 6
	- 맹 금 사	18 - 7
	- 조사수사파리	18 - 8
	- 사슴전시장	18 - 9
	- 수서동물사	18 -10
	- 조사전시장	19 -11
	- 공원장	19 -12
	- 동물병원	19 -13
	- 기타(관람통로)	19 -14
	- 딘더사육장	19 -15
	시민안전체험관	19
	전통문사당	20
	전시장	23
	유갑로	24
	어린이교통체험관	35
	서울키즈랜드	36
	디자이너빌딩관	37
	정 상	38
	고 보 비	39
환경시설	환경시설	25
자동차시설	- 주제광마	25 - 1
	- 혼초레에듀마	25 - 2
	- 체험에너	25 - 3
교정시설	인터네마	26
	학창실	27

구분	시설명	부호
공원녹지시설	- 화장실1	27 - 1
	- 화장실2	27 - 2
	- 화장실3	27 - 3
	- 화장실4	27 - 4
	- 화장실5	27 - 5
	- 화장실6	27 - 6
	- 화장실7	27 - 7
	- 화장실8	27 - 8
	- 복합휴양실	27 - 9
	- 크라다피정실	27 -10
	- 구정공무원연수원	27 -11
	탈 각 장	28
	주 차 장	29
	- 장 문	29 - 1
	- 주 문	29 - 2
	- 구 역 문	29 - 3
	물 주 대	30
	급정주차	30
	의 자	30
	휴 지 통	30
	장 호	30
	휴 문	31
	특구입변전실	33
	방산변압고	34
	수목관리실	36
	수목재식실	39
	공원조경놀이터	49
	고압변전실	51
	원자문주택어실	52
녹지 및 기타	잔 디 밭	마
	녹 지 대	바
	수 림 대	사
그밖의 시설	음물놀이터	동

번 경 후

세부계획도(식물원)

NOTES
부지경계선

Graphic Scale = 1 : 700(A3)
0 10 25



< 시 설 범 례 >

■ 어린이대공원지구

구분	시설명	부호
지역도 표		20
시설 산 책 로		나
원 장		다
휴게시설	쉼 의 정	라
정 자		①
- 환경연못		① - 1
- 생태연못		① - 2
- 생태계류		① - 3
- 식물원전못		① - 4
분 수 대		②
- 종합통과문분수		② - 1
- 다물분수		② - 3
장 식 가 벽		③
조형물 작 품		1
시설 - 목 각 장 1		1 - 1
- 목 각 장 2		1 - 2
- 목 각 장 3		1 - 3
군 자 정		2
어스정류장테이		4i
이정표		6i
휴게쉼터-1		4i
휴게쉼터-2		소-
휴게쉼터-3		휴
모표시석비		5
식물학습터-1		4i
식물학습터-2		6
태 표 소		5
안내시설 시	설 물	7
사무실		8
주정차나무대		4i
쓰레기통		④
자전거주		⑤
화 장 실		⑥
탈 의 실		⑦
매 점		⑧
카 누 장		⑨

구분	시설명	부호
휴게시설	테 눌 의 자	⑩
	기 자 이 통	⑪
	스피어스프라이리	⑫
	하 적 지 스프레스	⑬
	트랙스웨이브	⑭
	한 속 우 스	⑮
	디노그자	⑯
	스 트 리 이 미 지 스 이	⑰
	드 롭 이 덕	⑱
	워 터 프 스 텝	⑲
	아 치 브 레	⑳
	후 프 라 이 드	㉑
	아 크 리 이 트	㉒
	사 구 리 절 조	㉓
	컨 디 키	㉔
	스 톤 헨 지	㉕
	크 레 이 지 아 주 스	㉖
	크 레 이 지 보 스	㉗
	미 주 비 보 트	㉘
	미 니 어 터 틀	㉙
	분 수 놀 이 마 당	11
	유 놀 이 마 당	12
	다 람 놀 이 마 당	참
	모 래 놀 이 마 당	모
운동시설	축구장	13
	- 잔디 및 배수	13 - 1
	필스축구	14
	- 필스축구 1	14 - 1
	- 필스축구 2	14 - 2
	- 필스축구 3	14 - 3
	- 필스축구 4	14 - 4
	미니축구장	15
	실내테니스장	43
	실외테니스장	44
	- 실외테니스장 1	44 - 1
	- 실외테니스장 2	44 - 2

구분	시설명	부호
편익시설	야외음악당	16
시설	- 이의음악당	16 - 1
	- 목재화장실1	16 - 2
	- 목재화장실2	16 - 3
	- 목재화장실3	16 - 4
자 동 판	매	17
동 물 사	육	18
- 멸종동물사		18 - 1
- 물 새 장		18 - 2
- 어린이동물원		18 - 3
- 대동물원		18 - 4
- 동유어동산		18 - 5
- 소양우사		18 - 6
- 맹 금 사		18 - 7
- 초식수사대림		18 - 8
- 서울전시장		18 - 9
- 수사동물사		18 -10
- 초식전시장		18 -11
- 곰연장		18 -12
- 동물병원		18 -13
- 기타(관람휴고		18 -14
- 낙타사육장		18 -15
시각인전체험관		19
안정전시장		20
전시장		23
관람정		24
서한미고충체험관		25
서울키즈랜드		26
어린이호보장		27
동 상		28
기 념 비		29
전체시설		31
시설 - 체육관어		28 - 1
- 롤러스케이트장		28 - 2
- 축구연습장		28 - 3
- 인라인하		28
화장실		27

구분	시설명	부호
편익시설	- 화장실1	27 - 1
시설	- 화장실2	27 - 2
	- 화장실3	27 - 3
	- 화장실4	27 - 4
	- 화장실5	27 - 5
	- 화장실6	27 - 6
	- 화장실7	27 - 7
	- 화장실8	27 - 8
	- 화합복장실	27 - 9
	- 장미의복장실	27 -10
	- 구청주차화장실	27 -11
물 고 실		28
주 차 장		29
- 정 문		29 - 1
- 후 문		29 - 2
- 구 의 문		29 - 3
종 주 지		27
광	장	28
지 자		28
휴 지 통		29
광	판	30
게 시 대	판	31
특고압선전실		33
장식탑입간		34
수목표시실		38
수목드시실		39
관목초(노)등원		49
고압변전실		23
동식물문화체실		39
편익 원 내	등	6i
시설 주 차 대		16
기타 수 정 대		4i
그림이 동물놀이터		9i
시설		

■ 어린이회관지구

구분	시설명	부호
지역도 표		21
시설 산 책 로		나
정 원		다
휴게시설	쉼 의 정	1
자 전 거		2
매 점		3

구분	시설명	부호
편익시설	테 눌 의 자	4
시설	테 눌 의 자	5
	식 당	6
	체 험 실	7
	참 고	8
	수영장1	①

구분	시설명	부호
편익시설	수영장2	②
	실 외 의 자	③
	휴 게 소	④
	휴 문	⑤
	물 레 장	⑦

구분	시설명	부호
지역도 표		6
시설 산 책 로		19
쉼 의 정		11
정 자		12
근 처 코		⑤
녹화재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81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최*선 포함 11명
○ 서류의 송달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동 ****호(청라동, 중흥에스 클래스) 외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5년 4월 9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5년 6월 5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공시송달[2025년 5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20-140003-202202-2-575-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최*선	2025.04.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동 ****호(청라동, 중흥에스클래스)	폐문부재	2025.05.22.	47,562,120
2	620-106001-202106-1-575-000557	자동차세 자동차	최*선	2025.04.0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131, ***동 ****호(청라동, 중흥에스클래스)	폐문부재	2025.05.22.	61,250
3	200-140003-202401-2-540-100001	법인지방소득세	조*훈	2025.04.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25번길 12, ***호(선능리, 늘봄빌)	폐문부재	2025.05.22.	1,527,730
4	200-140003-202401-2-540-500001	법인지방소득세	조*훈	2025.04.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25번길 12, ***호(선능리, 늘봄빌)	폐문부재	2025.05.22.	167,210,450
5	200-140003-202401-2-540-500006	법인지방소득세	조*훈	2025.04.15.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425번길 12, ***호(선능리, 늘봄빌)	폐문부재	2025.05.22.	43,956,990
6	545-140003-202404-2-510-500005	법인지방소득세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52,721,270
7	545-140003-202404-2-510-500006	법인지방소득세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42,214,470
8	545-140003-202404-2-510-500007	법인지방소득세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32,971,560
9	545-140003-202404-2-510-500012	법인지방소득세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35,410,620
10	545-140004-202409-2-510-100391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45,969,870
11	545-140004-202409-2-510-100392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76,729,670
12	545-140004-202409-2-510-10039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67,969,600
13	545-140004-202409-2-510-100394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철	2025.04.15.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 1966, ***동 ***호(장신리, 신한혜센아파트)	수취인부재	2025.05.22.	57,378,180
14	440-140003-202406-2-590-100007	법인지방소득세	유*진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8길 18-6, ***호(창동)	수취인 불명	2025.05.22.	2,015,854,940
15	260-140003-202406-2-655-100009	법인지방소득세	권*현	2025.04.17.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77길 34, ***호(도봉동)	폐문부재	2025.05.22.	150,772,260
16	680-140003-202311-2-565-500009	법인지방소득세	김*인	2025.0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39-*(자양동)	수취인불명	2025.05.22.	2,553,540
17	680-106001-202312-1-630-001921	자동차세 자동차	김*인	2025.0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39-*(자양동)	수취인불명	2025.05.22.	234,18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8	680-140003-202310-2-565-100020	법인지방소득세	김*인	2025.04.2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0길 39-*(자양동)	수취인불명	2025.05.22.	14,776,110
19	680-140003-202407-2-521-500006	법인지방소득세	신*현	2025.05.09.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동 ****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17,400,150
20	680-140003-202407-2-521-500007	법인지방소득세	신*현	2025.05.09.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동 ****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12,934,400
21	680-140004-202405-2-531-10011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현	2025.05.09.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동 ****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38,030
22	680-140004-202406-2-531-10023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현	2025.05.09.	광주광역시 북구 서강로54번길 50, ***동 ****호 (운암동, 벽산블루밍메가씨티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843,360
23	560-140003-202406-2-540-100286	법인지방소득세	강*희	2025.05.0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16,471,380
24	560-140003-202407-2-540-100024	법인지방소득세	강*희	2025.05.09.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	폐문부재	2025.05.22.	16,245,450
25	545-104102-202410-2-610-000630	주민세(사업소분)	김*근	2025.05.0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호 (당하동)	폐문부재	2025.05.22.	64,370
26	545-106001-202404-2-610-200038	자동차세 자동차	김*근	2025.05.0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호 (당하동)	폐문부재	2025.05.22.	38,790
27	545-140003-202406-2-610-100007	법인지방소득세	김*근	2025.05.0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호 (당하동)	폐문부재	2025.05.22.	14,941,470
28	545-140004-202410-2-610-100117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근	2025.05.0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호 (당하동)	폐문부재	2025.05.22.	1,130,030
29	545-140004-202404-2-610-100125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김*근	2025.05.09.	인천광역시 서구 푸르내2길 4, ***호 (당하동)	폐문부재	2025.05.22.	4,066,710
30	170-104102-202410-2-685-000391	주민세(사업소분)	유*지	2025.05.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동 ***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폐문부재	2025.05.22.	32,190
31	170-140003-202306-2-685-100087	법인지방소득세	유*지	2025.05.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동 ***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폐문부재	2025.05.22.	5,615,250
32	170-140003-202406-2-685-100006	법인지방소득세	유*지	2025.05.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동 ***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폐문부재	2025.05.22.	10,476,630
33	170-140004-202410-2-685-10006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유*지	2025.05.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동 ***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폐문부재	2025.05.22.	3,184,650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34	170-140004-202404-2-685-10004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유*지	2025.05.09.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50, ***동 ***호 (옥수동, 옥수파크힐스)	폐문부재	2025.05.22.	2,099,430
35	170-104102-202410-2-685-000391	주민세(사업소분)	배*웅	2025.05.09.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5-* (삼신리)	폐문부재	2025.05.22.	32,180
36	170-140003-202306-2-685-100087	법인지방소득세	배*웅	2025.05.09.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5-* (삼신리)	폐문부재	2025.05.22.	5,615,230
37	170-140003-202406-2-685-100006	법인지방소득세	배*웅	2025.05.09.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5-* (삼신리)	폐문부재	2025.05.22.	10,476,620
38	170-140004-202410-2-685-100063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배*웅	2025.05.09.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5-* (삼신리)	폐문부재	2025.05.22.	2,099,410
39	170-140004-202404-2-685-100046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배*웅	2025.05.09.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학평길 65-* (삼신리)	폐문부재	2025.05.22.	3,184,64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82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지*수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26-**, 1층 (매탄동)
○ 서류의 명칭: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서류의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32조(독촉과 최고)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
※ 상세 내역은 첨부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02-2133-34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서류를 2025년 5월 9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납부기한을 2025년 6월 5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고 1.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건을 공고하거나 여러 명에 대하여 공고할 경우에는 첨부서류로 작성하여 공고하여도 무방함
2. 서류가 납세고지서, 독촉장 등일 경우에는 부과 연월일, 주요세목, 총 세액 등을 기재할 것
3. 납부기한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된 납부기한 등을 함께 기재할 것
4. 기간의 계산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4일째 되는 날 24시까지임
5. 다음 각 목의 사항은 특수문자(*)로 변환하여 표기할 것. 이 경우 송달 대상자의 생년월일 등 추가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
가.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중 글자 1개(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의 글자가 4개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나. 서류의 송달지 중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건물번호 및 같은 법에 따른 상세주소
6. 송달 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유선을 통한 확인 방법을 안내할 것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 공시송달[2025년 5월]

연번	과세번호	세목명	성명/법인명	우편발송일자	주소(송달지)	공시송달사유	공시송달일자	세액(원)
1	680-140003-202305-2-640-500010	법인지방소득세	지*수	2025.05.0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산남로 26-**, 1층 (매탄동)	수취인불명	2025.05.22.	8,623,47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85호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미이수한 건설기술인에게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명 :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건설기술인 교육·훈련 미이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동법 제91조 제3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15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기간 : 2025. 6. 6. ~ 2025. 6. 19.
   나. 의견제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별첨 서식), 의견제출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의견제출처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4층 기술심사담당관 (☎02-2133-8554, E-mail : kys82@seoul.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전자메일(kys82@seoul.go.kr)

6. 과태료 자진 납부 :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 : 2025. 6. 19.
   나. 납부방법
   - 고지서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고지서(가상계좌)를 발부받아 은행(인터넷뱅킹 포함),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등으로 납부
   - 인터넷 : https://etax.seoul.go.kr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가능)

7.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사전통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전통지서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에서 100분의 20이 감경된 금액입니다.

다.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기술심사담당관(☎02-2133-85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서 작성 서식 1부.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내역

순번	위반자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	반송내역		발송물 구분
	성명	주소			반송사유	반송일자	
1	김*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13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김*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3	이*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로**길 **	건설기술인 교육 이수기한 내 미이수(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위반)	200,000원 (자진납부금액)	폐문부재	2025-05-12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159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부재,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성○람 등 831명
4. 공고기간 : 2025. 5. 22. ~ 2025. 6. 5.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5. 5. 22. ~ 2025. 6. 5.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반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감경(50%)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4층 교통지도단속반 과태료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9 팩스번호 : 02-2133-4904
   ※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http://cartax.seoul.go.kr)에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의견제출 대상 및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1부.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	160허43**	성*람	서울특별시	2025-03-27 14:1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	187서52**	주*회*디*스*이	인천광역시	2025-03-22 17:06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	386거64**	(*)*니*처*	경기도 김포시	2025-03-27 18:06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	259누58**	박*경	서울특별시	2025-04-07 07:4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	126호22**	(*)*한*티*트	서울특별시	2025-03-31 08:24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	194하20**	양*용	경상남도 창원시	2025-03-31 11: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7	177하48**	(*)*트*타*즈	서울특별시	2025-04-03 09: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	92더59**	박*수	서울특별시	2025-04-08 07:2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9	105하62**	김*웅	경기도 평택시	2025-03-31 09:1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0	173누68**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5-04-07 16:2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1	104다24**	김*재	서울특별시	2025-04-07 17:1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12	153하71**	주*회*금*코*아	서울특별시	2025-04-01 17:47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13	360무94**	아*에*동*(*)	서울특별시	2025-04-02 19:0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	223호48**	주*회*코*프*지*어*	서울특별시	2025-04-04 09:26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5	120오30**	주*회*씨*치*퍼*	경기도 남양주시	2025-03-25 16:11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6	152허23**	주*회*피*스*글*벌	경기도 안양시	2025-03-31 15:18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17	43거70**	유*철	서울특별시	2025-04-08 18:1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8	260노83**	박*선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8 18:25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9	45오77**	주*회*케*지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7 17: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0	64너59**	조*환	경기도 김포시	2025-04-01 07:37	개화교	50000
21	155수73**	P*Z*R*O*O*E*H*I*C*N*	서울특별시	2025-04-07 09:3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2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	332누25**	김*미	경기도 화성시	2025-04-05 20:28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4	173누68**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5-04-07 16: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	145버38**	주*회*유*온*터*	인천광역시	2025-04-07 17:5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6	60너09**	최*수	인천광역시	2025-04-07 11: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7	53소07**	임*주	서울특별시	2025-04-07 19:54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8	67너46**	김*영	서울특별시	2025-04-07 13:53	연희IC~연세대교차로	50000
29	169호79**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4-07 20:45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0	706가99**	P*A*Y*N*Q*A*	서울특별시	2025-04-08 17:4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	331어71**	스*디*파*클*식*사	서울특별시	2025-04-08 20:0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2	65거94**	천*숙	서울특별시	2025-04-08 08:5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3	69소58**	김*자	서울특별시	2025-04-08 19:12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4	42더06**	성*정	경기도 양주시	2025-04-08 0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5	12두29**	박*록	경기도 하남시	2025-04-08 17:30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6	222호12**	(*)*브*	서울특별시	2025-04-04 08:5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7	52거70**	박*원	서울특별시	2025-04-07 19:2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	서울31자30**	이*철	서울특별시	2025-04-09 14:00	을지로2가교차로~삼일교	50000
39	156하92**	(*)*티*이*베*션	서울특별시	2025-03-24 08:4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0	59부65**	(*)*어*시*	서울특별시	2025-03-30 13:40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41	141무96**	(*)*이*시*	서울특별시	2025-03-20 09:44	신설동역~신설동역오거리	50000
42	302조51**	김*갑	광주광역시	2025-04-08 14:3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3	경기98아72**	신*동	경기도 시흥시	2025-04-08 17:5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44	07주18**	주*회*에*스*어	경기도 하남시	2025-03-25 18:5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45	316버69**	김*란	서울특별시	2025-04-07 08:52	태릉~서울여대	50000
46	199라30**	김*곤	서울특별시	2025-04-07 10:30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47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8	153가59**	양*아	경기도 용인시	2025-04-09 13:27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9	46가07**	최*희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17: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50	인천30바23**	유*영	인천광역시	2025-04-09 09:4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1	16다08**	L*M*N*G*N	서울특별시	2025-04-09 17:3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52	20나59**	유*길	인천광역시	2025-04-09 17:5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53	175하55**	(*)*일*트*	인천광역시	2025-04-10 10:09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4	245다16**	(*)*인*듀	서울특별시	2025-04-10 11:00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55	68무91**	주*회*에*지*국*발	울산광역시	2025-04-11 14:3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56	152하67**	차*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5-03-23 21:35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57	156호48**	(*)*앤*홀*스	서울특별시	2025-03-28 08:11	대치역~도곡역	50000
58	14조43**	이*제	서울특별시	2025-04-08 08:3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59	서울31사52**	이*규	서울특별시	2025-03-19 08:40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50000
60	116저61**	강*숙	경기도 김포시	2025-04-11 09:28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61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13 11:15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62	257거31**	(*)*씨*탈	경기도 화성시	2025-04-12 12:5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63	257거31**	(*)*씨*탈	경기도 화성시	2025-04-12 12:50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64	805오31**	황*기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1 09:1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5	329어22**	김*현	경기도 파주시	2025-04-07 09:4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6	292노99**	이*재	서울특별시	2025-04-08 09:1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7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08 09:44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68	63소28**	(*)*이*판*	서울특별시	2025-04-09 08:4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69	64오39**	정*일	경기도 수원시	2025-04-13 16:02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70	04호24**	진*호	경기도 의왕시	2025-03-25 20:1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71	152호42**	주*회*화*	서울특별시	2025-04-04 21:5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72	서울31자79**	임*택	서울특별시	2025-04-03 19:1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73	서울31사49**	김*성	경기도 고양시	2025-04-09 08:3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74	32루43**	김*숙	인천광역시	2025-04-10 18: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5	338모55**	윤*례	인천광역시	2025-04-10 18: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76	서울31사72**	서*연	서울특별시	2025-04-10 20:51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77	서울32사73**	장*식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0 20:40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78	258무86**	P*A*Y*N*T*A*	경기도 수원시	2025-04-11 18:0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79	92러03**	(*)*대	경기도 평택시	2025-04-11 23:1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80	387도55**	김*연	경기도 용인시	2025-04-14 09:41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1	185무56**	(*)*이*테*	경기도 안양시	2025-04-14 14: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82	60누78**	김*묵	서울특별시	2025-04-14 08:11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3	30우56**	주*회*베*스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1 18:2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84	167나14**	J*N*I*G	인천광역시	2025-04-14 18: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85	경기87바86**	최*철	경기도 고양시	2025-04-11 18: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6	81두32**	김*집	서울특별시	2025-04-11 20:0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87	69노40**	염*숙	경기도 하남시	2025-04-14 20:27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88	63우60**	이*수	경기도 구리시	2025-04-13 09: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89	229누82**	전*분	경기도 안양시	2025-04-10 22:27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90	801서18**	다*기*산*주*회*	광주광역시	2025-04-10 09:49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91	22더23**	(*)*원*앤*	서울특별시	2025-04-09 19:12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50000
92	258무86**	P*A*Y*N*T*A*	경기도 수원시	2025-04-11 18:05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93	74거87**	홍*순	서울특별시	2025-04-11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6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94	55노31**	백*철	경기도 광주시	2025-04-11 08:1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95	393수31**	H*N*U*N*R*	서울특별시	2025-04-11 15:09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96	서울32바75**	김*창	서울특별시	2025-04-11 08:20	태릉~서울여대	50000
97	212소99**	이*원	경기도 과천시	2025-04-10 11:29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98	149허1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26 16:5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99	220호53**	(*)*디*인*루*	경기도 부천시	2025-03-26 20:0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00	284주90**	(*)*자*	경기도 오산시	2025-03-27 19:0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01	01마22**	피*엑*커*니*이*즈*식*사	서울특별시	2025-04-14 11:32	한신상가앞	50000
102	02더73**	김*진	서울특별시	2025-04-11 16:3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03	서울85자68**	정*철	서울특별시	2025-04-14 15:2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104	47라70**	신*민	경기도 부천시	2025-04-13 18: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05	03서13**	이*숙	서울특별시	2025-04-14 09:4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6	81누85**	주*회*와*피*케*	충청남도 서천군	2025-04-14 11:3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0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13 17:4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108	69너37**	S*N*X*E*H*	서울특별시	2025-04-14 14:44	영등포역	50000
109	175노84**	이*원	서울특별시	2025-04-12 14:33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10	25거23**	L*T*U*G*G*I*	경상북도 청도군	2025-04-14 14:1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1	56너21**	박*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4 16:3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12	161어15**	주*회*대*에*앤*	경기도 고양시	2025-04-14 0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13	85나57**	정*견	서울특별시	2025-04-14 17:21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114	30버62**	최*실	경기도 과천시	2025-04-13 17:5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15	239거48**	L*J*N*I*G	서울특별시	2025-04-12 10:00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16	134무23**	강*희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4 19:32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17	227너60**	신*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2025-04-14 17:18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18	234우38**	강*순	서울특별시	2025-04-14 17: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19	351저76**	곽*호	서울특별시	2025-04-09 17:54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120	358수56**	노*아	경기도 안양시	2025-04-14 18:0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21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2 10:31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22	서울31바36**	성*영	서울특별시	2025-04-12 15:44	양화대교 선유도공원앞	50000
123	49거07**	이*은	서울특별시	2025-04-14 08:02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24	65저54**	김*남	경기도 평택시	2025-04-14 16:18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25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14 19:10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26	16누37**	조*일	서울특별시	2025-04-14 10:17	이화.신세계관앞	50000
127	149허69**	백*현	경기도 고양시	2025-03-25 22:03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128	151너93**	임*미	서울특별시	2025-04-12 08:14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129	296어71**	주*회*레*플*이*트	서울특별시	2025-03-21 16:55	영등포구 공작아파트 건너편	50000
130	20마41**	(*)*성*업*발	경기도 안양시	2025-04-07 07:19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31	126호22**	(*)*한*티*트	서울특별시	2025-03-31 08: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32	72호22**	(*)*로*복*법*	서울특별시	2025-03-31 09:39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60000
133	370가24**	정*순	서울특별시	2025-04-14 16:40	영등포역교차로~영등포로터리	50000
134	006나93**	(*)*오*업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4-01 07:51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60000
135	122고96**	권*순	경기도 수원시	2025-04-13 10:05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6	91거15**	권*숙	서울특별시	2025-04-07 07:5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37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07 11:05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138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39	서울81배34**	한*훈	서울특별시	2025-04-07 07:3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40	123두47**	H*M*N*R*	경기도 안산시	2025-04-08 14:5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41	143호19**	주*회*승*	서울특별시	2025-04-04 15:5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42	38수92**	김*복	경상남도 창원시	2025-04-14 19:5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43	194호7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30 20:2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44	85더84**	신*웅	서울특별시	2025-04-11 15:4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45	86두58**	김*철	서울특별시	2025-04-10 08:51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46	09머65**	한*정	경기도 파주시	2025-04-07 18:0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147	60버87**	손*관	서울특별시	2025-04-09 10:54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48	272거41**	J*N*H*N*J*	서울특별시	2025-04-07 16:2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49	806더70**	정*열	인천광역시	2025-04-07 13:3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150	31루13**	박*수	서울특별시	2025-04-07 18:2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51	62어45**	이*	경기도 고양시	2025-04-07 19:11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52	25보71**	김*석	서울특별시	2025-04-07 09: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153	175구95**	박*복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04-08 17:21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154	91보75**	최*영	경기도 부천시	2025-04-14 09:1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155	41러31**	L*Q*N*S*N*	서울특별시	2025-04-13 13:1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56	56가60**	이*주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8 22:04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157	119가75**	하*은	서울특별시	2025-04-08 10:5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58	97로11**	장*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8 09:44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59	67저31**	박*모	경기도 고양시	2025-04-08 19: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60	서울32아13**	김*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8 17:3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61	25나39**	S*E*C*E*G*U*N	서울특별시	2025-04-08 17:2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62	서울35아18**	박*춘	서울특별시	2025-04-09 17: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163	24주77**	신*준	경기도 수원시	2025-04-09 18:09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64	27나37**	서*호	서울특별시	2025-04-09 08:44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165	87주50**	이*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0 07:36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166	82라88**	정*덕	서울특별시	2025-04-09 07: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67	27도29**	공*남	서울특별시	2025-04-07 07:48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68	57루13**	김*복	인천광역시	2025-04-10 17:33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169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170	184다99**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4-10 08:0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171	22무42**	이*승	서울특별시	2025-04-09 17:53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72	08마01**	(*)*엔*프*덕*(*N*P*O*U*T	서울특별시	2025-04-08 08:26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여의도동)	50000
173	96고08**	조*우	경기도 성남시	2025-04-09 10: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74	17루07**	김*순	인천광역시	2025-04-09 18:17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175	105마97**	L*N*O*G*I*	경기도 시흥시	2025-04-10 12:04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176	16구55**	이*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9 08:20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177	50고92**	염*옥	경기도 동두천시	2025-04-09 18: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178	110저45**	김*겸	서울특별시	2025-04-09 20:4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179	203저29**	주*회*아*	경기도 용인시	2025-03-18 08:40	경부 서초IC~반포IC 상행	50000
180	19마50**	(*)*공*앤*	충청남도 천안시	2025-04-10 07:29	고척교~고척교교차로	50000
181	서울84자27**	최*성	서울특별시	2025-04-11 07:4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82	173누68**	최*순	경기도 화성시	2025-04-07 16:28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183	345더80**	최*호	경기도 수원시	2025-03-20 20:25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184	101호26**	김*호	서울특별시	2025-03-20 19:0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85	58주91**	서*길	서울특별시	2025-04-08 18:39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186	39두07**	박*신	서울특별시	2025-04-08 15: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187	38소56**	양*동	서울특별시	2025-04-11 07:4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88	53구64**	서*우	서울특별시	2025-04-11 07:40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189	67두01**	유*아	서울특별시	2025-04-10 19:2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0	810저57**	김*재	경기도 용인시	2025-04-10 09:36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1	34주16**	이*현	서울특별시	2025-04-11 07:23	대치역~도곡역	50000
192	65로80**	손*택	서울특별시	2025-04-10 16:23	염창역~등촌사거리	50000
193	359오21**	신*스*주*회*	서울특별시	2025-04-10 09:1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194	12부39**	오*영	서울특별시	2025-04-10 07:26	홍제동 홍제삼거리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195	104루34**	현*진	경상남도 양산시	2025-04-10 19:56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196	85서19**	김*욱	경기도 수원시	2025-04-10 18:03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197	18보48**	최*식	서울특별시	2025-04-11 08:19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198	36조85**	이*춘	서울특별시	2025-04-11 16:51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199	196부12**	허*녕	서울특별시	2025-03-28 16:56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34 (신사동)	50000
200	190하80**	찜*	경기도 용인시	2025-03-23 11:35	쌍문역~정의여중입구교차로	50000
201	149허88**	이*오	경기도 안양시	2025-03-26 20:37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2	서울31사18**	유*종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17:47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203	50마18**	서*식	서울특별시	2025-04-10 18:47	하나은행(압구정지점앞)	50000
204	02주65**	남*일	경기도 성남시	2025-04-10 17:43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205	386루25**	주*회*찰*	서울특별시	2025-03-24 10:49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06	146호75**	송*용	경기도 시흥시	2025-03-30 22:01	대신동 이대후문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207	190허27**	조*재	서울특별시	2025-03-26 09:51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2 (여의도동)	50000
208	07로03**	박*미	경기도 양주시	2025-04-07 17:22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09	254부67**	주*회*효*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2025-04-08 09:3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10	119가75**	하*은	서울특별시	2025-04-08 10:58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11	55라85**	박*영	서울특별시	2025-04-08 17: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12	58모88**	주*회*제*하*스	경기도 성남시	2025-04-08 08:34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13	114고81**	강*애	경기도 광주시	2025-04-08 13:0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214	250루35**	신*수	서울특별시	2025-04-08 17:23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5	05서06**	주*회*에*치*모*	인천광역시	2025-04-08 17:38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16	169하82**	푸*솔*광*주*	인천광역시	2025-04-07 11: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50000
217	342너19**	이*진	경기도 화성시	2025-04-11 07:2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18	800라69**	이*영	서울특별시	2025-03-25 08:51	방학교~도봉보건소사거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19	006가89**	도*회	경기도 용인시	2025-04-03 07:37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60000
220	82버03**	김*열	경기도 수원시	2025-04-03 07:43	국립현충원교차로~흑석역	50000
221	87다06**	주*회*룸*비*딜*버*	서울특별시	2025-04-02 08:42	삼성교~강남경찰서교차로	50000
222	29오04**	주*회*에*에*푸*켐	서울특별시	2025-04-02 08:29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50000
223	03오74**	박*태	서울특별시	2025-04-03 09:18	한국삼육고등학교~화랑대철도공원	50000
224	20소27**	E*O*A*G*ㅣ*ㅣ*A*E	인천광역시	2025-04-07 19:34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5	경기90사38**	신*렬	경기도 하남시	2025-04-08 12:3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26	175구95**	박*복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04-08 17:19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27	서울38자64**	주*회*제*엠*이*	서울특별시	2025-04-08 10:2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28	서울86자49**	김*성	서울특별시	2025-04-08 09:4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29	56러50**	(*)*전*크	서울특별시	2025-04-06 12:20	서울해군호텔앞~서울지방병무청역	50000
230	26무44**	김*덕	경기도 파주시	2025-04-08 07:5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31	220버63**	Z*E*H*N*U*A*M*D	경기도 김포시	2025-04-14 18:3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32	258무86**	P*A*Y*N*T*A*	경기도 수원시	2025-04-10 18:27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233	231수23**	김*영	서울특별시	2025-04-08 18:28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234	157나62**	김*희	경상남도 진주시	2025-04-10 11:09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35	163두88**	정*진	경기도 시흥시	2025-04-10 09:48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236	46어55**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1 08:3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237	68누64**	강*용	서울특별시	2025-04-12 17:31	제기동역~용두동사거리	50000
238	814다74**	고*호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3 19:34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39	179더74**	정*재	서울특별시	2025-04-02 07:56	대치역~도곡역	50000
240	67우16**	김*은	경기도 부천시	2025-04-07 17:19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41	09러40**	김*섭	경기도 김포시	2025-04-08 17:5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42	32가27**	정*희	경기도 수원시	2025-04-10 08:19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243	서울31아84**	최*식	서울특별시	2025-04-10 07:30	강남소방서앞	50000
244	86고19**	신*정	인천광역시	2025-04-10 07:16	개화동로(김포공항방면)	50000
245	16부83**	백*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10:40	성내교	50000
246	70주11**	이*희	경기도 양주시	2025-04-09 08:30	온수골사거리~용화여고	60000
247	61구65**	김*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9 08:31	용화여고~노원역	50000
248	82수28**	남*식	경기도 오산시	2025-04-14 0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49	257거31**	(*)*씨*탈	경기도 화성시	2025-04-12 12:4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50	35라09**	정*영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7 09:12	육사야구장~화랑대사거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51	312우93**	주*세바아이다이	서울특별시	2025-04-09 18:13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2 (여의도동)	50000
252	23우73**	김*규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9 18:2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3	05루39**	주*회*디*인*소*	서울특별시	2025-04-09 08:03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254	33마08**	K*M*N*A	경기도 안산시	2025-04-13 07: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55	143라94**	권*용	서울특별시	2025-04-10 18:3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256	59너36**	이*이	서울특별시	2025-04-08 18:26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257	서울31자19**	노*찬	서울특별시	2025-04-09 09:03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258	92우38**	이*섭	인천광역시	2025-04-09 09:38	공릉동 태릉(서울방향)	50000
259	127보85**	피*숙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20:33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260	90나02**	홍*호	경기도 성남시	2025-04-08 17:28	봉천고개~은천삼거리	50000
261	서울31아67**	정*우	서울특별시	2025-04-08 07:39	강남소방서앞	50000
262	11노23**	김*주	서울특별시	2025-04-08 07:39	강남소방서앞	50000
263	45우97**	허*봉	경기도 하남시	2025-04-09 20:19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264	141우85**	김*월	경기도 안양시	2025-04-11 10:28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265	서울31사48**	김*배	서울특별시	2025-04-11 12:5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66	347다81**	브*인*러*트*트*즈*주*	서울특별시	2025-04-10 09:57	동산삼거리~구파발사거리	50000
267	69가96**	안*숙	서울특별시	2025-04-11 17:31	은천삼거리~서울대입구역	50000
268	841누80**	오*스*레*트*이*코*아*식*사	경기도 광주시	2025-04-09 07:32	복정역~장지교 교차로	50000
269	154러54**	전*기	경기도 김포시	2025-04-11 18:15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0	92거94**	유*식	인천광역시	2025-04-11 07:05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50000
271	184오13**	장*준	서울특별시	2025-04-14 19:03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272	387도55**	김*연	경기도 용인시	2025-04-14 09:39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73	203소10**	L*J*N*Z*U	경기도 화성시	2025-04-14 11:4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74	96누09**	이*석	경기도 부천시	2025-04-14 0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75	106호66**	정*수	서울특별시	2025-03-29 09:32	영등포구 롯데캐슬엠파이어 앞	50000
276	300서25**	김*현	경기도 수원시	2025-03-21 16:14	양재ic~서초ic	50000
277	67우31**	주*회*라*터*	서울특별시	2025-04-10 18:50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78	서울32사48**	서*창	서울특별시	2025-04-11 19:5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79	85오94**	오*숙	서울특별시	2025-04-11 17:17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280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281	경기80아29**	박*준	경기도 수원시	2025-04-12 03:03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282	172루27**	주*회*이*파*유*육*발*	인천광역시	2025-04-12 12:0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283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2025-04-10 17:2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84	108부17**	박*옥	경기도 부천시	2025-04-10 18: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5	43버94**	정*중	서울특별시	2025-04-07 19:15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286	20두81**	주*회*아*프	서울특별시	2025-04-14 17:1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87	02보47**	송*화	인천광역시	2025-04-11 19:59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88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4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289	서울38아54**	이*준	서울특별시	2025-04-14 10: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0	97구01**	주*회*한*	경기도 광주시	2025-04-14 11: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291	46수35**	D*G*A*O*I*R*I	경상남도 거제시	2025-04-13 19:4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292	231어97**	이*철	인천광역시	2025-04-12 17:10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293	인천30바81**	윤*영	인천광역시	2025-04-14 17:3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294	07로06**	Y*N*H*N*X*N	경기도 김포시	2025-04-14 19:42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295	133하80**	박*른	서울특별시	2025-04-02 07:18	대치역~도곡역	50000
296	14러01**	김*석	서울특별시	2025-04-10 18:08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297	160허41**	(*)*덴*트*	인천광역시	2025-04-12 15:39	영등포구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	50000
298	198머73**	변*원	경기도 파주시	2025-04-14 19:0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299	서울83사29**	송*호	서울특별시	2025-04-07 09:22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00	57부19**	구*남	전라남도 여수시	2025-04-14 08:12	강동구청역~몽촌토성역	50000
301	서울31자84**	강*일	서울특별시	2025-04-11 10:34	송파역~잠실역	50000
302	57서44**	이*행	인천광역시	2025-04-10 19:08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03	서울32바58**	백*종	서울특별시	2025-04-11 20: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04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2025-04-10 17:23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05	223다57**	최*진	서울특별시	2025-04-10 18:0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	50000
306	28어55**	홍*순	경기도 하남시	2025-04-10 19:15	국립현충원~흑석역	50000
307	46누70**	홍*규	인천광역시	2025-04-11 11:59	영등포역~문래동사거리	50000
308	199하36**	사*법*대*아*추*골*협*	서울특별시	2025-04-01 19:03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09	42더06**	성*정	경기도 양주시	2025-04-07 0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10	32수08**	C*H*A*C*A*S*K	충청남도 당진시	2025-04-12 14:28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11	19노17**	엄*인	서울특별시	2025-04-09 17:33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24	50000
312	64모25**	방*석	전라남도 화순군	2025-04-09 16:2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313	50누27**	김*연	경기도 김포시	2025-04-11 08:38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14	175구95**	박*복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2025-04-08 17:2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15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07 17:37	서초동 서초IC 상행	60000
316	서울31사67**	김*학	서울특별시	2025-04-11 08:20	태릉~서울여대	50000
317	서울32바75**	김*창	서울특별시	2025-04-11 08:28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교차로	50000
318	서울06거85**	정*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1 08:28	화랑대사거리~화랑대역교차로	60000
319	08두09**	농*회*법*주*회*누*바*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2025-04-11 09: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0	272거41**	J*N*H*N*J*	서울특별시	2025-04-07 16:21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321	140로69**	이*령	서울특별시	2025-03-28 17:23	중화동 중랑역 메디렌느산부인과	50000
322	92모02**	김*순	서울특별시	2025-04-10 08:3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3	122저19**	주*회*대*국*통*	인천광역시	2025-04-11 10: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24	61서31**	장*영	서울특별시	2025-04-11 19:04	공릉동 오일뱅크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50000
325	205저21**	이*봉	경기도 화성시	2025-04-12 19:19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26	54머63**	강*보	경기도 고양시	2025-04-08 08:16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27	224보52**	P*A*Y*N*H*O	서울특별시	2025-04-13 20:44	여의대로2길	50000
328	197호21**	사*이*(*)	경기도 시흥시	2025-03-26 08:38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329	194하44**	이*문	서울특별시	2025-03-26 18:13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30	329누33**	김*범	경기도 성남시	2025-03-24 13:33	잠실동 서울YMCA송파지회	50000
331	101호22**	허*준	충청남도 천안시	2025-04-04 09:31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332	175어89**	김*광	서울특별시	2025-04-09 19:22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333	179더74**	정*재	서울특별시	2025-03-25 07:55	대치역~도곡역	50000
334	284주90**	(*)*자*	경기도 오산시	2025-03-27 19:0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35	서울32바72**	전*형	서울특별시	2025-04-03 20:48	영등포구 샛강역 1번출구 앞	50000
336	20소27**	E*O*A*G*ㅣ*ㅣ*ㅣ*A*E	인천광역시	2025-04-07 19:35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37	서울320아52**	이*석	서울특별시	2025-04-07 18:00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38	32오15**	서*석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7 08:54	태릉~서울여대	50000
339	91소63**	주*회*호*산*개*	서울특별시	2025-04-07 07:17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40	42너78**	민*준	서울특별시	2025-04-07 16:40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1	38조11**	문*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07 17:52	군자역~아차산역삼거리	50000
342	09버42**	강*원	서울특별시	2025-04-08 09:19	개화사거리~김포공항교차로	50000
343	397오78**	주*회*하*보*	경기도 파주시	2025-04-08 08:31	송파사거리~석촌역	50000
344	324주50**	차*현	경기도 수원시	2025-04-07 18:0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45	02구41**	최*란	경기도 고양시	2025-04-07 09:01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46	67다67**	임*재	인천광역시	2025-04-07 11:34	영등포구 신송빌딩 앞	50000
347	276부83**	박*수	경기도 광주시	2025-04-08 00:59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348	179호70**	방*도	서울특별시	2025-03-19 10:17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49	43고56**	T*A*H*Y*U*A*H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2025-04-10 12:32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50	191고81**	고*진	경기도 광주시	2025-04-08 19:22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351	104두21**	C*O*E*H*O	서울특별시	2025-04-08 07:36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52	27노81**	김*돌	서울특별시	2025-03-11 13:13	천호대교	50000
353	01루49**	장*애	경기도 하남시	2025-04-08 10:24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54	66다82**	이*수	서울특별시	2025-04-08 18:2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55	17무48**	최*소엽	서울특별시	2025-04-08 17:55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56	30로83**	장*학	경기도 화성시	2025-04-08 18:35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357	260누82**	윤*선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8 18:04	중계동 중계그린아파트 109동	50000
358	194호75**	N*R*O*V*T*B*K*	경기도 성남시	2025-03-30 20:30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59	서울32아25**	손*길	서울특별시	2025-04-08 20:34	YBM빌딩	50000
360	46가07**	최*희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17: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61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3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62	149나29**	윤*아	서울특별시	2025-04-09 18:03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63	800오62**	주*회*하*텍	서울특별시	2025-04-09 08:35	개봉동 우리은행 고척동지점	50000
364	143두48**	이*수	경기도 평택시	2025-04-09 09:12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65	경기06코77**	박*두	경기도 시흥시	2025-04-09 09:47	개화동 영신PVC 상사	60000
366	814저61**	바*종*건*(*)	경기도 하남시	2025-04-10 07:51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367	경기91배26**	유*기	경기도 화성시	2025-03-18 10:35	반포3동주민센터교차로~신동초교교차로	50000
368	43거29**	김*웅	서울특별시	2025-04-09 19:28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69	67어22**	고*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2025-04-09 19:54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370	76다65**	한*천	경기도 광주시	2025-04-09 10:5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371	10우38**	서*석	서울특별시	2025-04-09 17:25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72	서울31사78**	조*식	서울특별시	2025-03-26 17:15	여의도역 교차로	50000
373	184다99**	김*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025-04-10 08: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74	서울31사49**	박*환	서울특별시	2025-04-10 09:20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75	04무43**	장*우	서울특별시	2025-04-11 07:25	복정역~장지교교차로	50000
376	57조09**	이*민	대전광역시	2025-04-10 09:3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377	224소89**	L*E*Y*N*A*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0 11:33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78	287부10**	용*태	경기도 고양시	2025-04-10 18:02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379	706더71**	홍*란	서울특별시	2025-04-10 23:20	방배동 남태령 중앙정류소(시내방향)	60000
380	11도02**	권*희	서울특별시	2025-04-10 17:40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1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3 11:06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2	163수64**	주*회*지*아*	경기도 화성시	2025-04-10 17:41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383	235두64**	송*연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0 18:42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50000
384	96루08**	장*엽	서울특별시	2025-04-10 17:11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385	286보19**	주*회*하*종*개*	서울특별시	2025-04-11 18:05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386	82더44**	백*현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1 12:46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387	07어92**	주*회*예*인	경기도 광주시	2025-04-13 08:33	종로2가 스타벅스 종각점	50000
388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2 10:30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389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90	122고96**	권*순	경기도 수원시	2025-04-13 10:06	서초동 반포IC 상행	50000
391	235라12**	김*동	서울특별시	2025-04-12 18:05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92	141우85**	김*월	경기도 안양시	2025-04-11 10:27	서초동 서초IC 상행	50000
393	128부28**	김*현	경기도 성남시	2025-04-13 16:37	상봉동 중랑역 가나안교회 건너편 GS25상봉사랑점	50000
394	190호88**	(*)*이*에*트*이*	서울특별시	2025-04-02 08:37	헌릉로 염곡사거리 방향	50000
395	109허75**	유*호	서울특별시	2025-04-02 17:1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396	389무37**	T*O*N*D*J*A	경기도 오산시	2025-04-10 16: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397	28누60**	이*환	경기도 용인시	2025-04-10 19:1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98	384주90**	신*수	경기도 의정부시	2025-04-10 20:10	공릉동 공릉목공예체험장(구리방향)	50000
39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14 10:41	서초동 서초IC 하행	60000
400	235무79**	김*진	대구광역시	2025-04-14 17:52	서초동 서초IC 하행	50000
401	04호24**	진*호	경기도 의왕시	2025-03-28 05:18	잠원동 현대훼미리아파트	50000
402	101하46**	홍*석	서울특별시	2025-03-21 19:06	월계동 월계구민체육센터	50000
403	242수41**	유*일	서울특별시	2025-04-11 17:42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04	91모28**	엄*수	경기도 안양시	2025-04-11 08:25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05	167저61**	J*N*I*N*H*	경기도 부천시	2025-04-11 17:17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06	25오34**	주*회*태*종*건*	경기도 오산시	2025-04-13 17:03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07	14루60**	이*연	서울특별시	2025-04-13 11:07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08	75주87**	(*)*루*렉*	서울특별시	2025-04-10 13:14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60000
409	803로75**	주*회*피*엠*	서울특별시	2025-03-31 18:12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10	76보79**	이*익	서울특별시	2025-04-09 17:54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60000
411	10고45**	배*국	서울특별시	2025-04-14 17:1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2	서울31자76**	윤*국	경기도 용인시	2025-04-12 11:08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13	56저97**	김*성	경기도 광주시	2025-04-14 18:21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14	27구52**	A*D*K*R*M*A*R*N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4:06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15	47부04**	J*N*H*N*E*	인천광역시	2025-04-14 10:19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16	190호47**	황*영	서울특별시	2025-04-03 10:36	남현동 남태령고개(시외방향)	50000
417	101하90**	장*	서울특별시	2025-04-04 16:50	광장아파트~여의도역	50000
418	106호66**	정*수	서울특별시	2025-04-05 15:28	여의대로2길	50000
419	90서62**	김*중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09 18:3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20	166허67**	데*하*스	경기도 구리시	2025-04-03 19:14	공릉동 삼육에코팜센터(구리방향)	50000
421	301고71**	노*진	경기도 남양주시	2025-04-11 13:52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22	46로87**	Y*L*O*H*V*A*H*I*D*N*H*K*R*T*G*I	충청북도 청주시	2025-04-12 17:14	양재동 양재IC 상행	50000
423	162조92**	박*례	서울특별시	2025-04-14 17:43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10동	50000
424	334고21**	김*환	경기도 안양시	2025-04-14 13:20	저동 삼일로 영락교회	50000
425	61러97**	이*구	서울특별시	2025-04-11 14:39	영등포역교차로~서울교	50000
426	16무95**	T*A*A*A*A*P*A*A*H	경기도 시흥시	2025-04-12 13:46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7	230어14**	서*혜	인천광역시	2025-04-12 18:32	서초동 서초IC 입구 하행	50000
428	228주84**	주*회*엔*미*	경기도 광주시	2025-04-14 17:35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29	75오61**	(*)*럴*뉴*	서울특별시	2025-04-14 10:43	양재동 양재IC 하행	60000
430	33수38**	김*기	경기도 평택시	2025-04-14 09:35	미아동 이마트 미아점 건너편 빅토리아호텔	50000
431	서울80배83**	경*영	서울특별시	2025-04-14 07:52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32	96너03**	김*애	서울특별시	2025-04-14 18:13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33	68소89**	이*찬	서울특별시	2025-04-10 14:02	신천동 잠실역 중앙정류소(시외방향)	50000
434	824가45**	김*일	경기도 부천시	2025-04-10 17:12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35	46로34**	디*이*코*식*사	서울특별시	2025-04-04 17:39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50000
436	15무76**	주*회*엘*블*씨	경기도 과천시	2025-04-09 15:35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50000
437	22조91**	오*태	경기도 하남시	2025-03-19 08:41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50000
438	서울31자79**	윤*영	서울특별시	2025-03-10 08:48	내곡교~서울특별시립어린이병원	50000

연번	차량번호	성명	주소	단속일시	단속장소	잔액
439	서울32바88**	강*조	경기도 김포시	2025-04-14 08:24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0	61오93**	주*회*유*씨*디	서울특별시	2025-04-14 17:2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1	379로42**	이*로	경기도 김포시	2025-04-14 18:16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42	17모05**	이*복	인천광역시	2025-04-14 18:41	성산동 현대오일뱅크 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50000
443	04버12**	김*성	경기도 화성시	2025-04-08 19:22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50000
444	25고61**	주*회*미*이*지	경기도 평택시	2025-04-11 15:47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45	40부25**	(*)*페*와*	서울특별시	2025-04-10 17:27	양재동 양재IC 하행	50000
446	경기67바44**	김*남	경기도 김포시	2025-04-09 17:31	개화동 영신PVC 상사	50000
447	254조42**	청*씨*디*식*사	경기도 부천시	2025-04-04 15:45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50000
448	60누78**	김*묵	서울특별시	2025-04-07 08:14	대치동 은마아파트 1동	50000
449	130호66**	김*호	경기도 광주시	2025-04-01 10:03	장지동 장지역 중앙정류소(시내방향)	50000
450	253너60**	우*남	서울특별시	2025-04-07 20:45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 107동	50000
451	20가61**	주*회*와*즈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5-04-10 18:17	상계동 상계백병원	50000
452	55고93**	박*혜	서울특별시	2025-04-06 07:02	번동3.4단지사거리~장원아파트	50000
453	02주73**	김*울	서울특별시	2025-04-11 08:08	LG에클라트 정관장 앞 이정표	50000
454	서울32아24**	정*일	서울특별시	2025-04-07 08:18	잠실동 잠실지구대(잠실 엘스아파트 111동)	50000
455	30거10**	유*성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2025-04-09 20:00	행당동 2호선 한양대역 1번출구	50000

서울특별시교육청

[공 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25-185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판결 공시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사건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 건	2023추505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원 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피고	서울특별시의회
공시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		
판결선고	2025. 5. 15.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5-69호

도시계획시설사업(창신 완충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2호(1980.11.14.)로 도시계획시설(녹지) 최초 결정되고 종로구고시 제2020-90호(2020.06.29.)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창신 완충녹지)사업 시행을 위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25-601호(2025.4.24.)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마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13-144번지 등 7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창신 완충녹지) 조성사업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녹지 보상
다. 사업면적 : 7필지 607.8㎡
라.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청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36)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기　　정 : 2020. 6. 29. ~ 2025. 6. 28.
  - 변　　경 : 2020. 6. 29. ~ 2027. 6. 28.
바. 변경사유: 보상 협의 불성립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 신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⑦항에 의거 사업기간을 연장 고시함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붙임참조
아. 고시방법 : 종로구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종로구청 도시녹지과(☎02-2148-28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창신 완충녹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공유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기정	계		607.8	607.8							
1	-	창신동 13-144	대	124.5	124.5	옥**	단독	종로구 창신동 **-***				종로구 소유권 이전 완료
2	-	창신동 13-121	대	143.1	143.1	박**	단독	노원구 중계동 ***-* **화아파트 ***-***				종로구 소유권 이전 완료
3	-	창신동 13-145	대	81.9	81.9	국**	단독	강남구 방배동 ***-* ***아파트 *동 ***호				종로구 소유권 이전 완료
4	-	창신동 13-87	대	76.4	76.4	이**	단독	종로구 창신동 **-**	종로구 (세무2과)	종로구 수송동 146-12	압류	
5	-	창신동 13-84	대	103.2	103.2	케*비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6	-	창신동 13-83	대	48.9	48.9	곽**	단독	종로구 창신동 *** **아파트 ***-****				
7	-	창신동 13-82	대	29.8	29.8	이**	1/2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 *동 ***호(여의도동,**아파트)				
						이**	1/4	강북구 덕릉로 **				
						이**	1/4	** 쿠나라 그레인지 글래즈우드 힐스 뉴사우스웨일즈 **** 오스트레일리아				종로구 소유권 이전 완료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창신 완충녹지)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전체면적	편입면적	성명	소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	창신동 13-84	건축물	세멘 부록조 1층	75.5 (공부면적 21.06)	75.5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주거
			세탁실	-	2.4	2.4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
			화장실 및 장독대	-	3.0	3.0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
			창고	-	6.1	6.1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
			바닥	-	37.0	37.0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
			계단	-	11.5	11.5	케** 부동산 신탁주식회사	단독	강남구 테헤란로 ***(역삼동)	김**	종로구 창신동 **-**	신탁	-
2	-	창신동 13-82	창고	-	12.7	12.7	김**	단독	종로구 창신동 **-**	-	-	-	-

◈ 노원구고시 제2025-39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 대하여『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노 원 구 청 장

1. 사 업 명 : 상계동 1049-71 역세권 청년주택 신축공사
2. 사업위치 :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412
3. 사업주체
   - ㈜케이비부동산신탁 대표 성채현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역삼동)
4. 사업계획변경승인일 : 2025. 5. 7.(수)
5.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 대지면적 : 2,375.6㎡
   - 건축면적 : 1,423.96㎡ (건폐율 : 59.94%)
   - 연 면 적 : 26,603.39㎡ (용적률 : 799.85%)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3층, 1개동 443세대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사업기간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5. 5.
6. 사업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 변경사유
     ·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감소
   - 변경내용
     · 건축계획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지 번	상계동 1049-71 외 3	상계동 1412	
대지면적	2,379㎡	2,375.6㎡	감) 3.4㎡
건 폐 율	59.86%	59.94%	증) 0.08%
용 적 률	799.13%	799.85%	증) 0.72%
연 면 적	26,791.92㎡	26,603.39㎡	감) 188.53㎡ PS실·DA면적 확대 등
높 이	71.60m	71.77m	증)0.17m
주차대수	190대	189대	감) 1대

7. 기 타
   - 기타 승인조건 및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16-3937)에 비치합니다.

◈ 서대문구고시 제2025-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신설 및 지적승인 고시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0-595호(2020.05.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0-119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 고시 제2021-219호(2021.12.23.), 제2022-44호(2022.04.14.), 제2022-51호(2022.04.28.), 제2022-64호(2022.05.26.), 제2022-84호(2022.06.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정정)인가 고시되고, 서대문구 공고 제2025-405호(2025.03.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된 「홍은2동 203-2 ~ 188-9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3.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고시로 갈음합니다.
4. 관계 서류는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5년 5월 22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03-2 ~ 188-9(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변경없음)
  - 명칭 : 홍은2동 203-2 ~ 188-9간 도로개설(변경없음)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폭 6m, 연장 572m)(변경없음)
라.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변경없음)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5년(변경없음)
바. 변경내용 및 사유 : 일부 편입토지 누락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별첨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함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안전건설국 도로과(전화 : 02-330-17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25-9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구로구 고시 제2023-216호(2023.12.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24-80호(2024. 5. 2.)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구로구 고시 제2025-51호(2025. 4.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구로구 공고 제2025-829호(2025. 4.24.)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00조,「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222 ~ 12-18간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다. 사업 규모 : 도로개설 폭 12m, 연장 75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2년간 [변경]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변경]
사.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	서울특별시 ○동 ○-○				
2	항동 13-3	대지	242	242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모지번 13
3	항동 222-104	구거	232	2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 / 무상귀속대상
4	항동 222-105	구거	77	7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104
5	항동 231-2	도로	321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31

토 지 조 서 (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2-29	도로	172	172	이○○	서울특별시 ○동 ○-○				
2	항동 13-3	대지	242	242	박○○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모지번 13
3	항동 222-104	구거	232	232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 / 무상귀속대상
4	항동 222-111	구거	77	77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22-104
5	항동 231-2	도로	321	321	국토교통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모지번 231

물 건 조 서 (당초)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3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45	건물	박○○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현지번 13-3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18	창고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항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항동 222-105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항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5	항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물 건 조 서 (변경)

○ 사 업 시 행 자 : 구로구청장
○ 사 업 의 명 칭 : 항동 222 ~ 12-18간 도로개설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소유권 이외의 권리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항동 13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545	건물	박○○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아파트 ○○○	○○은행	서울특별시 ○○구 ○동 ○-○○○	근저당권	현지번 13-3
		가건물	판넬	36	철물점						
		창고	철제	18	창고						
		창고	철제	22	창고						
		펜스	철제	1식	펜스						
2	항동 222	펜스	철제	1식	펜스						
3	항동 222-111	펜스	철제	1식	펜스						
4	항동 235-32	펜스	철제	1식	펜스						
5	항동 235-37	펜스	철제	1식	펜스						

◈ 영등포구고시 제2025-94호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50호(1982.2.3.)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2호(2007.12.6.)로 건축범위 일괄결정된 영등포구 문래동6가 44번지 도시계획시설(학교:문래중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영 등 포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공간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시설(학교:문래중학교)의 건축범위(건폐율)를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학교	중교	문래동6가 44	8,734	서고 제50호 (1982.2.3.)	문래중교

○ 건축범위 결정(변경)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건축제한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35	120	120	5	5	건폐율 완화 (30% 이하 → 35% 이하)	준공업지역

○ 건축범위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래중교	건폐율: 기정 30% → 변경 3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문래중학교 교육공간 증축공사를 위한 건축범위(건폐율)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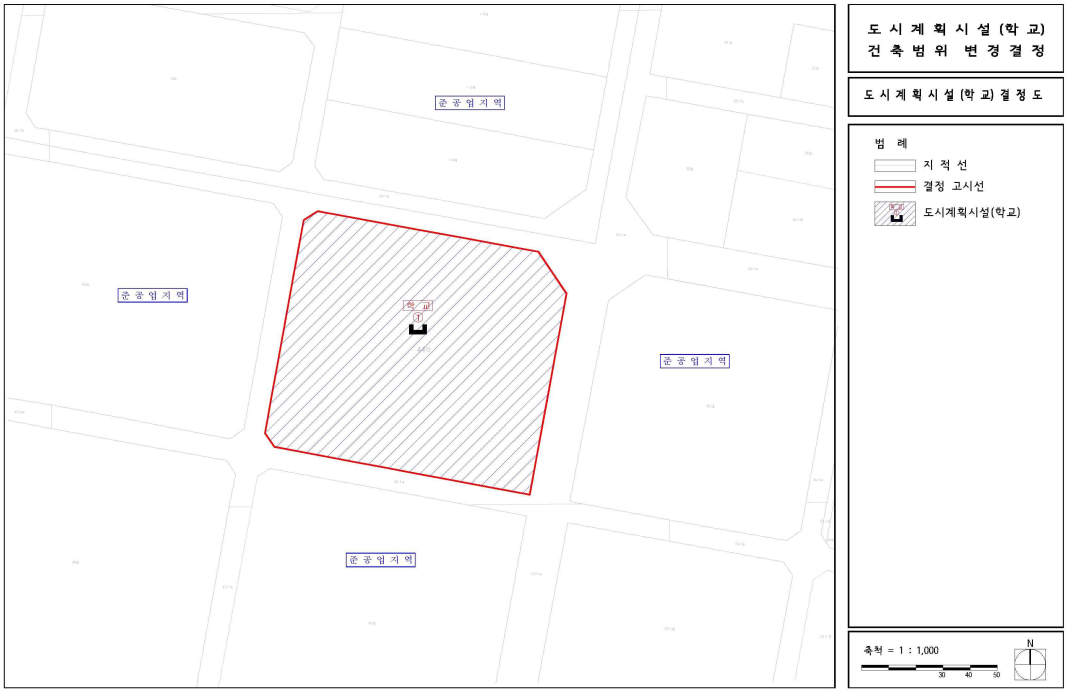
3. 지형도면: 붙임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시민의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23)에 관련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공간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음(http://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도



※ 본 결정(변경)은 건축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선형 변경없음

◈ 동작구고시 제2025-66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원(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동작구고시 제2022-29호(2022.02.10.), 동작구고시 제2024-153호(2024.12.12.)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된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호선, 소로2-153호선, 소로2-1호선, 소로2-2호선, 어린이공원(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시행자 지정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동 작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82-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3-1호선, 소로2-153호선, 소로2-1호선, 소로2-2호선, 어린이공원(주차장)]
 나. 명칭 :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어린이공원(주차장)] 조성공사

3.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3	1	12~15	국지도로	162	상도4동 187-3	상도4동 194-10	일반도로	-	서고시 제354호 ('90.10.31)	-
변경	소로	2	153	8~10	국지도로	135 (32)	상도동 180-2	상도동 364-23	일반도로	-	서고시 제6호 ('72.1.7)	-
신설	소로	2	1	8~10	국지도로	144	상도동 181-20	상도동 183-13	일반도로	-	동작구고시 제2022-29호 ('22.2.10)	-
신설	소로	2	2	8~11	국지도로	340	상도동 197-1	상도동 204-89	일반도로	-	동작구고시 제2022-29호 ('22.2.10)	-

나. 공원(주차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공원	어린이 공원	상도동 200-47번지 일원	6,088	동작구고시 제2022-29호 ('22.2.10)	지상-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주차장	주차장	상도동 200-47번지 일원	2,099	동작구고시 제2022-29호 ('22.2.1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상도스타리움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최현정

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74, 7층(상도동, 동서남북빌딩)

5.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 2025년 6월 30일

◈ 강동구고시 제2025-84호

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3-193호(2023.11.2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강동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아래와 같이 변경(3차)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강동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다. 면적 : 산업단지 78,144㎡, 산업단지 외 사업(지구외 진입도로) 3,950㎡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가.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및 중소업체 간 협업강화 및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제고
 나. 엔지니어링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식집약산업이며,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그린경제벨트를 구축하여 강동구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첨단 · 지식 기반산업으로 재편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의 성장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주소(변경)
 가. 사업시행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없음)
 가. 시행기간 : 산업단지계획승인일 ~ 2026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가. 유치업종 :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

산업시설용지	
대분류	중분류
J 정보통신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용 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산업단지)	78,144	-	78,144	100.0	
산업시설용지	27,196	-	27,196	34.8	-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산업용지1	15,091	-	15,091	19.3	- 영세기업 15%
산업용지2	5,338	-	5,338	6.8	- 중소기업 전용단지, 영세기업 15%
산업용지3	6,767	-	6,767	8.7	- 영세기업 15%
복합시설용지	5,696	-	5,696	7.3	
지원시설용지	12,938	-	12,938	16.5	
지원용지1	7,207	-	7,207	9.2	
지원용지2	5,731	-	5,731	7.3	
공공시설용지	26,622	-	26,622	34.1	
공원	5,157	-	5,157	6.6	- 5~7.5%미만 공원 내 저류지 1,436㎡ 중복결정
녹지	7,391	-	7,391	9.5	
주차장	1,441	-	1,441	1.8	- 0.6%이상
도로	12,633	-	12,633	16.2	- 8%이상
기타시설용지	5,692	-	5,692	7.3	- 존치시설(변전소)
지구외 진입도로	3,950	-	3,950	100.0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 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지구 내)(변경없음)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중 로	기정	5	880	12,636	-	-	-	1	310	5,526	4	570	7,110

(2) 도로 결정 조서(지구 내)(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14	18	집산 도로	310	상일동 433-3일원 (대로2-33)	상일동 412-3일원 (중3-516)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4	12	국지 도로	135	상일동 417-2일원 (중1-411)	상일동 418-1일원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5	12	국지 도로	164	상일동 414일원 (중3-516)	상일동 418-1일원 (중3-514)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6	12	국지 도로	143	상일동 405일원	상일동 산12-2일원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7	12	국지 도로	128	상일동 산12-1일원 (동측지구계)	상일동 411-2일원 (중3-516)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3) 도로 총괄표(지구 외)(변경없음)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247	3,950	2	103	2,274	1	144	1,676	-	-	-
중로	기정	1	77	1,858	1	77	1,858	-	-	-	-	-	-
소로	기정	2	170	2,092	1	26	416	1	144	1,676	-	-	-

(4) 도로 결정 조서(지구 외)(변경)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1	411	21	집산도로	77	상일동 433-3일원 (대로2-33)	상일동 425-10일원 (중2-414)	일반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
변경	소로	1	210	12	국지도로	26	상일동 425-12일원 (서울시경계)	상일동 360-10일원 (중1-411)	일반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
기정	소로	2	220	8~9	국지도로	144	풍산동 218-34일원 (광로2-5)	상일동 12일원	일반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

*현 연속지적도를 반영한 위치조정

2) 주차장(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21	주차장	노외주차장	상일동 426-2번지 일원	1,441	-

3) 공원(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합 계				-	5,157	1개소
기정	19	공원	소공원	상일동 425번지 일원	5,157	저류시설 중복 (1,436㎡)

4) 녹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7,391	4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산12-1번지 일원	3,431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14번지 일원	2,470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21-8번지 일원	809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362-6번지 일원	681	-

5) 유수지(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상일동 425번지 일원	1,436	소공원 중복 (1,436㎡)

7.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가. 추정 사업비(변경없음)

구 분		금액(억원)	비 고
조성비	소 계	150	
	조사설계비	20	
	공사비	130	
	부담금	1,374	용지부담금,생태보전협력금 등
보상비	소계	1,073	
	토지매입비	153	
	지장물 등	148	지장물보상비,이주대책비 등
기타비용	기타	401	직접인건비,판매비,일반관리비,자본비용,예비비,법인세
계		1,925	

나. 년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억원)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총사업비	1,925	1	575	1,093	108	94	54
보상비	1,374	-	478	861	12	23	-
조성비	150	-	12	44	53	41	-
기타비용	401	1	85	188	43	31	54

다.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타인자본(회사채 발행), 분양수입금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붙임1] (변경)

9.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붙임2](변경)

10.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각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용도지역		용도지역 세분	총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78,144	-	78,144	100.0
도시지역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8,144	-	78,144	100.0

주) 지구외도로 면적 3,950㎡는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서 제외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변 경	강동일반산업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상일동 404번지 일원	78,144	-	78,144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도 로(변경없음)

(1) 도로 총괄표(지구 내)(변경없음)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중 로	기정	5	880	12,633	-	-	-	1	310	5,526	4	570	7,107

(2) 도로 결정 조서(지구 내)(변경없음)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14	18	집산 도로	310	상일동 433-3일원 (대로2-33)	상일동 412-3일원 (중3-516)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4	12	국지 도로	135	상일동 417-2일원 (중1-411)	상일동 418-1일원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5	12	국지 도로	164	상일동 414일원 (중3-516)	상일동 418-1일원 (중3-514)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6	12	국지 도로	143	상일동 405일원	상일동 산12-2일원 (남측지구계)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중로	3	517	12	국지 도로	128	상일동 산12-1일원 (동측지구계)	상일동 411-2일원 (중3-516)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3) 도로 총괄표(지구 외)(변경없음)

류별	구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	247	3,950	2	103	2,274	1	144	1,676	-	-	-
중로	기정	1	77	1,858	1	77	1,858	-	-	-	-	-	-
소로	기정	2	170	2,092	1	26	416	1	144	1,676	-	-	-

(4) 도로 결정 조서(지구 외)(변경)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중로	1	411	21	집산 도로	77	상일동 433-3일원 (대로2-33)	상일동 425-10일원 (중2-414)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변경	소로	1	210	12	국지 도로	26	상일동 425-12일원 (서울시경계)	상일동 360-10일원 (중1-411)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소로	2	220	8~9	국지 도로	144	풍산동 218-34일원 (광로2-5)	상일동 12일원	일반 도로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

*현 연속지적도를 반영한 위치조정

2) 주차장(변경없음)

(1) 주차장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1	주차장	상일동 426-2번지 일원	1,441	-	1,441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

3) 공원(변경없음)

(1) 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1개소)				-	5,157	-	5,157	-	
기정	19	공원	소공원	상일동 425번지 일원	5,157	-	5,157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저류시설 중복 (1,436㎡)

4) 녹지(변경없음)

(1) 녹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4개소)				-	7,391	-	7,391	-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산12-1번지 일원	3,431	-	3,431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14번지 일원	2,470	-	2,470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21-8번지 일원	809	-	809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362-6번지 일원	681	-	681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5) 유수지(변경없음)

(1) 유수지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상일동 425번지 일원	1,436	-	1,436	강동구고시 제2020-171호	소공원 중복 (1,436㎡)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합 계		27,196	-	27,196	
산업	산업1	15,091	산업1	15,091	- 영세기업 15%
	산업2	5,338	산업2	5,338	- 중소기업 전용단지, 영세기업 15%
	산업3	6,767	산업3	6,767	- 영세기업 15%

※ 획지분할가능

2)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복합	복합1	5,696	복합1	5,696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2,938	-	12,938	-	12,938	-	12,938	
지원	지원1	7,207	-	7,207	지원1	7,207	-	7,207	
	지원2	5,731	-	5,731	지원2	5,731	-	5,731	

※ 획지분할가능

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 적(㎡)	위 치	면 적(㎡)	
주	주1	1,441	주1	1,441	-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1	용도	허용용도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 지식산업센터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조업 제외) ※ 해당업종: 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J5821, J5822, J6201, J6202, J6209, J6311, J6399, M7011, M7012, M7211, M7212, M7291, M7292, M7320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표에 기재된 업종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30% 이하	
		층수(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 -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	
		형태	• 물탱크 등의 시설물은 외부노출 금지 • 외벽은 전면과 측면 재료를 통일성 있게 처리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 공개공지 위치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중로 2류 및 공원변에 조성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12m초과 도로변 : 5m - 12m이하 도로변 : 3m	
			• 벽면한계선 : 5m, 7.5m	
		기타	• 획지분할 가능	

※ 산업시설용지는 지상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 50%이상을 주요유치업종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확보하여야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임대·분양비율을 15% 이상 확보해야함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2~3	용도	허용용도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 지식산업센터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조업 제외) ※ 해당업종: 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J5821, J5822, J6201, J6202, J6209, J6311, J6399, M7011, M7012, M7211, M7212, M7291, M7292, M7320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표에 기재된 업종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층수(높이)	• 12층 이하(48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 - 동일한 폭원의 도로에 면할 경우에는 획지가 포함된 가구의 장변구간	
		형태	• 물탱크 등의 시설물은 외부노출 금지 • 외벽은 전면과 측면 재료를 통일성 있게 처리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 공개공지 위치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중로 2류 및 공원변에 조성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 10m - 12m초과 도로변 : 5m - 기타(존치)시설변 : 5m - 지원시설변 : 5m	
		기타	• 획지분할 가능	

※ 산업시설용지는 지상연면적(주차장 및 기계실 등 제외) 50%이상을 주요유치업종인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확보하여야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임대·분양비율을 15% 이상 확보해야함

[유치업종계획]

■ : 입주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제한사유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J	58	출판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오염물질 발생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	
					5822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1	
					6202	
					6209	
	63	정보서비스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11	지식기반산업 미해당 (뉴스업)
					6312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1	
					6399	
M	70	연구개발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11	
					7012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지식기반산업 미해당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7211	
					7212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91	
					7292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1	수의업		지식기반산업 미해당
			732	전문디자인업	7320	
			733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지식기반산업 미해당
			739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 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table>
<tr><th>도면번호</th><th>위치</th><th colspan="2">구분</th><th>계획내용</th></tr>
<tr><td rowspan="8">복합</td><td rowspan="8">복합1</td><td rowspan="2">산업시설</td><td>허용용도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td><td>•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
• 지식산업센터 및 그에 따른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조업 제외)
※ 해당업종: 산업단지 유치업종계획에 부합하는 업종
- J5821, J5822, J6201, J6202, J6209, J6311, J6399, M7011, M7012, M7211, M7212, M7291, M7292, M7320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연구소에 한함)</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입주제한업종표에 기재된 업종</td></tr>
<tr><td rowspan="2">지원시설</td><td>허용용도
(건축 연면적의 50% 미만)</td><td>•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주거시설(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
- 제1,2종 근린생활시설(2층이하)[1][2]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판매시설[3]</td></tr>
<tr><td>불허용도</td><td>•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td></tr>
<tr><td colspan="2">건폐율</td><td>• 60% 이하</td></tr>
<tr><td colspan="2">용적률</td><td>• 330% 이하[4]</td></tr>
<tr><td colspan="2">층수(높이)</td><td>• 10층 이하(40m 이하)</td></tr>
<tr><td colspan="2">배치</td><td>•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
- 녹지변에 저층(7F이하)으로 배치(권장)</td></tr>
<tr><td colspan="2">형태</td><td>• 옥상정원 설치 권장
- 조경, 잔디,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권장</td></tr>
<tr><td colspan="2">대지안의 조경</td><td>•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 중로 2류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 수변공원의 보행연계 강화 및 종사자의 교류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td></tr>
<tr><td colspan="2">색채</td><td>•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td></tr>
<tr><td colspan="2">건축선[5]</td><td>• 건축한계선
- 중로 2류변 : 5m
- 수변공원변 : 3m
- 지원시설변 : 5m</td></tr>
<tr><td colspan="2"></td><td>• 벽면한계선 : 5m</td></tr>
</table>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금지시설 제외

1)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3) 판매시설은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하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제외
4) 지원시설로서 주거시설(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포함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4항에 따른 용적률 적용(단, 기숙사 제외)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5차)결과 준용

3)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지원1	용도	허용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층수(높이)	• 12층 이하(48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 - 천호대로변으로부터 10m이격	
		형태	• 옥상정원 설치 권장 - 조경, 잔디,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권장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 각종 소음 및 공해의 완충작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천호대로변 공개공지 위치에 주로 조성하고 그 외 면적은 중로변에 조성 • 중로 1류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 10m - 중로1류 도로변 : 5m - 산업시설변 : 5m	
		기타	• 획지분할 가능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금지시설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지원	지원2	용도	허용용도	• 준공업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 교육연구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에 한함) - 의료시설(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330% 이하	
		층수(높이)	• 10층 이하(40m 이하)	
		배치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둘 이상의 도로에 면하고 있을 경우 폭원이 넓은 도로변 - 천호대로변으로부터 10m이격	
		형태	• 옥상정원 설치 권장 - 조경, 잔디,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권장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 중로 2류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는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 보행연계 강화 및 종사자의 교류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보행통로 조성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중로 2류변 : 5m - 중로 3류변 : 5m - 복합시설변 : 5m - 수변공원변 : 3m	
			• 벽면한계선 : 5m	
		기타	• 획지분할 가능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4)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주	주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의 부속용도는 주차장 연면적의 30% 이내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운동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세차장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층수	• 5층 이하	
		배치	-	
		형태	• 옥외주차장 조성 시 생태주차장(50% 이상) 조성 또는 투수성 포장재(전체 50% 이상) 사용을 권장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확보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름	
		색채	• 건축물의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계통을 사용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천호대로변 : 10m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옥외골프연습장 불허,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동·식물원 제외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산업	산업 1~3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 단, 보안을 요하는 건축물은 제외
		공공보행통로	• 바닥높이는 인접한 보도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내 표시된 차량출입 권장지점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2) 복합 ·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복합, 지원	복합1, 지원1~2	담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인접대지와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의 안전을 위한 담장 시설물 설치 가능
		공공보행통로	• 바닥높이는 인접한 보도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면내 표시된 차량출입 권장지점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심의 의결 내용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의 120% 이상을 설치하도록 함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차량출입시 운전자의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3) 주차장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주	주1	담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단, 인접대지와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의 안전을 위한 담장 시설물 설치가능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제외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음
		보행자 동선	• 보행자 출입구의 설치는 이용자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인접한 시설들과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권장

11. 관계도서는 강동구 일자리정책과(02-3425-8703)와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설계부(02-3410-759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2. 관계도면: [붙임3]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산업단지 내 편입토지조서(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1	기정	상일동	12-6	도로	118	118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2	기정	상일동	12-8	도로	99	99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3	기정	상일동	362-9	답	881	881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아파트 116-1103	1/1				-
	변경	상일동	362-9	답	881	88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	기정	상일동	399-12	구거	78	78	서울특별시		1/1				변경없음
5	기정	상일동	400-4	답	3,014	3,01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6	기정	상일동	403-9	잡종지	6	6	박수정	서울 강동구 성내동 43-1	1/1				-
	변경	상일동	403-9	잡종지	6	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7	기정	상일동	403-14	전	4,855	4,855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8	기정	상일동	404	전	3,533	3,533	최영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오리길 95-5	1/1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서귀동)	근저당권	-
										오비맥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2, 10층(역삼동, 화인타워)	근저당권	
										이순범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광로294번길 70-12(상일동)	근저당권	
										박영님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동진남로 401-15	근저당권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근저당권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1	근저당권	
										김귀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33, 205동 301호 (마북동,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창신동금융센터)	근저당권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서귀동)	지상권	
	변경	상일동	404	전	3,533	3,53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9	기정	상일동	404-2	전	190	190	최영호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오리길 95-5	1/1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칠십리로 44(서귀동)	근저당권	-
										오비맥주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72, 10층(역삼동, 화인타워)	근저당권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2-12	근저당권	
										롯데칠성음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2-1	근저당권	
										김귀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원로42번길 33, 205동 301호 (마북동, 연원마을쉐르빌아파트)	근저당권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0 (태평로2가) (창신동금융센터)	근저당권	
										서귀포수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667-6	지상권	
	변경	상일동	404-2	전	190	19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10	기정	상일동	404-3	대	298	298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11	기정	상일동	404-4	도로	32	3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12	기정	상일동	405	잡종지	5,692	5,692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1/1				변경없음
13	기정	상일동	405-2	전	1,653	1,653	박정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235-25	1/1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단대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05-2	전	1,653	1,65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14	기정	상일동	411	전	1,025	1,025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15	기정	상일동	411-2	전	16	1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16	기정	상일동	411-3	전	1,772	1,772	이민규	하남시 초일동 314-1	1/1				-
	변경	상일동	411-3	전	1,772	1,77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17	기정	상일동	411-4	임야	121	121	이민규	하남시 초일동 314-1	1/1				-
	변경	상일동	411-4	임야	121	12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18	기정	상일동	412	대	656	65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19	기정	상일동	412-2	대	330	33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20	기정	상일동	412-3	도로	80	8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21	기정	상일동	412-4	도로	28	28	강동구	-	1/1				변경없음
22	기정	상일동	413	전	1,322	1,322	한영복	서울 광진구 중곡동 74-77	1/1				-
	변경	상일동	413	전	1,322	1,32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3	기정	상일동	413-1	도로	264	264	강동구	-	1/1				-
	변경	상일동	413-1	도로	264	26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4	기정	상일동	413-2	전	602	602	윤길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35(중곡동)	1/1				-
	변경	상일동	413-2	전	602	60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5	기정	상일동	414	임야	8,347	8,347	강천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7길 7 (신정동)	1/2	신목신용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217(신정동, 신협빌딩)	근저당권	-
							박양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12동 1203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1/2				
	변경	상일동	414	임야	8,347	8,34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6	기정	상일동	415	전	3,540	3,540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변경	상일동	415	전	3,540	3,54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7	기정	상일동	416-1	전	1,582	1,582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16-1	전	1,582	1,58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8	기정	상일동	416-2	전	1,713	1,713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16-2	전	1,713	1,71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29	기정	상일동	417-1	전	909	909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17-1	전	909	90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0	기정	상일동	417-2	전	862	862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17-2	전	862	862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1	기정	상일동	418-1	전	469	469	김정태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 갤러리아팰리스 에이-3106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신사동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18-1	전	469	46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2	기정	상일동	418-2	답	3,993	3,993	장수복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301-1(신사동)	1/1				-
	변경	상일동	418-2	답	3,993	3,99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3	기정	상일동	419-1	잡종지	2,407	2,407	강릉유씨 대종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일동 324	1/1				-
	변경	상일동	419-1	잡종지	2,407	2,40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4	기정	상일동	419-2	전	1,461	1,461	김두영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 리센츠 251-2903	1/1				-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변경	상일동	419-2	전	1,461	1,46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5	기정	상일동	420	답	3,986	3,986	김억만	서울 성동구 광장동287-5	1/1				-
	변경	상일동	420	답	3,986	3,98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36	기정	상일동	420-2	답	1	1	강동구	-					변경없음
37	기정	상일동	421-1	답	66	6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38	기정	상일동	421-4	답	367	36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39	기정	상일동	421-5	전	760	760	김정태	서울 송파구 신천동 7-19 시그마타워아파트 1401	1/1				-
	변경	상일동	421-5	전	760	76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0	기정	상일동	421-6	답	826	826	이승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34길 29, 101동 1405호(이촌동, 현대한강아파트)	1/2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20(충정로1가) (명일동지점)	근저당권	-
							이재순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대죽길 38-15	1/2				
	변경	상일동	421-6	답	826	826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1	기정	상일동	421-7	답	1300	1,300	정연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2 덕소아이파크 102-404	1/1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압구정역지점)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21-7	답	1300	1,30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2	기정	상일동	421-8	도로	6,247	6,247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43	기정	상일동	421-10	답	1	1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44	기정	상일동	421-12	답	234	234	안홍범	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70, 522동 504호(야당동,한빛마을5단지 캐슬앤칸타빌)	1/1				-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변경	상일동	421-12	답	234	23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5	기정	상일동	421-14	답	374	37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변경없음
46	기정	상일동	421-17	답	3,759	3,759	이재환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아파트 116-1103	1/1				-
	변경	상일동	421-17	답	3,759	3,75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7	기정	상일동	421-18	답	1,489	1,489	신슬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30, 612동 1004호(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331/1489				-
							홍남숙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7길 32, 101동 303호(목동, 목동이편한세상아파트)	579/148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579/1489				
	변경	상일동	421-18	답	1,489	1,48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8	기정	상일동	423-3	답	94	94	이재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아파트 116-1103	1/1				-
	변경	상일동	423-3	답	94	94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49	기정	상일동	423-5	대	99	99	이재환	경기도 하남시 창우동 520 은행쌍용아파트 116-1103	1/1				-
	변경	상일동	423-5	대	99	9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50	기정	상일동	424	답	333	333	이관석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197번길 62 (읍내동)	1/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포일동) (세종대전금산지사)	근저당권	-
	변경	상일동	424	답	333	333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권리관계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51	기정	상일동	425	답	1,937	1937	김평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4동 3802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484/1937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논현동지점)	근저당권	-
							신승미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252번길 50, 1405동 4003호(송도동, 송도더샵 퍼스트파크)	363/1937	주식회사 전북은행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지상권	
							이재홍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2동 3102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606/1937				
							조홍래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1503번길 21, 1003동 1904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484/1937				
	변경	상일동	425	답	1,937	1937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52	기정	상일동	425-1	전	351	351	강동구	-	1/1				변경없음
53	기정	상일동	425-17	전	68	68	강동구	-	1/1				변경없음
54	기정	상일동	425-21	하천	268	268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55	기정	상일동	산12-7	임야	862	862	풍천임씨죽애공파종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53-3	1/1				변경없음
56	기정	상일동	산12-5	도로	3,254	3,254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57	기정	상일동	산12-6	임야	89	89	풍천임씨죽애공파종회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353-3	1/1				-
	변경	상일동	산12-6	임야	89	89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1				소유자 변경

※ 토지편입현황 총괄면적(78.713㎡)은 공부상 면적의 합계이며, 산업단지 면적(78.144㎡)은 지적 분할측량 결과로서 상이함

□ 산업단지 외 진입도로 편입토지조서(변경)

■ 중(집)1-441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1	기정	상일동	360-5	도로	22	14	국토교통부	-	1/1				-
	변경	상일동	360-5	도로	9	-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360-16	도로	13	13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편입
2	기정	상일동	360-10	도로	475	70	국토교통부	-	1/1				-
	변경	상일동	360-10	도로	406	-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360-17	도로	69	69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편입
3	기정	상일동	360-13	도로	12	12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4	기정	상일동	360-14	도로	402	212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5	기정	상일동	425-2	하천	2,246	13	서울특별시	-	1/1				-
	변경	상일동	425-2	하천	2,232	-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25-24	하천	14	14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편입
6	기정	상일동	425-16	하천	197	197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7	기정	상일동	425-18	하천	4	4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8	기정	상일동	425-6	하천	227	227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9	기정	상일동	425-7	하천	1,914	16	서울특별시	-	1/1				-
	변경	상일동	425-7	하천	1,867	-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25-26	하천	16	16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편입
10	기정	상일동	425-19	하천	192	189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11	기정	상일동	425-23	도로	141	141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12	기정	상일동	427-11	잡	93	1	강동구	-	1/1				-
	변경	상일동	427-11	잡	92	-	강동구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27-15	잡	1	1	강동구	-	1/1				분할되어 편입
13	기정	상일동	427-14	잡	1	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1/1				변경없음
14	기정	상일동	432-6	답	339	26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
	변경	상일동	432-6	답	314	-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32-21	답	25	25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분할되어 편입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5	기정	상일동	432-18	답	63	63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변경없음
16	기정	상일동	432-19	답	25	25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변경없음
17	기정	상일동	432-7	도로	103	95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18	기정	상일동	432-20	도로	40	1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19	기정	상일동	433-8	답	1	1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변경없음
20	기정	상일동	433-9	답	544	505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변경없음
21	기정	상일동	433-10	답	21	21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22	기정	상일동	435-11	하천	15	15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 소(국)1-210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기정	상일동	360-14	도로	402	190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2	기정	상일동	360-15	도로	14	2	국토교통부	-	1/1				-
	변경	상일동	360-15	도로	12	-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360-18	도로	2	2	국토교통부	-	1/1				분할되어 편입
3	기정	상일동	425-7	하천	1,914	32	서울특별시	-	1/1				-
	변경	상일동	425-7	하천	1,867	-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25-25	하천	31	31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편입
4	기정	상일동	425-19	하천	192	3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5	기정	상일동	425-20	하천	18	18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6	기정	상일동	425-12	하천	18	18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7	기정	상일동	432-7	도로	103	8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8	기정	상일동	432-9	도로	5	5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9	기정	상일동	432-20	도로	40	39	국토교통부	-	1/1				변경없음
10	기정	상일동	433-3	답	176	24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1/1				-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변경	상일동	433-3	답	152	-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33-11	답	24	24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분할되어 편입
11	기정	상일동	433-6	답	267	1	서울특별시	-	1/1				-
	변경	상일동	433-6	답	266	-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제척
	변경	상일동	433-12	답	1	1	서울특별시	-	1/1				분할되어 편입
12	기정	상일동	433-9	답	544	39	이경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2로 68, 204동 1404호(대화동, 대화마을2단지아파트)	1/1				변경없음
13	기정	상일동	435-13	하천	41	41	서울특별시	-	1/1				변경없음

■ 소(국)2-220 (변경)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1	기정	상일동	2-3	대	330	1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일산장항지점)	근저당권	
	변경	상일동	2-3	대	330	1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1/1	서부농업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513(춘궁동)(감북지점)	근저당권	
2	기정	상일동	2-7	도로	27	27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일산장항지점)	근저당권	
	변경	상일동	2-7	도로	27	27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서부농업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513(춘궁동)(감북지점)	근저당권	
3	기정	상일동	11-1	전	1,020	40	김용철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청옥로 220	1/1				
	변경	상일동	11-1	전	1,020	40	김봉수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77번길 107	1/2				
							박민임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77번길 107	1/2				
4	기정	상일동	12	전	2,170	180	김익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12동 102호 (잠실동,잠실엘스)	1/2				변경없음
							김정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03동 102호 (잠실동,리센츠)	1/2				

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	편입	성명	주소	공유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비고
5	기정	상일동	12-3	도로	25,705	160	국토교통부		1/1				변경없음
6	기정	상일동	12-4	전	7,487	1,263	김희춘	서울 종로구 원서동 136-5	1/1				변경없음
7	기정	상일동	11-7	전	34	2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1/1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일산장항지점)	근저당권	변경없음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79 (을지로2가)	지상권	
	변경	상일동	11-7	전	34	2	김용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로10길 51(삼전동)	1/1	서부농업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513(춘궁동)(감북지점)	근저당권	
										서부농업협동조합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513(춘궁동)(감북지점)	지상권	

[붙임2]

□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변경)

가.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조서 총괄

1) 무상귀속(사업시행자) 총괄 (변경)

(1) 지구내 (변경없음)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고
합계	11	10,776	
전	2	419	
답	1	1	
도로	6	10,010	
임야	-	-	
잡	-	-	
대	-	-	
구거	1	78	
천	1	268	

※ 전·답·구 : 지구내 용수 또는 오수 배수로 이용
※ 도 로 : 지구 관통도로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연결도로
※ 하 천 : 법면으로 이용

(2) 지구외 (변경)

구 분	필지수(개)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3	24	1,745	1,743	
답	2	2	22	22	
도로	10	10	949	947	
잡종지	1	1	1	1	
천	10	11	773	773	

2) 대체시설 총괄 (변경없음)

구 분	연장(m)	면적(㎡)	비 고
합 계	-	25,181 (29,131)	○ ( )는 지구외 포함한 면적임
도 로	880 (247)	12,633 (3,950)	○ ( )는 지구외 도로
공 원	-	5,157	○ 소공원 1개소 ○ 저류시설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	7,391	○ 경관녹지 4개소
상하수도	2,370	-	○ 우수, 오수, 상수도

※ 주 저류시설은 공원과 중복결정으로 면적에서 제외(A=1,436㎡)

나. 대체시설물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 (변경)

1) 시행할 자 : (기정)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황상하

2)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다.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 서울특별시장 및 강동구청장 (변경없음)

라. 무상귀속 및 대체공공시설(변경) 조서(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 총괄(변경없음)

▌ 지구내 (변경없음)

(단위 : 필지, ㎡)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11	10,776	2	9,501	4	563	5	712
전	2	419	-	-	-	-	2	419
답	1	1	-	-	-	-	1	1
도로	6	10,010	2	9,501	2	217	2	292
임야	-	-	-	-	-	-	-	-
잡	-	-	-	-	-	-	-	-

대	-	-	-	-	-	-	-	-
구거	1	78	-	-	1	78	-	-
천	1	268	-	-	1	268	-	-

▌ 지구외 (변경)

■ 기정

(단위 : 필지, ㎡)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23	1,745	11	953	11	791	1	1
답	2	22	-	-	2	22	-	-
도	10	949	10	949	-	-	-	-
잡종지	1	1	-	-	-	-	1	1
천	10	773	1	4	9	769	-	-

■ 변경

(단위 : 필지, ㎡)

구분	계		국유지		공유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합계	24	1,743	11	951	12	791	1	1
답	2	22	-	-	2	22	-	-
도	10	947	10	947	-	-	-	-
잡종지	1	1	-	-	-	-	1	1
천	10	773	1	4	10	769	-	-

2) 소관청별 무상귀속 토지조서(변경)

(1) 국(국토교통부)

– 지구내 (변경없음)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9,501	9,501	-	9,501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1-8	도	6,247	6,247	-	6,247
2	기정	강동구 상일동	산12-5	도	3,254	3,254	-	3,254

– 지구외 (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26,496	951	-	951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12-3	도	25,705	160	-	160
2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0-5	도	22	14	-	14
	변경	강동구 상일동	360-16	도	13	13	-	13
3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0-10	도	475	70	-	70
	변경	강동구 상일동	360-17	도	69	69	-	69
4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0-13	도	12	12	-	12
5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0-14	도	402	402	-	402
6	기정	강동구 상일동	360-15	도	14	2	-	2
	변경	강동구 상일동	360-18	도	2	2	-	2
7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8	천	4	4	-	4
8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23	도	141	141	-	141
9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2-7	도	103	103	-	103
10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2-9	도	5	5	-	5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1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2-20	도	40	40	-	40

(2) 서울특별시

- 지구내 (변경없음)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563	563	-	563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12-6	도	118	118	-	118
2	기정	강동구 상일동	12-8	도	99	99	-	99
3	기정	강동구 상일동	399-12	구	78	78	-	78
4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21	천	268	268	-	268

- 지구외 (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791	791	-	791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2	천	2,246	13	-	13
	변경	강동구 상일동	425-24	천	14	14	-	14
2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6	천	227	227	-	227
3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7	천	1,914	48	-	48
	변경	강동구 상일동	425-25	천	31	31	-	31
	변경	강동구 상일동	425-26	천	16	16	-	16
4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2	천	18	18	-	18
5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6	천	197	197	-	197
6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9	천	192	192	-	192
7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20	천	18	18	-	18
8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3-6	답	267	1	-	1
	변경	강동구 상일동	433-12	답	1	1	-	1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9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3-10	답	21	21	-	21
10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5-11	천	15	15	-	15
1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35-13	천	41	41	-	41

(3) 강동구

- 지구내 (변경없음)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712	712	-	712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12-4	도	28	28	-	28
2	기정	강동구 상일동	413-1	도	264	264	-	264
3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0-2	답	1	1	-	1
4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	전	351	351	-	351
5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5-17	전	68	68	-	68

- 지구외 (변경)

일련번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유 무 상(㎡)	
					공부면적	편입면적	유상	무상
합 계					93	1	-	1
1	기정	강동구 상일동	427-11	잡	93	1	-	1
	변경	강동구 상일동	427-15	잡	1	1	-	1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조서(변경없음)

(1) 도로(변경없음)

- 지구내(변경없음)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일반도로	중로	5	880	12,633	-	-	-	1	310	5,526	4	570	7,107

- 지구외(변경없음)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노선수(개소)	연장(m)	면적(㎡)
합계	3	247	3,950	2	103	2,274	1	144	1,676			
중 로	1	77	1,858	1	77	1,858	-	-	-	-	-	
소 로	2	170	2,092	1	26	416	1	144	1,676	-	-	-

(2) 공원(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5,157	1개소
기정	19	공원	소공원	상일동 425번지 일원	5,157	저류지 중복(1,436㎡)

(3) 녹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비고
합 계				-	7,391	4개소
기정	1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산12-1번지 일원	3,431	-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14번지 일원	2,470	-
기정	3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421-8번지 일원	809	-
기정	4	녹지	경관녹지	상일동 362-6번지 일원	681	-

(4) 유수지(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상일동 425번지 일원	1,436	소공원 중복(1,436㎡)

3)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지장유무 : 없음

4)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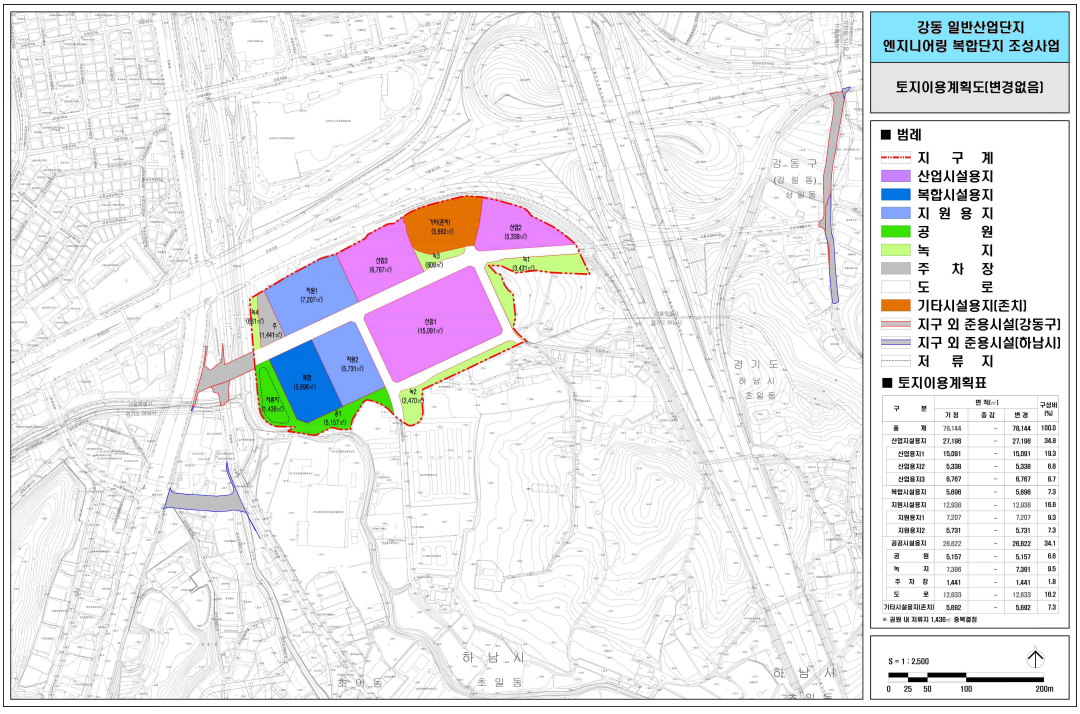
5)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변경없음)

구 분	연장(m)	면 적(㎡)	비 고
합 계	-	25,181 (29,131)	○ ( )는 지구외 포함한 면적임
도 로	880 (247)	12,633 (3,950)	○ ( )는 지구외 도로
공 원	-	5,157	○ 소공원 1개소 ○ 저류시설 1개소 중복결정
녹 지	-	7,391	○ 경관녹지 4개소
상 하 수 도	2,370	-	○ 우수, 오수, 상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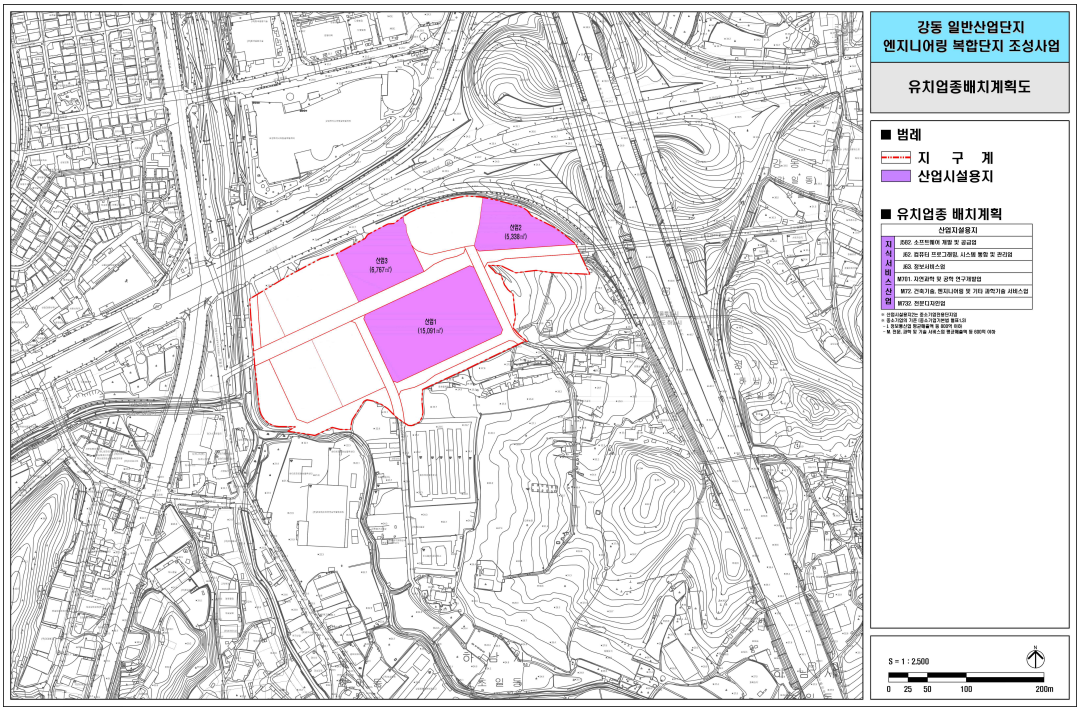
주) 저류시설은 공원과 중복결정으로 면적에서 제외(A=1,436㎡)

[붙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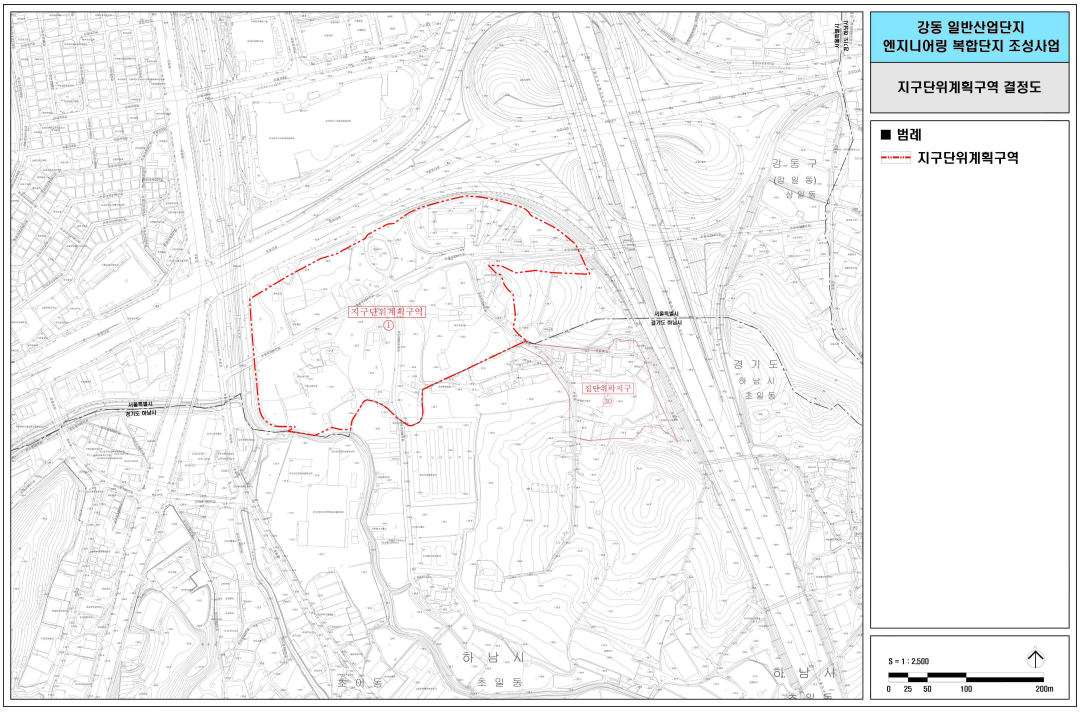
□ 강동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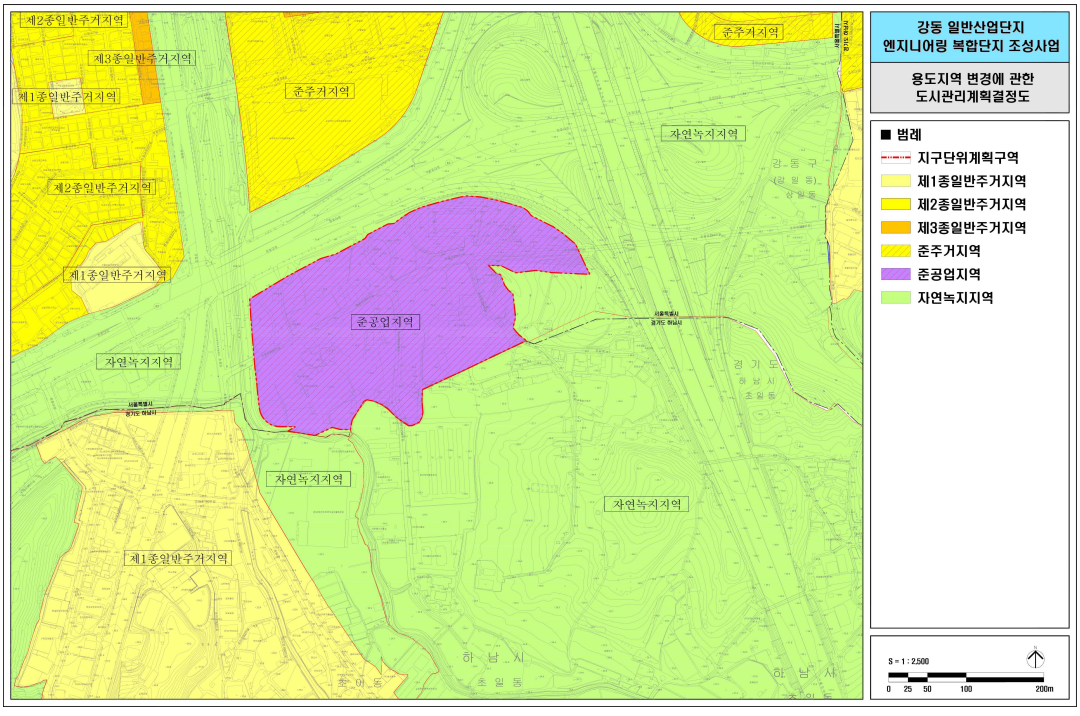
□ 강동일반산업단지 유치업종배치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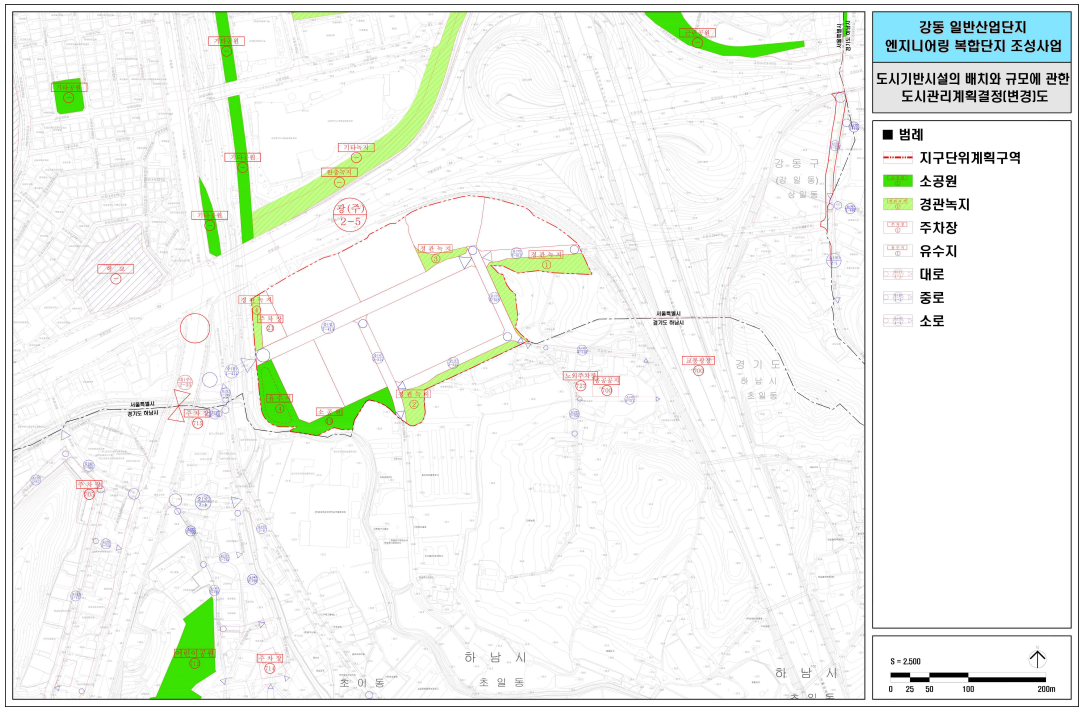
□ 강동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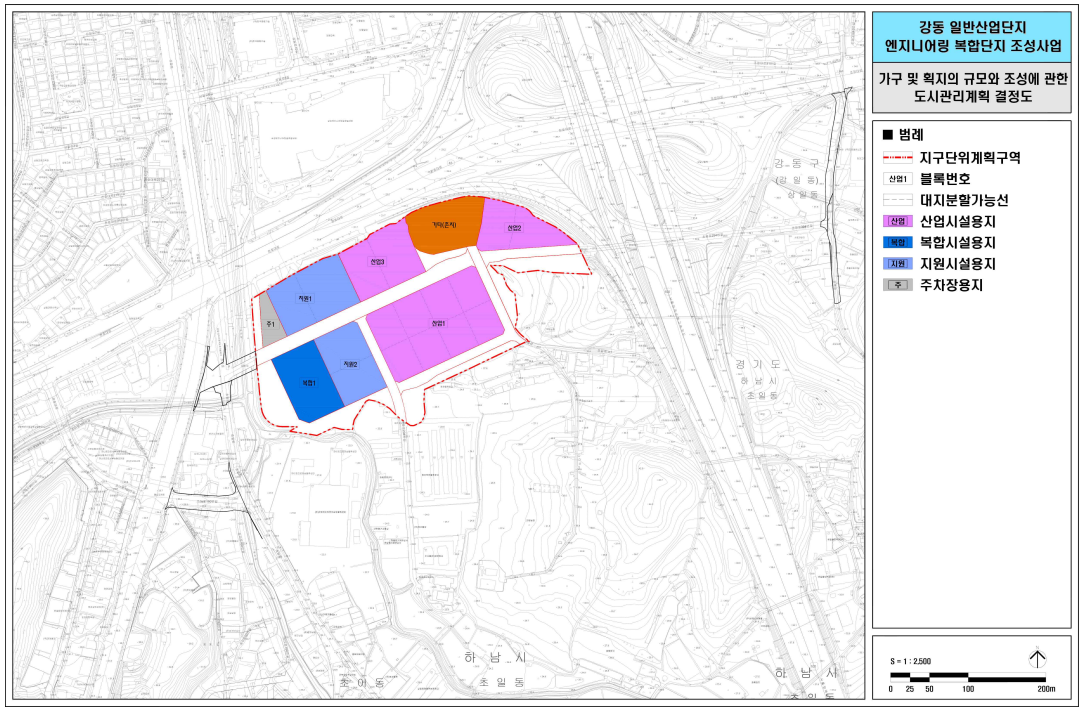
□ 강동일반산업단지 용도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변경없음)



□ 강동일반산업단지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강동일반산업단지 가구 및 획지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강동구고시 제2025-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3.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9호(2016.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5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36호(2017.7.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1호(2018.1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43(2019.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53호(2021.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12.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7호(2023.2.2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4-35호(2024.3.21.)로 실시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4-202호(2024.11.28.)로 실시계획 변경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67-18~397-46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천호재정비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개설(소로2-16)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폭 8~10m, 연장 550m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명칭 : 강동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별도 첨부(변경)
○ 변경사유 : 편입되는 지장물 및 소유자 변경, 주소 등 오기사항 정정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8) 조합 소유 토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강동구에 무상으로 귀속됨
9) 위치도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0)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1)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과(☎02-3425-6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 업 명 : 천호재정비 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소로2-16) 개설 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조합명: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변경없음	358	대	652.5	0	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 7*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주식회사 **저축은행	서울시 강남구테헤란로1**,	
									김**	구리시 체육관로 6*	
2	변경없음	367-18	도	1493.9	1493.9	강동구					
3	변경없음	375	도	378.1	378.1	서울시					
4	변경없음	362-71	대	1.1	1.1	주식회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은행	서울특별시 중고 소공로 **	
5	변경없음	362-72	대	5.1	5.1	이**	서울시 강동구 **길 6*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6	변경없음	362-78	대	0.7	0.7	강**	서울시 강*****픽로 8*길 11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7	변경없음	362-73	대	17.5	17.5	이**	서울시 중****역로 18				
						유**	서울시 중랑구영원역로 18				
8	당초	362-74	대	39.8	39.8	안**	서울시 강동****로 7*길 1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은행	서울시 중구을*로 6*	
	변경							-			
9	변경없음	362-75	도	16.5	16.5	강동구					
10	당초	362-76	대	55.1	55.1	김**	서울시 강남구 압**동 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은행	서울시 중구 태***가 1**	
	변경							-			
11	당초	362-77	대	86.5	86.5	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가 2**	
						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가 2**	
	변경					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			
						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4*	-			
12	변경없음	382-44	도	47.0	47.0	강동구					
13	변경없음	382-45	도	40.0	40.0	서울시					
14	변경없음	382-43	대	61.0	61.0	선**	서울시 강동구 구**로 3*길 4*				

연번	구분	소재지	토 지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1*				
						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순환로 2*0				
15	변경없음	382-42	대	72.0	72.0	김**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소*로 5*	
						임**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길 8*-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소*로 5*	
16	당초	382-46	잡	114.0	114.0	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6**-1*				
	변경					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번길 4*				
17	변경없음	382-41	대	36.0	36.0	이**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				
18	변경없음	382-40	대	28.0	28.0	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19	당초	382-39	대	35.0	35.0	김**	서울시 강동구 길동 1-1				
	변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산1-*				
20	변경없음	386-27	대	31.0	31.0	강**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2*	

연번	구분	소재지	토 지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1	변경없음	386-28	도	22.0	22.0	강동구					
22	변경없음	386-26	잡	20.0	20.0	강**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길**	
23	당초	386-25	대	27.0	27.0	윤**	경기도 광명시 기****번길 8				
	변경					서울****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				
24	변경없음	387-54	대	23.0	23.0	황**	서울시 송파구 가*로 4*길 15-**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김**	경기도 남양주시 다***로14*번길 67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길**	
25	변경없음	387-55	도	6.0	6.0	최**	종로구 청진동 1**				
26	변경없음	387-58	대	23.0	23.0	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리 4**	근저당권설정	**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27	변경없음	387-60	대	26.0	26.0	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리 4**	근저당권설정	**신용 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28	변경없음	387-56	도	6.0	6.0	최**	종로구 청진동 1**				
29	변경없음	387-59	대	37.0	37.0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6				

연번	구분	소재지	토 지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이**	세종시 다정북로 1**				
30	변경없음	387-57	대	47.0	47.0	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31	변경없음	393-50	대	23.0	23.0	오**	천호동 3**-*				
32	변경없음	393-51	대	19.0	19.0	한국 **기술원	대전광역시 유*구 대*로 2**				
33	변경없음	393-49	도	31.0	31.0	국					
34	변경없음	359-7	대	238.6	3.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35	변경없음	374	도	1,130.5	36.3	강동구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36	변경없음	438-1	대	142.0	48.5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채무자 김**
37	변경없음	375-54	도	28.1	28.1	서울시					
38	변경없음	423-19	대	268.0	54.4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연번	구분	소재지	토 지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39	변경없음	423-262	도	29.0	29.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0	변경없음	423-56	대	69.0	6.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1	변경없음	423-263	도	66.0	21.3	강동구					
42	변경없음	423-247	도	2.0	2.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3	변경없음	423-78	대	130.0	35.4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4	변경없음	423-145	대	221.0	86.9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근저당권설정	****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동 4**-3*	채무자 전**
45	변경없음	423-1	도	193.0	12.7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6	변경없음	423-3	대	93.0	51.3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근저당권설정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로 3**	채무자 신**
47	변경없음	423-118	대	149.0	32.5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근저당권설정	**농업협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로 3**	채무자 임**
48	변경없음	423-85	도	210.0	3.0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49	변경없음	422-1	대	356.0	22.6	조합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				

연번	구분	소재지	토지					이해관계인			비고
			지목	면적(㎡)		소유자		권리의 종류	권리자		
				공부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50	변경없음	423-250	도	56.0	23.9	강동구					
51	변경없음	382-37	도	13.0	2.4	강동구					
52	변경없음	423-305	도	44.0	44.0	강동구					
53	변경없음	405-10	도	28	28	김**	성동구 용*동 4*-*				
						정**	강동구 **동 2**-*				
						권**	경기도 파주시 마**길 1**				
54	변경없음	397-402	도	5,427.0	1,030.0	강동구					
55	변경없음	399-62	도	4.0	4.0	서울시					
56	변경없음	398-12	도	119.0	119.0	조**	강서구 화*동 5*-6**	가압류	국	처분청 : **세무서장	
						조**	미합중국인디애나주포***				
						조**	미합중국 오하이오주 북미***드시웨***우가				
						조**	강서구 화*동 1***-*				

연번	구분	소재지	토 지					이해관계인			비 고
			지 목	면 적(㎡)		소 유 자		권리의 종류	권 리 자		
				공부상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조**	미합중국인***주포테****무엘슨가2***				
57	변경없음	398-13	도	93.0	93.0	김**	중랑구 망*동 5**-**				
						채**	경기도 남양주시 **읍 덕소로*번길 *				
						문**	경기도 광주시 중*면 산*리				
58	변경없음	397-469	대	16.0	16.0	고**	서울시 강남구 영**로 6**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곽**	서울시 강남구 영**로 6**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3*	

물 건 조 서

□ 사 업 명 : 천호재정비 촉진지구내(천호3구역) 도로(소로2-16) 개설 사업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조합명: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	당초	362-41	건물	연와조	124.43	16.5	㎡	이** 유**	서울시 중랑구영원역로 18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연와조	124.43	124.43	㎡						
2	당초	362-42	건물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155.60	53.0	㎡	안**	서울시 강동구올림픽로 **길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155.60	155.60	㎡			-			
			창고	판넬조, H:245㎝ x W:100㎝ x L:695㎝		1	식						
			계단1	철제, H:325㎝ x W:55㎝ x L:300㎝		1	식						
			계단2	철제, H:275㎝ x W:55㎝ x L:144㎝		1	식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가림막	철제판넬조, H:245㎝ x W:400㎝ x L:370㎝		1	식						
			화장실	판넬조, H:240㎝ x W:145㎝ x L:270㎝		1	식						
			보일러실	H:195㎝ x W:183㎝ x L:170㎝		1	식						
			가림막(2층)	판넬조, H:106㎝ x L:168㎝		1	식						
3	당초	362-47	건물	연와조, 세멘부록조	137.12	77.0	㎡	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연와조, 세멘부록조	137.12	137.12	㎡			-			
4	당초	362-48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345.30	292.0	㎡	최**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회***가 2**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345.30	345.30	㎡			-			
			베란다(2층)	샷시조, 슬라브조		8.40	㎡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베란다(3층)	샷시조, 폴리카보네이트조		8.40	㎡						
			베란다(4층)	샷시조, 폴리카보네이트조		10.90	㎡						
			옥탑 및 보일러실			22.00	㎡						
			주차장대문	철제, 275㎝ x 240㎝		1	식						
			차양막	판넬		2.20	㎡						
5	변경 없음	382-1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252.54	196.0	㎡	선**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당초					196.0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장**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로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벽돌조	252.54	252.54	㎡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장**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로				
			베란다(3층)	샷시조, 판넬조		9	㎡	선**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장** 김**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로				
			화장실			3	㎡	선**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창고	판넬조		3	㎡	선**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차양막	폴리카보네이트조		23	㎡	선**	부천시 원미구 상동 2**-**				
								김**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중앙로 1**-**				
6	당초	382-12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244.02	233.0	㎡	김** 임**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7길 8*-**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 5*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연와조	244.02	244.02	㎡	김** 임**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7길 8*-**				
			베란다(2층)	샷시조, 판넬조		14	㎡						
			베란다(3층)	샷시조, 판넬조		13	㎡						
			옥탑			21	㎡						
			대문	철제, 120㎝ x 160㎝		1	식	임**	서울시 강동구 상암로47길 8*-**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가림막(지붕)	판넬조, 155㎝ x 11m		1	식						
7	당초	382-8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145.45	53.0	㎡	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3*길 **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145.45	145.45	㎡						
			2층 확장 (부엌, 거실)	세멘벽돌조		6.21	㎡						
			대문	조적조, 철문 (H:2.9m)		1.5	㎡						
			주계단	철골조 (H:3.4m)		6.2	㎡						
			창고	조적조 (H:1.9m)		5.4	㎡						
			화장실	조적조 (H:1.9m)		4.3	㎡						
			창고 계단	조적조 (H:1.9m)		1.9	㎡						
			옥상계단	철골조		1.3	㎡						
			복도확장	철골조		7.4	㎡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보일러실	알루미늄 섀시 프레임		0.5	㎡						
			2층 복도 천막	천막		20	㎡						
			2층 복도 어닝(차양막)	SST 프레임, 폴리카보네이트		17	㎡						
			2층 복도 판넬(가림벽)	50T 센드위치판넬		14.6	㎡						
8	당초	382-7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경량철골조	199.24	44.0	㎡	조**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대로9길 2*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경량철골조	199.24	199.24	㎡						
			대문	철제 1,300*3,060mm 철제1,910*2,500mm (문주포함)		2	식						
			3층 판넬지붕	5,100*2,900mm 3,200*1,500mm 1,250*4,000mm		3	식						
			3층 주계단 차양막	1,250*3,000mm 1,030*1,800mm		2	식						
			3층 보일러실	630*860*2,030mm		0.54	㎡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성 명	주 소	
			3층 주계단	1식		4.1	㎡						
			3층 뒤편계단	1식		1.76	㎡						
			2층 확장(앞)			4	㎡						
			2층 확장(뒤)	3,750*800mm		3	㎡						
			옥외화장실			3	㎡						
			1층 창고	1,750*1,000mm		1.75	㎡						
			1층 지장물 (용도불명)	1,200*2,500mm		3	㎡						
			1층 확장(뒤)	3,300*1,120*2,200mm		3.696	㎡						
9	당초	382-1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163.21	42.0	㎡	김**	서울시 강동구 길동1-1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변경		건물	세멘벽돌조, 연와조	163.21	163.21	㎡		서울 강동구 길동 산1-*				
			부속건물	시멘트벽돌조	12.6	12.6	㎡						
			2층 거실 확장	4,700*1,500mm		7.05	㎡						
			대문	2,400*1,150*2,800mm (문주 포함) ※ (문주 제외 시) 철문: 2,150*2,100mm (두께 50mm)		1	식						
			보일러실	1단 목재 780*460*900mm 2단 유리 580*460*1,250mm		1	식						
			옥상계단	철제, 540*2,300*3,600mm		1	식						
			대문앞 조명등			1	식						
			양문형 철문	철제		1	식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10	변경 없음	386-19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65.41	50.0	㎡	강**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	
11	당초	386-11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245.46	2.0	㎡	강**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1***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	
	변경					3.0	㎡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2*	
										압류	서울 특별시 강동구		
12	당초	387-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174.86	54.0	㎡	황**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15-**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길 26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번길 67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174.86	174.86	㎡	황**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0길 15-**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김**)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길 26	
			계단			8	㎡						
			베란다			6	㎡						
			창고 및 담장	창고: 125cm*292cm*250cm 담장: 125cm*512cm*165cm		6	㎡	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1**번길 67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옥탑			5	㎡						
13	당초	387-2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421.57	83.0	㎡	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 4**호	근저당권설정	**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벽돌조	421.57	421.57	㎡	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봉** 4**호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주식****)	**신용협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로 2**	
			어닝	렉산 H:245㎝ x W:450㎝ x L:180㎝		1	식						
			창고	판넬 H:245㎝ x W:410㎝ x L:180㎝		1	식						
14	당초	387-27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45.30	48.0	㎡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36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이**	세종시 다정북로 1**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45.30	145.30	㎡	이**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1**				
			계단	570cm*415cm*108cm		1	식	이**	세종시 다정북로 1**				
			옥탑			15	㎡						
15	당초	387-24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50.93	18.0	㎡	이** 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 *길 3**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	채무자 이**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편입면적 또는 수량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성명	주소	
	변경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350.93	36.0	㎡	이** 이**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3*	근저당권설정 (채무자: 이**)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	
16	당초	393-8	건물	연와조	29.24	14.0	㎡	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6*				잔여 건축물 확대보상 수용
	변경		건물	연와조	29.24	29.24	㎡	오**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길 6*				
17	변경없음	393-20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세멘부록조	329.22	37.0	㎡	한국**기술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				
18	변경없음	397-3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1731.22	58.0	㎡	고** 곽**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	근저당권설정	주식회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	채무자 고**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25-739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76호(1982.04.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687호(1989.11.23.)로 공원조성계획 최초 결정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20호(2024.05.02.)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인왕산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종 로 구 청 장

1. 도시계획시설(공원)명 : 인왕산근린공원

2.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6 일대

3. 면 적: 238,168.00㎡

4. 조성계획 변경(안)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238,168.00㎡	238,168.00㎡	-
시설면적	35,165.11㎡	35,246.37㎡	증) 81.26㎡

※ 시설별 세부 변경사항은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참조

5.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6.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종로구 도시녹지과(☎02-2148-2835)

8. 본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인왕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종로구 청운동 7-6번지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238,168.00	35,165.11	12	1,584.93	2,377.37	184	238,168.00	35,246.37	12	1,671.49	2,443.62	184	
시설지구	소 계	238,168.00	35,165.11	12	1,584.93	2,377.37	184	238,168.00	35,246.37	12	1,671.49	2,443.62	184	
	청운지구	39,692.10	9,140.68	6	891.43	1,364.20	49	39,692.10	9,140.68	6	891.43	1,364.20	49	
	옥인지구	92,881.80	14,908.65	2	601.78	921.45	34	92,881.80	14,989.91	2	688.34	987.70	34	시설면적 증가 81.26㎡
	누상지구	24,396.90	2,713.54	1	21.00	21.00	36	24,396.90	2,713.54	1	21.00	21.00	36	
	무악지구	47,494.80	4,201.20	1	16.00	16.00	27	47,494.80	4,201.20	1	16.00	16.00	27	
	홍제지구	8,795.00	1,718.91	1	31.62	31.62	20	8,795.00	1,718.91	1	31.62	31.62	20	
	쌈지마당지구	24,907.40	2,482.13	1	23.10	23.10	18	24,907.40	2,482.13	1	23.10	23.10	18	
시설율 (법정 40%)		(35,165.11㎡ / 238,168㎡) × 100% = 14.76%						(35,246.37㎡ / 238,168㎡) × 100% = 14.80%						증) 0.04%
건폐율 (법정 10%)		(1,584.93㎡ / 238,168㎡) × 100% = 0.67%						(1,671.49㎡ / 238,168㎡) × 100% = 0.70%						증) 0.03%

나. 인왕산근린공원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8,168.00	35,165.11	12	1,584.93	2,377.37	184	238,168.00	35,246.37	12	1,671.49	2,443.62	184	
기반시설	소 계	25,062.92	25,062.92	-	-	-	-	25,086.42	25,086.42	-	-	-	-	증) 23.50㎡
	도 로	21,519.16	21,519.16	-	-	-	-	21,567.96	21,567.96	-	-	-	-	증) 48.80㎡
	광 장	3,543.76	3,543.76	-	-	-	-	3,518.46	3,518.46	-	-	-	-	감) 25.30㎡
조경시설		124.75	124.75	-	-	-	1	124.75	124.75	-	-	-	1	
휴양시설		1,999.54	1,999.54	-	-	-	103	1,974.74	1,974.74	-	-	-	103	감) 24.80㎡
유희시설		1,267.80	1,267.80	-	-	-	9	1,267.80	1,267.80	-	-	-	9	
운동시설		3,342.89	3,342.89	-	-	-	71	3,342.89	3,342.89	-	-	-	71	
교양시설		1,535.67	1,535.67	5	1,076.00	1,807.30	-	1,622.23	1,622.23	5	1,162.56	1,873.55	-	증) 86.56㎡
편익시설		1,831.54	1,831.54	7	508.93	570.07	-	1,827.54	1,827.54	7	508.93	570.07	-	감) 4.00㎡
관리시설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202,619.89		-	-	-	-	202,538.63	-					감) 81.26㎡

다.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세부조서

1) 총괄표(옥인지구)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계		92,881.80	14,908.65	2	601.78	921.45	34	92,881.80	14,989.91	2	688.34	987.70	34	
기반시설	소 계	11,751.21	11,751.21	-	-	-	-	11,774.71	11,774.71	-	-	-	-	증) 23.50㎡
	도 로	11,264.71	11,264.71	-	-	-	-	11,313.51	11,313.51	-	-	-	-	증) 48.80㎡
	광 장	486.50	486.50	-	-	-	-	461.20	461.20	-	-	-	-	감) 25.30㎡
조경시설		-	-	-	-	-	-	-	-	-	-	-	-	
휴양시설		724.50	724.50	-	-	-	22	699.70	699.70	-	-	-	22	감) 24.80㎡
유희시설		354.50	354.50	-	-	-	-	354.50	354.50	-	-	-	-	
운동시설		576.33	576.33	-	-	-	12	576.33	576.33	-	-	-	12	
교양시설		309.52	309.52	1	309.52	568.05	-	396.08	396.08	1	396.08	634.30	-	증) 86.56㎡
편익시설		1,192.59	1,192.59	1	292.26	353.40	-	1,188.59	1,188.59	1	292.26	353.40	-	감) 4.00㎡
관리시설		-	-	-	-	-	-	-	-	-	-	-	-	
녹지 및 기타		77,973.15	-	-	-	-	-	77,891.89	-	-	-	-	-	감) 81,26㎡

2) 시설별 조서(옥인지구)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92,881.80	14,908.65	철근콘	2	601.78	921.45	34			92,881.80	14,989.91	철근콘	2	688.34	987.70	34	증) 81.26㎡
기반시설	소 계			11,751.21	11,751.21								11,774.71	11,774,71						증) 23.50㎡
	도 로			11,264.71	11,264.71								11,313.51	11,313.51						증) 48.80㎡
	광장	가		486.50	486.50						가		461.20	461.20						감) 25.3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가-1	옥인동 179-1	(76.00)	(76.00)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2	옥인동 179-1	(192.00)	(192.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3	옥인동 179-1	(51.00)	(51.00)						
		가-4	옥인동 47-324	(167.50)	(167.50)						가-4	옥인동 47-324	(142.20)	(142.20)						감) 25.30㎡
휴양시설	소 계			724.50	724.50					22			699.70	699.70					22	감) 24.80㎡
	휴게소	나		724.50	724.50						나		699.70	699.70						감) 24.80㎡
		나-1	옥인동 산3-1	(367.00)	(367.00)						나-1	옥인동 산3-1	(367.00)	(367.00)						
		나-2	옥인동 179-1	(99.50)	(99.50)						나-2	옥인동 179-1	(99.50)	(99.5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나-3	옥인동 47-507	(85.40)	(85.40)						나-3	옥인동 47-507	(71.60)	(71.60)						감) 13.80㎡
		나-4	옥인동 47-630	(7.20)	(7.20)						나-4	옥인동 47-630	(36.20)	(36.20)						증) 29.00㎡
		나-5	옥인동 산1-12	(165.40)	(165.40)						나-5	옥인동 산1-12	(125.40)	(125.40)						감) 40.00㎡
	정자	①	어린이놀이터							1	①	어린이놀이터							1	
	파고라	②	쉼터							2	②	쉼터							2	
	평의자	③	쉼터							10	③	쉼터							10	
	등의자	④								9	④								9	
유희시설	소 계			354.50	354.50								354.50	354.50						
유희시설	어린이 놀이터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다	옥인동 179-1	354.50	354.50						
운동시설	소 계			576.33	576.33					12			576.33	576.33					12	
운동시설	체력 단련장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라	옥인동 179-1	175.00	175.0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다목적 운동장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마	옥인동 179-1	401.33	401.33						
	체력단련기구	⑤	전지역							12	⑤	전지역							12	
교양시설	소 계			309.52	309.52		1	309.52	568.05				396.08	396.08		1	396.08	634.30		증) 86.56㎡
	숲힐링센터	아	옥인동 47-324	309.52	309.52		1	309.52	568.05		아	옥인동 47-324	396.08	396.08		1	396.08	634.30		증) 86.56㎡
편익시설	소 계			1,192.59	1,192.59	3대	1	292.26	353.40				1,188.59	1,188.59	3대	1	292.26	353.40		감) 4.00㎡
	책쉼터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바	옥인동 산3-1	1,065.59	1,065.59		1	292.26	353.40		
	약수터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사	옥인동 179-1	94.00	94.00						
	주차장	자	신교동 2-120	33.00	33.00						자	신교동 2-120	29.00	29.00						감) 4.00㎡
녹지 및 기타				77,973.15									77,891.89							감) 81.26㎡

3) 도로조서(옥인지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3,176.96	11,264.71				
변경					3,176.26	11,313.31				
당초	소로	소 계			959.28	7,334.28				
변경					959.28	7,334.28				
당초		2	1	8.0	164.50	1,37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	
당초		2	2	8.0	395.93	3,821.7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1	7.0	32.00	224.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초		3	2	4.0	72.34	702.86	연결로	소로3-3	광장 가-2	
당초		3	3	4.0	138.78	668.4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	4	4.0	18.12	16.11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5	4.0	10.21	34.13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초		3	6	4.0	41.40	170.00	연결로	광장 가-2	소로2-1	
당초		3	7	4.0	72.00	288.00	산책로	소로2-1	산책로 22	
당초		3	8	2.5	14.00	35.00	진입로	소로3-1	공원경계	
당초	산책로	소 계			2,217.68	3,930.43				
변경					2,216.98	3,979.03				
당초			1	1.5	16.00	24.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2	1.5	62.00	93.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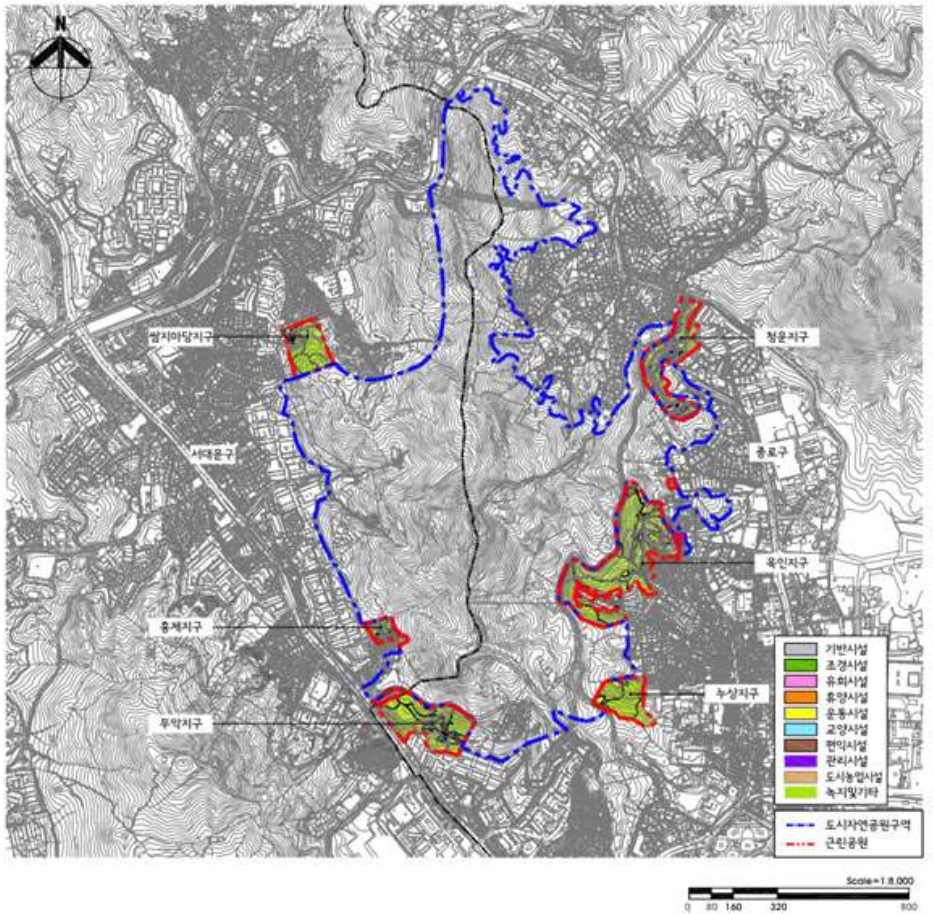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3	1.5	2.50	3.7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4	1.5	42.00	63.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	
당초			5	1.5	58.00	87.0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1	
당초			6	1.5	109.60	164.50	진입로	공원경계	쉼터 나-3	
당초			7	1.5	107.67	162.08	연결로	산책로 6	쉼터 나-1	
당초			8	1.5	128.31	194.62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14	
당초			9	1.5	125.90	189.35	산책로	산책로 6	산책로 6	
당초			10	1.5	15.50	23.25	연결로	산책로 9	광장 가-1	
당초			11	1.2	7.50	9.00	연결로	광장 가-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2	1.5	149.00	223.50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 13	
당초			13	1.5	59.64	40.56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9	
당초			14	1.5	179.50	269.25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15	1.5	10.00	15.00	연결로	산책로 15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6	1.5	19.00	28.50	산책로	소로 2-1	산책로 13	
당초			17	2.5	7.00	17.50	연결로	소로 2-1	어린이놀이터 다	
당초			18	1.5	53.48	80.74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1	
당초			19	1.5	13.00	19.50	산책로	산책로 13	산책로 13	
당초			20	1.5	60.17	89.09	산책로	산책로 14	소로 2-2	
당초			21	1.5	48.50	72.75	연결로	산책로 13	체력단련장 라	
당초			22	1.5	58.80	88.80	산책로	산책로 20	소로 2-2	
당초			23	1.5	19.50	29.25	산책로	소로 3-3	소로 2-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24	1.5	8.00	12.00	산책로	소로 3-4	산책로 23	
당초			25	1.5	69.50	104.2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4	
당초			26	1.5	123.02	268.06	연결로	산책로 28	다목적운동장 마	
당초			27	1.5	17.00	25.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8	1.5	84.01	428.91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29	3.0~2.0	118.76	294.69	산책로	산책로 28	소 2-2	
당초			30	2.5	4.00	10.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1	2.5	63.00	157.5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2	2.0	73.00	146.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3	1.5	72.50	133.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초			34	1.0	9.00	9.00	산책로	산책로 30	녹지	
당초			35	1.5	18.00	27.00	산책로	산책로 6	휴게소 나-3	
변경				1.5	21.00	32.00	산책로	산책로 6	휴게소 나-3	
당초			36	1.5	17.50	26.2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7	
변경				2.0	18.10	36.30	산책로	소로 3-3	산책로 37	
당초			37	1.5	45.30	67.90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 36	
변경				1.5~2.0	48.90	79.90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 36	
당초			38	2.4	4.60	11.00	산책로	산책로 37	숲힐링센터 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m)	면 적(㎡)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경				-	-	-	-	-	-	
당초			39	2.4~4.3	4.50	15.00	산책로	산책로 37	숲힐링센터 아	
변경				6.0~16.5	6.00	51.50	산책로	산책로 37	숲힐링센터 아	
당초			40	1.1~2.0	17.70	25.80	산책로	산책로 37	휴게소 나-3	
변경				1.1~2.0	17.40	29.70	산책로	산책로 37	휴게소 나-3	
당초			41	1.5	3.30	6.4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변경				-	-	-	-	-	-	
당초			42	1.3~2.4	3.50	7.0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변경				1.8~4.0	2.30	5.70	산책로	산책로 40	숲힐링센터 아	
당초			43	1.5	108.92	167.23	산책로	쉼터 나-1	바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당초)

인왕산근린공원(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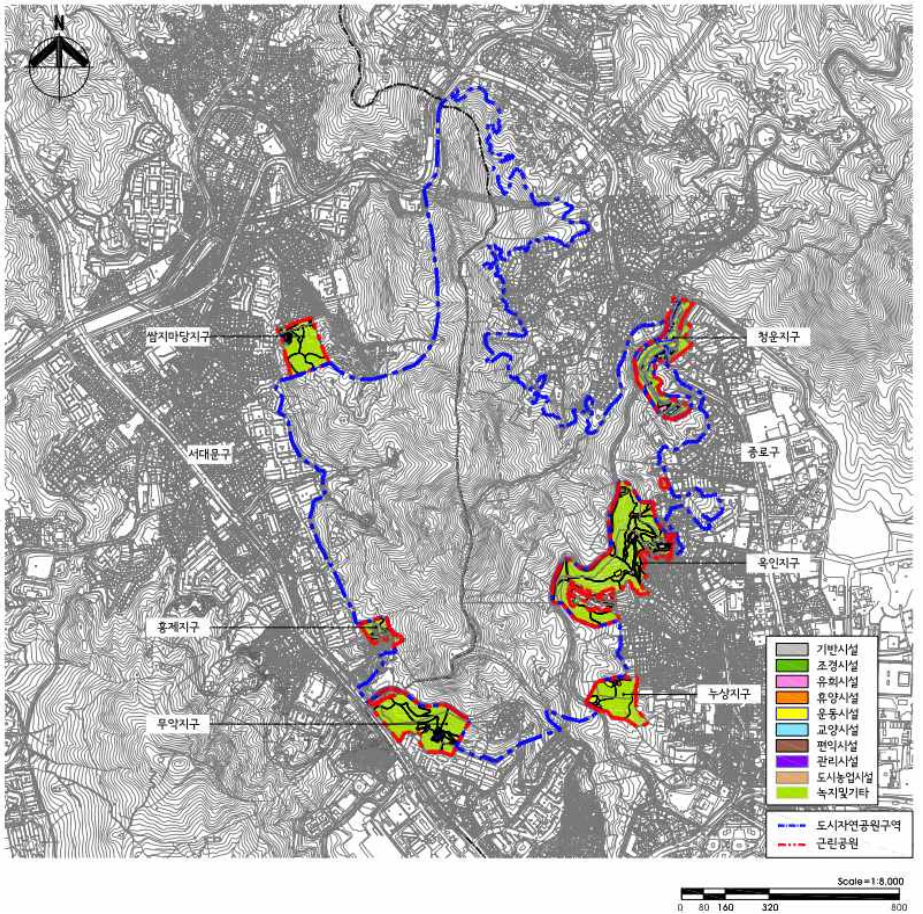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청운지구	옥인지구	누상지구	무악지구	중제지구	쌍지아당지구
부지 총 면적		238,168.00	39,692.10	92,881.80	24,396.90	47,494.80	8,795.00	24,907.40
사업 총 면적		35,165.11	9,140.68	14,908.65	2,713.54	4,201.20	1,718.91	2,482.13
기반시설	소계	25,062.92	5,721.31	11,751.21	1,500.04	3,009.43	972.58	2,108.35
	도로	21,519.16	4,893.31	11,264.71	964.04	2,596.27	295.40	1,505.43
	광장	3,543.76	828.00	486.50	536.00	413.16	677.18	602.92
조경시설		124.75	61.00	-	-	-	-	63.75
휴양시설		1,999.54	664.37	724.50	278.00	239.58	93.09	-
유희시설		1,267.80	757.70	354.50	-	-	-	155.60
운동시설		3,342.89	387.41	576.33	914.50	852.19	526.72	85.74
교양시설		1,535.67	1,226.15	309.52	-	-	-	-
편익시설		1,831.54	322.74	1,192.59	21.00	100.00	126.52	68.69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202,619.89	30,551.42	77,973.15	21,300.36	43,293.60	7,076.09	22,425.27
건축물	동수(동)	12	6	2	1	1	1	1
	바닥면적	1,584.93	891.43	601.78	21.00	16.00	31.62	23.10
	연면적	2,377.37	1,364.20	921.45	21.00	16.00	31.62	23.10
공작물(기)		184	49	34	36	27	20	18
비고		도시계획도로 383.00			도시계획도로 383.00			

* 공원시설율 : (35,165.11㎡ / 238,168.00㎡) × 100% = 14.76%
* 건폐율 : (1,584.93㎡ / 238,168.00㎡) × 100% = 0.67%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인왕산근린공원(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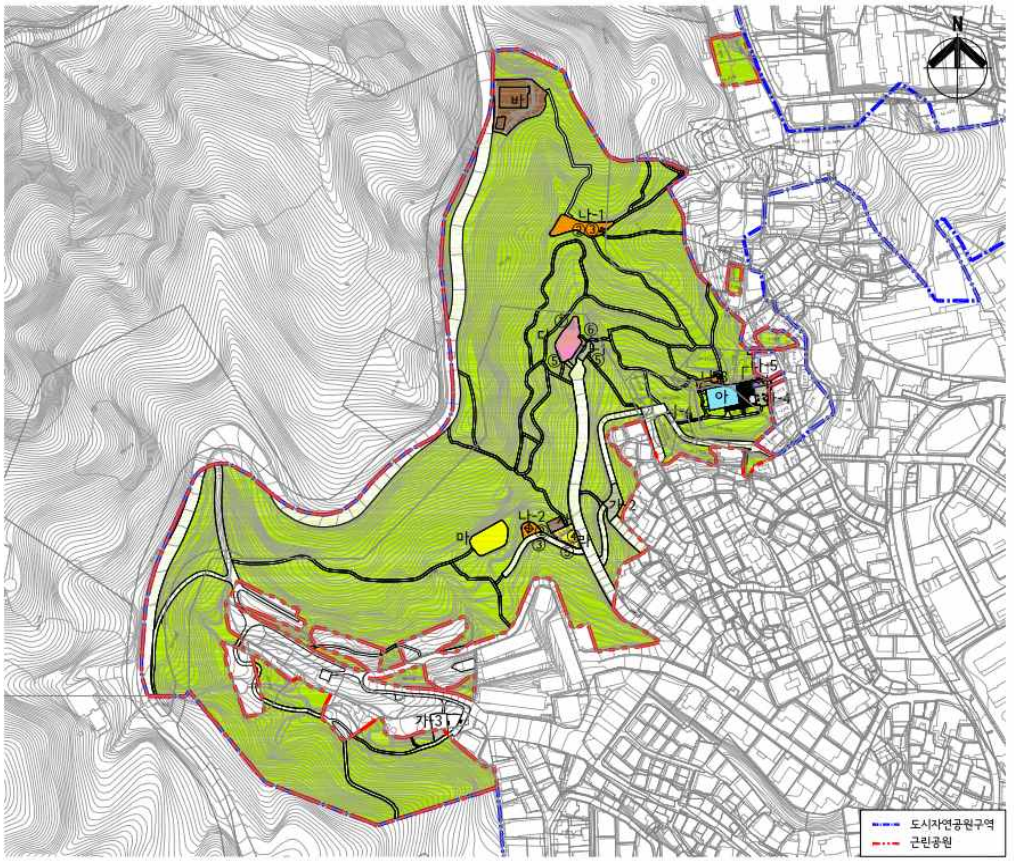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총계	청운지구	옥인지구	누상지구	무악지구	홍제지구	쌈지마당지구
부지 총 면적		238,168.00	39,692.10	92,881.80	24,396.90	47,494.80	8,795.00	24,907.40
시설 총 면적		35,246.37	9,140.68	14,989.91	2,713.54	4,201.20	1,718.91	2,482.13
기반시설	소계	25,086.42	5,721.31	11,774.71	1,500.04	3,009.43	972.58	2,108.35
	도로	21,567.96	4,893.31	11,313.51	964.04	2,596.27	295.40	1,505.43
	광장	3,518.46	828.00	461.20	536.00	413.16	677.18	602.92
조경시설		124.75	61.00	-	-	-	-	63.75
휴양시설		1,974.74	664.37	699.70	278.00	239.58	93.09	-
유희시설		1,267.80	757.70	354.50	-	-	-	155.60
운동시설		3,342.89	387.41	576.33	914.50	852.19	526.72	85.74
교양시설		1,622.23	1,226.15	396.08	-	-	-	-
편익시설		1,827.54	322.74	1,188.59	21.00	100.00	126.52	68.69
관리시설		-	-	-	-	-	-	-
녹지 및 기타		202,538.63	30,551.42	77,891.89	21,300.36	43,293.60	7,076.09	22,425.27
건축물	동수(동)	12	6	2	1	1	1	1
	바닥면적	1,671.49	891.43	688.34	21.00	16.00	31.62	23.10
	연면적	2,443.62	1,364.20	987.70	21.00	16.00	31.62	23.10
공작물(기)		184	49	34	36	27	20	18
비고		도시계획도로 383.00			도시계획도로 383.00			

* 공원시설율 : (35,246.37㎡ / 238,168.00㎡) × 100% = 14.80%
* 건폐율 : (1,671.49㎡ / 238,168.00㎡) × 100% = 0.70%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조성계획(당초)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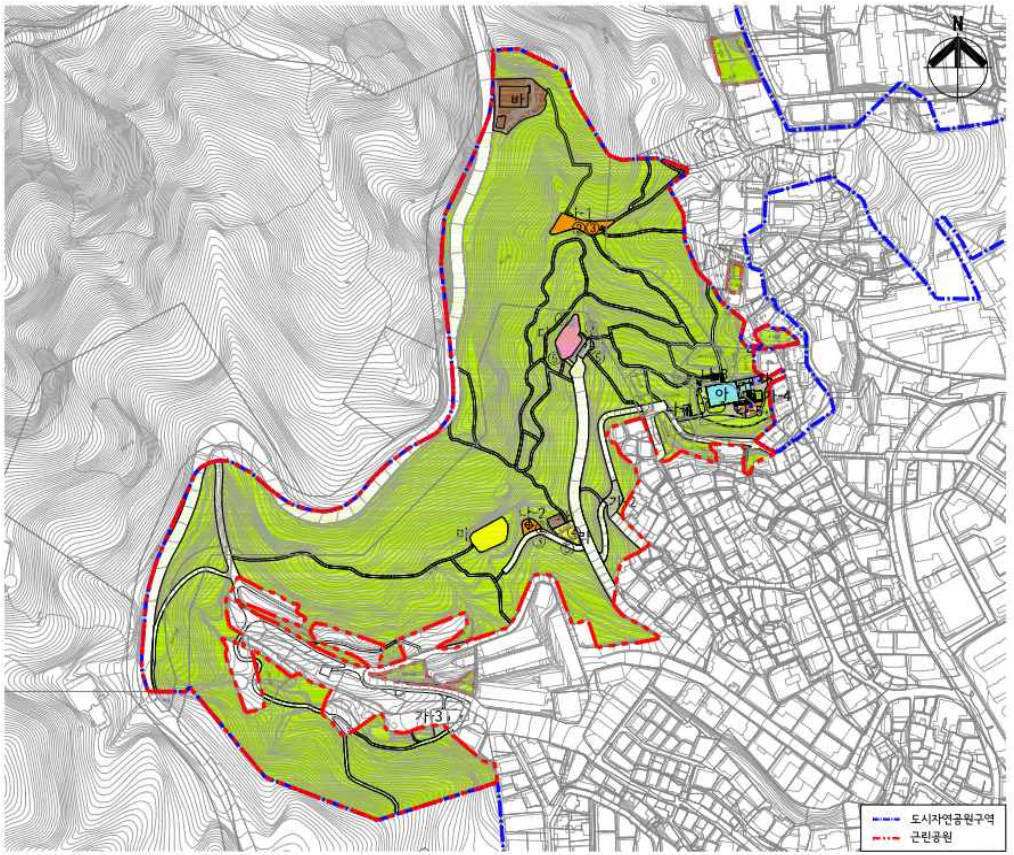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2,881.80	14,908.65	-	2	601.78	921.45	34	
기반 사설	소계		11,751.21	11,751.21	-	-	-	-	-	
	도로		11,264.71	11,264.71	-	-	-	-	-	
	광장	가	486.50	486.50	-	-	-	-	-	
		가-1	(76.00)	(76.00)	-	-	-	-	-	
		가-2	(192.00)	(192.00)	-	-	-	-	-	
		가-3	(51.00)	(51.00)	-	-	-	-	-	
		가-4	(167.50)	(167.50)	-	-	-	-	-	
휴양 사설	소계		724.50	724.50	-	-	-	-	22	
	쉼터	나	724.50	724.50	-	-	-	-	-	
		나-1	(367.00)	(367.00)	-	-	-	-	-	
		나-2	(99.50)	(99.50)	-	-	-	-	-	
		나-3	(85.40)	(85.40)	-	-	-	-	-	
		나-4	(7.20)	(7.20)	-	-	-	-	-	
		나-5	(165.40)	(165.40)	-	-	-	-	-	
	정자	①	-	-	-	-	-	-	1	
	파고라	②	-	-	-	-	-	-	2	
	평의자	③	-	-	-	-	-	-	10	
	등의자	④	-	-	-	-	-	-	9	
유희 사설	소계		354.50	354.50	-	-	-	-	-	
	어린이놀이터	다	354.50	354.50	-	-	-	-	-	
운동 시설	소계		576.33	576.33	-	-	-	-	12	
	체력단련장	라	175.00	175.00	-	-	-	-	-	
	다목적운동장	마	401.33	401.33	-	-	-	-	-	
	체력단련기구	⑤	-	-	-	-	-	-	12	
교양 사설	소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숲힐링센터	아	309.52	309.52	-	1	309.52	568.05	-	
편익 사설	소계		1,192.59	1,192.59	-	1	292.26	353.40	-	
	책쉼터	바	1,065.59	1,065.59	-	1	292.26	353.40	-	
	약수터	사	94.00	94.00	-	-	-	-	-	
	주차장	자	33.00	33.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77,973.15	-	-	-	-	-	-	
	녹지 및 기타		77,973.15	-	-	-	-	-	-	

Scale=1:1,500
0 10 40 80 150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조성계획(변경)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92,881.80	14,981.31	-	2	688.34	987.70	34	
기반 시설	소계		11,774.71	11,774.71	-	-	-	-	-	23.50충
	도로		11,313.51	11,313.51	-	-	-	-	-	48.80충
	광장	가	461.20	461.20	-	-	-	-	-	
		가-1	(76.00)	(76.00)	-	-	-	-	-	
		가-2	(192.00)	(192.00)	-	-	-	-	-	
		가-3	(51.00)	(51.00)	-	-	-	-	-	
		가-4	(142.20)	(142.20)	-	-	-	-	-	25.30감
휴양 시설	소계		699.70	699.70	-	-	-	-	22	
	쉼터	나	699.70	699.70	-	-	-	-	-	24.80감
		나-1	(367.00)	(367.00)	-	-	-	-	-	
		나-2	(99.50)	(99.50)	-	-	-	-	-	
		나-3	(71.60)	(71.60)	-	-	-	-	-	13.90감
		나-4	(36.20)	(36.20)	-	-	-	-	-	29.00충
		나-5	(125.40)	(125.40)	-	-	-	-	-	40.00감
	정자	①	-	-	-	-	-	-	1	
	파고라	②	-	-	-	-	-	-	2	
	평의자	③	-	-	-	-	-	-	10	
	등의자	④	-	-	-	-	-	-	9	
유희 시설	소계		354.50	354.50	-	-	-	-	-	
	어린이놀이터	다	354.50	354.50	-	-	-	-	-	
운동 시설	소계		576.33	576.33	-	-	-	-	12	
	체력단련장	라	175.00	175.00	-	-	-	-	-	
	다목적운동장	마	401.33	401.33	-	-	-	-	-	
	체력단련기구	⑤	-	-	-	-	-	-	12	
교양 시설	소계		396.08	396.08	-	1	396.08	634.30	-	
	숲힐링센터	아	396.08	396.08	-	1	396.08	634.30	-	86.56충
편익 시설	소계		1,188.59	1,188.59	-	1	292.26	353.40	-	
	책쉼터	바	1,065.59	1,065.59	-	1	292.26	353.40	-	
	약수터	사	94.00	94.00	-	-	-	-	-	
	주차장	자	29.00	29.00	-	-	-	-	-	4.00감
녹지 및 기타	소계		77,891.89	-	-	-	-	-	-	
	녹지 및 기타		77,891.89	-	-	-	-	-	-	81.36감

Scale = 1:1,500
0 10 40 80 150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부분 조성계획

인왕산근린공원(옥인지구)





■ 변경전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2,881.80	14,908.65	309.52	568.05	
기반시설	도로		11,264.71	11,264.71	-	-	
	광장	가-4	167.50	167.50	-	-	
휴양시설	쉼터	나-3	85.40	85.40	-	-	
		나-4	7.20	7.20	-	-	
		나-5	165.40	165.40	-	-	
교양시설	숲힐링센터	아	309.52	309.52	309.52	568.05	
편익시설	주차장	자	33.00	33.00	-	-	
녹지 및 기타			77,973.15	77,973.15	-	-	

■ 변경후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계			92,881.80	14,981.31	396.08	634.30	
기반시설	도로		11,313.51	11,313.51	-	-	48.80증
	광장	가-4	142.20	142.20	-	-	25.30감
휴양시설	쉼터	나-3	71.60	71.60	-	-	13.80감
		나-4	36.20	36.20	-	-	29.00증
		나-5	125.40	125.40	-	-	40.00감
교양시설	숲힐링센터	아	396.08	396.08	396.08	634.30	86.56증
편익시설	주차장	자	29.00	29.00	-	-	4.00감
녹지 및 기타			77,891.89	77,891.89	-	-	81.26감

◈ 중랑구공고 제2025-796호

도시계획시설(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1. 내무부고시 제413호(1958.02.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종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91호(2025.02.2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용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중 랑 구 청 장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용마산근린공원)
나. 공원면적 : 866,067.90㎡
다. 변경내용 : 공원 내 훼손된 무단경작지를 생태적으로 회복하고, 자연과 도시농업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여가체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
라.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마. 열람장소 : 중랑구청 공원녹지과(☎02-2094-2356)
바. 관계도서 : 조성계획도, 결정조서 등 일체 서류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 용마산근린공원 총괄표 (위치 :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866,067.90	279,520.86	41	11,938.39	24,042.14	677	866,067.90	283,878.02	45	12,268.39	24,372.14	700	
공원시설지구	소계	866,067.90	279,520.86	41	11,938.39	24,042.14	677	866,067.90	283,878.02	45	12,268.39	24,372.14	700	
	1지구	318,449.90	110,754.53	18	7,578.50	15,575.50	152	318,449.90	115,111.69	22	7,968.50	15,965.50	175	증 4,357.16㎡
	2지구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3지구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4지구	15,283.80	7,566.61	-	-	-	6	15,283.80	7,566.61	-	-	-	6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5지구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6지구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7지구	74,266.10	30,142.75	-	-	-	48	74,266.10	30,142.75	-	-	-	48	
시 설 율 (법정 40%)		(279,520.86 / 866,067.90) × 100 = 32.27%						(283,878.02 / 866,067.90) × 100 = 32.78%						
건 폐 율 (법정 10%)		(11,938.39 / 866,067.90) × 100 = 1.38%						(12,268.39 / 866,067.90) × 100 = 1.41%						

1-1. 용마산근린공원 1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산69-482 일대, 망우지구, 구 보육원지구, 서일대지구, 배밭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18,449.90	110,754.53	18	7,578.50	15,575.50	152	318,449.90	115,111.69	22	7,968.50	15,965.50	175	증 4,357.16㎡
기반시설	소계	33,391.91	33,391.91	-	-	-	-	35,155.97	35,155.97	-	-	-	-	증 1,764.06㎡
	도로	27,367.69	27,367.69 (1,064.9)	-	-	-	-	29,072.64	29,072.64 (1,064.9)	-	-	-	-	증 1,704.95㎡
	광장	6,024.22	6,024.22	-	-	-	-	6,083.33	6,083.33	-	-	-	-	증 59.11㎡
조경시설		31,640.13	31,640.13	-	-	-	12	31,797.40	31,797.40	-	-	-	12	증 157.27㎡
휴양시설		11,252.80	11,252.80	1	120.00	120.00	66	11,402.11	11,402.11	1	120.00	120.00	85	증 149.31㎡
유희시설		606.85	606.85	-	-	-	2	742.89	742.89	-	-	-	5	증 136.0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운동시설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
교양시설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
편익시설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
관리시설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897.50	897.50	8	826.50	1,197.50	17	증 60.00㎡
도시농업시설	6,146.78	6,146.78	-	-	-	6	8,237.26	8,237.26	1	330.00	330.00	6	증 2,090.48㎡
녹지 및 기타	207,695.37	-	-	-	-	-	203,338.21	-	-	-	-	-	감 4,357.16㎡

1-2. 용마산근린공원 1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18,449.90	110,754.53	-	18	7,578.50	15,575.50	152			318,449.90	115,111.69	-	22	7,968.50	15,965.50	175	
기반시설	소 계			33,391.91	33,391.91	-	-	-	-	-			35,155.97	35,155.97	-	-	-	-	-	증 1,764.06㎡
	도 로			27,367.69	27,367.69 (1,064.9)	-	-	-	-	-			29,072.64	29,072.64 (1,064.9)	-	-	-	-	-	증 1,704.95㎡
	광장	가	20개소	6,024.22	6,024.22	-	-	-	-	-	가	21개소	6,083.33	6,083.33	-	-	-	-	-	증 59.11㎡
		가-1	망우동 산69-1임	(777.91)	(777.91)	-	-	-	-	-	가-1	망우동 산69-1임	(777.91)	(777.91)	-	-	-	-	-	
		가-2	망우동 산69-1임	(491.18)	(491.18)	-	-	-	-	-	가-2	망우동 산69-1임	(491.18)	(491.18)	-	-	-	-	-	
		가-3	망우동 산69-1임	(391.23)	(391.23)	-	-	-	-	-	가-3	망우동 산69-1임	(391.23)	(391.23)	-	-	-	-	-	
		가-7	망우동 산69-1임	(239.05)	(239.05)	-	-	-	-	-	가-7	망우동 산69-1임	(239.05)	(239.05)	-	-	-	-	-	
		가-4	망우동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가-4	망우동 산69-1임	(1,077.80)	(1,077.80)	-	-	-	-	-	
		가-6	망우동 산69-482임	(532.34)	(532.34)	-	-	-	-	-	가-6	망우동 산69-482임	(532.34)	(532.34)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5	망우동 산69-482임	(82.31)	(82.31)	-	-	-	-	-	가-5	망우동 산69-482임	(82.31)	(82.31)	-	-	-	-	-	
	가-8	망우동 산69-1임	(62.00)	(62.00)	-	-	-	-	-	가-8	망우동 산69-1임	(62.00)	(62.00)	-	-	-	-	-	
	가-9	망우동 산69-508공	(177.00)	(177.00)	-	-	-	-	-	가-9	망우동 산69-508공	(177.00)	(177.00)	-	-	-	-	-	
	가-10	망우동 산69-508공	(13.00)	(13.00)	-	-	-	-	-	가-10	망우동 산69-508공	(13.00)	(13.00)	-	-	-	-	-	
	가-11	망우동 산69-203공	(27.00)	(27.00)	-	-	-	-	-	가-11	망우동 산69-203공	(27.00)	(27.00)	-	-	-	-	-	
	가-12	망우동 산69-203공	(729.00)	(729.00)	-	-	-	-	-	가-12	망우동 산69-203공	(729.00)	(729.00)	-	-	-	-	-	
	가-13	망우동 산69-203공	(315.00)	(315.00)	-	-	-	-	-	가-13	망우동 산69-203공	(315.00)	(315.00)	-	-	-	-	-	
	가-14	면목동 산9-1공 외	(83.00)	(83.00)	-	-	-	-	-	가-14	면목동 산9-1공 외	(83.00)	(83.00)	-	-	-	-	-	
	가-15	면목동 산5-1공	(16.00)	(16.00)	-	-	-	-	-	가-15	면목동 산5-1공	(16.00)	(16.00)	-	-	-	-	-	
	가-16	면목동 산17-2	(140.23)	(140.23)	-	-	-	-	-	가-16	면목동 산17-2	(140.23)	(140.23)	-	-	-	-	-	
	가-17	면목동 산19	(41.33)	(41.33)	-	-	-	-	-	가-17	면목동 산19	(41.33)	(41.33)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가-18	면목동 산17-2	(239.61)	(239.61)	-	-	-	-	-	가-18	면목동 산17-2	(239.61)	(239.61)	-	-	-	-	-	
		가-19	면목동 33-1	(255.23)	(255.23)	-	-	-	-	-	가-19	면목동 33-1	(255.23)	(255.23)	-	-	-	-	-	
		가-20	면목동 산33-3 외	(334.00)	(334.00)						가-20	면목동 산33-3 외	(334.00)	(334.00)						
											가-21	면목동 산23-3과 외	(59.11)	(59.11)						신설
조경시설	소 계			31,640.13	31,640.13	-	-	-	-	12			31,797.40	31,797.40	-	-	-	-	12	주) 157.27㎡
	계류원	나	3개소	1,080.80	1,080.80	-	-	-	-	-	나	3개소	1,080.80	1,080.80	-	-	-	-	-	
		나-1	망우동 산69-1임	(815.30)	(815.30)	-	-	-	-	-	나-1	망우동 산69-1임	(815.30)	(815.30)	-	-	-	-	-	
		나-2		(61.00)	(61.00)	-	-	-	-	-	나-2		(61.00)	(61.00)	-	-	-	-	-	
		나-3		(204.50)	(204.50)	-	-	-	-	-	나-3		(204.50)	(204.50)	-	-	-	-	-	
	캐스케이드	다	망우동 산69-1임	2,749.11	2,749.11	-	-	-	-	-	다	망우동 산69-1임	2,749.11	2,749.11	-	-	-	-	-	
	허브원	라	7개소	7,812.25	7,812.25	-	-	-	-	-	라	7개소	7,812.25	7,812.25	-	-	-	-	-	
		라-1	망우동 산69-1임	(770.94)	(770.94)	-	-	-	-	-	라-1	망우동 산69-1임	(770.94)	(770.94)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사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사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라당	라-2	망우동 산69-1임	(3,869.83)	(3,869.83)	-	-	-	-	-	라-2	망우동 산69-1임	(3,869.83)	(3,869.83)	-	-	-	-	-	
	라-3	망우동 산69-508	(1,353.85)	(1,353.85)	-	-	-	-	-	라-3	망우동 산69-508	(1,353.85)	(1,353.85)	-	-	-	-	-	
	라-4	망우동 산69-508	(141.63)	(141.63)	-	-	-	-	-	라-4	망우동 산69-508	(141.63)	(141.63)	-	-	-	-	-	
	라-5	망우동 산69-508	(176.31)	(176.31)	-	-	-	-	-	라-5	망우동 산69-508	(176.31)	(176.31)	-	-	-	-	-	
	라-6	면목동 산9-1	(1,257.69)	(1,257.69)	-	-	-	-	-	라-6	면목동 산9-1	(1,257.69)	(1,257.69)	-	-	-	-	-	
	커-5	면목동 산33-3 외	(242.00)	(242.00)						커-5	면목동 산33-3 외	(242.00)	(242.00)						
마당	마	3개소	124.26	124.26	-	-	-	-	-	마	3개소	124.26	124.26	-	-	-	-	-	
	마-1	망우동 산69-1임	(45.00)	(45.00)	-	-	-	-	-	마-1	망우동 산69-1임	(45.00)	(45.00)	-	-	-	-	-	
	마-2	망우동 산69-1임	(30.76)	(30.76)	-	-	-	-	-	마-2	망우동 산69-1임	(30.76)	(30.76)	-	-	-	-	-	
	마-3	망우동 산69-482임	(48.50)	(48.50)	-	-	-	-	-	마-3	망우동 산69-482임	(48.50)	(48.50)	-	-	-	-	-	
돌담	바	망우동 산69-1임	79.86	79.86	-	-	-	-		바	망우동 산69-1임	79.86	79.86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잔디광장	사	망우동 산69-482임	1,575.00	1,575.00	-	-	-	-	-	사	망우동 산69-482임	1,575.00	1,575.00	-	-	-	-	-	
화목원	저	면목동 산33-3 외	17,293.09	17,293.09	-	-	-	-	-	저	면목동 산33-3 외	17,293.09	17,293.09	-	-	-	-	-	
둠벙1	처-1	면목동 산33-3 외	36.04	36.04	-	-	-	-	-	처-1	면목동 산33-3 외	36.04	36.04	-	-	-	-	-	
둠벙2	처-2	면목동 산33-3 외	42.77	42.77	-	-	-	-	-	처-2	면목동 산33-3 외	42.77	42.77	-	-	-	-	-	
저류습지	처-3	면목동 산33-3 외	218.10	218.10	-	-	-	-	-	처-3	면목동 산33-3 외	218.10	218.10	-	-	-	-	-	
빗물습지1	처-4	면목동 산33-3 외	36.05	36.05	-	-	-	-	-	처-4	면목동 산33-3 외	36.05	36.05	-	-	-	-	-	
빗물습지2	처-5	면목동 산33-3 외	29.00	29.00	-	-	-	-	-	처-5	면목동 산33-3 외	29.00	29.00	-	-	-	-	-	
전망데크	커-1	면목동 산33-3 외	76.52	76.52	-	-	-	-	-	커-1	면목동 산33-3 외	76.52	76.52	-	-	-	-	-	
관찰데크	커-2	면목동 산33-3 외	8.70	8.70	-	-	-	-	-	커-2	면목동 산33-3 외	8.70	8.70	-	-	-	-	-	
장미원	커-3	면목동 산33-3 외	270.00	270.00	-	-	-	-	-	커-3	면목동 산33-3 외	270.00	270.00	-	-	-	-	-	
야생초화원	커-4	면목동 산33-3 외	197.08	197.08	-	-	-	-	-	커-4	면목동 산33-3 외	197.08	197.08	-	-	-	-	-	
목교	⑪	면목동 산33-3 외	11.50	11.50	-	-	-	-	3	⑪	면목동 산33-3 외	11.50	11.50	-	-	-	-	3	
통나무의자	⑬	면목동 산33-3 외	-	-	-	-	-	-	2	⑬	면목동 산33-3 외	-	-	-	-	-	-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그루터기의자	⑭	면목동 산33-3 외	-	-	-	-	-	-	5	⑭	면목동 산33-3 외	-	-	-	-	-	-	5	
	그네의자	⑮	면목동 산33-3 외	-	-	-	-	-	-	2	⑮	면목동 산33-3 외	-	-	-	-	-	-	2	
	건천										터	면목동 산 23-3과	157.27	157.27					-	신설
휴양시설	소 계			11,252.80	11,252.80	연와조	1	120.00	120.00	66			11,402.11	11,402.11	연와조	1	120.00	120.00	85	증 149.31㎡
	캠핑장	아	망우동 산69-1임	6,477.03	6,477.03	-	-	-	-	-	아	망우동 산69-1임	6,477.03	6,477.03	-	-	-	-	-	
	쉼터	자	33개소	4,775.77	4,775.77	-	-	-	-	-	자	41개소	4,902.08	4,902.08	-	-	-	-	-	
		자-1	망우동 산69-1임	(73.20)	(73.20)	-	-	-	-	-	자-1	망우동 산69-1임	(73.20)	(73.20)	-	-	-	-	-	
		자-2	망우동 산69-1임	(82.20)	(82.20)	-	-	-	-	-	자-2	망우동 산69-1임	(82.20)	(82.20)	-	-	-	-	-	
		자-3	망우동 산69-1임	(150.00)	(150.00)	-	-	-	-	-	자-3	망우동 산69-1임	(150.00)	(150.00)	-	-	-	-	-	
		자-4	망우동 산69-1임	(127.26)	(127.26)	-	-	-	-	-	자-4	망우동 산69-1임	(127.26)	(127.26)	-	-	-	-	-	
		자-5	망우동 산69-1임	(203.78)	(203.78)	-	-	-	-	-	자-5	망우동 산69-1임	(203.78)	(203.78)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자-6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6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7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7	망우동 산69-1임	(12.00)	(12.00)	-	-	-	-	-	
	자-8	망우동 산69-1임	(22.50)	(22.50)	-	-	-	-	-	자-8	망우동 산69-1임	(22.50)	(22.50)	-	-	-	-	-	
	자-9	망우동 산69-1임	(730.50)	(730.50)	-	-	-	-	-	자-9	망우동 산69-1임	(730.50)	(730.50)	-	-	-	-	-	
	자-10	망우동 산69-1임	(87.31)	(87.31)	-	-	-	-	-	자-10	망우동 산69-1임	(87.31)	(87.31)	-	-	-	-	-	
	자-11	망우동 산69-1임	(94.50)	(94.50)	-	-	-	-	-	자-11	망우동 산69-1임	(94.50)	(94.50)	-	-	-	-	-	
	자-12	망우동 산69-1임	(188.52)	(188.52)	-	-	-	-	-	자-12	망우동 산69-1임	(188.52)	(188.52)	-	-	-	-	-	
	자-13	망우동 산69-1임	(63.11)	(63.11)	-	-	-	-	-	자-13	망우동 산69-1임	(63.11)	(63.11)	-	-	-	-	-	
	자-14	망우동 산69-508	(843.00)	(843.00)	-	-	-	-	-	자-14	망우동 산69-508	(843.00)	(843.00)	-	-	-	-	-	
	자-15	망우동 산69-508	(132.00)	(132.00)	-	-	-	-	-	자-15	망우동 산69-508	(132.00)	(132.0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16	망우동 산69-203	(74.00)	(74.00)	-	-	-	-	-	자-16	망우동 산69-203	(74.00)	(74.00)	-	-	-	-	-	
	자-17	면목동 9-5	(356.00)	(356.00)	-	-	-	-	-	자-17	면목동 9-5	(356.00)	(356.00)	-	-	-	-	-	
	자-18	면목동 9-5	(21.00)	(21.00)	-	-	-	-	-	자-18	면목동 9-5	(21.00)	(21.00)	-	-	-	-	-	
	자-19	면목동 산8-1	(14.50)	(14.50)	-	-	-	-	-	자-19	면목동 산8-1	(14.50)	(14.50)	-	-	-	-	-	
	자-20	면목동 산8-1	(40.00)	(40.00)	-	-	-	-	-	자-20	면목동 산8-1	(40.00)	(40.00)	-	-	-	-	-	
	자-21	면목동 산4	(14.50)	(14.50)	-	-	-	-	-	자-21	면목동 산4	(14.50)	(14.50)	-	-	-	-	-	
	자-22	면목동 산5-1	(43.00)	(43.00)	-	-	-	-	-	자-22	면목동 산5-1	(43.00)	(43.00)	-	-	-	-	-	
	자-23	면목동 산19	(271.76)	(271.76)	-	-	-	-	-	자-23	면목동 산19	(271.76)	(271.76)	-	-	-	-	-	
	자-24	면목동 산19	(213.23)	(213.23)	-	-	-	-	-	자-24	면목동 산19	(213.23)	(213.23)	-	-	-	-	-	
	자-25	면목동 31-25외	(242.34)	(242.34)	-	-	-	-	-	자-25	면목동 31-25외	(242.34)	(242.34)	-	-	-	-	-	
	자-26	면목동 31-50	(98.80)	(98.80)	-	-	-	-	-	자-26	면목동 31-50	(98.80)	(98.8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자-27	면목동 산29-5	(21.00)		-	-	-	-	-	자-27	면목동 산29-5	(21.00)		-	-	-	-	-	
	자-28	면목동 산29-8	(38.17)		-	-	-	-	-	자-28	면목동 산29-8	(38.17)		-	-	-	-	-	
	자-29	면목동 산1-3	(401.93)		-	-	-	-	3	자-29	면목동 산1-3	(401.93)		-	-	-	-	3	
	자-30	면목동 산33-3 외	(44.16)							자-30	면목동 산33-3 외	(44.16)							
	자-31	면목동 산33-3 외	(30.00)							자-31	면목동 산33-3 외	(30.00)							
	자-32	면목동 산33-3 외	(18.00)							자-32	면목동 산33-3 외	(18.00)							
	자-33	면목동 산33-3 외	(11.50)							자-33	면목동 산33-3 외	(11.50)							
										자-34	면목동 산16-8임	(28.77)	(28.77)						신설
										자-35	면목동 산23-3 과	(13.97)	(13.97)						신설
										자-36	면목동 산23-3과	(13.97)	(13.97)						신설
										자-37	면목동 산23-3과	(13.97)	(13.97)						신설
										자-38	면목동 산23-1임	(19.63)	(19.63)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자-39	면목동 산23-4과	(12.00)	(12.00)						신설
										자-40	면목동 산22-1임	(12.00)	(12.00)						신설
										자-41	면목동 산23-3과	(12.00)	(12.00)						신설
노인정	1	망우동산69-1	168.00	168.00	연와조	1	120.00	120.00	-	1	망우동산69-1	168.00	168.00	연와조	1	120.00	120.00	-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7	①	전지역	-	-	-	-	-	-	10	변경
평의자	②	전지역	-	-	-	-	-	-	31	②	전지역	-	-	-	-	-	-	31	
등의자	③	전지역	-	-	-	-	-	-	18	③	전지역	-	-	-	-	-	-	26	변경
야외 탁자	④	전지역	-	-	-	-	-	-	5	④	전지역	-	-	-	-	-	-	5	
팔각정	⑥	면목동 산19	-	-	-	-	-	-	1	⑥	면목동 산19	-	-	-	-	-	-	1	
초정	⑮	면목동 산33-3 외	-	-					1	⑮	면목동 산33-3 외	-	-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유희시설	데크										퍼	면목동 산23-3과	23.00	23.00						신설
	원형 파고라										⑰	면목동 산23-3과 외							4	신설
	테이블										⑱	면목동 산16-8임							1	신설
	앉음벽										⑲	면목동 산16-8임 외							2	신설
	스탠드										⑳	면목동 산16-8임							1	신설
	소 계			606.85	606.85	-	-	-	-	2			742.89	742.89	-	-	-	-	5	외 136.04㎡
	모험의숲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	차	산69-1임	276.18	276.18	-	-	-	-	-	
	어린이놀이터	카	2개소	330.67	330.67	-	-	-	-	-	카	3개소	466.71	466.71	-	-	-	-	-	
		카-1	망우동 산69-203	(137.00)	(137.00)	-	-	-	-	-	카-1	망우동 산69-203	(137.00)	(137.00)	-	-	-	-	-	
		카-2	면목동 31-25외	(193.67)	(193.67)	-	-	-	-	-	카-2	면목동 31-25외	(193.67)	(193.67)	-	-	-	-	-	
											카-3	면목동 산23-3과	(136.04)	(136.04)						신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조합놀이대	⑦	면목동 31-25외	-	-	-	-	-	-	1	⑦	면목동 31-25외	-	-	-	-	-	-	1	
	그네	⑧	면목동 31-25외	-	-	-	-	-	-	1	⑧	면목동 31-25외	-	-	-	-	-	-	1	
	숲속 놀이기구										㉑	면목동 산23-3과							3	신설
운동시설	소 계			9,875.01	9,875.01	-	1	375.00	450.00	46			9,875.01	9,875.01	-	1	375.00	450.00	46	
	배드민턴장			-	-	-	-	-	-	-			-	-	-	-	-	-	-	
		타	2개소	1,205.12	1,205.12	-	-	-	-	-	타	2개소	1,205.12	1,205.12	-	-	-	-	-	
		타-1	망우동 산69-1	(631.62)	(631.62)	-	-	-	-	-	타-1	망우동 산69-1	(631.62)	(631.62)	-	-	-	-	-	
		타-2	망우동 산69-508	(573.50)	(573.50)	-	-	-	-	-	타-2	망우동 산69-508	(573.50)	(573.50)	-	-	-	-	-	
	골프연습장	파	망우동 산69-1외	6,350.00	6,350.00	철골조	1	375.00	450.00	-	파	망우동 산69-1외	6,350.00	6,350.00	철골조	1	375.00	450.00	-	
	게이트볼장	하	망우동 산69-508	423.00	423.00	-	-	-	-	-	하	망우동 산69-508	423.00	423.00	-	-	-	-	-	
	족구장	거	망우동 산69-508	1,441.50	1,441.50	-	-	-	-	-	거	망우동 산69-508	1,441.50	1,441.5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체력단련장	너	6개소	455.39	455.39	-	-	-	-	18	너	6개소	455.39	455.39	-	-	-	-	18	
		너-1	망우동 산69-508	(85.00)	(85.00)	-	-	-	-	4	너-1	망우동 산69-508	(85.00)	(85.00)	-	-	-	-	4	
		너-2	망우동 산69-508	(5.00)	(5.00)	-	-	-	-	1	너-2	망우동 산69-508	(5.00)	(5.00)	-	-	-	-	1	
		너-3	망우동 산69-508	(48.00)	(48.00)	-	-	-	-	3	너-3	망우동 산69-508	(48.00)	(48.00)	-	-	-	-	3	
		너-4	면목동 산19	(53.13)	(53.13)	-	-	-	-	-	너-4	면목동 산19	(53.13)	(53.13)	-	-	-	-	-	
		너-5	면목동 31-50	(86.23)	(86.23)	-	-	-	-	-	너-5	면목동 31-50	(86.23)	(86.23)	-	-	-	-	-	
		너-6	면목동 산29-8	(98.03)	(98.03)	-	-	-	-	4	너-6	면목동 산29-8	(98.03)	(98.03)	-	-	-	-	4	
		너-7	면목동 산33-3 외	(80.00)	(80.00)	-	-	-	-	6	너-7	면목동 산33-3 외	(80.00)	(80.00)	-	-	-	-	6	
	복합운동시설	⑨	면목동 산19	-	-	-	-	-	-	1	⑨	면목동 산19	-	-	-	-	-	-	1	
	체력단련시설	⑩	전지역	-	-	-	-	-	-	19	⑩	전지역	-	-	-	-	-	-	19	
	소 계			4,534.31	4,534.31	-	3	3,969.00	11,358.00	4			4,534.31	4,534.31	-	3	3,969.00	11,358.00	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시설	디자인전시관	2	망우동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	1	2,988.00	10,196.00	-	2	망우동 산69-1임	3,077.00	3,077.00	철골	1	2,988.00	10,196.00	-	
	온실	3	망우동 산69-1임	812.00	812.00	철골	1	800.00	800.00	-	3	망우동 산69-1임	812.00	812.00	철골	1	800.00	800.00	-	
	허브 체험관	4	망우동 산69-1임	187.00	187.00	-	1	181.00	362.00	-	4	망우동 산69-1임	187.00	187.00	-	1	181.00	362.00	-	
	신도비	더	망우동 산69-1임	50.97	50.97	-	-	-	-	-	더	망우동 산69-1임	50.97	50.97	-	-	-	-	-	
	자연 학습장	러	망우동 산69-203	306.00	306.00	-	-	-	-	-	러	망우동 산69-203	306.00	306.00	-	-	-	-	-	
	생태학습원	러-1	면목동 산33-3 외	101.34	101.34	-	-	-	-	-	러-1	면목동 산33-3 외	101.34	101.34	-	-	-	-	-	
	숲속놀이대	12	숲속놀이대	-	-	-	-	-	-	1	12	숲속놀이대	-	-	-	-	-	-	1	
편의시설	소 계			12,469.24	12,469.24	-	8	2,348.00	2,510.00	-			12,469.24	12,469.24	-	8	2,348.00	2,510.00	-	
	주차장	머	8개소	9,949.40	9,949.40	-	-	-	-	-	머	8개소	9,949.40	9,949.40	-	-	-	-	-	
		머-1	산69-482임	(1,094.02)	(1,094.02)	-	-	-	-	-	머-1	산69-482임	(1,094.02)	(1,094.02)	-	-	-	-	-	
		머-2	산69-482임	(1,056.12)	(1,056.12)	-	-	-	-	-	머-2	산69-482임	(1,056.12)	(1,056.12)	-	-	-	-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머-3	산69-1임	(507.31)	(507.31)	-	-	-	-	-	머-3	산69-1임	(507.31)	(507.31)	-	-	-	-	-	
		머-4	산69-1임	(1,025.96)	(1,025.96)	-	-	-	-	-	머-4	산69-1임	(1,025.96)	(1,025.96)	-	-	-	-	-	
		머-5	산69-1임	(655.05)	(655.05)	-	-	-	-	-	머-5	산69-1임	(655.05)	(655.05)	-	-	-	-	-	
		머-6	산69-1임	(3,159.65)	(3,159.65)	-	-	-	-	-	머-6	산69-1임	(3,159.65)	(3,159.65)	-	-	-	-	-	
		머-8	산69-486임	(1,101.55)	(1,101.55)	-	-	-	-	-	머-8	산69-486임	(1,101.55)	(1,101.55)	-	-	-	-	-	
		머-7	산69-485임	(1,349.74)	(1,349.74)	-	-	-	-	-	머-7	산69-485임	(1,349.74)	(1,349.74)	-	-	-	-	-	
	음수장	버	2개소	56.90	56.90	-	-	-	-	-	버	2개소	56.90	56.90	-	-	-	-	-	
		버-1	망우동 산69-508	(8.40)	(8.40)	-	-	-	-	-	버-1	망우동 산69-508	(8.40)	(8.40)	-	-	-	-	-	
		버-2	망우동 산69-203	(48.50)	(48.50)	-	-	-	-	-	버-2	망우동 산69-203	(48.50)	(48.50)	-	-	-	-	-	
	일반 음식점	5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5	2개소	2,013.00	2,013.00	-	2	1,966.00	2,128.00	-	
		5-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5-1	산69-482임	(1,838.00)	(1,838.00)	철골조	(1)	(1,804.00)	(1,804.00)	-	
		5-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5-2	산69-1임	(175.00)	(175.00)	철골조	(1)	(162.00)	(324.00)	-	
	휴게 음식점	6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6	2개소	305.00	305.00	-	2	255.00	255.00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6-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6-1	산69-1임	(79.00)	(79.00)	연와조	(1)	(45.00)	(45.00)	-	
		6-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6-2	산69-1임	(226.00)	(226.00)	철골조	(1)	(210.00)	(210.00)	-	
	화장실	7		144.94	144.94	철골조	4	127	127	-	7		144.94	144.94	철골조	4	127	127	-	
		7-1	산69-482임	(72.90)	(72.90)	철골조	(1)	(65.00)	(65.00)	-	7-1	산69-482임	(72.90)	(72.90)	철골조	(1)	(65.00)	(65.00)	-	
		7-2	망우동 산69-508	(28.50)	(28.50)	-	(1)	(28.50)	(28.50)	-	7-2	망우동 산69-508	(28.50)	(28.50)	-	(1)	(28.50)	(28.50)	-	
		7-3	면목동 31-50	(28.04)	(28.04)		(1)	(18.00)	(18.00)	-	7-3	면목동 31-50	(28.04)	(28.04)		(1)	(18.00)	(18.00)	-	
		7-4	망우동 113-13	(15.5)	(15.5)		(1)	15.5	15.5	-	7-4	망우동 113-13	(15.5)	(15.5)		(1)	15.5	15.5	-	
관리시설	소계			837.50	837.50	-	5	766.50	1,137.50	16			897.50	897.50	-	8	826.50	1,197.50	17	증 60.00㎡
	관리사무소	8	5개소	837.50	837.50	-	5	766.50	1,137.50	-	8	5개소	837.50	837.50	-	5	766.50	1,137.50	-	
		8-1	망우동 산69-1임	(131.00)	(131.00)	철골조	(1)	(120.00)	(120.00)	-	8-1	망우동 산69-1임	(131.00)	(131.00)	철골조	(1)	(120.00)	(120.00)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도시농업시설	소계			6,146.78	6,146.78	-	-	-	-	6			8,237.26	8,237.26	-	1	330.00	330.00	6	등 2,090.48㎡
	도시텃밭	서	망우동 113-13 외	6,146.78	6,146.78	-	-	-	-	6	서	망우동 113-13 외	6,146.78	6,146.78	-	-	-	-	6	
											로	면목동 산16-8임	1,358.84	1,358.84	-	-	-	-		신설
	근로자휴게소	8-2	망우동 산69-1임	(193.00)	(193.00)	라멘조	(1)	(140.00)	(280.00)	-	8-2	망우동 산69-1임	(193.00)	(193.00)	라멘조	(1)	(140.00)	(280.00)	-	
		8-3	망우동 산69-1임	(316.00)	(316.00)	라멘조	(1)	(309.00)	(540.00)	-	8-3	망우동 산69-1임	(316.00)	(316.00)	라멘조	(1)	(309.00)	(540.00)	-	
		8-4	망우동 산69-1임	(178.00)	(178.00)	연와조	(1)	(178.00)	(178.00)	-	8-4	망우동 산69-1임	(178.00)	(178.00)	연와조	(1)	(178.00)	(178.00)	-	
		8-5	망우동 산69-508	(19.50)	(19.50)	-	(1)	(19.50)	(19.50)	-	8-5	망우동 산69-508	(19.50)	(19.50)	-	(1)	(19.50)	(19.50)	-	
											허	면목동 산16-8임	(24.00)	(24.00)	-	(1)	(24.00)	(24.00)	-	신설
	재재창고										고	면목동 산16-8임	(36.00)	(36.00)	-	(2)	(36.00)	(36.00)	-	신설
	관정										㉮	면목동 산16-8임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타지목	원예체험장										노	면목동 산16-8임	401.64	401.64	-	-	-	-	-	선설
	스마트팜										도	면목동 산23-4과	330.00	330.00	파이프조	1	330.00	330.00	-	선설
	소계			207,695.37	-	-	-	-	-	-			203,338.21	-	-	-	-	-	-	-
대지	대지			207,695.37	-	-	-	-	-	-			203,338.21	-	-	-	-	-	-	감 4,357.16㎡

1-3. 용마산근린공원 1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계				8,665.00	27,367.69 (1,064.9)				
변 경					11,310.65	29,072.64 (1,064.9)				
당 초	소 로	계			2,718.50	16,147.49 (1,064.9)				
당 초		2류	2-1	9.0	131.7	1,185.30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2	
당 초		2류	2-2	9.0	95.0	855.36	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3	
당 초		3류	3-1	7.0	30.2	211.19	연결로	소로 3-20	광장 가-7	
당 초		3류	3-2	3.0	34.2	102.6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7	
당 초		3류	3-3	7.0	149.2	1,044.61	연결로	주차장 머-1	광장 가-6	
당 초		3류	3-4	7.0	149.2	1,044.05	연결로	광장 가-6	주차장 머-5	
당 초		3류	3-5	7.0	336.4	2,355.01	연결로	광장 가-7	소로 3-13	
당 초		3류	3-6	6.0	165.8	994.50	연결로	소로 3-5	광장 가-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3-7	3.0	28.5	85.47	연결로	쉼터 자-1	소로 3-6	
당 초		3류	3-8	3.0	27.6	82.77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당 초		3류	3-9	3.0	25.0	74.94	연결로	광장 가-1	소로 3-13	
당 초		3류	3-10	3.0	95.9	287.55	산책로	허브원 라-2	허브원 라-2	
당 초		3류	3-11	3.0	41.5	124.38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0	
당 초		3류	3-12	3.0	49.5	148.53	연결로	소로 3-13	허브원 라-2	
당 초		3류	3-13	7.0	305.2	2,136.40	진입로	광장 가-3	공원경계	
당 초		3류	3-14	3.5	33.7	117.81	연결로	쉼터 자-3	허브원 라-2	
당 초		3류	3-15	7.0	105.8	740.8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4	
당 초		3류	3-16	7.0	40.2	281.12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2	
당 초		3류	3-17	4.0	41.1	164.52	연결로	주차장 머-6	디자인 전시관 2	
당 초		3류	3-18	4.0~8.0	242.0	1,641.00	산책로	소로 3-13	소로 3-1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3-19	7.0	45.7	320.04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당 초		3류	3-20	5.5~8.5	68.5	(440.60)	도시계획도로			
당 초		3류	3-21	5.6	16.50	92.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7	
당 초		3류	3-22	5.6	14.00	72.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9	
당 초		3류	3-23	3.0	97.00	313.00	연결로	광장 가-9	쉼터 자-14	
당 초		3류	3-24	6.0	104.0	(624.30)	도시계획도로			
당 초		3류	3-25	1.0~3.0	68.0	115.00	진입로	공원경계	녹지	
당 초		3류	3-26	1.0	14.0	14.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3류	3-27	3.5	163.1	478.0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계			5,946.50	11,219.90				
변 경					8,592.15	12,925.15				
당 초			1	2.0	3.0	6.00	연결로	소로 3-3	주차장 머-2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2	2.0	116.8	233.68	산책로	소로 3-7	소로 3-6	
당 초			3	2.0	40.8	81.58	연결로	캠핑장 아	광장 가-1	
당 초			4	1.5	19.2	28.77	연결로	소로 3-4	산책로 5	
당 초			5	2.0	128.2	256.32	연결로	쉼터 자-9	주차장 머-5	
당 초			6	1.5	3.7	5.48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당 초			7	1.5	3.0	4.47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당 초			8	1.5	2.6	3.92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당 초			9	1.5	4.5	6.75	연결로	주차장 머-4	산책로 5	
당 초			10	1.5	25.4	38.07	연결로	쉼터 자-13	소로 3-5	
당 초			11	1.5	39.9	59.79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2	
당 초			12	1.2	25.0	30.05	연결로	쉼터 자-3	소로 3-14	
당 초			13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4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 초			15	1.2	25.0	30.05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 초			16	1.2	10.9	13.06	연결로	소로 3-14	허브원 라-2	
당 초			17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 초			18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 초			19	1.2	25.1	30.06	산책로	소로 3-14	소로 3-14	
당 초			20	2.5	20.8	52.03	연결로	주차장 머-6	소로 3-18	
당 초			21	1.5	71.1	106.58	연결로	쉼터 자-8	마당 마-1	
당 초			22	1.5	169.6	254.43	연결로	마당 마-1	마당 마-1	
당 초			23	2.0	11.96	23.92	연결로	소로 3-18	골프연습장 파	
당 초			24	2.0	302.00	604.00	연결로	허브원 라-2	쉼터 자-1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25	2.0	15.44	30.88	연결로	광장 가-8	골프연습장 파	
당 초			26	2.0	7.00	14.00	연결로	광장 가-8	산책로 27	
당 초			27	2.0	72.00	213.00	산책로	소로 3-21	산책로 24	
당 초			28	2.5	78.00	195.00	연결로	쉼터 자-14	소로 3-22	
당 초			29	2.0	107.00	214.00	산책로	쉼터 자-14	쉼터 자-14	
당 초			30	1.2	8.00	96.00	연결로	족구장 거	산책로 29	
당 초			31	1.2	2.00	2.40	연결로	족구장 거	산책로 29	
당 초			32	2.0~6.0	6.50	20.00	산책로	소로 3-23	산책로 33	
당 초			33	1.8	89.00	160.2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0	
당 초			34	1.5	1.15	1.51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광장 가-10	
당 초			35	1.2~2.5	23.30	28.64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산책로 3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6	2.0~3.0	7.70	16.50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당 초			37	0.5~1.0	5.26	3.59	연결로	농업 체험공간 어	공원경계	
당 초			38	2.0	13.0	26.0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11	
당 초			39	2.0	27.0	54.00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0	
당 초			40	1.5	26.5	39.75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4	
당 초			41	1.5	49.0	73.50	산책로	산책로 40	산책로 44	
당 초			42	2.5	34.5	86.25	연결로	광장 가-11	산책로 44	
당 초			43	2.5	8.0	20.00	연결로	쉼터 자-16	산책로 42	
당 초			44	2.5	288.0	720.00	산책로	소로 3-24	산책로 44	
당 초			45	2.0	54.5	109.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당 초			46	2.5	30.0	75.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47	2.5	11.0	27.50	연결로	광장 가-13	산책로 44	
당 초			48	4.0	7.0	28.00	연결로	산책로 44	광장 가-13	
당 초			49	2.5	7.0	17.50	산책로	산책로 44	산책로 44	
당 초			50	2.0	27.5	55.00	연결로	산책로 44	쉼터 자-17	
당 초			51	1.5	26.5	41.00	산책로	산책로 50	산책로 67	
당 초			52	4.0	75.0	320.0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7	
당 초			53	1.5	14.0	25.00	연결로	산책로 52	쉼터 자-17	
당 초			54	1.5	14.5	28.00	연결로	산책로 69	쉼터 자-17	
당 초			55	1.2	5.0	6.00	연결로	쉼터 자-17	산책로 69	
당 초			56	2.0	174.5	517.50	연결로	소로 3-24	광장 가-14	
당 초			57	1.2	8.5	10.2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6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58	1.2	14.0	16.80	연결로	산책로 56	쉼터 자-18	
당 초			59	2.0	11.5	23.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당 초			60	1.5	10.0	15.00	연결로	공원경계	광장 가-14	
당 초			61	1.2	51.5	61.80	연결로	산책로 62	광장 가-14	
당 초			62	1.5	92.0	191.5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6	
당 초			63	1.2	187.0	224.4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2	
당 초			64	1.2	60.0	72.00	산책로	산책로 63	산책로 67	
당 초			65	1.2	91.5	109.80	산책로	산책로 63	산책로 64	
당 초			66	1.2	24.5	29.4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5	
당 초			67	1.5	159.0	238.50	연결로	회장실 7-3	산책로 56	
당 초			68	1.5	62.0	93.0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6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69	2.0	64.0	128.00	산책로	산책로 67	산책로 56	
당 초			70	4.0	19.3	80.29	연결로	진입광장 가-16	산책로 71	
당 초			71	3.0	52.8	159.02	연결로	중앙광장 가-19	중앙광장 가-18	
당 초			72	2.0	13.3	26.97	진입로	공원경계	중앙광장 가-19	
당 초			73	3.0	25.6	76.72	연결로	중앙광장 가-19	휴게쉼터 자-23	
당 초			74	2.0	98.8	198.25	연결로	중앙광장 가-18	중앙광장 가-18	
당 초			75	1.5-2.0	86.1	147.77	연결로	진입광장 가-17	중앙광장 가-18	
당 초			76	2.0	29.2	59.86	연결로	휴게쉼터 자-23	휴게쉼터 자-24	
당 초			77	2.0-3.0	470.0	1,099.64	진입로	공원경계	휴게쉼터 자-24	
변 경			77	2.0	38.3	77.3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2	
당 초			78	1.5	227.6	341.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78	1.5	195.06	282.03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113	
당 초			79	1.5	14.9	29.6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78	
당 초			80	1.5	40.2	62.39	산책로	산책로 77	산책로 81	
당 초			81	1.5	66.4	103.93	연결로	쉼터 서	산책로 77	
당 초			82	1.0	32.0	32.00	연결로	산책로 77	쉼터 서	
당 초			83	1.0-1.8	25.6	35.78	연결로	산책로 77	휴게쉼터 자-26	
당 초			84	3.0	34.8	104.40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당 초			85	3.0	33.2	99.6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86	1.5	62.8	108.53	진입로	산책로 85	공원경계	
당 초			87	2.0	22.9	58.27	연결로	소로 3-27	휴게쉼터 자-2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88	2.0	83.1	166.28	연결로	체력단련장 너-7	휴게쉼터 자-27	
당 초			89	1.5	64.21	96.58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90	
당 초			90	2.0	107.5	217.20	산책로	산책로 91	산책로 89	
당 초			91	2.0	60.02	120.49	산책로	산책로 95	체력단련장 너-6	
당 초			92	3.0	69.46	219.98	산책로	소로 3-27	광장 가-20	
당 초			93	1.2	50.20	72.63	산책로	산책로 95	산책로 91	
당 초			94	1.2	39.79	47.78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93	
당 초			95	1.2	88.57	106.22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100	
당 초			96	1.2	10.67	13.00	산책로	산책로 98	공원경계	
당 초			97	1.2	45.59	54.83	산책로	산책로 92	산책로 98	
당 초			98	1.2	116.55	134.25	산책로	산책로 93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99	1.2	54.34	68.77	산책로	휴게쉼터 자-30	공원경계	
당 초			100	1.2	95.44	112.89	산책로	산책로 95	산책로 101	
당 초			101	1.2	84.26	102.56	산책로	산책로 101	광장 가-20	
당 초			102	1.2	31.96	38.33	산책로	산책로 101	휴게쉼터 자-32	
당 초			103	1.2	31.88	37.98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 초			104	1.2	23.76	28.59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 초			105	1.2	22.87	27.32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6	
당 초			106	1.2	80.61	96.67	산책로	공원경계	관찰데크 커-2	
당 초			107	1.2	42.31	50.78	산책로	산책로 106	산책로 101	
당 초			108	1.2	27.66	33.20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07	
당 초			109	1.2	4.59	5.51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10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10	1.2	38.89	46.67	산책로	산책로 107	산책로 101	
당 초			111	1.2	24.66	29.60	산책로	산책로 110	산책로 102	
신 설			112	2.0	2.74	5.59	산책로	산책로 77	광장 가-21	
신 설			113	1.5~2.5	26.51	53.52	산책로	산책로 78	광장 가-21	
신 설			114	3.0	22.16	103.34	산책로	광장 가-21	스마트팜 도	
신 설			115	2.0~3.0	111.45	307.62	산책로	광장 가-21	공원 경계	
신 설			116	1.5	6.9	10.35	산책로	산책로 114	산책로 117	
신 설			117	3.0	180.59	553.59	산책로	산책로 116	산책로 115	
신 설			118	2.0	72.16	144.76	산책로	산책로 114	산책로 117	
신 설			119	2.0	47.56	108.8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18	
신 설			120	2.0	74.91	157.61	산책로	산책로 119	산책로 117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신 설			121	1.2	38.33	46.52	산책로	산책로 117	산책로 130	
신 설			122	2.0	80.22	170.45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20	
신 설			123	2.0	53.9	113.77	산책로	산책로 122	산책로 117	
신 설			124	2.0	52.32	111.94	산책로	산책로 115	산책로 123	
신 설			125	2.0	21.3	44.86	산책로	산책로 124	산책로 126	
신 설			126	1.2	67.5	66.87	산책로	산책로 117	산책로 117	
신 설			127	1.2	81.86	101.01	산책로	산책로 117	산책로 117	
신 설			128	2.0	2.36	7.90	산책로	산책로 127	산책로 129	
신 설			129	2.0-3.0	2140.22	654.41	산책로	산책로 128	휴게쉼터 자-24	
신 설			130	1.2	19.9	24	산책로	산책로 121	어린이놀이터 카-2	

2-1. 용마산근린공원 2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46-5 일대, 면목약수터지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2	1,452.00	4,876.00	44	
기반시설	소계	5,728.35	5,728.35	-	-	-	-	5,728.35	5,728.35	-	-	-	-	
	도로	4,962.18	4,962.18	-	-	-	-	4,962.18	4,962.18	-	-	-	-	
	광장	766.17	766.17	-	-	-	-	766.17	766.17	-	-	-	-	
조경시설		10,955.47	10,955.47	-	-	-	-	10,955.47	10,955.47	-	-	-	-	
휴양시설		625.75	625.75	-	-	-	27	625.75	625.75	-	-	-	27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325.99	325.99	-	-	-	9	325.99	325.99	-	-	-	9	
운동시설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1	1,371.00	4,795.00	8	
교양시설	772.07	772.07	-	-	-	-	772.07	772.07	-	-	-	-	
편익시설	297.36	297.36	1	81.00	81.00	-	297.36	297.36	1	81.00	81.00	-	
녹지 및 기타	46,425.62	-	-	-	-	-	46,425.62	-	-	-	-	-	

2-2. 용마산근린공원 2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70,709.30	24,283.68	-	2	1,452.00	4,876.00	44			70,709.30	24,283.68	-	2	1,452.00	4,876.00	44	
기반시설	소 계			5,728.35	5,728.35	-	-	-	-	-			5,728.35	5,728.35	-	-	-	-	-	
	도 로			4,962.18	4,962.18	-	-	-	-	-			4,962.18	4,962.18	-	-	-	-	-	
	광장	가	4개소	766.17	766.17	-	-	-	-	-	가	4개소	766.17	766.17	-	-	-	-	-	
		가-1	면목동 1326-152 외	(310.19)	(310.19)	-	-	-	-	-	가-1	면목동 1326-152 외	(310.19)	(310.19)	-	-	-	-	-	
		가-2	면목동 산46-2	(203.83)	(203.83)	-	-	-	-	-	가-2	면목동 산46-2	(203.83)	(203.83)	-	-	-	-	-	
		가-3	면목동 산50-12 외	(108.03)	(108.03)	-	-	-	-	-	가-3	면목동 산50-12 외	(108.03)	(108.03)	-	-	-	-	-	
		가-4	면목동 산1-9	(144.12)	(144.12)	-	-	-	-	-	가-4	면목동 산1-9	(144.12)	(144.12)	-	-	-	-	-	
조경시설	소 계			10,955.47	10,955.47	-	-	-	-	-			10,955.47	10,955.47	-	-	-	-	-	
	계류	나	면목동 산50-20	563.97	563.97	-	-	-	-	-	나	면목동 산50-20	563.97	563.97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용산 시설	다	2개소	10,391.50	10,391.50	-	-	-	-	-	다	2개소	10,391.50	10,391.50	-	-	-	-	-	
	다-1	면목동 산46-4 외	(8,074.20)	(8,074.20)	-	-	-	-	-	다-1	면목동 산46-4 외	(8,074.20)	(8,074.20)	-	-	-	-	-	
	다-2	면목동 산50-10외	(2,317.30)	(2,317.30)	-	-	-	-	-	다-2	면목동 산50-10외	(2,317.30)	(2,317.30)	-	-	-	-	-	
	소계		625.75	625.75	-	-	-	-	27			625.75	625.75	-	-	-	-	27	
		휴게소	-	-	-	-	-	-	-			-	-	-	-	-	-	-	
	라	4개소	625.75	625.75	-	-	-	-	-	라	4개소	625.75	625.75	-	-	-	-	-	
	라-1	면목동 산46-5	(121.11)	(121.11)	-	-	-	-	-	라-1	면목동 산46-5	(121.11)	(121.11)	-	-	-	-	-	
	라-2	면목동 산46-4	(127.32)	(127.32)	-	-	-	-	-	라-2	면목동 산46-4	(127.32)	(127.32)	-	-	-	-	-	
	라-3	면목동 산1-9	(127.32)	(127.32)	-	-	-	-	-	라-3	면목동 산1-9	(127.32)	(127.32)	-	-	-	-	-	
	라-4	면목동 산1-9	(250.00)	(250.00)	-	-	-	-	-	라-4	면목동 산1-9	(250.00)	(250.0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팔각정	1	면목동 산1-9	-	-	-	-	-	-	1	1	면목동 산1-9	-	-	-	-	-	-	1	
파고라	①	전지역	-	-	-	-	-	-	4	①	전지역	-	-	-	-	-	-	4	
정자	②	면목동 산46-4	-	-	-	-	-	-	1	②	면목동 산46-4	-	-	-	-	-	-	1	
평의자	③	전지역	-	-	-	-	-	-	21	③	전지역	-	-	-	-	-	-	21	
소 계			325.99	325.99	-	-	-	-	9			325.99	325.99	-	-	-	-	9	
어린이 놀이터	마	2개소	325.99	325.99	-	-	-	-	-	마	2개소	325.99	325.99	-	-	-	-	-	
	마-1	면목동 산50-16	(132.32)	(132.32)	-	-	-	-	-	마-1	면목동 산50-16	(132.32)	(132.32)	-	-	-	-	-	
	마-2	면목동 산50-33	(193.67)	(193.67)	-	-	-	-	-	마-2	면목동 산50-33	(193.67)	(193.67)	-	-	-	-	-	
경사 미끄럼틀	④	면목동 산50-33	-	-	-	-	-	-	1	④	면목동 산50-33	-	-	-	-	-	-	1	
미끄럼틀	⑤	면목동 산50-16	-	-	-	-	-	-	1	⑤	면목동 산50-16	-	-	-	-	-	-	1	
놀이집	⑥	면목동 산50-16	-	-	-	-	-	-	1	⑥	면목동 산50-16	-	-	-	-	-	-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흙흐름놀이대	㉠	면목동 산50-16	-	-	-	-	-	-	6		면목동 산50-16	-	-	-	-	-	-	6	
소계			5,578.69	5,578.69	-	1	1,371.00	4,795.00	8			5,578.69	5,578.69	-	1	1,371.00	4,795.00	8	
다목적운동장	바	3개소	756.47	756.47	-	-	-	-	-	바	3개소	756.47	756.47	-	-	-	-	-	
	바-1	면목동 산46-2	(264.00)	(264.00)	-	-	-	-	-	바-1	면목동 산46-2	(264.00)	(264.00)	-	-	-	-	-	
	바-2	면목동 산1-9	(342.72)	(342.72)	-	-	-	-	-	바-2	면목동 산1-9	(342.72)	(342.72)	-	-	-	-	-	
	바-3	면목동 산1-9	(149.71)	(149.71)	-	-	-	-	-	바-3	면목동 산1-9	(149.71)	(149.71)	-	-	-	-	-	
족구장	사	면목동 산46-5 외	1,051.75	1,051.75	-	-	-	-	-	사	면목동 산46-5 외	1,051.75	1,051.75	-	-	-	-	-	
다이나트랙	아	면목동 산1-9	487.14	487.14	-	-	-	-	-	아	면목동 산1-9	487.14	487.14	-	-	-	-	-	
체력단련장	자	면목동 산50-16	288.33	288.33	-	-	-	-	-	자	면목동 산50-16	288.33	288.33	-	-	-	-	-	
중랑문화체육관	2	면목동 519 외	2,995.00	2,995.00	철근콘크리트	1	1,371.00	4,795.00	-	2	면목동 519 외	2,995.00	2,995.00	철근콘크리트	1	1,371.00	4,795.00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교양시설	체험단련시설	⑧	면목동 산50-16	–	–	–	–	–	–	–	⑧	면목동 산50-16	–	–	–	–	–	–	–	
	소계			772.07	772.07	–	–	–	–	–			772.07	772.07	–	–	–	–	–	
	자연학습장	차	4개소	772.07	772.07	–	–	–	–	–	차	4개소	772.07	772.07	–	–	–	–	–	
		차-1	면목동 산50-22 외	(148.89)	(148.89)	–	–	–	–	–	차-1	면목동 산50-22 외	(148.89)	(148.89)	–	–	–	–	–	
		차-2	면목동 산50-22 외	(237.07)	(237.07)	–	–	–	–	–	차-2	면목동 산50-22 외	(237.07)	(237.07)	–	–	–	–	–	
		차-3	면목동 산50-23 외	(192.46)	(192.46)	–	–	–	–	–	차-3	면목동 산50-23 외	(192.46)	(192.46)	–	–	–	–	–	
		차-4	면목동 산50-25 외	(193.65)	(193.65)	–	–	–	–	–	차-4	면목동 산50-25 외	(193.65)	(193.65)	–	–	–	–	–	
편의시설	소계			297.36	297.36	–	1	81.0	81.0	–			297.36	297.36	–	1	81.0	81.0	–	
	주차장	카	2개소	147.36	147.36	–	–	–	–	–	카	2개소	147.36	147.36	–	–	–	–	–	
		카-1	면목동 519	(35.92)	(35.92)	–	–	–	–	–	카-1	면목동 519	(35.92)	(35.92)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녹지 및 기타	화장실	카-2	면목동 519	(111.44)	(111.44)	-	-	-	-	-	카-2	면목동 519	(111.44)	(111.44)	-	-	-	-	-	
		3	면목동 산1-9 외	150	150	-	1	81.0	81.0	-	3	면목동 산1-9 외	150	150	-	1	81.0	81.0	-	
	소계			46,425.62	-	-	-	-	-	-			46,425.62	-	-	-	-	-	-	
	녹지			46,425.62	-	-	-	-	-	-			46,425.62	-	-	-	-	-	-	

2-3. 용마산근린공원 2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814.88 (75.84)	4,962.18 (859.61)				
당 초	소 로	계			500.88 (75.84)	2,244.64 (859.61)				
당 초		3류	3-1	4.0	335.27	1,341.0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4	
당 초		3류	3-2	4.0	72.46	345.02	진입로	소로 3-3	주차장 자-1	
당 초		3류	3-3	6.0	93.15	558.5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당 초		3류	3-1	12.0	(75.84)	(859.61)	도시계획도로			
당 초	산책로	계			1,362.62	2,717.54				
당 초			1	1.5	138.87	208.55	산책로	공원경계	소로 3-1	
당 초			2	1.0	36.65	36.64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	
당 초			3	2.5	30.40	80.79	산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4	1.5	119.00	180.53	산책로	산책로 1	산책로 5	
당 초			5	1.5	97.52	146.85	연결로	산책로 1	휴게소,다-3	
당 초			6	2.0	4.41	8.82	연결로	광장 가-4	다목적 운동장 마-3	
당 초			7	2.0	4.94	9.87	연결로	다목적 운동장 마-3	다이나트랙 사	
당 초			8	2.0	78.85	148.99	연결로	소로 3-1	소로 3-1	
당 초			9	1.8	23.61	43.9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당 초			10	2.0	17.47	35.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8	
당 초			11	1.5	12.71	19.78	연결로	소로 3-1	다목적 운동장 마-2	
당 초			12	2.0	13.09	26.83	연결로	소로 3-1	다목적 운동장 마-2	
당 초			13	1.5	13.02	23.52	연결로	소로 3-1	광장 가-3	
당 초			14	2.5	27.15	71.19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3	
당 초			15	1.8	44.84	81.62	산책로	소로 3-1	공원경계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6	1.5	10.50	15.75	연결로	소로 3-1	산책로 17	
당 초			17	1.8	58.90	110.83	산책로	소로 3-1	소로 3-1	
당 초			18	1.5	95.51	143.86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22	
당 초			19	2.5	66.62	167.46	연결로	산책로 21	휴게소 다-2	
당 초			20	1.5	21.69	33.75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당 초			21	2.5	112.13	280.44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소 다-2	
당 초			22	2.5	77.53	193.95	연결로	공원경계	휴게소 다-2	
당 초			23	3.0	49.19	151.14	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다-2	
당 초			24	2.0	96.80	194.97	연결로	계류 나	소로 3-1	
당 초			25	3.5	15.71	56.20	연결로	산책로 21	중랑문화 체육관 2	
당 초			26	1.5	6.08	9.18	연결로	소로 3-1	휴게소 다-1	

구분	등급	레벨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27	1.8	13.22	26.14	연결로	소로 3-1	체력단련장 아	
당초			28	4.0	27.98	113.76	진입로	소로 3-1	-	
당초			29	2.0	48.23	96.48	연결로	광장 가-1	계류 나	

3-1.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 산1-4 일대, 채석장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199,712.30	45,854.41	10	2,132.53	2,712.70	303	
기반시설	소계	13,803.27	13,803.27	-	-	-	-	13,803.27	13,803.27	-	-	-	-	
	도로	8,844.77	8,844.77	-	-	-	-	8,844.77	8,844.77	-	-	-	-	
	광장	4,958.50	4,958.50	-	-	-	-	4,958.50	4,958.50	-	-	-	-	
조경시설		7,084.06	7,084.06	-	-	-	16	7,084.06	7,084.06	-	-	-	16	
휴양시설		2,340.50	2,340.50	-	-	-	117	2,340.50	2,340.50	-	-	-	117	
유희시설		-	-	-	-	-	-	-	-	-	-	-	-	
운동시설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16,763.10	16,763.10	1	466.24	360.46	26	
교양시설		3,303.58	3,303.58	2	916.39	1,602.34	17	3,303.58	3,303.58	2	916.39	1,602.34	17	
편익시설		1,847.80	1,847.80	2	113.80	113.80	4	1,847.80	1,847.80	2	113.80	113.80	4	
관리시설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5	636.10	636.10	123	
녹지 및 기타		153,857.89	-	-	-	-	-	153,857.89	-	-	-	-	-	

3-2.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199,712.30	45,854.41	-	10	2,132.53	2,712.7	303			199,712.30	45,854.41	-	10	2,132.53	2,712.7	303	
기반시설	소 계			13,803.27	13,803.27	-	-	-	-	-			13,803.27	13,803.27	-	-	-	-	-	
	도 로			8,844.77	8,844.77	-	-	-	-	-			8,844.77	8,844.77	-	-	-	-	-	
	광장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가	5개소	4,958.50	4,958.50	-	-	-	-	-	
	광장 1	가-1	면목동 산 1-4	1,406.50	1,406.50	-	-	-	-	-	가-1	면목동 산 1-4	1,406.50	1,406.50	-	-	-	-	-	
	광장 2	가-2	면목동 산 1-4	688.00	688.00	-	-	-	-	-	가-2	면목동 산 1-4	688.00	688.00	-	-	-	-	-	
	광장 3	가-3	면목동 산 1-4	693.00	693.00	-	-	-	-	-	가-3	면목동 산 1-4	693.00	693.00	-	-	-	-	-	
	광장 4	가-4	면목동 산 1-4	1,528.00	1,528.00	-	-	-	-	-	가-4	면목동 산 1-4	1,528.00	1,528.00	-	-	-	-	-	
	광장 5	가-5	면목동 산 1-4	643.00	643.00	-	-	-	-	-	가-5	면목동 산 1-4	643.00	643.00	-	-	-	-	-	
조경시설	소 계			7,084.06	7,084.06	-	-	-	-	16			7,084.06	7,084.06	-	-	-	-	16	
	인공폭포	나-1	면목동 산 1-4	2,853.00	2,853.00	-	-	-	-	-	나-1	면목동 산 1-4	2,853.00	2,853.0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사각 파고라	①	면목동 산 1-4	-	-	-	-	-	-	5	①	면목동 산 1-4	-	-	-	-	-	-	5	
파고라	②	면목동 산 1-4	-	-	-	-	-	-	3	②	면목동 산 1-4	-	-	-	-	-	-	3	
팔각 정자	③	면목동 산 1-4	-	-	-	-	-	-	2	③	면목동 산 1-4	-	-	-	-	-	-	2	
등나무 파고라	④	면목동 산 1-4	-	-	-	-	-	-	1	④	면목동 산 1-4	-	-	-	-	-	-	1	
야외 탁자	⑤	면목동 산 1-4	-	-	-	-	-	-	3	⑤	면목동 산 1-4	-	-	-	-	-	-	3	
원형 야외 탁자	⑥	면목동 산 1-4	-	-	-	-	-	-	1	⑥	면목동 산 1-4	-	-	-	-	-	-	1	
야외 테이블	⑦	면목동 산 1-4	-	-	-	-	-	-	1	⑦	면목동 산 1-4	-	-	-	-	-	-	1	
초화원	다	면목동 산73-2	4,231.06	4,231.06	-	-	-	-	-	다	면목동 산73-2	4,231.06	4,231.06	-	-	-	-	-	
소 계			2,340.50	2,340.50	-	-	-	-	117			2,340.50	2,340.50	-	-	-	-	117	

중랑구 시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설	등의자	-	-	-	-	-	-	-	117			-	-	-	-	-	-	117	
휴게 쉼터	라	9개소	2,340.50	2,340.50	-	-	-	-	-	라	9개소	2,340.50	2,340.50	-	-	-	-	-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라-1	면목동 산 1-4	(207.00)	(207.00)	-	-	-	-	-	
	라-2	면목동 산 1-4	(1,067.00)	(1,067.00)	-	-	-	-	-	라-2	면목동 산 1-4	(1,067.00)	(1,067.00)	-	-	-	-	-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라-3	면목동 산 1-4	(827.00)	(827.00)	-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4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5	면목동 산 1-4	(37.00)	(37.00)	-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라-6	면목동 산 1-4	(56.00)	(56.00)	-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라-7	면목동 산 1-4	(15.50)	(15.50)	-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라-8	면목동 산 1-4	(49.70)	(49.70)	-	-	-	-	-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라-9	면목동 산 1-4	(44.30)	(44.3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소계			16,763.1	16,763.1	-	1	466.24	360.46	26			16,763.1	16,763.1	-	1	466.24	360.46	26	
평행봉			-	-	-	-	-	-	4			-	-	-	-	-	-	4	
철봉			-	-	-	-	-	-	4			-	-	-	-	-	-	4	
상하체 들어 올리기			-	-	-	-	-	-	2			-	-	-	-	-	-	2	
체력단련 시설			-	-	-	-	-	-	16			-	-	-	-	-	-	16	
육상장	바	면목동 산 1-4	2,536.8	2,536.8	-	-	-	-	-	바	면목동 산 1-4	2,536.8	2,536.8	-	-	-	-	-	
배드민턴장	사	면목동 산 1-4	657.80	657.80	-	-	-	-	-	사	면목동 산 1-4	657.80	657.80	-	-	-	-	-	
게이트볼장	아	면목동 산 1-4	352.40	352.40	-	-	-	-	-	아	면목동 산 1-4	352.40	352.40	-	-	-	-	-	
테니스장	자	면목동 산 1-4	1,681.00	1,681.00	-	-	-	-	-	자	면목동 산 1-4	1,681.00	1,681.00	-	-	-	-	-	
축구장	차	면목동 산 1-4	8,649.00	8,649.00	-	-	-	-	-	차	면목동 산 1-4	8,649.00	8,649.00	-	-	-	-	-	
소운동장	카	면목동 산 1-4	1,521.00	1,521.00	-	-	-	-	-	카	면목동 산 1-4	1,521.00	1,521.00	-	-	-	-	-	
다목적 운동장	타	면목동 산 1-4	898.86	898.86	-	-	-	-	-	타	면목동 산 1-4	898.86	898.86	-	-	-	-	-	
인공 암벽장	파	면목동 산 1-4	466.24	466.24	철골조	1	466.24	360.46	-	파	면목동 산 1-4	466.24	466.24	철골조	1	466.24	360.46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3,303.58	3,303.58	-	2	916.39	1,602.34	17			3,303.58	3,303.58		2	916.39	1,602.34	17	
	책쉼터	하	면목동 산 1-4	769.00	769.00	철골조	1	281.35	326.72	-	하	면목동 산 1-4	769.00	769.00	철골조	1	281.35	326.72	-	
	화분	⑪	면목동 산 1-4	-	-	-	-	-	-	3	⑪	면목동 산 1-4	-	-	-	-	-	-	3	
	독서용 테이블	⑫	면목동 산 1-4	-	-	-	-	-	-	3	⑫	면목동 산 1-4	-	-	-	-	-	-	3	
	앉음벽	⑬	면목동 산 1-4	-	-	-	-	-	-	1	⑬	면목동 산 1-4	-	-	-	-	-	-	1	
	철재 난간	⑭	면목동 산 1-4	-	-	-	-	-	-	1	⑭	면목동 산 1-4	-	-	-	-	-	-	1	
	천체 관측 시설	거	면목동 1316-8	2,534.58	2,534.58	철근콘크리트조	1	635.04	1,275.62		거	면목동 1316-8	2,534.58	2,534.58	철근콘크리트조	1	635.04	1,275.62		
	조합 놀이대	⑮	면목동 1316-8	-	-	-	-	-	-	1	⑮	면목동 1316-8	-	-	-	-	-	-	1	
	과학 놀이터	⑯	면목동 1316-8	-	-	-	-	-	-	3	⑯	면목동 1316-8	-	-	-	-	-	-	3	
	원형 플랜터	⑰	면목동 1316-8	-	-	-	-	-	-	4	⑰	면목동 1316-8	-	-	-	-	-	-	4	
	자전거 보관대	⑱	면목동 1316-8	-	-	-	-	-	-	1	⑱	면목동 1316-8	-	-	-	-	-	-	1	
편의시설	소 계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4			1,847.80	1,847.80	-	2	113.80	113.80	4	
	주차장	너	면목동 산 1-4	1,734.00	1,734.00	-	-	-	-	-	너	면목동 산 1-4	1,734.00	1,734.00	-	-	-	-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화장실	더	면목동 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더	면목동 산 1-4	113.80	113.80	-	2	113.80	113.80	-	
	음수장	⑧	면목동 산 1-4	-	-	-	-	-	-	2	⑧	면목동 산 1-4	-	-	-	-	-	-	2	
	대기실	⑨	면목동 산 1-4	-	-	-	-	-	-	2	⑨	면목동 산 1-4	-	-	-	-	-	-	2	
관리시설	소계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712.10	712.10	-	5	636.10	636.10	123	
	관리사무소	러	면목동 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러	면목동 산 1-4	220.30	220.30	-	1	220.30	220.30	-	
	쓰레기통			(35.00)	-	-	-	-	-	35			(35.00)	-	-	-	-	-	35	
	위험표지판			(1.00)	-	-	-	-	-	3			(1.00)	-	-	-	-	-	3	
	방향표지판			(3.00)	-	-	-	-	-	3			(3.00)	-	-	-	-	-	3	
	종합안내판			(1.00)	-	-	-	-	-	2			(1.00)	-	-	-	-	-	2	
	쓰레기처리장			(7.50)	-	-	-	-	-	1			(7.50)	-	-	-	-	-	1	
	볼라드			(4.00)	-	-	-	-	-	4			(4.00)	-	-	-	-	-	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공원등			(68.00)	-	-	-	-	-	73			(68.00)	-	-	-	-	-	73	
	배수지 관리동	머	면목동 산 1-4	224.80	224.80	-	2	224.80	224.80	-	머	면목동 산 1-4	224.80	224.80	-	2	224.80	224.80	-	
	배전실	버	면목동 산 1-4	191.00	191.00	-	2	191.00	191.00	-	버	면목동 산 1-4	191.00	191.00	-	2	191.00	191.00	-	
	관리 공간	서	면목동 산 1-4	76.00	76.00	-	-	-	-	-	서	면목동 산 1-4	76.00	76.00	-	-	-	-	-	
	공원 장비 보관함	⑩		-	-	-	-	-	-	2	⑩		-	-	-	-	-	-	2	
녹지 및 기타	소 계			153,857.89	-	-	-	-	-	-			153,857.89	-	-	-	-	-	-	
	녹지			153,857.89	-	-	-	-	-	-			153,857.89	-	-	-	-	-	-	

3-3. 용마산근린공원 3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합 계				1,996.49	8,844.77				
당 초	소 로	계			1,907.85	8,738.46				
당 초		2류	1	5.5~12.5	155.73	1,229.57	진입로	녹지대	소로 3-17	
당 초		3류	1	3.5~11.0	54.30	412.25	연결로	소로 2-1	휴게쉼터 다-1	
당 초		3류	2	2.35	407.90	988.47	산책로	소로 3-2	소로 3-2	
당 초		3류	3	4.5~5.5	43.40	211.27	연결로	주차장 타	소로 3-2	
당 초		3류	4	3.0~4.0	71.04	298.42	연결로	소로 3-6	주차장 타	
당 초		3류	5	5.0	14.25	70.51	연결로	소로 3-4	소로 3-2	
당 초		3류	6	4.0~11.0	78.99	523.68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3	
당 초		3류	7	3.0~4.0	18.05	58.15	연결로	휴게쉼터 다-2	광장 가-5	
당 초		3류	8	3.5~7.0	36.33	209.00	연결로	소로 3-17	교양시설 러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9	1.25	86.86	96.42	연결로	녹지대	소로 3-17	
당 초		3류	10	1.5	17.84	26.93	연결로	녹지대	놀이터 라	
당 초		3류	11	2.0	32.20	64.82	연결로	놀이터 라	공원 경계	
당 초		3류	12	2.0	11.57	23.52	연결로	소로 3-11	다목적 운동장 카	
당 초		3류	13	5.0	5.80	28.02	연결로	소로 3-8	광장 가-5	
당 초		3류	14	2.0	25.24	50.86	산책로	공원 경계	휴게쉼터 다-3	
당 초		3류	15	5.0~8.5	18.02	122.73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4	
당 초		3류	16	5.0	8.67	43.42	연결로	소로 3-17	소운동장 차	
당 초		3류	17	6.0~8.5	393.07	2,709.59	연결로	소로 2-1	소로 3-18	
당 초		3류	18	2.5	41.03	103.04	연결로	소로 3-17	광장 가-2	
당 초		3류	19	3.0~6.5	48.01	202.64	산책로	광장 가-2	광장 가-2	
당 초		3류	20	4.0~5.5	29.43	150.58	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1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류	21	4.0~5.5	53.60	230.28	연결로	광장 가-3	광장 가-1	
당 초		3류	22	2.0~5.0	29.15	82.20	연결로	소로 3-24	육상장 마	
당 초		3류	23	5.0	6.23	30.15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3	
당 초		3류	24	3.5~5.0	186.05	684.72	연결로	소로 3-23	소로 3-2	
당 초		3류	25	4.0	7.42	31.46	연결로	소로 3-24	배드민턴장 바	
당 초		3류	26	2.0	27.67	55.76	연결로	축구장 자	소로 3-24	
당 초	산책로	계			88.64	106.31				
당 초			1	1.2	33.31	39.97	산책로	소로 3-26	소로 3-26	
당 초			2	1.2	55.33	66.34	산책로	소로 3-26	소로 3-26	

4-1. 용마산근린공원 4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76-110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5,283.80	7,566.61	-	-	-	6	15,283.80	7,566.61	-	-	-	6	
기반시설	소 계	1,526.02	1,526.02	-	-	-	-	1,526.02	1,526.02	-	-	-	-	
	광장	101.42	101.42	-	-	-	-	101.42	101.42	-	-	-	-	
	램프	-	-	-	-	-	-	-	-	-	-	-	-	
	계단	-	-	-	-	-	-	-	-	-	-	-	-	
	자연석 계단	-	-	-	-	-	-	-	-	-	-	-	-	
	도로	1,424.60	1,424.60	-	-	-	-	1,424.60	1,424.60	-	-	-	-	
	배수로	-	-	-	-	-	-	-	-	-	-	-	-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시설	4,484.29	4,484.29	-	-	-	-	4,484.29	4,484.29	-	-	-	-	
휴양시설	558.12	558.12	-	-	-	6	558.12	558.12	-	-	-	6	
유희시설	184.93	184.93	-	-	-	-	184.93	184.93	-	-	-	-	
운동시설	114.42	114.42	-	-	-	-	114.42	114.42	-	-	-	-	
편익시설	698.83	698.83	-	-	-	-	698.83	698.83	-	-	-	-	
녹지 및 기타	7,717.19	-	-	-	-	-	7,717.19	-	-	-	-	-	

5-1. 용마산근린공원 5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4동 143-146 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39,077.00	13,966.66	2	144.48	122.44	25	
기반시설	소계	5,148.28	5,148.28	-	-	-	-	5,148.28	5,148.28	-	-	-	-	
	도로	4,237.20	4,237.20	-	-	-	-	4,237.20	4,237.20	-	-	-	-	
	광장	911.08	911.08	-	-	-	-	911.08	911.08	-	-	-	-	
조경시설		2,463.86	2,463.86	-	-	-	-	2,463.86	2,463.86	-	-	-	-	
휴양시설		139.43	139.43	-	-	-	11	139.43	139.43	-	-	-	11	
운동시설		628.90	628.90	-	-	-	12	628.90	628.90	-	-	-	12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5,385.29	5,385.29	-	-	-	-	5,385.29	5,385.29	-	-	-	-	
편익시설	107.70	107.70	1	92.48	70.44	-	107.70	107.70	1	92.48	70.44	-	
관리시설	93.20	93.20	1	52.00	52.00	2	93.20	93.20	1	52.00	52.00	2	
녹지 및 기타	25,110.34	-	-	-	-	-	25,110.34	-	-	-	-	-	

6-1. 용마산 근린공원 6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5-117, 구의지구)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148,569.50	46,952.22	9	630.88	755.50	99	
기반시설	소계	8,675.30	8,238.23	-	-	-	-	8,675.30	8,238.23	-	-	-	-	
	도로	6,753.95	6,316.88					6,753.95	6,316.88					
	광장	1,921.35	1,921.35					1,921.35	1,921.35					
조경시설		9,287.51	9,287.51					9,287.51	9,287.51					
휴양시설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4,105.01	4,105.01	1	72.00	72.00	73	
유희시설		240.00	240.00					240.00	240.00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교양시설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21,174.47	21,174.47	2	349.72	474.34		
운동시설	2,452.00	2,452.00				8	2,452.00	2,452.00				8	
편익시설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1,200.00	1,200.00	5	149.76	149.76	4	
관리시설	255.00	255.00	1	59.40	59.40	14	255.00	255.00	1	59.40	59.40	14	
녹지 및 기타	101,180.21						101,180.21						

7-1. 용마산근린공원 7지구 총괄표 (위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38일대)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74,266.10	30,142.75	-	-	-	48	74,266.10	30,142.75	-	-	-	48	
기반시설	소계	8,324.52	8,324.52	-	-	-	-	8,324.52	8,324.52	-	-	-	-	
	도로	7,789.64	7,789.64	-	-	-	-	7,789.64	7,789.64	-	-	-	-	
	광장	534.88	534.88	-	-	-	-	534.88	534.88	-	-	-	-	
조경시설		5,224.84	5,224.84	-	-	-	2	5,224.84	5,224.84	-	-	-	2	
휴양시설		377.65	377.65	-	-	-	24	377.65	377.65	-	-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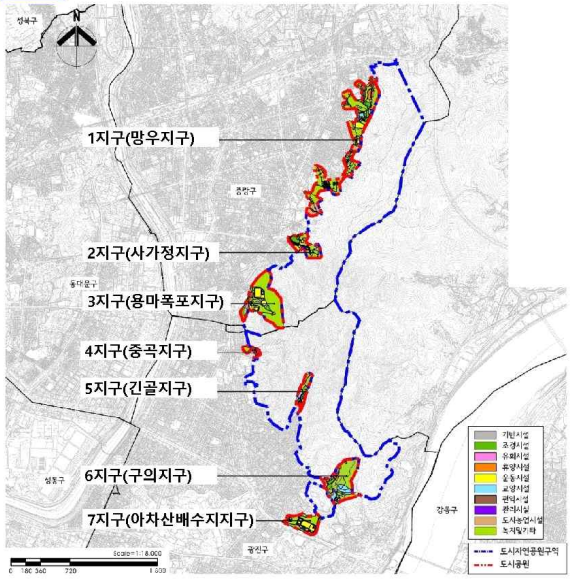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희시설	152.00	152.00	-	-	-	4	152.00	152.00	-	-	-	4	
운동시설	14,210.64	14,210.64	-	-	-	17	14,210.64	14,210.64	-	-	-	17	
교양시설	1,592.28	1,592.28	-	-	-	-	1,592.28	1,592.28	-	-	-	-	
편익시설	260.82	260.82	-	-	-	-	260.82	260.82	-	-	-	-	
관리시설	-	-	-	-	-	1	-	-	-	-	-	1	
녹지 및 기타	44,123.35	-	-	-	-	-	44,123.35	-	-	-	-	-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총괄)

총괄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산근린공원

당초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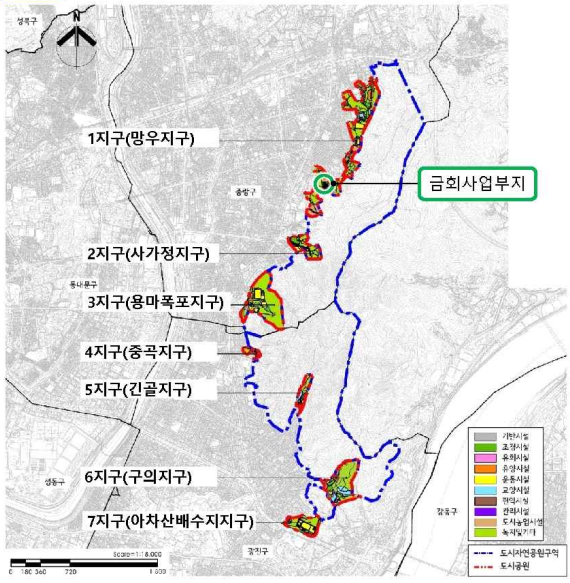
구분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부지 총 면적		866,067.90	318,449.90	70,709.30	199,712.30	15,283.80	39,077.00	148,569.50	74,265.10
사업 총 면적		279,520.86	113,754.53	24,283.68	45,854.41	7,566.61	13,966.66	46,952.22	30,142.75
기반시설	소계	75,522.75	33,391.91	5,728.35	13,803.27	1,526.02	5,148.28	8,675.30	8,324.52
	도로	60,315.13	27,367.69	4,962.18	8,844.77	1,424.60	4,237.20	6,753.95	7,769.64
	광장	15,217.62	6,024.22	766.17	4,958.50	101.42	911.08	1,921.35	534.88
조경시설		71,140.16	31,640.13	10,955.47	7,084.06	4,484.29	2,463.86	9,287.51	5,224.84
휴양시설		19,399.26	11,262.80	625.75	2,340.50	558.12	139.43	4,105.01	377.65
유희시설		1,509.77	606.85	325.99	-	184.93	-	240.00	152.00
운동시설		49,622.76	9,875.01	5,578.69	16,763.10	114.42	628.90	2,452.00	14,210.64
교양시설		36,762.00	4,534.31	772.07	3,303.58	-	5,385.29	21,174.47	1,592.28
편익시설		16,881.75	12,468.24	297.36	1,847.80	686.83	107.70	1,200.03	280.82
관리시설		1,957.80	887.50	-	712.10	-	93.20	255.00	-
도시농업시설		8,237.26	8,237.26	-	-	-	-	-	-
녹지 및 기타		586,103.97	207,695.37	46,425.62	153,857.89	7,717.19	25,110.34	101,180.21	44,123.35
통수(통)		41	18	2	10	-	2	9	-
전용률 비탄면적		11,938.39	7,576.50	1,452.03	2,132.53	-	144.48	630.88	-
연면적		24,042.14	15,575.50	4,876.03	2,712.70	-	122.44	755.50	-
공작물(기)		672	152	44	303	6	25	93	48
비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2,361.28	1,064.90	859.61			437.07	

* 공원시설율 : 279,520.86 / 866,067.90 = 32.27%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11,165.5 / 279,520.86 = 3.99%
* 전폐율 : 11,938.39 / 866,067.90 = 1.38%

총괄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산근린공원

변경



■ 총괄표

구분		총계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부지 총 면적		866,067.90	318,449.90	70,709.30	199,712.30	15,283.80	39,077.00	148,569.50	74,265.10
사업 총 면적		283,878.02	115,111.69	24,283.68	45,854.41	7,566.61	13,966.66	46,952.22	30,142.75
기반시설	소계	77,295.01	35,155.97	5,728.35	13,803.27	1,526.02	5,148.28	8,675.30	8,324.52
	도로	62,020.08	28,072.64	4,962.18	8,844.77	1,424.60	4,237.20	6,753.95	7,769.64
	광장	15,275.73	6,083.33	766.17	4,958.50	101.42	911.08	1,921.35	534.88
조경시설		71,297.43	31,797.40	10,955.47	7,084.06	4,484.29	2,463.86	9,287.51	5,224.84
휴양시설		19,548.57	11,402.11	625.75	2,340.50	558.12	139.43	4,105.01	377.65
유희시설		1,645.81	742.89	325.99	-	184.93	-	240.00	152.00
운동시설		49,622.76	9,875.01	5,578.69	16,763.10	114.42	628.90	2,452.00	14,210.64
교양시설		36,762.00	4,534.31	772.07	3,303.58	-	5,385.29	21,174.47	1,592.28
편익시설		16,881.75	12,468.24	297.36	1,847.80	686.83	107.70	1,200.03	280.82
관리시설		1,957.80	887.50	-	712.10	-	93.20	255.00	-
도시농업시설		8,237.26	8,237.26	-	-	-	-	-	-
녹지 및 기타		581,752.81	203,338.21	46,425.62	153,857.89	7,717.19	25,110.34	101,180.21	44,123.35
통수(통)		45	22	2	10	-	2	9	-
전용률 비탄면적		12,328.39	7,968.50	1,452.03	2,132.53	-	144.48	630.88	-
연면적		24,432.14	15,965.50	4,876.03	2,712.70	-	122.44	755.50	-
공작물(기)		700	175	44	303	6	25	93	48
비고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	
			2,361.28	1,064.90	859.61			43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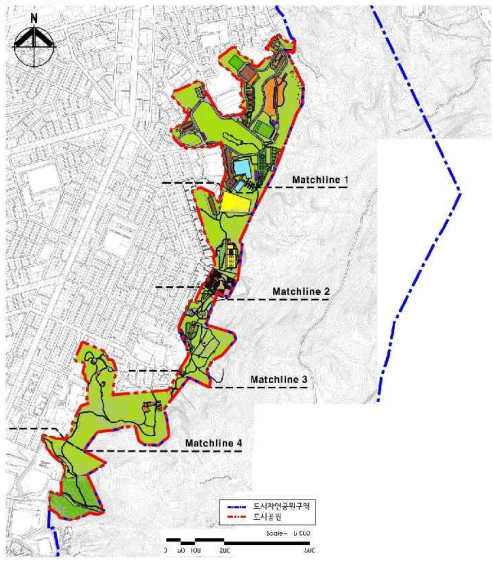
* 공원시설율 : 283,878.02 / 866,067.90 = 32.78%
* 도서관·문화예술회관·청소년수련시설·노인복지관 및 운동시설율 : 11,165.5 / 283,878.02 = 3.93%
* 전폐율 : 12,328.39 / 866,067.90 = 1.42%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1지구)

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산근린공원(1지구)

당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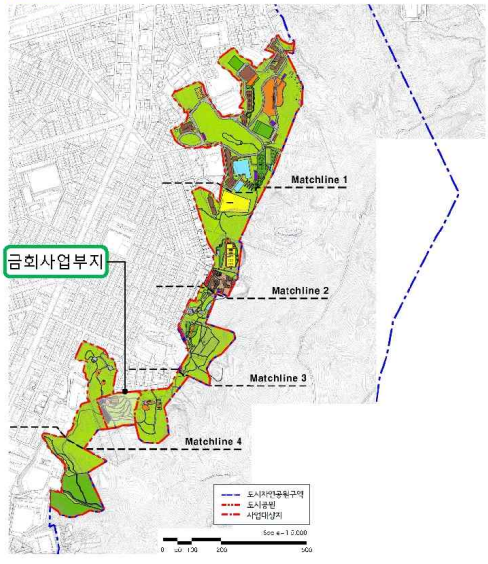
■ 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318,449.90	110,754.53	18	7,578.50	15,575.50	152	
기반시설	소계	33,391.91	33,391.91	-	-	-	-	
	도로	27,367.69	27,367.69	-	-	-	-	
	광장	6,024.22	6,024.22	-	-	-	-	
조경시설		31,640.13	31,640.13	-	-	-	12	
휴양시설		11,252.80	11,252.80	1	120.00	120.00	66	
유희시설		606.85	606.85	-	-	-	2	
교양시설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운동시설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편익시설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관리시설		837.50	837.50	5	766.50	1,137.50	16	
도시농업시설		6,146.78	6,146.78	-	-	-	6	
녹지 및 기타		207,695.37	-	-	-	-	-	

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산근린공원(1지구)

변경



■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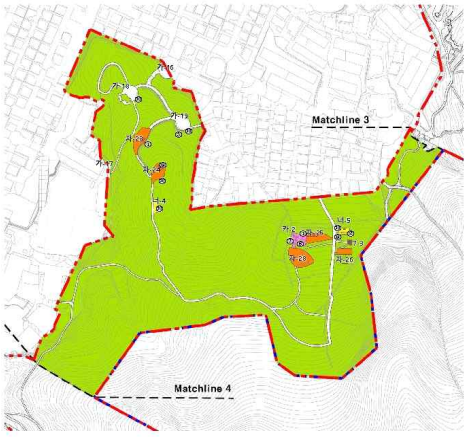
구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318,449.90	115,111.69	22	7,968.50	15,965.5	175	
기반시설	소계	35,155.97	35,155.97	-	-	-	-	
	도로	29,072.64	29,072.64	-	-	-	-	
	광장	6,083.33	6,083.33	-	-	-	-	
조경시설		31,797.40	31,797.40	-	-	-	12	
휴양시설		11,402.11	11,402.11	1	120.00	120.00	85	
유희시설		742.89	742.89	-	-	-	5	
교양시설		4,534.31	4,534.31	3	3,969.00	11,358.00	4	
운동시설		9,875.01	9,875.01	1	375.00	450.00	46	
편익시설		12,469.24	12,469.24	8	2,348.00	2,510.00	-	
관리시설		897.50	897.50	8	826.50	1,197.50	17	
도시농업시설		8,237.26	8,237.26	1	330.00	330.00	6	
녹지 및 기타		203,338.21	203,338.21	-	-	-	-	

용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도(1-4지구)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용마산근린공원(1-4지구)

당초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68,037.10	5,031.70	철근	1층	18.00	18.00	28	
기반 사업	소계		3,442.57	3,442.57	-	-	-	-	-	
	도로		2,766.17	2,766.17	-	-	-	-	-	
	광장	가	676.40	676.40	-	-	-	-	-	
		가-16	(140.23)	(140.23)	-	-	-	-	-	
		가-17	(41.33)	(41.33)	-	-	-	-	-	
		가-18	(239.61)	(239.61)	-	-	-	-	-	
		가-19	(255.23)	(255.23)	-	-	-	-	-	
휴양 사업	소계		1,228.06	1,228.06	-	-	-	-	10	
	쉼터	자	1,228.06	1,228.06	-	-	-	-	-	
		자-23	(271.76)	(271.76)	-	-	-	-	-	
		자-24	(213.23)	(213.23)	-	-	-	-	-	
		자-25	(242.34)	(242.34)	-	-	-	-	-	
		자-26	(88.80)	(88.80)	-	-	-	-	-	
		자-28	(401.93)	(401.93)	-	-	-	-	3	
	파고라	①							2	
	정의자	②	-	-	-	-	-	-	4	
	발산성	⑮	-	-	-	-	-	-	1	
유희 사업	소계		193.67	193.67	-	-	-	-	2	
	어린이놀이터	카-2	193.67	193.67	-	-	-	-	-	
	소집놀이대	⑦	-	-	-	-	-	-	1	
	그네	⑧	-	-	-	-	-	-	1	
운동 사업	소계		139.36	139.36	-	-	-	-	16	
	체력단련장	너	139.36	139.36	-	-	-	-	-	
		너-4	(53.13)	(53.13)	-	-	-	-	-	
		너-5	(86.23)	(86.23)	-	-	-	-	-	
	복합운동시설	⑰	-	-	-	-	-	-	1	
	체력단련시설	⑱	-	-	-	-	-	-	15	
편익 사업	소계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화장실	7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7-3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녹지 및 기타	소계		63,005.40	-	-	-	-	-	-	
	녹지		63,005.40	-	-	-	-	-	-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용마산근린공원(1-4지구)

변경



■ 사업조서

구분		부호	조사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68,037.10	5,388.86	-	5동	408.00	408.00	51	
기반 사업	소계		5,206.63	5,206.63	-	-	-	-	-	
	도로		4,471.12	4,471.12	-	-	-	-	-	
	광장	가	735.51	735.51	-	-	-	-	-	
		가-16	(140.23)	(140.23)	-	-	-	-	-	
		가-17	(41.33)	(41.33)	-	-	-	-	-	
		가-18	(239.61)	(239.61)	-	-	-	-	-	
		가-19	(255.23)	(255.23)	-	-	-	-	-	
휴양 사업	소계		157.27	157.27	-	-	-	-	-	
	전망	버	157.27	157.27	-	-	-	-	1	
휴양 사업	소계		1,377.37	1,377.37	-	-	-	-	29	
	데크	카	23.00	23.00	-	-	-	-	-	
	쉼터	자	1,354.37	1,354.37	-	-	-	-	-	
		자-23	(271.76)	(271.76)	-	-	-	-	-	
		자-24	(213.23)	(213.23)	-	-	-	-	-	
		자-25	(242.34)	(242.34)	-	-	-	-	-	
		자-26	(88.80)	(88.80)	-	-	-	-	-	
		자-28	(401.93)	(401.93)	-	-	-	-	3	
		자-34	(26.77)	(26.77)	-	-	-	-	-	
		자-35	(13.97)	(13.97)	-	-	-	-	-	
		자-36	(13.97)	(13.97)	-	-	-	-	-	
		자-37	(12.07)	(13.97)	-	-	-	-	-	
		자-38	(19.63)	(19.63)	-	-	-	-	-	
		자-39	(12.00)	(12.03)	-	-	-	-	-	
		자-40	(12.00)	(12.03)	-	-	-	-	-	
		자-41	(17.03)	(12.03)	-	-	-	-	-	
	파고라	①	-	-	-	-	-	-	5	
	정의자	②	-	-	-	-	-	-	4	
	등의자	③	-	-	-	-	-	-	8	
	발산성	⑮	-	-	-	-	-	-	1	
	유형 파고라	⑰	-	-	-	-	-	-	4	
	테이블	⑱	-	-	-	-	-	-	1	
	앉음벽	⑲	-	-	-	-	-	-	2	
	스탠드	⑳	-	-	-	-	-	-	1	

구분		부호	투자면적 (㎡)	사업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유희 사업	소계		329.71	329.71	-	-	-	-	5	
	어린이놀이터	카-2	193.67	193.67	-	-	-	-	-	
		카-3	136.04	136.04	-	-	-	-	-	
	소집놀이대	⑦	-	-	-	-	-	-	1	
	그네	⑧	-	-	-	-	-	-	1	
	숨숨놀이기구	㉑	-	-	-	-	-	-	3	
운동 사업	소계		139.36	139.36	-	-	-	-	16	
	체력단련장	너	139.36	139.36	-	-	-	-	-	
		너-4	(53.13)	(53.13)	-	-	-	-	-	
		너-5	(86.23)	(86.23)	-	-	-	-	-	
	복합운동시설	⑰	-	-	-	-	-	-	1	
	체력단련시설	⑱	-	-	-	-	-	-	15	
편익 사업	소계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화장실	7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7-3	(28.04)	(28.04)	철근	1동	(18.00)	(18.00)	-	
관리 시설	소계		60.00	60.00	-	3동	60.00	60.00	1	
	근로자휴게소	허	24.00	24.00	-	1동	24.00	24.00	-	
	자재창고	고	36.00	36.00	-	2동	36.00	36.00	-	
	화장	장	-	-	-	-	-	-	1	
도로	소계		2,080.48	2,060.48	-	1동	330.00	330.00	-	
농업 시설	양액재배실	노	401.64	401.64	-	-	-	-	-	
	도시텃밭	로	1358.84	1358.84	-	-	-	-	-	
	스마트팜	도	330.00	330.00	샌드위	1동	330.00	330.00	-	
녹지 및 기타	소계		58,648.24	-	-	-	-	-	-	
	녹지		58,648.24	-	-	-	-	-	-	

◈ 성북구공고 제2025-900호

도시계획시설(2020 성북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열람공고

1. 국토부고시 제208호(1940.3.12.)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451호(1994.12.3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9호(2021.6.17.)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10호(2020.6.2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150호(2020.8.13.),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2-112호(2022.6.16.)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된 성북구 돈암동 산86-14 일대 성북근린공원에 대하여, 아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공고하며,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2241-3664)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산86-14 외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사업
○ 사업의 명칭 : 2020 성북근린공원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1,256㎡

라. 사업내용(변경없음) :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의 보상

마.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명 칭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바. 시설관리청(변경없음)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변경)
1) 당 초 : 2020. 6. 25. ~ 2025. 6. 24.
2) 변 경 : 2020. 6. 25. ~ 2027. 6. 24.
3) 변경사유 : 보상절차 이행, 공원조성사업 시행 등에 따른 기간 소요

사.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및 물건조서(변경없음) : 개제생략

아. 열람장소 : 성북구청 9층 공원녹지과(☎ 2241-3664)

자.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열람시간 09:00~18:00)

차. 관계서류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보상용지도, 사업도면, 측량도 등 실시계획에 포함된 서류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성북구 공원녹지과(☎2241-36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5-1002호

도시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 체결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도시공원(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체결내역

연번	공원명	위치(소재지)	지목	부지사용계약면적(㎡)
1	온수도시자연공원구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350-38	임야	2,200㎡

2. 부지사용 계약일자 : 2025. 5. 16.

3. 부지사용 계약기간 : 2025. 5. 16. ~ 2027. 5. 15.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25-984호

도시계획시설(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56호(1971.8.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13호(2022.7.21.)로 최종 결정(변경)된 도시계획시설(용왕산근린공원)의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양 천 구 청 장

가. 입안취지 : 용왕산공원 내 등산로(하늘숲길)와 전망공간을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용왕산 명소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2025. 5. 22. ~ 2025. 6. 4.)
다. 열람장소 :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90)
라. 열람내용 : 도시계획시설(용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안)
- 시 설 명 : 용왕산근린공원
-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2동 199-51

구 분	부지면적(㎡)		시설면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증·감
기반시설(도로)	9,815	11,647	9,815	11,647	증) 1,832
편익시설	621	825	621	825	증) 204
녹지 및 기타	187,678	185,642	-	-	감) 2,036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바.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공원녹지과(☎2620-359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공고 제2025-9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구로구 고시 제2022-115호(2022.10.1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되고, 구로구 고시 제2022-181호(2022.12.01.)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궁동 131-1~124-1간 도로개설공사」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구 로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다.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완료 공고 내역

사 업 명 칭 (사 업 위 치)	사업규모	실시계획인가고시	사업 기간
궁동 131-1~124-1간 도로개설공사 (궁동 131-1~124-1번지)	도로개설 B=6m, L=150m	구로구고시 제2022-181호 (2022.12. 1.)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3년간

라. 관련 서류 : 게재 생략
마.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로구청 도로과(☎02-860-312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천구공고 제2025-1049호

도시계획시설(산기슭지구)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72호(2025.04.0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해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1.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산기슭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8-3일대

3. 면　　적: 1,765,534.7㎡(산기슭지구 14,084.90㎡)

4. 주요시설 변경내용

5. 열람기간: 2025. 5. 22. ~ 2025. 6. 5.(14일간)

6. 열람장소: 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과(☎02-2627-1659)

7. 관련도서: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8.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도 [변경전]

산기슭지구



■ 토지이용계획용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14,084.90	8,417.26	2	583.48	1,847.48	34	
기반사설	소계	6,297.06	4,019.25	-	-	-	-	
	도로	4,783.23	2,505.42	-	-	-	-	
	광장	1,513.83	1,513.83	-	-	-	-	
조경사설		539.09	539.09	-	-	-	-	
휴양사설		1,162.15	1,162.15	-	-	-	34	
교양사설		1,430.00	1,430.00	1	518.00	1,782.00	-	
편익사설		1,266.77	1,266.77	1	65.48	65.48	-	
녹지 및 기타		3,389.83	-	-	-	-	-	

■ 사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084.90	8,417.26	-	2	583.48	1,847.48	34	
기반사설	소계		6,297.06	4,019.25	-	-	-	-	-	
	도로		4,783.23	2,505.42	-	-	-	-	-	
	광장	가	1,513.83	1,513.83	-	-	-	-	-	
		가-1	865.43	865.43	-	-	-	-	-	
		가-2	648.40	648.40	-	-	-	-	-	
조경사설	소계		539.09	539.09	-	-	-	-	-	
	초화원	나	539.09	539.09	-	-	-	-	-	
		나-1	273.19	273.19	-	-	-	-	-	
		나-2	265.90	265.90	-	-	-	-	-	
휴양사설	소계		1,162.15	1,162.15	-	-	-	-	34	
	휴게마당	다	437.94	437.94	-	-	-	-	-	
		다-1	112.21	112.21	-	-	-	-	-	
		다-2	325.73	325.73	-	-	-	-	-	
	스탠드	라	407.21	407.21	-	-	-	-	-	
	퍼고니장	마	317.00	317.00	-	-	-	-	-	
	탈각정	①	-	-	-	-	-	-	1	
	퍼걸러	②	-	-	-	-	-	-	1	
	정자각	③	-	-	-	-	-	-	5	
	체력단련사설	④	-	-	-	-	-	-	27	
교양사설	소계		1,430.00	1,430.00	-	1	518.00	1,782.00	-	
	청소년회관	1	1,430.00	1,430.00	R.C	1	518.00	1,782.00	-	
편익사설	소계		1,266.77	1,266.77		1	65.48	65.48	-	
	화장실	2	66.77	66.77	R.C	1	65.48	65.48	-	
	주차장	바	1200.00	1200.00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3,389.83	-	-	-	-	-	-	
	녹지		3,389.83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산기슭지구



■ 토지이용계획총괄표

구분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건축물 동수(동)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계		14,084.90	7,788.27	2	583.48	1,847.48	63	
기반시설	소계	5,377.20	3,099.39	-	-	-	-	
	도로	4,290.03	2,012.22	-	-	-	-	
	광장	1,087.17	1,087.17	-	-	-	-	
조경시설		780.97	780.97	-	-	-	-	
휴양시설		795.40	795.40	-	-	-	62	
유희시설		425.74	425.74	-	-	-	1	
운동시설		-	-	-	-	-	-	
교양시설		1,430.00	1,430.00	1	518.00	1,782.00	-	
편익시설		1,266.77	1,266.77	1	65.48	65.48	-	
녹지 및 기타		4,008.82	-	-	-	-	-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사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14,084.90	7,788.27	-	2	583.48	1,847.48	63	
기반시설	소계		5,377.20	3,099.39	-	-	-	-	-	
	도로		4,290.03	2,012.22	-	-	-	-	-	
	광장	가	1,087.17	1,087.17	-	-	-	-	-	
		가-1	864.21	864.21	-	-	-	-	-	
		가-2	222.96	222.96	-	-	-	-	-	
조경시설	소계		780.97	780.97	-	-	-	-	-	
	인공폭포	나	206.92	206.92	-	-	-	-	-	
		나-1	101.18	101.18	-	-	-	-	-	
		나-2	105.74	105.74	-	-	-	-	-	
	잔디광장	다	574.05	574.05	-	-	-	-	-	
휴양시설	소계		795.40	795.40	-	-	-	-	62	
	휴게마당	라	795.40	795.40	-	-	-	-	-	
		라-1	223.98	223.98	-	-	-	-	-	
		라-2	288.01	288.01	-	-	-	-	-	
		라-3	140.95	140.95	-	-	-	-	-	
		라-4	142.46	142.46	-	-	-	-	-	
	탈각정	①	-	-	-	-	-	-	1	
	퍼걸러	②	-	-	-	-	-	-	2	
	체력단련시설	③	-	-	-	-	-	-	4	
	암릉벽	④	-	-	-	-	-	-	55	
유희시설	소계		425.74	425.74	-	-	-	-	1	
	물놀이장	마	425.74	425.74	-	-	-	-	-	
	조합놀이대	⑤	-	-	-	-	-	-	1	
교양시설	소계		1,430.00	1,430.00	-	-	518.00	1,782.00	-	
	청소년회관	1	1,430.00	1,430.00	R.C	1	518.00	1,782.00	-	
편익시설	소계		1,266.77	1,266.77	-	-	65.48	65.48	-	
	주차장	바	1,200.00	1,200.00	-	-	-	-	-	
	화장실	2	66.77	66.77	R.C	1	65.48	65.48	-	
녹지 및 기타	소계		4,008.82	-	-	-	-	-	-	
	녹지		4,008.82	-	-	-	-	-	-	

◈ 금천구공고 제2025-1051호

도시계획시설(목골지구) 공원조성계획변경(안) 열람 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54호(2020.06.29.)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72호(2025.04.03.)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근린공원에 대해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니 본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2일
금 천 구 청 장

1. 공 원 명 : 관악산근린공원(목골지구)

2. 위　　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32-5번지 일대

3. 면　　적: 1,765,534.7㎡(목골지구 6,213.50㎡)

4. 주요시설 변경내용

5. 열람기간: 2025. 5. 22. ~ 2025. 6. 5.(14일간)

6. 열람장소: 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과(☎02-2627-1659)

7. 관련도서: 별첨(금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8.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공원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계획도 [변경전]

목골지구



■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6,213.50	1,160.87	-	-	-	-	11	
기반시설	소계		217.77	217.77	-	-	-	-	-	
	도로		93.03	93.03	-	-	-	-	-	
	광장	가	124.74	124.74	-	-	-	-	-	
조경시설	소계		762.70	762.70	-	-	-	-	-	
	초화원	나	762.70	762.70	-	-	-	-	-	
휴양시설	소계		180.40	180.40	-	-	-	-	5	
	휴게공간	다	176.30	176.30	-	-	-	-	-	
		다-1	124.74	124.74	-	-	-	-	-	
		다-2	51.56	51.56	-	-	-	-	-	
	평상	①	4.10	4.10	-	-	-	-	1	
	등의자	②	-	-	-	-	-	-	4	
운동시설	소계		-	-	-	-	-	-	6	
	체력단련시설	③	-	-	-	-	-	-	6	
녹지 및 기타	소계		5,052.63	-	-	-	-	-	-	
	녹지		5,052.63	-	-	-	-	-	-	

Scale=1:400
0 1 5 10 40

조성계획도 [변경후]

목골지구



■ 사업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물 내부면적	건물 외부면적	공원률	비고
합계			6,213.50	670.73	-	-	-	-	-	10
기반시설	소계		411.36	411.36	-	-	-	-	-	-
	도로		411.36	411.36	-	-	-	-	-	-
유보시설	소계		229.91	229.91	-	-	-	-	-	6
	유보시설	가-1	87.43	87.43	-	-	-	-	-	-
		가-2	58.41	58.41	-	-	-	-	-	-
		가-3	84.07	84.07	-	-	-	-	-	3
	버퍼도	(1)	-	-	-	-	-	-	-	-
	휴나무쉼터	(2)	-	-	-	-	-	-	-	2
	정보봇	(3)	-	-	-	-	-	-	-	1
공동시설	소계		38.46	38.46	-	-	-	-	-	4
	체육문화장	나	38.46	38.46	-	-	-	-	-	4
녹지 등	소계	㉮	5,533.77	-	-	-	-	-	-	-
	녹지		5,533.77	-	-	-	-	-	-	-

◈ 강동구공고 제2025-1197호

도시계획시설(일자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168호(2024.4.4.)호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일자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 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자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3.「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강 동 구 청 장

가. 공 원 명: 일자산근린공원
나.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산125번지 일대
다. 면　　적: 285,882.6㎡
라. 변경사유: 일자산근린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유아들의 정서 함양과 자연친화적인 인격 형성에 기여하고, 공원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조성계획 변경
마. 조성계획 변경(안): 붙임참조
바. 관계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사. 열람기간: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
아. 열람장소: 강동구 푸른도시과(☎02-3425-6447)
자. 본 조성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및 조성계획도(변경전·후) 각 1부. 끝.

일자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일자산근린공원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경 전						구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동수 (동)	건축물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공작물(기)	
계		285,882.60	62,782.35	12	3,366.41	3,947.21	181	계	285,882.60	65,183.48	12	3,366.41	3,947.21	181	증 2,434.03㎡
시설지구	소계	285,882.60	62,782.35	12	3,366.41	3,947.21	181	소 계	285,882.60	65,183.48	12	3,366.41	3,947.21	181	증 2,434.03㎡
	생태공원지구	68,469.30	13,477.44	4	483.29	483.29	5	생태공원지구	68,469.30	13,477.44	4	483.29	483.29	5	-
	방아다리지구	217,413.30	49,304.91	8	2,883.12	3,463.92	176	방아다리지구	217,413.30	51,706.04	8	2,883.12	3,463.92	176	증 2,434.03㎡
시설율 (법정40%)		62,782.35 / 285,882.60 = 21.96%							65,183.48 / 285,882.60 = 22.80%						
건폐율 (법정10%)		3,366.41 / 285,882.60 = 1.17%							3,366.41 / 285,882.60 = 1.17%						

나. 일자산근린공원 시설별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2,749.45	12	3,366.41	3,947.21	181	65,183.48	12	3,366.41	3,947.21	181	증 2,434.03㎡
기반시설	소계	24,859.85	-			-	24,578.66	-				감 281.19㎡
	도로	20,076.75	-			-	19,795.56	-				감 281.19㎡
	광장	4,783.10	-			-	4,783.10	-				-
조경시설		13,490.03	-			22	13,490.03	-			22	-
휴양시설		4,060.39	-			73	4,060.39	-			73	-
교양시설		9,299.73	3	768.90	1,349.70	-	10,994.48	3	768.90	1,349.70		증 1,694.75㎡
유희시설		1,346.22					1,346.22	-				-
운동시설		3,997.32	2	1,885.32	1,885.32	4	3,997.32	2	1,885.32	1,885.32	4	-
편익시설		5,279.91	4	296.19	296.19	-	6,300.38	4	296.19	296.19		증 1,020.47㎡
관리시설		416.00	3	416.00	416.00	82	416.00	3	416.00	416.00	82	-
녹지및기타		223,133.15				-	220,699.12					감 2,434.03㎡

다. 일자산근린공원 지구별 시설조서

1. 생태공원지구 총괄표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68,469.30	13,477.44	4	483.29	483.29	5	68,469.30	13,477.44	4	483.29	483.29	5	
기반시설	소계	3,035.46	3,035.46	-	-	-	-	3,035.46	3,035.46	-	-	-	-	
	도로	1,874.05	1,874.05	-	-	-	-	1,874.05	1,874.05	-	-	-	-	
	광장	1,161.41	1,161.41	-	-	-	-	1,161.41	1,161.41	-	-	-	-	
조경시설		5,235.78	5,235.78	-	-	-	-	5,235.78	5,235.78	-	-	-	-	
휴양시설		269.67	269.67	-	-	-	5	269.67	269.67	-	-	-	5	
교양시설		4,667.34	4,667.34	1	214.10	214.10	-	4,667.34	4,667.34	1	214.10	214.10	-	
편익시설		152.19	152.19	1	152.19	152.19	-	152.19	152.19	1	152.19	152.19	-	
관리시설		117.00	117.00	2	117.00	117.00	-	117.00	117.00	2	117.00	117.00	-	
녹지 및 기타		54,991.86	-	-	-	-	-	54,991.86	-	-	-	-	-	

1-1. 생태공원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68,469.30	13,477.44	-	4	483.29	483.29	5			68,469.30	13,477.44	-	4	483.29	483.29	5	
기반시설	소 계			3,035.46	3,035.46	-	-	-	-	-			3,035.46	3,035.46	-	-	-	-	-	
	도 로			1,874.05	1,874.05	-	-	-	-	-			1,874.05	1,874.05	-	-	-	-	-	
	광장	가		1,161.41	1,161.41	-	-	-	-	-	가		1,161.41	1,161.41	-	-	-	-	-	
	가-1	길동 476	579.35	579.35	-	-	-	-	-	-	길동 476	579.35	579.35	-	-	-	-	-	-	
	가-2	길동 476	582.06	582.06	-	-	-	-	-	-	길동 476	582.06	582.06	-	-	-	-	-	-	
조경시설	소 계			5,235.78	5,235.78	-	-	-	-	-			5,235.78	5,235.78	-	-	-	-	-	
	관찰 데크	나	전지역	1,212.06	1,212.06	-	-	-	-	-	나	전지역	1,212.06	1,212.06	-	-	-	-	-	
	저수지	다	길동 476	4,023.72	4,023.72	-	-	-	-	-	다	길동 476	4,023.72	4,023.72	-	-	-	-	-	
휴양시설	소 계			269.67	269.67	-	-	-	-	5			269.67	269.67	-	-	-	-	5	
	쉼터	라		269.67	269.67	-	-	-	-	-	라		269.67	269.67	-	-	-	-	-	
	라-1	길동 476	234.26	234.26	-	-	-	-	-		라-1	길동 476	234.26	234.26	-	-	-	-	-	
	라-2	길동 476	35.41	35.41	-	-	-	-	-		라-2	길동 476	35.41	35.41	-	-	-	-	-	
	그늘막	①		-	-	-	-	-	-	1	①		-	-	-	-	-	-	1	
	파고라	②	쉼터 내	-	-	-	-	-	-	1	②	쉼터 내	-	-	-	-	-	-	1	
	평의자	③	쉼터 내	-	-	-	-	-	-	3	③	쉼터 내	-	-	-	-	-	-	3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체육시설	소계			4,667.34	4,667.34	-	1	214.1	214.1	-			4,667.34	4,667.34	-	1	214.1	214.1	-	
	반딧불이 체험장	마	길동 476	215.00	215.00	-	1	214.1	214.1	-	마	길동 476	215.00	215.00	-	1	214.1	214.1	-	
	야외 강의장	바	길동 476	74.83	74.83	-	-	-	-	-	바	길동 476	74.83	74.83	-	-	-	-	-	
	습지	사	길동 476	2,123.97	2,123.97	-	-	-	-	-	사	길동 476	2,123.97	2,123.97	-	-	-	-	-	
	농촌 체험장	아		2,253.54	2,253.54	-	-	-	-	-	아		2,253.54	2,253.54	-	-	-	-	-	
		아-1	농촌 체험원	171.23	171.23	-	-	-	-	-	아-1	농촌 체험원	171.23	171.23	-	-	-	-	-	
		아-2	농촌 체험원	241.34	241.34	-	-	-	-	-	아-2	농촌 체험원	241.34	241.34	-	-	-	-	-	
		아-3	농촌 체험원	199.23	199.23	-	-	-	-	-	아-3	농촌 체험원	199.23	199.23	-	-	-	-	-	
		아-4	농촌 체험원	110.27	110.27	-	-	-	-	-	아-4	농촌 체험원	110.27	110.27	-	-	-	-	-	
		아-5	농촌 체험원	247.45	247.45	-	-	-	-	-	아-5	농촌 체험원	247.45	247.45	-	-	-	-	-	
		아-6	농촌 체험원	60.33	60.33	-	-	-	-	-	아-6	농촌 체험원	60.33	60.33	-	-	-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7	길동 476	227.54	227.54	-	-	-	-	-	아-7	길동 476	227.54	227.54	-	-	-	-	-	
		아-8	길동 476	245.98	245.98	-	-	-	-	-	아-8	길동 476	245.98	245.98	-	-	-	-	-	
		아-9	길동 476	64.95	64.95	-	-	-	-	-	아-9	길동 476	64.95	64.95	-	-	-	-	-	
		아-10	길동 476	86.19	86.19	-	-	-	-	-	아-10	길동 476	86.19	86.19	-	-	-	-	-	
		아-11	길동 476	40.73	40.73	-	-	-	-	-	아-11	길동 476	40.73	40.73	-	-	-	-	-	
		아-12	길동 476	253.29	253.29	-	-	-		-	아-12	길동 476	253.29	253.29	-	-	-		-	
		아-13	길동 476	29.76	29.76	-	-	-	-	-	아-13	길동 476	29.76	29.76	-	-	-	-	-	
		아-14	길동 476	105.46	105.46	-	-	-	-	-	아-14	길동 476	105.46	105.46	-	-	-	-	-	
		아-15	길동 476	169.79	169.79	-	-	-	-	-	아-15	길동 476	169.79	169.79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건축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편의시설	소계			152.19	152.19		1	152.19	152.19				152.19	152.19		1	152.19	152.19		
	화장실	1	길동 476	152.19	152.19	-	1	152.19	152.19	-	1	길동 476	152.19	152.19	-	1	152.19	152.19	-	
관리시설	소계			117.00	117.00	-	2	117.00	117.00	-			117.00	117.00	-	2	117.00	117.00	-	
	탐방객 안내센터	2	길동 476	104.00	104.00	-	1	104.00	104.00	-	2	길동 476	104.00	104.00	-	1	104.00	104.00	-	
	안내소	3	길동 476	13.00	13.00	목조	1	13.00	13.00	-	3	길동 476	13.00	13.00	목조	1	13.00	13.00	-	
녹지및기타	소계			54,991.86	-	-	-	-	-	-			54,991.86	-	-	-	-	-	-	
	녹지			54,991.86	-	-	-	-	-	-			54,991.86	-	-	-	-	-	-	

1-2. 생태공원지구 도로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초	합 계				1,055.74	1,874.05				
당초	산책로	산 책 로 소 계			1,055.74	1,874.05				
당초			1	2.0	60.11	116.08	산책로	광장 가-2	데크 나	
당초			2	1.2	28.60	34.32	산책로	쉼터 자	아외전시장 차	
당초			3	4.0~8.0	13.90	83.22	산책로	쉼터 자	아외전시장 차	
당초			4	1.2	28.65	34.39	산책로	쉼터 자	아외전시장 차	
당초			5	2.0	445.26	892.06	산책로	광장 가-2	데크 나	
당초			6	1.2	10.32	19.38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7	
당초			7	1.2	125.79	169.41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9	
당초			8	1.2	14.15	38.51	산책로	산책로 5	산책로 9	
당초			9	1.2	133.34	212.61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당초			10	1.7~1.8	3.89	6.92	산책로	데크 나	산책로 11	
당초			11	1.2	173.55	236.83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11	
당초			12	1.2	18.18	30.32	산책로	산책로 11	산책로 5	

2. 방아다리지구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17,413.30	49,272.01	8	2,883.12	3,463.92	176	217,413.30	51,706.04	8	2,883.12	3,463.92	176	증 2,434.03㎡
기반시설	소계	21,824.39	21,824.39	-	-	-	-	21,543.20	21,543.20	-	-	-	-	감 281.19㎡
	도로	18,202.70	18,202.70	-	-	-	-	17,921.51	17,921.51	-	-	-	-	감 281.19㎡
	광장	3,621.69	3,621.69	-	-	-	-	3,621.69	3,621.69	-	-	-	-	-
조경시설		8,254.25	8,254.25	-	-	-	22	8,254.25	8,254.25	-	-	-	22	-
휴양시설		3,790.72	3,790.72	-	-	-	68	3,790.72	3,790.72	-	-	-	68	-
교양시설		4,632.39	4,632.39	2	554.80	1,135.60	-	6,327.14	6,327.14	2	554.80	1,135.60	-	증 1,694.75㎡
유희시설		1,346.22	1,346.22	-	-	-	-	1,346.22	1,346.22	-	-	-	-	-
운동시설		3,997.32	3,997.32	2	1,885.32	1,885.32	4	3,997.32	3,997.32	2	1,885.32	1,885.32	4	-
편익시설		5,127.72	5,127.72	3	144.00	144.00	-	6,148.19	6,148.19	3	144.00	144.00	-	증 1,020.47㎡
관리시설		299.00	299.00	1	299.00	299.00	82	299.00	299.00	1	299.00	299.00	82	-
녹지 및 기타		168,108.39	-	-	-	-	-	165,707.26	-	-	-	-	-	감 2,434.03㎡

2-1. 방아다리지구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전 부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건축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건축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 고
합 계				217,413.30	49,272.01	-	8	2,883.12	3,463.92	176			217,413.30	51,706.04	-	8	2,883.12	3,463.92	176	증 2,434.03㎡
기반시설	소 계			21,824.39	21,824.39	-	-	-	-	-			21,543.20	21,543.20	-	-	-	-	-	감 281.19㎡
	도 로			18,202.70	18,202.70	-	-	-	-	-			17,921.51	17,921.51	-	-	-	-	-	감 281.19㎡
	광 장	가		3,621.69	3,621.69	-	-	-	-	-	가		3,621.69	3,621.69	-	-	-	-	-	-
		가-1	둔촌동 558	753.37	753.37	-	-	-	-	-	가-1	둔촌동 558	753.37	753.37	-	-	-	-	-	
		가-2	둔촌동 산86	29.50	29.50	-	-	-	-	-	가-2	둔촌동 산86	29.50	29.50	-	-	-	-	-	
		가-3	둔촌동 산86	146.66	146.66	-	-	-	-	-	가-3	둔촌동 산86	146.66	146.66	-	-	-	-	-	
		가-4	둔촌동 산86	30.00	30.00	-	-	-	-	-	가-4	둔촌동 산86	30.00	30.00	-	-	-	-	-	
		가-5	둔촌동 산86	30.00	30.00	-	-	-	-	-	가-5	둔촌동 산86	30.00	30.00	-	-	-	-	-	
		가-6	둔촌동 562	636.94	636.94	-	-	-	-	-	가-6	둔촌동 562	636.94	636.94	-	-	-	-	-	
		가-7	둔촌동 562	897.21	897.21	-	-	-	-	-	가-7	둔촌동 562	897.21	897.21	-	-	-	-	-	
		가-8	둔촌동 산119	446.71	446.71	-	-	-	-	-	가-8	둔촌동 산119	446.71	446.71	-	-	-	-	-	
		가-9	둔촌동 산124	34.96	34.96	-	-	-	-	-	가-9	둔촌동 산124	34.96	34.96	-	-	-	-	-	
		가-10	둔촌동 산125	378.44	378.44	-	-	-	-	-	가-10	둔촌동 산125	378.44	378.44	-	-	-	-	-	
		가-11	둔촌동 산573	237.90	237.90	-	-	-	-	-	가-11	둔촌동 산573	237.90	237.9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조경시설	소 계			8,254.25	8,254.25	-	-	-	-	22			8,254.25	8,254.25	-	-	-	-	22	
	허브원	나		4,589.11	4,589.11	-	-	-	-	-	나		4,589.11	4,589.11	-	-	-	-	-	
		나-1	둔촌동 산86	246.70	246.70	-	-	-	-	-	나-1	둔촌동 산86	246.70	246.70	-	-	-	-	-	
		나-2	둔촌동 산86	380.98	380.98	-	-	-	-	-	나-2	둔촌동 산86	380.98	380.98	-	-	-	-	-	
		나-3	둔촌동 산86	178.19	178.19	-	-	-	-	-	나-3	둔촌동 산86	178.19	178.19	-	-	-	-	-	
		나-4	둔촌동 산86	247.09	247.09	-	-	-	-	-	나-4	둔촌동 산86	247.09	247.09	-	-	-	-	-	
		나-5	둔촌동 산86	70.04	70.04	-	-	-	-	-	나-5	둔촌동 산86	70.04	70.04	-	-	-	-	-	
		나-6	둔촌동 산86	346.52	346.52	-	-	-	-	-	나-6	둔촌동 산86	346.52	346.52	-	-	-	-	-	
		나-7	둔촌동 산86	432.32	432.32	-	-	-	-	-	나-7	둔촌동 산86	432.32	432.32	-	-	-	-	-	
		나-8	둔촌동 산86	111.70	111.70	-	-	-	-	-	나-8	둔촌동 산86	111.70	111.70	-	-	-	-	-	
		나-9	둔촌동 산86	111.70	111.70	-	-	-	-	-	나-9	둔촌동 산86	111.70	111.7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정원	나-10	둔촌동 산119	466.45	466.45	-	-	-	-	-	나-10	둔촌동 산119	466.45	466.45	-	-	-	-	-	
		나-11	둔촌동 산119	341.28	341.28	-	-	-	-	-	나-11	둔촌동 산119	341.28	341.28	-	-	-	-	-	
		나-12	둔촌동 산119	451.10	451.10	-	-	-	-	-	나-12	둔촌동 산119	451.10	451.10	-	-	-	-	-	
	다랭이논	나-13	둔촌동 산119	1,050.77	1,050.77	-	-	-	-	-	나-13	둔촌동 산119	1,050.77	1,050.77	-	-	-	-	-	
	생태 습지	나-14	둔촌동 산125	154.27	154.27	-	-	-	-	-	나-14	둔촌동 산125	154.27	154.27	-	-	-	-	-	
	화단	다	둔촌동 산86	58.70	58.70	-	-	-	-	-	다	둔촌동 산86	58.70	58.70	-	-	-	-	-	
	수로	라	둔촌동 산103	1,339.44	1,339.44	-	-	-	-	-	라	둔촌동 산103	1,339.44	1,339.44	-	-	-	-	-	
	암석원	마	둔촌동 산86	396.90	396.90	-	-	-	-	-	마	둔촌동 산86	396.90	396.9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계류	바		1,287.04	1,287.04	-	-	-	-	-	바		1,287.04	1,287.04	-	-	-	-	-	
		바-1	둔촌동 산125	67.67	67.67	-	-	-	-	-	바-1	둔촌동 산125	67.67	67.67	-	-	-	-	-	
		바-2	둔촌동 산125	241.07	241.07	-	-	-	-	-	바-2	둔촌동 산125	241.07	241.07	-	-	-	-	-	
		바-3	둔촌동 산125	978.30	978.30	-	-	-	-	-	바-3	둔촌동 산125	978.30	978.30	-	-	-	-	-	
	연못	사		583.06	583.06	-	-	-	-	-	사		583.06	583.06	-	-	-	-	-	-
		사-1	둔촌동 565	583.06	583.06	-	-	-	-	-	사-1	둔촌동 565	583.06	583.06	-	-	-	-	-	-
	빗의 조형물	①	녹지대	-	-	-	-	-	-	22	①	녹지대	-	-	-	-	-	-	22	
휴양시설	소 계			3,790.72	3,790.72	-	-	-	-	68			3,790.72	3,790.72	-	-	-	-	68	
	쉼터	아		90.60	90.60	-	-	-	-	-	아		90.60	90.60	-	-	-	-	-	
		아-1	둔촌동 산86	20.25	20.25	-	-	-	-	-	아-1	둔촌동 산86	20.25	20.25	-	-	-	-	-	
		아-2	둔촌동 산86	54.71	54.71	-	-	-	-	-	아-2	둔촌동 산86	54.71	54.71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아-3	둔촌동 산86	15.64	15.64	-	-	-	-	-	아-3	둔촌동 산86	15.64	15.64	-	-	-	-	-	
	파고라	②		-	-	-	-	-	-	4	②		-	-	-	-	-	-	4	
	평의자	③	전지역	-	-	-	-	-	-	17	③	전지역	-	-	-	-	-	-	17	
	등의자	④	전지역	-	-	-	-	-	-	39	④	전지역	-	-	-	-	-	-	39	
	야외 탁자	⑤	전지역	-	-	-	-	-	-	4	⑤	전지역	-	-	-	-	-	-	4	
	야외 탁자	⑥	전지역	-	-	-	-	-	-	4	⑥	전지역	-	-	-	-	-	-	4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휴게소	자		201.20	201.20	-	-	-	-	-	자		201.20	201.20	-	-	-	-	-	
		자-1	둔촌동 562	72.26	72.26	-	-	-	-	-	자-1	둔촌동 562	72.26	72.26	-	-	-	-	-	
		자-2	둔촌동 산119	22.75	22.75	-	-	-	-	-	자-2	둔촌동 산119	22.75	22.75	-	-	-	-	-	
		자-3	둔촌동 산120	62.02	62.02	-	-	-	-	-	자-3	둔촌동 산120	62.02	62.02	-	-	-	-	-	
		자-4	둔촌동 산125	44.17	44.17	-	-	-	-	-	자-4	둔촌동 산125	44.17	44.17	-	-	-	-	-	
	캠핑장	차	둔촌동 562	3,498.92	3,498.92	-	-	-	-	-	차	둔촌동 562	3,498.92	3,498.92	-	-	-	-	-	
교육시설	소 계			4,632.39	4,632.39	-	2	554.80	1,135.60	-			6,327.14	6,327.14	-	2	554.80	1,135.60	-	지하 1,694.75㎡
	생태 문화센터	1	둔촌동 558	1,806.00	1,806.00	-	1	410.80	991.60	-	1	둔촌동 558	1,806.00	1,806.00	-	1	410.80	991.60	-	
	온실	2	둔촌동 산86	144.00	144.00	-	1	144.00	144.00	-	2	둔촌동 산86	144.00	144.00	-	1	144.00	144.00	-	
	문화 회관	3	둔촌동 산119	-	-	-	-	-	-	-	3	-	-	-	-	-	-	-	-	
	체험 학습장	카	둔촌동 산86	341.57	341.57	-	-	-	-	-	카	둔촌동 산86	341.57	341.57	-	-	-	-	-	
	유아숲 체험장	타-1	둔촌동 산103	1,940.82	1,940.82	-	-	-	-	-	타-1	둔촌동 산103	1,940.82	1,940.82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유아숲체험장	타-2	둔촌동 산 125	-	-	-	-	-	-	-	타-2	둔촌동 산 125	1,694.75	1,694.75	-	-	-	-	-	증 1,694.75㎡
	야외무대	파	둔촌동 산125	400.00	400.00	-	-	-	-	-	파	둔촌동 산125	400.00	400.00	-	-	-	-	-	
유희시설	소 계			1,346.22	1,346.22	-	-	-	-	-			1,346.22	1,346.22	-	-	-	-	-	
	놀이시설	ㄱ	둔촌동 565	1,346.22	1,346.22	-	-	-	-	-	ㄱ	둔촌동 565	1,346.22	1,346.22	-	-	-	-	-	
운동시설	소 계			3,997.32	3,997.32	-	2	1,885.32	1,885.32	4			3,997.32	3,997.32	-	2	1,885.32	1,885.32	4	
	실외배드민턴장	A	둔촌동 산125	680.00	680.00	-	-	-	-	-	A	둔촌동 산125	680.00	680.00	-	-	-	-	-	
	실내배드민턴장	4	둔촌동 산125	1,375.32	1,375.32	-	1	1,375.32	1,375.32	-	4	둔촌동 산125	1,375.32	1,375.32	-	1	1,375.32	1,375.32	-	
	실내체육관	5	둔촌동 6-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5	둔촌동 6-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농구장	B	둔촌동 산125	342.00	342.00	-	-	-	-	-	B	둔촌동 산125	342.00	342.00	-	-	-	-	-	
	X-GAME장	C	둔촌동 산125	1,090.00	1,090.00	-	-	-	-	-	C	둔촌동 산125	1,090.00	1,090.00	-	-	-	-	-	
	농구대	⑦	운동마당	-	-	-	-	-	-	1	⑦	운동마당	-	-	-	-	-	-	1	
	역기올리기	⑧	녹지대	-	-	-	-	-	-	2	⑧	녹지대	-	-	-	-	-	-	2	
	윗몸일으키기	⑨	녹지대	-	-	-	-	-	-	1	⑨	녹지대	-	-	-	-	-	-	1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편의시설	소 계			5,127.72	5,127.72	-	3	144.00	144.00	-			6,148.19	6,148.19	-	3	144.00	144.00	-	KIO 1,020.47㎡
	주차장	D		3,523.01	3,523.01	-	-	-	-	-	D		4,543.48	4,543.48	-	-	-	-	-	KIO 1,020.47㎡
		D-1	둔촌동 558-10	562.01	562.01	-	-	-	-	-	D-1	둔촌동 558-10	562.01	562.01	-	-	-	-	-	
		D-2	둔촌동 563-2	1,553.00	1,553.00	-	-	-	-	-	D-2	둔촌동 563-2	1,553.00	1,553.00	-	-	-	-	-	
		D-3	둔촌동 산125	656.00	656.00	-	-	-	-	-	D-3	둔촌동 산125	656.00	656.00	-	-	-	-	-	
		D-4	둔촌동 6-13	752.00	752.00	-	-	-	-	-	D-4	둔촌동 6-13	1,772.47	1,772.47	-	-	-	-	-	KIO 1,020.47㎡
	화장실	6		173.00	173.00	-	3	144.00	144.00	-	6		173.00	173.00	-	3	144.00	144.00	-	
		6-1	둔촌동 산86	22.00	22.00	-	(1)	(6.00)	(6.00)	-	6-1	둔촌동 산86	22.00	22.00	-	(1)	(6.00)	(6.00)	-	
		6-2	둔촌동 산119	17.00	17.00	-	(1)	(4.00)	(4.00)	-	6-2	둔촌동 산119	17.00	17.00	-	(1)	(4.00)	(4.00)	-	
		6-3	둔촌동 산125	134.00	134.00	-	(1)	(134.00)	(134.00)	-	6-3	둔촌동 산125	134.00	134.00	-	(1)	(134.00)	(134.00)	-	
	약수터	7	둔촌동 산125	72.57	72.57	-	-	-	-	-	7	둔촌동 산125	72.57	72.57	-	-	-	-	-	
	전망 데크	E	둔촌동 산86	1,140.60	1,140.60	-	-	-	-	-	E	둔촌동 산86	1,140.60	1,140.60	-	-	-	-	-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음수대	F	둔촌동 563-2	218.54	218.54	-	-	-	-	-	F	둔촌동 563-2	218.54	218.54	-	-	-	-	-	
관리시설	소 계			299.00	299.00	-	1	299.00	299.00	82			299.00	299.00	-	1	299.00	299.00	82	
	관리소	8	둔촌동 563-2	299.00	299.00	-	1	299.00	299.00	-	8	둔촌동 563-2	299.00	299.00	-	1	299.00	299.00	-	
	사각수목 보호판	⑩	전지역	-	-	-	-	-	-	10	⑩	전지역	-	-	-	-	-	-	10	
	안내판	⑪	전지역	-	-	-	-	-	-	26	⑪	전지역	-	-	-	-	-	-	26	
	조명등	⑫	전지역	-	-	-	-	-	-	46	⑫	전지역	-	-	-	-	-	-	46	
녹지및기타	소 계			168,141.29	-	-	-	-	-	-			165,707.26	-	-	-	-	-	-	감 2,434.03㎡
	녹 지			168,141.29	-	-	-	-	-	-			165,707.26	-	-	-	-	-	-	감 2,434.03㎡

2-2. 방아다리지구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도로합계				5,999.15	18,234.83				
변경					5,864.68	17,921.51				
당초	소로	소로소계			1,521.57	6,637.03				
변경					1,511.49	6,616.32				
당초		3	1	7.85	35.4	278.97	진입로	공원경계	생태문화센터1	
당초		3	2	6	262.96	1,601.44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4	
당초		3	3	6	11.48	78.20	연결로	소로 3-2	공원내	
당초		3	4	3	95.58	286.73	연결로	소로 3-2	광장 가-2	
당초		3	5	4	37.00	147.88	연결로	광장 가-3	소로 3-9	
당초		3	6	3	234.76	707.82	연결로	소로 3-5	소로 3-5	
당초		3	7	6	8.59	69.34	연결로	소로 3-6	화단 다	
당초		3	8	2	21.89	46.42	연결로	소로 3-7	소로 3-10	
당초		3	9	3	24.38	68.16	연결로	소로 3-7	소로 3-10	
당초		3	10	5~8	74.00	408.34	연결로	화단 다	소로 3-6	
당초		3	11	6	12.37	75.80	연결로	온실 2	소로 3-6	
당초		3	12	3	23.50	72.32	연결로	소로 3-6	소로 3-13	
당초		3	13	2	48.26	100.87	연결로	소로 3-10	소로 3-10	
당초		3	14	3	20.72	64.95	연결로	소로 3-10	소로 3-6	
당초		3	15	3	13.46	41.88	연결로	소로 3-6	전망데크 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	16	3	18.80	59.47	연결로	소로 3-10	소로 3-6	
당 초		3	17	3	9.26	29.27	연결로	소로 3-6	광장 가-5	
당 초		3	18	3	9.99	31.46	연결로	광장 가-4	소로 3-6	
당 초		3	19	6	203.67	1,220.2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3	20	2.4~2.5	50.07	104.76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19	
당 초		3	21	4~5	10.00	50.9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	
당 초		3	22	3.0	146.34	430.77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변 경		3	22	3.0	136.26	410.06	진입로	공원경계	가-12	
당 초		3	23	4.0	149.09	661.0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산책로	산 책 로 소 계			4,477.58	11,597.80				
변 경					4,353.19	11,305.19				
당 초			1	2	18.83	41.33	산책로	소로 3-10	소로 3-6	
당 초			2	2	21.41	45.39	산책로	소로 3-8	소로 3-12	
당 초			3	2	30.69	64.49	산책로	소로 3-12	소로 3-10	
당 초			4	1.5	12.84	19.28	산책로	소로 3-6	쉼터 아-2	
당 초			5	1.5	16.88	25.76	산책로	소로 3-6	전망데크 E	
당 초			6	3	65.78	202.56	산책로	소로 3-2	가-3	
당 초			7	1.5	26.92	32.32	산책로	소로 3-17	아-2	
당 초			8	1.5	34.06	47.78	산책로	공원내	소로 3-4	
당 초			9	3.0	23.66	65.48	산책로	주차장 D-2	광장 가-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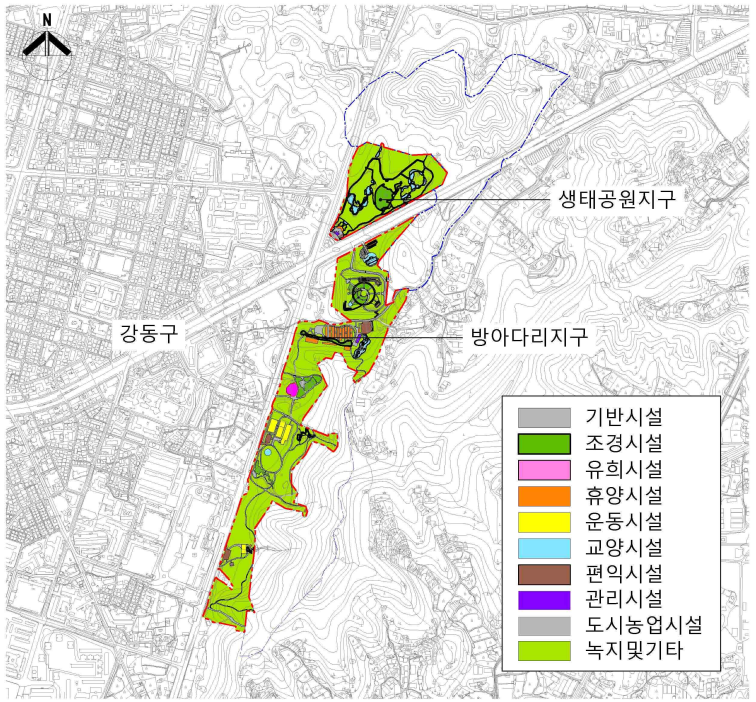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10	5.0	18.41	92.83	산책로	소로 3-19	광장 가-6	
당 초			11	3.0	29.29	86.48	산책로	광장 가-6	산책로 17	
당 초			12	2.0	46.47	92.95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당 초			13	2.0	53.68	107.33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당 초			14	2.0	46.78	93.62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당 초			15	2.0	39.00	78.04	산책로	산책로 17	산책로 17	
당 초			16	6.0	48.84	292.59	산책로	공원경계	산책로 17	
당 초			17	3.0	289.52	883.26	산책로	산책로 18	산책로 16	
당 초			18	2.5	107.11	308.21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7	
당 초			19	2.0	210.50	442.45	산책로	공원경계	광장 가-6	
당 초			20	2.5	86.07	219.01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21	
당 초			21	3.0-10.0	322.61	1,207.04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22	1.5	31.09	60.85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당 초			23	3.0	31.24	110.78	연결로	산책로 22	광장 가-8	
당 초			24	2.0	30.60	82.23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5	
당 초			25	3.0	74.89	246.19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1	
당 초			26	3.0	66.74	256.11	산책로	산책로 21	산책로 29	
당 초			29	3.0	106.74	353.1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가-9	
당 초			30	3.0	298.56	870.78	연결로	산책로 34	산책로 34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당 초			31	2.5	15.47	37.20	연결로	산책로 30	실내배드민턴장 4	
당 초			32	2.5	29.00	86.96	연결로	산책로 33	산책로 30	
당 초			33	3.0	109.71	329.28	진입로	공원경계	주차장 D-3	
당 초			34	3.0	266.68	690.01	연결로	산책로 34	산책로 34	
당 초			35	3.0	21.90	66.50	연결로	주차장 D-3	산책로 36	
당 초			36	3.0	250.99	707.69	연결로	산책로 34	산책로 34	
당 초			37	2.0	7.16	14.35	연결로	산책로 34	계류 바-3	
당 초			38	2.0	7.38	16.25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당 초			39	2.0	67.42	135.61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45	
당 초			40	2.0	106.44	230.69	연결로	산책로 40	산책로 30	
당 초			41	2.0	233.97	467.93	연결로	산책로 42	산책로 42	
당 초			42	1.5	112.83	172.57	연결로	산책로 43	산책로 30	
당 초			43	1.5	51.43	77.32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6	
당 초			44	1.5	32.54	48.6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47	
당 초			45	2.0	63.83	148.00	진입로	산책로 46	공원경계	
당 초			46	2.0	166.85	408.04	연결로	소로 3-22	실내체육관 6	
당 초			47	2.0	192.62	386.33	연결로	실내체육관 6	주차장 G-4	
변 경			47	2.0	171.74	344.59	진입로	산책로 46	공원경계	
당 초			48	2.0	23.48	46.97	연결로	소로 3-22	실내체육관 5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변 경			48	1.5	22.93	37.09	연결로	소로 3-22	실내체육관 5	
당 초			49	3.0	49.34	251.76	연결로	실내체육관 5	주차장 D-4	
변 경			49	2.5	25.39	61.41	연결로	실내체육관 5	주차장 D-4	
당 초			50	1.2	15.90	19.08	연결로	소로 3-22	실내체육관 5	
변 경			50	1.2	14.61	19.75	연결로	소로 3-22	실내체육관 5	
당 초			51	2.5	6.35	15.25	연결로	소로 3-22	화장실 6-3	
변 경			51	2.5	5.9	14.91	연결로	소로 3-22	화장실 6-3	
당 초			52	1.5	8.06	12.09	연결로	소로 3-22	주차장 D-4	
변 경			52	2.0	11.77	23.77	연결로	소로 3-22	주차장 D-4	
당 초			53	2.0	242.35	490.33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3	
변 경			53	2.0	229.63	459.81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 3-23	
당 초			54	2.0	138.41	278.56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 53	

조성계획도 [변경전]

일자산근린공원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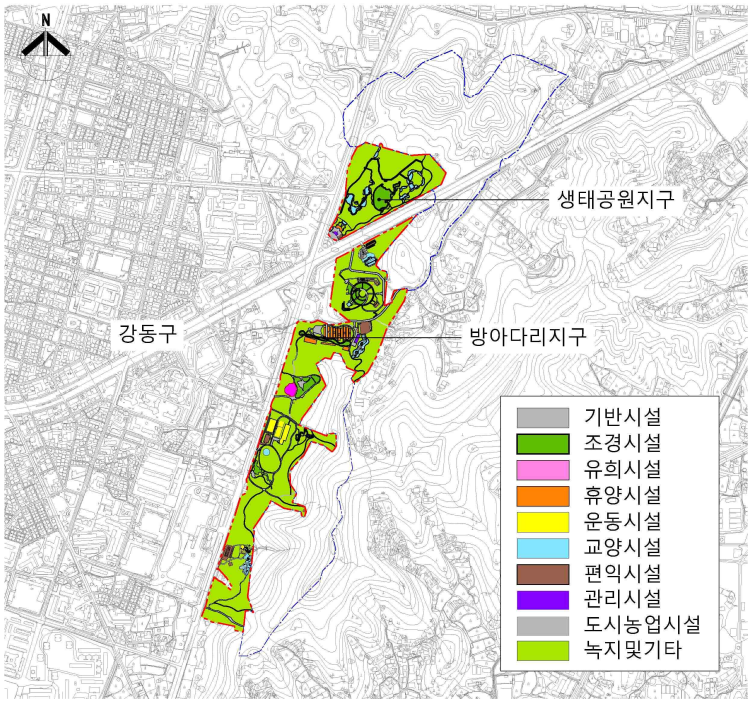
구분		총계	생태공원지구	방아다리지구
부지 총 면적		285,882.60	68,469.30	217,413.30
시설 총 면적		62,749.45	13,477.44	49,272.01
기반시설	소계	24,859.85	3,035.46	21,824.39
	도로	20,076.75	1,874.05	18,202.70
	광장	4,783.10	1,161.41	3,621.69
조경시설		13,490.03	5,235.78	8,254.25
휴양시설		4,060.39	269.67	3,790.72
교양시설		9,299.73	4,667.34	4,632.39
유희시설		1,346.22	-	1,346.22
운동시설		3,997.32	-	3,997.32
편익시설		5,279.91	152.19	5,127.72
관리시설		416.00	117.00	299.00
녹지 및 기타		223,133.15	54,991.86	168,141.29
건축물	동수(동)	12.00	4	8
	바닥면적	3,366.41	483.29	2,883.12
	연면적	3,947.21	483.29	3,463.92
공작물(기)		181	5	176
비고				

* 공원시설율 : 62,749.45 / 285,882.60 *100 = 21.95%

* 건폐율 : 3,366.41 / 285,882.60 *100 = 1.17%

조성계획도 [변경후]

일자산근린공원



■총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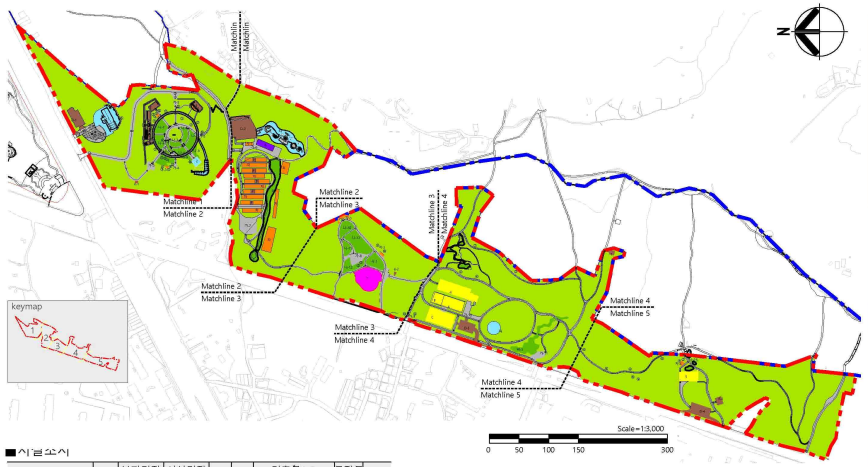
구분		총계	생태공원지구	방아다리지구
부지 총 면적		285,882.60	68,469.30	217,413.30
시설 총 면적		65,183.48	13,477.44	51,706.04
기반시설	소계	24,578.66	3,035.46	21,543.20
	도로	19,795.56	1,874.05	17,921.51
	광장	4,783.10	1,161.41	3,621.69
조경시설		13,490.03	5,235.78	8,254.25
휴양시설		4,060.39	269.67	3,790.72
교양시설		10,994.48	4,667.34	6,327.14
유희시설		1,346.22	-	1,346.22
운동시설		3,997.32	-	3,997.32
편익시설		6,300.38	152.19	6,148.19
관리시설		416.00	117.00	299.00
녹지 및 기타		220,699.12	54,991.86	165,707.26
	동수(동)	12.00	4	8
건축물바닥면적		3,366.41	483.29	2,883.12
	연면적	3,947.21	483.29	3,463.92
공작물(기)		181	5	176
비고				

* 공원시설율 : 65,183.48 / 285,882.60 *100 = 22.80%

* 건폐율 : 3,366.41 / 285,882.60 *100 = 1.17%

조성계획도 [변경전]

방아다리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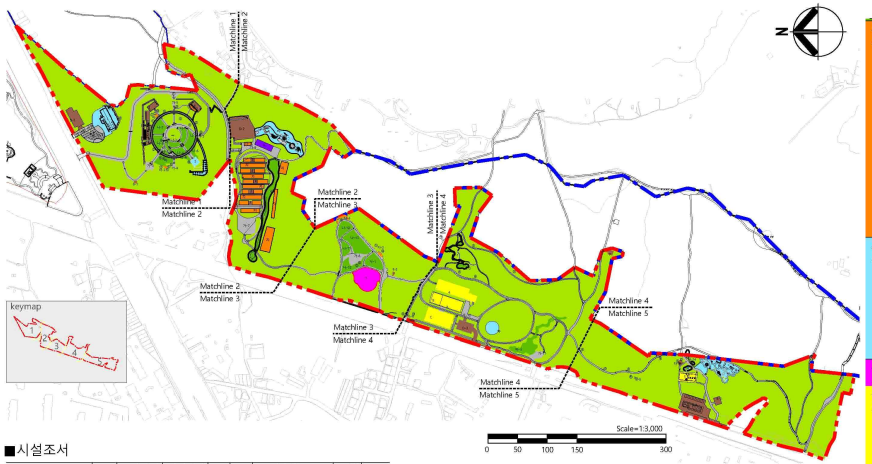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비고
합계			217,413.30	49,272.01	-	8	2,883.12	3,463.92	176	
기반시설	소계		21,824.39	21,824.39	-	-	-	-	-	
	도로		18,202.70	18,202.70	-	-	-	-	-	
	광장	가	3,621.69	3,621.69	-	-	-	-	-	
		가-1	(753.37)	(753.37)	-	-	-	-	-	
		가-2	(29.50)	(29.50)	-	-	-	-	-	
		가-3	(146.66)	(146.66)	-	-	-	-	-	
		가-4	(30.00)	(30.00)	-	-	-	-	-	
		가-5	(30.00)	(30.00)	-	-	-	-	-	
		가-6	(636.94)	(636.94)	-	-	-	-	-	
		가-7	(897.21)	(897.21)	-	-	-	-	-	
		가-8	(446.71)	(446.71)	-	-	-	-	-	
		가-9	(34.96)	(34.96)	-	-	-	-	-	
		가-10	(378.44)	(378.44)	-	-	-	-	-	
		가-11	(237.90)	(237.90)	-	-	-	-	-	
조경시설	소계		8,254.25	8,254.25	-	-	-	-	22	
	허브원	나	4,589.11	4,589.11	-	-	-	-	-	
		나-1	(246.70)	(246.70)	-	-	-	-	-	
		나-2	(380.98)	(380.98)	-	-	-	-	-	
		나-3	(178.19)	(178.19)	-	-	-	-	-	
		나-4	(247.09)	(247.09)	-	-	-	-	-	
		나-5	(70.04)	(70.04)	-	-	-	-	-	
		나-6	(346.52)	(346.52)	-	-	-	-	-	
		나-7	(432.32)	(432.32)	-	-	-	-	-	
		나-8	(111.70)	(111.70)	-	-	-	-	-	
		나-9	(111.70)	(111.70)	-	-	-	-	-	
	정원	나-10	(466.45)	(466.45)	-	-	-	-	-	
		나-11	(341.28)	(341.28)	-	-	-	-	-	
		나-12	(451.10)	(451.10)	-	-	-	-	-	
	다람이논	나-13	(1050.77)	(1050.77)	-	-	-	-	-	
	생태습지	나-14	(154.27)	(154.27)	-	-	-	-	-	
	화단	다	58.70	58.70	-	-	-	-	-	
	수로	라	1,339.44	1,339.44	-	-	-	-	-	
	암석원	마	396.90	396.90	-	-	-	-	-	
	계류	바	1,287.04	1,287.04	-	-	-	-	-	
		바-1	(67.67)	(67.67)	-	-	-	-	-	
		바-2	(241.07)	(241.07)	-	-	-	-	-	
		바-3	(978.30)	(978.30)	-	-	-	-	-	
	연못	사	583.06	583.06	-	-	-	-	-	
		사-1	(583.06)	(583.06)	-	-	-	-	-	
	빗의조형물	①	-	-	-	-	-	-	22	
휴양시설	소계		3,790.72	3,790.72	-	-	-	-	68	
	쉼터	아	90.60	90.60	-	-	-	-	-	
		아-1	(20.25)	(20.25)	-	-	-	-	-	
		아-2	(54.71)	(54.71)	-	-	-	-	-	
		아-3	(15.64)	(15.64)	-	-	-	-	-	
	휴게소	자	201.20	201.20	-	-	-	-	-	
		자-1	(72.26)	(72.26)	-	-	-	-	-	
		자-2	(22.75)	(22.75)	-	-	-	-	-	
		자-3	(62.02)	(62.02)	-	-	-	-	-	
		자-4	(44.17)	(44.17)	-	-	-	-	-	
	캠핑장	차	3,498.92	3,498.92	-	-	-	-	-	
	파고라	②	-	-	-	-	-	-	4	
	명의자	③	-	-	-	-	-	-	17	
	등의자	④	-	-	-	-	-	-	39	
	야외탁자	⑤	-	-	-	-	-	-	4	
	야외의자	⑥	-	-	-	-	-	-	4	
교양시설	소계		4,632.39	4,632.39	-	2	554.80	1,135.60	-	
	생태문화센터	1	1,806.00	1,806.00	-	1	410.80	991.60	-	
	온실	2	144.00	144.00	-	1	144.00	144.00	-	
	문화회관	3	-	-	-	-	-	-	-	
유희시설	소계		1,346.22	1,346.22	-	-	-	-	-	
	놀이시설	ㄱ	1,346.22	1,346.22	-	-	-	-	-	
운동시설	소계		3,997.32	3,997.32	-	2	1,885.32	1,885.32	4	
	실내체드민턴장	4	1,375.32	1,375.32	-	1	1,375.32	1,375.32	-	
	실내체육관	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실외체드민턴장	A	680.00	680.00	-	-	-	-	-	
	농구장	B	342.00	342.00	-	-	-	-	-	
	X GAME장	C	1,090.00	1,090.00	-	-	-	-	-	
	농구대	⑦	-	-	-	-	-	-	1	
	멱기올리기	⑧	-	-	-	-	-	-	2	
	뒷몸일으키기	⑨	-	-	-	-	-	-	1	
편의시설	소계		5,127.72	5,127.72	-	3	144.00	144.00	-	
	화장실	6	173.00	173.00	-	3	144.00	144.00	-	
		6-1	(22.00)	(22.00)	-	(1)	(6.00)	(6.00)	-	
		6-2	(17.00)	(17.00)	-	(1)	(4.00)	(4.00)	-	
		6-3	(134.00)	(134.00)	-	(1)	(134.00)	(134.00)	-	
	약수터	7	72.57	72.57	-	-	-	-	-	
	주차장	D	3,523.01	3,523.01	-	-	-	-	-	
		D-1	(562.01)	(562.01)	-	-	-	-	-	
		D-2	(1,553.00)	(1,553.00)	-	-	-	-	-	
		D-3	(656.00)	(656.00)	-	-	-	-	-	
		D-4	(752.00)	(752.00)	-	-	-	-	-	
	전망데크	E	1,140.60	1,140.60	-	-	-	-	-	
	음수대	F	218.54	218.54	-	-	-	-	-	
관리시설	소계		299.00	299.00	-	1	299.00	299.00	82	
	관리소	8	299.00	299.00	-	1	299.00	299.00	-	
	사각수목보호핀	⑩	-	-	-	-	-	-	10	
	안내판	⑪	-	-	-	-	-	-	26	
	조명등	⑫	-	-	-	-	-	-	46	
녹지 및 기타	소계		168,108.39	-	-	-	-	-	-	
	녹지		168,108.39	-	-	-	-	-	-	

조성계획도 [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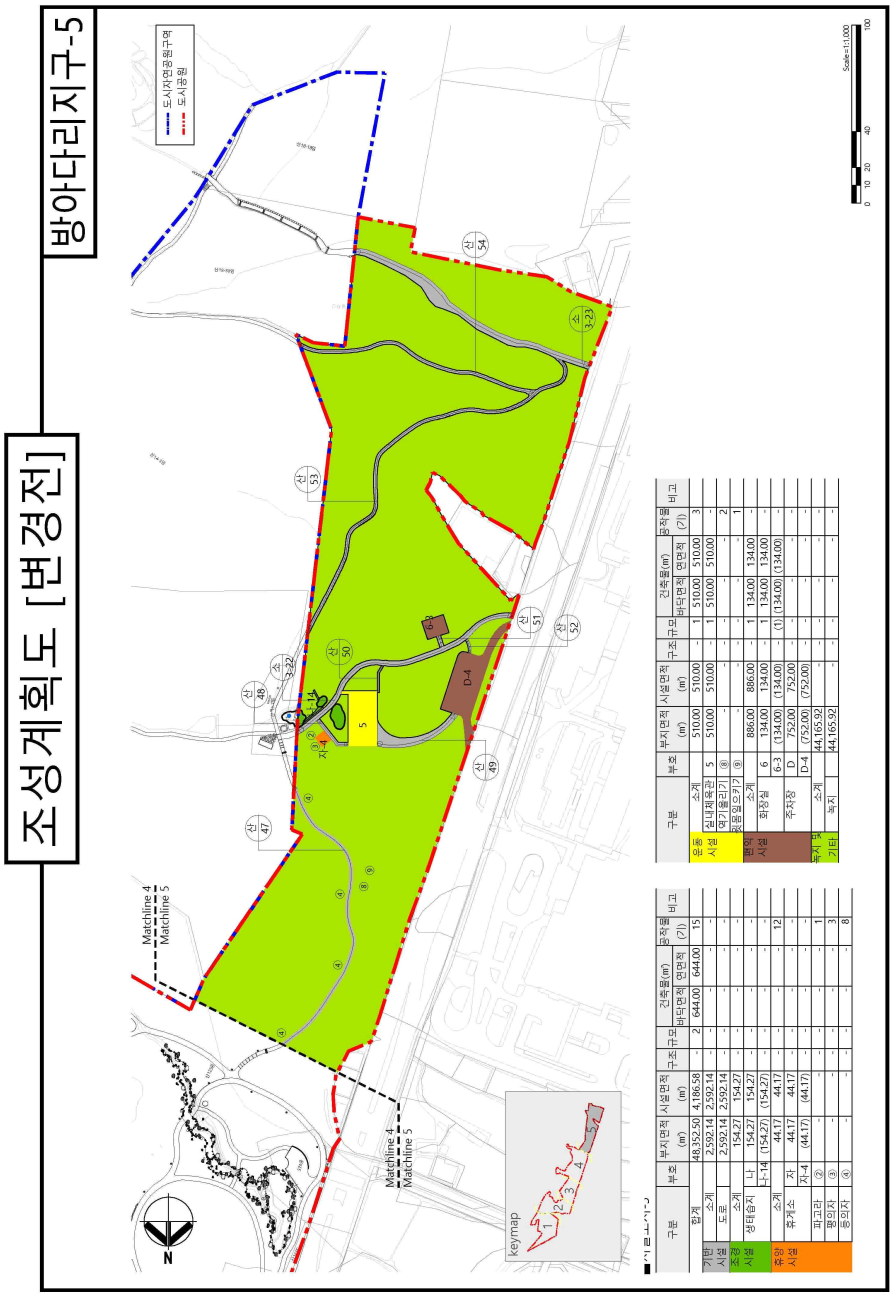
방아다리지구



■시설조서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217,413.30	51,706.04	-	8	2,883.12	3,463.92	176	
기반시설	소계		21,543.20	21,543.20	-	-	-	-	-	
	도로		17,921.51	17,921.51	-	-	-	-	-	
	광장	가	3,621.69	3,621.69	-	-	-	-	-	
		가-1	(753.37)	(753.37)	-	-	-	-	-	
		가-2	(29.50)	(29.50)	-	-	-	-	-	
		가-3	(146.66)	(146.66)	-	-	-	-	-	
		가-4	(30.00)	(30.00)	-	-	-	-	-	
		가-5	(30.00)	(30.00)	-	-	-	-	-	
		가-6	(636.94)	(636.94)	-	-	-	-	-	
		가-7	(897.21)	(897.21)	-	-	-	-	-	
		가-8	(446.71)	(446.71)	-	-	-	-	-	
		가-9	(34.96)	(34.96)	-	-	-	-	-	
		가-10	(378.44)	(378.44)	-	-	-	-	-	
		가-11	(237.90)	(237.90)	-	-	-	-	-	
					-	-	-	-	-	
조경시설	소계		8,254.25	8,254.25	-	-	-	-	22	
	허브원	나	4,589.11	4,589.11	-	-	-	-	-	
		나-1	(246.70)	(246.70)	-	-	-	-	-	
		나-2	(380.98)	(380.98)	-	-	-	-	-	
		나-3	(178.19)	(178.19)	-	-	-	-	-	
		나-4	(247.09)	(247.09)	-	-	-	-	-	
		나-5	(70.04)	(70.04)	-	-	-	-	-	
		나-6	(346.52)	(346.52)	-	-	-	-	-	
		나-7	(432.32)	(432.32)	-	-	-	-	-	
		나-8	(111.70)	(111.70)	-	-	-	-	-	
		나-9	(111.70)	(111.70)	-	-	-	-	-	
	정원	나-10	(466.45)	(466.45)	-	-	-	-	-	
		나-11	(341.28)	(341.28)	-	-	-	-	-	
		나-12	(451.10)	(451.10)	-	-	-	-	-	
	다랭이논	나-13	(1,050.77)	(1,050.77)	-	-	-	-	-	
	생태습지	나-14	(154.27)	(154.27)	-	-	-	-	-	
	화단	다	58.70	58.70	-	-	-	-	-	
	수로	라	1,339.44	1,339.44	-	-	-	-	-	
	암석원	마	396.90	396.90	-	-	-	-	-	
	계류	바	1,287.04	1,287.04	-	-	-	-	-	
		바-1	(67.67)	(67.67)	-	-	-	-	-	
		바-2	(241.07)	(241.07)	-	-	-	-	-	
		바-3	(978.30)	(978.30)	-	-	-	-	-	
	연못	사	583.06	583.06	-	-	-	-	-	
		사-1	(583.06)	(583.06)	-	-	-	-	-	
	벚의조형물	①	-	-	-	-	-	-	22	

휴양시설	소계		3,790.72	3,790.72	-	-	-	-	68	
	쉼터	아	90.60	90.60	-	-	-	-	-	
		아-1	(20.25)	(20.25)	-	-	-	-	-	
		아-2	(54.71)	(54.71)	-	-	-	-	-	
		아-3	(15.64)	(15.64)	-	-	-	-	-	
	휴게소	자	201.20	201.20	-	-	-	-	-	
		자-1	(72.26)	(72.26)	-	-	-	-	-	
		자-2	(22.75)	(22.75)	-	-	-	-	-	
		자-3	(62.02)	(62.02)	-	-	-	-	-	
		자-4	(44.17)	(44.17)	-	-	-	-	-	
	캠핑장	차	3,498.92	3,498.92	-	-	-	-	-	
	파고라	②	-	-	-	-	-	-	4	
	평의자	③	-	-	-	-	-	-	17	
	등의자	④	-	-	-	-	-	-	39	
	야외탁자	⑤	-	-	-	-	-	-	4	
	야외의자	⑥	-	-	-	-	-	-	4	
교양시설	소계		6,327.14	6,327.14	-	2	554.80	1,135.60	-	
	생태문화센터	1	1,806.00	1,806.00	-	1	410.80	991.60	-	
	온실	2	144.00	144.00	-	1	144.00	144.00	-	
	문화회관	3	-	-	-	-	-	-	-	
	체험학습장	카	341.57	341.57	-	-	-	-	-	
	유아숲체험장	타	3,635.57	3,635.57						
		타-1	(1,940.82)	(1,940.82)						
		타-2	1,694.75	1,694.75	-	-	-	-	-	
	야외무대	파	400.00	400.00	-	-	-	-	-	
유희시설	소계		1,346.22	1,346.22	-	-	-	-	-	
	놀이시설	ㄱ	1,346.22	1,346.22	-	-	-	-	-	
운동시설	소계		3,997.32	3,997.32	-	2	1,885.32	1,885.32	4	
	실내배드민턴장	4	1,375.32	1,375.32	-	1	1,375.32	1,375.32	-	
	실내체육관	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실외배드민턴장	A	680.00	680.00	-	-	-	-	-	
	농구장	B	342.00	342.00	-	-	-	-	-	
	X GAME장	C	1,090.00	1,090.00	-	-	-	-	-	
	농구대	⑦	-	-	-	-	-	-	1	
	역기올리기	⑧	-	-	-	-	-	-	2	
	윈몸일으키기	⑨	-	-	-	-	-	-	1	
편익시설	소계		6,148.19	6,148.19	-	3	144.00	144.00	-	
	화장실	6	173.00	173.00	-	3	144.00	144.00	-	
		6-1	(22.00)	(22.00)	-	(1)	(6.00)	(6.00)	-	
		6-2	(17.00)	(17.00)	-	(1)	(4.00)	(4.00)	-	
		6-3	(134.00)	(134.00)	-	(1)	(134.00)	(134.00)	-	
	약수터	7	72.57	72.57	-	-	-	-	-	
	주차장	D	4,543.48	4,543.48	-	-	-	-	-	
		D-1	(562.01)	(562.01)	-	-	-	-	-	
		D-2	(1,553.00)	(1,553.00)	-	-	-	-	-	
		D-3	(656.00)	(656.00)	-	-	-	-	-	
		D-4	(1772.47)	(1772.47)	-	-	-	-	-	
	전망데크	E	1,140.60	1,140.60	-	-	-	-	-	
	음수대	F	218.54	218.54	-	-	-	-	-	
관리시설	소계		299.00	299.00	-	1	299.00	299.00	82	
	관리소	8	299.00	299.00	-	1	299.00	299.00	-	
	사각수목보호판	⑩	-	-	-	-	-	-	10	
	안내판	⑪	-	-	-	-	-	-	26	
	조명등	⑫	-	-	-	-	-	-	46	
녹지 및 기타	소계		165,707.26	-	-	-	-	-	-	
	녹지		165,707.26	-	-	-	-	-	-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옥탑물 (기)	비고
운동시설	소계		510.00	510.00	-	1	510.00	510.00	3	
	실내체육관	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야외물놀이기	⑧	-	-	-	-	-	-	2	
	잔디광장	⑨	-	-	-	-	-	-	1	
편익시설	소계		886.00	886.00	-	1	134.00	134.00	-	
	화장실	6	134.00	134.00	-	1	134.00	134.00	-	
	주차장	6-3	(134.00)	(134.00)	-	(1)	(134.00)	(134.00)	-	
		D	752.00	752.00	-	-	-	-	-	
		D-4	(752.00)	(752.00)	-	-	-	-	-	
휴게녹지	소계		44,165.92	-	-	-	-	-	-	
기타	녹지		44,165.92	-	-	-	-	-	-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옥탑물 (기)	비고
합계			48,352.50	4,186.58	-	2	644.00	644.00	15	
기반시설	소계		2,592.14	2,592.14	-	-	-	-	-	
	도로		2,592.14	2,592.14	-	-	-	-	-	
조경시설	소계		154.27	154.27	-	-	-	-	-	
	생태습지	나	154.27	154.27	-	-	-	-	-	
		나-1④	(154.27)	(154.27)	-	-	-	-	-	
휴게시설	소계		44.17	44.17	-	-	-	-	12	
	휴게소	자	44.17	44.17	-	-	-	-	-	
		자-4	(44.17)	(44.17)	-	-	-	-	-	
파고라		②	-	-	-	-	-	-	1	
쌍의자		③	-	-	-	-	-	-	3	
등의자		④	-	-	-	-	-	-	8	

조성계획도 [변경후]

방아다리지구-5



■시설조서-5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합계			48,352.50	6,620.61	-	2	644.00	644.00	15	
기반시설	소계		2,310.95	2,310.95	-	-	-	-	-	
	도로		2,310.95	2,310.95	-	-	-	-	-	
조경시설	소계		154.27	154.27	-	-	-	-	-	
	생태습지	나	154.27	154.27	-	-	-	-	-	
		나-14	(154.27)	(154.27)	-	-	-	-	-	
휴양시설	소계		44.17	44.17	-	-	-	-	12	
	휴게소	자	44.17	44.17	-	-	-	-	-	
		자-4	(44.17)	(44.17)	-	-	-	-	-	
	파고라	②	-	-	-	-	-	-	1	
	평의자	③	-	-	-	-	-	-	3	
	등의자	④	-	-	-	-	-	-	8	

구분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 (기)	비고
운동시설	소계		510.00	510.00	-	1	510.00	510.00	3	
	실내체육관	5	510.00	510.00	-	1	510.00	510.00	-	
	역기올리기	⑧	-	-	-	-	-	-	2	
	윗몸일으키기	⑨	-	-	-	-	-	-	1	
교양시설	소계		1,694.75	1,694.75						
	유아숲체험장	타	1,694.75	1,694.75						
		타-2	(1,694.75)	(1,694.75)						
편익시설	소계		1,906.47	1,906.47	-	1	134.00	134.00	-	
	화장실	6	134.00	134.00	-	1	134.00	134.00	-	
		6-3	(134.00)	(134.00)	-	(1)	(134.00)	(134.00)	-	
	주차장	D	1,772.47	1,772.47	-	-	-	-	-	
		D-4	1,772.47	1,772.47	-	-	-	-	-	
녹지 및 기타	소계		41,731.89	-	-	-	-	-	-	
	녹지		41,731.89	-	-	-	-	-	-	

Scale=1:1,000
0 10 20 40 100

사업소고시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장애인수상스키협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자양동 133-2)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북로 2198	수상시설물 383㎡ (간접 451.14㎡)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 2025. 12. 31.	2025. 5. 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국사회체육 진흥회 수상스키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상암동 482-48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나루길 296	수상시설물 550.17㎡ (간접 148㎡)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 2025. 12. 31.	2025. 5. 13.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해원문화유산연구원	전북 군산시 해망로 204,6층	서울시계내 한강 (강동구 강일동 2-1)	(고무보트 1척) 8.6㎡	국가유산영향진단조사	'25. 06. 02. ~ '25. 06. 04.	'25. 05.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내 한강 (반포대교~동작대교)	(선박2척) 353.64㎡	ISAE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	'25. 05. 24.	'25. 05.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현대요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6가 451	잠실대교 ~ 행주대교	마리나선박 2척 (54톤, 114.4㎡/ 5.53 36.6㎡)	마리나 선박 대여업	2025.5.15~ 2026.12.31	2025. 5.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수허가자		하천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로얄마리나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9	216.0256㎡	마리나대여업	2025. 05. 15. ~ 2025. 05. 31.	2025. 05. 15.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한강문화관광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잠수교 남단	472.46㎡	공연 시설물 설치	'25. 05. 18. ~ '25. 05. 19.	'25. 05.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미래한강본부 (치수과)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김포시 고양시 서울시 경계~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경계	3.24㎡	재료시험 등 근접조사	'25. 05. 19. ~ '25. 12. 31.	'25. 05.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1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신호개발	서울시 중구 왕십리로 415-3	서울시계내 한강 (반포대교 남단)	(선박3척) 322㎡	B-DAY PARTY	’25. 05. 25.	’25. 05. 16.

◈ 미래한강본부고시 제2025-22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5년 0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 1	수심측량 조사	7.07㎡	수심측량조사	’25. 05. 20. ~ ’25. 05. 30.	’25. 05. 19.

사업소공고

◈ 미래한강본부공고 제2025-220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으로 단속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과태료부과전에 처분내용을 통지하고자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이의제기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2025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미래한강본부장

1. 건 명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사전통지 과태료 부과고지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제20조

3. 공시송달 대상 : “세부내역 별첨 참조”

4. 공 고 기 간 : 2025. 05. 22. ~ 2025. 06. 04. (14일)

5. 자진납부기간 : 2025. 05. 22. ~ 2025. 06. 04. (14일) *자진납부시 20%감경

6. 납부방법
- 공고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에서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및 무인수납기(은행 및 각 구청)등에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운영총괄과(☏02-3780-08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1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29	1	601203-*******	정*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차	2025-04-08 14:12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41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4805	서울특별 시성동구 왕십리2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정미원 주변
2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40	1	730319-*******	신*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5-04-12 08:43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19	2025-05-07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22406	인천광역 시중구하 늘달빛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자양나 들목 주변
3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49	1	890324-*******	김*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5-04-12 08:55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221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1476	경기도양 주시옥정 동로42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수변무 대부그 녹지 주변
4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54	1	871019-*******	허*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5-04-12 09:13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53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2218	경기도남 양주시옆 내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 로변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5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55	1	800311- *******	김*훈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14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217	2025-05-01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2916	경기도하 남시미사 강변서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X계임장 주변
6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62	1	000617- *******	윤*현 윤*순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17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23	2025-05-08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36138	경상북도 영주시대 동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X계임장 주변
7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81	1	810730- *******	전*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31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38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4547	경기도부 천시원미 구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 로변 주변
8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 84	1	810902- *******	백*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35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09	2025-05-01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22158	인천광역 시미추홀 구한나루 로516번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 로변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9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85	1	880417-*******	조*미 하*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37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44	2025-05-01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2923	경기도하 남시미사 강변동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로 변 주변
10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88	1	930129-*******	서*연 서*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42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14	2025-05-02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21316	인천광역 시부평구 부평북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로 변 주변
11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90	1	890922-*******	황*상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46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56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1478	경기도양 주시옥정 동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로 변 주변
12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93	1	930215-*******	김*경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48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218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6021	서울특별 시광진구 광나루로2 0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 강공원 제3주차 장옆도로 변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13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095	1	030206-*******	이영이*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49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27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3423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잠로42번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앞도로 변 주변
14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101	1	194211-*******	주*회 사*** 라리보 석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53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46	2025-04-29	이사 불명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60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 5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출입통제 소 주변
15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102	1	6411218-*******	김*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09:53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219	2025-05-07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2103	서울특별시 서중랑구 동일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출입통제 소 주변
16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104	1	110111-*******	수*녀* *식회사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2 10:25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18	2025-05-07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55440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군진안읍	61143 57	운영총괄과	뚝섬한강공원 제3주차장 앞도로 변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17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1 08	1	830419-*******	이*윤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4-11 11:04	50,000	2025-04-22	2025-06-18	1078834 213326	2025-05-07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0101	경기도김포시봉화로182번길	61143 57	운영총괄과	이촌한 강공원 내 청소년 광장 주변
18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 55	1	610113-*******	최*순	지정된 장소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20 17:26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00	2025-05-12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3481	서울특별시은평구 가좌로7나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난지한 강공원 내 겨울부 수주변 보행로
19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 57	1	000421-*******	KH*B AA*** *RUN BOLD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6 14:03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02	2025-05-02	수취 인불명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2179	서울특별시중랑구 망우로74가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세빛섬 주변
20	10-2 88706	[서일번]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 62	1	991209-*******	이*은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18 08:35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27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0909	경기도파주시하우3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더리버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2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76	1	970829-*******	김*민 김*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 차	2025-04-20 22:37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39	2025-05-12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6954	서울특별 시동작구 대방동7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세빛섬 셔틀버 스 승강장 주변
2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79	1	800915-*******	백*욱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차	2025-04-20 22:48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41	2025-05-09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7733	서울특별 시강서구 등촌로13 가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잠수교 교각42 주변
2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91	1	820819-*******	WI*IN SON* *****치 STOP HERG ARTH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차	2025-04-23 20:56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50	2025-05-12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4338	서울특별 시용산구 신흥3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달빛광 장 주변
2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92	1	921014-*******	장*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 차	2025-04-23 22:39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51	2025-05-12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4342	서울특별 시용산구 소월로44 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 강공원 내 달빛광 장2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 종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25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294	1	840918-*******	이*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24 13:20	50,000	2025-04-25	2025-06-18	1078834 2190563	2025-05-02	주소 불명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7263	서울특별 시영등포 구영등포 로	61143 57	운영총괄과	반포한강공원 내 슬로프 주변
26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59	1	660823-*******	이*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3-31 09:01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05	2025-05-14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0507	경기도고 양시덕양 구	61143 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 원 리버버 스공사 장 주변
27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61	1	731212-*******	김*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02 10:45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07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6912	서울특별 시동작구 매봉로2길	61143 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 원 수영장 산책로 주변
28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64	1	570303-*******	김*열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06 14:08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10	2025-05-14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8241	서울특별 시구로구 고척로47 길	61143 57	운영총괄과	여의도 한강공 원 안내센 터와 원효대 교 사이 산책로 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29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65	1	750311-*******	송숙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4-08 12:41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11	2025-05-14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12777	경기도광주시순암로	61143 57	운영총괄	여의도한강공원 파라다이스 앞 산책로 주변
30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66	1	610210-*******	전*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4-10 11:00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12	2025-05-14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8627	서울특별시금천구독산로	61143 57	운영총괄	여의도한강공원 아라호 광장 주변
31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1	1	850930-*******	권*호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자동차	2025-04-15 16:21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17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7064	서울특별시동작구여의대방로	61143 57	운영총괄	여의도한강공원 샛강공원주차장 진입로 주변
32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4	1	971114-*******	김*선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07 14:19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0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3788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27길	61143 57	운영총괄	망원한강공원 내망원나들목 회전교차로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33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	1	930628-*******	성*석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08 20:25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1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4074	서울특별 시마포구 토막로12 안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4주차장주변
34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	1	801102-*******	장*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11 17:12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3	2025-05-07	주소 불명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3883	서울특별 시서대문 구거북골 로14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2주차장주변
35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	1	020328-*******	황*지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11 17:14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4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3938	서울특별 시마포구 모래내로3 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2주차장주변
36	10-2 88706	[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7	1	700413-*******	임*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11 19:01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5	2025-05-14	폐문 부재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3326	서울특별 시은평구 서오릉로1 8길	61143 57	운영총괄과	망원한강공원 내제2주차장주변

순번	세목 코드	세목명	적발 년월	사전 통지 번호	반송 순번	주민/ 법인번호	성명/ 법인명	위반내용	위반일시	부과금액	사전 통지일	의견제 출기한	등기번호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공시송달 번호	공시 송달	공시 송달일	공시 시작일	공시종 료일	우편 번호	납세자 기본주소	부서 코드	부서명	위반 장소
37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82	1	930726-*******	하*웅(50%), 『하*호(5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20 20:40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8	2025-05-14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8805	서울특별 시관악구 남현6길	61143 57	운영총괄과	강서한 강공원 내 회전교 차로 주변
38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83	1	640203-*******	김*화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20 20:43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29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7626	서울특별 시강서구 송정로4길	61143 57	운영총괄과	강서한 강공원 내 회전교 차로 주변
39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84	1	710927-*******	옥*룡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이륜차	2025-04-21 12:20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30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07678	서울특별 시강서구 화곡로42 길	61143 57	운영총괄과	강서한 강공원부 스 주변
40	10-2 88706	[서일반] 서울특별 시한강공 원보전및 이용관련 위반과태 료	2025-04	001485	1	130111-*******	계*바*달(주)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2025-04-26 12:42	50,000	2025-04-30	2025-06-30	1078834 224031	2025-05-13	기타	제2025-220호	1	2025-05-16	2025-05-22	2025-06-04	28625	충청북도 청주시서 원구	61143 57	운영총괄과	강서한 강공원 회전교 차로

순번	41
세목 코드	10-2 88706
세목명	[서일반] 서울특별시 산업보건센터 운영 관련 위반과태료
적발 년월	2025-04
사전 통지 번호	001486
반송 순번	1
주민/ 법인번호	720112-*******
성명/ 법인명	김*배
위반내용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자동차
위반일시	2025-04-26 16:29
부과금액	50,000
사전 통지일	2025-04-30
의견제 출기한	2025-06-30
등기번호	1078834224032
반송 일자	2025-05-13
반송 사유	폐문부재
공시송달 번호	제2025-220호
공시 송달	1
공시 송달일	2025-05-16
공시 시작일	2025-05-22
공시종 료일	2025-06-04
우편 번호	14046
납세자 기본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
부서 코드	61143 57
부서명	운영총괄과
위반 장소	강서한강공원 일행교 차로 주변

◈ 송파소방서공고 제2025-31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송 파 소 방 서 장

○ 등록대상

업 종	상 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	㈜비앤에이치테크피아	제 서울(송파) -2025-0001호 (2025. 1. 6.)	변형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17길 54-28, 2층	1566-6119
	㈜한백에프앤씨	제 서울(송파) -2025-0002호 (2025. 1. 10.)	박종아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20길 32(가락동)	02-404-4119
	㈜한국소방	제 서울(송파) -2025-0003호 (2025. 1. 13.)	이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0길 1-14, 301호	02-539-2119
	금화소방기술단	제 서울(송파) -2025-0004호 (2025. 5. 16.)	김현확, 윤혜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19, 202호 (문정동, 프라도빌딩)	02-6925-109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위험물안전팀(☎02-6981-529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82호

하천점용(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발산동 공항대로 34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271-64번지 일원
 - 면 적: 당초 3,589.9㎡ / 변경 5,446.6㎡ (일시) 1,935㎡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가스배관 보강 공사
 - 내 역: 가스관(D500㎜, L6,657m) 1식 매설 구간 중 일부 최소매설심도 확보를 위한 하천 보강(세굴방지블럭(37m x 50m) 설치) 공사

5. 점용기간: 2024.10.16.~2029.10.15.

6. 공사기간: 2025.11.1.~2025.12.15.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8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치수과)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1번지 일원
 - 면 적: 4,42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잠실수중보 어도

5. 점용기간: 당초 2020.06.15.~2025.06.30. / 변경 2025.07.01.~2030.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86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중앙지사열수송1부) ☎02-3410-8677
 -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 82-3, 82-9, 82-10번지
 - 면 적: 2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역난방공사 전기방식 설비 설치

5. 점용기간: (당초) 2020.04.21. ~ 2025.06.30. / (변경) 2025.07.01. ~ 2030.06.30.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88호

하천점용(일시, 변경)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수도사업단) ☎031-270-9379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만현로 143(상현동)

3. 점용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6-5 일원 ※ 필지 동일
 - 면 적 : (당초) 7,068.5㎡ → (변경) 4,911.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수도권 광역상수도(1단계) 노후관 개량사업(2차)
 - 내 역 : 하천구역 내 작업구 6개소 굴착 후 관세척 등 실시

5. 점용기간 : (당초) 2023.11.08. ~ 2025.05.14.
(변경) 2025.05.19. ~ 2027.05.14.

◈ 한강유역환경청고시 제2025-18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22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총무과) ☎02-3780-0727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① 광나루 안내센터 : 서울 강동구 암사동 637-6
  ② 잠실 안내센터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 1-1
  ③ 뚝섬 안내센터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04-1, 427-1
  ④ 잠원 안내센터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121-8, 121
 - 면 적: 1,329.3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한강공원 안내센터 4개소(광나루 · 잠실 · 뚝섬 · 잠원)

5. 점용기간: (당초) 2020.04.21. ~ 2025.06.30. / (변경) 2025.07.01. ~ 2030.06.30.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홍보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55 문의 : ☎120